韓國의 軍服飾發達史 Ⅰ

古代~獨立運動期

國防軍史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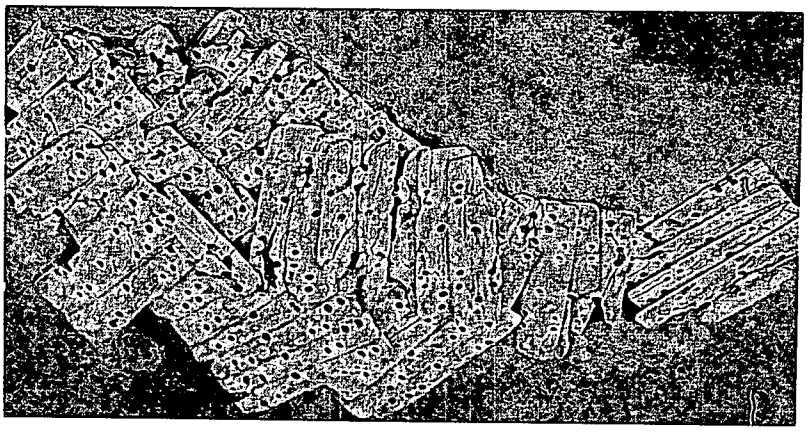

◀ 夢村土城 出土 骨製 小札

▼ 通溝의 三室塚 武士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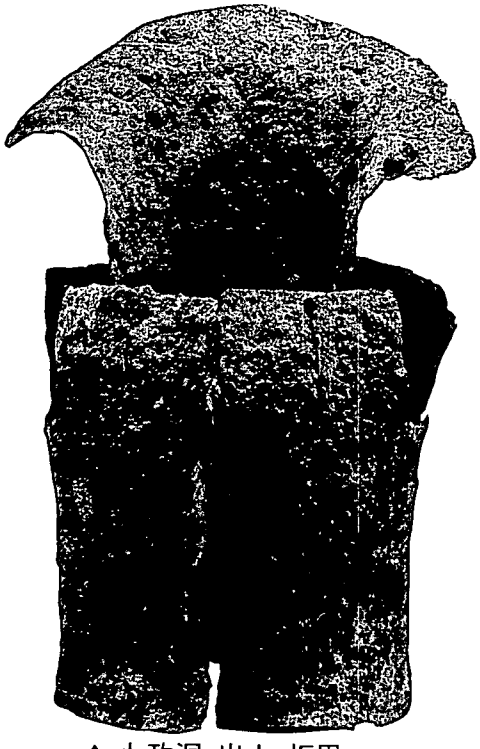

▲ 九政洞 出土 板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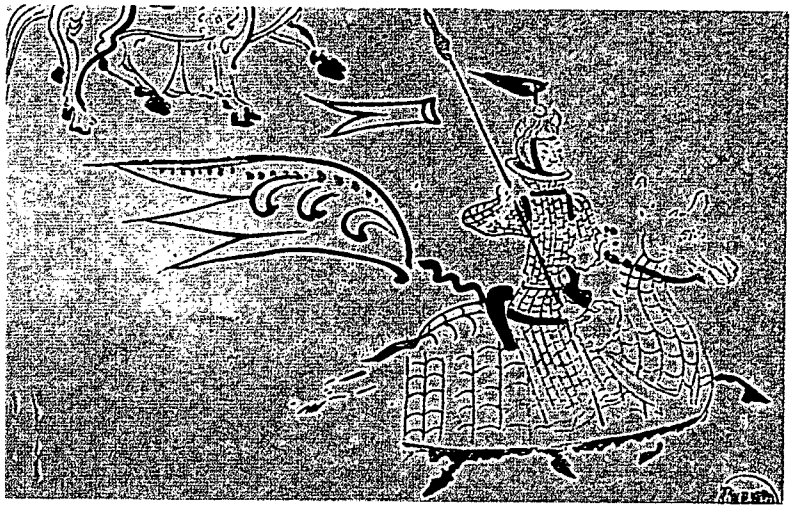

▲ 雙楹塚 鎧馬武士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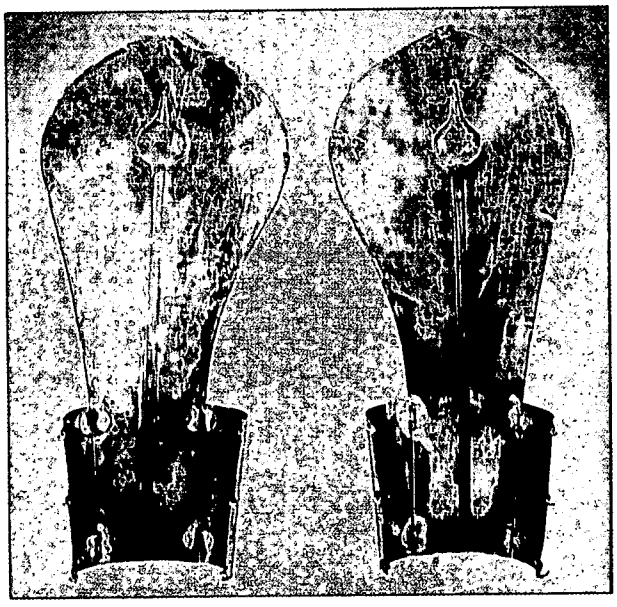

▲ 皇南大塚 出土 銀製肱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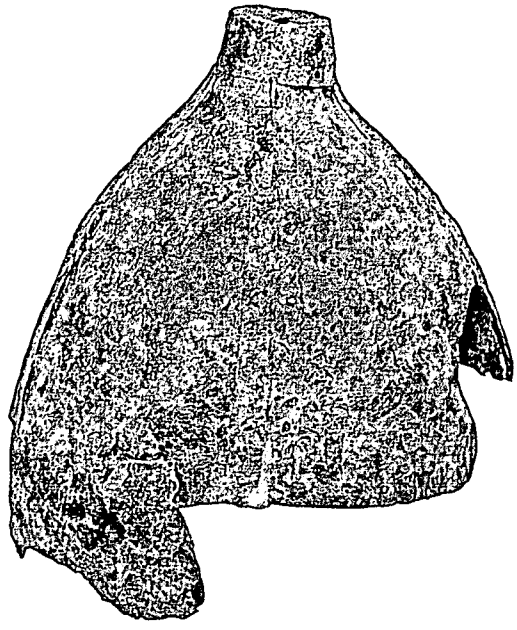

▲ 鐵製 투구



▲몽골 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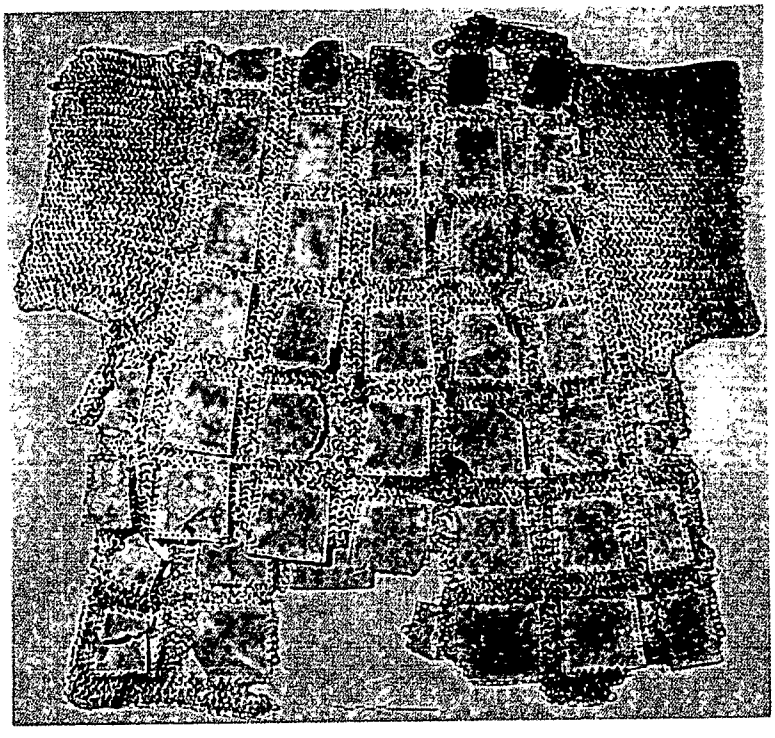

◀ 鄭地將軍의 鏡幡甲

武人石像(開城 노국대장공주 정릉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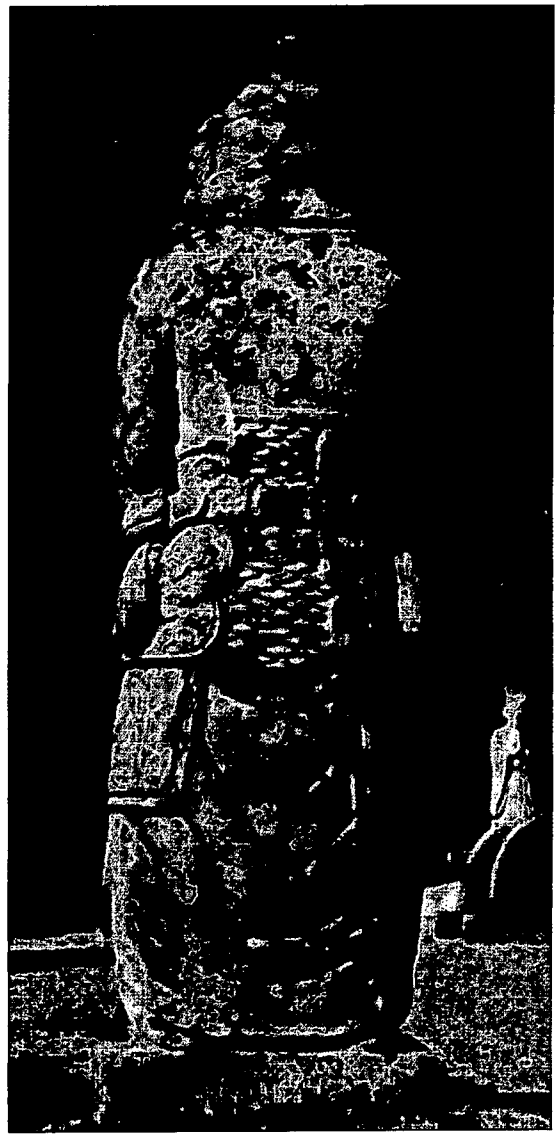

동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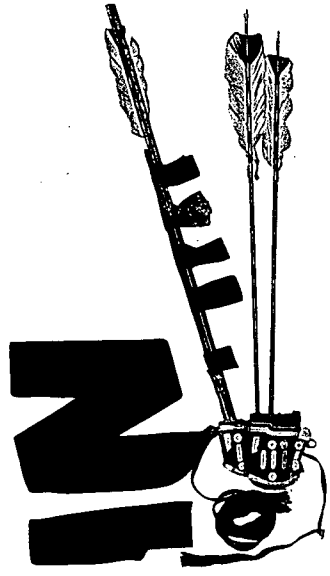

조선시대 투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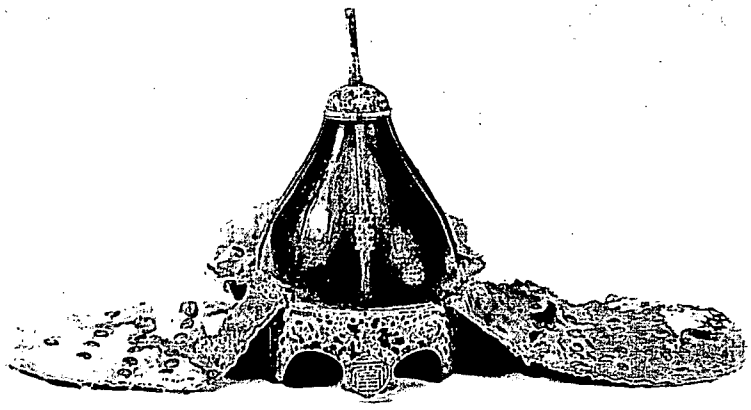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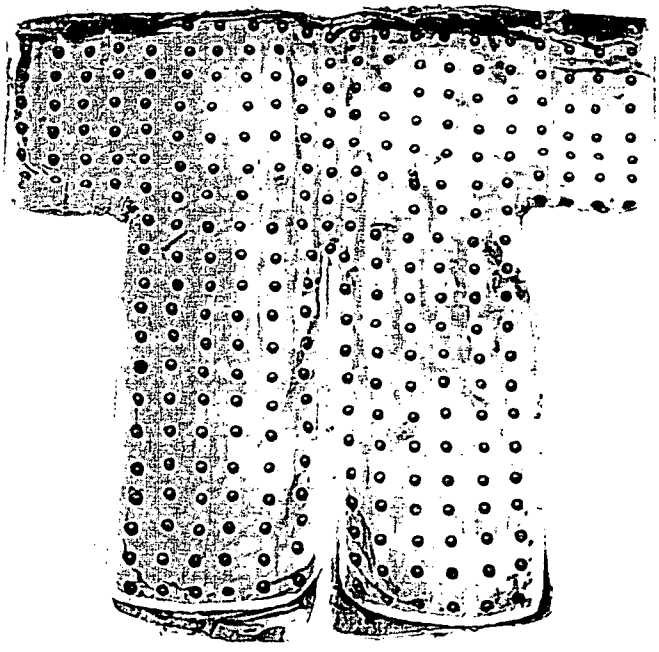

◀ 頭釘甲



豆錫鱗甲 ▶



具軍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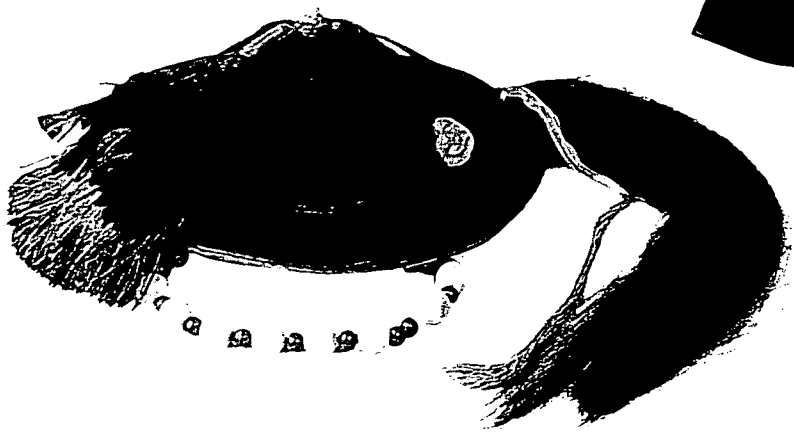

◀ 戰 笠



▲ 동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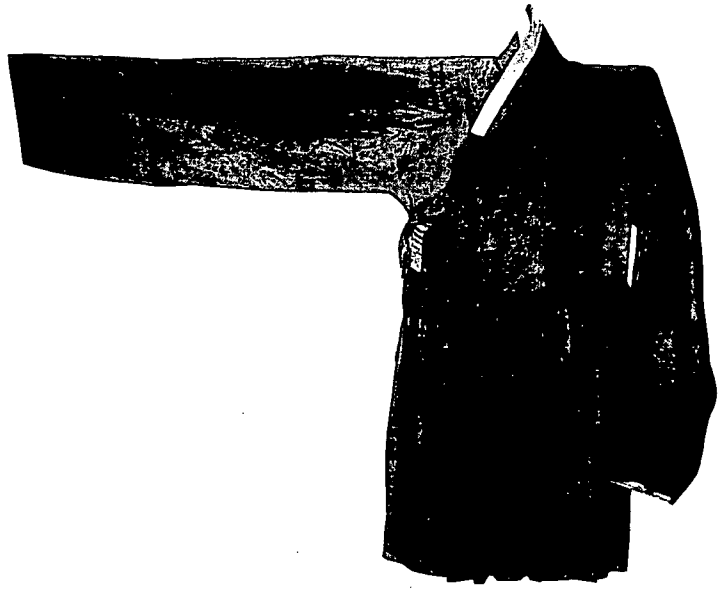

▲ 철 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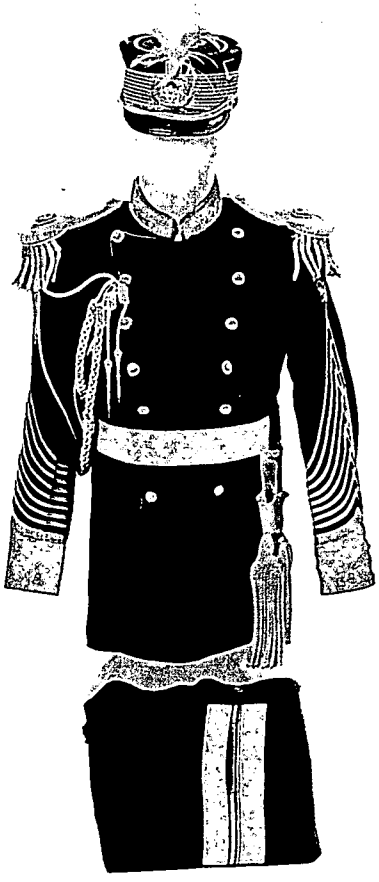

▲ 副將 禮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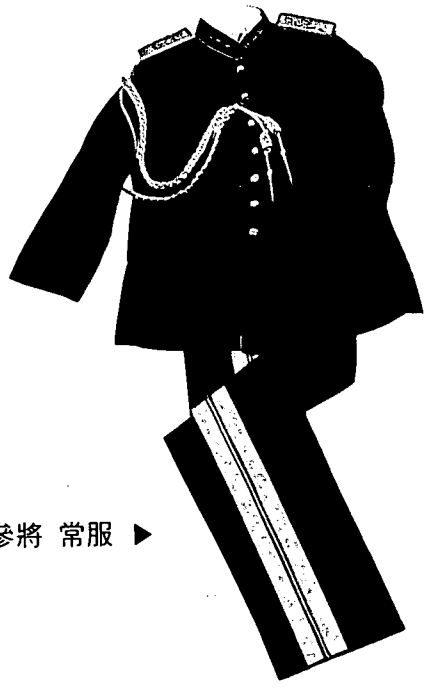

參將 常服 ▶



▲ 光復軍 冬節期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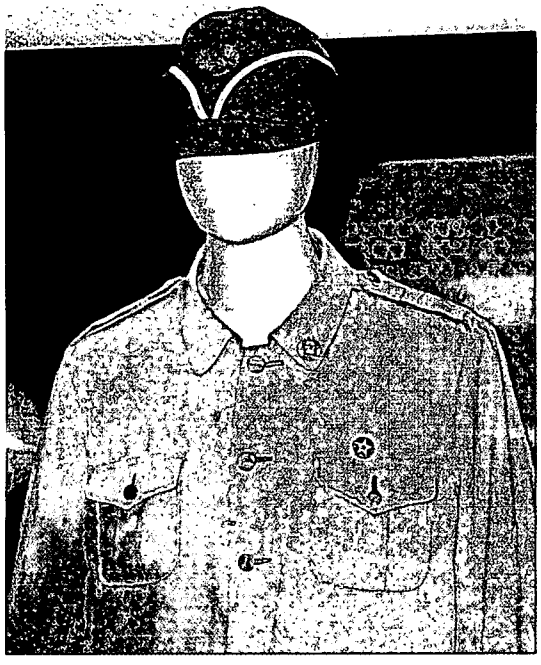

▲ 光復軍 服裝과 部隊徽章

發 刊 辭

인류가 착용하는 의복은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민족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전통을 의복을 통해 표출해 왔기 때문에 그 의복만 보아도 각 민족의 現住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의복은 인간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시대의 문화발전 정도까지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의복 중에서도 특히,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엄정한 位階秩序를 중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일차적인 도구로 사용된 武人 服裝은 그 시대의 衣服相을 대표해 왔으며, 武威를 자랑하기 위하여 여기에 위엄과 품위를 가미하여 제작되어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민족의 精氣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각 나라가 채택한 職業軍人制度下에서의 軍服은 과거의 武服이 지녔던 效用에 비하여 그 역할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군대의 사기와 군기, 그리고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國力을 誇示하고 國威를 宣揚하는 제1차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軍服飾에 있어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한국적 특성을 살린 자주적이고도 품위 있는 軍人服制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당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군복식발달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여, 우선 고대로부터 광복 이전까지의 내용을 담은 제1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本書를 발간함에 있어 문헌과 사료의 부족으로 내용 서술에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앞으로의 현대전에 적합하고 국력의 伸張을 과시할 수 있는 韓國的이고도 특징 있는 軍服制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집필에 함께 참여했던 金正子, 宋桂鉉, 韓長煥 세 분과 연구소 金舜圭, 宋亮燮 研究員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997년 11월

國防軍史研究所長 嚴 燮 馹

目　　次

■ 發 刊 辭

總　　論/1

第 1 章　古代의 軍服飾/11

第 1 節　先史時代의 軍服飾 …… 13

1. 古代 服飾과 軍服飾의 起源 …… 14

가. 古代 服飾 …… 14

나. 甲冑의 起源 …… 18

2. 先史時代의 服飾과 軍服飾 …… 19

가. 先史時代의 服飾 …… 19

나. 先史時代의 軍服飾 甲冑類 …… 23

(1) 石器時代 …… 23

가) 舊石器時代 / 나) 新石器時代

(2) 靑銅器時代 …… 27

가) 무산 虎谷 유적의 骨製 札片 / 나) 肩甲形銅器

(3) 鐵器時代 …… 31

가) 古朝鮮 / 나) 夫餘 / 다) 高句麗 / 라) 沃沮와 東濊 /

마) 漢郡縣 / 바) 三韓

第 2 節　三國時代의 軍服飾 …… 40

1. 三國時代의 服飾 …… 40
가. 冠　　帽 …… 42
(1) 幘 …… 42
(2) 折　　風(弁) …… 43
(3) 鳥 羽 冠 …… 44
(4) 金　　冠 …… 45
나. 저 고 리〔襦〕 …… 47
다. 바　　지 …… 48
라. 두루마기〔袍〕 …… 50
마. 帶 …… 54
바. 신　　발〔靴·履〕 …… 57
2. 三國時代의 軍服飾 甲冑類 …… 58
가. 軍服飾 甲冑類의 種類 …… 58
(1) 鐵板의 連結方法 …… 58
(2) 경첩의 種類 …… 60
나. 冑〔투구〕 …… 61
(1) 縱長板冑 …… 61
(2) 彎曲縱長板冑 …… 62
(3) 遮 陽 冑 …… 63
(4) 衝角附冑 …… 63
(5) 冠帽形伏鉢冑 …… 64
다. 甲〔갑옷〕 …… 66
(1) 板　　甲 …… 66
(2) 札　　甲 …… 68
(3) 附 屬 甲 …… 68

라. 馬 甲 冑 ····· 71
(1) 馬　　冑 ····· 72
(2) 馬　　甲 ····· 72
3. 高句麗의 軍服飾 ····· 73
가. 高句麗의 時代 槪觀 ····· 73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 76
다. 壁畵에 묘사된 軍服飾 ····· 79
(1) 通溝의 壁畵古墳 ····· 80
가) 三室塚 / 나) 通溝12號墳
(2) 大同江 流域의 壁畵古墳 ····· 85
가) 安岳3號墳 / 나) 德興里 壁畵古墳 / 다) 安岳2號墳 /
라) 鎧馬塚 / 마) 雙楹塚 / 바) 藥水里 壁畵古墳 / 사) 八淸里
壁畵古墳 / 아) 大安里 1號墳 / 자) 龕神塚
라. 出土 軍服飾 ····· 101
(1) 북창군 대평리 유적의 찰갑 ····· 102
(2) 우산하 41호고분 ····· 103
마. 高句麗 軍服飾의 特徵 ····· 104
4. 百濟의 軍服飾 ····· 105
가. 百濟의 時代 槪觀 ····· 105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 106
다. 出土 軍服飾 ····· 108
(1) 夢村土城의 骨製 小札 ····· 108
(2) 淸州新鳳洞 B지구 1호분의 鐵製甲 ····· 109
라. 百濟 軍服飾의 特徵 ····· 110
5. 新羅의 軍服飾 ····· 111
가. 新羅의 時代 槪觀 ····· 111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 113

다. 出土 軍服飾 …… 114
(1) 경주 九政洞 고분의 板甲 …… 114
(2) 월성로 가12호분의 小札 …… 115
(3) 월성로 가29호분의 板甲과 小札 …… 116
(4) 황남동 109호 3·4곽의 甲冑 …… 117
(5) 天馬塚 肱甲 …… 119
(6) 황남대총 남분의 肱甲 …… 120
(7) 金冠塚 甲冑 …… 121
(8) 仁旺洞 C區 1號 …… 124
(9) 大邱 達西34號墳 肱甲 …… 125
라. 新羅 軍服飾의 特徵과 變化 …… 125
6. 加耶의 軍服飾 …… 126
가. 加耶의 時代 槪觀 …… 126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 133
다. 出土 軍服飾 …… 135
(1) 加耶의 對外戰爭 양상 …… 135
(2) 出土遺物 分析 …… 136
가) 김해 禮安里 150호 고분 / 나) 福泉洞 고분군 / 다) 陜川 玉田 고분군 / 라) 高靈 池山洞 고분군 / 마) 합천 磻溪堤 가-A호분 / 바) 南原 月山里 M1-A호분 / 사) 갑주가 묘사된 土製品·鐵製品
라. 加耶 軍服飾의 特徵 …… 152

第 3 節 統一新羅의 軍服飾 …… 157

1. 統一新羅의 時代 槪觀 …… 157
2. 文獻·石像에 나타난 軍服飾 …… 165

가. 概　　要 ····· 165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 166
(1) 통일신라의 武官服 ····· 166
(2) 통일신라의 衿幢제도 ····· 169
가) 單色인 것 / 나) 兩色인 것 / 다) 三色인 것
다. 石像을 통해 본 甲冑 ····· 176
3. 統一新羅 軍服飾의 特徵 ····· 180

第 2 章　高麗時代의 軍服飾/183

時代概觀 ····· 185
第 1 節　高麗時代의 政治·外交에 따른 軍服飾 ····· 188
第 2 節　高麗時代의 武器와 戰術 및 軍事制度에 따른 軍服飾 ··· 193
第 3 節　高麗時代의 各種 軍服飾의 變遷과 發達 ····· 196
1. 軍服飾의 種類 ····· 199
가. 武 官 服 ····· 199
(1) 祭　　服(禮服) ····· 199
가) 冕旒冠 / 나) 章服
(2) 朝　　服(禮服) ····· 209
(3) 公　　服 ····· 212
(4) 常　　服(勤務服) ····· 225
나. 甲　　冑 ····· 226
(1) 文獻을 통해 본 甲冑 ····· 227
(2) 遺物을 통해 본 甲冑 ····· 233

가) 鄭地(1347~1391)將軍의 鏡幡甲 / 나) 鐵製冑 / 다) 麗蒙襲來圖
다. 儀 仗 服 ····· 240
(1) 文獻을 통해 본 儀仗服 ····· 240
(2) 遺物을 통해 본 儀仗服 ····· 246
가) 武人石像을 통해 본 甲冑 / 나) 仁宗諡冊 天部를 통해 본 의장복 / 다) 浮石寺 祖師堂 벽화인 持國天王像을 통해 본 甲冑

第 3 章 朝鮮時代의 軍服飾/255

時代槪觀 ····· 257
第 1 節 朝鮮時代의 軍制와 冠服制度 ····· 258
1. 軍事制度의 變遷 ····· 258
가. 朝鮮前期 ····· 259
나. 朝鮮後期 ····· 268
2. 冠服制度의 成立 ····· 275
가. 冠服制度의 完成 ····· 275
나. 冠服의 種類와 特徵 ····· 278
(1) 祭 服 ····· 278
(2) 朝 服 ····· 279
(3) 常 服 ····· 280
(4) 公 服 ····· 281
(5) 武官복제 ····· 282
第 2 節 朝鮮時代 各種 軍服飾의 變遷 ····· 285
1. 甲冑의 類型 ····· 285

가. 甲冑의 特徵과 變遷 …… 285
나. 甲冑의 種類와 特徵 …… 303
(1) 豆錫鱗 갑옷 …… 304
가) 고려대학교 소장 갑주 / 나) 慶州府尹 갑주
(2) 豆 釘 甲 …… 307
가) 李鳳祥(1676~1728) 장군 龍鳳元帥文頭釘甲冑 /
나) 鄭忠信(1576~1636) 장군 師釘甲冑
(3) 皮 甲 …… 318
가) 皮甲冑/나) 皮甲
(4) 鎖 子 甲 …… 321
(5) 綿 甲 …… 322
(6) 胸 甲 …… 323
(7) 內 甲 …… 323
2. 具軍服의 類型 …… 324
가. 戎服과 軍服 …… 327
나. 具軍服의 構成要素 …… 334
(1) 衣 服 …… 335
가) 同多里 / 나) 戰服 / 다) 帶 / 라) 戰笠(氈笠) / 마) 木靴
2) 附 屬 物 …… 358
가) 등채〔藤鞭〕/ 나) 筒箇 / 다) 兵符 / 라) 號牌

第 4 章 近代의 軍服飾/365

時代槪觀 …… 367
第 1 節 舊韓末(大韓帝國)의 軍服飾 …… 369

1. 政治·外交·社會 및 軍事制度의 變化와 軍服飾 ····· 369
가. 甲午更張과 日本의 影響期(1894～1896) ····· 369
나. 俄館播遷과 러시아의 影響期(1896～1899) ····· 374
다. 大韓帝國의 頒布와 自主的 發展期(1899～1904) ····· 375
라. 韓日協約과 日本의 影響期(1904～1910) ····· 376
2. 軍服飾의 變遷과 發達 ····· 380
가. 頒布年代로 본 服裝規則과 軍服飾의 種類 ····· 380
(1) 1895年부터 1906年까지의 陸軍服裝規則 ····· 381
(2) 元帥府에 속한 武官의 服裝規則 ····· 394
(3) 日本軍內의 朝鮮軍人에 대한 服裝着用規則 ····· 395
나. 軍服飾의 種類別 制式 ····· 396
(1) 陸軍將卒服裝 ····· 397
가) 禮服 / 나) 常服 / 다) 外套 / 라) 肩章(계급장) /
마) 裝飾品 및 携帶品
(2) 特定要員服裝 ····· 434
가) 近衛騎兵隊 下士 이하 禮服/나) 憲兵補助員服制
3. 外國의 軍服飾 ····· 439
가. 日本 陸軍 ····· 441
(1) 초창기 이후의 正服 ····· 443
(2) 淸日戰爭時(1894)의 軍服 ····· 444
(3) 러日戰爭時(1904)의 戰地服 ····· 446
(4) 1912년의 正服 ····· 447
나. 프랑스 陸軍 ····· 447
(1) 1900년대의 軍服 ····· 449
(2) 1914년 이전의 騎兵服 ····· 450

다. 獨逸 陸軍 ····· 450
(1) 1914년 이전의 軍服 ····· 450
(2) 1900년 당시의 軍服 ····· 451
라. 러시아 陸軍 ····· 452
(1) 1882년 이후의 軍服 ····· 454
(2) 1904년 이후의 軍服 ····· 454

第 2 節 獨立運動期의 軍服飾 ····· 455
1. 獨立軍의 組織과 活動 ····· 455
가. 初期의 獨立軍 ····· 456
(1) 大韓國民會軍 ····· 456
(2) 北路軍政署 ····· 457
(3) 大韓獨立軍 ····· 457
(4) 軍務都督府 ····· 457
(5) 西路軍政署 ····· 457
(6) 大韓獨立團 ····· 457
(7) 大韓民國靑年團聯合會 ····· 458
(8) 大韓獨立軍備團 ····· 458
(9) 光復軍 總營 ····· 458
나. 獨立軍의 再整備와 長期抗戰 ····· 459
(1) 參 議 府 ····· 459
(2) 正 義 府 ····· 460
(3) 新 民 府 ····· 460
(4) 朝鮮革命軍 ····· 460
(5) 韓國獨立軍 ····· 461

다. 光復軍의 活動 ····· 461
(1) 光復軍 總司令部 設置 ····· 461
(2) 光復軍의 戰列整備와 그 活動 ····· 463
2. 獨立軍의 軍服飾 ····· 464
가. 光復軍 탄생 이전의 각지의 獨立軍 服裝 ····· 464
나. 光復軍의 服裝 ····· 474
(1) 正　　裝 ····· 476
(2) 戰 鬪 裝 ····· 476
(3) 階 級 章 ····· 476
(4) 徽　　章 ····· 476
가) 帽標 / 나) 部隊 標識 / 다) 兵科 徽章
3. 獨立運動期 軍服飾의 特徵 ····· 483

結　　論/487

參考文獻 ····· 492

總　　論

사람은 천성적(天性的)으로 보호막이 없는 창조물이다. 사람은 곰처럼 두꺼운 모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며, 코끼리나 코뿔소처럼 거치른 피부를 지닌 것도 아니고 거북이처럼 딱딱한 껍질을 지니지도 않았다. 사람의 피부는 연약하기 짝이 없으며, 쉽게 부상을 당하고 자신의 치명적인 내부 기관은 맹수나 적대성(敵對性)을 지닌 자신 외의 인간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 그 때문에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천성적인 방어력 취약성에 대해 불안을 느껴 왔으며, 지니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 취약한 방어력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질을 폭넓게 사용하여 보호막(保護膜 : 甲冑)을 만들어 그들의 신체가 맹수의 이빨이나 발톱 또는 적대적인 사람들의 무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초자연(超自然)에 두려움이 많았던 그들은 이 보호갑(保護甲)에 미신적(迷信的)인 개념(예를 들어, 鬼面紋을 그리거나 우리나라 5세기 중반 이후의 三國시대 및 노르웨이 지역에서 보이는 투구 鉢部에 左右 雙角형태를 형성하는 등)과 위압적(威壓的)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장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갑은 유연성(柔軟性)·경량감(輕量感)·견고성(堅固性)에 치중하는 '효과적인 방호(防護)'와 '예술적인 면' 두 가지 부문에 착안하여 제작되었다. 즉 인류는 이 보호막을 사용하여 보다 멋있게 보이고 나아가 심미적(審美的)인 만족감까지 느끼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종류의 갑주가 효과적인 방어력을 지녔음은 물론이고 예술면에서도 걸작품의 하나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사용한 보호갑용 재료의 첫 번째 등장물이자 가장 긴 역사를 지닌 것은 짐승 가죽〔leather armor〕이다. 물론 처음에는 가죽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불에 그을리거나 오그라뜨리고, 또는 뼈나 이빨을 겉에다 부착시키는 등의 가공을 통해 견고하고 두껍게 제작하였다(우리나라 조선시대 柳葉甲이나 皮甲 제작시에 그을린 鹿皮를 사용한 것이나 미국의 Plains Indian이 불을 이용하여 가죽을 오그라뜨려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가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짐승의 이빨이나 뼈를 겉에 꿰매 달기도 하였다). 가죽 다음으로는 나무가 가장 광

범위하게 사용된 재료이다. 목질갑옷의 대부분은 조그마한 판이나 조각을 묶어 사용함으로써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목질갑옷은 전반적으로 보아 착용이 불편하고, 사람의 동작을 둔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음은 물론 이 둔한 동작은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보존하게 만들었다.

중요한 연갑(軟甲 : soft armor)의 한 종류로서, 솜을 두껍게 누빈 것〔cotton armor〕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외투를 만들어 아메리카와 중국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착용되었다. 이는 비록 연갑이지만 화살을 멈추게 할 정도의 두께를 지녔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속물이 사용되기 이전 시기의 보호막을 두른 전사(戰士)의 자태란, 가죽 갑옷과 나무방패〔木盾〕 그리고 두텁게 누빈 연갑의 외투를 걸친 모습이다.

효과 있는 보호갑의 구실을 하는 재료는 역시 금속이다. 금속재료가 지닌 특징은 첫째로 강하다는 점 ; 둘째, 신체에 완전히 맞출 수 있다는 점(물론 대장장이의 刻苦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 셋째, 보는 눈을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착용자의 생명이나 사지(四肢)를 방호할 수 있도록 고안 설계하거나 광택(光澤)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광택은 위엄 있게 보이면서 상대의 시야에 장애를 준다. 서양에서는 신체의 4개 부분에 착용하는 이것을 'four mirror'라고 했으며, 동양에서는 이를 明光鎧라고 호칭하였다).

이 금속으로 제조한 보호갑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주(冑 : 투구)였으며, 현존하는 것의 제작연대는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의 것이다. 투구가 먼저 등장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머리였기에 전사(戰士)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 염려를 했다는 점과 둘째, 머리는 신체의 최상단부에 위치하여 상대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부분으로서, 장식하기에도 좋고 피아 모두에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식물을 부착하여 나타내기에도 좋은 위치이다. 투구의 높다란 꼭지점과 휘날리는 말갈기 등은 전사들의 키를 높여 주었고, 위엄마저 풍기게 하였다.

머리부분 외의 신체부위에 대한 금속 보호갑은 투구 출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인 기원전 1700년대에 등장하였고, 가장 초기 형태는 가죽 옷에 수백 개의 조그마한 금속조각을 생선의 비늘처럼 엮은 비늘 갑옷〔scale armor ; 鱗甲. 우리나라 조선시대 18세기 초엽 李鳳祥의 豆錫鱗甲〕이다. 이 갑옷은 전사(戰士)들에게 유연성을 크게 주면서 동시에 금속막(金屬膜)이라는 보호막을 제공해 주었다.

금속 보호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銅)과 철(鐵)에서, 동은 어떤 자연적인 보호갑보다 우수한 것이었으나, 결점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軟)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강한 가격(加擊)에서 버티려면 두꺼워야 했고, 이 때문에 무게가 대단히 무거웠다. 반면, 철은 보호갑으로서 훌륭한 조건은 구비하였으나, 다루기가 어려웠다. 비교적 정확한 추측으로는 철갑(鐵甲)이 실용화되는 것은 기원전 700~500년 사이고, 철갑이 동갑(銅甲)을 완전히 압도하는 시기는 기원 후 초기시기로 추정한다. 초기 철기시대는 단갑류(短甲類)의 보호갑을 제작하였으며, 조끼형의 이 보호갑은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철판을 연결시켜 제작되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그 무게였다. 결국 야금술의 발달과 보조를 맞추면서 전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와 우수성을 인정받는 보호갑은 쇠사슬 갑옷〔mail armor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량면에서 예외이다〕이었다. 이의 정확한 출현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근동(近東)지역에서 기원전 3~2백년에 출현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쇠사슬 갑옷 한 벌은 20만 개의 고리가 사용되어 완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작업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세계 전 지역에서 2천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이 제작되었으며, 기록에 보이는 이 갑옷 착용 전투의 마지막은 1898년의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이었다. 이러한 대량생산의 가장 큰 이유는 쇠사슬 갑옷의 효율성 때문이다. 전체 무게가 약 9킬로그램을 약간 상회할 뿐인데다가 대단한 유연성을 지니면서 통풍이 잘 되는 이점을 지닌다. 또한 이 갑옷은 방호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지녀, 검이나 단도 또는 화살을 어렵지 않게 차단한다. 물론 창에 의한 심한 가격에는 판식(板式)의 갑옷〔plate armor〕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전사(戰士)들은 쇠사슬 갑옷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고대시기의 판식(板式) 갑옷이 재등장하게 되었고, 14세기 후반 고려 정지(鄭地)장군의 경번갑(鏡幡甲)은 쇠사슬 갑옷이 판식(板式)으로 보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의 투구는 관모(冠毛 : crest : 앞꽂이 장식)부분은 벌써 없어졌고, 머리 꼭대기만을 보호할 뿐 나머지는 모두 쇠사슬에 의존하였는데, 이 점에 있어 우리나라는 크게 다르다. 조선시대 이봉상(李鳳祥)장군 투구에서 볼 수 있듯이 관모부분이 삼지창(三枝槍) 형식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재료는 철이 아닌 흑색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목가리개는 두터운 무명을 바탕으로 하여 규격이 일정치 않은 철편(鐵片)을 듬성듬성 넣고 두정(頭釘)으로 고정시킨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1400년대 중엽,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전신 판식갑주(全身板式甲冑 : full plate

armor)가 등장하고 새로운 보호갑의 시대가 열렸다. 이 갑옷은 '인류의 걸작품'으로 극찬(極讚)을 받은 것으로서, 웬만한 타격에 아무 탈이 없을 뿐 아니라 유연성마저 지녀 착용자는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다. 무릎을 굽히거나 눕거나 걷거나 뛰거나 점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에 올라탈 수도 있어 전사(戰士)로서 요구되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착용자가 갑옷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는 데 커다란 방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았다. 그 무게는 21.7~31.7kg에 지나지 않아 현대 병사들의 완전군장에 비해 무거울게 없어, 조금만 익숙해지면 행동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 갑옷을 착용한 기사(騎士)가 승마시(乘馬時) 기계장치를 빌려 끌어올려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오히려 이 갑옷을 착용하고 말에 뛰어 올라탔다는 기록은 있다. 오해의 여지는 창찌르기 시합[tilting]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전투가 아닌 스포츠이기에 시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갑옷의 무게가 56.8킬로그램이나 되었던 것이다.

초기 화기(火器)는 위력이 약하여 갑옷의 발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위력이 증대되자, 갑옷은 마침내 대중성을 잃어버렸다. 특히 화기를 직접 다루는 화기수(火器手 : musketeer)들은 복잡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휴대품과 사격을 위해 소요되는 거의 100가지에 가까운 제식 동작을 옆 전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갑주 착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1550년 이후에는 전사들이 거의 대부분 부분적인 갑옷만을 착용하였고, 1600년 이후에는 전신(全身) 갑주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다. 이제 가슴막이와 투구만이 탄환방지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갑옷을 착용하려는 자들은 가게 안에서 피스톨이나 화총(火銃 : musket)을 갑옷에 쏴 본 후에야 구입하였다. 비록 1690년까지 일부 병사들이 갑옷을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판식(板式) 갑주[plate armor]시대는 끝이 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청동기·철기 등의 각 시대 공업발전에 발맞춘 갑옷, 다시 말해 각 시대의 최고기술을 그대로 전장(戰場)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패하였던 까닭에 고래로부터 전수되어져 온 모든 것이 그대로 뒤섞여 사용되는 상황이 되었다(물론 이러한 현상은 무기의 발달과정과도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문헌에 보이는 조선시대의 갑옷에는 면갑(綿甲)·두정갑(頭釘甲)·피갑(皮甲)·유엽갑(柳葉甲)·동엽갑(銅葉甲)·철갑(鐵甲)·두석린갑(豆錫鱗甲)·수은갑(水銀甲 : 쇠로 미늘을 만들고 水銀을 끼얹고 붉은 가죽끈으로 엮어 만듦)·지갑(紙甲) 등 보호갑 초기시대의 것으로부터 역사가 흐르면서 등장했던 각종의 보호갑이

한꺼번에 같은 시대에 어우러져 있다.

17세기 중엽 이후, 전사들은 머리 부분의 보호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다. 삼각형의 철투구가 등장하였고, 이 투구는 비록 탄환을 막기에는 부족하였지만, 아직 군도(軍刀 : saber)가 기병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는 더 없는 좋은 보호갑이 되었다. 그러나 제1차대전에 즈음하여 거의 대부분의 전사들이 무용지물로 간주함으로써 1차대전은 전사(戰士)들이 천으로 만든 연(軟)한 모자〔soft hat〕를 착용한 채로 시작되었다. 중포(重砲)와 과거에 비해 월등한 소화기에 의해 수행된 1차대전은 수년 후 곧 금속으로 제작된 모자〔metal helmet〕를 착용하게 만들었다. 프랑스군이 가장 먼저 투구를 사용하였으나 거의 소용이 없었고, 독일군이 귀를 덮는 형태의 훌륭한 투구를 사용하였으며 전쟁기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오늘날의 철모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며, 어떠한 철모라도 고속탄환을 막아낼 수는 없었으나, 파편이나 수류탄 또는 권총에서 발사된 탄환 혹은 유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화기시대에 접어들어, 사람들이 비록 투구를 강조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신체를 방호하는 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일부 유럽 기병대는 항시 흉곽〔breast-plate〕과 등받이(backplate)를 착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조선시대 김덕령(金德齡)장군이 착용했던 갑내의(甲內衣)도 앞뒤에 철판(鐵板)을 댄 것이었다.

세계 제2차대전에서 사상자의 8%가 파편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조종사로부터 시작되어 전투공병들에게 방탄복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모든 전투병과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탄복 발달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전쟁은 막을 내렸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게 된 것이 1950년대의 한국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전투부대들은 4.5kg이 되는 방탄복을 실제적으로 착용하였으며, 이로써 10~20%의 사상자 감소효과를 얻었다. 방탄복은 티타늄을 사용하여 강도를 높이게 되었으며, 그 후 월남전에서는 고속의 탄환을 막아낼 수 있는 12킬로그램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세라믹판이 저공비행의 조종사들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미 해군은 1.8kg의 파편 보호 및 부표(浮漂)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일론 방탄복을 개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베트콩의 죽창(竹槍)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거나 지뢰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들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인류의 보호갑에 대한 노력은 이미 5천년의 긴 역사를 지녔으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만 하는 긴 여정(旅程)도 인류 앞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추구대상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갑주(甲冑)의 흐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방탄용에 치중하면서 2차적으로 위엄을 뽐내기 위해 신체에 두르던 방호막(防護膜)은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전쟁술과 무기가 변화 발전하면서 서서히 용도면에서 변화를 보여, 식별(識別)에 치중하면서 위엄을 부리는 새로운 개념의 막(膜)을 인체에 두르게 되었다. 군대 복장〔military uniform〕의 등장이 시작된 것이다.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위주로 한 방호막인 갑주는 전쟁술(戰爭術)과 무기의 발전상황에 직면하여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갑주의 걸작품'인 전신 판식갑주와 전쟁술 및 무기와의 관계를 보자. 전신 판식갑주는 중기병(重騎兵) 시대의 기병용 갑주이다. 전신을 보호한 이 기병에게 남은 문제는 말〔馬〕까지도 전신을 보호시키는 것이었고, 이 조치까지 완성되자 유럽의 각국 군대는 그야말로 '철갑(鐵甲)을 두른 둔중(鈍重)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중무장(重武裝)은 전장(戰場)에서 상대를 격파하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이 중무장은 전술상의 유연성까지도 함께 부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 이 둔중한 집단에 충격을 준 군대는 빠른 속도의 전쟁술을 자랑하는 몽골기병이었고, '쾌속(快速)은 둔중(鈍重)을 압도'하면서 중기병 몰락의 첫 신호가 울렸다.

전신 판식갑주의 몰락과 무기와의 관계에서는 당시로서는 화약을 사용하는 화기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아 전신 판식갑주의 몰락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고, 이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무기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활이었다. 1346년의 영국군과 프랑스군과의 크레시(Crecy)전투는 흔히 중갑기병(重甲騎兵)의 시대를 다시 보병의 시대로 넘어가게 한 분수령적(分水嶺的)인 전투로 사가(史家)들은 보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기가 관통력을 높인 영국군의 장궁(長弓 : longbow)이었다.

이상의 두 사건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중갑(重甲)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懷疑)에 빠져 있을 때 결정적인 전환을 결심하게 해준 것이 화기(火器)와 그 운용술(運用術)이다. 모리스(Maurice of Nassau)에 이은 구스타부스(Gustavus Adolphus)에 의한 화기에 대한 개량과 일제사격(一齊射擊)에 치중한 선전술(線戰術 : Linear tactics)은 더 이상의 중갑(重甲) 필요성을 말살해 버렸다. 이제 인류는 필요하지 않게 된 신체 보호막을 버리고 그 대신 위엄을 부리면서 식별에 용이한 새로운 복장, 즉 군복〔Uniform〕을 착용하게 된 것이다.

군복의 첫 등장은 어느 특정한 지역의 개인 또는 집안이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시도되면서부터이다. 예를 들면, 서양 중세기에 '군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의복을 착용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왕자들의 종자나 수행원 그리고 개인적인 기사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나름대로 선정하여 착용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임진왜란시 곽재우 장군이 홍의장군(紅衣將軍)이라 불린 것도 그가 예전에 받았었던 중국산 붉은 비단을 사용함으로써 붙여진 명칭이었고, 이 개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경우를 빼고, 현대의 개념으로서의 군복은 상비군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즉, 군대 유니폼은 전장(戰場)에서의 전쟁양상의 변화와 관계가 깊은 것이다. 상비군은 곧 직업군인계층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며, 당시의 전투수행법은 병과별(兵科別)·부대별(部隊別) 행동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법을 운용하였다. 따라서 각대(隊)는 서로간의 구분이 필요하였고, 여기서 '푸른 부대' 혹은 '황색 부대' 등의 명칭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푸른 부대' 혹은 '황색 부대'라고 부를 때 이는 의복의 부분적인 색깔을 말하는 것이지 의복 전체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짧은 바지(breech)나 스타킹의 색깔 등이 푸르거나 황색이었던 것이다. 황건적이 누른 띠를 이마에 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旗)의 색깔이다. 몽골군의 팔기병제(八旗兵制)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황색 코트'나 '홍색 코트' 등도 물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양의 경우 당시까지 가장 주요한 치장물이었던 소매가 없는 상의(上衣 : jacket or jerkin)는 점차 중요성을 덜해 가 18세기에만 사용되었으며, 19세기 초기에 접어들면서는 하나의 조끼〔waistcost, vest〕로서 구실만 하여 처음에는 가죽으로 나중에는 천으로 만들어졌다. 이 자리를 대신하여 보다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당시까지 덮는〔as a cloak〕 구실만을 수행했던 외투〔coat or surtout〕이다. 상의 재킷에 확실한 색깔로 구별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 되었고, 각 부대들은 짧은 바지나 스타킹에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구분하여야 했고, 외투는 확연히 색이 다른 안감을 사용함으로써 소맷부리를 뒤집어 보이게 하고 다른 접은 부분도 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착상은 후의 유니폼의 기본개념이 되었는바, 다시 말해서 다른 색깔의 가선을 지닌 외투를 지칭한다. 단추구멍 주위에 색깔을 넣은 바느질 자리, 그리고 이 주위에 매다는 색깔이 있는 끈 등은 각 부대의 구별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화약은 전장에서의 군인의 복장을 바꾸게 한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 먼저, 화약을 사용하는 화기의 등장은 군인이 착용하는 방호막으로서의 갑주를 무용지물화하여 식별의 유니폼으로 바꾸게 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이후 화기·화포의 명중률 증가는 유니폼의 색깔까지 변화시켜 애초의 위엄을 자랑하는 화려한 색깔은 상대의 명확한 표적물이 될 뿐이어서 지형의 색과 보조를 맞추는 은닉형(隱匿型) 색깔로 바꾸게 만든 것이다. 과거 중국의 갑옷이 주로 붉은 계통을 많이 사용하여, 상처로 인한 출혈을 상대에게 감추는 데 이용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화기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색깔에 대한 생각은 위엄에서 보호색(保護色)으로 전환한 것이다.

군복이 자리를 잡기 전 당시는 오늘날 개념식의 서열을 알리는 배지가 없었다. 장교는 그들의 의복 질이 훨씬 좋다는 것으로 구별이 되었다. 또한 장교들만이 어깨에서 내려뜨리는 현장(懸章)을 착용하여 피아(彼我)를 구별하였다. 찰스시대의 영국과 스페인은 밝은 빨간색의 현장을 착용하였고, 독일은 30년 전쟁에서 황색의 현장을, 네덜란드는 오렌지색, 프랑스는 처음에는 푸른색에서 흰색으로 바꾸었다. 이런 식의 구별은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필요했던 조치였으며, 후에 유니폼이 생기면서 이 착상은 널리 확산되었다.

꽃 모양의 모표 또한 구별을 위해 널리 사용된 것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제1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갈매기 표 수장(袖章)이 여러 가지 색깔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7세기 이후의 서양 군대의 유니폼이 지니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하다 :

① 1600～1670년 주요 치장부위는 재킷이며, 기병은 긴 바지를 입었다. 머리부위 장식은 철모(鐵帽 : steel cap)이며, 머리를 길게 길렀고, 종종 삐져 나오는 콧수염을 길렀다.

② 1670～1710년 긴 자락 외투와 테가 넓은 모자와 함께 시민들의 패션을 좇아 주요 치장부위가 되었다. 기병만은 여전히 갑주의 마지막 착용자가 되었다. 장교들은 긴 가발을 착용하였고, 콧수염은 작았다.

③ 1710～1805년 유니폼이 마침내 시민들의 패션과 결별하였다. 외투는 두 겹으로 되어 가슴부위까지 되접어서 겹치게 만들었다. 되접는 소맷부리는 작아지고 소매가 좁아졌다. 펠트모자[felt hat]는 세 부분으로 말아 올려지고 레이스(lace)로

치장하였다. 머리는 땋아 올렸고 수염은 더 이상 기르지 않았다.

④ 1805~1850년 한 겹 혹은 두 겹의 짧은 상의를 입었다. 기병은 볏 모양의 앞꽂이 장식이 달린 가죽 헬멧을 착용하였다. 땋는 머리는 없어졌다.

⑤ 1850~1914년 한 겹 또는 두 겹의 중간 사이즈의 튜닉(tunic : 웃옷의 일종)을 입었고, 뾰족한 헬멧이 줄어들었다.

⑥ 1914~1939년 세계대전 기간 즉 20세기 초는 은닉 색깔을 현역복장에 착용시키는 것이 거의 모든 국가에 소개가 되어 보편화되었다. 철모〔steel helmet〕가 등장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영국식의 현역 복장이 모든 나라에 채용되었다. 이 복장은 가슴과 치마 부위에 헝겊을 댄 주머니가 있었고, 색깔은 땅 색깔의 브라운으로부터 연유되어 카키로 불리우는 회색 그린이었다. 철모와 세로형의 모자가 현역에 통상적으로 착용되었고, 앞챙이 있는 뾰족한 모자가 현역이 아닌 사람들에게 착용되었다. 산보나 공식적인 경우에는 색깔이나 특별히 아름답게 꾸민 군복이 착용되었다.

우리나라 군복식의 시작과 그 흐름은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이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그 발전양상을 따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백제문화의 보존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삼국시대의 각국의 군복식을 헤아려 본다는 일은 난제(難題) 중의 난제이다. 다만, 고구려의 경우 현존하고 있는 벽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잡을 수 있으며, 신라의 경우 각종 문헌이나 분묘(墳墓) 앞에 세워져 있는 무신상(武臣像)을 통해 역시 어느 정도의 감은 잡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의 발달이 단계를 밟아 발전하지 못하고, 특히 군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화약무기는 초보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이에 따라 군복의 변화도 단계를 밟지 못하고 나라 안에서의 전통복장과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형태의 복장들이 함께 동 시대(同時代)에 어우러지고 있다. 참고로 말해서, 군복에 대한 서양학자들의 중국과 일본의 군복식에 대한 아래의 견해를 보면, 우리나라의 군복식에 대한 체계를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중국** : 중국군에서 유럽의 개념으로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화단(義

和團)의 난(亂)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의화단의 난 이전의 병사들은 민족 특유의 의상을 입고 여러 가지 색깔의 외투를 걸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짙은 푸른 비단옷에 검은 허리띠를 둘렀고 가슴이나 등 부분에 한자(漢字 : 주로 '勇'이나 '忠' 등의 글자)를 새겨 놓았다. 유럽형의 유니폼은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의화단의 난 기간과 그 후에 착용하게 된다. 병과(兵科) 색깔은 보병은 붉은색, 기병은 흰색, 포병은 노랑, 선두공병은 청색, 수송은 짙은 밤색을 사용하였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보병 홍색, 포병 청색, 공병 흰색, 수송 검정색으로 다시 바뀌었다.

- **일본** :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 이전에는 유럽식의 유니폼이 없었다.

따라서 본서(本書)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방호막으로서의 갑주와 유니폼으로서의 군복에 대한 명확한 선을 가능한 그으면서 분리 서술하되 이와 동시에 갑주와 유니폼이 넓은 의미로서는 모두 '군복(軍服)'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양자간의 관련성과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나갈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전통적인 민간복장과 군복과의 차이점, 또한 양자간의 관련성 등에 유의하여 서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복식에 드러나는 특징을 추출하여 결론에서 언급할 것이다.

第 1 章　古代의 軍服飾

第 1 節　先史時代의 軍服飾
第 2 節　三國時代의 軍服飾
第 3 節　統一新羅의 軍服飾

第 1 章　古代의 軍服飾

第 1 節　先史時代의 軍服飾

세계의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발전을 한다.

구석기시대에는 생산력이 매우 낮아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이루고, 집단으로 떠돌아다니는 군사회(群社會)를 이루었다.

신석기시대가 되면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경제생활면에서 농경의 시작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즉 구석기시대의 식량채집단계에서 식량생산단계로 변화한다. 사회조직 자체도 종래의 군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발전하나 씨족공동체 위에 형성되어 있어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부족사회간의 싸움은 시작되어 무기가 점차 발달하게 된다.

기원전 10세기경 청동기문화가 유입되면서 평등하였던 부족사회가 붕괴되고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나 최초의 정치사회인 군장사회(君長社會)가 성립한다. 도구의 발달과 새로운 도구의 등장으로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도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 권력에 따른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빈부 차뿐 아니라 집단간의 격차도 생기게 되었으며, 각 집단간의 대립은 불가피하였다. 고조선(古朝鮮), 부여(夫餘), 고구려(高句麗), 옥저(沃沮), 동예(東濊), 삼한(三韓) 등의 초기형태가 모두 이 단계를 경유한다.

기원전 4세기경 철기문화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각지에서 선진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세력을 가진 군장사회가 주위의 여러 소국(小國)을 병합하여 초기국가가 형성된다. 이러한 초기국가들은 세력을 확장하여 주위의 집단들을 병합해 나갔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야 등의 고대국가로 발전해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기가 발달하고 군사체계가 정비되어 갔으며 군사체계의 정비와 함께 군복식, 즉 갑주류(甲冑類)도 발달하게 된 것이다.

1. 古代 服飾과 軍服飾의 起源

가. 古代 服飾

고고학계에서는 한반도와 북구주(北九州) 일대에 밀집 분포된 고인(古人)들이 중국 산동지역 및 만주와 바이칼호단(湖端)까지 분포되어 산 사실과 청동문화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바이칼 남단으로 추정하고 여기서 북동으로 이동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1] 그 확실성 여부는 앞으로 좀더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

민족복식은 양식의 고찰을 통하여 민족의 원류와 민족의 이동 및 문화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복식은 북방계, 알타이계 복식,[2] 호복(胡服)[3] 등으로 지칭해 왔다.

여기에 대해 지리적 문화적인 개념으로 북방이라고 하면 대체로 시베리아 이북을 말하는데, 유형적으로 볼 때 한국복식은 시베리아 지방뿐 아니라 그 이남 지역도 상관하기 때문에 북방계로 일관하는 것은 무리가 되고 또 한국어가 알타이어군에 속한다는 람스테트(G. Ramstedt)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추론한 것 같은데 언어와 복식은 등식이 아니다. 한국어는 몽골어보다 튀르크어에 더 가깝다[4]는 견해가 대체로 긍정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아시아어[5]라는 견해가 새로 대두되고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호복(胡服)이라 지칭된 것은 가장 오랜 유물로 남아 있는 저고리와 바지는 몽고의 노인 우라에서 발굴된 1세기경의 것으로, 현재 한복 저고리 바지와 유사하므로

---

1) 柳喜卿, 1981 「先史時代에 있었을 우리 民族服飾을 생각하며」『服飾』5 韓國服飾學會, p. 11.
2) 金東旭, 1982 「韓國服飾의 基本構造」『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p. 9.
3) 柳喜卿, 1975 『韓國服飾史硏究』 梨花女子大學校 출판부, p. 19.
4) G. Ramstedt, 1939, Vber dio stellung des Koreanischen.
5) 최한우, 1992 「튀르크어와 한국어의 비교연구」『韓國中東學會論叢』13, pp. 252~272.
6) 무함마드 깐수, 1993 「韓國服飾과 西域服飾間의 共通要素」.『韓國의 服飾』 檀國大學校 石宙善記念民俗博物館, pp. 3~5.

같은 계통으로 보아[7] 명명된 것으로 본다.

아무튼 한국복식은 북방계 호복(北方系胡服)[8]으로 통칭해 왔고, 유형은 표현성에 기준을 둔다면 세계 의복 중에서 캐프탄(Caftan)형에 속한다.[9]

캐프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중동아시아 전역에서 남자들이 입었던 긴 옷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 몽고족과 아시아지역에서 입고 있는 유형으로 알려졌고,[10] 몽고의복을 캐프탄이란 명칭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11]

캐프탄은 앞이 트이고 길고 어깨선에서 직선소매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는 허리끈으로 잡아매어 입는다. 즉 우리 고유복식인 기본 포(袍)인 것이다.

한국 복식문화는 고대중국의 문물과 대조하여 볼 때 유목민의 문물인 광의의 스키타이계 복식문화에 속한다.

스키타이계 복식문화는 기원전 1000년경 북방 스텝(Steppe)지역에서 유목기마민족이 발생해서 기원전 700년경에는 북방 유라시아 전지역에 걸쳐 기마민족국가를 통하여 형성하였다.

고고학에서 스키타이인(Scythians)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흑해의 북해 연안에 인접한 스텝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부족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서쪽으로 다뉴브강에서 동쪽으로 알타이에 이르는 스텝지대의 광대한 초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공통된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부족들의 복합체로서 스키타이 세계(Scythian World)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12]

그들은 북방의 만지(蠻地)에 거주하며 목축을 하기 위하여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였고 성곽이나 거주지를 갖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으나 각기 분지(盆地)를 갖고 있었다. 문서는 없으며 언어로써 약속을 이행하였다.[13]

그들의 문화는 초원의 길을 통하여 멀리 아시아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장식은 벽화나 조각보다는 운반하기 쉬운 소형 공예 장식품들이었는데 대부분

---

7) 金東旭, 앞의 책, p. 10.
8) 柳喜卿, 1981, 앞의 책, p. 11.
9) 高福南, 1984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에 대한 分析』 世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 40~42.
10) 앞의 책, p. 41.
11) Henny Harald Hansen, 1950, Mongol Costume, Copenhagen.
12) 朝鮮日報社, 1991 『스키타이 황금』 國立中央博物館, p. 18.
13) 金文子, 1984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硏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 8.

이 그들 독자적인 양식(Style)이었다. 즉 관모(冠帽), 이식(耳飾), 경식(頸飾), 완식(腕飾), 대구(帶鉤) 등의 장신구나 무기(武器), 마구(馬具), 차구류(車具類) 등 금은주옥(金銀珠玉)의 장식품으로 풍부하게 꾸며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장식은 무기, 말안장과 함께 개인 장신구와 의복장식(Dress trimming)인 금조각판(Gold Plaque)을 들 수 있다.

스키타이인의 예술 속에 강한 샤머니즘(Shamanism)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 유목민들이 신성시하는 녹(鹿), 조류(鳥類), 성수(聖樹 : Tree of Life) 등의 장식문(裝飾文)이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양식은 고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중요 간선들의 하나인 흑해북안으로부터 우랄산맥의 남단을 지나 카자흐 평원을 횡단하여 알타이 산지에 이르고 남시베리아로부터 몽고 고원에 달하는 유라시아 북방의 스텝지대를 지나는 평원의 길을 통하여 각지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초원의 길을 통하여 전파된 문화는 유목을 위한 이동생활이나 기마전술에 의한 군사활동 등 그들 유목기마민족의 환경에 맞춰 창조되었으므로 농경민족의 것과는 현저하게 달랐다. 그들 상호간에는 분포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복식, 무기, 마구, 차구류 등에 근사성(近似性)이 많고 또 그것들을 장식하는 데 동물의장(動物意匠)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 1-1〉 스키타이인이 조각된 의례용 은제용기
(보로네스, 챠스티에 3호분 출토,
소련 국립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기원전 4세기 :『스키타이 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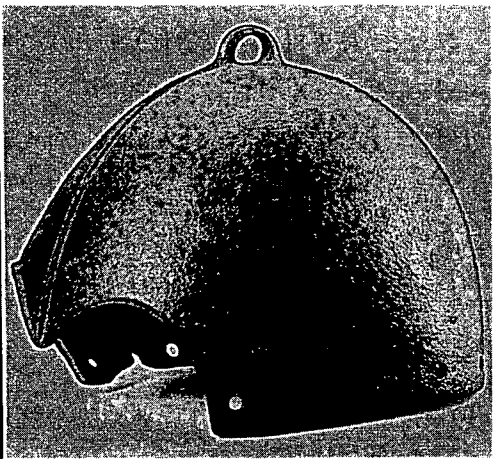

〈그림 1-2〉 스키타이안의 청동투구
(『스키타이 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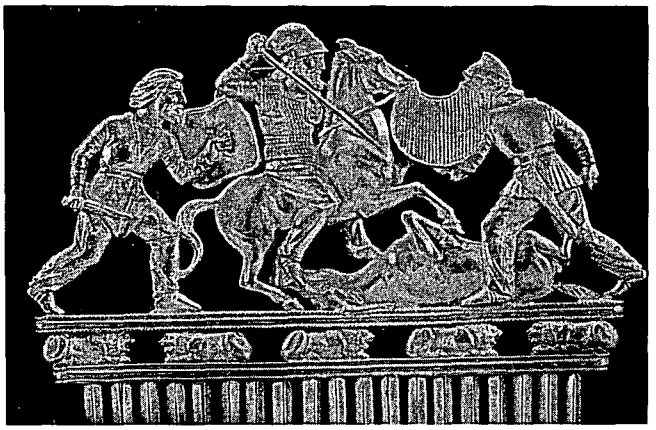

〈그림 1-3〉 스키타이 무사의 싸움이 조각된 금제빗(드네르프, 자포로쥐, 솔로하무덤 출토, 소련 국립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기원전 5세기 말~4세기 초 : 『스키타이 황금』)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스키타이계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기원전 700~600년경부터 들어온 것으로 본다.[14] 스키타이계 복장은 유고제(襦袴制)로 왕국유(王國維)가 말한 호복(胡服)이다.[15] 스키타이 문화권내에 있었던 우리 민족은 청동시대, 위맥족의 도래와 함께 스키타이계 복식을 착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머리에는 변형모(弁形帽), 조우모(鳥羽帽), 대륜식입식관(臺輪式笠飾冠)을 쓰고 상의(上衣)는 통수형(筒袖形)의 둔부선(臀部線)까지 오는 유(襦)를 좌임(左衽)으로 착용하였고, 하의(下衣)는 기마(騎馬)하기 편리한 고(袴)를 입었다.

상의 위에는 의례용 장포(長襦 : 袍)를 입기도 하였다. 허리에는 대구(帶鉤)가 달린 혁대를 하였고, 기마하기 좋은 코끝이 올라간 화(靴)를 신었으며, 거기에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이와 같은 복식형태는 스키타이계의 복장과 아주 유사하다.

즉, 한민족은 구석기시대의 원시적인 복장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발달된 복장 구조를 보유하고 있던 스키타이계 복식이 들어오면서 고대 한국복식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키타이계 문화를 소유하게 된 한국문화는 그후 한무제(漢武帝)의 조선 침입 때부터 중국의 철기문화를 직접 받아들이면서 중국문

14)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槪說』 一志社, p. 79.
15) 이혜영·김문자, 1990 「우리나라 袍의 類型 및 源流에 관한 硏究」 『服飾』15, p. 81.

화권으로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본다.[16]

나. 甲冑의 起源

초기의 갑주류(甲冑類)는 인간의 가슴, 머리, 생식기 등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간단한 것이었을 것이다. 재료는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나 가죽 등으로 제작하였다. 중국의 신석기시대 유적인 강소성비현대돈자(江蘇省邳縣大墩子) 유적[17]과 운남성원모대돈자(雲南省元謀大墩子) 유적[18]에서 발굴된 사자(死者)의 유골 중에 골촉(骨鏃)과 석촉(石鏃)이 박혀 있었으며 예리한 촉(鏃)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외 격투 중에 사용한 병기는 골제(骨製), 석제(石製), 모두(矛頭)를 착장한 장모(長矛), 각 형식의 마제석부(磨製石斧) 및 단순한 목봉(木棒)이 있다. 공격용 무기의 피습(被襲)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명상을 받기 쉬운 가슴, 머리, 생식기 등에 원시적 방어장비를 사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지만 신석기시대 벽화에 방패를 들고 있는 것(그림 1-4)[19]이 있어 인간의 보호 본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방패의 재질은 초기에는 나무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갑주류가 도구의 발달에 따라 점차 재질을 변화시켜 갔으며, 초기 국가단계에 이르러 철기문화가 전래되고 군사체계의 확립과 함께 철제 군복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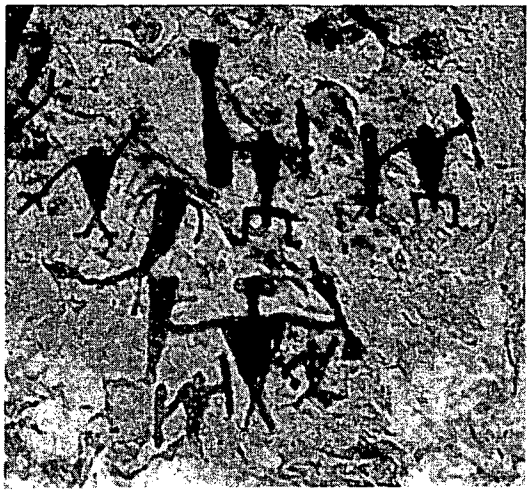

〈그림 1-4〉 신석기시대의 벽화
(『中國古代兵器圖集』)

16) 金元龍, 1976 『韓國文化의 起源』 探究堂, p. 49.
17) 南京博物館, 1981 「江蘇邳縣大墩子遺址第二次發掘」 『考古學集刊』 1,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8) 雲南省博物館, 1977 「元謀大墩子新石器時代遺址」 『考古學報』 1977年 第1期.
19) 成東·鐘少异, 1990 『中國古代兵器圖集』 北京, 解放軍出版社,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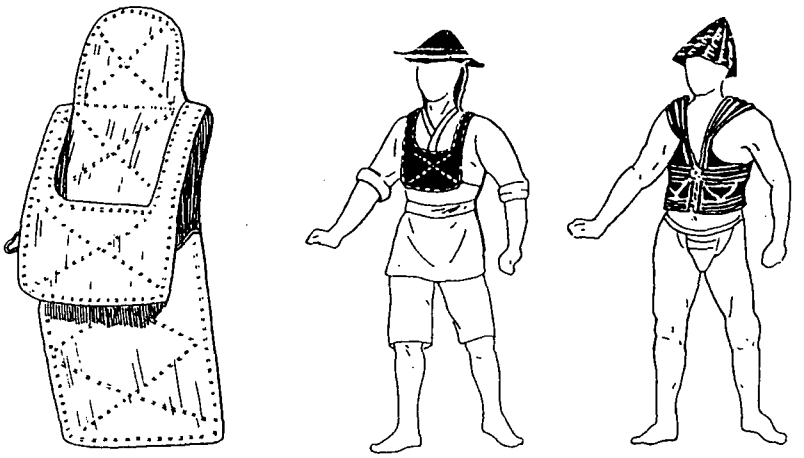

僳僳族 皮甲　　耶美人 皮甲

〈그림 1-5〉 중국 雲南省 僳僳族의 皮甲 및 原始 甲冑 着裝圖(『中國古代兵器圖集』)

2. 先史時代의 服飾과 軍服飾

가. 先史時代의 服飾

복식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의한 생활양식의 표현으로서 특히 고대사회일수록 기후, 풍토, 민족성, 생활양식 등에 맞는 의복형태를 가진다.

한민족은 역사가 있기 전 선사시대부터 원시적인 복식이 있었다고 본다. 선사시대의 복식은 아주 미개한 것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초목의 껍질과 짐승의 모피나 우모(羽毛)로 몸을 가릴 정도일 것이고, 그외에 몸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유적에서는 복식자료가 없고 신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의 유적지에서 간혹 복식자료가 출토되어 복식관계 일부를 짐작하게 한다.

기원전 6000여 년 전부터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고 신석기 말기에 이르러서는 정착 농경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당시인들의 복식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청동시대, 철기시대에 이르는 동안 이들 유적지에서 간혹 출토되고 있어 당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복식자료

의 중요한 발견은 재봉용 바늘(石針과 骨針)과 방직용 방추차(紡錘車), 장신구의 식옥류(飾玉類), 귀걸이, 팔찌 등이 출토된 일이다.[20]

웅기(雄基) 송평동 유적(松坪洞遺蹟)에서 골침이 출토되어 이미 석기시대에 재봉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김해(金海) 회현리 패총(會峴里貝塚)에서 골침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김해에서 출토된 골침은 세형침(細形針)과 대형침(大形針)으로 구분되고 이 밖에 대형추침(大形錘針)이 있다. 세형침은 섬유를 직조한 직포물을 가는 실에 꿰매는 바늘로 사용하였을 것이고, 대형침은 수피를 굵은 실로 꿰매는 바늘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대형추침은 더욱 두텁고 단단한 수피류를 꿰매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철기시대에 이르면서 그 용도에 따라 침형이 달라지고 섬유로 짠 직포물로 의복을 지어 입게 되었다.[21]

암사동 유적(岩寺洞遺蹟)을 비롯하여 김해의 회현리 패총에 이르는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등 여러 선사유적에서 각종 방추차가 출토되었다. 방추차는 돌로 만든 방추차, 골제(骨製)방추차, 흙으로 만든 방추차가 있는데, 아주 간이한 대틀〔織造機〕에 날〔經絲〕을 걸고 그 날끝에 방추차를 달고 씨〔緯〕를 가로로 하여 베를 짜 나가는 직조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2]

부족연맹시대의 복식양식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시대를 거쳐 철기시대에 이르는 동안 변천하며 발달하였다. 그러는 동안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저, 예, 삼한 등 부족연맹사회를 이루고 또한 성읍국가가 발달하여 복식도 그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선사시대의 복식제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여(夫餘)에는 흰색을 숭상하고 흰 옷감(白布)으로 소매가 큰 포의(袍衣)와 바지를 입었다."[23]

"또 대인(大人)은 여러 짐승(狐, 狸, 狖)의 백색 모피와 흑색 모피로 만든 구(裘)를 겹들여 입었다."[24]

"예(濊)에서는 여자는 잠방이〔縡衣〕 모양의 바지를 입고, 남녀가 모두 곡령의(曲領衣 :

---

20) 李殷昌, 1978『韓國服飾의 歷史』世宗大王記念事業會, p. 24.
21) 古蹟調査報告 第1册, 1923「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pp. 17~18.
22) 李殷昌, 앞의 책, pp. 25~26.
23)『三國志』夫餘傳,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袴"
24)『三國志』夫餘傳, "白布大袂袍袴 履革踏 …… 大人加狐狸狖 白黑貂之裘"

V字의 아랫모가 바짝 올라간 깃)를 입었고 은화(銀花)로 장식하였다."[25]

"마한에서는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고 의복에 구슬로 장식하고 또 구슬로 만든 목걸이와 귀걸이를 달았으며 머리를 내놓고 소포(素布)로 만든 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26]

"변진인(弁辰人)은 깨끗한 옷을 즐겨 입었고 청색 옷을 금하였다."[27]

"동옥저(東沃沮)의 복식은 고구려와 같고 변진(弁辰)은 진한(辰韓)과 같다."

"고구려는 언어를 비롯한 모든 일이 부여와 같은데, 그 성격과 기질과 의복은 다른 것이 있다."

"예(濊)는 언어법속이 대체로 고구려와 같고 의복에 다른 점이 있다."

『수서(隋書)』에 "신라 사람은 의복의 빛깔을 흰색을 숭상하였다."

『송사(宋史)』에는 고려사(高麗使) 곽원(郭元)이 말하기를 "본국의 사녀(士女)가 백의를 숭상한다고 하였다."

옷감에 대하여는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중국의 발달된 직조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의복제도를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예에서는 삼베를 심고 누에를 칠 줄 알고, 마포(麻布)나 면포(綿布)를 만들었다."[28]

"마한에서는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칠 줄 알고 면포를 짤 줄 알았다."[29]

"진한에서도 뽕나무 심기와 누에치기를 알았고 겸포(縑布 : 絞織物)를 생산하였다."[30]

"변진(弁辰)에서도 잠상법(蠶桑法)과 겸포 직조법을 알았다."[31]

"마한 사람들은 금은(金銀)과 금(錦), 수(繡 : 수놓은 비단), 계(罽 : 면직물류) 등을

---

25) 『海東繹史』 卷20 禮志3, "濊絡中女子無袴 以帛爲脛空用絮補 名曰縛衣 狀如襜褕"

26) 『三國志』 韓傳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其人性強勇 魁頭露紒如炅兵 衣布袍 足履革蹻蹋"

27) 『三國志』 弁辰傳, "其人形皆大 衣服潔靑"

28) 『後漢書』 濊條, "知種麻養蠶 作綿布絲"
『三國志』 濊傳, "有麻布蠶桑作"

29) 『後漢書』 馬韓條, "馬韓人 知田蠶作綿布"
『三國志』 韓傳, "其民土着種植 知蠶桑作綿布"
『魏略』 馬韓傳, "其人土着種稻 知作綿布"

30) 『後漢書』 辰韓條, "土地肥美 宜五穀知蠶桑 作縑布"

31) 『三國志』 弁辰傳,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32] 하니 이는 금은과 금수(錦繡)와 같은 비단과 계 등이 많이 생산되어 그리 귀중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부여 사람은 외국에 나갈 때에 회(繪 : 그림을 그려 넣은 비단), 수(繡), 금(錦 : 무늬 넣은 비단) 등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계를 즐겨 입었다."[33] 하니 평상시에는 면 마포, 면포, 견직물 등을 입었고, 외출복으로 회, 금, 수, 계 등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34]

위의 기록으로 한민족은 백의를 숭상하고 또 즐겨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풍속은 서로 같고 의복이 약간 닮았다는 것으로 당시 제부족연맹사회의 의복 모습은 대체로 같고 약간씩만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즉 기본 형태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유고제(襦袴制)였다. 부여에서는 바지에 대메포를 입었고, 예에서는 바지에 곡령(曲領)을 입었고, 마한에서는 포(袍)를 입었다.

또한 옷감은 매우 발달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마포, 면포, 겸포, 회, 금, 수, 계 등이었다.

선사시대에 이미 갑주(甲冑)를 착용한 무사가 궁시(弓矢)를 주요 무기로 사용하였고, 백병전(白兵戰)에는 단검(短劍)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무장은 원류를 북방유목민족의 문화[35]에 두어야 하며 또한 스키타이무장 기본 형태에 그 계통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방계통의 무장 모습의 기본 바탕에 중국계통의 무장 방법을 수입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개혁되어 삼국시대의 무장 모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36]

---

32) 『後漢書』 韓傳, "不貴金寶錦罽"
『三國志』 韓傳, "不以金銀綿繡爲珍"
33) 『三國志』 夫餘傳, "出國則尙繪繡錦罽"
34) 李殷昌, 앞의 책, pp. 28~34.
35) 앞의 책, pp. 24~25.
36) 앞의 책, pp. 25~26.

나. 先史時代의 軍服飾 甲冑類

(1) 石器時代

우리나라의 석기시대는 크게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나누어진다. 이 시대구분은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打製石器), 신석기시대의 마제석기(磨製石器) 및 토기(土器)라는 도구의 차이도 있으나 인종(人種)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가) 舊石器時代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유인원(類人猿)으로부터 진화되어 도구를 제작·사용하기 시작한 단계부터 농경이나 목축 또는 토기의 제작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문화단계이다.

한반도에 인류가 최초로 등장한 연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출토 유물로 보아 전기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가며, 지금부터 약 1만년전 후빙기(後氷期)가 시작할 무렵까지 한반도에 구석기인(舊石器人)이 살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함경북도 종성(鐘城)의 동관진(潼關鎭) 유적을 비롯하여 함경북도 웅기(雄基)의 굴포리(屈浦里) 유적, 평안남도 중화(中和)의 상원읍(祥原邑) 검은모루〔黑隅里〕 유적, 경기도 연천(漣川)의 전곡리(全谷里) 유적, 충청북도 제원(堤原)의 포전리(浦田里) 점말동굴 유적, 충청북도 청원(淸原)의 두루봉 유적, 충청남도 공주(公州)의 석장리(石壯里) 유적, 제주(濟州)의 빌레못동굴 유적 등 북으로부터 남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다.

이들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나 유물로 보아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은 동굴에 살거나 평지에 집을 짓고 살았다. 상원읍의 검은모루 유적이나 제천의 점말동굴 유적, 제주의 빌레못동굴 유적 등이 대표적인 동굴생활의 예이며, 공주 석장리의 집자리가 평지에 집을 지은 예이다.

이들이 사용한 도구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握斧 : hand axe), 찍개(打截器 : chopper), 찌르개(尖頭器 : point), 요리도구인 긁개(搔削器 : side-scraper), 밀개(end-

scraper), 공구인 새기개(刻刀 : graver), 자르개(cleaver) 등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타제석기를 만들어 썼다. 이러한 도구들은 사냥이나 채집생활을 위한 도구이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포유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협동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가족 이상의 공동체적 생활, 즉 군공동체(群共同體)에 의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동생활에 의한 수렵과 채집을 위주로 한 자연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구석기시대 후기에는 사냥이나 신변의 안위를 위해서 주술을 행한 흔적도 있다.

구석기인의 사회조직은 매우 간단하였다. 생산력이 매우 낮아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이루고 집단으로 떠돌아다니는 무리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무리사회의 기본은 가족이고, 이러한 가족이 모여 군(群)을 이루었으며, 그 지도자는 연장자나 인지(人智)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가진 지배자는 아니었다. 또한 전쟁 또는 집단간의 싸움을 나타내는 유물이나 무기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냥을 위한 창, 불, 돌, 몽둥이 등의 사용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것들은 어느 때인가 인간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으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사냥감을 사이에 둔 집단간의 불화와 싸움은 폭력과 살인을 초래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비롯 그것이 전쟁 또는 전쟁과 비슷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구석기시대 말경 전쟁의 양식이 나타났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돌발적인 집단간의 싸움 외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싸움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구(武具), 즉 군복식은 전혀 개발되지 않은 시기이다. 단지 추위나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간단한 의복은 만들어졌을 것이다.

나) 新石器時代

기나긴 빙하기(氷河期 : 洪績世)가 끝나고 후빙기(後氷期 : 沖積世)가 되면 현재와 같은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고 해면(海面)도 점차 상승하여 한반도로 새로운 사람이 이동해 옴으로써 새로운 신석기시대가 도래하였다. 신석기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타제석기(打製石器)는 물론 사용했으며 숫돌에다 돌을 갈아서 쓰기에 보다 편리하도록 마제석기(磨製石器)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진흙으로 빚어 구워서 토기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도구의 변화는 인구증가와 사회발전을 가져왔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함경북도 웅기(雄基) 굴포리(屈浦里)의 서포항(西浦項) 유

적, 평안남도 대동(大同)의 청호리(淸湖里) 유적, 서울 강동(江東)의 암사동(岩寺洞) 유적, 경기도 광주(廣州)의 미사리(渼沙里) 유적, 황해도 봉산(鳳山)의 지탑리(智塔里) 유적, 경기도 부천(富川)의 시도(矢島) 패총 등, 부산 영도(影島)의 동삼동(東三洞) 패총, 경상남도 통영(統營)의 상노대도(上老大島) 패총 등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있다. 두만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등과 같은 큰 강의 하류이거나 그와 가까운 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즉 어로(漁撈)가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토기문화의 차이에 의해 크게는 전기, 중기, 후기의 세 개의 문화단계로 구분되어지며 전기, 중기에는 어로가 중심인 채집생활이었으나, 후기에는 초보적인 농경이 시작된다.

구석기시대의 생활은 사냥 또는 채집을 위주로 한 이동생활이었으나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는 초기에는 구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로를 중심으로 한 채집생활을 계속하였으나, 후기에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신석기인이 사용한 석기로는 나무를 가공하거나 땅을 팔 때 사용한 돌도끼 외 조그마한 자갈돌로 만든 석추(石錘)가 많은데, 이것은 어망(漁網)에 사용된 것이다. 실제 어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물무늬가 있는 토기편이 동삼동 패총에서 발견되어 어망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석추는 뼈나 돌로 만든 낚시바늘 및 작살과 함께 신석기인들의 채집생활 중 어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석추와 함께 많이 발견되는 것이 화살촉이다. 화살촉은 인명 살상용이 아니라 사냥용이었다. 패총에서 발견되는 사슴, 노루, 멧돼지 등의 뼈는 사냥이 매우 성행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식생활을 어로, 사냥, 채집 등 넓은 의미의 채집경제에 의존했던 신석기인들은 그 후기에 이르러서는 농경을 시작하게 되었다. 후기의 유적에서 땅을 일구는 데 사용한 돌로 만든 괭이〔石鍬〕와 따비용 보습〔石犁〕, 추수할 때 쓰는 반달 모양의 돌칼〔半月形石刀〕과 돌이나 동물뼈로 만든 낫〔石鎌, 牙鎌〕 등이 출토되므로 농경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경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농경, 즉 생산경제의 변화는 채집을 위한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로, 각지에서 발견되는 신석기시대의 주거지(住居址)는 정착생활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거지는 구석기시대와 같이 한두 개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암사동 유적과 같이 한 유적에

서 몇 개의 주거지가 함께 발견되어 신석기인들이 취락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가 모여 있는 것은 가족단위보다 큰 집단사회, 즉 부족사회가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집단들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부족집단과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 1-6〉 벽화의 행군장면
(『전쟁의 기원』)



〈그림 1-7〉 벽화의 전투장면
(『전쟁의 기원』)

우리나라의 고고학적 자료로서는 집단간의 싸움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으나, 스페인의 르방에 있는 신석기시대의 동굴벽화에는 병사들이 창과 활을 들고 행군하는 모습이 있다(그림 1-6).[37] 머리의 장식이 다른 앞쪽의 지휘자(指揮者)를 따라 종대(縱隊)로 행군(行軍)하는 모습이다. 또한 스페인의 동굴벽화에는 4명의 왼쪽 병사와 3명의 오른쪽 병사가 활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1-7).[38] 이러한 것은 신석기시대에 집단간의 전쟁과 조직화된 군대의 원초적인 형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일강변에 있는 고대 누비아의 묘지에서는 출토된 인골(人骨)의 약 40% 정도가 머리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남녀 시체 4구에서는 화살촉〔石鏃〕이 실제로 뼈에 박혀 있었다.

이러한 증거는 정착생활을 하면서 집단간에 싸움이 많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37) 아더훼일(이춘근 옮김), 1990 『전쟁의 기원』 도서출판 인간사랑, p. 33.
38) 위의 책, p. 35.

그러나 이러한 그림에 갑옷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이 표현되지 않아 갑옷의 출현은 애매모호하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의 유적에서는 뼈바늘〔骨針〕이 발견되므로 짐승의 가죽을 돌칼이나 도끼로 가공하여 뼈바늘로 꿰매어서 옷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연섬유나 삼 등의 재료를 써서 방추차(紡錘車)를 이용하여 옷감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2) 靑銅器時代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는 만주와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시작되었고,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에 들어와서야 청동기(靑銅器)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과 다뉴조문경(多紐組文鏡) 및 무문토기(無文土器)로 특징지어지는 청동기문화는 중국의 동북지방과 우리나라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비파형동검이 발달하여 한국식으로 변화한 것이 세형동검(細形銅劍)이다. 세형동검은 다뉴세문경과 함께 출토된다. 세형동검 문화는 후기가 되면 중국의 영향으로 명도전(明刀錢), 철제이기(鐵製利器) 등과 출토되어 철기시대(鐵器時代)로 접어들게 된다.

청동기인들은 주로 야산이나 구릉지대에 생활하면서 평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청동기시대의 주거형태는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수혈주거(竪穴住居 : 움집)이었는데, 신석기시대에 비해 깊이가 얕아지고 평면형태도 둥근 모양이 아니라 장방형(長方形)이었다. 또한 많은 수가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의 주거지역 주위에는 깊은 도랑〔環濠〕을 파고 울타리를 만들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석기시대 후기에 들어온 농경은 청동기시대가 되면 주산업으로 정착된다. 청동기시대에 농업이 번창하였음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조, 수수, 벼 등의 곡식과 농구(農具)인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 유구석부(有溝石斧) 등으로서 입증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토기류(무문토기〈無文土器〉)는 농경의 발달로 인한 곡물저장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 중에는 청동검(靑銅劍)이나 청동촉(靑銅鏃) 등의 무기와 청동부(靑銅斧) 등의 공구(工具)가 청동제로서 출토되지만 대부분의 농구는 석제(石

製)와 목제(木製)였다. 청동기의 효능은 청동제 공구(工具)로서 나무를 다듬어 정교한 농구를 만들어 농업의 발달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당시 귀중하고 예리한 무기(武器)로서의 효능이 절대적이었다. 청동기를 입수하지 못한 부족이나 집단은 석검(石劍), 석촉(石鏃) 등의 석제 무기를 사용했다. 청동기를 입수한 사람이나 집단은 우수한 무기로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집단을 정복해 나갔다. 즉 권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권력의 발생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가 지석묘(支石墓)이다. 거대한 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없이는 지석묘의 축조가 어려운 것이다. 지석묘의 주인공인 군장(君長)은 경제적인 부(富)와 청동제 무기를 이용하여 이웃 부족을 예속시켰으며, 커다란 권력을 지닌 정치적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또한 그 내부에는 간단한 정치기구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는 아직 구체적인 군사조직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

당시의 사회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중국의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의 초기 기록이다. 중국의 기록은 이미 철기시대에 접어든 이후의 상황을 기록했지만 내용들의 일부가 청동기시대의 군장사회를 나타내는 기록이 많다.

동예의 경우 산천(山川)을 중시하여 각기



〈그림 1-8〉 중국 商代의 青銅冑
(『中國古代兵器圖集』)



〈그림 1-9〉 중국전국시대의 皮甲
(『中國古代兵器圖集』)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고, 부여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면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猪加), 구가(狗加) 등 제가(諸加)가 스스로 독립하여 싸웠다 하고, 옥저의 경우 대군왕(大君王)이 없고 읍락(邑落)마다 장수(長帥)가 있어 스스로 삼노(三老)라 하고 각각 자기 읍락을 다스렸다고 한 것은 청동기시대의 군장사회의 전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읍락마다 경계가 있고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과 주거지역의 주위에 방어시설을 마련한 것은 이 시기부터 각 집단의 영역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며 영역의 확보 및 권력의 과시를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검〔石劍, 銅劍〕, 촉〔石鏃, 銅鏃〕, 창〔石槍〕 등의 공격용 무기는 청동기시대의 각 유적에서 출토되나 방어용 무기, 즉 갑주류의 출토례는 거의 없다. 그것은 갑주류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기질제 갑주류, 즉 목제(木製) 갑주, 피제(皮製) 갑주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미 청동기시대의 중국의 경우 상대(商代)에 청동제주(青銅製冑 : 그림 1-8)[39]가 있고, 철기시대인 전국시대에는 정교한 피갑(皮甲 : 그림 1-9)[40]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에도 목제나 피제의 갑주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가) 무산 虎谷 유적의 骨製 札片[4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갑주자료로 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두만강 유역의 호곡(虎谷) 유적의 골제(骨製) 찰편(札片)이다.

붉은 간 그릇이 나타나는 제2기의 주거지(住居址) 중 제40호 주거지에서 2개의 골제 소찰(小札 : 그림 1-10)이 출토되었다. 동물의 뼈(사슴의 가슴뼈라 생각됨)를 얇게 갈아서 장방형(長方形)으로 만든 것으로 길이 11.7cm, 너비 2.2~3cm, 두께 3mm이다. 가장자리에는 대칭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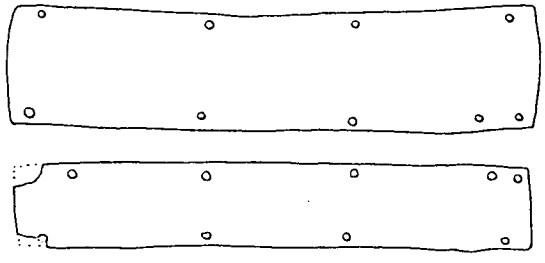

〈그림 1-10〉 무산 虎谷 유적의 骨製 札片
(『무산 범의 구석 유적 발굴보고』)

39) 成東·鐘少异, 1990, 앞의 책, p. 39.
40) 成東·鐘少异, 1990, 앞의 책, p. 96.
41) 황기덕, 1975 「무산 범의 구석 유적 발굴보고」『고고민속논문집』6.

도록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다. 구멍에 사용으로 인해 마연(磨硏)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철기시대의 소찰과 같이 소찰끼리 결합한 것이 아니라 가죽이나 베 등의 유기질제(有機質製) 갑옷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肩甲形銅器(그림 1-11)[42]

경주지방에서 출토되었다고 전(傳)하는 것으로 일본인 고꾸라(小倉武之助)에 의해 수집되어 현재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길이 23.8cm, 너비 17.8cm의 크기로 표면이 불룩하게 튀어나왔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삼각형(三角形)·점선(點線)·단선(單線) 등이 음각(陰刻)된 문양대(文樣帶)가 차례로 배치되어 있으며, 횡방향(橫方向)으로도 점선과 사선(斜線)으로 된 문양대가 있어 표면을 양분하고 있다. 이 문양대는 둥글게 처리된 한쪽 끝에 마치 끈으로 감아 놓은 것처럼 생긴 돌대(突帶)와 거의 직각으로 만나며 끝난다.

이 문양대에 의해 나누어진 아래쪽 면에는 뿔이 큰 사슴 두 마리와 V자형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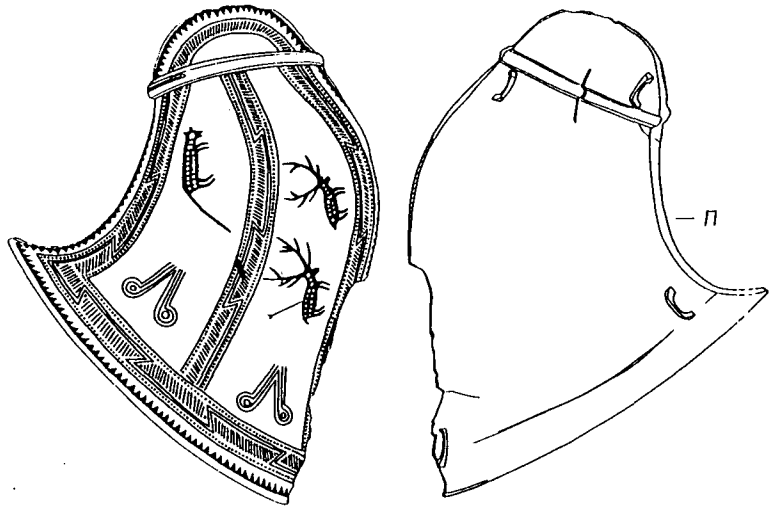

〈그림 1-11〉 傳 慶州 出土 肩甲形 靑銅器
(『韓國의 靑銅器文化』)

42) 東京國立博物館, 1982 『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錄』, 東京 ;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1992 『特別展 韓國의 靑銅器文化』

리무늬가 있으며, 이 사슴 중 한 마리는 등에 창 또는 화살을 맞은 모습이다. 위쪽 부분에도 같은 형태의 고사리무늬와 호랑이(표범?) 한 마리가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뒷면은 우묵하게 들어갔으며 윤곽이 둥근쪽의 돌대 상하에 각 1개씩, 삼각형으로 돌출한 양쪽 끝 가까이에 1개씩 모두 4개의 고리가 붙어 있다.

안쪽에는 네 모퉁이에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견갑 또는 무산 호곡의 골제 소찰과 같이 유기질제 갑주에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鐵器時代

우리나라에서 철기가 사용된 것은 기원전 4세기경이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출현한 철기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이 철기문화는 압록강 중류와 청천강 상류를 거쳐 대동강 유역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철기문화는 곧 토착문화로 수용되었으며 기원전 2세기경에는 남부지방으로 전해진다. 철기문화가 수입된 후 청동기문화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공존하게 된다.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철기의 사용은 본격화한다.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검(劍), 모(矛), 촉(鏃) 등의 무기뿐 아니라 겸(鎌 : 낫), 초(鍬 : 괭이), 리(犁 : 보습) 등의 농구도 철기로 변한다. 청동기시대에 무기나 장신구만 청동으로 제작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종래의 청동무기보다 예리한 철제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과감한 정복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고, 또한 철제 농구의 사용으로 생산력이 보다 증대되어 지배자의 부의 축적이 확대되었다.

철기의 사용은 각지에서 국가출현을 가져오게 하였다. 각지의 군장사회는 내부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출현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복사업의 전개에 따라 영토가 확대되어 국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라는 정치적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즉 강력한 중심세력이 이웃의 다른 군장사회를 정복·종속시켜 초기국가로 통합되어 가는데 그것은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의 유입이 빠른 북쪽지역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초기국가들이 중국의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이다.

가) 古朝鮮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국가적 형태를 갖춘 나라가 고조선이다. 청동기시대 말기인 기원전 5~4세기경에 군장사회에서 초기국가로 발전한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魏略)』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이전부터 왕(王)이라 칭하기 시작하였고 대부(大夫)라는 관명(官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체제를 갖춘 초기국가가 기원전 4세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2세기초 위만(衛滿)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하고 위씨조선(衛氏朝鮮)이 들어서게 된다. 위씨조선은 한무제(漢武帝)의 공격으로 기원전 108년 멸망하게 된다. 위씨조선은 한에 대립하면서 한의 대군(大軍)에 끈질진 대항을 하였는데, 이것은 위씨조선의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조선상(朝鮮相), 상(相), 장군(將軍), 대신(大臣) 등의 관직명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정치조직을 정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장군이란 관직은 군사전문직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군사조직도 있었고 군복식도 발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의 군복식의 실물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나) 夫 餘

부여라는 국가는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의 기록에 보이지만 아직 군장사회의 단계였다. 초기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기원전 2~1세기경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국왕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국왕의 장사(葬事)에는 옥갑(玉匣)을 쓰고, 많을 때는 100여 명을 순장(殉葬)할 정도로 왕권이 강력하였다. 또한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의 기록에는 기원후 49년 후한에 사신을 보내고 왕이라 칭하면서 중국과 교섭을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기원후 111년에는 보기(步騎) 7~8천을 보내 낙랑군(樂浪郡)을 공략할 정도로 국력이 강력하였다. 그러나 3세기 이후 선비족(鮮卑族)의 침략을 받아 국력이 쇠퇴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494년 고구려에 멸망되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에 '활·화살·칼·창을 병기로 사용하며 집집마다 자

체적으로 갑옷과 무기를 보유하였다'라는 기록[43]이 있어 갑주류, 즉 군복식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록이나 실물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그 형태는 알 수가 없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 3세기 이전의 기록이고 당시는 아직 철제(鐵製) 갑주류가 출토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포(布), 목(木), 피(皮) 등으로 만든 갑주류가 존재했을 것이다.

다) 高句麗

압록강 중류 동가강(佟佳江) 유역에 자리 잡은 고구려는 부여와 함께 일찍부터 선진사회를 이루었다. 기원전 1세기경에는 초기국가로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남하한 부여족의 한 갈래에서 건국되었다. 그들의 근거지인 압록강 중류 동가강 유역은 산악지대이므로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대륙으로부터 금속문화가 전래되는 중요한 통로였다. 따라서 그들은 농경으로서는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위 부족국가를 정복 약탈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아울러 기마민족으로 성장하여 강건하고도 상무적인 기질을 지니게 되었다.

고구려 지역은 일찍이 청동기문화를 수용하여 성장하고 있었지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민족의 계속적인 압력과 침공을 면치 못하였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대항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특히 한족(漢族)과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을 촉진했던 것이다.

고구려가 자리 잡은 지역은 한(漢)이 기원전 128년 예군(濊君) 남려(南閭)의 투항으로 창해군(滄海郡)이 설치된 바 있고, 기원전 107년에는 현도군(玄菟郡)을 설치한 지역이다. 그 약 30년 뒤인 기원전 75년에는 강성해진 고구려가 현도군을 요동의 동쪽으로 쫓아 버렸다. 이것은 토착사회의 저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때에 이미 고구려는 부족연맹체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가 기원전 1세기초에는 왕호(王號)를 정할 정도로 성장하여 사방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고구려를 형성한 여러 부족 가운데 부족연맹의 핵심세력을 이루었던 가장 유력한 부족은 소〈연〉노부(消〈涓〉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

43) 陳壽, 『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條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

部), 계루부(桂樓部) 등 5부족이었다. 이들 부족들의 연맹장으로서의 왕(王)은 초기에는 이 5부족의 족장에 의해 선출되었던 것 같다. 왕위는 처음 소(연)노부에서 나왔으나, 연맹세력이 확대되면서 계루부〔高氏〕로 넘어갔다. 왕권이 소노부에서 계루부로 넘어가는 시기는 대체로 고구려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태조왕(太祖王)부터였다.

그러나 왕권은 확립되지 못하였고, 왕위의 형제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맹장인 왕 아래에 최고 집정관인 대로(對盧) 또는 패자(沛者)가 있고, 그 밑에 사자(使者), 조의(早衣), 선인(仙人) 등의 관리가 있었으며, 부족장들도 왕과 마찬가지로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가신(家臣)을 거느리고 있어서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지배적인 부족세력은 일종의 전사단적(戰士團的)인 조직을 통하여 무술연마와 정복활동에만 종사하였고, 그들에게 복속된 하호(下戶)들이 생산노동을 전담하였다.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목축과 수렵에 힘썼으며, 주변 부족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그들로부터 식량을 공급받는 일종의 약탈경제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지배계층은 집집마다 부경(桴京)이라는 창고를 지어 약탈해 온 곡식이나 어염(魚鹽)을 저장하였다.

이러한 정복활동을 약탈경제를 중심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전사단적 조직에 군복식도 존재했을 것이다. 기원전 1세기~기원후 3세기까지의 군복식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록이나 실물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주변국가의 점령이나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 등으로 보아 강력한 군사조직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복식, 즉 갑주류의 존재는 인정된다. 다만 그것이 유기질제(有機質製)이므로 실물자료로서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라) 沃沮와 東濊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 지방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후진지역이었다. 철기시대에 접어들기는 하였으나 강력한 초기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한군현(漢郡縣)이나 고구려의 정치적 압박 및 경제적 수탈을 받아 성장하지 못하였다. 대군왕(大君王)이나 대군장(大君長)이 없고, 동예에서는 산천을 중시하여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였으며, 서로 침범하면 생구(生口 : 노비)와 우마(牛馬)로 변상케

하는 법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체계를 갖춘 군사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군복식의 발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마) 漢郡縣

기원전 108년 한반도 안에 낙랑(樂浪)·임둔(臨屯)·진번(眞番)의 세 군을 먼저 설치하고, 다시 기원전 108년 예맥(濊貊)의 땅에 현도군(玄菟郡)을 설치함으로써 한사군(漢四郡)이 성립되었다. 한의 군현은 설치된 지 20여 년 만에 진번과 임둔이 폐지되고, 그 관할하에 있던 현은 각각 낙랑, 현도 양군에 예속되었다. 이것은 한의 정치적·경제적 억압에 대한 토착민의 저항이 커짐에 따른 조치였다.

또 기원전 75년에는 고구려 부족세력의 저항에 밀려 현도군이 그 치소(治所)를 만주 흥경(興京) 방면으로 옮기게 되었다. 아울러 이전에 임둔군에 속해 있던 지역은 낙랑군의 관할이 되었다. 이리하여 한사군은 낙랑군을 제외하고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낙랑군은 확대된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동부도위(東部都衛)와 남부도위(南部都尉)를 두었다.

한의 군현 중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것은 낙랑군이었다. 따라서 낙랑의 군치(郡治)라고 생각되는 토성리(土城里 : 평양의 서남쪽 대안〈對岸〉)와 대방군의 군치라고 보는 당토성(황해도 봉산)에 무수한 고분군이 있는데, 이는 이곳에 거주하던 한인(漢人)들의 분묘이다. 이들 분묘에서는 동기(銅器), 금은기(金銀器), 칠기(漆器), 옥기(玉器) 등 많은 부장품이 나와 그들의 호사스러운 생활과 토착인에 대한 수탈을 짐작하게 한다. 그 대표적인 유물은 박산로(博山爐), 채화칠협(彩畵漆篋), 순금제대구(純金製帶鉤), 동경(銅鏡) 등이다. 이것은 한의 문화유산으로 당시 한사군에 한의 문화가 직접적으로 들어왔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물과 함께 한의 군사제도뿐 아니라 갑주자료도 들어오게 된 것이다.

1) 夫祖濊君墓의 小札[44]

부조예군묘는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부락에 있는 낙랑(樂浪)의 무덤으로서,

---

44) 리순진, 1964 「〈부조예군〉무덤에 대하여」『고고민속』 1964년 4호 ; 리순진, 1974 「부조예군무덤 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 제4집.

부락에서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발굴조사한 것이다. 곽(槨) 안에 하나의 관(棺)이 있는 목곽묘(木槨墓)로서 세형동검(細形銅劍), 동모(銅矛) 등의 무기류 및 마구류, 수레 부속구와 함께 '부조예군(夫祖濊君)'이라 새겨진 도장이 출토되어 부조예군묘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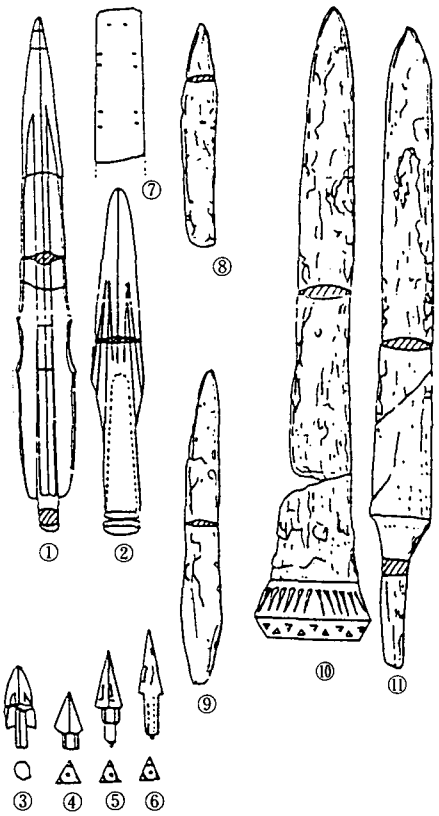

〈그림 1-12〉 夫祖濊君墓 출토유물
① 세형동검 ② 동모
③~⑥ 동촉 ⑦ 철제 소찰
⑧ 철비수 ⑨ 철검

철제 소찰(그림 1-12-⑦)은 수십 개가 나왔다. 대부분 분리되어 출토되었으나 어떤 것은 연결된 상태로 출토된 것도 있다. 전체적으로 장방형(長方形)을 띠며, 가장자리에 결합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다. 소찰은 길이 11.2cm, 너비 3.6cm, 두께 0.2cm이다.

2) 石巖里 129號墳의 皮甲[45]

석암리 129호분은 1942년 일본 연구자에 의해 발굴조사된 낙랑의 목곽묘(木槨墓)이다. 발굴 당시 이미 도굴되긴 하였으나 목곽(木槨)이 있고, 그 내부의 동측과 서측에 각각 목관(木棺)이 있었으며, 목관의 주위에는 부장품(副葬品)이 배열되어 있었다. 부장품의 상태로 보아 동관(東棺)은 여성, 서관(西棺)은 남성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관(西棺)의 남쪽에서 눌려진 채 일령분(一領分)의 찰갑(札甲)이 출토되었다(그림 1-13). 소찰(小札)은 결합된 원상태(原狀態)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었으나 소찰이 가죽 위에 흑칠(黑漆)을 한 것이므로 전체의 복원은 어려웠다. 소찰은 형태에 의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그림 1-14).

제1종은 길이 7.4cm, 너비 3.2cm의 장방형(長方形)으로 종(縱)의 중심선상에 상·

45) 樋本杜人·中村春壽, 1975 『樂浪漢墓』 第2册 石巖里第219號墓發掘調查報告, 奈良

중·하와 양측의 상하에 각각 2공 1조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제2종은 길이 5.4cm, 너비 3.6cm로 말각장방형(抹角長方形)을 띠며, 상변에는 장방형의 구멍을 횡으로 2개 뚫고 양측과 하변 중앙에 2공 1조의 구멍을 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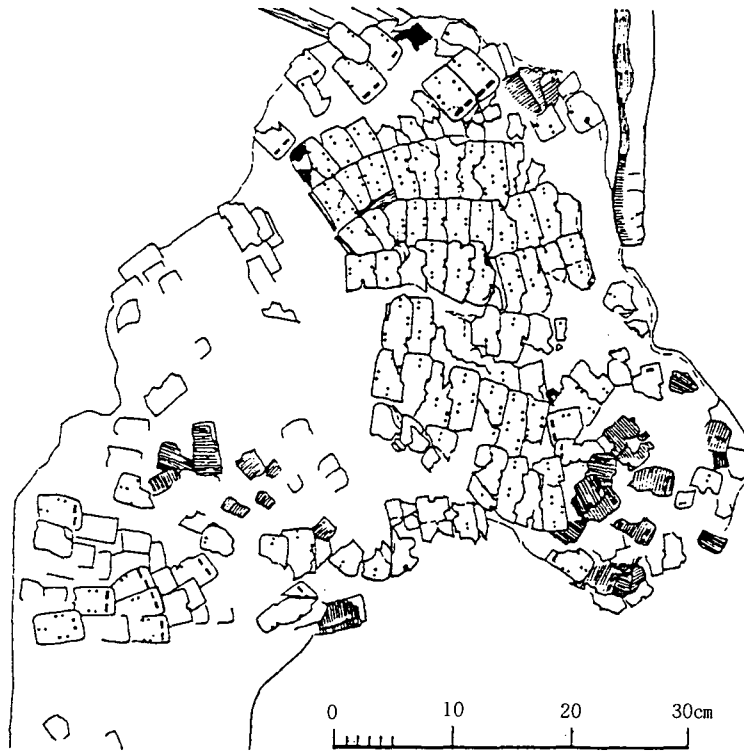

〈그림 1-13〉 석암리 129호분 皮甲 출토상태(『樂浪漢墓』)

제1종의 소찰은 결합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어 발굴시에는 길이 약 50cm 정도에 7단으로 종(縱)으로 수결(垂結)되어 있었고 횡폭 약 25cm 정도에 12매의 소찰이 횡으로 혁결되어 있었다. 아마 동(胴)을 보호하는 신갑(身甲)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최하단의 1단에는 제2종의 소찰이 있다. 대부분의 제2종 소찰은 동소찰의 상부 양측에 집중되어 있어 배열상태는 명확하지 않으나 견갑(肩甲) 또는 상박갑(上膊甲)의 가능성이 있다.

제1종 소찰에는 소찰을 결합한 가죽끈이 남아 있는 것이 있었는데, 중심의 2공을 중심으로 2개의 능형(菱形)을 이루고 있었다. 가야나 신라에서 출토되는 소찰의 결합방법인 혁결법(革結法) 및 수결법(垂結法)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며, 중국

한대 이전의 소찰결합방법과 동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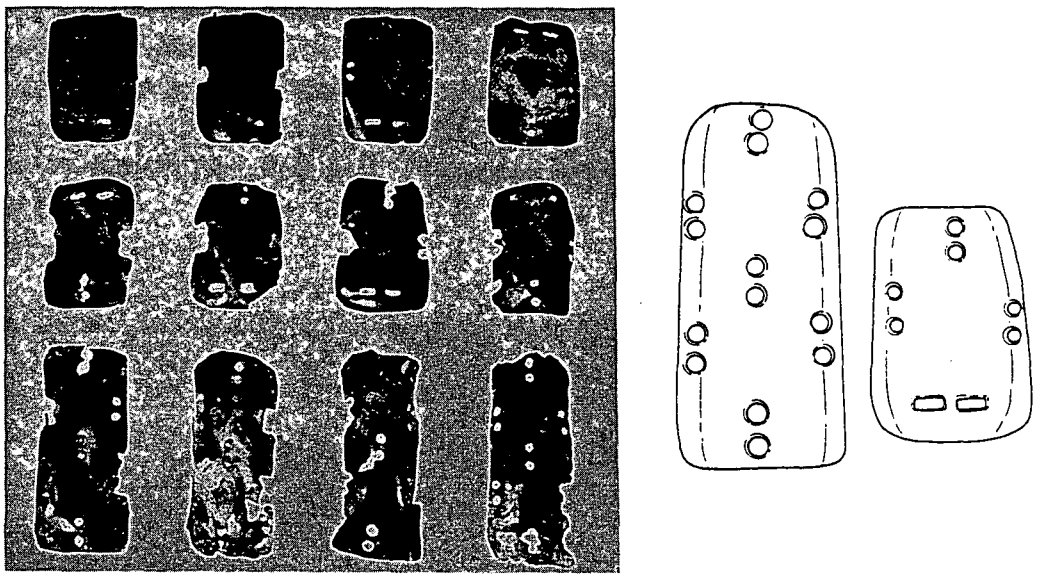

〈그림 1-14〉 석암리 129호분 출토 皮製 小札(『樂浪漢墓』)

바) 三 韓

남부지방에 위치한 삼한사회는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등의 연맹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원전 2세기경 북쪽으로부터 철기가 전래된 이후 급속도로 발전을 한다. 마한, 진한, 변한은 각각 백제국(伯濟國), 사로국(斯盧國), 구야국(狗耶國)이 중심이 되어 성장을 하며 4세기 이후 고대국가인 백제(百濟), 신라(新羅), 가야(加耶)로 성장한다.

특히 진한과 변한은 철생산국(鐵生産國)으로 부각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조에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韓), 예(濊), 왜인(倭人)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두 군(낙랑군, 대방군)에도 공급되었다(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諸市買皆用鐵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라는 기사(記事)가 있어 철생산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3세기대의 분묘에서 다량의 철제품이 출토됨으로써 그것이 입증된다. 철제품 중에는 모(矛), 검(劍), 도(刀), 촉(鏃) 등의 무기류로 다량 출토된다. 그러나 군복식류, 즉 갑주류의 출토례는 전무한 상태이다.

1) 부산 노포동 31호분의 갑주[46]

단 3세기 말경인 부산 노포동(老圃洞) 31호분에서 갑주류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개대부직구호(有蓋臺附直口壺), 고배(高杯), 노형토기(爐形土器)의 토기류와 환두대도(環頭大刀), 철모(鐵鉾), 철촉(鐵鏃) 등의 무기류, 철부(鐵斧), 철도자(鐵刀子), 철겸(鐵鎌), 철사(鐵鉈) 등의 농공구류와 함께 70×70cm의 범위에서 여러 겹의 칠(漆)이 출토되었다. 유기질(나무 또는 가죽)이 완전히 부식되고 그 위에 발려 있던 칠만 남아 있는 것이다(그림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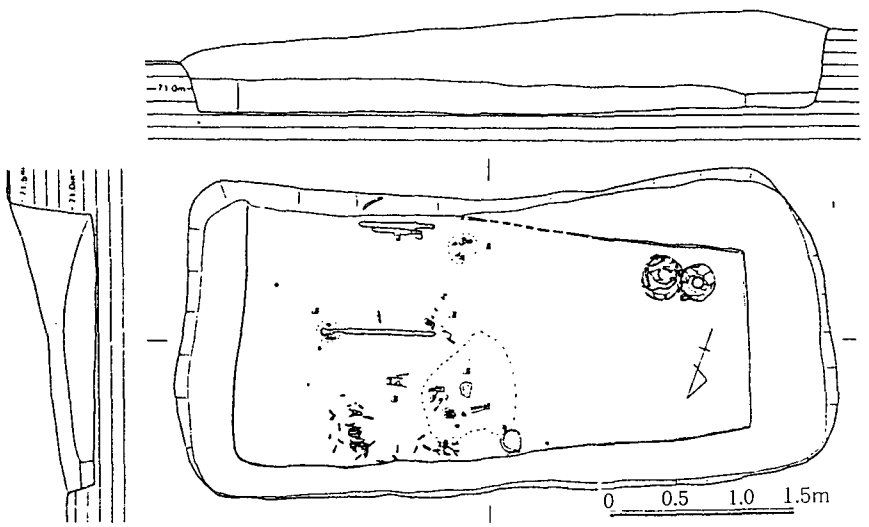

〈그림 1-15〉 부산 노포동 31호분 실측도(『釜山老圃洞遺蹟』)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유기질제의 갑옷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이미 고구려나 부여에서는 강력한 군사조직이 존재하였으나 군복식의 실물자료가 전혀 출토되지 않으므로 유지질제의 군복식류의 존재를 추정할 수가 있다. 그 실물자료가 노포동 31호분의 칠제품(漆製品)이라 추정된다. 중국에는 이 시기 이전부터 피갑의 존재가 알려져 왔으며, 일본에서는 노포동 유적과 비슷한 시기의 목제갑(木製甲)이 출토된 예가 있다.

46) 釜山大學校博物館, 1988 『釜山老圃洞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12輯, pp. 9~22.

이외 방패로 추정되는 것이 환두대도(環頭大刀)의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문양은 상태가 불량하여 일부만 복원되었는데 모두 음각(陰刻)으로 표현되었다. 현재 원문과 삼각형문의 형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목제 방패에 칠을 한 것으로 나무는 부식되어 없어지고 칠막(漆膜)만 일부 남아 있는 것이다(그림 1-16).



〈그림 1-16〉 부산 노포동 31호분 黑漆 방패(『釜山老圃洞遺蹟』)

第2節 三國時代의 軍服飾

1. 三國時代의 服飾

한국복식은 한국민족의 기원과 한국인이 둘러싸여 있는 자연환경과 영위하고 있는 생활에 맞게 한국고유의 양상을 지니면서 시원(始源)하여 이를 가다듬어 한국복식의 고유한 원시양식을 형성하였다.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서 중국복식인 육조복식(六朝服飾)과 당제복식(唐制服飾)을 강하게 받아 조정 또는 관아에서 관복으로 착용하였고, 왕실, 귀족, 관인의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그리하여 외래복식과

고유복식과의 이중구조가 성립되어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시대로 그대로 계속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생활양식의 공통성을 보이고 있어 의생활인 복식에 있어서도 삼국이 다 같이 대체로 동일양식을 갖추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고구려 고분벽화나 고신라의 토우(土偶)와 암면각화(岩面刻畫) 등에서 보이는 의복의 기본 양식은 남녀의 옷이 다 같이 상의와 하의로 구별되고 있다.

대체로 남녀 모두가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유고제이었는데, 이는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착수지체형(窄袖肢體形)의 존속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 유상제(襦裳制)로 옮아가게 되어 마침내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 전형적인 한국의복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유고제와 유상제에 겉에 입는 표의(表衣)인 포(袍)를 남녀가 모두 입게 되었으며, 여자는 군(裙 : 주름이 아랫자락까지 잡힌 치마)을 입는 등 새로운 의복제도가 채택되어 변화하여 갔다.

고대 한국복식을 알 수 있는 유물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이다.

고대 한국복식의 형태는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고구려 복식문화는 심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는 외래적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 북방계통의 스키타이적 요소에 만주계통의 요소, 중국계의 요소, 서역-인도적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47]

즉, 수렵과 전투를 하는 기마인물에서는 스키타이계의 직령의(直領衣)와 고(袴)를 착용하고 조우(鳥羽)나 상모(象毛)를 장식한 관(冠)이나 투구를 쓰고 있고, 상류층의 왕이나 묘주(墓主)는 중국계의 단령포(團領袍)와 책(幘)과 같은 관모를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능적인 의복으로 스키타이계 복식을 착용하고 의례적인 의복으로 중국의 의복을 수용하고 있는 복장이다.

삼국시대에 착용한 관모와 의복 중 군복식에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

47) 앞의 책 참조.

가. 冠 帽

(1) 幘

관모의 원시형태이면서 기본형태는 건(巾)이었다. 건은 머리가 흘러 내려오는 것을 감싸는 것으로 수건을 질끈 동이고 일하는 모습이다.

고문헌에 나타난 상대(上代) 최초의 관모는 책과 절풍(折風)이었다. 책은 대가주부(大加主簿), 즉 귀인, 대관계급(大官階級)의 전용관물(專用冠物)로 서민계급에서는 전혀 착용하지 못하였다.[48]

고문헌을 보면 서인(庶人)과 관인(官人)의 관모가 다르고, 관인계급에 있어서도 귀인(貴人), 대관인급(大官人級)과 일반 관인계급(一般官人階級)의 관모가 다르다.

〈표 1-1〉 계급에 따른 고구려의 冠帽[49]

史書/段階	王	貴人·大官人	官人	庶人
魏志		無後幘	折風巾	
後漢書		無後幘	折風巾	
南齊書		折風		幘
魏書		鳥羽折風弁		折風弁
北史		鳥羽折風弁 紫羅蘇骨		折風弁
南史		無後幘	折風弁	
周書		紫羅蘇骨 鳥羽蘇骨		
梁書		無後幘	折風巾	
隋書		鳥羽冠 紫羅冠		皮冠
通典		無後幘	折風巾	
舊唐書		靑羅鳥羽冠	絳羅遭遇冠	弁
唐書	白羅冠	靑羅鳥羽冠	絳羅鳥羽冠	弁
翰苑		金銀鹿耳無後幘		折風

48) 柳喜卿, 1975, 앞의 책, pp. 54~55.
49) 柳喜卿, 1975, 앞의 책, p. 53.

책(幘)은 설문(說文)에 '머리에 건(巾)을 썼는데 이를 말하여 책이라 하였다.'고 하였고, 방언(方言)에는 '상투를 덮어 썼으니 이른바 책건(幘巾)이다.' 하였으니 두발을 덮어씌우는 관모이다. 책은 중국으로부터 전래하여 삼국시대의 관모의 풍습을 형성하였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려조(高麗條)에 보면 책은 한(漢), 위(魏)의 책과 동일하나 뒤가 없다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책은 남바위와 같은데 수(收), 즉 뒤에 늘이는 헝겊이 더 있다.



〈그림 1-17〉 수산리 고분벽화의 幘
(『한국미술전집 :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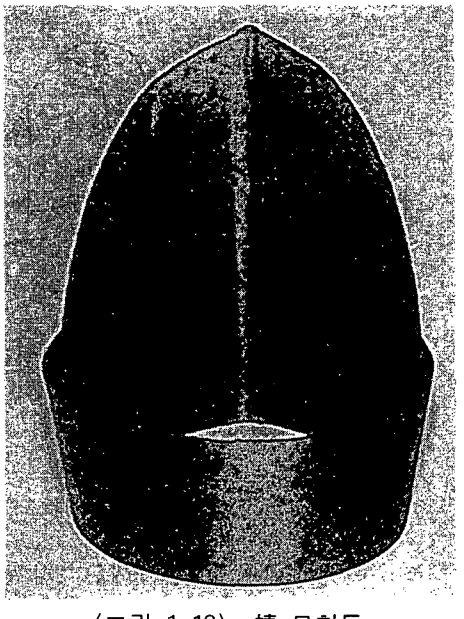

〈그림 1-18〉 幘 모형도
(『한국복식도록』)

(2) 折　風(弁)

절풍은 변(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 형태가 변자(弁字)와 같다 하여 사(厶)는 관모의 삼각형을 표현하고 밑의 공(廾)은 관모의 끈[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말로는 고깔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상이 뾰족한 관모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절풍이 남한(南韓)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백화피제(白樺皮製)의 변형관모(弁形冠帽)이고 금령총(金鈴塚)에서 출토된 신라의 기마인물상도 철제변모(鐵製弁帽)로 추정되는 일종의 투구를 쓰고 있다.

노인·우라에서도 백화모(白樺帽)와 원정모(圓頂帽)와 평정모(平頂帽)의 세 가지가 출토되었는데, 이 백화모는 그 재료와 형태가 신라고분 출토의 관모와 너무나 흡사하고 가야의 양산(梁山) 부부총(夫婦塚)과도 같으므로 신라는 물론 가야(伽倻)의 관모와도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관모의 기본 조형(祖形)이라 보여진다.[50]

『주서(周書)』와 『북사(北史)』에서 보면 소골(蘇骨)이라는 것이 있다. 소골은 장부(丈夫), 즉 일반 남자의 관이라 하였는데, 자라(紫羅)를 가지고 많이 만들었고 관품(官品)을 가진 자는 거기에 2개의 조우를 삽식(揷飾)하여 품관 없는 자와 구별하였다.[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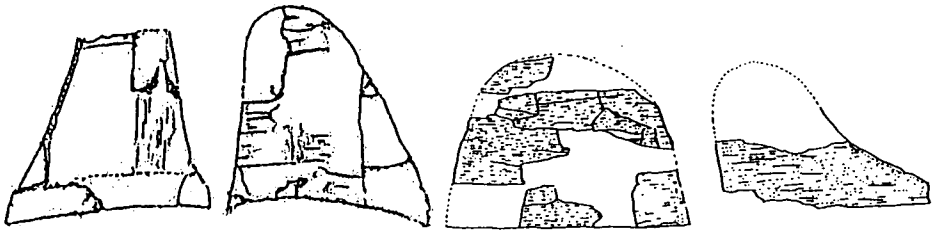

한국 출토 백화모 몽고 노인·우라 백화모

〈그림 1-19〉 한국 금령총 출토의 白樺帽(『한국복식사연구』)와 노인·우라의 白樺帽 (『한국의 복식』 10)

(3) 鳥羽冠

조우관은 절풍, 피관(皮冠), 라관(羅冠) 등의 관모의 좌우에 2개의 조우를 삽식(揷飾)하는 것이다. 조우는 처음에는 자연조우(自然鳥羽)였음을 벽화를 통하여 알 수 있으나 『한원(翰苑)』 번이부(藩夷部) 고려조(高麗條)에는 금우(金羽)로써 귀천을 밝혔다고 하였고, 또한 양원제(梁元帝) 직공도(職貢圖)에는 금은(金銀)을 가지고 녹이(鹿耳)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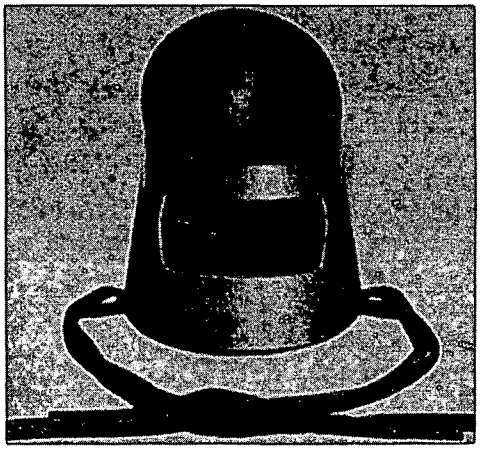

〈그림 1-20〉 折風모형도

50) 金東旭, 앞의 책, p. 10.
51) 『周書』 異域, 高麗條.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뒤에 가서 조우상(鳥羽狀) 또는 녹이상(鹿耳狀)의 장식금구(裝飾金釦)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우식(鳥羽飾)의 풍습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52]나 신라[53]에서도 있었고 아시아 북방의 여러 민족간에도 있었던 풍습이다.

조우관은 귀인, 대관인(大官人), 관인(官人) 계급에서만 꽂을 수 있고 서인(庶人)은 착용하지 못한다.[54]



〈그림 1-21〉 무용총의 조익관과 쌍영총의 鳥羽冠(『한국미술전집 : 벽화』)

(4) 金 冠

신라의 지배층 관모였던 금관은 원래 시베리아 샤만의 관모로 얼마 전까지 남아 있던 나뭇가지형 녹각형(鹿角形) 관모와 같은 계통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왕을 차차웅(次次雄)이라 하고 이는 방언(方言)으로 남자무당〔覡〕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도 고구려의 보관(寶冠), 백제 무열왕의 관식(冠飾), 신라의

52) 『北史』 列傳 百濟 ; 『周書』 異域 百濟條.

53) 古記錄에는 보이지 않으나 金冠塚의 金冠과 梁山夫婦塚의 金銅冠의 內冠 前部에 修飾한 翼狀의 金具가 유물로 있다.

54) 李如星, 1981 『朝鮮服飾考』, 第1章 緖論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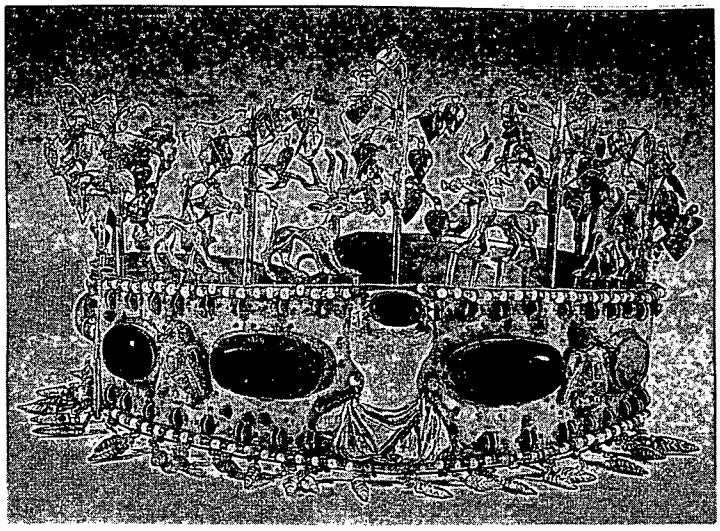

〈그림 1-22〉 스키타이 金冠 복제품(로스토프, 노보체르카스크, 호흐라치무덤 출토 기원후 1세기, 소련 국립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 스키타이 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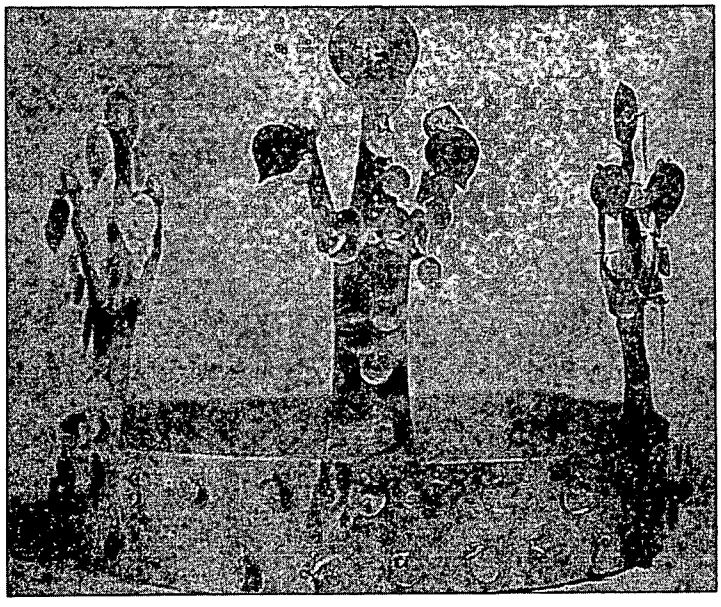

〈그림 1-23〉 가야의 金冠(『한국복식도감』)

금관, 가야의 금동관은 다 일련의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나. 저고리〔襦〕

저고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개교임형(前開交衽形)이고, 길이는 엉덩이를 가릴 만큼 길며, 고름이 없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깃과 끝동, 섶 등에 선(襈)이 있다. 깃은 직령(直領)과 단령(團領)으로 대별되는데, 직령은 V자 모양으로 여며진 깃을 말하며, 단령은 U자 모양으로 여며진 깃이다. 고구려 벽화에서는 대부분 직령의(直領衣)를 입고 있다. 저고리의 여밈을 볼 때 좌임(左衽)과 우임(右衽)이 있는데, 평양지방의 고분벽화에는 우임이 많고 통구(通溝)지방에는 좌임이 많다. 그러나 애초에는 좌임이었던 것이 중국의 우임 영향으로 보는 것이 통례(通例)로 되어 있었으나,[55] 전기고분(前期古墳)의 인물상(人物像)은 거의 다 우임이며, 중기고분은 반대로 거의 다 좌임이고, 후기고분은 우임직령(右衽直領)을 입고 있다.[56]

錄衿誓幢	新羅民	綠紫色
紫衿誓幢	新羅民	紫綠色
白衿誓幢	百濟民	白靑色
緋衿誓幢	新羅民	
黃衿誓幢	高句麗民	黃赤色
黑衿誓幢	靺鞨民, 東濊民	黑　色
碧衿誓幢	報德城民	碧黃色
赤衿誓幢	報德城民	赤黑色
靑衿誓幢	百濟殘民	靑　色

소매는 착수(窄袖)와 광수(廣袖)가 보이는데, 착수는 피지배계층과 무인의 전투복으로 입었고 광수는 지배계층에서 많이 입었다. 착수는 호복(胡服)인 고유복으로 볼 수 있고, 광수는 중국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스키타이의 저고리는 기원전 4세기경의 은제용기(銀製容器)에 그려진 부부상(夫婦像)에서 보인다. 즉 상의는 착수직령(窄袖直領)의 저고리를 좌임(左衽)으로 입었는데 저고리의 깃, 앞자락, 아랫단, 끝동에는 넓은 장식선(襈)을 대었고, 허리에는 가죽혁대를 띠었고 하의는 좁은 바지를 입어 우리나라 상대복식의 원형(原形)을 보여주고 있다.

몽고 노인·우라(Noin Ula)에서 출토된 저고리는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고, 끝동과 아랫단에 선(襈)을 두른 흔적이 있으나 깃이 많이 패여 있어 여기에 다른 깃을

55) 金東旭, 앞의 책, p. 13.
56) 李京子, 앞의 책, p.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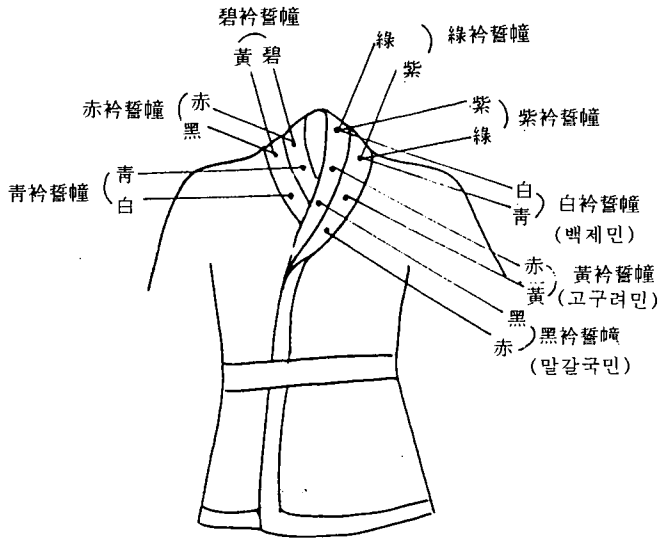

〈그림 1-24〉 **新羅幢의 금색**(『중보한국복식사연구』)

달은 것이 아닌가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에는 저고리의 깃을 2중 혹은 3중으로 착색(着色)하여 군대의 소속을 나타내는 유니폼(Uniform)으로 입었다. 신라 군대 조직의 한 단위였던 당(幢)은 그 대(隊)의 직책과 소속에 따라 깃의 색을 달리하여 구별하였는데 구서당(九誓幢)의 금색(衿色)은 다음과 같다.[57]

다. 바 지

우리나라는 일찍이 스키타이와 교류하여 바지를 입고 있던 흉노(匈奴)나 동호족(東胡族) 등의 영향으로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58] 이 스키타이안(Scythian)의 복장형태는 고대 서아시아제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동아시아로 옮겨와서 고구려에 유입된 것이다.[59]

---

57) 『三國史記』, 卷40, 雜志 第9, 職官下.

58) 朴春順, 1991 『바지考』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 194.

59) 李震卿, 1988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에 관한 硏究」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61.

유목민들은 수렵·유목생활을 위해 바지는 좁고 부리에 끈을 묶어 가죽·반장화를 위에 신고 있었다. 이는 그들 생활에 아주 적합한 복장이다.

스키타이문화권에 속하는 의복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출토된 최초의 유물은 1세기경의 몽고 노인·우라에서 출토된 바지이다. 이는 각반형(脚絆形)으로 양각(兩脚)이 앞뒤 중심에서, 수직으로 봉합된 유럽식 바지의 원형으로 바짓가랑이 사이에는 밑바대를 대어 재단이 단순하면서 기능적으로 보아 말을 타기에 아주 뛰어난 수렵복이고 전투복이었을 것이다.

고(袴)는 설문(說文)에 경의(脛衣)라 하고, 석명(釋名)에는 두 다리 가랑이가 각각 걸터 노나져 있는 것이라고 있어,[60] 우리나라 바지의 원형은 몽고계의 각반형으로 본다. 즉 밑바대형식인 삼각형의 당(襠)으로서 직선재단의 단점을 보충하다가 점진적으로 독립적 양식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며, 밑바대형식과 사폭형식은 조선중기까지도 공존하다가 조선말기부터는 완전히 큰 사폭과 작은 사폭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양식을 이루었다고 본다.[61]

고문헌의 바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고(袴 : 三國遺事, 三國史記, 舊唐書, 唐書), 궁고(窮袴 : 南齊書, 通典), 태구고(太口袴 : 北史), 대구고(大口袴 : 隋書), 고대구(袴大口 : 舊唐書), 곤(褌 : 梁書, 南史), 가반(柯半 : 梁書, 南史)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표음(表音)으로 된 것은 가반으로서 어음(語音)으로 보아서 오늘날의 고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겠으며, 여자의 고쟁이도 그 어원은 같은 것으로 본다.[62]

지금의 바지라는 명칭은 조선왕조초 정인지(鄭麟趾)가 '파지(把持)'라고 표현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63]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바지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대구고(大口袴, 太口袴, 袴大口) : 바짓가랑이 폭이 넓고 발목에서 여유 있게 맨 바지로 주로 상류층에서 입는고 무관의 예복으로 입었을 것이다.
- 세고(細袴) : 대구고보다 가랑이가 좁고 발목에서 매거나 발목에 다른 색의 선

60) 柳喜卿, 1975, 앞의 책, p. 24.
61) 任明美, 1987 「바지考」『大韓家政學會』 第25卷 2號, p. 28.
62) 金東旭, 1979 「韓國服飾史」『韓國服飾史研究』, 1979, 亞細亞文化社, p. 14.
63) 위의 책, p. 14.

(襽)을 두른 바지로 시자급(侍者級)에서 착용한다.

- 궁고(窮袴) : 오늘날의 폭 좁은 양복바지의 가랑이 사이에 밑바대를 댄 바지로 노인·우라에서 발견된 바지로 전투복으로 입었던 무관의 바지가 여기에 속한다.
- 곤(褌) : 바짓가랑이가 짧은 오늘날의 여름 잠방이와 같은 바지로 장사(壯士), 수문장, 역사(力士), 씨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64]

라. 두루마기〔袍〕

저고리·바지나 저고리·치마 위에 보온(保溫)과 의례적(儀禮的)인 목적으로 착용하였는데, 벽화에서 보이는 두루마기는 그 기본형식이 저고리와 비슷하다. 다만 그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이르고 허리에 띠를 매었다. 깃의 모양은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직령(直領)과 단령(團領)으로 대별되고 소매는 착수(窄袖)와 광수(廣袖)가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唐)과의 교역으로 단령(團領)을 입게 되면서 단령이 예복인 조복(朝服)과 공복(公服)으로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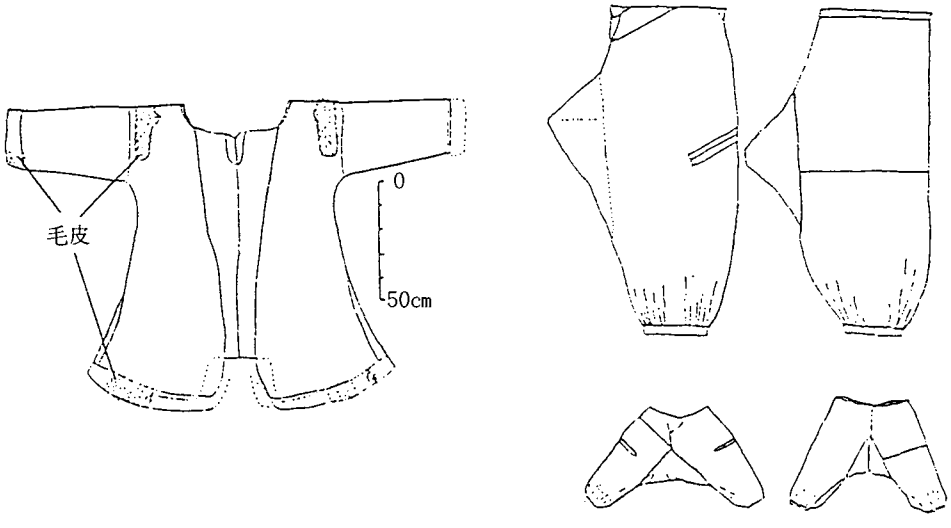

〈그림 1-25〉 노인·우라 출토의 저고리와 바지(몽고ノイン·ウラ발견의 유적)

64) 李震卿, 앞의 책, p. 62.

한국에서 조복을 처음 입은 시기는 648년(신라 진덕왕 2년)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당에 청병(請兵)을 하였다 이때 당의 관복제도(冠服制度)를 따르기를 요청하면서 당의 제도를 모방하였다고 하지만 이보다 앞서 고구려에서 한(漢)나라 조복(朝服)을 입은 기록이 있다.[65]

삼국시대에는 중국과의 국교에서 조복은 수수(授受) 내지 무역에 의하여 습용(襲用)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라에서는 조복으로 백색(白色)을 입었고,[66] 백제에서는 고구려와 대략 동일하나 관대(冠帶)와 수식(修飾)으로 품계



〈그림 1-26〉 전투복으로 입었던 바지 저고리(『민속 옷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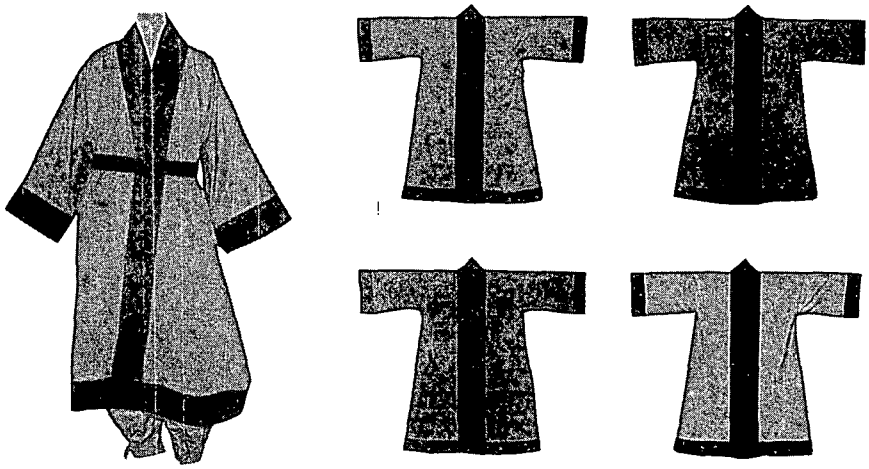

〈그림 1-27〉 백관의 공복 착용도와 사색공복(『한국복식도감』)

65) 『魏史』, 高句麗傳
"高句麗 漢時從玄菟郡受朝服 衣幘 後於東界築小城置朝服 衣幘其中來取之名此城爲溝溇者句麗名城也"

66) 『舊唐書』, 東夷傳

를 구별하였고[67] 복색(服色)을 홍색(紅色)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아 조복이 홍색인 듯하다.[68]

우리나라에서 공복제도(公服制度)를 처음 시행한 것은 백제로 고이왕(古爾王) 27년(260)에 관식(冠飾)과 대색(帶色)으로 품관(品官)에 따른 복색(服色)을 정하여 상하의 등위(等位)를 구별하였다. 이것은 제14대 근구수왕(近仇首王) 1년(375) 고흥(高興)이 백제의 역사 『서기(書記)』를 썼다고 하는 것보다 1세기나 앞서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희박할지라도 신라보다 약 2세기 반 전에 이와 같이 공복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그 선진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1-28〉 최치원상(『한국초상화연구』)

『북사(北史)』 백제전(百濟傳), 『주서(周書)』 이역전 백제(異域傳 百濟), 『신당서(新唐書)』 열전 백제(列傳 百濟), 『당서(唐書)』 동이열전 백제(東夷列傳 百濟) 등에 의하여 백제 계급별 복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69]

즉 관모는 1품에서 6품까지는 은화(銀花)로 장식하였고, 7품에서 16품까지는 관제(冠制)는 같으나 은화식(銀花飾)이 없었다.

포(袍)의 색은 관인(官人)과 평민을 구별하기 위하여 모두 붉은색(緋色)으로 하였다.

"新羅國 …… 衣服 與高句麗 百濟略同 而朝服尙白"

67) 『三國史記』, 卷33, 雜志 第2 色服, 新羅條

"此史云 百濟衣服 與高句麗略同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奈率以下 冠飾銀花 將德紫帶 施德皂帶 固德赤帶 秀德靑帶 對德文督皆黃帶 自武督至剋虞皆白帶"

68) 『舊唐書』, 東夷傳.

"百濟國 …… 官人盡緋爲衣 銀鬲飾冠 庶人不得衣緋紫"

69) 『增補文獻備考』, 禮考 4, pp. 242~243.

〈표 1-2〉　百濟의 계급별 복식

官名	品級	冠飾	帶色	衣色
佐平	1品官	銀花	紫帶	緋衣
達率	2品官	銀花	紫帶	緋衣
銀率	3品官	銀花	紫帶	緋衣
德率	4品官	銀花	紫帶	緋衣
扞率	5品官	銀花	紫帶	緋衣
奈率	6品官	銀花	紫帶	緋衣
將德	7品官	無	紫帶	緋衣
施德	8品官	無	皂帶	緋衣
固德	9品官	無	赤帶	緋衣
秀德	10品官	無	靑帶	緋衣
對德	11品官	無	黃帶	緋衣
文督	12品官	無	黃帶	緋衣
武督	13品官	無	白帶	緋衣
佐軍	14品官	無	白帶	緋衣
振武	15品官	無	白帶	緋衣
克虞	16品官	無	白帶	緋衣
平人	無	無		禁緋紫

〈표 1-3〉　신라 17等官階 公服制度

官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官階名	伊伐湌	伊湌	迊湌	波珍湌	大阿湌	阿湌	一吉湌	沙湌	級伐湌	大奈麻	奈麻	大舍	舍知	吉士	大烏	小烏	造位
公服	紫衣(眞骨以上級)					緋衣(六頭品級)				靑衣(五頭品級)		黃衣(四頭品級)					

대(帶)에 있어서는 1품에서 7품까지는 자대(紫帶), 8품은 조대(皂帶), 9품은 적대(赤帶), 10품은 청대(靑帶), 11·12품은 황대(黃帶), 13품에서 16품까지는 백대(白帶)를 착용하였다. 그런데 대색(帶色)에 있어서 1품에서 6품까지는 명시된 바가 없는데, 이는 『수서(隋書)』에 의하여 자대(紫帶)를 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여

그대로 수록하기로 하였다.[70]

신라에서는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삼국 중 뒤늦었던 사회였으나 양잠 권장에 힘써 방적(紡績)과 직물(織物) 등 수공업에 의한 의류 문화가 발달하여 야초라(野草羅), 수금(繡錦), 소화어아금(小化魚牙錦), 조하금(朝霞錦), 백전포(白氈布) 등 호화스러운 직물로 사치스러운 복식생활을 하였다.

공복으로는 법흥왕 7년(520) 육부(六部) 사람들의 의복제도를 정하였다고 하나 전하는 내용은 없으며, 523년에 갱정(更定)하였다는 공복제도가 『삼국사기(三國史記)』 색복조(色服條)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관계(官階)는 17등급으로 등급에 따른 복색(服色)은 다음과 같다.

1위(이벌찬 : 伊伐飡)에서 5위(대아찬 : 大阿飡)까지는 자의(紫衣)
6위(아찬 : 阿飡)에서 9위(급찬:級飡)까지는 비의(緋衣)
10·11위(대나마 : 大奈麻, 나마 : 奈麻)는 청의
12위(대사 : 大舍)에서 17위(조위 : 造位)까지는 황의를 입었다.
또한 9위까지는 아홀(牙笏)을 들었다.

이상에서 볼 때 자·비·청·황(紫緋靑黃)의 사색공복제도(四色公服制度)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사색공복제도를 본뜬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때는 관모로 금관(錦冠), 비관(緋冠)을 썼고, 공복의 제식(制飾)이라 할 복두(幞頭), 포(袍), 대(帶), 홀(笏)을 갖추게 된 것은 649년(진덕여왕 3년)이었다.

마. 帶

대에 대한 고구려 관계 고기록을 보면 은대(銀帶 : 翰苑 藩夷部), 금구혁대(金釦革帶 : 唐書 東夷傳), 백위대(白韋帶 : 新唐書 東夷傳), 백피소대(白皮小帶 : 舊唐書 東夷傳), 자라대(紫羅帶 : 舊唐書 志音樂), 소피대(素皮帶 : 北史列傳) 등이 나온다. 은대나 구혁대는 과판(銙板)이나 교구(鉸具)를 구비한 과대류(銙帶類)로 예복에 착용했을 것이고, 백위대나 백피소대는 수렵이나 전투시 또는 평상시에 착용되었을

70) 李如星, 1981 『朝鮮服飾考』 民俗苑, 第1章 緖論 ; 第4節 上代社會와 服飾, pp. 102~103.

것이고, 자라대는 비단으로 만든 띠로 예복에 착용되었을 것이다. 유물로는 고구려의 대동군(大同郡) 고산리(高山里) 제9호묘와 사신총(四神塚)에서 과대(銙帶)의 금구(金具)가 출토되었다.[71] 고분벽화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개 포백대(布帛帶), 승대류(繩帶類)와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안악고분의 주실회랑에서 의구(儀具)를 손에 든 보졸(步卒) 중에서 간단한 장식을 한 과대가 겨우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72] 보졸의 예복차림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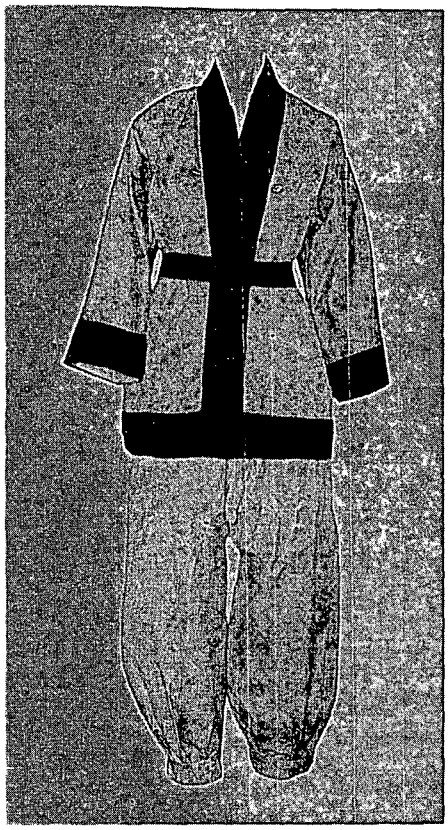

〈그림 1-29〉 백관의 평상복
(『한국복식도록』)

백제는 문헌에는 소피대(素皮帶 : 新唐書)가 있는데 일상복이나 전투복에 착용했을 것이고, 조복이나 공복 착용시에는 계급에 따라 자(紫), 조(皂), 적(赤), 청(靑), 황(黃), 백색(白色)의 포대(布帶)를 착용했을 것이다.[73] 〈표 1-2〉를 보면 1품에서 6품까지는 명시된 바 없으나 『수서(隋書)』에 의해 수록하였다. 백제의 대의 유물은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의 은제과대(銀製銙帶)와 충남 부여군에서 출토된 전(塼) 등을 통해 볼 때 앞 중앙에 요패(腰佩) 2개를 늘이고 있다.[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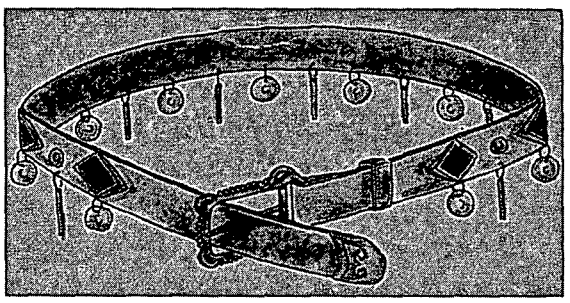

〈그림 1-30〉 고구려의 銙帶
(안악3호분 고증 : 『한국복식도감』)

71) 黃互根, 1978 『韓國裝身具美術硏究』 一志社, p. 103.
72) 金正子, 1978 「우리나라 帶에 대한 硏究」 世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 8.
73) 『三國史記』, 卷6, 新羅本記 第6.
74) 金正子, 앞의 글, p. 16.

신라는 문헌에 연문백옥대(硏文白玉帶), 오서대(烏犀帶), 유(鍮), 철(鐵), 동(銅) 등을 이용한 과대(銙帶)의 기록이 있고,[75] 유물로는 식이총(飾履塚), 부부총(夫婦塚)의 은제과대(銀製銙帶)와 금관총(金冠塚), 금령총(金鈴塚), 황남대총(皇南大塚) 등의 금제과대(金製銙帶) 등이 출토되었는데, 과대의 형태는 여러 개의 요패(腰佩)를 늘이고 있어 예복인 조복·공복에 착용했을 것이고 전투나 수렵시에는 소피대가 착용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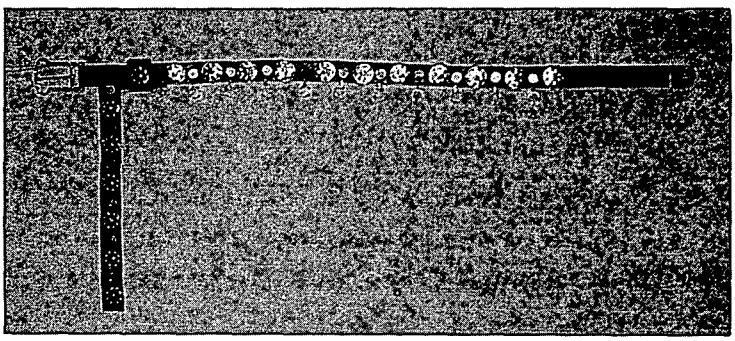

〈그림 1-31〉 백제의 銙帶(무령왕 출토 은제과대 고증 : 『한국복식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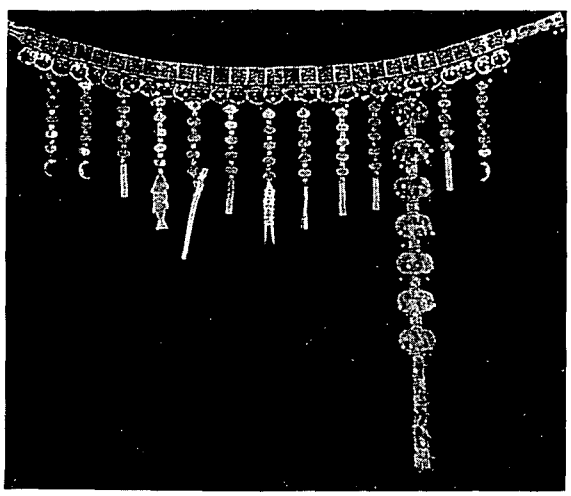

〈그림 1-32〉 신라의 銙帶(황남대총 출토 : 『한국복식도감』)

75) 『三國史記』, 卷6, 新羅本記 第6.

바. 신발〔靴, 履〕

고기록에 보면 황혁이(黃革履 : 北史 列傳, 周書 東夷傳, 隋書 東夷傳, 新唐書 東夷傳), 적피화, 오피화(赤皮靴, 烏皮靴 : 舊唐書 志音樂), 자피화(紫皮靴 : 三國史記)가 있어 화(靴)와 이(履)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고분벽화에서도 화와 이를 볼 수 있다.

화는 원래 호복계통의 것으로 등자(鐙子)에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코끝이 뾰족하고 발목이 긴 무풍적(武風的)인 신발로 기마(騎馬)하기에 좋아 수렵이나 전투에 적당하고, 이는 신코가 솟았고 신 앞바닥이 들려 있으며 문질적(文秩的)인 남방족이 신었던 운두가 얕은 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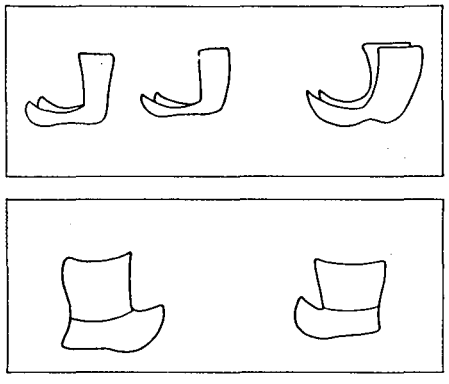

〈그림 1-33〉 매산리 사신총의 靴(上)와 쌍영총의 靴(下)
(『한국 장신구 미술연구』)

고구려 벽화에서 화는 주로 남자가 착용하였고, 이는 여자나 시자급(侍者級)에서 착용하였다.

그러나 출토 유물을 볼 때 금동이(金銅履)가 삼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금령총 및 금관총 등에서 출토된 금동리는 영락(瓔珞)으로 장식되어 있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금동리는 인당초문(忍唐草文)을 투조한 스파이크식 금동리이다. 운두가 얕고 신발 밑창에 스파이크식으로 된 금동리를 고구려 삼실총의 무사가 신고 있다.

2. 三國時代의 軍服飾 甲冑類

가. 軍服飾 甲冑類의 種類[76]

삼국시대의 전쟁에 관한 기록은 많으나 전쟁에서 착용한 군복식에 대한 문헌기록이 뚜렷이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조나 형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나 삼국시대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갑주(甲冑)를 통해 어느 정도의 형식이나 구조 파악은 가능하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갑주는 그 형식이나 구조가 상세하지 않으므로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를 중심으로 먼저 철판의 결합방법 및 개폐장치(開閉裝置)에 사용되는 경첩에 대해 설명하고, 그 형태적 특징 및 구조적·제작기술적 차이를 통해 삼국시대 군복식의 종류 및 부분명칭[77]을 주(冑), 갑(甲), 마갑주(馬甲冑)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鐵板의 連結方法(그림 1-34)

철제갑주의 제작시 철판의 결합방법은 가죽끈을 이용하는 방법과 못머리가 큰 못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가죽끈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 결합하고자 하는 철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등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대응시켜 철판을 결합하는 것으로 혁철법(革綴法)이라 한다. 주로 판갑(板甲)이나 주(冑)의 제작에 사용되며, 결합되는 두 철판의 구멍은 겹치지 않고 철판의 가장자리와 구멍 사이가 겹치게 된다.

② 결합하고자 하는 두 철판의 구멍을 겹쳐 가죽끈으로 철판을 연결하는 혁결법(革結法)이다. 이 방법은 항상 1~2㎝의 간격을 가지는 두 개의 구멍이 1조를 이

76) 宋桂鉉, 1988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硏究－嶺南地域 出土品을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77) 일본에 있어서는 갑주의 부분명칭 및 형식이 1934년 스에나가(末永雅雄)에 의해 기본적으로 정립되었다.(末永雅雄, 1934 『日本上代の甲冑』)

루는 것이 특징이다. 혁결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Ⅰ류는 찰갑(札甲)의 소찰(小札)을 횡(橫)으로 연결할 때 주로 이용되며, Ⅱ류는 일본에서 판갑의 제작에 사용된 예가 있을 뿐이다.

③ 찰갑의 제작에 있어 혁결법에 의해 횡으로 결합된 소찰을 다시 상하 유동성(流動性)이 있도록 종(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위(緘)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이므로 수결법(垂結法)이라 한다.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못을 이용하는 방법은 못머리가 반구형인 못을 사용하며 지금의 리벳팅과 같은 것이다. 연결하려는 두 철판의 구멍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므로 고도의 기획성(企劃性)이 요구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병류(鋲留), 우리나라에서는 원두정결합법(圓頭釘結合法) 등으로 사용되는데 간단하게 정결법(釘結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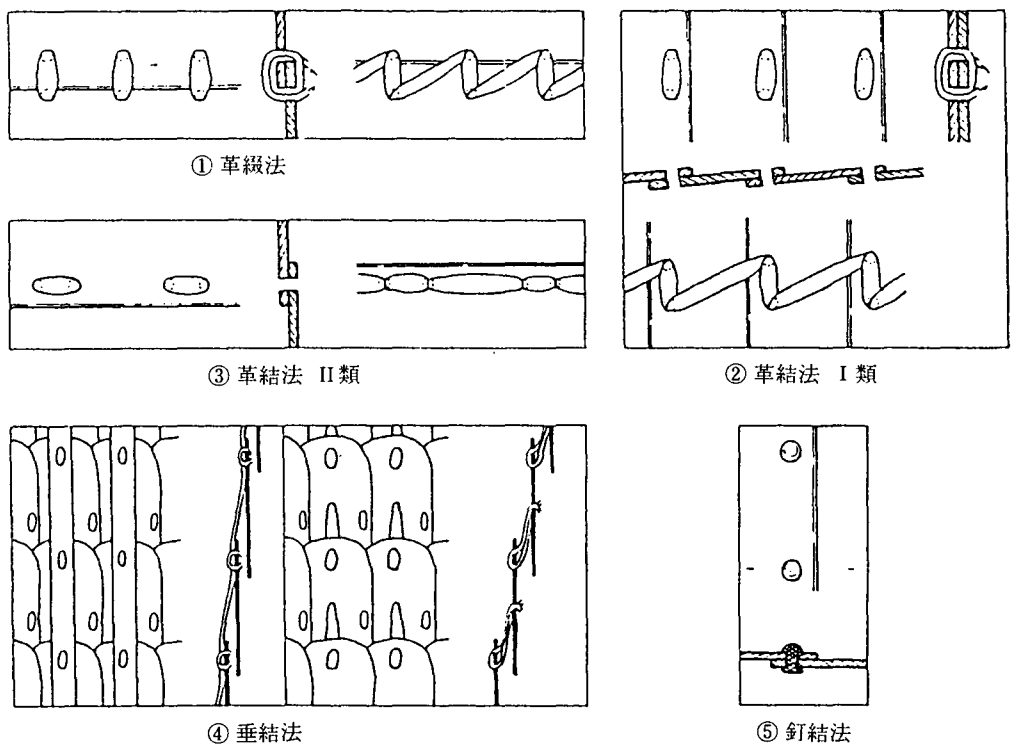

〈그림 1-34〉 甲冑의 철판 결합 기법(「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硏究」)

(2) 경첩의 종류

후술할 찰갑(札甲)의 경우는 유동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개폐장치(開閉裝置)가 필요없다. 그러나 갑주제작에 정결기법(釘結技法)이 도입된 후의 판갑(板甲)은 유동성이 거의 없으므로 개폐장치가 필수적이다.

개폐장치에 사용된 경첩은 일본의 경우 고리경첩(구호접번〈鉤壺蝶番〉), 가죽띠경첩(혁대접번〈革帶蝶番〉), 가죽끈경첩(혁뉴접번〈革紐蝶番〉)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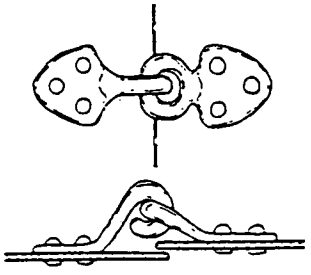

① 고리경첩 I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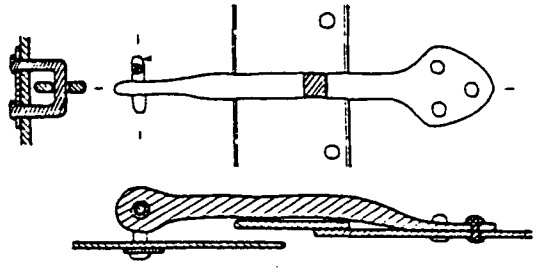

② 고리경첩 II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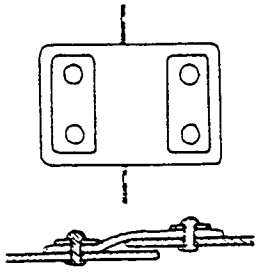

③ 가죽띠경첩 I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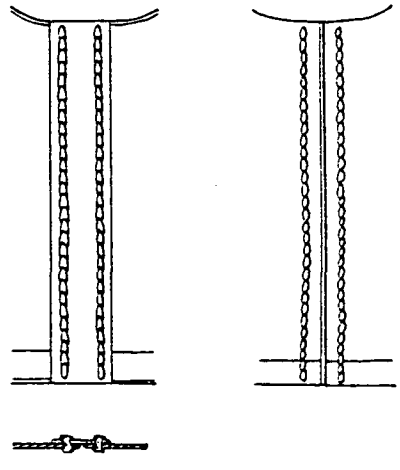

④ 가죽띠경첩 II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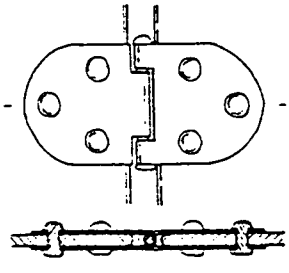

⑤ 요철경첩

〈그림 1-35〉 경첩의 종류(「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硏究」)

다.[78]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갑주자료의 경첩은 고리경첩, 가죽띠경첩, 요철경첩(요철접번〈凹凸蝶番〉)의 세 종류가 있다.

고리경첩은 연결되는 고리가 환상(環狀)이며 크기가 비슷한 것(고리경첩 Ⅰ류 : 그림 1-35-①)과 전동에 부착된 긴 금구(金具)의 끝에 구멍을 뚫고 후동에 부착된 ㄷ자형금구를 끼워 연결한 것(고리경첩 Ⅱ류 : 그림 1-35-②)으로 나누어진다.

가죽띠경첩은 가죽띠의 양단(兩端)을 못으로 고정하거나 방형(方形) 또는 장방형(長方形)의 판(板)을 대고 못으로 고정한 것(가죽띠경첩 Ⅰ류 : 그림 1-35-③)과 철판과 가죽띠의 가장자리에 촘촘한 구멍을 뚫고 가죽띠를 철판의 바깥으로 대어 가죽끈으로 기워서 연결한 것(가죽띠경첩 Ⅱ류 : 그림 1-35-④)으로 나누어진다. 후자(後者)는 전자(前者)와는 달리 개폐부(開閉部) 전면(全面)에 가죽띠를 대는 것이 특징이다.

나. 胄〔투구〕

삼국시대의 투구 중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철제주(鐵製胄)뿐이다. 고구려의 벽화고분에 묘사된 투구의 형태는 대체적인 것은 파악되나 세부적인 관찰이 어렵다. 삼국시대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철제주는 전체적인 형태 및 사용된 철판의 모양에 따라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縱長板胄(그림 1-36)

전체적인 형태는 반구형(半球形)을 띠는데, 안쪽으로 휜 긴 사다리꼴의 철판을 가죽이나 못으로 연결하여 제작한 투구이다. 연결방법은 혁결법(革結法)이 주류를 이룬다. 종래 종세장판혁철주(縱細長板革綴冑),[79] 수신판혁철주Ⅰ류(竪矧板革綴冑Ⅰ類)[80]라 한 것이다.

---

78) 野上丈助, 1970「横矧板形式の短甲と附屬小札について」『考古學雜誌』第56卷 第2號

79) 釜山大學校博物館, 1982·1983『東萊福泉洞古墳群』Ⅰ 本文·圖面·圖版,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5集

80) 福尾正彦,「眉庇付冑の系譜－その出現期を中心に－」『東アジアの考古と歷史』上(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1987.

볼가리개와 수미부(首尾部) 가리개를 구비한 것도 있으며, 상부에는 복발(伏鉢)이 있는 것도 있다. 대체로 사다리꼴의 긴 철판에는 상부(上部), 중앙 2개소, 하부(下部) 1 또는 2개소에 철판의 결합과 관련된 구멍이 뚫려 있다. 각각 복발공(伏鉢孔), 동결공(胴結孔), 요결공(腰結孔), 현수공(懸垂孔), 복륜공(覆輪孔)이라 한다. 복발공은 철제 또는 유기질제의 반구형 복발과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다. 동결공과 요결공은 철판을 횡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다. 현수공은 볼가리개나 수미부(首尾部) 가리개를 다는 데 사용하는 구멍이다. 복륜공은 철판의 가장자리를 가죽띠나 가죽끈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되는 구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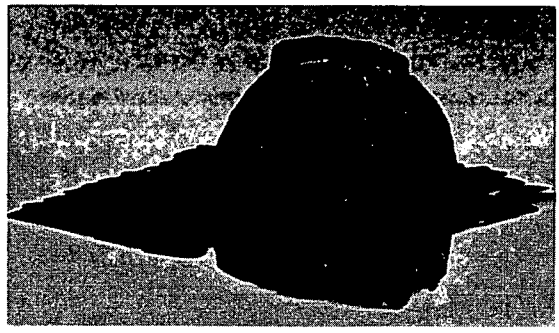

〈그림 1-36〉 가야의 **縱長板冑**(남원월산리 출토)

(2) 彎曲縱長板冑(그림 1-37)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출토되는 주(冑)로서, 형태나 구조적인 특징은 종장판주와 유사하나 사용된 철판이 S자형으로 굽어 있어 측면형(側面形)이 반구형이 아니라 凸형을 띤다. 대부분의 투구가 이 형식에 해당되며 지금까지는 몽고발형주(蒙古鉢形冑),[81] 복발형주(伏鉢形冑),[82] 종세장판혁철주,[83] 수신판혁철주 Ⅱ류[84] 등으로 불리었다. 철판의 결합방법은 주로 혁결법(革結法)이지만 정결법(釘結法)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 사용된 철판이 S자형으로 휜 것을 제외하고는 종장판주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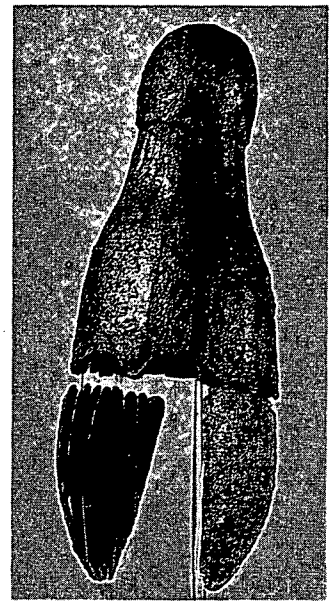

〈그림 1-37〉 가야의 **彎曲縱長板冑**(합천 옥전28호 출토)

81) 崔鍾圭, 1983「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釜大史學』7.
82) 金鍾徹, 1981『高靈池山洞古墳群』啓明大學校博物館.
83) 釜山大學校博物館, 1982·1983, 앞의 책.
84) 福尾正彦, 1987, 앞의 책.

(3) 遮陽冑(그림 1-38)

우리나라에서는 출토례가 거의 없고 일본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 주(冑)이다. 반구형의 주체(冑體) 앞에 반원형의 챙을 붙인 주로서, 지금까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미비부주(眉庇附冑)라 한 것이다. 주체 상부의 복판(伏板)과 중위(中位)·하위(下位)의 대판(帶板 : 동권판〈胴卷板〉·요권판〈腰卷板〉)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철판으로 메운 것이다. 복판의 상부에는 복발(伏鉢)이 있고, 복발 위에 관(管)이 꽂혀 있으며, 관의 위에는 수발(受鉢)이 있다. 주체의 하부에는 대상철판을 3~6단 수결(垂結)하여 볼과 후두부(後頭部)를 보호하도록 한 철(錣)이 있다. 일본에서는 구성철판의 종류 및 결합방법에 의해 형식이 세분[85]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출판박물관 소장품[86] 및 동래연산동고분군(東萊蓮山洞古墳群) 출토례[87]밖에 없다.

(4) 衝角附冑(그림 1-39)

평면형태(平面形態)가 행인형(杏仁形 : 은행알모양)이며, 측면형태(側面形態)는 반타원형(半楕圓形)을 띤다. 주의 상부(上部)로부터 전방부(前方部)에 이르는 밥주걱 모양의 복판(伏板)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차양주와 마찬가지로 상부의 복판과 중위(中位)·하위(下位)의 대판(帶板 : 동권판〈胴卷板〉·요권판〈腰卷板〉)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철판으로 메웠으며, 주체의 하부에는 대상철판(帶狀鐵板)을 3~6단 수결(垂結)하여 볼과 후두부(後頭部)를 보호하도록 한 철(錣)이 있다.[88] 또한 복판의 상부에 삼미철(三尾鐵)이라는 장식이 붙는 것이 특징이다.

---

85) 末永雅雄, 1934, 앞의 책.

86) 國立中央博物館, 1990『神秘의 古代王國 加耶』

87) 東京國立博物館, 1982『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錄』, 東京.
穴澤咊光·馬目順一, 1975「南部朝鮮出土鐵製鋲留甲冑」『朝鮮學報』第76輯.

88) 충각부주의 錣에 대한 분류와 변화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古谷毅, 1988「京都府久津川車塚古墳出土の甲冑－いわゆる'一枚錣'の提起する問題－」『MUSEUM』No.445, 東京國立博物館美術誌 4月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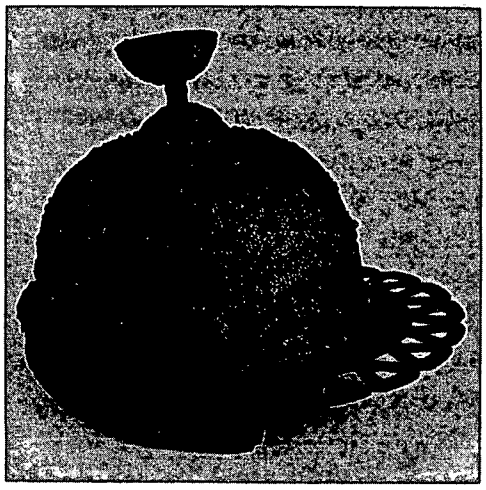

〈그림 1-38〉 가야의 차양주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그림 1-39〉 衝角附冑
(일본 대총고분 출토)

일본에서는 출토례가 많아 구성철판의 종류나 결합 방법에 따라 형식이 세분[89]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90] 부산 오륜대 고분,[91] 함양 상백리 고분[92] 등 3례뿐이다.



〈그림 1-40〉 가야의 冠帽形伏鉢冑
(합천 반계제 고분 출토)

(5) 冠帽形伏鉢冑(그림 1-40)

주의 상부에 평면 타원형, 측면 凸형(중절모형)의 복판(伏板)을 가지며, 그 상부에 철제 또는 금동제의 관모형복발을 부착한 주이다.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은 합천 반계제(磻溪堤) 가A호분 출토례[93]밖에 없으며, 관모형복발만 유리되어 출토된 것이 있다.

---

89) 末永雅雄, 1934, 앞의 책.
90) 金鍾徹, 1981, 앞의 책.
91) 宋桂鉉, 1988, 앞의 글.
92) 宋桂鉉, 1988, 앞의 글.
93) 國立晋州博物館, 1987 『陜川磻溪堤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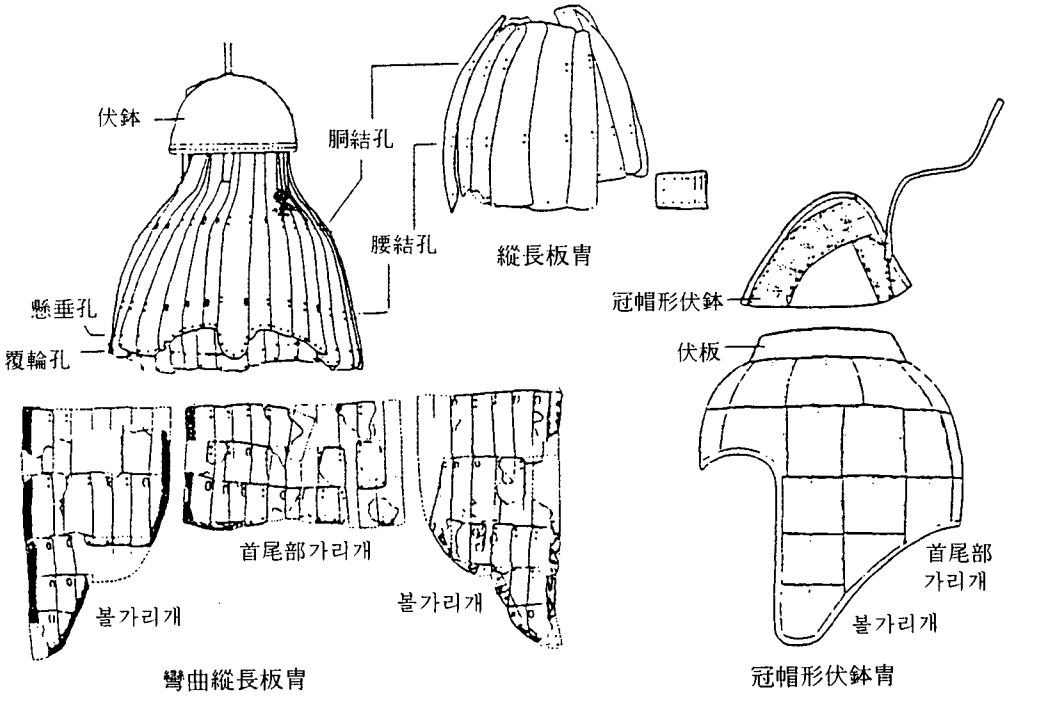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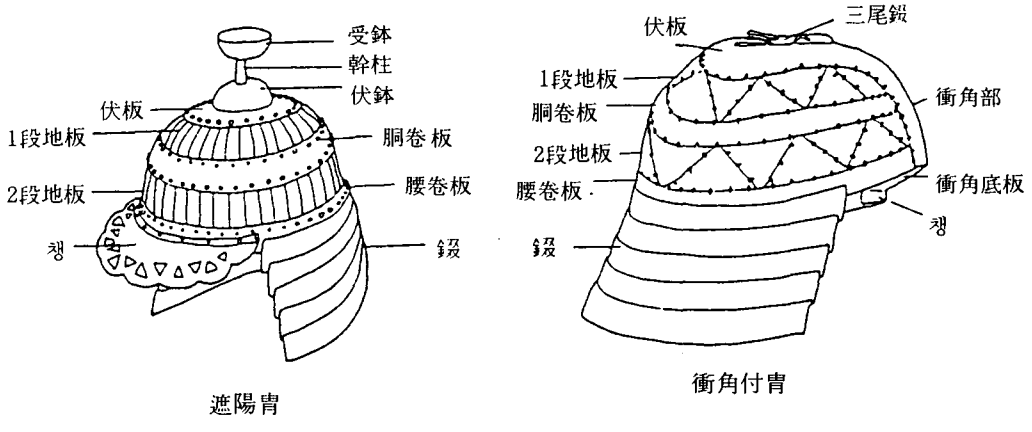

〈그림 1-41〉 冑의 종류별 부분명칭

이상과 같은 종류별 주의 부분명칭은 〈그림 1-41〉과 같으며, 구성철판의 종류 및 결합방법에 따른 주의 형식은 〈표 1-4〉와 같다.

〈표 1-4〉 冑 의 種 類

(○표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주)

주(冑)	종장판주(縱長板冑)	혁결(革結)	○
		정결(釘結)	
	만곡종장판주(彎曲縱長板冑)	혁결(革結)	○
		정결(釘結)	○
	차양주(遮陽冑)	삼각판혁철(三角板革綴)	
		소찰정결(小札釘結)	○
		종장판정결(縱長板釘結)	
		장방판정결(長方板釘結)	
		횡장판정결(橫長板釘結)	
	충각부주(衝角附冑)	삼각판혁철(三角板革綴)	○
		삼각판정결(三角板釘結)	
		소찰정결(小札釘結)	
		종장판정결(縱長板釘結)	
		횡장판정결(橫長板釘結)	○
		장방판정결(長方板釘結)	
	관모형복발주(冠帽形伏鉢冑)	장방판혁철(長方板革綴)	○
		종장판정결(縱長板釘結)	○
	소찰주(小札冑)	소찰혁결(小札革結)	

다. 甲〔갑옷〕

삼국시대의 철제갑옷은 연구자에 따라 갑옷의 형태에 의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크게는 판갑(板甲)과 찰갑(札甲)으로 나눌 수 있다.

(1) 板 甲

주로 인체의 상반신을 보호하는 갑옷으로 결합된 철판의 유동성이 전혀 없는 갑

옷이다. 철제품의 경우 여러 가지 모양의 작은 철판을 못이나 가죽으로 연결하여 만든 갑옷이다. 일본에서는 내량조(奈良朝)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명치시대(明治時代) 이래 단갑(短甲)이라 하였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사용된 철판의 종류와 결합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그 종류는 〈표 1-5〉와 같다.

〈표 1-5〉　　板 甲 의　　種 類

(○표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판갑)

판갑(板甲)	종장판혁철판갑(縱長板革綴板甲)	
	방형판혁철판갑(方形板革綴板甲)	○
	장방판혁철판갑(長方板革綴板甲)	○
	삼각판혁철판갑(三角板革綴板甲)	○
	삼각판정결판갑(三角板釘結板甲)	○
	종장판정결판갑(縱長板釘結板甲)	○
	횡장판정결판갑(橫長板釘結板甲)	○

판갑의 부분 명칭 또한 수상(竪上), 장측(長側), 압부판(押付板), 인합판(引合板), 거판(鋸板) 등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조의 이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의복의 부분명칭을 원용하여 〈그림 1-42〉와 같이 그 명칭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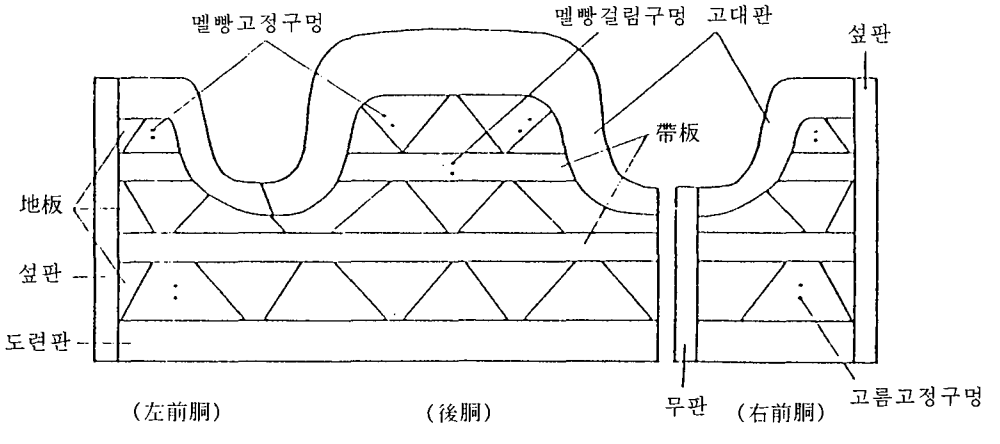

〈그림 1-42〉 板甲의 부분명칭(「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硏究」)

(2) 札 甲

일정한 형태의 작은 철판인 소찰(小札)을 옆으로는 혁결(革結)하여 고정하고 위아래로는 수결(垂結)하여 상하의 유동성을 가지도록 한 갑옷으로, 지금까지는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괘갑(挂甲)이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찰갑의 출토례가 많으나 구조가 밝혀진 것은 1점도 없다. 일본의 출토례로 보아 전동(前胴)의 중앙부에서 합임(合衽)하는 동환식(胴丸式)과 좌우의 옆구리에서 합임하는 양당식(裲當式)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경갑(頸甲), 상갑(裳甲), 요찰(腰札), 굉갑(肱甲), 상박갑(上膊甲), 대퇴갑(大腿甲), 경갑(脛甲) 등과 일괄하여 한 벌을 이루는데, 동래복천동 11호분[94]에서 출토된 찰갑의 소찰로 보아 부위별로 소찰의 형태가 다르다(그림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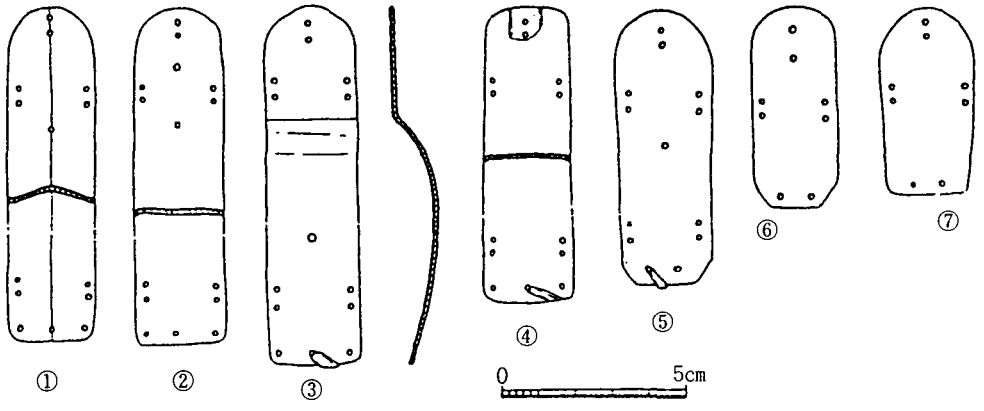

〈그림 1-43〉 동래복천동 11호분 출토 札甲 小札(「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硏究」)
① 협찰(脇札) ② 동찰(胴札) ③ 요찰(腰札) ④ 상갑찰(裳甲札)
⑤ 대퇴갑찰(大腿甲札) ⑥ 경갑찰(脛甲札) ⑦ 상박갑찰(上膊甲札)

(3) 附屬甲

① 경갑(頸甲) : 목을 보호하는 갑옷으로 길이가 다른 철판을 가죽이나 못으로 연결하여 앞쪽이 뒤쪽보다 낮게 나팔모양으로 제작한 것이다. 주로 찰갑의 부속갑

94) 釜山大學校博物館, 1982·1983, 앞의 책 ; 宋桂鉉, 1988, 앞의 글.

옷으로 사용된다. 혁결법(革結法)에 의해 제작된 것과 정결법(釘結法)에 의해 제작된 것이 있다(그림 1-44).

② 견갑(肩甲) : 판갑의 부속갑옷으로 쇄골과 견갑골의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갑옷이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경갑(頸甲) 또는 경개(頸鎧)라 부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찰갑의 부속갑옷으로 경갑이 하나의 구분되는 것이었으므로 견갑이라 한다(그림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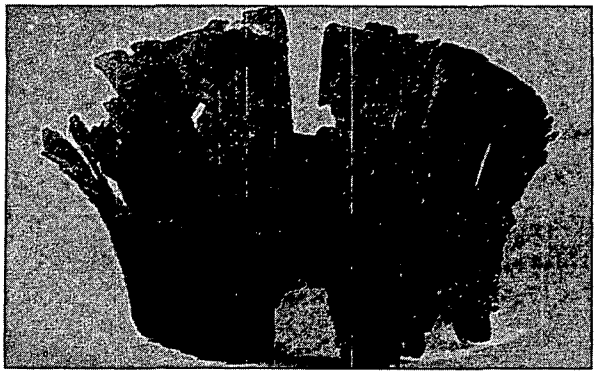

〈그림 1-44〉 가야의 頸甲
(동래복천동 21호분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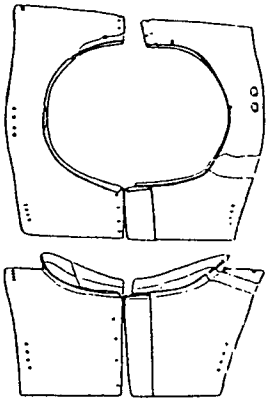

〈그림 1-45〉 肩　甲
(일본 출토)

③ 상박갑(上膊甲) : 판갑의 경우 반원형으로 휜 대상철판(帶狀鐵板)을 여러 겹 연결하여 상하의 유동성이 있도록 한 것으로 어깨로부터 상박까지 보호하는 갑옷이다. 일본에서는 견갑(肩甲) 또는 견개(肩鎧)라 하지만 전술한 견갑과 구분하기 위하여 상박갑이라 한다. 찰갑에도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동래복천동 11호분의 예로 보아 판갑의 상박갑과는 달리 소찰을 횡으로 혁결하고 종으로 수결한 상박갑이 있으나 정확한 구조는 보고되지 않았다.

④ 굉갑(肱甲) : 지금까지는 경갑(脛甲) 또는 노당(臑當)이라 하여 정강이를 보호하는 갑옷으



〈그림 1-46〉 가야의 肱甲
(동래복천동 11호분 출토)

로 인식되어져 온 것이다. 정확한 착장부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적으나 동래복천동 11호분의 찰갑 1벌 중에서 정강이를 보호하는 경갑(脛甲)으로서의 소찰이 출토되었으므로 팔뚝을 보호하는 굉갑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농수(籠手)라 하여 긴 소찰을 횡으로 혁결하여 수결하여 만든 굉갑이 있다(그림 1-46).

⑤ 상갑(裳甲) : 판갑의 하부에 수하되거나 찰갑의 요찰에서 직접 수하되어 골반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찰갑의 상갑은 모두 소찰로 이루어져 있으나, 판갑의 상갑은 소찰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대상철판(帶狀鐵板)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토례가 거의 없다. 일본에서는 초섭(草摺)이라 부른다.

⑥ 대퇴갑(大腿甲)과 경갑(脛甲) : 다리를 보호하는 갑옷으로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일본의 군마현태전시반총정구합(群馬縣太田市飯塚町九合) 출토 찰갑무장식륜토우(札甲武裝埴輪土偶 : 그림 1-47)[95]에는 소찰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찰갑무장식륜토우에는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찰갑 중 완전히 복원된 것이 없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동래복천동 11호분의 찰갑으로 보아 대퇴갑과 경갑은 형태가 다른 소찰로 만들어졌으며 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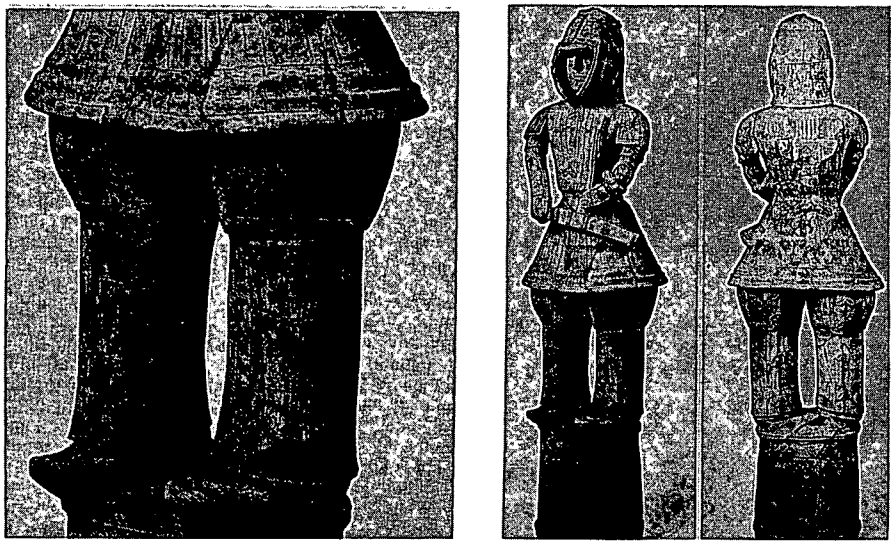

〈그림 1-47〉 찰갑무장식륜토우(『日本上代の甲冑』)
日本 群馬縣太田市飯塚町九合 출토

95) 末永雅雄, 1980 『增補日本上代の甲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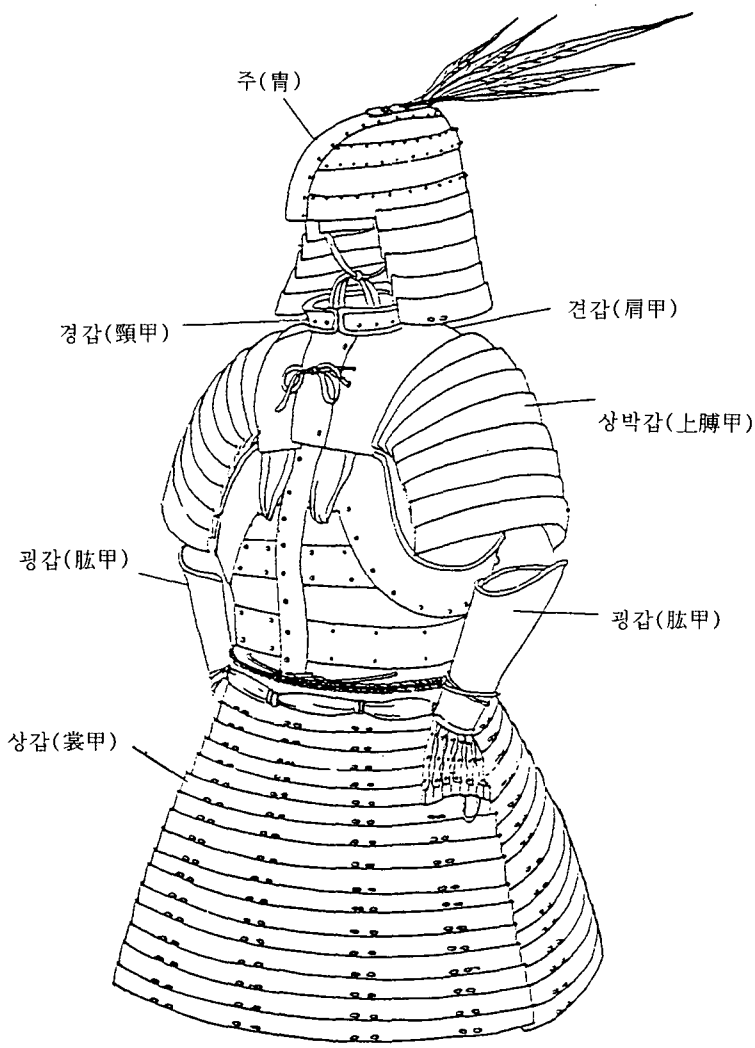

〈그림 1-48〉 甲冑의 명칭(「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硏究」)

라. 馬甲冑

기마전술에 있어서의 말은 어떤 무구류(武具類)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5세기대 이후 본격적으로 기마전술이 보급되면서 마구의 보급과 발달뿐 아니라 인간의 무장과 함께 말을 적의 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무장한 것이 도용(陶俑)이나 벽화에 묘사되어 있다.

(1) 馬 冑

고구려 고분벽화의 중무장 말에는 모두 마주가 표현되어 있으며, 가야나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례가 많아 그 구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중국 북송시대의 『무경총요(武經總要)』의 마갑도에는 면렴(面簾)이라 한다(그림 1-50).[96] 마주는 본체부(本體部 : 馬面部와 鼻先部로 구분됨)와 챙〔庇部〕, 볼가리개〔頰部〕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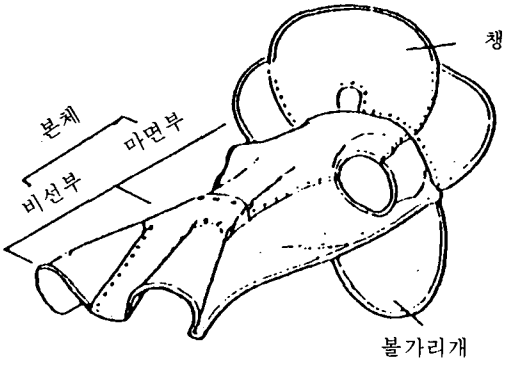

〈그림 1-49〉 馬冑의 부분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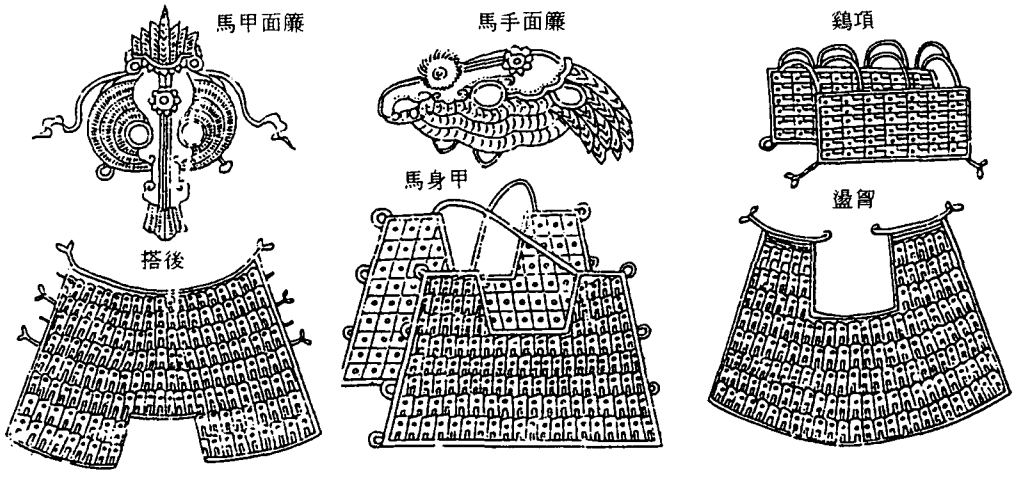

〈그림 1-50〉『무경총요』의 마갑도

(2) 馬 甲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묘사되어 있으나 출토된 실물자료가 거의 없다. 동래복천동 고분군이나 경주황남동 109호 3·4곽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나 정확한 형태가

96) 曾公亮, 1044 『武經總要』 前集卷 13.

보고되지 않아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출토된 철판의 형태가 여러 가지이므로 부위별로 사용된 철판의 모양이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북송시대의『무경총요』의 마갑도에는 계항(鷄項), 탕흉(盪胸), 마신갑(馬身甲), 탑후(塔後) 등으로 착장부위별로 마갑을 구분하고 있다(그림 1-50). 착장부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항은 경갑(頸甲), 탕흉은 흉갑(胸甲), 마신갑은 복갑(腹甲), 탑후는 고갑(尻甲)이라 한다.

3. 高句麗의 軍服飾

가. 高句麗의 時代 槪觀

기원전 1세기경 초기국가를 이룩한 고구려는 그후 더욱 발전하여 기원후 1세기 후엽 태조왕(太祖王 : 53~146)대에 이르면 그때까지 중국과 충돌하면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토확장을 꾀했다.

태조왕 4년(56)에 옥저(沃沮)를 복속시켜 함흥지방을 확보하고 2세기에 들어서는 요동진출을 도모하였다. 고구려의 요동진출은 그후 차대왕(次大王 : 146~165), 신대왕(新大王 : 165~179)대에도 계속되었다. 태조왕대에는 대외발전과 함께 대내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고씨(高氏)에 의한 왕위계승권이 확립되어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고국천왕(故國川王 : 179~197)대에는 더욱더 국가체제의 정비가 진전되어 부족적인 전통의 계루부(桂婁部)·절노부(絶奴部)·순노부(順奴部)·관노부(灌奴部)·소노부(消奴部)가 각각 방위(方位)를 표시하는 행정적인 5부, 즉 내부(內部 : 황부〈黃部〉)·북부(北部 : 후부〈後部〉)·동부(東部 : 좌부〈左部〉)·남부(南部 : 전부〈前部〉)·서부(西部 : 우부〈右部〉)로 바뀌어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왕위계승이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어 종래의 연장자를 족장으로 뽑던 관습을 청산한 것으로 왕권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구족장(舊族長)세력이 아닌 을파소(乙巴素)를 국상(國相)으로 기용한 것이나 관곡(官穀)을 대여하는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한 것도 강력한 중앙집권정치를 시행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후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의 대립을 통하여 더욱 국세를 신장시켰다. 동천왕(東川王 : 227~248)대에는 중국이 위(魏)·촉(蜀)·오(吳)의 삼국으로 분립하자 이들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오와 친교를 맺었고, 동천왕 16년(242)에는 중국과 낙랑(樂浪)을 연결하는 서안평(西安平)을 공격하였다가 위장(魏將) 관구검(毌丘儉)의 반격을 받아 수도까지 함락당하는 고초를 당했다. 그러나 미천왕(美川王 : 300~331)대에는 중국이 5호 16국의 혼란기에 접어들자 서안평을 점령하였고 낙랑을 공략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다.

고국원왕(故國原王 : 331~371)대에는 전연(前燕)과 백제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지만 소수림왕(小獸林王 : 371~384)대에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국력을 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소수림왕 2년(372)에 불교를 받아들여 고대국가의 사상적 통일에 기여하였고, 태학(太學)을 설립하여 유학(儒學)의 보급과 문화향상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듬해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의 정비를 가져왔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광개토왕(廣開土王)·장수왕(長壽王)대에 이르면 국토를 크게 확대하여 전성기에 이른다. 광개토왕(391~413)은 특히 활발한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는데 그것은 통구(通溝)에 남아 있는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에서 알 수 있다. 이 비에 의하면 서쪽으로는 후연(後燕)을 격파하여 요동진출을 이룩하였고, 동북으로는 숙신(肅愼)을 복속시켜 만주땅을 차지하였으며,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서해안의 임진강, 중부의 한강 상류까지 진출하였다. 그의 시호(諡號)를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라 한 것은 그의 정복사업에 따른 국토개척을 기념한 명칭이다.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광개토왕의 위업을 계승한 장수왕(413~491)대이다. 장수왕은 수도를 통구의 국내성(國內城)에서 대동강 유역인 평양으로 옮겼다. 대내적으로는 대동강 유역의 풍요한 경제적 부를 향유하고 고조선·낙랑 등의 문화적 유산을 차지하여 정치·경제·문화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서해를 통해 중국의 남북 양조(兩朝)와 통교를 하고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장수왕 21년(433)에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게 된 것은 고구려의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다.

장수왕 63년(475)에는 3만대군을 보내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서울 한성(漢城

：慰禮城)을 함락시키고 개로왕(蓋鹵王)을 죽이니 백제는 수도를 웅진(雄津：지금의 공주)으로 옮겼다. 이후 더욱 영토를 남으로 확대하여 죽령·조령 일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이르게 되었다. 장수왕 말기에 고구려의 영토는 한반도의 대부분과 요동지방 및 만주까지를 차지한 일대 제국을 형성하였다.

6세기 후반이 되면서 남쪽으로는 신흥세력인 신라에 밀리어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고, 북으로는 중국대륙을 통일한 수(隋)와 충돌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당시 중국이 남북조로 분리된 것을 이용하여 북조(北朝)의 북위(北魏)·동위(東魏)·북제(北齊)·북주(北周) 등과 차례로 통교하는 한편 바다를 이용하여 남조(南朝)의 동진(東晋)·송(宋)·제(齊)·량(梁)·진(陳) 등에도 사신을 보내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중국세력을 견제했다.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589),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신라가 수와 직접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고구려와 중국 왕조와의 친선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고구려와 수의 대립은 고구려로 하여금 북방의 돌궐(突厥)과 연결하게 하였으며, 고구려는 영양왕(嬰陽王) 9년(598)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인 수의 요서(遼西)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이에 수의 문제(文帝)와 양제(煬帝)는 차례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수는 국력이 쇠퇴하였으며 내란이 일어나 마침내 멸망한다.

수를 이은 당(唐)은 고구려와의 화친을 도모하여 서로 사신을 파견하고 포로를 교환하였다. 당태종(唐太宗)이 즉위하면서 세계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으로 여러 나라를 침략하였으며 고구려에도 압박을 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고구려는 북의 부여성(夫餘城：지금의 農安 부근)에서 남의 비사성(卑沙城：지금의 발해만〈渤海灣〉 부근)에 이르는 국경선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던 연개소문(淵蓋蘇文)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에 들어가 영류왕(榮留王)을 죽이고 보장왕(寶藏王)을 세워 스스로 대막리지(大莫離支)가 되어 무단적인 독재정치를 실시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신라와 당에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자 당은 고구려의 신라 공격을 중지하라고 하였으나 고구려가 거절하였다. 이에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시역(弑逆)을 문죄(問罪)한다는 구실로 고구려를 공격했다.

보장왕 5년(645) 당태종이 친히 수륙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안시성(安市城)에서 끝내 철수하고 말았다. 이러한 이민족의 공격에 대한 고구려의 승

리는 굳센 항쟁의 결과이다. 이렇게 강성했던 고구려는 그후 나당연합군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아 국력이 쇠퇴하고, 대내적으로 연개소문의 독재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결국 지도층의 내분으로 인해 자체분열이 일어났으며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되었다.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항상 현도군(玄菟郡)에 나아가 한(漢)나라의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받아갔다'와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祭天行事)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이름하여 동맹(東盟)이라 한다. 그들의 공식모임에서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한다. 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머리에 책(幘)을 쓰는데 중국의 책과 흡사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꼬깔과 같다.'라고[97] 초기의 고구려 복식이 중국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군복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고구려 초기의 복식이 중국과 유사하므로 군복식도 중국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군복식은 군사제도와 직접 관련된다. 군사조직이 군복식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부족연맹체하의 군대는 해체되고 국왕의 지휘하에 있는 전국적인 군대가 편성되었다. 국왕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통수권을 장악하고 귀족은 장군으로서 일정한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삼국의 군사조직은 신라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치조직의 변화를 통해 군사조직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삼국의 정치체제는 부족적인 다원조직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가는 집권조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정치조직이 군사조직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고구려의 정치조직은 율령이 반포된 소수림왕(小獸林王)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나,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더욱 확대·정비되었으리라 믿어진다. 고구려의

---

97) 陳壽,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女幘以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관등제도는 여러 차례 변하여 3세기 중엽까지는 10관등제(官等制)였다가 그후 6세기까지 12~13관등제로 발전하였으며 말기에는 14관등제로 완성되었다.

3년마다 선출되었던 대대로(大對盧)가 국정을 총괄하는 수상(首相)이며, 대소족장(大小族長)들은 과거의 지위에 상응하는 관등으로 개편·분화되어 태대형(太大兄), 조의두대형(皂衣頭大兄), 대형(大兄), 소형(小兄), 제형(諸兄) 등 형(兄) 계열로 편입되었다. 또 씨족원(氏族員) 가운데서 행정관료로 성장한 계층 혹은 조세와 공부 징수담당자들은 지위 고하에 따라 태대사자(太大使者), 대사자(大死者), 수위사자(收位使者), 소사자(小使者) 등 사자(使者) 계열로 등용된 것 같으며, 그외에 부족장의 가신체계가 분화되어 패자(沛者), 대로(對盧), 우태(優台), 선인(仙人) 등의 중앙관료조직에 흡수되어 일원적 관료체제를 이루었던 것이다.

관등조직의 변화는 중국의 사서(史書)에서 〈표 1-6〉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1-6〉　　고구려 관등조직 변천표

周　書	隋　書	唐　書	翰 苑 所 引 高 麗 記
① 大對盧	① 大對盧	① 大對盧	① 大對盧(吐捽)
② 太大形	② 太大形	② 鬱折	② 太大兄(莫何羅支)
③ 大形	③ 大形	③ 太大使者	③ 鬱折(主簿)
④ 小形	④ 小形	④ 皂衣頭大形	④ 大夫使者(謁奢)
⑤ 意候奢	⑤ 意候奢	⑤ 大使者	⑤ 皂衣頭太兄(中裹皂衣頭大形)
⑥ 烏拙	⑥ 烏拙	⑥ 大兄	⑥ 大使者(大奢)
⑦ 太大使者	⑦ 太大使者	⑦ 上位使者	⑦ 大兄加(纈支)
⑧ 大使者	⑧ 大使者	⑧ 諸兄	⑧ 拔位使者(儒奢)
⑨ 小使者	⑨ 小使者	⑨ 小使者	⑨ 上位使者(乙耆)
⑩ 褥奢	⑩ 褥奢	⑩ 過節	⑩ 小兄(失之)
⑪ 翳屬	⑪ 翳屬	⑪ 仙人	⑪ 諸兄(翳屬)
⑫ 仙人	⑫ 仙人	⑫ 古雛大加	⑫ 過節
⑬ 褥薩			⑬ 不節
			⑭ 仙人

고구려의 관등제도에도 골품제(骨品制)와 마찬가지로 신분계급적 성격이 강하였다. 즉 5관등인 조의두대형(皂衣頭大兄) 이상은 신라의 진골(眞骨)처럼 최고 귀족으로서 이들이 귀족회의를 구성하여 중요 국사를 처리하고 장군이 될 수 있었으며 그 밑에 제7관등인 대형(大兄), 제10관등인 소형(小兄), 그리고 그 이하의 관등 순으로 여러 신분계층이 있었던 것 같다.

삼국의 지방관제는 중앙관제의 발달과 함께 정비되어 갔다. 과거 부족들이 웅거하던 지역을 점령 병합하여 주(州)·군(郡) 등으로 편입하였다고 보여진다.

고구려는 서울과 지방을 각각 5부로 나누고, 지방의 5부에는 욕살(褥薩)이라는 장관이 있었으며 그 아래 각 성에는 처려근지(處閭近支 : 혹은 道使)가 있었다. 성은 과거 부족세력의 근거지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흡수된 것이며, 평양천도 이후에는 국내성(國內城 : 通溝)·한성(漢城 : 載寧)·평양성(平壤城) 등의 삼경제(三京制)가 실시되어 정치·군사적 요지로 삼았다.

이러한 관등의 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복제에 대하여 『북사(北史)』, 『신당서(新唐書)』 등의 중국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북사』에는 '고〈구〉려 사람은 머리에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변(弁 : 고깔)과 같다. 사인(士人)은 두 개의 새깃을 더 꽂고, 귀한 자는 그 관을 소골(蘇骨)이라 하는데, 흔히 자색(紫色) 나사(羅紗)로 만들고 금은(金銀)으로 장식한다. 큰 소매의 적삼과 통이 큰 바지를 입고, 흰 가죽띠에 누런 가죽신을 신는다. 부인은 치마 저고리에 선(襈)을 더한다.'라고 하였다.[98]

『신당서』에는 '고구려 왕은 오색 무늬의 옷을 입고 흰 나사(羅紗)로 관(冠)을 만들며 가죽띠에는 모두 금구(金釦)를 하였다. 대신(大臣)은 청라관(靑羅冠), 다음은 항라(絳羅)를 쓰는데, 두 개의 새깃을 꽂고 금은잡구(金銀雜釦)로 장식하였다. 적삼은 통이 넓고 바지는 아구리가 크며, 흰 가죽띠에 누런 가죽신을 신었다. 서민은 거친 베옷을 입고 변(弁)을 쓰며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둘렀다'고 하였다.[99]

---

98)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
"北史云 高麗人皆頭着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婦人裙襦加襈"

99)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
"新唐書云 高句麗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釦大臣靑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釦衫筒袂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幗"

이와 같은 일반 복식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으나 군복식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다. 壁畫에 묘사된 軍服飾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수도였던 오늘의 만주 집안현을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 유역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유역에 영조되었으며, 약 50여 기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대동강 유역에 압도적으로 많다.

고분의 안에 벽화를 그리는 풍습은 고구려 사람들의 영혼 불멸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벽화고분은 구조와 벽화의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인물풍속도(人物風俗圖)·인물풍속 및 사신도(四神圖)·사신도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물풍속도에는 주인공의 집안생활·해·달·별·장식무늬 등이 위주로 되어 있다.

벽화내의 건물 구조로는 기둥·두공·도리 등을 그려 목조건물의 형식을 재현시키고 있다. 집안생활에서는 가족·측근·시중드는 사람과 호위 등 남녀 인물이 묘사되어 있고, 내용은 행렬·사냥·씨름·전쟁·무악 등이며, 성곽·부엌·마구간·외양간과 우물 등 각종 건물도 묘사되어 있다. 천장에는 해와 달 그리고 입구에는 문지기도 있다.

인물풍속 및 사신도는 인물풍도와 함께 사신도가 있는 고분이다. 벽화내용은 인물풍속도의 벽화보다 복잡하다. 즉 인물풍속과 청룡·백호·현무·주작 등과 사신·비천·신선 등이 있다.

사신도 고분은 벽화가 사신도 위주이다. 고분의 네 벽에 사신을 그리고, 천장에는 황룔 또는 연꽃을 중심에 놓고 해·달·별·기린·신선·비천·구름·인동무늬 등을 그렸다. 그외에 장식무늬 인물 등을 그렸는데 문에는 문지기도 있다.

인물풍속도 고분은 단실분~2실분·감 또는 측실을 갖춘 고분인데, 이 점에서는 인물풍속과 사신도 고분은 동일하다. 다만 사신도 고분은 사신을 위주로 처리한 단실분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중 인물풍속도와 인물풍속 및 사신도에 갑주가 상세하게 묘사된 벽화가 있다.

압록강 유역인 통구에서는 삼실총(三室塚)과 통구12호분(通溝12號墳) 2기이며, 대동강 유역에서는 안악3호분(安岳3號墳), 안악2호분(安岳2號墳), 덕흥리벽화고분

(德興里壁畫古墳), 개마총(鎧馬塚), 쌍영총(雙楹塚), 약수리벽화고분(藥水里壁畫古墳), 팔청리벽화고분(八淸里壁畫古墳), 대안리1호분(大安里1號墳), 감신총(龕神塚) 등 9기이다.

(1) 通溝의 壁畵古墳

가) 三室塚[100]

집안현 통구의 태왕향 우산촌에 있는 봉토석실분(封土石室墳)으로 고구려의 벽화고분 중 특이한 묘실구조(墓室構造)를 한 4세기 말엽~5세기 초엽의 석실분(石室墳)이다. 연도(羨道)와 현실(玄室)로 구성되어 있으나 3개의 묘실이 'ㄷ'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묘실은 주실(主室 : 주피장자를 안치하는 묘실)과 종실(從室)의 관계로 보기는 힘든다.

삼실(三室)에는 각각 다른 주제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제1실은 사회풍속(社會風俗)을 주제로 한다. 동벽은 주벽(主壁)으로서 남녀의 묘주(墓主)가 집안에서 대좌하고 있는 모습과 네 채의 가옥이 그려져 있다.

남벽은 상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위쪽은 출행도(出行圖)를, 아래쪽은 수렵도(狩獵圖)를 그렸다. 북벽에는 공성도(攻城圖)가 그려져 있다. 서벽에는 연도(羨道)로 인해 좌우로 구분되는데 각각 문졸(門卒)이 그려져 있다. 천장에는 권운문(卷雲文)과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다.

2실과 3실의 네 벽에는 들보를 받치고 있는 역사(力士)·무사도(武士圖)가 그려져 있다.

갑주가 표현된 벽화는 1실 북벽의 공성도와 2실 서벽의 무사도이다.

• 攻城圖의 鎧馬武士(그림 1-51)

1실 북벽의 공성도에는 두 명의 장수가 성 앞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장면이 있다. 앞의 개마무사(鎧馬武士)는 창을 들고 뒤를 돌아보며 도망가고 있으며 뒤의

---

100) 池內宏, 1938 『通溝』 滿洲國通化省輯安縣高句麗遺蹟, 東京 ; 金元龍, 1974 『壁畫』(韓國美術全集 4) ;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高句麗古墳壁畫』, 東京 ; 朝鮮日報社, 1993 『集安高句麗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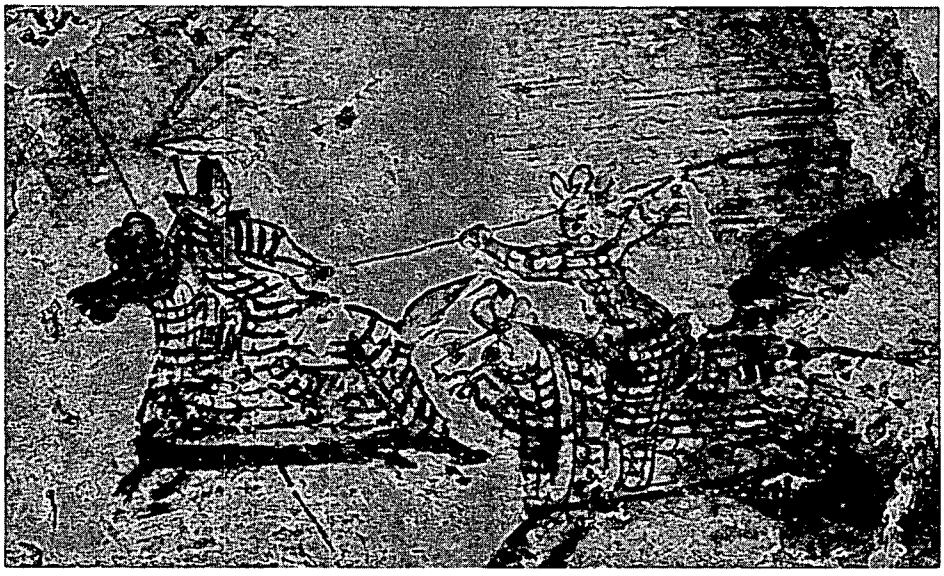

〈그림 1-51〉 三室塚 攻城圖의 개마무사(『통구』)

무사는 양손으로 창을 들고 뒤에서 도망가는 앞쪽의 개마무사를 공격하고 있다. 두 개마무사는 인물이 착장하고 있는 갑옷뿐 아니라 마갑주(馬甲冑)도 차이를 보인다.

마주(馬冑)에 있어서는 비선부(鼻先部)와 챙의 차이가 있다. 앞의 말은 비선부가 강조되어 있고 삼엽형(三葉形)의 챙이 넓은 편이지만 뒤의 말은 비선부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삼엽형의 챙이 좁은 편이다.

마갑(馬甲)의 경우 경갑(頸甲)과 흉갑(胸甲), 복갑(腹甲), 고갑(尻甲)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나 소찰(小札)의 표현 방법과 아래의 복륜(覆輪) 형태가 다르다. 말 엉덩이의 장식도 차이가 난다. 이 마갑주의 차이는 국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당시 마갑주가 일반화되었고 각 국가나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마갑주를 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사가 착장한 갑주의 차이는 투구와 갑옷 모두에서 차이가 난다. 정확한 투구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나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유기질, 즉 가죽이나 베로 제작된 투구로 추정되지만 장식에 있어 차이가 난다. 도망가는 무사는 별 장식이 없으나 공격하는 무사는 투구의 양쪽에 장식이 있다. 갑옷 또한 경갑(頸甲), 신갑(身甲), 상갑(裳甲), 상박갑(上膊甲), 대퇴갑(大腿甲)과 경갑(脛甲) 등이 모두 표현되

어 있으나 소찰의 표현이 완전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어 벽화의 표현 당시 두 무사의 국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현방법을 다르게 했을 수도 있으나 국가간에 찰갑의 제작방법이나 재료가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삼실총의 전투도는 고구려의 갑주뿐 아니라 타 국가의 갑주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 2실 西壁의 武士(그림 1-52)

2실 서벽의 무사는 찰갑(札甲)을 입고 오른손에는 창(槍)을, 왼손에는 환두대도(環頭大刀)를 들고 있다.



〈그림 1-52〉 三室塚 2실 서벽의 무사 (『通溝』)

투구는 소찰(小札)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부에는 붉은 색의 복발(伏鉢)이 있으나 복발의 상부에는 간주(幹柱)나 장식용 술은 없다. 주체(冑體)와 볼가리개의 구분이 없고 장찰(長札)이 아닌 방형(方形)의 소찰로 구성되어 있어 쌍영총이나 안악3호분 등의 벽화에 묘사된 주(冑), 즉 만곡종장판주(彎曲縱長板冑) 또는 종장판주(縱長板冑)와는 차이가 있다. 복발의 형태가 관모(冠帽)와 같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합천 반계제(磻溪堤) 가A호분에서 출토된 관모형복발주(冠帽形伏鉢冑)[101]와 같은 형식으로 생각된다. 주(冑)의 좌우에는 뿔모양의 장식이 있다.

경갑(頸甲)은 나팔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경갑 아래의 좌우에는 긴 수하식(垂下飾)이 있고, 중앙에는 끝에 둥근 것이 달린 삼각형의 장식이 3개 달려 있다. 찰갑에 있어서 신갑(身甲)과 상갑(裳甲)은 소찰의 표현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퇴갑(大腿甲)과 경갑(脛甲)은 구분이 없이 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소찰의 표현

101) 國立晋州博物館, 1987, 앞의 책.

방법은 신갑(身甲)과 동일하다. 상박갑(上膊甲)과 굉갑(肱甲)은 소찰이 아니며 색깔을 달리하여 표현했다. 상박갑은 갈색(褐色)으로 피혁제(皮革製)의 가능성이 있으며, 굉갑은 2매의 철판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갑주 외 신발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바닥에는 여러 개의 침이 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발은 신라나 백제, 고구려에서 종종 금동제(金銅製)로 출토된다(그림 1-53). 실용적인 신발은 아니나 무사가 착장하거나 권력의 상징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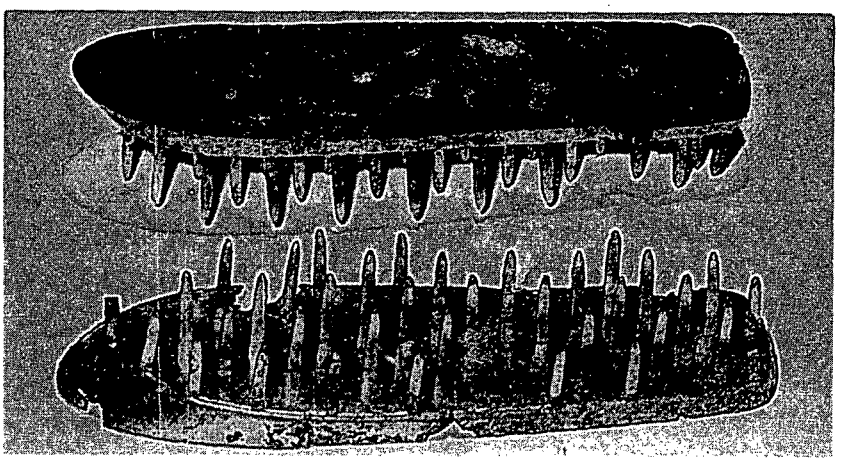

〈그림 1-53〉 고구려 고분 출토 金銅製 신발(『국립중앙박물관』)

나) 通溝12號墳[102]

묘실의 벽화에 마구간이 그려져 있어 마조총(馬槽塚)이라고도 한다. 묘실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쌍실분(雙室墳)이다. 주실은 연도에 측실이 좌우에 두 개가 있으나 부실에는 연도에 측실이 하나뿐이다.

주실의 남벽에 전쟁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세 사람이 묘사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장한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다. 그 뒤에는 말을 세워 놓고 왼팔을 앞으로 뻗어 무릎을 꿇고 있는 포로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칼을 높이 들어 포

102) 王承禮·韓淑華,「吉林輯安通溝第十二號高句麗壁畫墓」『考古』1964年 2期 ; 崔茂藏 譯, 1985 『高句麗·渤海文化－中國 考古學者의 發掘報告書－』;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앞의 책.

로를 참수(斬首)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그림 1-54). 세 무사가 모두 소찰로 만들어진 찰갑을 입고 있다.

포로와 개마무사는 머리부분의 상태가 나빠 투구가 명확하지 않으나 뒤쪽에 서 있는 무사는 복발(伏鉢)이 있는 소찰로 만들어진 주를 쓰고 있다. 주체(冑體)의 소찰 또한 장찰(長札)이 아닌 소형의 소찰(小札)로 이루어져 있고, 주체의 양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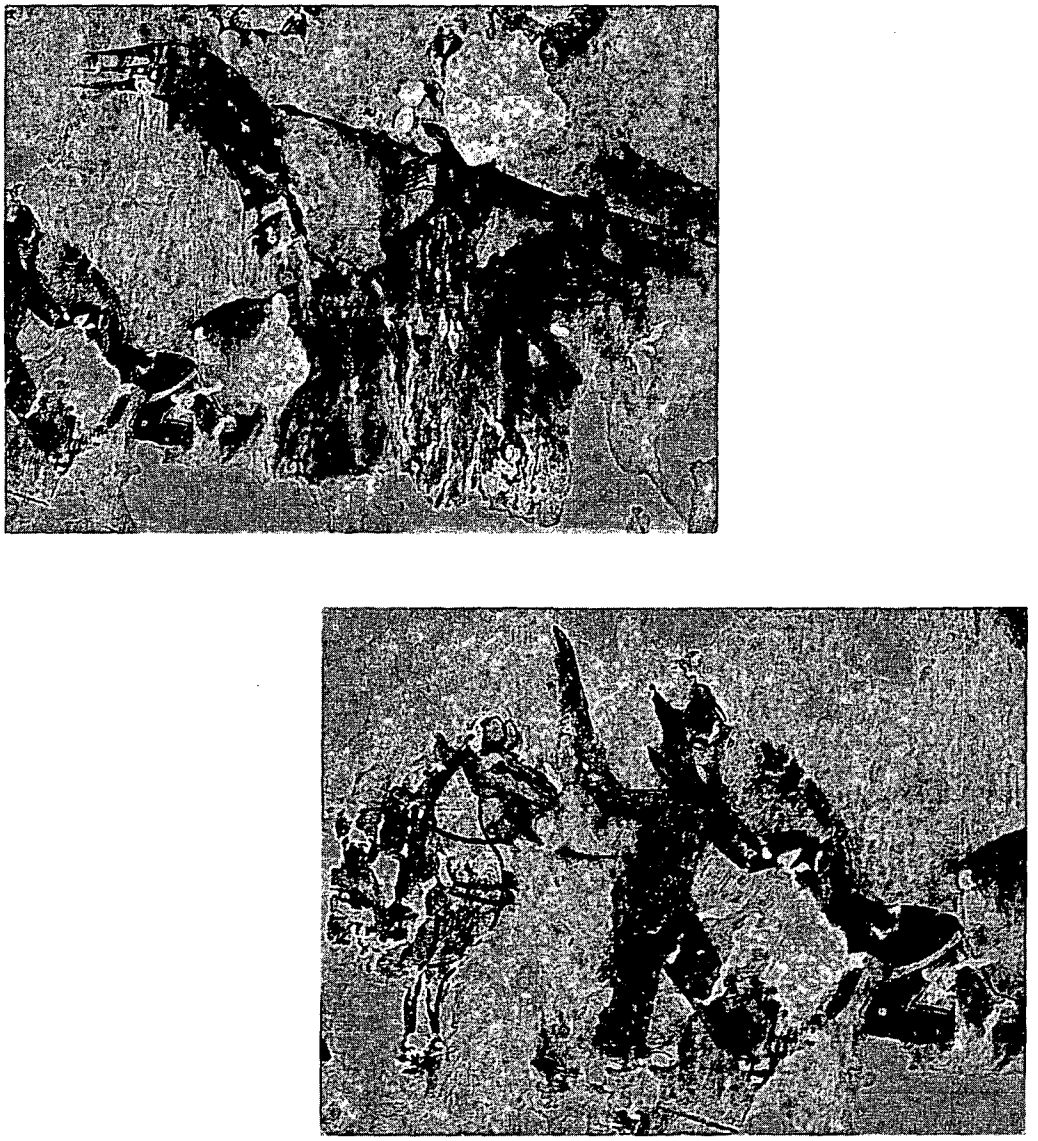

〈그림 1-54〉 통구12호분의 전투도(『고구려벽화 고분』)

뿔과 같은 장식이 있다. 그러므로 복발이 둥글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삼실총 2실 서벽 무사와 동일한 관모형복발주(冠帽形伏鉢冑)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뒤에 있는 말은 앞의 전투 중인 말과는 달리 마갑(馬甲)을 입고 있지 않고 마주(馬冑)만 쓰고 있다. 도(刀)를 가진 무사와 창을 가진 무사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투 중인 앞의 말이 입고 있는 마갑은 복갑(腹甲), 고갑(尻甲), 흉갑(胸甲)이 뚜렷이 구분된다. 세 무사가 착장하고 있는 찰갑은 큰 차이가 없어 통구12호분이 만들어진 4세기 말~5세기 초에 찰갑이 일반화되었음을 나타낸다.

(2) 大同江 流域의 壁畫古墳

가) 安岳3號墳[103]

황해남도 안악군 유설리에 소재하는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의 봉토분(封土墳) 중 최대규모이다. 연도(羨道), 전실(前室), 동서 2개의 측실(側室), 후실(後室) 및 회랑(回廊)을 갖춘 특이한 형태의 고분이다(그림 1-55). 전실의 서벽 좌측에 먹으로 쓴 약 70여 자의 문자(文字)가 있어 고분의 축조연대(築造年代)가 영화(永和) 13년, 즉 357년경임을 알 수 있다.

벽화는 피장자 생전의 생활을 다면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당시의 주거 풍습에 따라 벽화를 다음과 같이 각 실에 배치하였다.

서 측 실 : 고분의 주인 부부상과 그 측근자와의 생활－서벽·남벽·동벽 일부
전　　실 : 주인에게 복무하는 무사(武士)·의장대(儀仗隊)·고취악대(鼓吹樂隊)·씨름꾼－서벽·남벽·동벽
동 측 실 : 주인의 부엌 살림살이와 수레와 우마(牛馬)－서벽·북벽·동벽·남벽
회　　랑 : 주인의 출행행렬(出行行列)－동벽·북벽
후　　실 : 주인의 실내에서의 무악(舞樂)－동벽
연　　도 : 주인의 주거를 호위하는 위병(衛兵)－서벽

---

103)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8 『안악3호분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3집 ;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앞의 책 ; 최무장·임연철, 1990 『高句麗壁畫古墳』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3 『北韓文化財圖錄』

전실입구 : 벽사(辟邪 : 사귀를 쫓는 것)하는 귀면－팔각주의 주두(柱頭)
천 정 부 : 명복을 비는 연화문과 일상(日象), 월상(月象)－마개돌
천 정 부 : 묘실의 장식 문양－고임돌

갑주류가 묘사된 벽화는 동쪽 회랑의 동벽에 묘사된 남에서 북으로 진행하는 대행렬도(大行列圖 : 그림 1-55)이다. 벽화는 높이 2m, 길이 6m가 되는 한 장의 판석 위에 그려져 있다. 행렬도는 회랑의 동벽뿐 아니라 북쪽 회랑의 북벽에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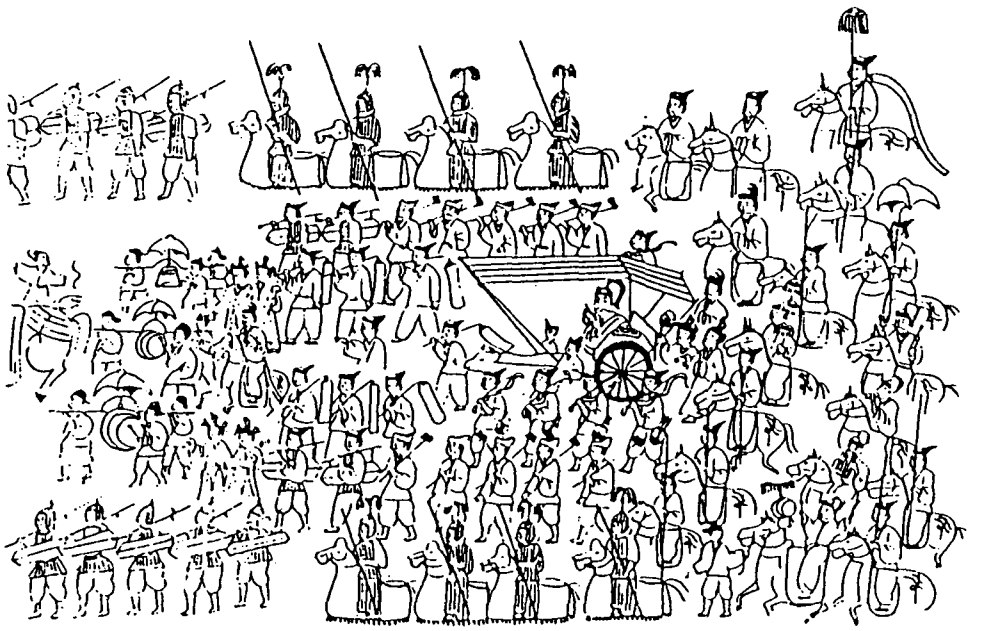

〈그림 1-55〉 안악3호분의 동벽회랑 行列圖(『안악3호분 발굴보고』)

속 연결되고 있으며 행렬도에 등장하는 인물만 하여도 약 250여 명에 달한다. 행렬도는 5열 또는 9열의 종대행렬을 조감도식으로 그렸으며 인물이 중첩되어 복잡한 전경을 이루고 있다. 묘사된 인물은 곡병산기수(曲柄傘旗手), 정절기수(旌節旗手), 궁전수(弓箭手), 부월수(斧鉞手), 창수(槍手), 환도수(環刀手), 개마기수(鎧馬騎手), 등롱수(燈籠手), 장폭기·거치형기수(長幅旗·鋸齒形旗手), 악대(樂隊), 시녀(侍女)와 무녀(舞女), 마부(馬夫), 검무인(劍舞人) 및 주인공과 수레이다. 갑주를 착장하고 있는 인물은 개마기수, 창수, 환도수, 궁전수이다. 전실에서 현실로 통하는 복도의 양벽에는 수문장인 듯한 무인의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鎧馬武士(그림 1-56)

개마기수는 마주(馬冑)를 쓰고 마갑(馬甲)으로 무장된 말을 타고 있다. 마주는 챙이 하나의 판(板)으로 되어 있다. 마갑은 경갑(頸甲)과 흉갑(胸甲), 복갑(腹甲)의 구분은 없으나 고갑(尻甲)은 별도로 표현하였다. 말의 엉덩이에는 다른 벽화고분, 즉 개마총이나 쌍영총과 같은 장식이 없다. 마갑의 아래에는 술을 달아 장식을 하였다.

말을 타고 있는 무사는 오른손에 장창(長槍)을 들고 있다. 투구는 복발(伏鉢)이 있는 종장판주(縱長板冑)로서 복발의 상부에는 간주(幹柱)를 세우고 술을 달았으며 장찰(長札)로 만들어진 볼가리개를 구비하고 있다. 목에는 나팔상의 경갑(頸甲)을 착장하고 있다. 소찰로 이루어진 찰갑(札甲)은 허리부분에서 횡선(橫線)에 의해 상갑(裳甲)과 구분된다. 상박갑(上膊甲)도 소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갑(肱甲)은 원통형의 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리를 보호하는 갑옷은 대퇴갑(大腿甲)과 경갑(脛甲)의 구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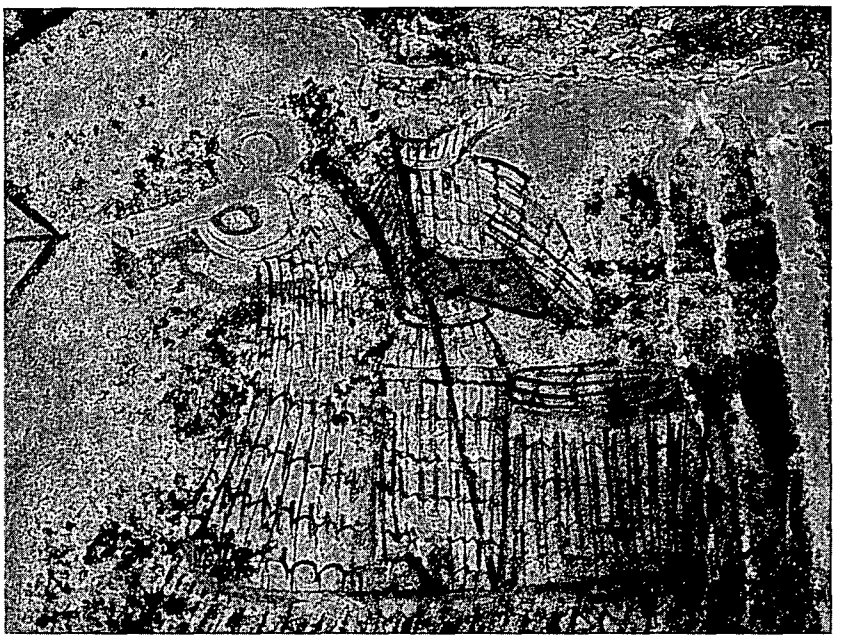

〈그림 1-56〉 안악3호분의 鎧馬武士(『北韓文化財圖錄』)

• 槍 手(그림 1-57)

갑주를 착장한 창수는 극(戟)과 같은 창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장육각형(長六角形)의 방패를 들고 있다. 투구는 개마기수의 투구와 같이 종장판주(縱長板冑)로서



〈그림 1-57〉 안악3호분의 槍手(『고구려벽화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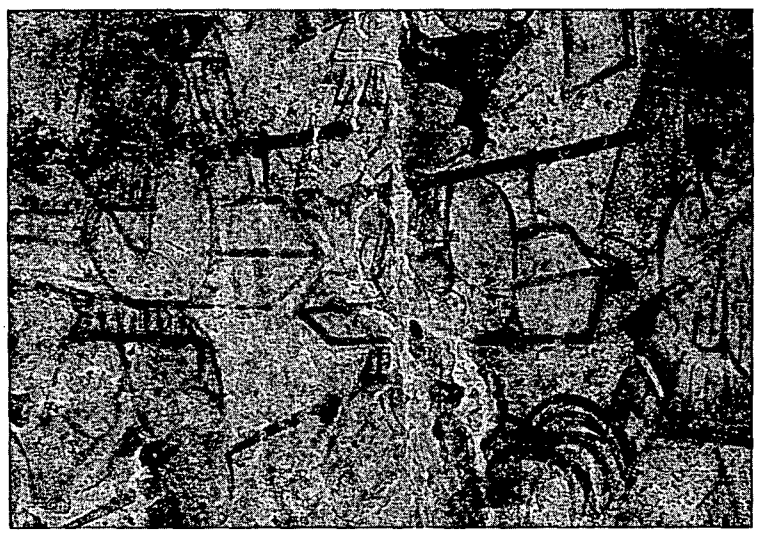

〈그림 1-58〉 안악3호분의 環刀手(『고구려벽화고분』)

볼가리개가 달려 있으나 복발이 없이 주의 상부에 짧은 장식을 하였다. 목에는 경갑(頸甲)을 두르지 않았다. 찰갑은 개마기수와 같이 허리부분에서 상갑(裳甲)과 구분되며 신갑(身甲)이나 상갑은 소찰의 형태가 같이 표현되어 있다. 상박갑(上膊甲)은 소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갑과는 분리되어 있다. 굉갑(肱甲)은 개마기수와는 색깔을 달리하여 표현되어 있으므로 유기질제일 가능성이 많다. 다리에는 찰갑을 착장하지 않고 대퇴와 경(脛)이 구분되어 찰갑과는 대조적이며 일반 평상복의 바지에 각반과 같은 것, 즉 유기질제 경갑(脛甲)을 착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59〉 안악3호분의 弓箭手
(『고구려벽화고분』)



〈그림 1-60〉 안악3호분의 斧鉞手
(『고구려벽화고분』)

• 環刀手·弓箭手·斧鉞手

환도수(그림 1-58)도 갑옷을 입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에 환두대도(環頭大刀)를 메고 창수와 동일한 방패를 들고 있다. 환도수는 모자[幘]를 쓰고 찰갑(札甲)을 착장하고 있는데 경갑(頸甲)은 없고 신갑(身甲)과 상갑(裳甲) 뿐이다. 다리와 팔에는 갑주를 착장하지 않았다.

궁전수(그림 1-59)는 왼쪽 어깨에 활을 메고 허리에는 호록(胡簏 : 화살통)을 차

고 있다. 환도수와 마찬가지로 갑옷은 신갑과 상갑 뿐이다. 목이나 팔, 다리에는 전혀 갑옷을 착장하지 않았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 중 부월수(그림 1-60)는 전혀 갑주를 착장하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있으며 책(幘)도 궁전수나 환도수와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개마기수(鎧馬騎手), 창수(槍手), 환도수(環刀手), 궁전수(弓箭手), 부월수(斧鉞手)가 각각 다른 갑주를 착장하고 있는 것은 계급에 의해 착장갑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마기수는 상위계급에 속하는 인물로 찰갑 일습을 모두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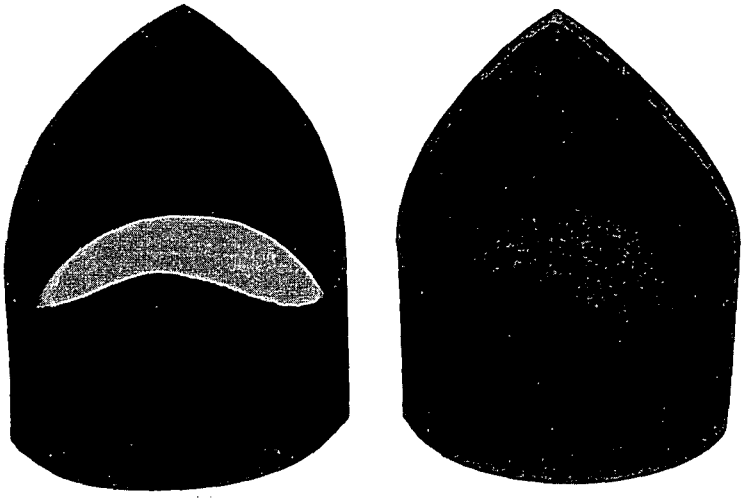

〈그림 1-61〉 안악3호분의 幘 복원품(『북한문화재도록』)

장한다. 다음 계급으로서의 창수는 경갑(頸甲)을 착장하지 않았으며 다리에도 찰갑을 착장하지 않았다. 또한 투구의 장식도 개마기수에 비해 간단하다. 환도수와 궁전수는 동일한 갑옷을 착장하고 있어 같은 계급으로 볼 수 있으나, 방패의 유무에 의해 계급의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부월수는 그 아래의 계급으로서 갑주를 전혀 착장하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다.

안악3호분의 벽화에 묘사된 무기를 가진 인물의 갑주 착장상태에 의해 당시 즉 4세기경 고구려의 군사는 4계급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갑옷, 즉 군복식에 의해 그 계급이 구분되어진 것이다. 또한 상위계급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창이므로 환두대도(環頭大刀)보다는 창(槍)이 중요한 무기였다. 기동력이 있는 기마전술(騎馬戰術)을 구사하는 데에는 창이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된 것이다. 창 또한 개마

기수와 창수는 차이가 있으므로 갑주뿐 아니라 무기에 있어서도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德興里 壁畫古墳[104]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 있는 묘실이 반지하에 축조된 석실봉토분이다. 묘실은 연도, 전실, 현실, 통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실의 벽면과 천장에는 전면에 걸쳐 벽화가 그려져 있다. 묘실 벽화의 벽면별 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덕흥리 벽화고분의 벽화배치 일람표

壁面	墓室 / 段	羨　道	前　室	通　路	玄　室
東	上	守門將怪物,	行列(중앙부분)	여주인공외출	南 七寶行事 北 蓮　花
	下	蓮花, 人物		人物, 馬	側 七寶行事 側
西	上	守門將怪物,	6郡太守	남주인공외출	南 馬 射 戱 北 建　物
	下	蓮花, 人物	7郡太守	人物, 馬	側 人物, 馬 側
南	上		東側 行列(前部) 西側 幕府官吏		東側 蓮　花 東側 蓮花, 廚
	下		東側 行列(前部) 西側 幕府官吏		側 側 蓮花·牛舍
北	上		東側 行列(後部) 西側 政事를 보는 主人公		주인공 실내 생활
	下		東側 行列(後部) 西側 政事를 보는 主人公		주인공 실내 생활
天障	窮隆部		狩獵, 傳說 및 信仰, 日, 月, 星, 雲文		梁, 二重斗栱, 割束
	持送部		蓮花文, 火炎文, 花文		운문·화염문·연화문
其他			各壁에 柱, 斗栱, 梁		各壁에 柱, 斗栱, 梁

연도 서벽에 고분의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문자(文字)가 종서(縱書)로 쓰여 있어 덕흥리 고분은 408년에 축조되고 축조익년(築造翌年)인 409년에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주류가 묘사된 부분은 전실 동벽 행렬도의 상하이다.

무장된 말을 타고 있는 개마무사(鎧馬武士 : 그림 1-63)는 행렬의 좌우에 4~5명이 묘사되어 있다. 머리에 깃장식이 있는 투구는 갑옷과 같이 갈색으로 표현되어

104) 社會科學院 朝鮮畫報社, 1986 『德興里壁畫古墳』 講談社 ;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앞의 책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3,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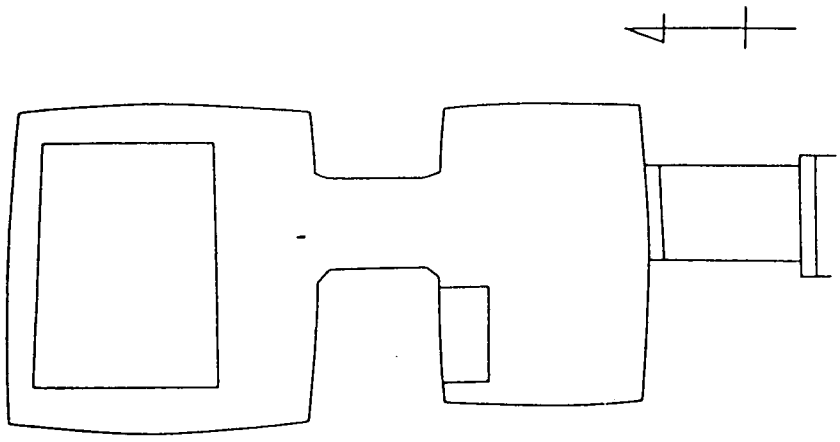

〈그림 1-62〉 덕흥리 벽화고분의 평면구조(『고구려벽화고분』)



〈그림 1-63〉 덕흥리벽화고분의 개마무사(『덕흥리벽화고분』)

있는데 유기질, 즉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진다. 주체(胄體)와 볼가리개가 표현되어 있다. 목에는 경갑(頸甲)을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있다. 갑옷은 갈색의 저고리 모양인데 소찰(小札)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갑(板甲)으로 볼 수 있으며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유기질, 즉 가죽 또는 나무로 만든 판갑으로 생각된다. 판갑의 아래에는 상갑과 다리를 보호하는 갑옷이 그려져 있다. 모두 사격자문(斜格子文)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소찰로 만든 것으로 보기는 힘든다. 아마 베로 만든 갑옷이라고 생각된다. 다리를 보호하는 갑옷은 상하의 구분이 전혀 없다. 고

구려의 고분벽화에 묘사된 갑옷은 대부분 찰갑이지만 덕흥리 고분과 감신총의 갑옷은 특이한 형태이다. 고구려 갑주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말은 마주와 마갑으로 무장되어 있다. 마주의 챙 부분에는 몇 개의 장식이 있다. 마갑은 부분적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엉덩이 부분에는 비교적 작은 소찰로 표현되어 있어 부위별 소찰의 차이를 나타낸다. 마갑의 아래에는 복륜을 한 것이 묘사되어 있다.

다) 安岳2號墳[105]

황해남도 안악군 대원군 상산리에 소재하는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5세기 중엽~6세기 초엽의 단실묘(單室墓)이다. 현실(玄室)의 내부에서는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며, 연도에서 관못 30여 개를 비롯하여 토기편과 관재편(棺材片)이 출토되었다.

벽화는 현실의 4벽과 천정 및 연도 벽면에서 호화찬란하게 그려져 있었으나 벽의 하부는 완전히 박락되고 상부에만 일부 남아 있다. 현실의 북벽에는 주인공의 일상생활이, 서벽에는 인물군 및 불꽃무늬가, 동벽에는 2명의 비천도가 그려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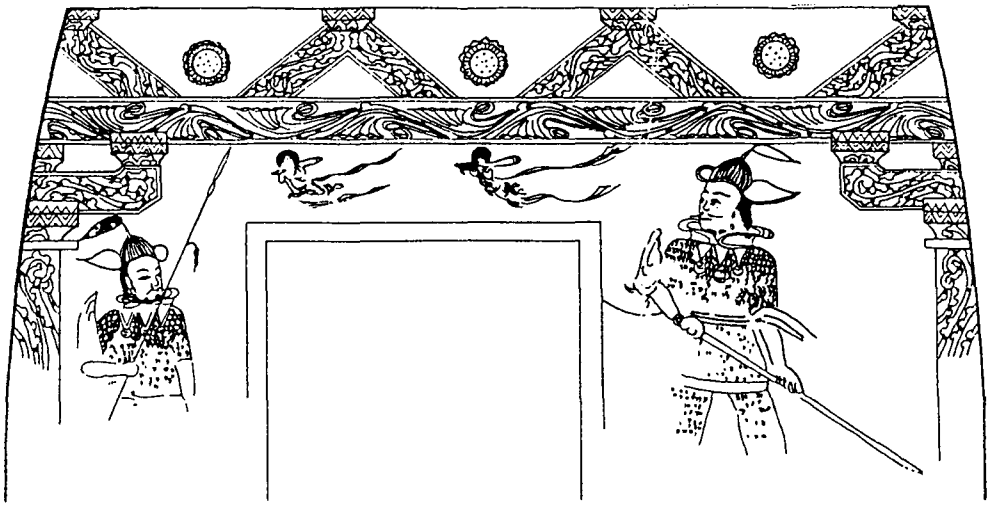

〈그림 1-64〉 안악2호분의 남벽무사도(『고구려벽화고분』)

105)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8 『안악2호분 발굴 보고』 유적발굴보고 4집;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앞의 책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3, 앞의 책.

으며, 갑주가 묘사된 벽화는 남벽 입구 좌우의 문지기 무사 1명씩과 연도 좌우벽의 무인이다. 모두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남벽 좌우의 무사(그림 1-64)의 갑옷은 동일한데 휴대한 무기만 각각 장창(長槍)과 환두대도(環頭大刀)로 차이가 있다. 투구는 복발(伏鉢)이 표현되지 않은 종장판주(縱長板冑)이다. 주의 상부에는 간주(幹柱)를 세워 술을 달았다. 볼가리개와 수미부가리개가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주의 아래쪽에 술의 방향으로 나부끼는 것처럼 묘사된 것이 볼가리개일 가능성이 있다. 이 볼가리개는 철제(鐵製)가 아니라 베로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

목에는 나팔모양의 경갑(頸甲)을 착장하였는데 경갑의 아래에는 방울 같은 것이 달린 삼각형의 장식 3개가 부착되어 있다. 찰갑은 몸과 상박(上膊)의 구분이 없이 표현되어 있으며 상갑(裳甲)과는 요대(腰帶)로서 구분된다. 상갑의 아래에는 복륜을 하였다. 다리를 보호하는 갑옷은 찰갑과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상하의 구분이 전혀 없다.

연도의 좌우 벽에는 갑옷을 입은 무사 앞으로 창을 든 무사가 일렬로 조그맣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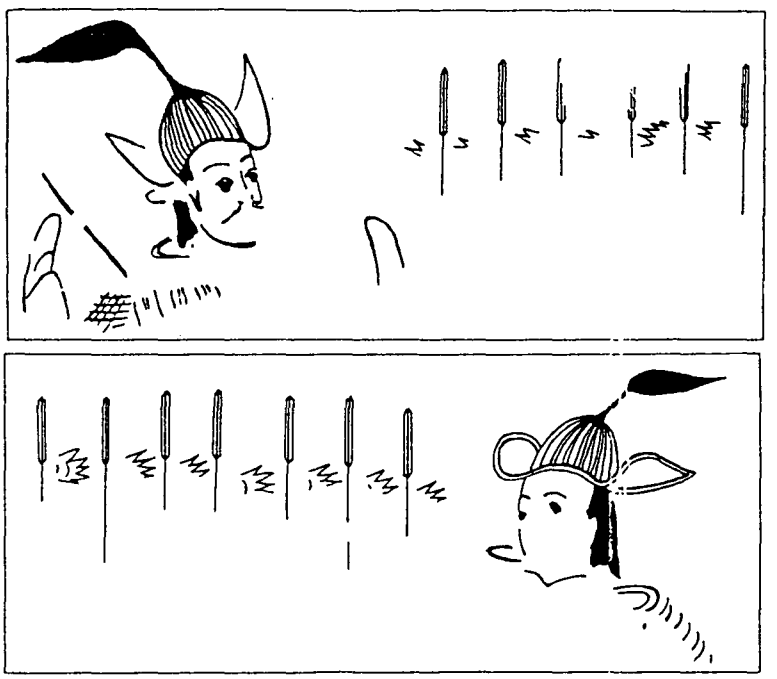

〈그림 1-65〉 안악2호분의 연도 동측벽(上)과
서측벽(下)의 무사(『고구려벽화고분』)

그려져 있으나 박락이 심하여 상부의 일부, 즉 투구의 관찰만 가능하다(그림 1-65). 투구는 남벽의 투구와 동일한 종장판주로서 복발이 없고, 주의 상부에는 간주를 세워 상모를 달았다. 볼가리개는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라) 鎧馬塚[106]

'총주착개마지총(冢主着鎧馬之塚)'이라는 문자가 있어 개마총이라 명명되었으며, 그 연대는 6세기대이다.

좌우 두 사람이 마부에 의해 끌려가는 말에는 등자(鐙子)가 달린 안교(鞍橋)가 얹혀 있고 궁둥이에는 각색(各色) 색지식(色紙飾)을 매단 싸리비 같은 입식(立飾)을 세웠다. 사람은 타지 않았으나 말의 앞에 '총주착개마지총'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주인공이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의 혼(魂)만이 타고 있는 것이며 이 특수한 성장마(盛裝馬)는 영혼(靈魂)을 천상(天上)으로 모시기 위한 말이다. 말은 마주(馬冑)와 마갑(馬甲)을 착장하고 있다(그림 1-66).

마주는 비선부(鼻先部)가 매우 넓게 표현되어 있고, 삼엽형(三葉形)의 챙의 주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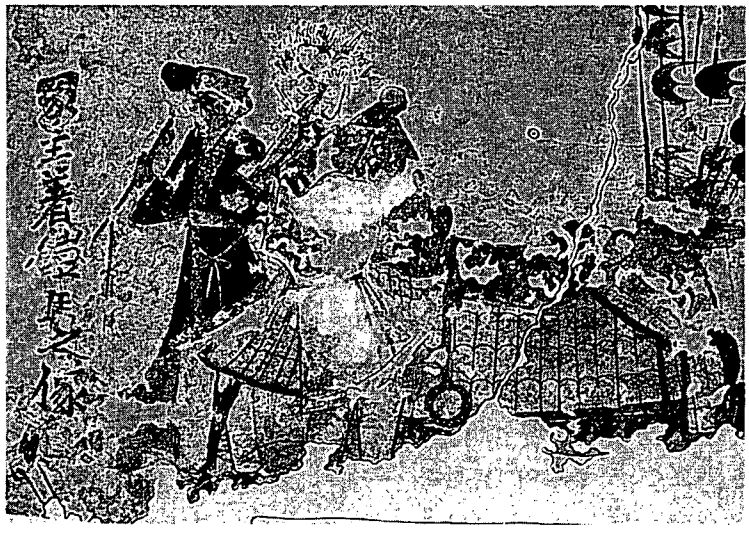

〈그림 1-66〉 鎧馬塚의 개마(『한국미술전집』 4 벽화)

106) 朝鮮總督府,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 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册, 東京 ; 金元龍, 1974, 앞의 책.

에 장식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마갑은 소찰의 표현이 상세하여 소찰의 중앙에 현수공(懸垂孔)까지 표현하였다. 흉갑(胸甲)은 일부 보이지만 경갑(頸甲)은 착장하지 않은 것 같다. 고갑(尻甲)과 복갑(腹甲)은 분리되어 제작되었으며, 복갑과 고갑의 가장자리에는 복륜(覆輪)을 하였는데 고갑이 2단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마갑 중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된 벽화이다.

마) 雙楹塚[107]

평안도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에 위치하는 5세기 말엽의 벽화고분으로 묘실(墓室)은 반지하(半地下)이며 연도(羨道), 전실(前室), 후실(後室 : 主室 또는 玄室이라고도 함)로 구성되어 있다. 전실과 후실 사이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 쌍영총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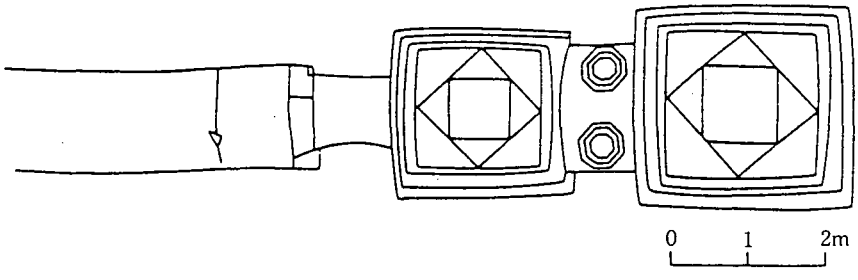

〈그림 1-67〉 쌍영총의 평면구조(『고구려벽화고분』)

벽화의 주제는 인물풍속(人物風俗) 및 사신(四神)이다.

연도의 동벽에는 손수레 2대와 기마인물(騎馬人物) 3명 및 30여 명의 남녀가 그려져 있으며, 서벽에도 손수레, 기마인물, 30여 명의 남녀가 그려져 있다.

전실의 동벽에는 청룡(青龍), 서벽에는 백호(白虎), 남벽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으며, 청룡과 백호는 생동감이 넘친다. 후실의 동벽에는 불교의식(佛教儀式)을 하는 그림, 서벽에는 사람 모양, 남벽에는 주작(朱雀), 북벽에는 현무(玄武)와 묘주인(墓主人)으로 생각되는 고구려 귀족부부가 장막을 걷어올린 방에 앉아 시주(施主)를 받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전실과 후실의 천장에는

107) 金元龍, 1974, 앞의 책 ;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앞의 책.

세 발 까마귀, 두꺼비, 봉황, 구름무늬, 꽃병무늬, 초롱무늬, 연꽃무늬 등이 그려져 있다.

갑주가 묘사된 것은 연도 동벽의 기마인물 3명 중 1명이다. 오른손에 장창을 들고 무장된 말을 탄 기마무사(騎馬武士)이다(그림 1-68). 투구는 복발(伏鉢)이 있는 만곡종장판주(彎曲縱長板冑)이며 복발의 상부에는 간주(幹柱)와 술이 달려 있다. 주의 아래에는 볼가리개가 표현되어 있다. 목에는 나팔상의 경갑(頸甲)을 두르고 전신에 찰갑(札甲)을 착장하였다. 신갑(身甲)과 상갑(裳甲)이 구분되는 허리부분에는 만곡(彎曲)된 요찰(腰札)이 표현되어 있다. 상박갑(上膊甲)과 굉갑(肱甲) 특히 굉갑(肱甲)이 소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리의 갑옷은 소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퇴갑(大腿甲)과 경갑(脛甲)의 구분이 없다.

마주(馬冑)는 희미하여 챙의 관찰이 어렵지만 비선부(鼻先部)는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마갑(馬甲)은 흉갑(胸甲)과 경갑(頸甲)은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복갑(腹甲), 고갑(尻甲)은 소찰의 방향이 뚜렷이 구분된다.



〈그림 1-68〉 쌍영총의 개마무사도(『한국미술전집』 4 벽화)

바) 藥水里 壁畫古墳[108]

언덕을 깎아 내어 만든 반지하식(半地下式)이며 방형(方形)의 전실과 후실을 가

108) 주영헌, 1963 「약수리벽화무덤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집 각지유적정리보고 ;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앞의 책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3, 앞의 책.

진 2실분이다. 출토유물은 금동제 귀걸이 한쌍과 금가락지, 은가락지 각 한쌍, 하트형 순금제 장신구 2개, 은제 관못 2개, 철제 관못 24개 및 관재 파편이 약간 출토되었다. 벽화의 내용이나 고분의 구조 및 출토유물로 보아 4세기 말엽~5세기 초엽에 걸친 고분이다.

벽화는 전실과 후실의 삼각 고임부를 제외한 전면에 그려져 있다. 후실인 현실(玄室)의 4벽에는 중앙에 기둥과 주두, 도리를 그렸으며, 상반부에는 피장자인 주인 부처를 비롯한 인물도(人物圖)와 사신도, 일월성수도 및 각종 괴운문(怪雲文)이 있다. 전실의 4벽 상반부에는 고구려 귀족의 당당한 위풍을 시위하는 장엄한 행렬도(行列圖)를 위시하여 성곽도(城郭圖)와 대규모적인 수렵을 진행하고 있는 수렵도(狩獵圖)가 있고, 하반부에는 부엌, 방앗간, 마구간, 큰말, 외양간, 수문장 및 주인공을 위시한 인물도가 있다. 그 밖에 현실에 있는 것과 같은 괴운문(怪雲文)이 여기저기에 그려져 있다.

갑주가 묘사된 곳은 전실에 그려진 행렬도(行列圖)이다. 행렬도는 주인이 타고 가는 수레를 중심으로 전배, 중배, 후배로 나눌 수 있으며, 후배의 기마인물 중 개마무사(鎧馬武士 : 그림 1-69)가 있다. 개마무사는 13명인데 모두 투구를 쓰고 찰갑을 입었으며 장창(長槍)을 들었다.

마갑은 소찰로 이루어진 것과 굵은 자색 줄과 흑색·자색 점의 배합으로 된 줄무늬가 상·중·하 세 부분에 있는 것이 있다. 즉 두 종류의 마갑이 존재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마갑을 입힌 개마가 서로 섞여서 정렬하고 있는데 소찰의 마갑은 철제 마갑이고, 후자는 가죽갑으로 볼 수 있다. 마주는 상세하지 않으나 챙이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마무사는 전신에 찰갑을 착장하고 있는데 투구의 상태로 보아 마갑의 차이에 의한 무사 갑옷의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개마무사의 뒤에는 갑옷을 입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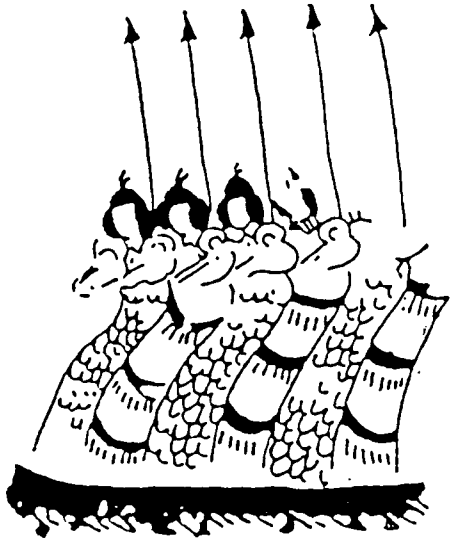

〈그림 1-69〉 약수리 벽화고분의 개마무사
(『고고학자료집』 3)

마무사 두 명이 있는데 앞에 선 무사는 환도(環刀)를 공중으로 쳐들고, 뒤에 있는 무사는 톱날형 장식이 달린 장창을 한 손에 들고 있다. 갑옷은 사선(斜線)으로 표현되어 있어 포제(布製) 갑옷일 가능성이 높다. 말은 무장을 하지 않았다. 무장한 말을 탄 무사와 무장을 하지 않은 말을 탄 무사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사) 八淸里 壁畫古墳[109]

전실(前室)과 후실(後室) 및 짧은 연도(羨道)로 이루어진 2실묘이다. 연도를 제외한 묘실(墓室) 전벽(全壁)에 벽화가 그려져 있으나 천정(天井)이 붕괴되어 내부가 흙으로 차 있었으므로 벽화의 상태가 나쁘다. 전실 동벽의 출행도(出行圖)에 갑주가 묘사되어 있다. 찰갑(札甲)으로 무장하고 마갑(馬甲)을 착장한 말을 타고 있으나 상태가 나빠 구체적으로 갑주의 형식을 알 수 없다(그림 1-70).

아) 大安里 1號墳[110]

평안남도 용강군 대안리(구 용강군 성엄면 성하리)에 위치한 방형의 현실에 전실과 연도가 달린 2실분이다. 조사 전에 대부분 도굴되어 출토유물은 관못 1점과 흑색단지 1점뿐이다. 묘실의 구조와 벽화의 내용으로 보아 5세기 초엽~중엽의 고분이다.

벽화는 묘실의 각벽과 천정에 풍속도와 방위를 표시하는 사신도 및 성숙(星宿) 및 각종 문양을 그렸다. 현실의 네 벽은 중간에 있는 연화당초문대(蓮花唐草文帶)에 의해 상하로 구분되어 하부에는 사신도와 역사도(力士圖)가 있고 상부에는 북벽에 가거도(家居圖), 동벽에 건물도(建物圖), 남벽에 직녀도(織女圖) 등이 있다. 전실에는 남벽 동측벽면에 있는 수렵도(狩獵圖)를 제외하면 행렬도(行列圖)에 포괄된다. 전실에서 현실로 통하는 복도의 양벽에는 수문장인 듯한 무인의 그림이

109) 전주농, 1963 「대동군 팔청리 벽화무덤」『고고학자료집』 3집 각지유적정리보고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3, 앞의 책.

110)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9 「평안남도 용강군 대안리 제1호묘 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 2집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3, 앞의 책 ;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 앞의 책.



〈그림 1-70〉 팔청리 벽화고분의 개마무사 (『고고학자료집』 3)



〈그림 1-71〉 대안리 1호분의 개마무사 행렬도(『고고학자료집』 2)

희미하게 남아 있다.

전실 동벽에 대부분이 박락되었지만 상부에 기마 창수들의 행렬도(그림 1-71)가 일부 남아 있다. 마갑으로 무장된 개마를 탄 무사들은 투구와 찰갑을 착장하였으나 박락이 심하여 구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자) 龕神塚[111]

전실과 후실로 이루어진 2실묘이다. 전실의 양쪽에 안악3호분과 같이 감(龕)이 설치되어 있어 감신총이라 한다. 전실 서벽의 감내(龕內) 좌측 옆벽과 후실 남벽의 행렬도에 갑옷을 입은 무사가 묘사되어 있다.

그중 가장 상태가 양호한 것이 감내 좌측의 무사이다(그림 1-72 右). 환두대도를 들고 서 있는 무사이다. 투구는 종장판주(縱長板冑)이며 상부에 세 가닥의 깃을 꽂았는데 주의 바깥을 희미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어 특징적이다. 볼가리개와 수미부가리개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갑옷은 신갑(身甲), 상갑(裳甲), 상박갑(上膊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갑과 상갑은 허리의 띠로써 구분되나 신갑과 상박갑은 구분되지 않는다. 전체를 사선(斜線)과 횡선(橫線)으로 표현하고 있어 포

111)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 第二册, 二 高句麗時代, 乙 平壤長安地方(平安南道平壤附近), 東京, pp. 139~148.

제(布製) 갑옷일 가능성이 크다. 다리에는 갑옷을 착장하지 않았다. 경갑(頸甲)은 전방부(前方部)가 겹치도록 표현되어 있다.

행렬도의 무사(그림 1-72 左)는 환두대도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는 두 사람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부는 관찰할 수 없다. 투구는 종장판주이며 볼가리개나 수미부 가리개가 없고 상부에 술을 달았으나 두 무사가 차이가 있고 전술한 감내의 무사와도 차이가 있다. 경갑(頸甲)은 감내의 무사와는 달리 전방부가 겹쳐지지 않도록 표현되어 있다. 갑옷은 사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횡선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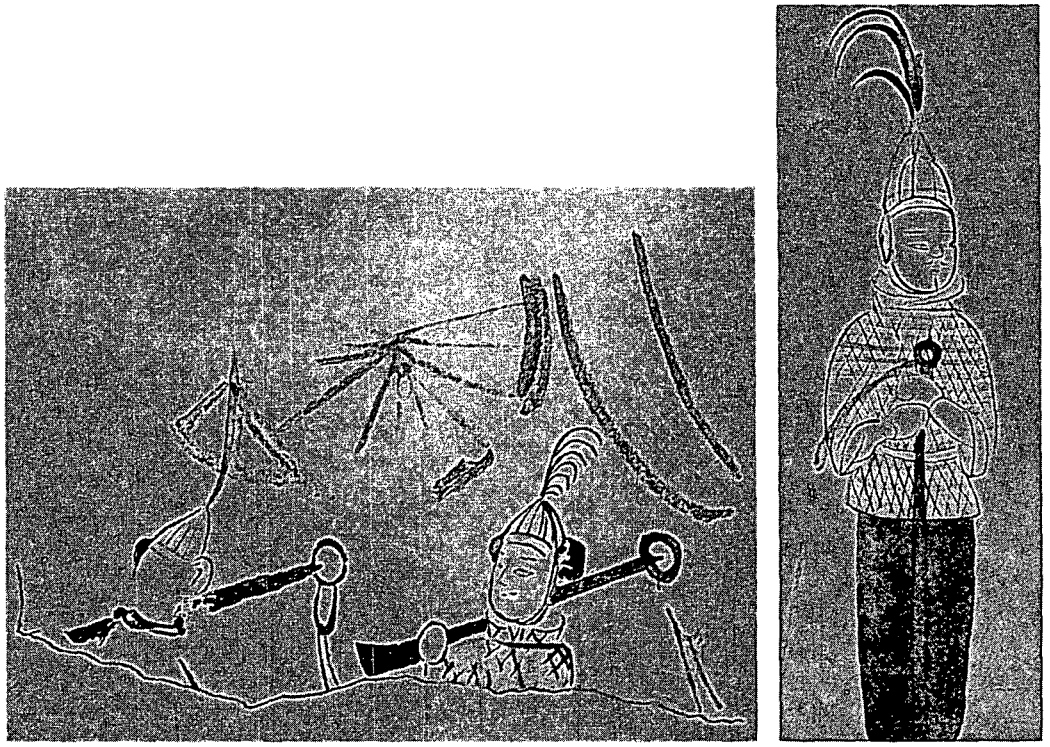

〈그림 1-72〉 감신총의 개갑무사(『朝鮮古蹟圖譜』)

라. 出土 軍服飾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묘사된 갑주는 집안현에 2기의 고분, 대동강 유역에 9기 등 총 11기의 고분에서 발견되며 그 수량은 많다. 그러나 유적에서 출토되는 실물 갑주자료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1) 북창군 대평리 유적의 찰갑[112]

대동강 기슭에 있으며 1967년 발굴 조사되었다. 두 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지점은 청동기시대(青銅器時代)의 집자리와 무덤으로 이루어진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제2지점은 철기시대(鐵器時代)의 유적으로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원전 2~1세기대인 아래층과 기원후 1~2세기대인 가운데층에서는 주거지(住居址)가 조사되었다. 기원후 3~4세기대인 위층에서는 아무런 유구(遺構)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 층에서 철도자(鐵刀子), 철촉(鐵鏃), 철거(鐵鋸), 철부(鐵斧)와 함께 철제(鐵製) 소찰(小札)이 출토되었다.

소찰은 모두 5개이며 모두 단조로 제작한 것으로 두께가 매우 얇아 2~3㎜ 정도이다. 그 형태에서 3개의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머리부분이 호형(狐形)을 이루고 좁고 긴 형태이다. 소찰의 가장자리에 1.2㎜의 간격을 두고 홈선을 냈다. 〈그림 1-73-①〉은 잔존길이 10.8㎝, 너비 2.4㎝이며 〈그림 1-73-②〉는 잔존길이 9.0㎝, 너비 2.4㎝인데 머리부분이 3㎜ 가량 넓다. 소찰의 결합을 위한 구멍이 위의 가운데에 한 개, 좌우에 상하로 두 개씩 있다.

둘째는 소찰의 머리쪽에 나란히 두 개의 구멍을 낸 것이다. 〈그림 1-73-⑤〉는 잔존길이 9.3㎝, 너비 2.4~2.6㎝이며 머리부분이 장방형이고, 〈그림 1-73-④〉는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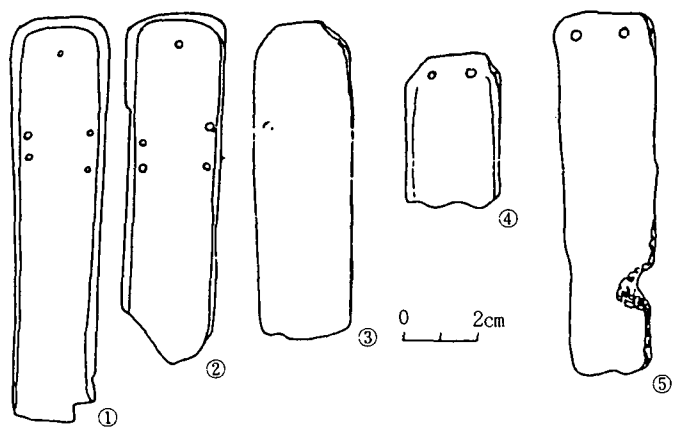

〈그림 1-73〉 대평리 유적 출토 철제 소찰(「북창군 대평리 유적 발굴보고」)

112) 정찬영, 1974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 제4집

존길이 4cm, 너비 2.4cm이며 모를 죽인 펜촉 모양인데 가장자리에 홈선을 냈다.

셋째는 머리부분이 모를 죽인 펜촉 모양이며 구멍이 한 개만 확인되었다(그림 1-73-③).

(2) 우산하41호고분[113]

1974년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어 조사한 5세기 중엽의 고구려고분이다. 묘실은 거대한 판석(板石)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묘실(墓室)의 벽면, 천정, 관대(棺臺) 및 연도(羨道)의 바닥까지 0.5cm 정도의 두께로 백회(白灰)를 발라 벽면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대부분 박락되어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다. 일부 도굴되긴 하였으나 마구류(馬具類) 및 찰갑(札甲)의 소찰이 출토되었다.

115점의 소찰(그림 1-74)은 대부분 좁고 긴 설형(舌形)이다. 가장자리는 가볍게 안쪽으로 구부러졌다. 상단(上端)은 둥글고 하단(下端)은 모서리를 잘라내었다. 소찰의 전체에 혁결(革結), 수결(垂結), 복륜(覆輪)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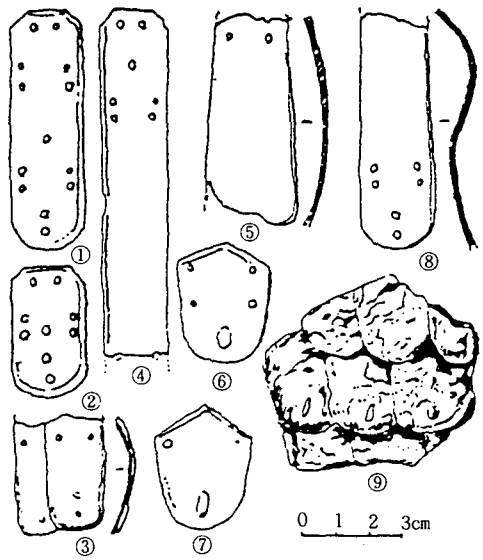

〈그림 1-74〉 우산하41호묘 출토 소찰
(『고구려·발해문화』)

전체 7종류가 보고되었다. S자형으로 굽은 것(그림 1-74-⑧)은 요찰(腰札)이다. 〈그림 1-74-⑤〉는 주(胄)의 장찰(長札)로 생각되며 나머지는 부위별로 사용된 것이다. 〈그림 1-74-⑥·⑦·⑨〉는 동일한 형태의 소찰인데 아래부분이 삼각형인 점이 특이하다. 소찰이 매우 짧기 때문에 유동(流動)이 심한 곳에 사용된 소찰이다. 이러한 소찰 중에는 결합을 위해 사용된 가죽끈이 수착(銹着)되어 있는 것도 있다.

---

113)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吉林集安的兩座高句麗墓」『考古』 1977年 2號 ; 崔茂藏 譯, 1982 『高句麗·渤海文化 — 中國考古學者의 發掘報告書 —』

마. 高句麗 軍服飾의 特徵

고구려의 군복식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4세기대 이후이다. 기록상으로는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섭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군복식류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4세기대 이후 우수한 기마전술을 바탕으로 영토확장을 해 나간 고구려에서는 기마전술에 유리한 찰갑이 발달한다. 찰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군복식 문화는 4세기 중엽 이후 철제품(鐵製品)을 중심으로 신라와 가야지역에 전파된다.

고구려에 있어서 찰갑의 착장은 4세기대의 분묘인 안악3호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급에 따라 찰갑 일습이기는 하지만 부속갑(附屬甲)의 차이가 난다. 무관에 있어 최상급자의 경우, 투구로부터 경갑에 이르기까지 모든 갑주를 다 구비하나 점차 하급자일수록 부속갑주의 종류는 줄어든다. 즉 4세기대 이전에 체계화된 군사조직을 구비하였으며 계급체계와 그에 따른 군복식 문화는 세분된다.

모든 갑주가 철제찰갑(鐵製札甲)이 아니라 덕흥리(德興里) 벽화고분에서와 같이 혁제(革製) 판갑(板甲)도 있고 감신총(龕神塚)과 같이 포제(布製) 갑옷도 있어 그 종류는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마갑주(馬甲冑)에 있어서도 계급의 차이가 뚜렷이 반영된다. 통구(通溝)12호분와 같이 창을 가진 무사와 칼을 가진 무사는 차이가 있다. 즉 칼을 가진 무사의 말에는 마갑을 입히지 않으나 창을 가진 무사의 말에는 마갑을 입힌다. 당시 공격력이 뛰어난 기마전술(騎馬戰術)에 유리한 창이 무기로서 우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군복식은 벽화 자체가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출토 유물의 수량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벽화의 갑주와 고구려 갑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가야의 갑주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가야지역에서 많은 찰갑이 출토되었으나 상세한 것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내의 보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4. 百濟의 軍服飾

가. 百濟의 時代 槪觀

마한(馬韓)의 소국인 백제국(伯濟國)으로부터 발전하여 기원전후에 초기국가를 형성한 백제는 한군현(漢郡縣)의 압박으로 정치발전의 제약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면서 성장하여 3세기 중엽에 고대국가로 성장한다.

3세기 중엽인 고이왕(古爾王 : 234～286)대에 이르면 대외적으로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하는 등 정복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고 서진(西晋)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발전을 하며 대내적으로는 관제를 정하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여 정치제도의 개혁을 한다. 이러한 개혁은 백제가 전제왕권의 기반을 확립하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려는 표현이다.

4세기 후반인 근초고왕(近肖古王 : 346～375)대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여 그의 전성시대를 맞이한다. 남으로 마한의 나머지 땅을 정복해 남해안까지 진출하고, 북으로는 고구려를 쳐서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하게 하였다. 나아가 동진(東晋)·왜(倭)와 교섭을 하였는데 이때의 백제인의 해외진출은 눈부신 것이었다. 또한 안으로는 부자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을 확정하고 국사(國史)인 『서기(書記)』를 편찬하게 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의 아들 근구수왕(近仇首王 : 375～384)에 이르러 더욱 촉진되었으며, 이어 침류왕(枕流王) 원년(384)에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고대국가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5세기에 들어와 고구려가 강성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의한 한성(漢城)의 함락과 웅진남천(熊津南遷)은 백제에 한강 유역의 상실이라는 커다란 시련을 안겨 준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왔다.

이러한 때에 백제의 부흥을 꾀한 사람이 동성왕(東城王 : 479～501)이다. 신라인을 왕비로 맞아들여 고구려의 침략에 대해 신라와 동맹관계를 굳게 하고 외척세력을 배제하여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무령왕(武寧王 : 501～523)은 중국 남조

(南朝)의 양(梁)에 사신을 보내 국교를 강화하였다.

백제가 본격적인 중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성왕(成王 : 523~554)대이다. 웅진에서 사비(泗沘 :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夫餘)라 하였으니, 이로써 백제는 안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 해외의 여러 나라와 교통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성왕은 대외적인 중흥을 꾀하여 한강 유역을 신라와 협동하여 고구려로부터 빼앗았으나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 신라에 상실하였다. 이때부터 신라와 백제의 싸움은 본격화하였다. 의자왕(義慈王 : 641~660)이 즉위하면서 신라와의 싸움은 격렬해졌다. 이에 신라는 당의 도움을 받아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군복식은 군사제도와 직접 관련된다. 군사조직이 군복식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부족연맹체하의 군대는 해체되고 국왕의 지휘하에 있는 전국적인 군대가 편성되었다. 국왕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통수권을 장악하고 귀족은 장군으로서 일정한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삼국의 군사조직은 신라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치조직의 변화를 통해 군사조직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삼국의 정치체제는 부족적인 다원조직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가는 집권조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정치조직이 군사조직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백제의 정치조직은 고이왕(古爾王) 때 정비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를 지나 사비(泗沘) 천도 후에 더욱 정비되었다고 보아진다.

관등제도는 좌평(佐平)에서 극우(剋虞)까지의 1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좌평(佐平) 및 달솔(達率)로부터 내솔(奈率)까지의 제솔(諸率)과, 장덕(將德)으로부터 대덕(對德)까지의 제덕(諸德), 그리고 문독(文督) 이하로 3분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기 자색(紫色), 비색(緋色), 청색(靑色)으로 그 복색(服色)이 구분되어 있다. 이 구분은 신라의 경우와 같이 신분에 의한 관등 차이를 표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백제의 관등별 복색은 〈표 1-8〉과 같다.

〈표 1-8〉　　百濟의 官等組織 및 服色

等級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官等名	佐平	達率	恩率	德率	扞率	奈率	將德	施德	固德	季德	對德	文督	武督	佐軍	振武	剋虜
服色	紫　衣						緋　衣					靑　衣				
冠飾	冠을 銀花로 裝飾함						無									
帶色	紫帶	紫帶	紫帶	紫帶	紫帶	紫帶	紫帶	粗帶	赤帶	靑帶	黃帶	黃帶	白帶	白帶	白帶	白帶

행정은 내신좌평(內臣佐平)이 수상격이며 그 아래에 내두(內頭), 내법(內法), 조정(朝廷), 위사(衛士), 병관(兵官), 좌평(佐平)이 있어 후세의 육조(六曹)와 비슷한 행정분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를 사비(泗沘)로 옮긴 후에는 내관(內官) 12부, 외관(外官) 10부 등 22부에 이르는 관부(官部)의 정비를 보았으며, 재상(宰相)은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 기타 모든 관서(官署)의 장(長)도 3년마다 교체되었다. 이것은 과거 족장 선거의 유풍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귀족수의 증가라는 자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삼국의 지방관제는 중앙관제의 발달과 함께 정비되어 갔다. 과거 부족들이 웅거하던 지역을 점령 병합하여 주(州)·군(郡) 등으로 편입하였다고 보여진다. 백제는 서울을 5부(部)로, 지방을 6방(方)으로 나누고 지방의 각 방에는 방령(方領)이라는 장관(將官)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 군장(郡將)을 두었다. 한편 웅진시대에는 지방의 큰 도시에 22담로를 설치하여 중앙의 왕족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이는 아마도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듯하다.

이러한 중앙관제와 지방제도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군사제도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중앙관제와 지방제도가 곧 군사제도와 직결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잡지 복색조에 백제의 복제에 대하여 『북사(北史)』를 인용하여 '백제의 의복을 고구려와 대략 같다'고 하였다. 일반복색은 관직에 따라 관식(冠飾), 대색(帶色), 의색(衣色) 등이 차이가 있으며 또한 고구려와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군복식은 3세기대 이후 지속적으로 고구려와 대립(對立) 또는 화친

(和親)을 하였으므로 고구려의 기마전술을 받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고구려의 군사체계나 군복식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이므로 고구려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문헌 기록은 없다.

다. 出土 軍服飾

(1) 夢村土城의 骨製 小札[114]

1984년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초기의 토성으로 밝혀졌으며 골제(骨製) 소찰(小札 : 그림 1-75)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되는 것이다.

길이 10.1~11.4cm, 너비 2.4~3.3cm, 두께 0.3~0.6cm로 구멍은 가운데에 1개의 현수공(懸垂孔), 위에 상하로 한쌍의 현수공, 좌우에 상하로 각각 두쌍씩의 혁결공(革結孔)이 뚫려 있다. 철제 소찰과는 달리 복륜공(覆輪孔)이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수량은 적으나 5겹 정도 쌓여 출토되었으므로 찰갑 한 벌 자체가 매납된 것으로 생각된다. 골제 소찰의 출토례는 거의 없는데 고구려의 통구12호분 벽화의 찰갑이 황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골제 찰갑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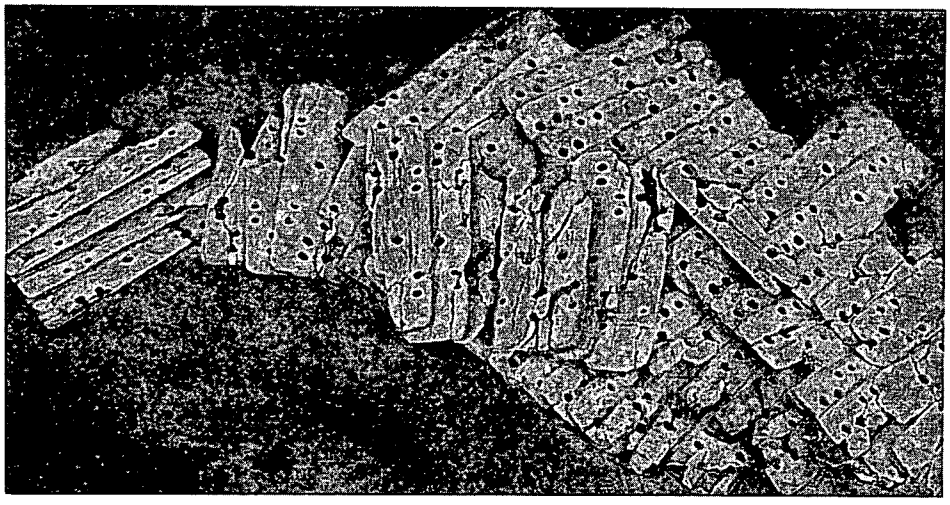

〈그림 1-75〉 몽촌토성의 골제 소찰(『한국의 갑주』)

114)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4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2) 淸州新鳳洞 B지구 1호분의 鐵製甲[115]

1990년 국립청주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청주신봉동 B지구 1호 목곽묘(木槨墓)에서 삼각판정결판갑(三角板釘結板甲)과 그 부속구인 견갑(肩甲) 및 상박갑(上膊甲)이 출토되었다(그림 1-76). 모두 도굴로 인해 파손이 심하여 원형을 완전하게 복원할 수 없는 것이다.

삼각판정결판갑은 우전동(右前胴) 일부와 후동(後胴) 상부(上部)만 남아 있다. 전동과 후동의 고대판에는 복륜공(覆輪孔)이 뚫려 있다. 현재의 자료로서는 우전동에 섶판이 없이 후동과 직접 연결되므로 개폐장치가 없는 동일련식(胴一連式)으로 생각된다. 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삼각판정결판갑은 모두 개폐장치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후동 2단의 좌우 삼각판에는 멜빵고정구멍이 뚫려 있으나 전동의 멜빵고정구멍이나 후동의 멜빵걸림구멍은 확인되지 않는다. 섶판의 길이로 보아 전동의 높이는 30.7cm이다.

견갑은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의 파편으로 9.5×5.6cm 정도로서 원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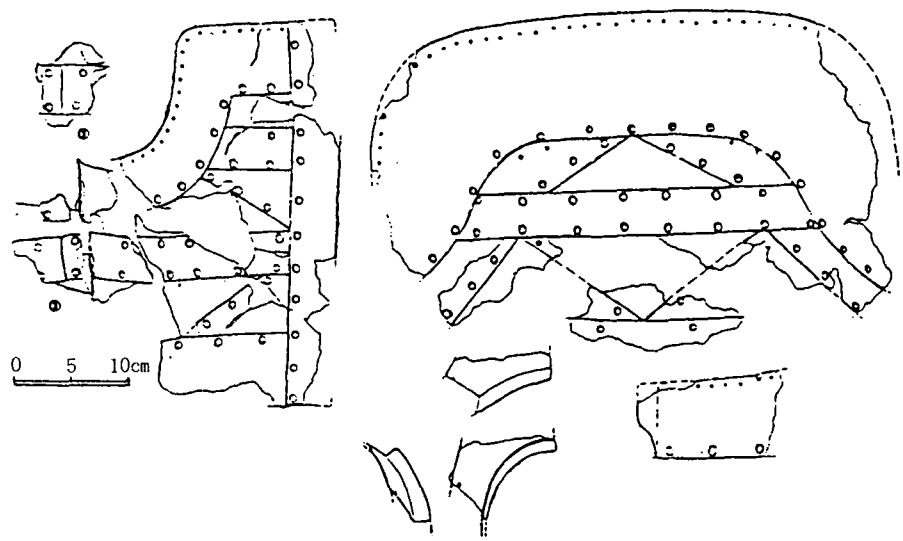

〈그림 1-76〉 신봉동 B지구 1호분 출토 철제갑(『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115) 忠北大學校博物館·國立淸州博物館, 1990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1990年度 調査－』

추정할 수가 없다. 가장자리에 상박갑을 연결하는 구멍이 한 개 남아 있다. 상박갑은 너비 3.0~3.5㎝ 정도의 대상철판(臺狀鐵板)을 구부려 만든 것인데 3~5매씩 엉켜서 출토되었으나 조각이 작고 분실된 부분이 많아 원형의 복원은 어렵다. 아래쪽에 너비 3㎜ 정도 90°로 꺾어진 상박갑의 맨 아래쪽 부분도 출토되었다.

라. 百濟 軍服飾의 特徵

백제의 군복식은 기록도 적을 뿐 아니라 출토유물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 고구려의 경우 출토유물은 적으나 고분벽화에 군복식류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 그 실태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고, 가야지역이나 신라지역의 경우는 분묘에 부장된 철제(鐵製) 또는 금동제(金銅製) 갑주류가 다량으로 출토되므로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백제지역은 부장유물(副葬遺物)이 적은 횡혈식(橫穴式) 묘제(墓制)라는 분묘적 특성 때문에 갑주류의 출토량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 고구려 및 신라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나 신라 및 가야에 못지 않은 군사조직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군복식도 발달하였을 것이다. 삼실총이나 통구12호분의 전투도(戰鬪圖)에 나타난 기마무사(騎馬武士)나 포로는 백제군일 가능성도 있다.

덕흥리 벽화고분에 묘사된 판갑(板甲)을 제외하고는 판갑은 가야나 신라지역에서만 출토되므로 신봉동(新鳳洞) 출토의 철제삼각판정결판갑(鐵製三角板釘結板甲)은 가야와의 교섭에 의해 백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신봉동 B지구 1호분은 B지구의 다른 분묘에 비해 규모도 클 뿐 아니라 부장유물도 많아 교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의 무덤으로 생각된다. 판갑의 경우 특히 5세기대 이후는 가야지역의 특징적인 갑옷으로 생각되므로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신봉동의 판갑은 가야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백제에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찰갑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경우도 4세기대에는 판갑이 출토되나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는 5세기대 이후가 되면 찰갑만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즉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과 교섭은 신라보다 앞섰으므로 고구려의 군복식문화의 영향은 강했을 것이다.

5. 新羅의 軍服飾

가. 新羅의 時代 概觀

신라는 사로국(斯盧國)이 기원후 1세기 후엽에 이르러 국가형태를 갖춘 나라이다. 유리왕(儒理王) 9년(32)에 종래의 사로(斯盧) 6촌(村)을 행정구역인 6부(部)로 개편하고 17관등(官等)을 설치하였는데, 17관등이 모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중앙관제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지방제도도 지역적인 행정구역으로 개편된 시기이다. 탈해왕(脫解王 : 57~80)대에는 거도(居道)가 우시산국(于尸山國)과 거칠산국(居漆山國)을 정복하였고, 파사왕(婆娑王 : 80~112)대에는 음즙벌국(音汁伐國)과 비지국(比只國)·다벌국(多伐國)·초팔국(草八國) 및 굴아화촌(屈阿火村)을 병합하였으며, 실직(悉直)·압독(押督)이 항복하여 옴으로써 영토를 확장시켰다.

신라가 고대국가체제를 갖춘 것은 내물왕(奈勿王 : 356~402)대였다. 이때 신라는 낙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보하였으며, 내부적으로 국가체제의 일대 정비를 이루었다. 박(朴)·석(昔)·김(金)의 3성 교립의 체제가 없어지고 김씨 세습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의 이사금(尼師今 : 계승자의 뜻) 대신에 마립간(麻立干 : 마루한 ; 대수장(大首長)의 뜻)이란 왕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물왕 22년(377)과 27년(382)에는 고구려 사신(使臣)의 안내로 전진(前秦)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내물왕대까지 신라가 국가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외교적 도움이 필요했다. 점차 고구려의 간섭이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눌지왕(訥祇王 : 417~458)대에는 고구려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백제와 동맹관계를 체결하며, 이때부터 신라는 자주적으로 발전을 하며 왕위(王位)의 부자세습제가 확립되었다. 자비왕(慈悲王 : 458~479)대에는 서울의 방리(坊里) 이름을 정하였으며, 소지왕(炤知王 : 479~500)대에는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郵驛)을 두고 역로(驛路)를 수리하였으며 또 서울에 시장을 개설하여 사방의 화물을 교역하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중앙집권적 고대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한 것은 6세기에 들어선 지증왕(智證王 : 500~514)

대부터였다. 지증왕 3년(502)에 농업을 권장하고 우경(牛耕)을 시작하였으며 수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농업생산력의 급격한 상승은 신라사회의 비약적 발전은 토대가 되었다. 지증왕대의 발전은 정치체제의 정비로 구체화된다.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호(王號)를 마립간에서 중국식의 왕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고도의 중국문화와 정치제도가 수입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군(州郡)의 제도를 정하고 이사부(異斯夫)를 실직주(悉直州)의 군주로 삼은 것이나, 원시적인 풍습인 순장(殉葬)을 금하고 서울에 동시(東市)를 설치한 것은 신라사회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흥왕(法興王 : 514~540)대에는 율령(律令)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공복(百官公服)의 차례를 제정하였으며, 진골(眞骨) 귀족회의의 대표자로서 상대등(上大等) 제도를 설치하는 등 신라는 법제적인 고대국가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연호를 사용하여 중국문화의 수용뿐 아니라 중국과의 대등성을 표현했으며,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대내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대외적인 영토확장을 꾀하였다. 지증왕대에는 우산국(于山國)을 복속시켰고, 법흥왕대에는 김해의 금관가야(金官加耶)를 병합하여 낙동강 하류역에 진출했다. 그러나 비약적인 대외발전을 이룬 것은 진흥왕(眞興王 : 540~576)대이다.

진흥왕은 대내적으로 이사부·거칠부(居柒夫)의 보필로 국사를 편찬하고 연호를 개국이라 하였으며, 불교를 흥륭시키고 음악을 일으켰으며 화랑도(花郎徒)를 제도화하였다. 밖으로는 정복사업을 착수하여 고구려 영토였던 단양의 적성(赤城)을 점령하고, 백제의 성왕과 연맹하여 한강 상류지역의 10군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았으며, 백제가 점유한 한강 하류지역을 탈취하여 중부지방을 모두 차지한다. 또한 가야제국 중 함안의 아라가야(阿羅加耶), 창녕의 비화가야(非火加耶)를 합병하고 562년 고령의 대가야(大加耶)를 정벌함으로써 낙동강 유역을 모두 확보하였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동북으로 북상하여 함흥평야까지 정벌하였다.

이러한 정복사업은 창녕(昌寧)·북한산(北漢山)·황초령(黃草嶺)·마운령(磨雲嶺)에 남아 있는 네 개의 순수비(巡狩碑)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한강 유역의 점유는 대고구려·백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중국과의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660년 백제를,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신라는 고구려·백제에 비하여 사회의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정치조직의 정비도 늦어 법흥왕 때부터 율령제도(律令制度)가 갖추어져 갔다. 신라의 관등제도(官等制度)는 원래 중앙귀족에 대한 경위(京位) 17등과 지방민에 대한 외위(外位) 11등의 이원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방의 유력자들을 중앙에 포섭하면서 서울의 6부인과는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적인 방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당시의 기록으로는 1988년에 발견된 울진봉평비(蔚珍鳳坪碑)가 있다. 그 뒤 7세기 중엽에 이르러 외위는 자연 소멸되고 경위 17등만 남게 되었다.

이 관등제도는 이벌찬(伊伐湌)에서 조위(造位)에 이르는 17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신분제도인 골품제(骨品制)와 관련을 가지면서 편성되었다. 진골(眞骨)은 최고관등인 이벌찬까지 제한 없이 승진할 수가 있었으나, 육두품(六頭品)은 제6관등인 아찬(阿湌)까지,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내마(大奈麻)까지,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大舍)까지로 그 승진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이 신분계층적 구분은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등 복색의 구분과 일치하고 있다.

중앙관제에 있어서 최고위 관직으로 법흥왕 때에 설치된 상대등이 있었다. 상대등은 귀족회의인 화백의 주재자로서 진골 중에서도 이찬이라는 고위 관등의 인물이 임명되었다. 따라서 귀족의 대변자 혹은 대표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귀족세력과 왕권 사이에서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고,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왕위계승 제1후보자로 여겨졌다.

중앙관서로 제일 먼저 설치된 것은 법흥왕 때의 병부(兵部)이며, 이어 진평왕(眞平王) 때 위화부(位和部 : 吏部), 조부(調部 : 戶部), 예부(禮部) 등이 신설되었고, 진덕여왕(眞德女王) 때는 이방부(理方部 : 刑部), 창부(倉部)와 집사부(執事部)가 설치되었다. 특히 집사부는 조(組)의 관리를 맡던 품주(稟主)에서 분화 발전된 것으로 왕권강화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상대등과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와 같이 여러 관서가 설치됨에 따라 귀족회의의 권한은 점차로 분화되어 갔으며 상대등의 권한도 약화되어 갔다.

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소지마립간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지증왕 때에 와서 주·군·촌(州·郡·村)의 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은 6부로, 지방은 중원경

(中原京 : 忠州), 동원경(東原京 : 江陵)의 2소경(小京)을 두고 전국을 5주로 나누었으며, 그 아래에 군·촌(성)을 두었다. 그리고 소경의 장관을 사신(仕臣), 주의 장관을 군주(軍主), 군의 장관을 태수(太守)라 하였다.

삼국의 군사조직은 신라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라의 군제는 진흥왕 때에 그 기반이 마련되는데 주(主)를 단위로 설치된 6정(停)과 모병(募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서당(誓幢)이 있었다. 이중 신라의 핵심적인 부대인 6정은 진골 출신의 장군이 지휘하였으며, 왕경인(王京人)으로 조직된 명망군(名望軍)의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그 군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권리였다. 이러한 핵심군대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라의 화랑도(花郎徒) 같은 청년단체였던 것 같다.

그러나 갑주류의 종류에 대한 기록과 계급에 따른 갑주류의 차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다. 出土 軍服飾

(1) 경주 九政洞 고분의 板甲[116]

4세기 전반대에 해당되는 신라 초기의 고분으로 자연구릉의 정상부(頂上部)와 사면(斜面)에 3기의 고분이 축조된 특이한 형태의 고분이다. 정상부에 있는 2기의 매장유구(埋葬遺構) 중 길이 8m, 너비 1.3m의 북쪽 유구에서 철모(鐵鉾), 환두도(環頭刀), 철부(鐵斧) 등의 철제품 및 와질토기, 토질토기 등의 철기류와 함께 철제 판갑이 2점 출토되었다.

판갑(그림 1-77)은 2점 모두 11매의



〈그림 1-77〉 경주 구정동 출토 板甲
(『한국의 갑주』)

116) 崔鍾圭, 1983 ①,「慶州九政洞一帶發掘調査」『博物館新聞』139號, 國立中央博物館 ; 崔鍾圭, 1983 ②,「瓦質土器の檢討と意義」『古代伽倻の檢討』古代を考える 34.

종장판을 못으로 연결한 종장판정결판갑(縱長板釘結板甲)이다. 전동(前胴)에 고대판과 설판은 없으나 아래쪽에 도련판은 부착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후동(後胴)의 상부(上部)에 7매의 철판을 횡으로 연결한 반원통형의 나팔모양의 경갑(頸甲)이 부착되어 있다.

초기의 종장판정결판갑으로서 경갑이 부착된 것도 이후 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종장판정결판갑과 차이가 있지만 철판의 결합방법도 차이가 있다. 철제갑주의 제작에 있어 철판의 결합은 앞부분의 철판을 위로 하여 중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정동 판갑은 반대로 앞부분의 철판이 아래로 겹쳐져 있다. 유기질제 갑옷을 철판으로 제작하면서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2) 월성로 가12호분의 小札[117]

지하식 적석목곽분으로 고분의 중간부분만 조사되어 전체의 규모를 알 수 없는 유구이다. 토기 5점, 지석 1점과 함께 소찰 60여 편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로 보아 4세기대의 고분이다.

약 60여 편의 소찰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사다리꼴이며 한쪽이 짤려 삼각형을 이루는 것도 있다(그림 1-78). 사다리꼴의 소찰은 찰갑의 소찰로서 가장자리에 결합공·복륜공이 중앙에 현수공이 뚫려 있다. 삼각형의 소찰은 숫자가 매우 적은데 찰갑의 소찰로 보기는 어렵다. 장방형 소찰은 길이 10.3cm, 너비 4.6cm의 크기이다. 유구가 완전히 조사되지 않아 찰갑의 복원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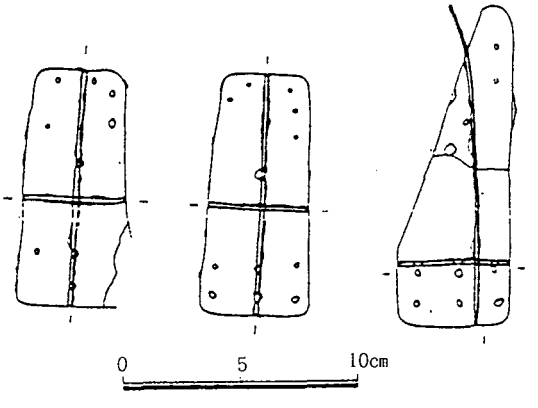

〈그림 1-78〉 월성로 가12호분 小札
(『慶州月城路古墳群』)

117) 李健茂, 1985 「慶州月城路古墳發掘調査」『嶺南地域考古學研究의 現況과 課題』(第9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月城路古墳群』

(3) 월성로 가29호분의 板甲과 小札[118]

4세기대의 목곽묘로 12호분과 마찬가지로 유구의 중간부분만 조사되어 유구의 크기나 평면구조는 알 수 없다. 토기 14점, 석천(石釧) 1점, 철정(鐵鋌) 3점, 주조철부(鑄造鐵斧) 6점, 철모(鐵矛) 1점, 대도편(大刀片) 1점, 철촉(鐵鏃) 20점, 곡옥부경식(曲玉附頸飾) 1식과 함께 판갑편과 소찰이 출토되었다.

판갑은 극히 부분적인 편이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종장판판갑(縱長板板甲)으로 추정되나 철판의 결합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소찰은 장방형의 것과 한쪽이 둥글게 처리된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판갑에 부속된 상갑(裳甲)의 소찰인지, 판갑과는 별도로 찰갑이 있었는지는 발굴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찰이 전부 보고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적어도 5종류 이상의 소찰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찰갑의 소찰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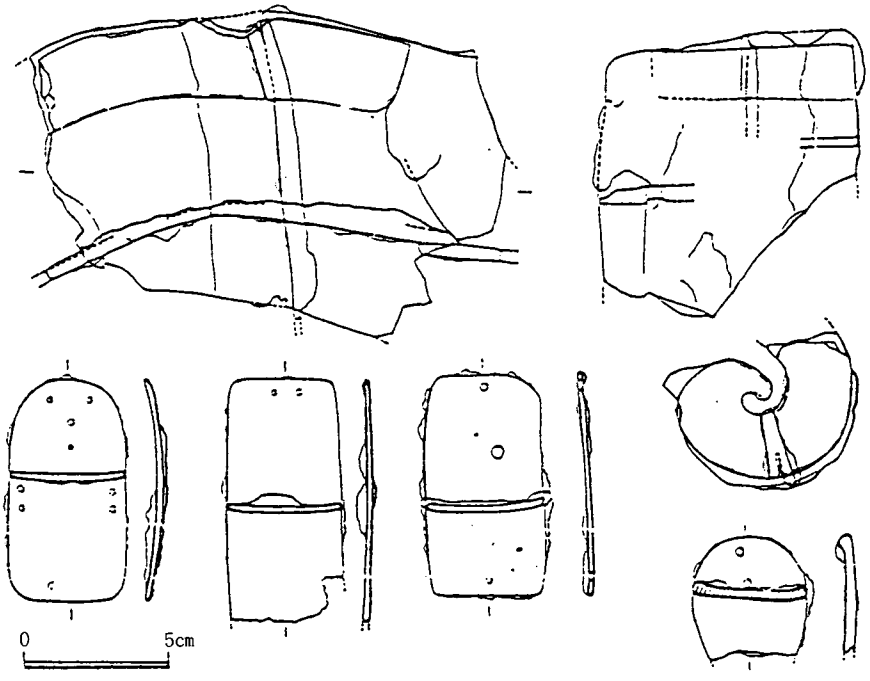

〈그림 1-79〉 월성로 가29호분 板甲과 小札(『慶州月城路古墳群』)

118) 李健茂, 1985, 앞의 책 ; 國立慶州博物館, 1990, 앞의 책.

(4) 황남동 109호 3·4곽의 甲冑[119]

황남동 109호 3·4곽은 경주에서 확인된 봉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목곽묘이다. 갑주류는 부장곽(副葬槨)인 제4곽에서 토기·마구류 등과 함께 2개군으로 나누어져 출토되었다.

북장벽(北長壁)에 연하여 출토된 제1군의 소찰은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다(그림 1-80). 장방형의 소찰에는 두 종류가 있고, 장방형의 소찰보다 크기가 작은 사다리꼴의 소찰이 있으며, 가장 큰 장방형의 한 변을 비스듬하게 재단한 것과 같은 소찰도 있다. 이것은 모두 마갑(馬甲)의 소찰로 생각된다. 소찰의 크기차는 흉갑(胸甲), 경갑(頸甲), 복갑(腹甲), 고갑(尻甲) 등 부위별로 소찰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방찰(長方札) 중 길이가 긴 것과 한 변을 일부 잘라 낸 것은 복갑, 사다리꼴의 소찰은 흉갑과 경갑·작은 장방형 소찰은 고갑의 소찰일 가능성이 있다. 사다리꼴의 소찰에 미세한 크기차가 있는 것은 흉갑과 경갑의 소찰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과 함께 파편이긴 하지만 마주(馬冑 : 그림 1-81)도 출토되었다. 마주의 볼가리개와 본체 중 안공(眼孔)이 있는 부분이다.

제2군은 곽의 서쪽에 치우쳐 출토된 철제원형품(鐵製鋺形品)과 대상금구(帶狀金具)로 이루어진 군이다(그림 1-82). 철제원형품은 만곡종장판주의 복발이며 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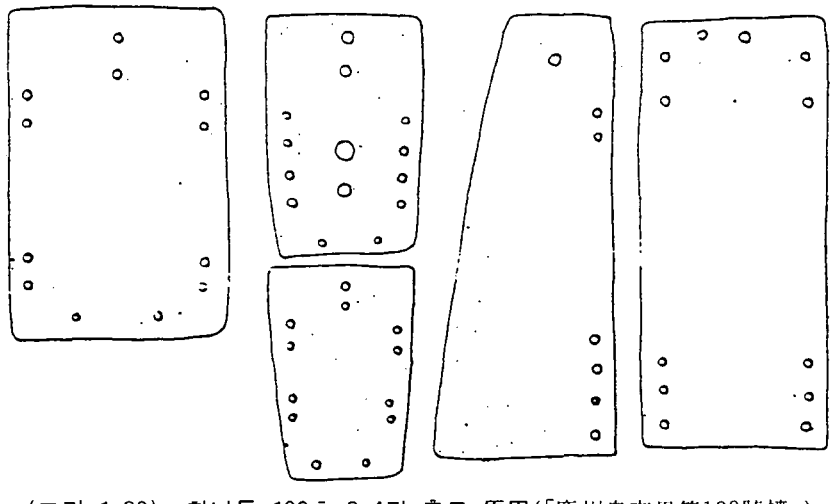

〈그림 1-80〉 황남동 109호 3·4곽 출토 馬甲(「慶州皇南里第109號墳」)

119) 齊藤忠, 1934 「慶州皇南里 第109號墳」『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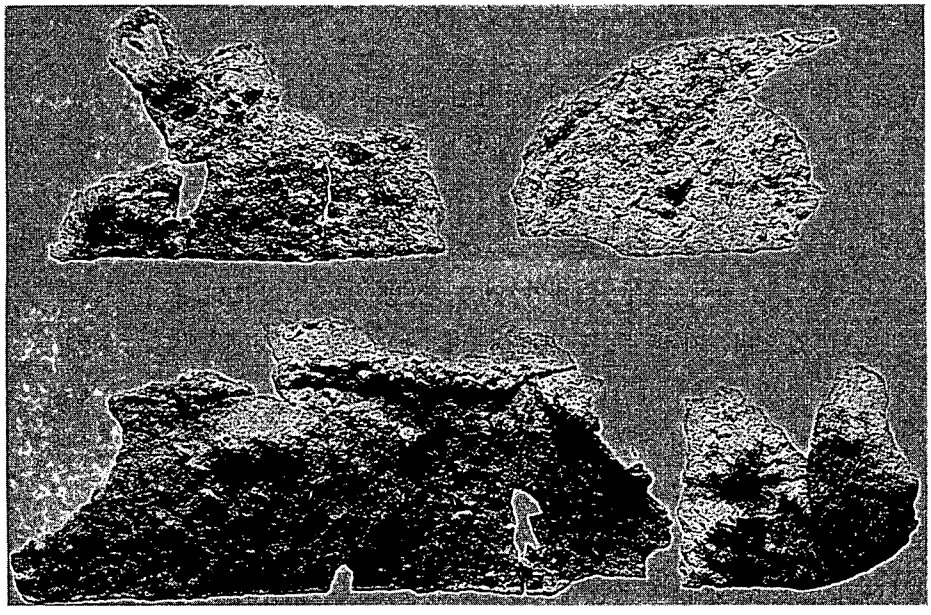

〈그림 1-81〉 황남동 109호 3·4곽 출토 馬冑(「慶州皇南里第109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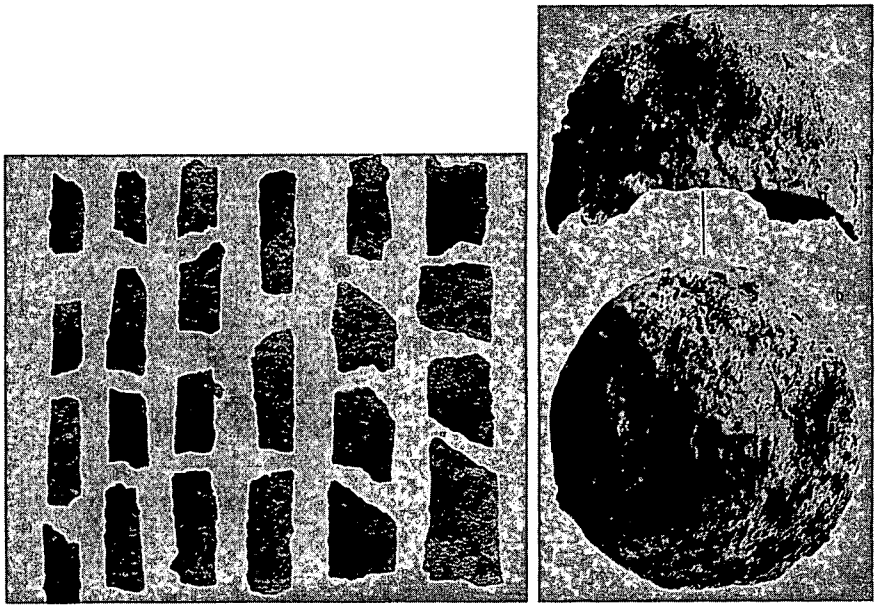

〈그림 1-82〉 황남동 109호 3·4곽 출토 彎曲縱長板冑(「慶州皇南里第109號墳」)

형으로서 깊이가 깊은 편이다. 함께 출토된 길이 3cm 전후의 소찰은 만곡종장판주의 볼가리개 외 수미부가리개의 소찰이다. 대상금구는 주체를 구성하는 장찰(長札)과 찰갑을 구성하는 소찰로 생각된다.

(5) 天馬塚 肱甲[120]

1973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조사된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으로 동서 60m, 남북 51.5m, 높이 12.7m의 원분(圓墳)이다. 목곽의 내부에는 사변(四邊)에 석단(石檀)이 있는 목관(木棺)과 그 단벽(短壁) 외측에 부장품수장궤(副葬品收藏櫃)가 있으며, 피장자(被葬者)는 출자형금관(出字形金冠)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왕급(王級)으로 생각된다. 천마가 그려진 백화제(白樺製)의 장니(障泥)가 출토되어 천마총이라 명명되었다.

부장품수장궤의 서남 구석에서 금동관(金銅冠)과 함께 금동제굉갑(金銅製肱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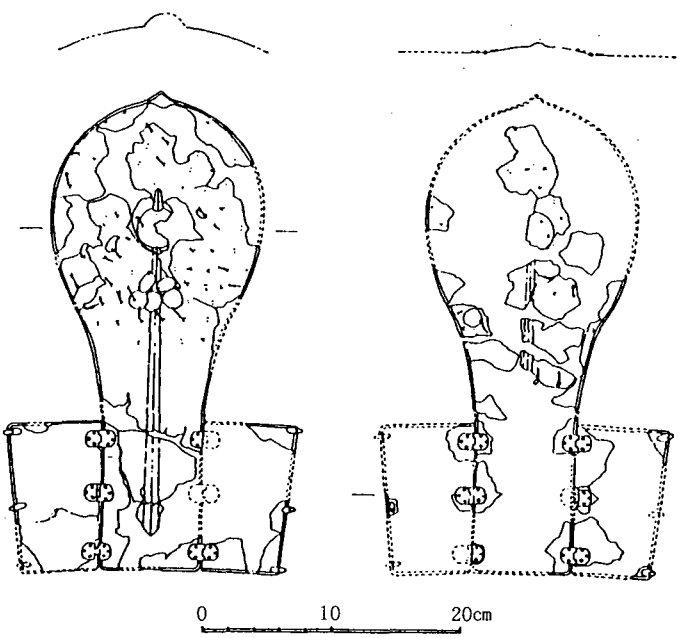

〈그림 1-83〉 천마총 출토 金銅製 肱甲(『천마총』)

120)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發掘調査報告書』

이 한쌍(그림 1-83) 출토되었다. 3매의 금동판으로 제작되었으며 파편으로 출토되어 정확한 규격을 파악할 수 없다. 본체와 양측판은 좌우 각각 3개의 요철(凹凸)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체의 중앙에는 돌기선과 보주형(寶珠形)이 타출(打出)되어 있고, 본체의 주연(周緣)에는 절판복륜(折板覆輪)을 하였다. 양측판에는 경첩 반대쪽의 상중하에 소형의 고리쇠를 달아 양측판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6) 황남대총 남분의 肱甲[121]

황남대총은 경주에 있는 적석목곽묘 중 최대의 표형분(瓢形墳)으로 남북 114m, 동서 82m이며, 높이는 북분이 22.6m, 남분이 21.9m이다. 98호분이라고도 한다. 남분에서만 은제굉갑(銀製肱甲 : 그림 1-84) 1점이 출토되었다. 남분은 북분보다 먼저 축조되었다. 은제굉갑은 주곽의 피장자 머리 쪽에 있는 부장품 수장부에서 금은장환두대도(金銀裝環頭大刀)와 함께 한쌍이 출토되었다. 3매의 은판으로 제작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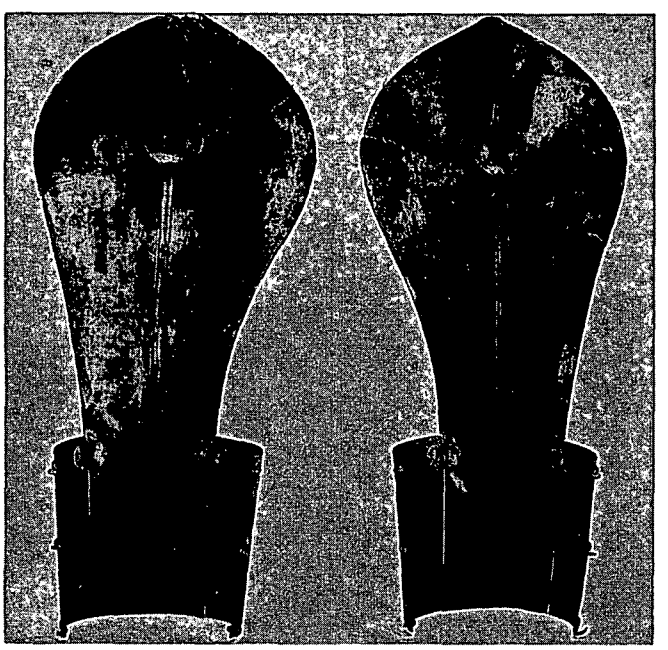

〈그림 1-84〉 황남대총 남분 銀製肱甲(『한국의 갑주』)

12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 『慶州皇南洞第98號墳(南墳)發掘略報告』

었으며, 본체와 양측판은 요철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체의 주연(周緣)에는 절판복륜(折板覆輪)을 하였다.

(7) 金冠塚 甲冑[122]

금관총은 1921년 우연히 발견되어 긴급조사한 적석목곽묘이다. 금동제요패, 금은제팔찌, 금제반지, 금동제신발 등의 장신구와 함께 다량의 토기, 무기류, 마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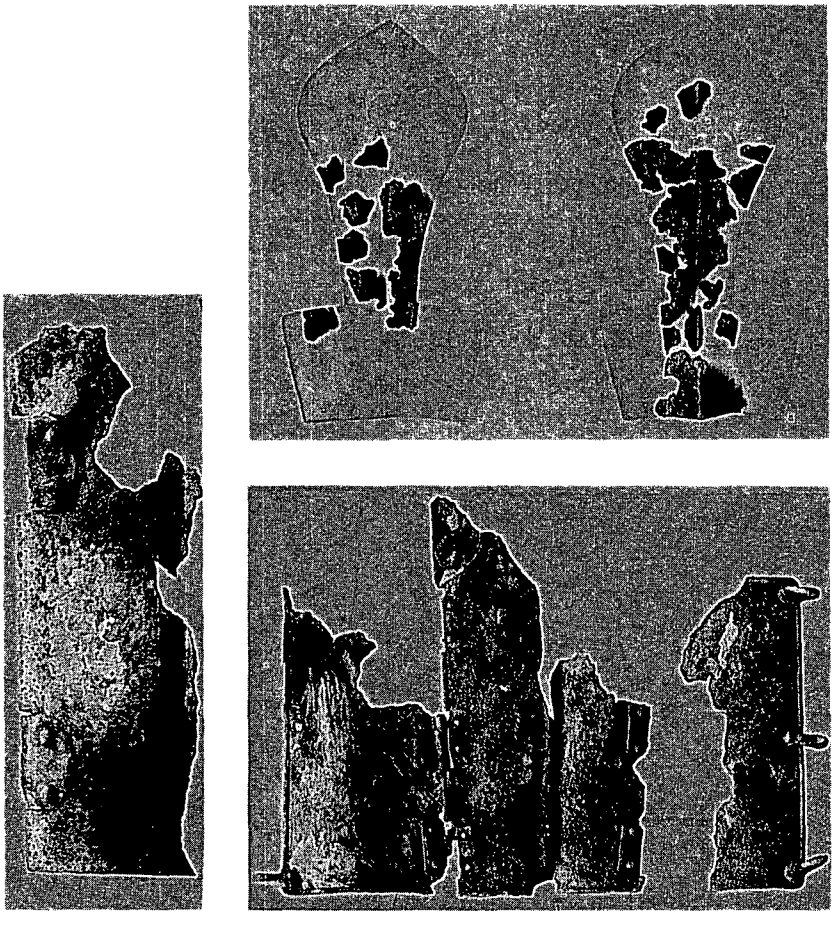

〈그림 1-85〉 금관총 출토 金銅製肱甲(『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122) 浜田耕作·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本文上册·圖版上下册, 朝鮮總督府古蹟調査特別報告 第4册

등이 출토되었으며, 목곽의 동쪽 유물군에서 다량의 금동제갑주자료가 출토되었다. 금동제굉갑(그림 1-85)은 3개체분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파편으로 출토되어 완전한 것은 없다. 일반적인 금동제굉갑과 같이 본체 1매와 측판 2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의 중앙에는 돌기선과 보주형이 타출되어 있으며, 본체와 측판의 연결은 요철경첩으로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본체의 상반부와 반원통형이 하반부에 영락(瓔珞)을 단 것이 있으며, 주연을 따라 문양을 시문한 것도 있어 장식성이 매우 강한 편이다.

금동제복발(그림 1-86)은 모두 5개체분이 출토되었는데 유공완형품(有孔盌形品)으로 보고되어 있다. 크기와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둘레의 구멍으로 보아 주의 본체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주의 복발로 생각된다. 금동제복발은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28개의 금동제장찰(長札)은 2개로 복원이 되었는데 전술한 금동제굉갑과는 다른 형식의 굉갑으로 추정된다(그림 1-88). 이외 어린문(魚鱗文)이 타출된 금동제 장방판과 무늬가 없는 장방판이 있는데 수량이 적어 전체가 한벌의 갑옷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유기질제 갑옷에 부착된 소찰로 생각된다. 또한 철지금동제(鐵地金銅製)의 소형 소찰이 있는데, 금동제주의 수미부가리개나 볼가리개의 소찰로 생각된다(그림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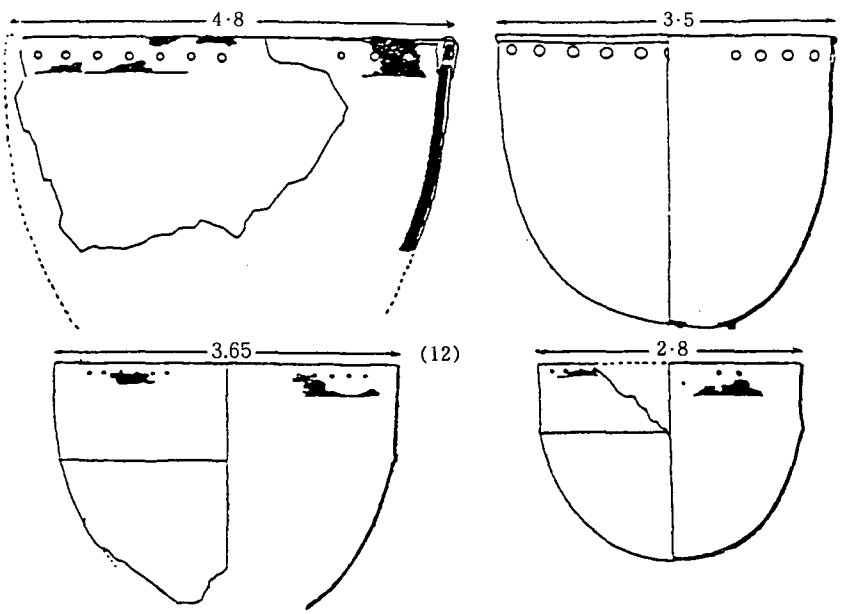

〈그림 1-86〉 금관총 출토 金銅製伏鉢(『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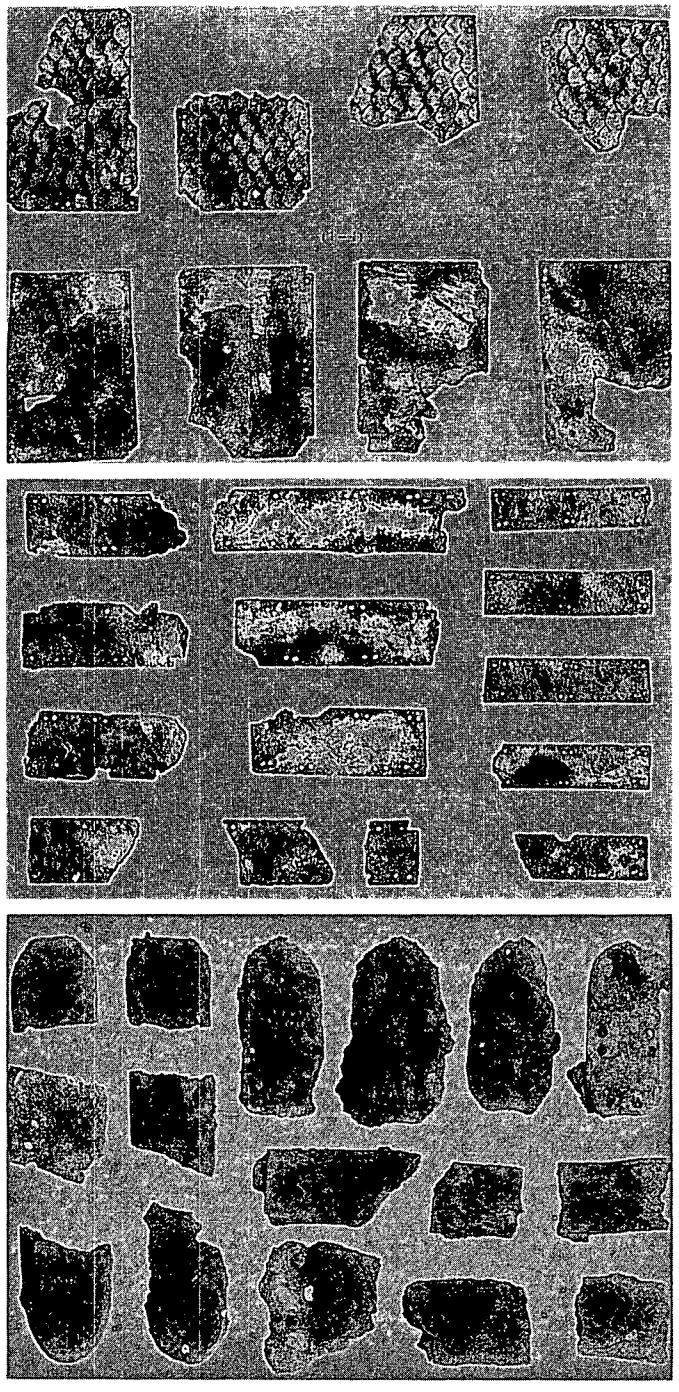

〈그림 1-87〉 금관총 출토 장방찰과 小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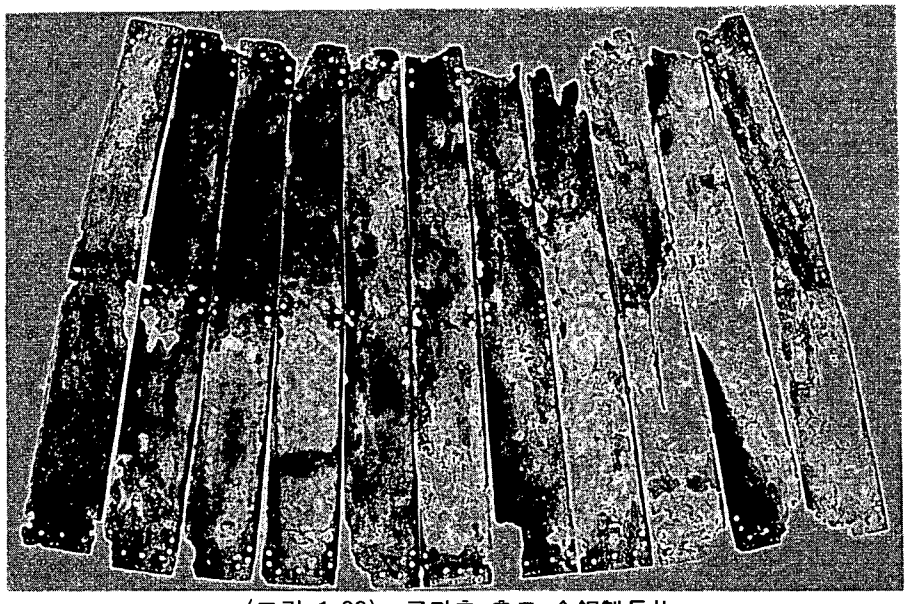

〈그림 1-88〉 금관총 출토 金銅製長札

(8) 仁旺洞 C區 1號[123]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1977년 발굴 조사한 전형적인 신라의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으로 주부곽(主副槨)이 日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곽(主槨)에서는 금제세환이식(金製細環耳飾), 곡옥(曲玉)과 환옥(丸玉)의 흉경식(胸頸飾), 금제태환수식(金製太環垂飾) 등의 장신구류, 철제금은장환두대도(鐵製金銀裝環頭大刀), 철모(鐵鉾) 등의 무기류, 철제부(鐵製釜), 청동제초두(靑銅製鐎斗), 청동제정(靑銅製鼎), 청동제다리미 등의 용기류(容器類), 토제방추차(土製紡錘車), 마구류(馬具類) 등이 출토되었다.

부곽(副槨)에서는 다량의 각종 토기를 비롯하여 각종 무기(武器), 마구(馬具), 농공구(農工具)가 출토되었으며 다량의 철정(鐵鋌)도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찰갑(札甲)이 출토된 것이 주목되나 출토상태나 정확한 소찰(小札)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

123) 李殷昌, 1977 「慶州仁旺洞古墳發掘調査」『韓國考古學年報』 5

(9) 大邱 達西34號墳 肱甲[124]

1923년 토취작업 중 노출되어 조사된 수혈식 석곽묘에서 토기, 철기, 마구, 대금구(帶金具)와 함께 피장자의 흉부 부근에서 금동제굉갑(金銅製肱甲 : 그림 1-89) 1점이 출토되었다. 원래 3매의 금동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측판(側板) 1매가 결실되었다. 본체의 중앙에는 돌기선(突起線)을, 돌기선의 끝부분에는 보주형(寶珠形)을 타출시켰다. 본체와 측판의 연결은 요철경첩으로 했으며, 본체의 주연(周緣)에는 복륜을 하지 않았다.



〈그림 1-89〉 달서34호분 출토굉갑
(「제34호분발굴조사보고」)

라. 新羅 軍服飾의 特徵과 變化

신라의 문헌에 나타난 군복식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출토유물에서 본 신라 군복식의 특징은 한마디로 장식성이 강한 금제나 금동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도 완전한 한벌을 갖춘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부속갑 특히 굉갑이 많다. 장식성이 강한 군복식의 출현은 5세기 이후 출현하는 금제, 은제, 금동제 장신구와 무관하지 않다. 출토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군복식은 구정동 출토의 종장판정결판갑이다. 제작기법이나 형태적으로 보아 초기 판갑제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4세기초에 출현한 철제판갑은 4세기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한다. 구정동 판갑에서는 소찰이 이용되지 않았으나 월성로 출토의 갑옷에는 소찰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소찰이 고구려의 영향으로 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동강 하류역의 가야지역 특히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찰갑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고구려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갑주류는 황남동 109호 3·4곽 출토의 만곡종장판주, 소찰, 마갑, 마주이다. 4세기대 이후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묘사되

124) 小泉顯夫, 1931 「第34號墳發掘調査報告」『慶尙北道 達城郡 達西面 古蹟調査報告』(大正12年度古蹟調査報告)

어 있는 개마무사(鎧馬武士)의 갑주 일습이다. 또한 이 고분에서 처음으로 금제 이식(耳飾)이 출토된다. 찰갑으로 대표되는 갑주류와 금공품은 고구려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고구려의 문화요소가 유입된 것은 4세기 말~5세기 초 시작된 신라와 고구려의 본격적인 교섭의 결과이다.

5세기 이후 가야지역과 비교해 보면 신라지역에서는 철제갑주 부장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금공품의 부장이 급증하여 5세기 후반대가 되면 대형고분에서는 화려한 금공품 일색의 부장양상을 띠게 된다. 권력의 상징물로써 금공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갑주류 또한 금공제품이 출현하고 철제갑주류는 등급이 낮은 고분에서 조금씩 출토된다.

현재의 자료로 보는 한 가야지역에서는 6세기 이후에도 철제갑주류의 부장이 계속되지만 신라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집권체제가 완비되어 부장품의 매납에 대한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금공품은 권력의 상징물로서 계속 분묘에 매납되나, 철제갑주류는 실용품으로서 분묘 매납이 규제되는 것이다. 백제나 고구려에서 갑주의 출토량이 갑주가 계급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상징물로서 이용되지 않고 실용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4세기~5세기 전반에 걸쳐서는 철제갑주류의 매납이 많으나 5세기 후반대 이후 금공품에 권력의 상징물로서의 자리를 내주게 되며 6세기 이후에는 매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6. 加耶의 軍服飾

가. 加耶의 時代 概觀

가야국은 서기 원년(元年) 전후 무렵부터 562년까지 경상남북도 서부지역에 존재하였던 국가들의 총칭이며, 좁은 의미로 보아서는 김해(金海)의 가야국이나 고령(高靈)의 대가야국을 지칭한다.

서기 원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경상남도 해안지대의 풍부한 철산지와 양호한 해운(海運)이라는 입지조건에 힘입어 상당한 부와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철기문화가 보급되면서 사회 통합이 진전되어 변한소국(弁韓小國)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발전추세가 지속되어 나가면서 소국간의 통합이 한 차례 더 이루어졌고, 2~3세기에 이르면 변한지역은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변한소국연맹, 즉 전기(前期)가야연맹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 세력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그 주변지역인 마한(馬韓)·낙랑(樂浪)·왜(倭) 등과의 교역에 임하기도 하고, 진한(辰韓 : 신라)과 세력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4세기 초 이후, 국제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가 한반도 서북지방의 낙랑군·대방군을 소멸시키자 그 영향력은 죽령(竹嶺)을 넘어 신라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한편으로 백제는 4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황해도 지역을 점령할 정도로 성장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과거 낙랑의 구실을 대신하여 한반도 남단의 가야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신라는 진한의 맹주라는 구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구려의 문물을 수입하였고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통솔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었다.

가야는 낙랑과의 교역 단절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진한·변한문화의 공통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제와 고대 상업적 교역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고 4세기 말~5세기 초에 걸쳐 보다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구려·백제 사이의 패권다툼에서 백제가 크게 패하고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가 낙동강 하류지역까지 내려와 가야를 토벌함으로써 비롯된 이 사건은, 가야가 전반적으로 문화수준이 월등한 고구려의 보기(步騎) 5만명의 공격을 받게 되자, 4세기 전반기 이후 약화되어 있던 전기가야연맹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와해되었던 것이다.

4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의 일련의 파동을 거치면서 소국연맹체(小國聯盟體)가 와해된 가야지역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전기가야연맹의 중심지역이었던 김해를 비롯한 경상남도 해안지대는 큰 타격을 입고 쇠잔해졌으며, 그 잔여세력의 일부는 과거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쳤던 여타지역으로 흩어졌고, 이에 비해 가야지역 안에서 고령·함양 등의 내륙산간의 후진(後進)지역은 오히려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기왕의 세력기반을 착실히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한편, 가야지역 중에서 신라에 가까운 지방, 특히 성주·양산·동래 등지의 세력은 고구려를 배경으로 삼은 신라세력의 영향권 아래로 이탈해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 아래 자체 문화의 성격마저 변모를 이루면서 점차 그 세력권이 팽창되었고, 반면에 예전의 진한·변한문화의 공통기반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던 가야는

대폭 약화되어 그 세력권도 고령 이남의 낙동강 서쪽지역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후, 가야지역은 5세기에 들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중에서도 서부 경상도 내륙의 고령·삼가·거창·산청·함양·남원 등의 세력은 경상남도 해안 선진문화의 파급을 발판으로 전 단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특히 고령(高靈) 지산동(池山洞) 세력의 발전상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한편, 경상남도 해안지대의 김해·함안·사천·고성·의창 등의 전 단계에서의 선진지역이었던 세력들도 전쟁의 참화를 입고 퇴락하였지만 점차 복구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가야지역이 5세기에 들어 재편성되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주변환경에 또다시 변화가 발생하였다. 먼저, 신라는 5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南征) 무렵에 형성되었던 고구려에의 부용적(附庸的)인 세력상태에서 5세기 전반부터 중엽에 걸쳐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고대국가의 기반을 닦아 가면서 433년, 나제(羅濟)동맹을 맺었고, 450년에는 고구려 변장(邊將) 살해사건, 그리고 연이은 축성공사[125]를 통해 변경지역 강화를 도모하였다. 신라는 산성(山城) 중심의 지배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군사적 성격을 지닌 지방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끈질기게 존속해 오던 소국의 지배질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126] 금관국왕 김구해(金仇亥)의 경우처럼 왕경(王京)으로 이주시켜 관등(官等)을 수여하며 중앙귀족으로 흡수하거나[127] 또는 국왕의 빈번한 순행(巡行)을 통하여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구려의 장수왕은 평양천도를 단행한 뒤 남하정책을 추구하여 475년, 백제의 수도를 함락하였다. 백제는 웅진으로 남천(南遷)하였고, 신라는 나·제동맹이 유효한 기간이었으나 이 기회를 오히려 이용하여 추풍령을 넘어 보은의 삼년산성(三年山城)까지 진출하는 등 주변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주변정세가 이렇게 급변하자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옛 가야지역의 소국들 사이에 재결속의 기운이 일게 되었다. 이 무렵에 고령지방의 예전 주체세력의 하나였다고 추정되는 반파국(半跛國)이 가야의 재통합을 새로

---

12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慈悲麻立干條에 의하면, 468년·470년·471년·473년·474년에 연이은 축성공사를 통해 고구려의 내습에 대처해 나갔다.

126) 濱田耕策, 1977 「新羅の城·村設置と州郡制の施行」 『朝鮮學報』 84, 1977, pp. 3~9.

127) 『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 19年條.

이 주도하는 세력으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고고학적인 증거로 보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축조하던 집단이었다. 이 고령세력은 대가야 시조신화(始祖神話)를 표방하면서 김해세력을 대신한 맹주로서 대두하여 같은 문화기반 안에서 성장하던 합천·삼가·거창·함양·산청·아영·하동·사천·함안·김해·창원 등지의 소국들을 포괄하는 후기(後期)가야연맹을 이룩하였다.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연맹은 그 뒤 국제사회에도 등장하여, 479년에는 중국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내 '가라국(加羅國)'의 이름으로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의 작호를 받기도 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말갈의 신라 침입에 원병을 보내기도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6세기 초에 들어, 백제는 고구려와 국경에서 빈번한 충돌이 있었으며,[128] 신라는 북방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한 변경정비에 주력[129]하여 대가야와 다툴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가야는 주변정세의 호전에 힘입어 배후의 위협에 우려함이 없이 서쪽으로 진출하여 소백산맥을 넘어 기문(己汶 : 지금의 임실)을 공략하여 빼앗으면서 그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백제는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여 기문지역을 회복한 다음, 그 패배의 대가로 가야와 왜와의 관계에서 커다란 이권이었을 대사(帶沙 : 지금의 하동 방면)지역까지 빼앗으려고 도모하였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연맹은 점차 자기세력 자체 내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수성기(守成期)로 돌입하였으며, 결국은 자기방어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가야는 거창·하동·삼가·의령 등지의 변경에 축성을 함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을 정비하였다. 그후, 백제와 왜가 하동을 그들의 교역장소로 이용하려 하자 대가야는 이를 군사력으로 대처하여 그 영유권을 확보함으로써 백제와는 소백산맥에서 섬진강 하류까지를 경계로 하여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대가야는 왜에 대한 무역경쟁의 측면에서는 문화전수를 앞세우는 백제에 밀리게 되었고, 백제와 왜는 가야를 고립시킨 가운데 빈번한 교역을 성립시키게 되

128) 고구려 남진방향의 주공방향은 5세기 후반은 신라였으나, 6세기에 들어와서는 백제로 옮아가고 있었다.(梁起錫, 1994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新羅의 對外關係史 硏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 第15輯), p. 87.

129) 鄭雲龍은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新羅의 對外關係史 硏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 第15輯, 1994)를 통해, 5세기 전반을 신라·고구려 友好期, 5세기 후반을 葛藤期, 6세기 전반을 對고구려 克服期로 구분하였다.

었다. 대가야 이뇌왕(異腦王)은 이러한 국제적 고립에 대항하여 522년, 신라의 법흥왕과 혼인동맹을 맺어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신라 법흥왕은 당시의 제도 정비를 통한 왕권신장을 바탕으로 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대결구도에 개입하지 않고 백제를 고구려에 묶어 두고 당시 백제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던 가야지역에 적극 진출을 도모하여, 서쪽 가야지역으로의 무력진출을 꾀하고 있었으며, 가야지역 중에서 가장 강한 대표적인 세력인 대가야와는 일단 강화를 하고 그 남쪽의 낙동강 하류지역에 대한 병합을 탐색한 것이 522년 혼인동맹의 목적이었다.[130] 524년, 법흥왕이 남경을 순수하였을 때 본가야왕이 왕과의 회견을 청하였으며, 532년에는 낙동강과 남해안의 교통상의 요지인 금관국, 즉 남가라가 투항해 옴으로써 가야병합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신라는 가야 방면으로의 진출로 철광과 농경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이후 백제·고구려와의 전면적인 적대관계를 감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후지를 확보한 것이며,[131] 이 시기를 전후하여 후기가야연맹의 일국이었던 탁순·훼기탄 등도 신라에 병합되었다.[132] 또한 백제도 이 무렵 전라도 방면에 대한 남방경영을 마치고, 530년 이후로 가야 남부지역에 구례모라성(久禮牟羅城)을 축성하고 안라(安羅)의 걸탁성(乞乇城)을 소유하는 등의 수단으로 신라에 대항하게 되었다. 결국 530년대에 들어 가야 남부지역은 신라·백제의 쟁탈전에 휘말려 그 세력이 극도로 약화되었다. 신라는 532년 김해의 금관가야를 합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구해(金仇亥)를 진골(眞骨)로 대우해 주고 식읍(食邑)을 주는 등 우대를 함으로써 다른 가야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유인책을 구사하였다.

이렇게 되자, 5세기 후반 이래로 지속되어 오던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연맹은 540년 이후로는 다시 통합의 기운을 상실하고 분열된 채, 신라·백제와의 사이에서

---

130) 522년, 대가야왕이 법흥왕에게 혼인을 요청함에 따라 신라는 이찬 比助夫의 누이동생을 보내 대가야와 동맹관계를 맺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 9年 3月條)

131) 文暻鉉, 1973 「辰韓의 鐵產과 新羅의 強盛」 『大丘史學』 7·8, p. 5.

132) 『日本書紀』 (卷19 欽明紀 2年 4月條)에 의하면, '卓淳 등의 신라 복속사건은 신라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喙己呑은 加羅와 신라의 경계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매년 공격받는데도 任那가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으며, 南加羅는 작고 협소하여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고 어디에 의탁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망했고, 탁순은 상하의 의논이 양분된 가운데 主가 스스로 종속되기를 원하여 망했다'라고 하여, 가야 소국들이 국제적 고립과 自救策에 의해 신라에 통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외교적 타협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가야 남부지역을 병합한 신라를 기피하여 백제와의 제휴를 꾀하고 있었으며, 538년에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중흥을 꾀하던 백제의 성왕은 이들에게 문물 등을 베풀어 주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신라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였다. 당시 백제는 군령(郡令)·성주(城主)를 파견하여[133] 가야지역을 잠식해 나갔으나 한강 고토의 회복을 위해 신라의 가야지역에의 침투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했다.[134]

그러나 가야지역을 둘러싼 신라·백제간의 쟁탈전이 암암리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구려의 남침위협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신라와 백제는 군사동맹으로 대항하여 무력으로 551년에 한강 유역을 탈취하였다. 2년 뒤, 신라 진흥왕은 백제의 소유였던 한강 하류지역을 전격적으로 점령해 버리고 이곳에다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이 일로 554년, 백제 성왕은 군사를 일으켰고 관산성(管山城 : 지금의 옥천)전투가 발생하였다. 관산성전투에서 백제·가야연합군은 신라에 대패를 당하여 3만명에 가까운 인적 손실을 보았다.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와 관산성전투에서의 승리는 이후 삼국의 항쟁사 전개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신라는 대중국 관계에서 고구려나 백제의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는 신라왕권의 국제적 승인을 의미하였다. 이제 신라는 본격적으로 가야정벌에 착수하여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가야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삼국 항쟁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시기의 가야제국은 이미 백제의 후원도 끊어지고 자체의 통합력은 쇠약해진 가운데 패전으로 인한 피폐로 소국들은 분열된 채 제각기 신라를 향한 투항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후기가야연맹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었던 대가야는 신라에 대한 방어를 기했을 것이나 주변의 소국들은 이미 신라세력에 연루되어 동조하지 않았다.[135]

---

133) 梁起錫, 앞의 글, p. 93.

134) 성왕은 對신라 방어선 형성에 있어서 泗沘會議[任那復興會]를 통해 가야지역을 신라와의 완충지대로 삼고 주력은 對고구려 정면에 투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신라와는 가능한 한 정면 군사대결을 회피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신라는 가야 쪽에 더 중심을 두었다.

135) 李永植은 '가야제국의 연맹이란 盟主가 존재하지 않는 離合集散의 연맹체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야제국의 會盟이란 장기간 존재하였던 연맹체라기보다는 제한된 기간에 일정한 목적에서 결성 유지되었던 短期性의 동맹으로 규정하고, '가야제국이 동맹으로

이에 대가야는 독자적인 방어를 구사하였으나 562년, 신라의 우세한 무력에 눌려 병합되었다. 대가야를 마지막으로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후기가야제국 등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야의 멸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병합·멸망의 과정이 신라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신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경과를 알아본다. 신라와 가야제국의 전쟁관련 경과는 다섯 가지의 시기 구분이 가능하다.[136]

① 제1기 : 77년~116년 : 상호 침습기(侵襲期)

『삼국사기』 탈해니사금(脫解尼師今) 21년(77) 8월조(條)에 '아찬길문(阿湌吉門)이 가야병과 황산진구(黃山津口)에서 싸웠다'는 신라와 가야간의 최초의 군사적 충돌 기록으로부터 지마니사금(祇摩尼師今) 5년(116) 8월조의 '장수를 보내어 가야를 침략케 하고, 왕이 스스로 정병 1만명을 이끌고 그 뒤를 이었으나, 가야가 성을 닫고 굳게 지켰다. 우기(雨期)를 만나 되돌아왔다'는 기록까지의 시기를 제1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가야가 남변(南邊)을 쳐왔다'[138]에서 보이는 것같이 신라의 대외관계는 경주 남쪽에 있었던 가야와의 전쟁을 주로 하던 시기이다.

② 제2기 : ~5세기 초 : 가야의 대신라 화친기

김해의 가락국(駕洛國)이 신라에 화친을 요청하고,[139] 왕자를 볼모로 보냈던 때부터,[140] 백제가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국력을 신장시키던 4세기 중엽을 거쳐 광개토왕에 의한 남진이 시작되는 5세기 초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신라와 가야제국과의 전쟁은 수로왕으로 대표되던 김해의 가락국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신라에 의한 남부가야에 대한 진출 내지는 간섭이 적극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김

연합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對신라전쟁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금관국·안라국·대가야 모두는 각각 신라에 의해 각개적으로 통합되었고, 이들의 나라가 신라에 병합되는 과정에서 '상호 구원을 하거나 공동으로 전쟁을 수행한 바는 없다'고 했다.(李永植, 1994 「新羅와 加耶諸國의 戰爭과 外交」『新羅의 對外關係史 硏究』, pp. 127~128)

136) 여기서는 李永植의 시기구분에 따른다.(李永植, 앞의 글, pp. 99~129)

138) 『三國史記』 婆娑尼師今 17年 9月條 ; 祇摩尼師今 4年 2月條.

139) 『三國史記』 奈解尼師今 6年 2月條.

140) 『三國史記』 奈解尼師今 17年 3月條.

해의 가야세력은 친신라적인 경향을 보임으로써 백제의 북가야에 대한 공격으로 야기되었던 위협을 해소시키려 들었다.

③ 제3기 : 고구려의 대대적 남진 전후시기 : 가야와 신라와의 전쟁시기

고구려가 신라 원조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신라와 가야의 충돌지역 내지는 가야지역에 대대적으로 남진하였던 영락 10년(400) 전후시기이다. 신라와 고구려가 백제를 후원세력으로 하는 가야와 왜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개된 이 전쟁에서 5만 명의 고구려군은 가야와 왜의 연합군을 가야지역에서 격퇴하였다.

④ 제4기 : 대고구려전쟁에 주력하던 시기 : 가야와 신라의 군사동맹시기

가야제국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가 나제동맹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고구려전쟁에 주력하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가야와 신라와의 전쟁은 보이지 않으면서 가야제국이 신라를 군사적으로 구원하였다. 가야는 백제와 함께 신라의 북변인 동해안 방면의 대고구려전쟁에 병력을 파견하였다.

⑤ 제5기 : 신라의 가야 통합 추진 시기 : 신라와 대가야의 우호관계 결렬

가야와 신라의 양국간 우호관계가 결렬되고 그 결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가야는 한강 유역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와의 관산성전투(554)에 백제측의 원병으로 참전하였고,[141] 대가야는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관산성전투에서 승리한 신라는 이듬해에 고령의 대가야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가중시켰고,[142]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거의 무력하게 굴복하였던 것은 관산성전투에서의 패배로 기인된 신라의 위세에 의한 것이었다.[143]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가야사에 대한 연구는 최근 옛 가야지역에 대한 활발한 고고학적 발굴성과에 힘입어 그 실체를 밝히려고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야에 대한 실상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이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141) 『三國史記』 眞興王 15年 7月條.

142) 관산성전투에 앞서서 금관국·탁순 등의 남부가야제국은 신라의 영향력하에 이미 편입되어졌다.

143) 이영식, 앞의 글, p. 126.

자료에 기인된다. 게다가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 확보'[144]라는 목적을 지닌 일본학자들에 의해 가야사는 처음부터 연구방법에 있어 전도된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타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광복 후부터 가야사를 올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가야사의 맥락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복식의 문제에 있어서 갑주류(armour) 외의 복식문제는 기록이 없고 고고학 자료마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소지왕 3년(481) 3월,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북변으로 침입하여 호명성(狐鳴城) 등 7성을 공취하고, 또 미질부(彌秩夫)로 진격함으로 신라는 백제·가야의 원병을 얻어 가지고 길을 나누어 이를 방어하다가 역격(逆擊)하여 고구려군을 패배시키고 니하(泥河)의 서쪽까지 추격하여 일천여 명을 참살하였다.'라고 하여, 가야가 독립된 군사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백제·신라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투를 전개한 기록들로 보아서 분명히 독립적인 군복식을 착용한 것은 틀림없겠으나,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繼體天皇) 23년(529) 3월조의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라왕이 신라왕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아이를 가졌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시집보낼 때 아울러 왕녀의 종자로 100명을 보내었다. 이들을 여러 곳에 분산해 놓고 신라의 의복을 입혔다. 아리사등이 나라의 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여자들을 돌려보냈다. '신라는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145]

이 기록은 비록 군복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평상복에 있어 가야의 복식과 신라의 복식이 구분된다면 군복식 역시 차이가 났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아직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

144) 소위 '任那日本府說', 즉 4세기 말기부터 6세기 말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일본의 야마토(大和)왕조가 한반도 남부지역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하여 다스렸다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145) "加羅王 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幷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今着新羅衣冠 阿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다. 出土 軍服飾

군복식과는 달리 갑주류는 당시 가야가 누렸던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많아 가야가 착용했던 갑주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유물 분석을 통한 갑주류 파악 전에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은 가야군의 전쟁수행 방식이다.

(1) 加耶의 對外戰爭 양상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변진조(弁辰條)에 의하면, '우마(牛馬)를 타며, … 보병전투에 익숙하고, 그 무기는 마한(馬韓)과 같다.'[146]라고 하여, 이 기록에 따른다면 가야제국의 초기 전쟁수행방식이 보병전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7] 그후 3세기 전반경에 이르면 기병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보기(步騎) 합동전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러한 전투방식의 변화는 고고유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마구류(馬具類)는 이른 시기의 가야 묘제(墓制)인 패총유적(貝塚遺跡)의 석관묘(石棺墓)나 낙동강 유역에 산재하는 토광묘(土廣墓), 그리고 오륜대(五倫臺) 고분군(古墳群)의 수혈식(竪穴式) 석실분(石室墳)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다가, 기원 4세기 말 이후로 편년되는 가야고총고분(加耶高塚古墳)에서는 일괄 유물 내지는 잔편(殘片)으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4세기 말 이후의 고분으로부터 출토되는 마구류는 이 시기 또는 좀더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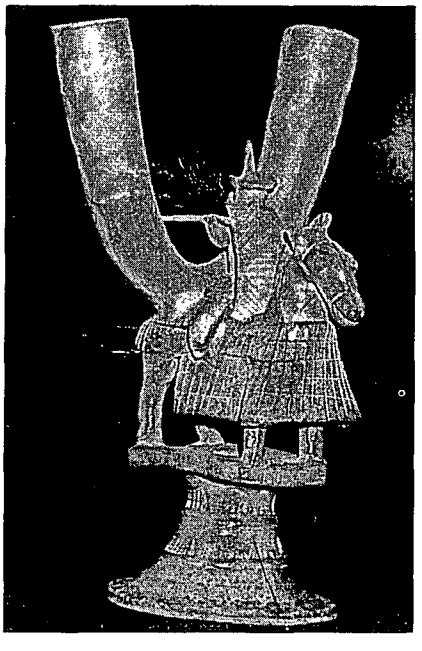

〈그림 1-90〉 鎧馬武人像 土器

146) 『三國志』 卷30, 魏書 30
"乘駕牛馬 …… 便步戰 兵仗與馬韓同"

147) 이영식, 1996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韓國軍事史論文選集』 國防軍史硏究所, pp. 517~519.

선 시기에 가야제국에서 기마전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가야기병의 존재 확인 증거로는 가야 기마인물 토기나 토우(土偶) 등이 있다. 특히 전김해(傳金海) 출토의 개마무인상토기(鎧馬武人像土器)의 모습을 보면, 말에는 마갑(馬甲)을 씌웠고, 기사(騎士)는 단갑(短甲)과 견비부주(肩庇付冑)로 신체를 보호하였으며, 왼손에는 방패를 두르고 오른손에는 장창(長槍)을 들고 있다. 이 개마무인상 토기는 기원 5세기 초의 유물로 편년되고 있어, 가야기병의 모습을 충분히 떠오르게 한다.[148]

(2) 出土 遺物 分析

가야의 고지(故地)인 낙동강 하류지역과 서안(西岸)의 경상도지역에서는 1970년 이후 많은 유적 특히 4~5세기대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동래(東萊) 복천동(福泉洞) 고분군(古墳群)을 비롯한 제(諸) 고분 유적에서 양호한 상태의 갑주(甲冑)자료가 출토되어, 5세기대의 가야제국의 갑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가능케 하였다.

가) 김해 禮安里 150호 고분

장방형의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토광목곽묘(土壙木槨墓)로 많은 수의 철기류(鐵器類)와 함께 세로로 긴 형태의 종장판주(縱長板冑)가 1점 출토되었다.

이 철제(鐵製) 주(冑)는 윗부분을 엎는 바리 모양의 복발(覆鉢·伏鉢)이 없는 형태로서 안으로 약간 굽어진 긴 철판 19장이 가죽으로 연결되었다. 각 철판의 윗부분은 사각형이나 아래 부분은 부위에 따라 그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뒷부분의 7장의 철판 하단은 약간 들려 있으며 이 부분을 길이 15.6㎝의 길쭉한 철판으로 보강하고 있다. 19장의 철판은 가운데 중앙의 철판에서 좌우로 겹쳐서 뒤쪽으로 순서대로 돌리고 제일 뒤쪽에는 철판을 좌우 철판의 안쪽으로 대어 완성하였다. 함께 출토된 작은 조각인 소찰(小札)들은 대·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볼가리개와 뒷머리가리개로 추정된다.[149]

---

14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취급한다.

149) 宋桂鉉, 1988「삼국시대 철제갑주의 연구」慶北大碩士論文,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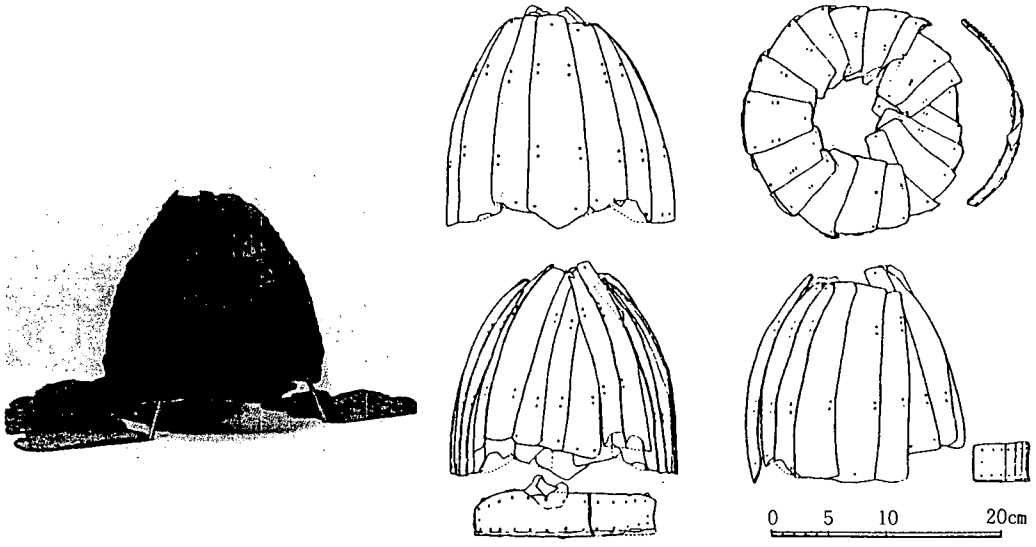

〈그림 1-91〉 禮安里 縱長板冑의 복원 사진과 실측도

이 투구를 4세기 전반에서 중엽의 것으로 보는 이유는 같은 시기의 안악(安岳) 3호분 거마행렬도(車馬行列圖)에 그려진 보병의 투구와 형태적으로 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방증(傍證)되고 있으며, 복천동(福泉洞) 10호분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고 있다.

나) 福泉洞 고분군

1969년 이후 수차에 걸쳐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서 약 40여 기의 분묘를 조사하였으며, 갑주의 구조와 형태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복천동 10·11호분

주곽(主槨)과 부곽(副槨)을 모두 갖춘 대형 고분[150]으로서 돌로 만들어진 주곽과

150) 이러한 木槨墓는 木棺墓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胎動 혹은 발생을 알려주는 가장 적극적인 고고학적 증거라고 한다.(신경철, 1989「加耶의 武具와 馬具」『國史館論叢』7, p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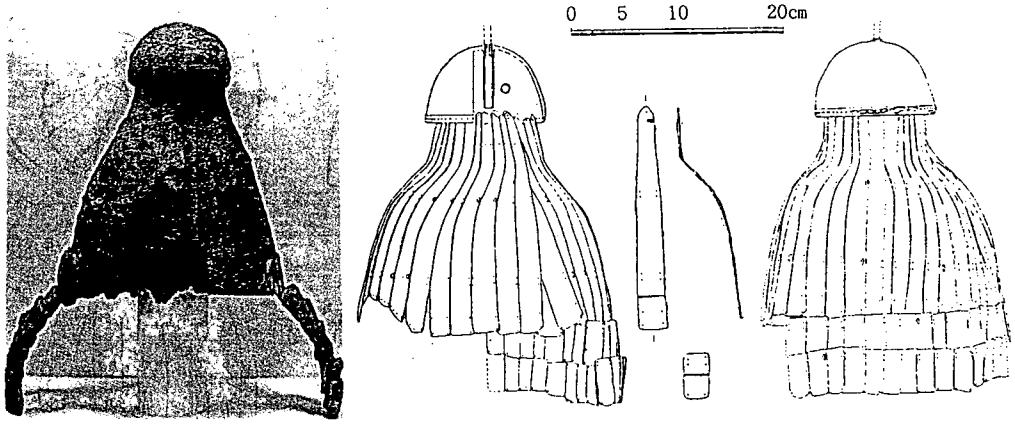

〈그림 1-92〉 主槨 출토 彎曲縱長板冑의 복원 사진과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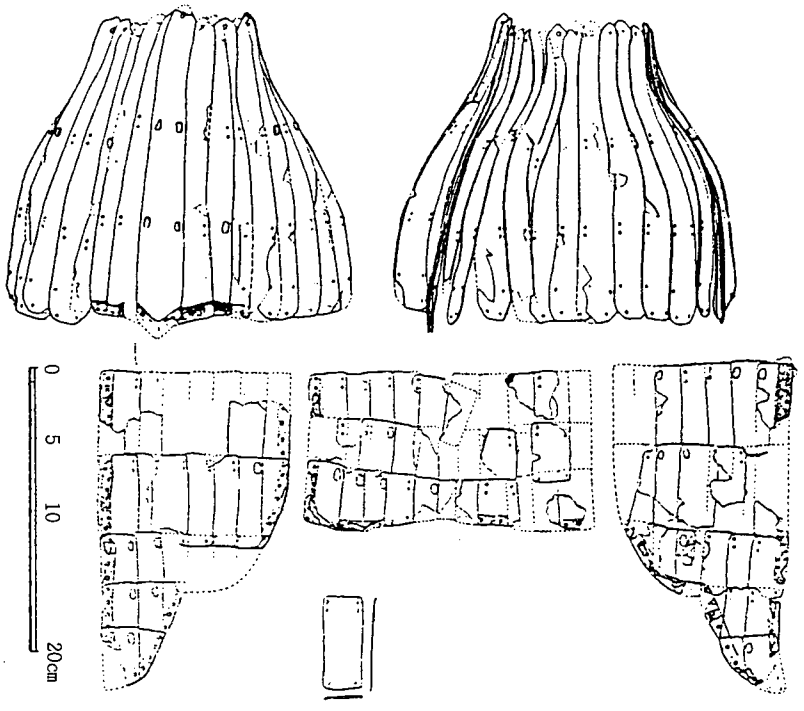

〈그림 1-93〉 副槨 출토 彎曲縱長板冑의 실측도

흙으로 만든 부곽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갑주가 대량 출토되었다. 주곽에서는 굴곡부분이 있는 투구인 만곡종장판주(彎曲縱長板冑)와 목 보호용 경갑(頸甲) 및 팔을 보호하는 비갑(臂甲) 등을 완전히 갖춘 미늘 찰갑(札甲 : scale armor) 1식(式)이 출토되었으며, 부곽에서는 세로로 긴 철판을 못으로 연결한 갑옷인 종장판정결판갑(縱長板釘結板甲)과 주곽과 같은 양식의 투구 및 말머리에 씌웠던 마주(馬冑)가 출토되었다.

투구는 주·부곽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주곽 출토의 만곡종장판주(彎曲縱長板冑)는 35개의 굽어진 규형(圭形) 철판〔彎曲圭形板〕을 가죽끈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 투구는 복발·몸체·꼬리부분·볼가리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구 정면에는 끝이 삼각형으로 돌출된 중심위치를 나타내는 미간부(眉間部) 철판이 있고, 이 미간부 철판을 중심으로 좌·우의 미늘을 안쪽으로 대어 가죽끈을 이용하여 엮어 나갔다. 상부의 반구형(半球形)의 복발에는 정중앙 가운데에 구멍이 있고, 그 내부에 길이 5.5cm의 관(管)이 있으면서 복발 외면(外面)에 가죽 등 유기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엄을 부리기 위해 술을 달아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볼가리개와 뒷머리부분〔首尾部〕 가리개는 길이 4.2cm 전후의 조그만 네모진 미늘을 사용하였다. 전체의 복원 길이는 42.6cm이고, 투구 몸체의 길이는 22.3cm이다.

부곽 출토의 투구는 주곽출토품에 비해 수가 약간 적은 32개의 굽어진 긴 철판으로 제작되었으며, 복발이 없다. 볼가리개와 머리 뒷부분 가리개도 분리되어 제작되었으며, 사용된 미늘은 주곽과 같이 네모졌으나 길고 짧은 두 종류가 있다.

판갑(板甲)[151]은 비교적 큰 규모의 세로 철판을 못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연결시켜 만들어진 종장판정결판갑(縱長板釘結板甲)이다.

좌·우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열고 여밀 수 있게 되었으며, 가죽띠를 개폐장치로 사용하였다. 좌측 앞부분은 3장의 철판, 우측 앞부분은 2장의 철판, 그리고 뒷부분은 5장의 철판을 못으로 연결하였고, 최상단 철판의 어깨부위에는 멜빵용 구멍이 7개씩 있다. 뒷부분 위쪽에는 3장의 철판을 반원형으로 만들어 붙이는 식으로 목가리개를 부착하여 목 뒷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깃고대판에는 고사리문(紋)으로 장식하였다. 이 판갑은 뒷부분의 높

151) 板甲은 서양의 plate armor에 해당되나, 야금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초기시대의 판갑으로서 서양에서 말하는 14세기의 plate armor와는 엄격한 의미로 같은 유형에 속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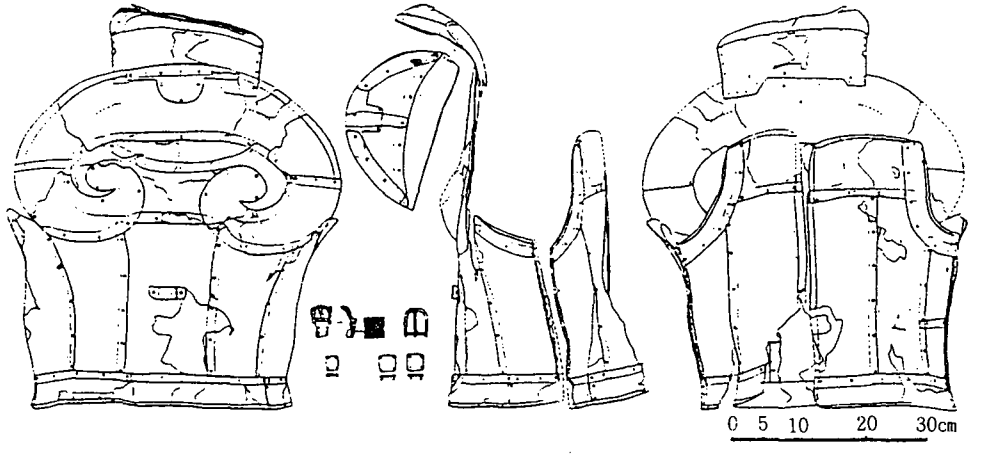

〈그림 1-94〉 縱長板釘結板甲 실측도

이가 51.5cm, 앞부분의 높이가 41cm, 어깨넓이 48.5cm이고, 좌우 폭은 39cm, 목가리개는 높이 7.5cm, 좌우 폭 23cm이다.

찰갑(札甲)은 부속구(附屬具)를 완전히 갖추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원형 복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구조는 파악할 수 없으나, 발굴보고자는 미늘〔小札〕을 좌우로 연결하여 앞 중앙에서 여밀 수 있는 동환식(胴丸式)으로 추정하고 있다. 확인된 작은 미늘은 아래와 같이 8종류이다.[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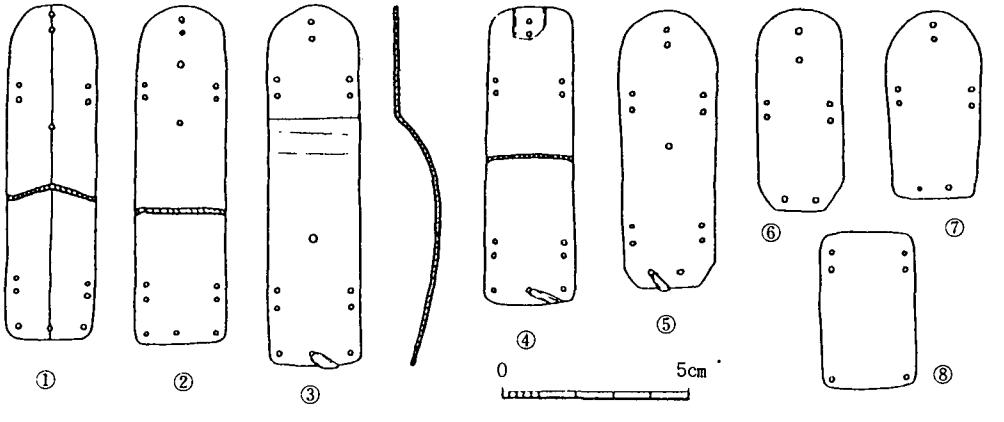

〈그림 1-95〉 복천동 11호분 철 미늘 형태도

152) 小札의 결합기법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송계현(앞의 글, pp. 54~55)의 분석에 따랐다.

- 미늘 ①은 허리부분 미늘 ②를 V자형으로 꺾은 것으로, 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정한 부위에 사용된 미늘로 추정된다.
- 미늘 ②는 몸체부분에 사용된 미늘이며, 현재 6단(段)이 확인되었다.
- 미늘 ③은 몸체 아래에 부착되는 허리부분 미늘이다.
- 미늘 ④는 출토시 미늘 무더기 아래에서 비교적 정연하게 나온 것으로, 허리 아래 치마형식의 상갑(裳甲)부분 미늘로서 현재 4단이 확인되었다.
- 미늘 ⑤⑥은 그 크기와 구멍이 뚫린 위치가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으며, 넓적다리 대퇴(大腿)부와 정강이부분의 미늘이다.
- 미늘 ⑦은 비교적 소형에 속하며 팔꿈치에서 어깨부분까지의 미늘이다.
- 미늘 ⑧은 투구의 볼가리개와 뒷 목부분 가리개용의 미늘이다.

목 보호용 경갑(頸甲)은 앞부분은 네모진 철판을 사용하다가 뒤로 갈수록 착용할 경우 밑부분에 해당되는 밑변의 폭보다 윗변의 폭이 넓은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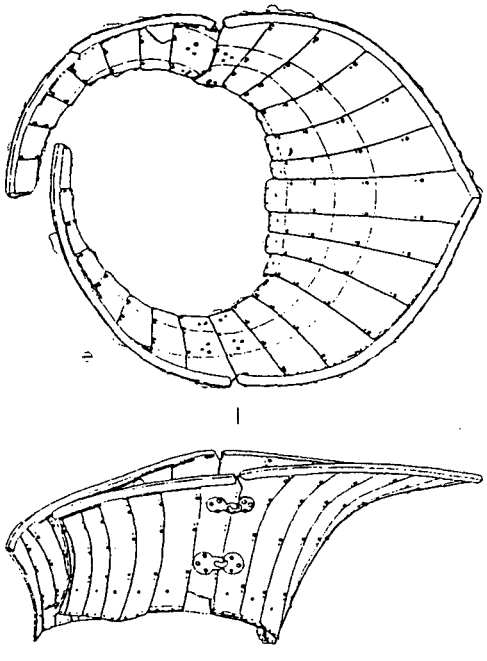

〈그림 1-96〉 목 보호용 頸甲

이 경갑은 좌·우에 고리경첩을 사용한 개폐(開閉)장치가 있는 29장의 긴 철판을 연결한 것이다. 두 구멍 1조(組)의 구멍 중 구멍 한 개에만 못을 박은 점과 윗부분을 가죽띠로 덮었다가 다시 철판으로 덮은 것으로 보아 원래 가죽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식으로 제작되었던 것〔革結法〕을 갑주 제작기술이 발전하여 못으로 고정시키는 방법〔釘結法〕이 도입되면서 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착용시 양어깨에 걸쳐지는 부분인 양쪽 측면 철판의 하단은 짧고 약간 밖으로 경사지게 만들었다.

팔을 보호하는 비갑(臂甲)[153]은 3장의 철판으로 이루어졌다. 본체(本體)의 상부

153) 주로 팔뚝 보호가 위주이기에 肱甲이라고도 한다.

에는 보물이 달려 있는 의미의 나뭇가지를 수놓은 수지문(樹枝紋)이 타출(打出)되어 있다. 양쪽의 두 철판은 길이를 다르게 하여 팔의 움직임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으며, 본체와는 가죽띠 경첩으로 연결시켰다.

마주(馬冑)는 얼굴덮개 부분에 6장, 챙 부분에 2장, 귀가리개 좌·우 각 2장, 볼가리개 좌·우 각 2장 등 총 16장의 모양이 다른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굴덮개부와 볼가리개는 장방형 철판을 2개의 못으로 고정한 가죽띠 경첩으로 연결하였다. 비교적 작은 못을 사용했으며, 눈동자 구멍부분이 얼굴덮개부와 볼가리개에 걸쳐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복천동 4호분

복천동 고분군 중에서 비교적 소형 고분에 속하는 수혈식(竪穴式) 석곽묘(石槨墓)로 삼각판혁철판갑(三角板革綴板甲)이 한 벌 출토되었다. 상하 7단(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폐장치가 없다. 철판은 소형으로 제작되어 33장이나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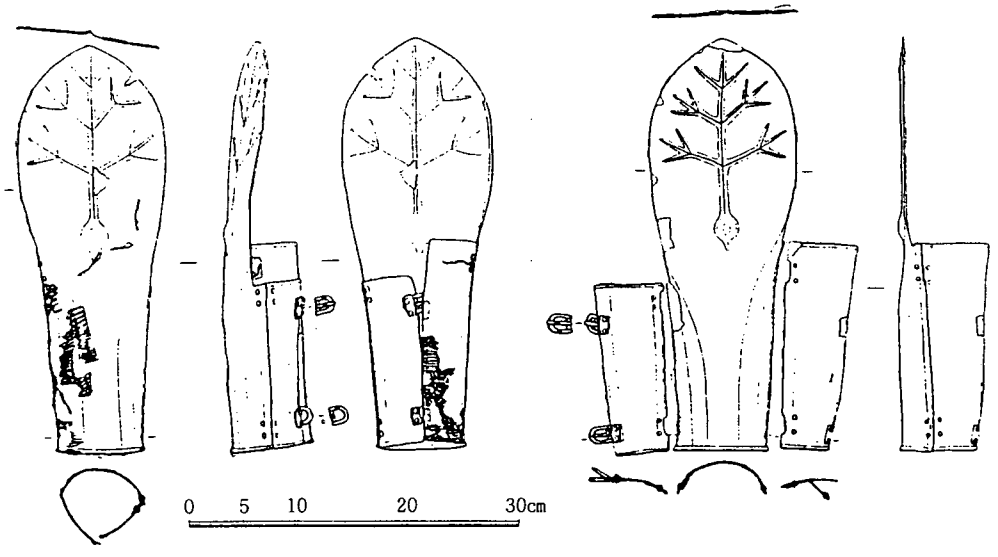

〈그림 1-97〉 鐵製 臂甲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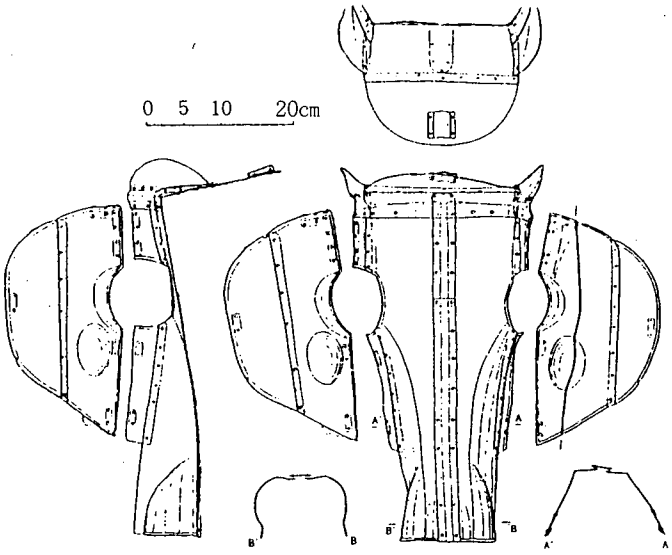

〈그림 1-98〉 鐵製馬冑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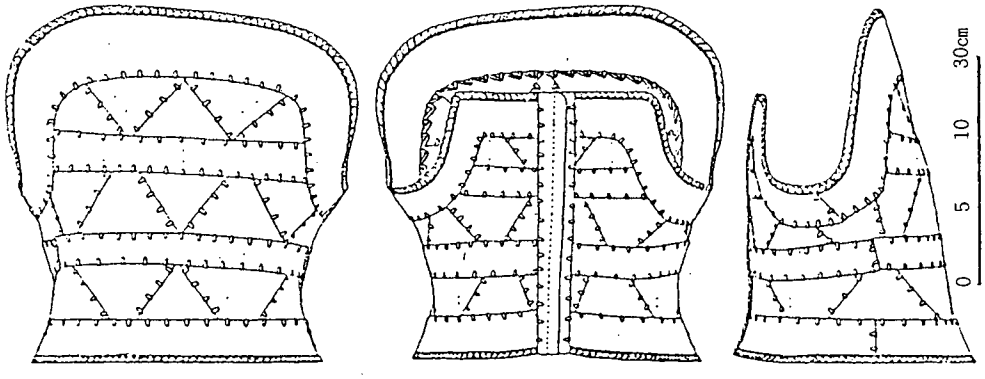

〈그림 1-99〉 三角板革綴板甲 실측도

3) 복천동 21호분

찰갑 아래 부착되어 허리를 보호하는 요갑(腰甲)이 유물 발굴시 경갑(頸甲) 아래 깔려서 대체로 이면(裏面)을 위로 하고 출토되었다.[154]

154) 고령 지산동 32·45호분과 합천 옥전고분에서도 출토되었다. 복천동 요갑을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만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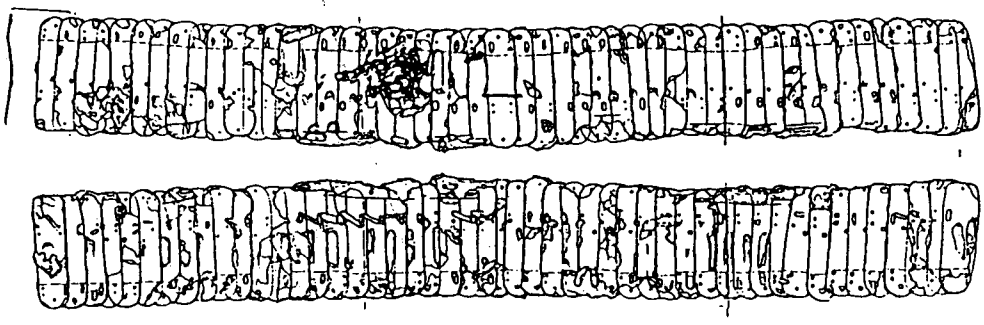

〈그림 1-100〉 腰甲 실측도

가죽끈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미늘은 길이 12.2cm×폭 3.5cm 크기로서 모두 49장이고, 중앙판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각 24장씩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미늘은 대체로 윗면이 둥글고 아래 부분은 네모졌으며, 전체길이의 1/4~1/5 되는 지점에서 한 번 꺾이면서 안으로 휘어진다.

다) 陜川 玉田 고분군

가로로 길게 뻗어진 철판을 사용한 판갑인 횡장판정결판갑(橫長板釘結板甲)이 출토되었다.

앞뒤로 7단(段)으로 이루어졌고, 오른쪽 부위가 문의 역할을 하여 착용과 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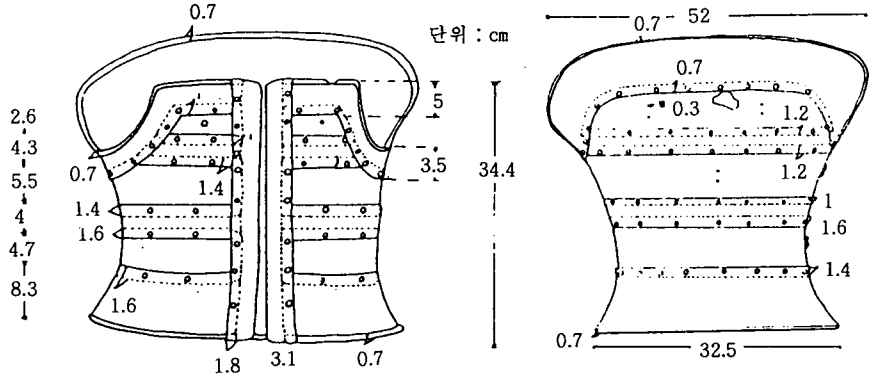

〈그림 1-101〉 橫長板釘結板甲 실측도

마주(馬冑)는 복천동 10호분 출토의 마주보다 큰 편으로 모두 6장의 철판을 사용하였으며 얼굴덮개부와 귀가리개는 1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눈동자용 구멍은 얼굴 덮개부의 상부 철판과 측면 철판에 걸쳐 뚫었다. 볼가리개는 얼굴덮개부와 가죽띠 경첩으로 연결하였다.

〈그림 1-103〉은 옥전 20호분 출토 투구·경갑·찰갑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옥전 68호분의 판갑은 〈그림 1-10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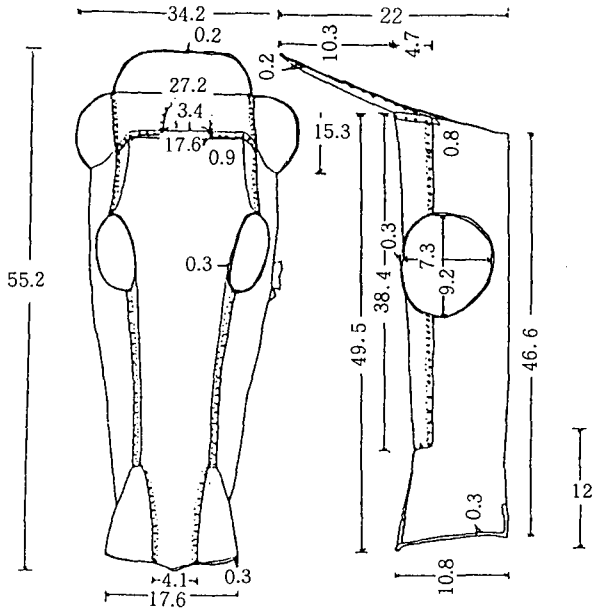

〈그림 1-102〉 馬冑 실측도



〈만곡종장판주〉



〈경갑〉



〈찰갑〉

〈그림 1-103〉 彎曲縱長板冑·頸甲·札甲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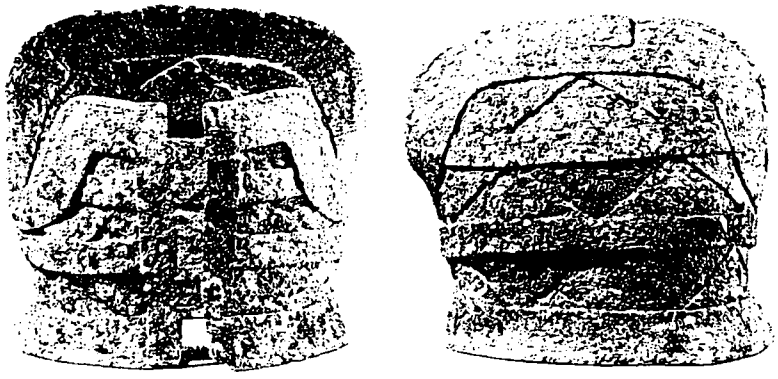

〈그림 1-104〉 玉田 68호 板甲 출토

라) 高靈 池山洞 고분군

1977년에 조사한 44·45호분과 1978년에 조사한 32호분에서 갑주 자료가 출토되었다. 이중에서 32호분의 출토품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32호분은 대형석실과 소형석곽이 나란히 구축된 구조로서 대형석실에서 만곡종장판주(彎曲縱長板冑)·충각주(衝角冑)[155]·찰갑·횡장판정결판갑(橫長板釘結板甲)·견갑·상박갑(上膊甲) 등이 출토되었다.

충각주는 횡으로 긴 철판을 못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어 판갑과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 충각주의 밑쪽과 챙부분[156]은 파손되어 완벽한 구조를 알 수 없다.

상갑(裳甲)은 판갑의 밑에 늘어뜨리거나 찰갑의 허리부분 요찰(腰札)에서 직접 늘어뜨려 골반부위를 보호하는 장신구이다. 지산동의 상갑은 형태와 크기로 보아 대략 4가지로 나뉜다.

- 제1형은 길이 9cm, 폭 3.2cm의 네모진 철판으로 위쪽이 반원형이고 각 변에 따라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가운데 연결용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모두 205

155) 또는 衝角付冑라고도 한다.

156) 이와는 달리 김정자는 前面이 角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리개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았다.(김정자, 1996「韓國軍服의 變遷史硏究」세종대박사학위논문, p.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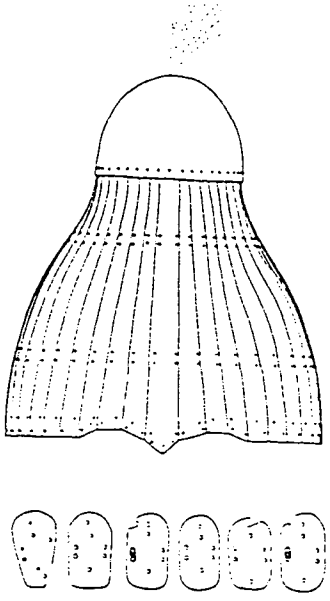

〈그림 1-105〉 彎曲縱長板冑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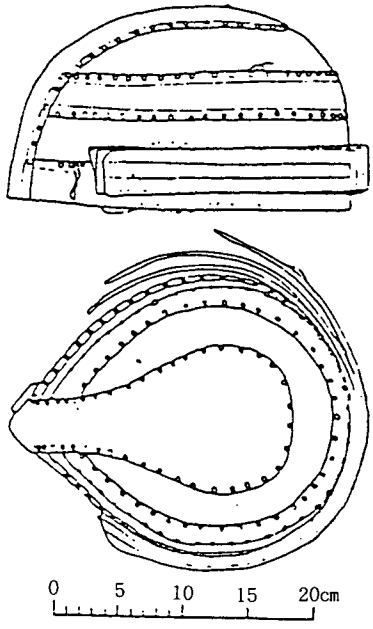

〈그림 1-106〉 衝角冑 실측도

~215장 정도이다.

- 제2형은 제1형과 유사한 형태인데, 중앙에 세로로 능선이 서 있어 V형을 보이고 있고, 이 능선에 따라 3개가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수량은 11~13장 가량이 된다.
- 제3형은 가장 긴 형태로 폭 3.2cm, 길이 9.8cm이며, 상단에서 단(段)이 지면서 꺾어지고 있다. 수량은 47~50장 가량 된다.
- 제4형은 가장 작은 형태로 수량은 240~245장 가량 된다. 형태는 위는 좁고 아래가 넓은 구두주걱과 비슷한 형이다.

견갑[157]은 네모진 철판의 내측 중앙부를 목부분에 끼울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도려내고 결합시켰다. 어깨부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상박갑(上膊甲)으로 보이는 작은 철판이 다량으로 동시에 출토되어 견갑에 연이어 상박갑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둘레는 약 41cm이고 어깨쪽으로 약 7cm 내려간다.

157) 송계현은 「甲冑出土古墳にみる武器·武具の變遷」(第1分册, 1993. 2)에서 이를 '頸甲B'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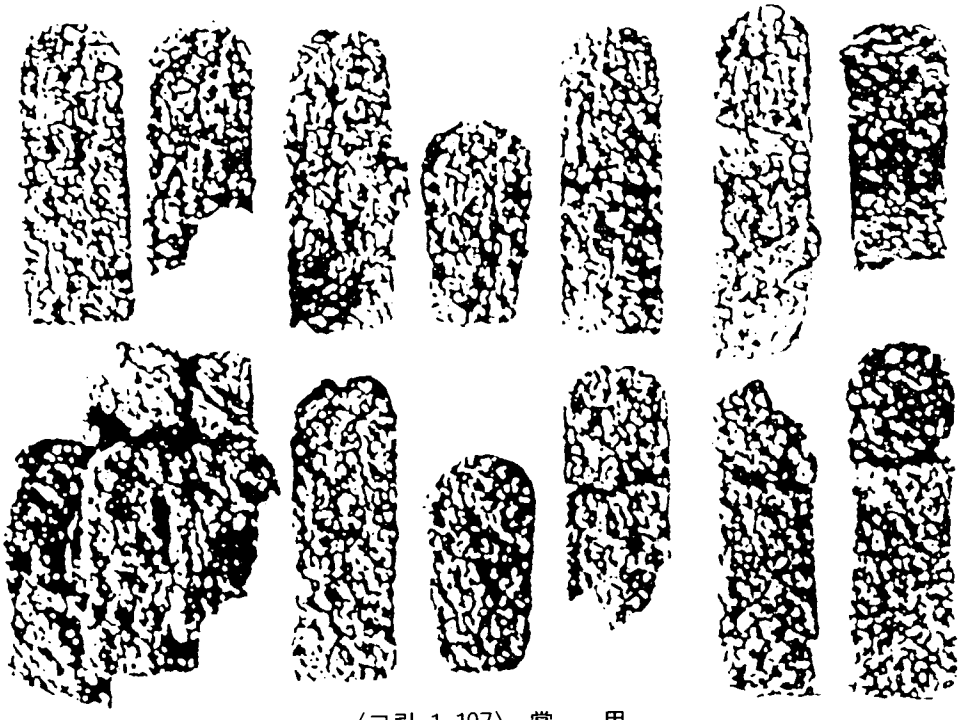

〈그림 1-107〉 裳 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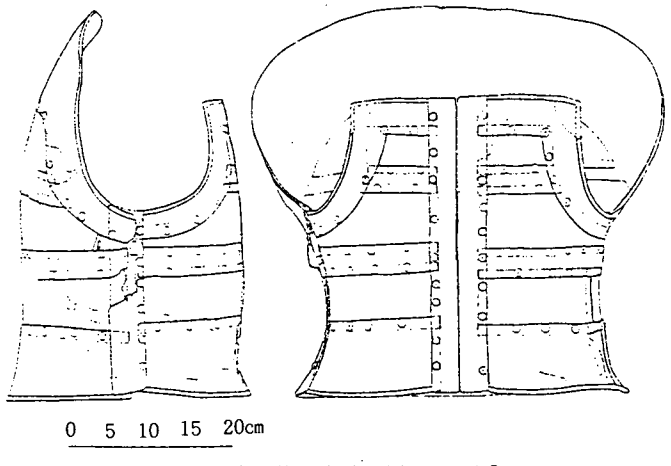

〈그림 1-108〉 橫長板釘結板甲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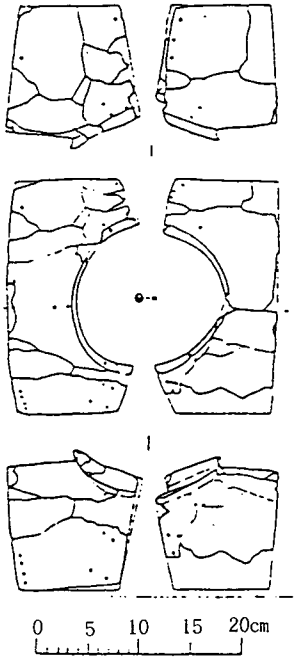

〈그림 1-109〉 肩甲 실측도

마) 합천 磻溪堤 가-A호분

이 분묘에서 찰편(札片)으로 구성된 5세기 말엽의 투구 완형(完形)이 출토되었다.

이 관모형복발주(冠帽形伏鉢冑)는 위쪽에서 보면 타원형이고 측면에서 보면 복발형이며, 전통적인 관모의 형태인 고깔모양의 변형(弁形)의 관모를 위에 부착시켜 상대에게 위엄이 표출되도록 했기 때문에 관모형복발주(冠帽形伏鉢冑)라 명명하였다. 33장의 네모진 철편으로 제작되었는데, 투구 자체와 볼가리개 그리고 뒷머리부분 가리개가 뚜렷한 구분 없이 동시에 제작된 것이다. 투구의 상부에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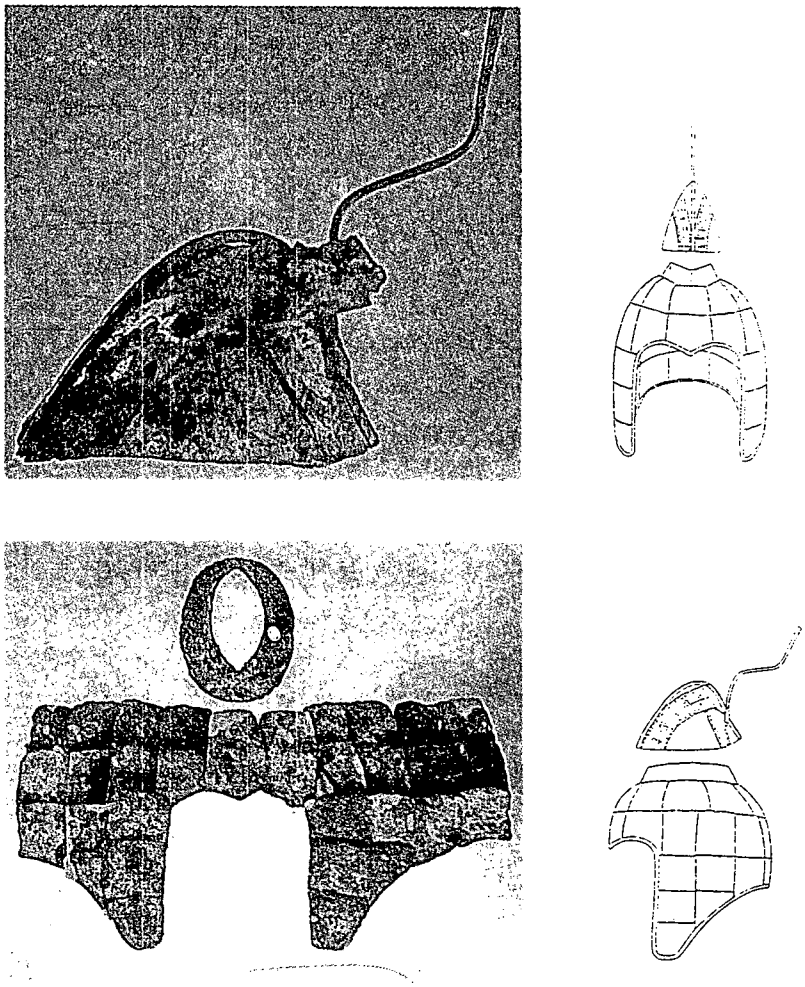

〈그림 1-110〉 冠帽形 투구 사진과 실측도

절모형의 凸형 복발을 얹었으며, 그 위에 금동제(金銅製) 관모형복발로 장식하였다. 관모형복발은 밑부분에 뚜렷한 장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복발의 내부에 끼워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바) 南原 月山里 M1-A호분

특이한 형식의 경갑(頸甲)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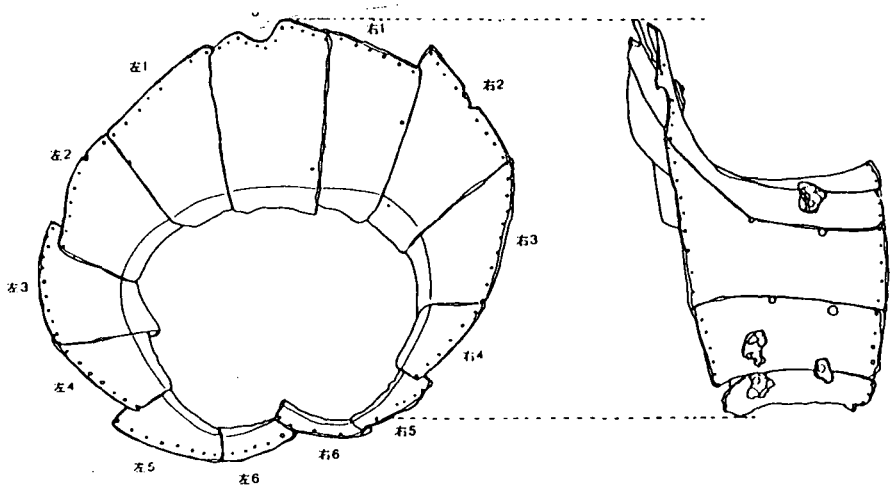

〈그림 1-111〉 頸甲 실측도

13장의 철판을 못으로 연결한 것인데, 좌·우 2·3번째와 5·6번째 철판에 2개씩 고리경첩을 부착하여 개폐장치를 2개소에 만들어 경갑의 신축성을 높인 것이다.

사) 갑주가 묘사된 土製品·鐵製品

1) 李相潤 소장품 : 출토지 미상의 기마인물형 토기이다(그림 1-112)

마갑(馬甲)을 착용한 말을 탄 무사를 표현한 토기이다. 기사(騎士)는 왼손에는 방패를 파지하고 오른손에는 무기를 쥐었다. 기사가 착용한 갑주는 뚜렷하지는 않으나 투구는 충각주(衝角冑)를 착용하였으며, 신체에는 판갑을 두르고 경갑(頸甲)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토기의 형태로 보아 5세기 전반대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2) 李養璿 기증품 : 김해지방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기마인물형 토기이다(그림 1-113).

전술(前述)한 이상윤 소장품과 유사하나, 기사가 착용한 갑주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투구는 챙이 있는 차양주(遮陽冑)로 판단되며 경갑은 앞의 기마인물토기의 것이 목둘레를 빙 돌며 나팔 형상을 띠는 것과는 달리, 앞부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토기의 형태로 보아 5세기 전반대의 것으로 본다.

3) 이을남 소장 철제품 : 출토지 미상의 철제(鐵製) 기마인물상이다(그림 1-114).[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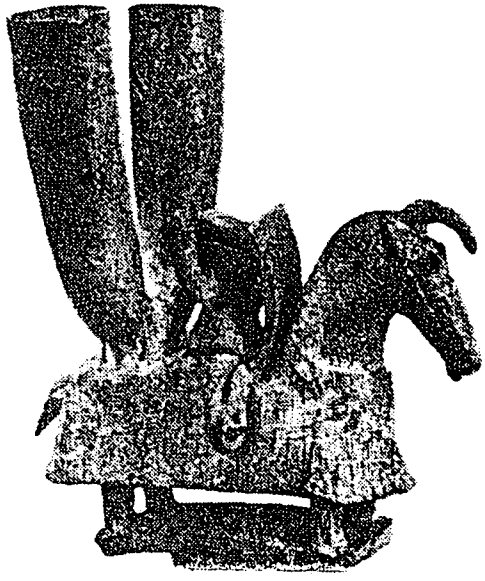

〈그림 1-112〉 기마인물형 토기
(이상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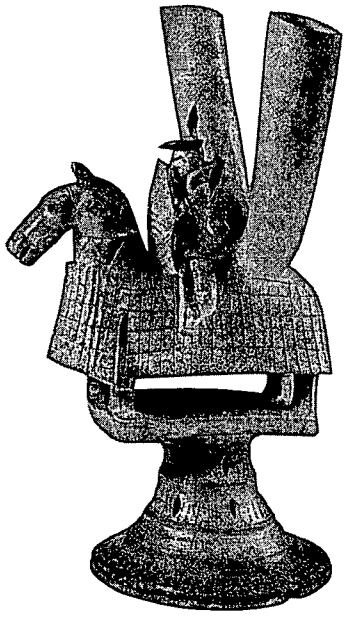

〈그림 1-113〉 기마인물형 토기
(이양선 기증품)

158) 기마무사의 상반신 이상은 임의로 복원된 것이라 한다.(송계현, 앞 논문,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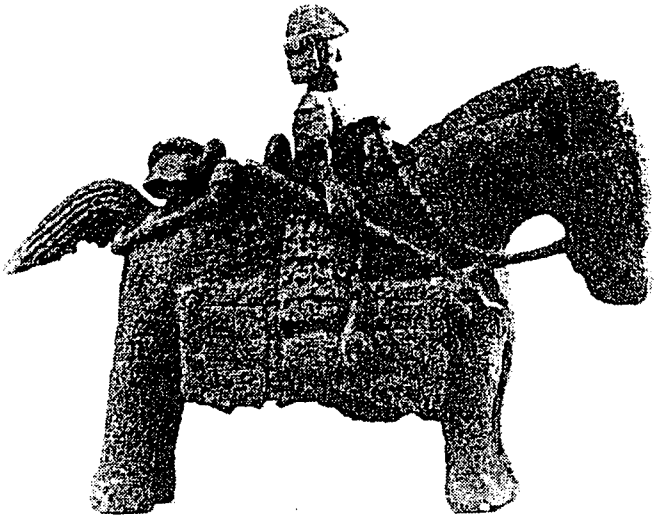

〈그림 1-114〉 철제 기마인물상

길이 23cm×높이 17cm의 크기로서, 말을 탄 무사가 착용한 갑주는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투구는 충각주(衝角冑)이며 3단(段)으로 엮었다. 기사가 착용한 갑옷은 미늘로 이루어진 상박갑(上膊甲)과 대퇴갑(大腿甲) 그리고 정강이 보호용 경갑(脛甲)으로 구분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목 보호용 경갑(頸甲)은 없다. 신체에 두른 갑옷은 판갑인지 찰갑인지 명확하지 않다.

라. 加耶 軍服飾의 特徵

가야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류 유물들은 각각 다른 분묘에서 나왔지만 뚜렷한 공통점을 지닌다. 즉 4세기대의 갑주들은 투구의 경우 철제로 만들고 가죽끈으로 연결시키는 종장판주(縱長板冑)가 공통적이며, 갑옷의 경우 철제로 만들고 가죽으로 연결시키는 종장판단갑(縱長板短甲)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이다.

가야지역의 고분군(古墳群)에서 이와 같이 풍부한 갑주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4세기부터 갑주류가 정형화(定型化)되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갑주가 대량생산되어 수장(首長)과 같은 특수지배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소유할 수 있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의 4세기대 갑주는 궁극적으로는 고구려를 포함한 북방계의 갑주문화의 영

향을 받았지만, 이 영향에 자극받아 가야 갑주 자체는 가야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159] 즉 투구는 원류지(源流地)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나 갑옷 자체는 당시 가야지역의 환경에 맞게 종장판단갑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변형,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보아 가야 갑주는 '토착계(土着系) 갑주'로 불릴 수 있다.

5세기 이후가 되면 가야 갑주의 양상은 일변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은 기마술(騎馬術)의 보급을 시사하는 각종의 마구(馬具)와 함께 승마용 갑주인 경갑·복발형 투구 등이 나타나 고구려계의 기마용 갑주문화의 급격한 확산을 보이는 것이다. 이 점은 가야지역이 4세기의 보병전술에서 5세기의 기마전술 시대로 전환하였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5세기가 되면 지배층의 방호구(防護具)인 '기마용 갑주' 그리고 피지배층의 방호구로 전락하는 '토착계 갑주'의 두 가지 종류 외에 새로운 갑주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충각주(衝角冑)를 비롯하여 삼각형 철판이나 가로로 긴 철판을 가죽끈으로 연결한 갑옷류와 정결법(釘結法)을 사용한 갑옷들이다.

가야시대의 갑주에 있어 몇 가지 특색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야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금동관(金銅冠)을 통해 군복식 중 모자에 대해 약간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관모(冠帽)란 애초에는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을 막고 방한·방서(防暑) 등 머리의 보호를 위하여 착용한 것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회의 풍습·예절을 나타내게 되고 나아가 당대 사회구조상 위계질서를 표시하게 되어서 계층·의례(儀禮)·미관(美觀)의 목적으로 변화하게 된 모자이다.[160] 전투행위에 있어서 전사(戰士)들이 모자를 착용하는 문제도 이와 똑같은 맥락을 가지게 된다. 전사들이 자신들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착안한 것이 모자 즉 주(冑)였고, 주의 착용에 가장 큰 목적은 머리 보호였다. 다만, 전사들의 착용모자는 일반인의 관모와는 약간 그 성격을 달리하여 짐승의 뿔이나 뿔 형상의 모양을 부착하여 상대로 하여금 보다 큰 위엄을 느끼게 하면서 공포심을 유발시켰고 동시에 키가 커 보이게 하였던 점이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해 일상

159) 신경철은 그 이유로서, '고구려 갑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북방의 실용 갑주는 물론 주변지역의 갑주자료에도 縱長板短甲과 동일계보로 보이는 단갑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신경철, 「가야의 武具와 馬具」, 앞의 책, pp. 11~12.)

160) 윤세영, 1980 「韓國古代冠帽考－三國時代 冠帽를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9,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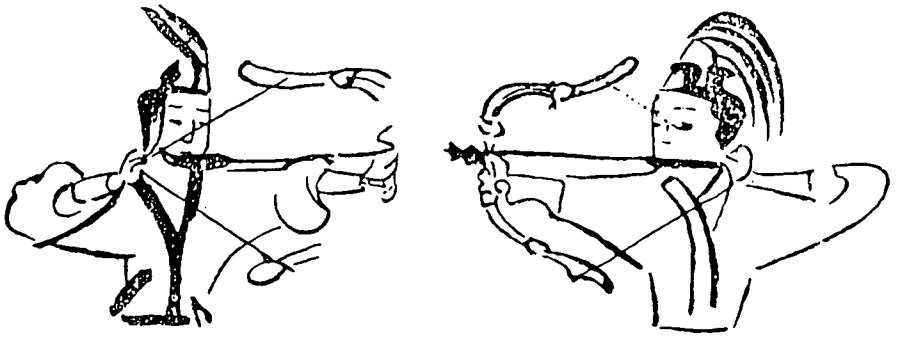

〈그림 1-115〉 高句麗 鳥羽冠

용에 착용되는 모자는 의례가 주요 목적임에 비해 전투용 모자는 이와는 상반되게 의례를 오히려 무시하고 무례하게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 계층적인 면이나 미관의 면에서는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한국 고대 관모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조우관(鳥羽冠)이다. 관모에 새의 깃털을 꽂아 착용한 이 모자는 일상용 모자나 전투용 모자에 공히 사용된 것으로 특히 고구려에서 크게 성행하였다.[161] 조우관은 초기에는 천연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식하였으나, 사회의 발전과 지배계층인 귀족계급이 깃털을 금속으로 대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고구려 조우관의 기본형태는 재료면에서 그리고 형태면에서 변화하여 남부지역인 백제·가야·신라에 영향을 주어 금관 또는 금동관·백화수피모(白樺樹皮帽) 등으로 발전한 것이다.[162]

이러한 금동관이 출자형(出字形)으로 장식되는 이유는 모계(母系)로 이어지는 샤먼의 정통성(正統性 : 世襲)을 의미한다는 의견과 수목신앙(樹木信仰)의 반영(反映)이라는 견해[163]가 있다.

새의 깃털로 장식한 조우관이 일상용 및 전투용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또한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숭배하는 대상은 자연계이며 그 중에서 하늘은

161) 『新唐書』 弁辰條
"高句麗工人紫羅帽 飾以鳥羽"
162) 尹世英, 앞 논문, p. 34.
163) 李鐘宣, 「環頭刀劍과 裝飾文樣」, 美術史學會 月例發表會(1990. 12) 發表文 要旨, p. 7.

자연계의 대표자적 성격을 띤다. 세계 여러 나라의 건국신화가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조(始祖)가 알에서부터 탄생하는 신화 역시 바로 이 하늘을 의식한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부여하면서 추종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출현되는 제반 조치나 사상이 곧 천(天)의 사상이며, 동서양 공히 하늘을 오를 수 있는 중간 매개체인 새(대표적으로는 독수리계열)의 깃털이나 그 머리를 이용한 현물이나 상징물을 휴대하여 천에서 내려왔고 천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이상(理想)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살아 생전에 새의 신체 일부분을 장식품으로 즐겨 사용함으로써 전투시나 그밖의 사고를 당해 죽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죽은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삼국지』 변진조에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164]라는 기록에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시베리아지방 등 대륙 북방에서의 샤머니즘에서 온 조류 숭배사상의 영향을 받아 타계한 사자(死者)와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조류와의 관계, 즉 사자의 영혼을 타계에 운반하는 수단이 조류라 믿은 것으로 해석된다.[165]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금관·금동관·모(帽)·관식(冠飾) 등은 반드시 최고통치자 또는 그 주변인의 일상용 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타계한 사자(死者)의 영혼을 위로하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후장(厚葬)하는 부장품으로서 장송용(葬送用) 장엄구(莊嚴具)이다.'라는 주장[166]에서 '반드시 …… 하기보다는'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처럼, 조우관은 권위의 상징이자 장송용 장엄구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가야인들이 평소 즐겨 착용한 일상·전투용 장식 모자임에 틀림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야시대에 사용된 판갑(板甲)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판갑에 대해 논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판갑은 활동성이 적어 실전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체 방호용에 근본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판갑은 어깨·가슴·허리 등 주로 상반신만 가리게 마련된 철판제 갑옷이다. 판갑은 삼

---

164) 『三國志』 卷30 魏書 三十 韓.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165) 白承玉, 1991 「4~6세기 比斯伐加耶의 성격과 그 推移」 부산대석사학위논문, pp. 43~44.

166) 尹世英, 1988 『古墳出土副葬品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p. 219~222.

각형이나 횡판·종판을 여러 단(段) 이어서 쇠못이나 가죽으로 붙여서 만들었는데 뒷면은 높아 어깨까지 덮게 되어 있으며, 앞면은 조금 낮고 착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옆 혹은 양옆에 개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판갑은 영남지방에서 지금까지 14령(領)이 출토되었다. 그 중 종장판(縱長板) 판갑이 7령, 삼각판(三角板) 판갑이 5령, 횡장판(橫長板) 판갑은 2령이다. 4세기대에 발견되는 판갑은 남부 제(諸)지방의 수장(首長)이나 호족층의 방어구(防禦具)일 확률이 많다.[167] 5세기에 들어서면서 4세기대의 남부지방 갑주 계보를 잇는 이 갑주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비(非)수장·호족층의 방어구로 바뀌고 그 대신 마구(馬具)와 깊은 관련을 갖는 찰갑이 남부 제(諸)지방의 수장·호족층의 방어구로 선호되었다.

세 번째로 가야시대의 미늘갑옷[札甲]의 형태는 후대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종류가 적어진다. 예를 들어 허리부분 미늘의 변화를 보면, 합천(陜川) 옥전(玉田) 고분군의 출토 미늘의 경우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2.5 이상인 것과 그 이하인 것으로 구별되는데, 2.5 이상인 고분은 M1호분·M3호분·5호분이며, 그 이하인 고분은 28호분·35호분·67-A호분·20호분이다. 이것은 후자보다 전자가 더욱 가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4세기의 미늘이 보다 폭넓음에 비해 5세기대의 미늘은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투경험에 의해 얻어진 경험상의 습득과 야금술의 발전이 함께 어우러져 생성된 결과로서, 가늘 경우 인체의 유동성을 살릴 수 있음은 물론 전투수행중 어떤 부위의 미늘이 손상될 경우 이 손상으로 말미암아 치명적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즉 틈새가 커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효율성을 지닌다.

---

167) 전투수행의 횟수가 많고 특히 전투지역이 빈번하게 바뀌는 전투를 수행할 경우 판식 갑주의 육중함과 둔중함으로 기인되는 비효율성은 갑주의 형태를 변하게 만든다. 유럽의 경우 야금술이 발달되어 철로 만든 판갑이 실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가볍게 제작되는 시기는 14세기 이후의 시기이다.(Harold L. Peterson, *A History of Body Armor,* 1968, pp. 42~53)

第 3 節　統一新羅의 軍服飾

1. 統一新羅의 時代 概觀

신라는 560년대에 이르러 사상 최대의 영토팽창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이때부터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되는 660년대까지 1세기 동안 실지회복을 꿈꾸는 고구려·백제 두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양면공격을 받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신라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적 위기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대당 외교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나라 태종이 지적한 여왕 통치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제시한 당나라 황족에 의한 신라의 감국안(監國案)이 도리어 신라 정계(政界)를 분열시키는 발단이 되어, 여왕 지지파와 문벌귀족세력간에 암투가 벌어지면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 난이 김춘추와 김유신의 연합세력에 의해서 진압되었고, 곧이어 김유신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하였다.

신라는 제29대 무열왕(武烈王 : 654～660), 제30대 문무왕(文武王 : 661～680)대에 이르러서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통일사업이 이루어진 후 제반 제도와 시설 정비·정치 및 경제의 안정·당과의 빈번한 교류 등으로 황금시대를 맞이하였고, 이 시기는 무열왕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해 나간 시대이면서 권력구조상으로 보면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왕권이 크게 강화된 전제왕권시대였다. 또한 이 시기에 중국식 묘호(廟號)를 쓰기 시작하였고, 이 사실은 이 시대의 정치적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일이기도 하다.

전제왕권은 삼국통일을 이룩한 직후인 제31대 신문왕(神文王 : 681～691) 때에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는 상대등(上大等)으로 대표되는 귀족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여러 행정·군사조직을 완성하였다. 중국제도를 모방하여 6전조직(六典組織)을 갖추었고, 제1급 중앙행정기구의 관직제도를 다섯 단계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에 9주(州)를 비롯하여 5소경(小京)을 설치하였고, 수도와 지방에 각각 9서당(誓幢)과 10정(停) 등의 군사조직을 배치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전제왕권은 제33대 성덕왕(聖德王 : 702~736) 때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제왕권의 정치적·사회적 모순이 점차 누적되어 제35대 경덕왕(景德王 : 742~764)대에 이르러서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결국 780년에 이르러 무열왕 계통은 끊어지고, 진골귀족들이 왕실에 대하여 서로 연합하는 형세를 띠면서 동시에 각기 독자적인 사병(私兵)세력을 거느리는 귀족연립(貴族聯立) 혹은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진골귀족들이 중앙에서 정쟁에 휩쓸려 있는 동안 지방의 호족세력들도 크게 성장하여 점차 왕실을 압도할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애초 삼국통일 후, 신라의 토지제도는 크게 변화하였었다. 즉, 687년에 관료들에게 관료전(官僚田)을 지급한 뒤, 2년 후에는 녹읍(祿邑)을 폐지하면서 세조(歲租)를 지급했다. 이와 같은 개혁은 귀족들의 토지점유와 결부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귀족들의 반발이 너무나 컸고, 반면에 이를 억누를 만한 국가권력이 없어 757년에는 녹읍을 다시 부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귀족 관료들은 부활된 녹읍 이외에도 광대한 사유지를 지니고 있어, 국가권력의 퇴조를 보이기 시작한 신라 말기에 들어와서는 귀족들이 독자적인 사병(私兵)을 거느릴 만한 재산을 축적해 있었다.

그후, 신라 조정은 대세를 회복하기 위한 줄기찬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52대 진성여왕(眞聖女王 : 887~896)이 즉위하였을 때 국가재정은 파탄에 직면하였다. 889년, 조정은 이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방의 주군(州郡)에 조세 납부를 독촉한 것이 오히려 농민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형상이 되어, 통일신라는 50년간의 내란기에 접어들었다. 이 내란기는 신라 조정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국 각지에 자립하고 있던 군웅들, 그중에서도 견훤과 궁예에 의해 지속된 시기였다. 신라는 이 두 집단이 자웅을 겨루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여맥(餘脈)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고려가 후백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놓이자 935년, 조정의 자진 항복으로 왕조를 마감하였다.

통일신라의 사회적 규범의 표준이 되었던 제도는 삼국시대의 신라에서와 똑같이 골품(骨品)제도였다. 골품제도는 6세기 초, 신라 조정에 의하여 법제화된 이래 삼국통일을 거쳐 그 멸망에 이를 때까지 400여 년 간에 걸쳐서 거의 변함없이 신라의 정치와 사회를 규제하는 기본 골격으로서 기능, 작용하였다. 이 제도는 개인의 혈통

의 존비(尊卑)에 따라서 정치적인 출세, 즉 관등제와 관직제가 일정하게 규제되었음은 물론, 혼인이라든지 그밖에 가옥의 크기·의복의 빛깔 그리고 심지어는 우마차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을 가하였다.

골(骨)과 두품(頭品)을 축으로 하는 골품제(骨品制)도 신라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모되어 나갔다. 성골(聖骨)신분의 소멸과 진골출신의 왕 즉위 그리고 통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군공(軍功) 등을 통해 평민층들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3두품·2두품·1두품이 소멸되고, 결국 흥덕왕 9년(834), 골품제는 진골·6두품·5두품·4두품·백성의 순서로 재형성되었다.

삼국통일에 따른 영토의 확대로 지방통치조직은 크게 개편·확대·정비되었고, 이 작업은 685년에 9주(州)·5소경(小京)제도로 완성되었다. '9주'는 중국 고대시기의 우왕(禹王)의 제도를 모방하여, 신라·백제·고구려의 옛 땅에 각각 3개의 주(州)를 설치한 것이었으며, 이 주 밑에 전국에 도합 117~120개의 군과 293~305개의 현을 두었고,[168] '5소경'은 국토의 동·서·남·북·중의 방향에 맞추어 다섯 곳에 소경(小京)을 둔 것이다. 주군(州郡)제도는 종전의 군정적 성격을 현저하게 줄인 반면 행정적 성격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서, 신라가 약 1세기 동안 생사를 건 전쟁 끝에 삼국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비로소 안정되었음을 의미하는 제도이기도 하였다.

삼국통일 후 신라의 군사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중앙군으로서 시위부(侍衛府)·9서당(誓幢)과 그 지원부대인 삼무당(三武幢)·경오종당(京五種幢)·이절말당(二節末幢)·계금당(罽衿幢)이 있었고, 지방군으로서 오주서(五州誓)·착금기당(著衿騎幢)·10정(停)·신삼천당(新三千幢)·비금당(緋衿幢)·사자금당(師子衿幢)·만보당(萬步幢)·삼변수당(三邊守幢)·이계당(二罽幢) 등이 편성되었다.[169]

신문왕 원년(681)에 최종 정비된 '시위부'는 궁성의 숙위(宿衛)나 국왕의 호위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전제왕권의 군사적 배경이 된 부대이다.

'9서당'의 설치는 문무왕 12년(672)에 백제인으로 백금서당(白衿誓幢)을 편성하고 삼국시대 진평왕 때 편성된 서당(誓幢)을 녹금서당(綠衿誓幢)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문무왕 17년(677)에 낭당(郎幢)을 자금서당(紫衿誓幢)으로 개편하

168) 郡縣의 수가 사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郡縣制를 개편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69) 李仁哲, 1993『新羅政治制度史研究』一志社, pp. 325~431.

면서 고구려·말갈·백제·보덕성(報德城)[170]의 백성들을 편입하고, 효소왕 2년(693) 장창당(長槍幢)이 비금서당(緋衿誓幢)으로 편제됨으로써 '9서당'은 완성되었다. '9서당'의 특징은 신라인 외에도 백제와 고구려의 피정복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단이라는 점에 있다. 즉, 신라인으로는 종전의 서당과 낭당(郎幢)을 각각 개편하여 두 개의 군단을 편성하고 여기에 비금서당을 추가 포함시켜 도합 3개의 군단을 조직하였고, 백제인으로는 전후 2개의 군단을 조직하였으며, 고구려인으로는 3개 군단, 그리고 말갈인으로 1개 군단을 조직하였다. '9서당'은 통일신라 초기의 최대 군단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군사력이 되었지만, 피정복민으로 조직된 군단의 수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면서 수적인 비중면으로 보아 이국인 포로들이 주가 되

〈표 1-9〉 骨品과 官等·官職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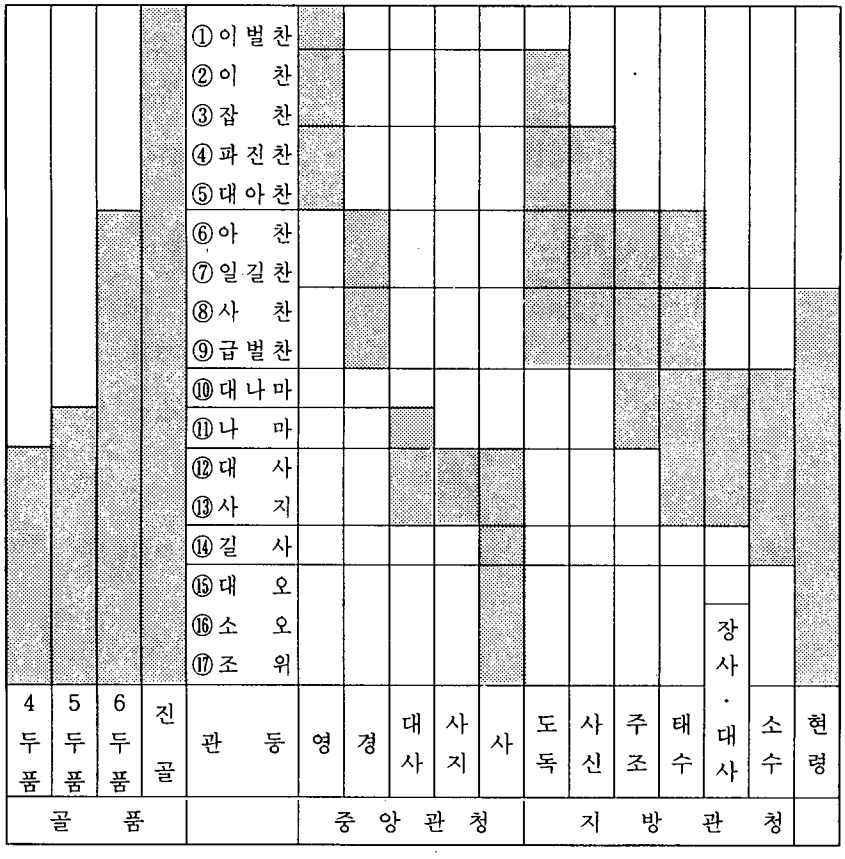

170) 報德城은 劍牟岑이 고구려 遺民 4,000여 호를 바탕으로 고구려 왕족 安勝을 왕으로 추대하여 669년에 신라 땅인 평양 남쪽에 세운 고구려의 망명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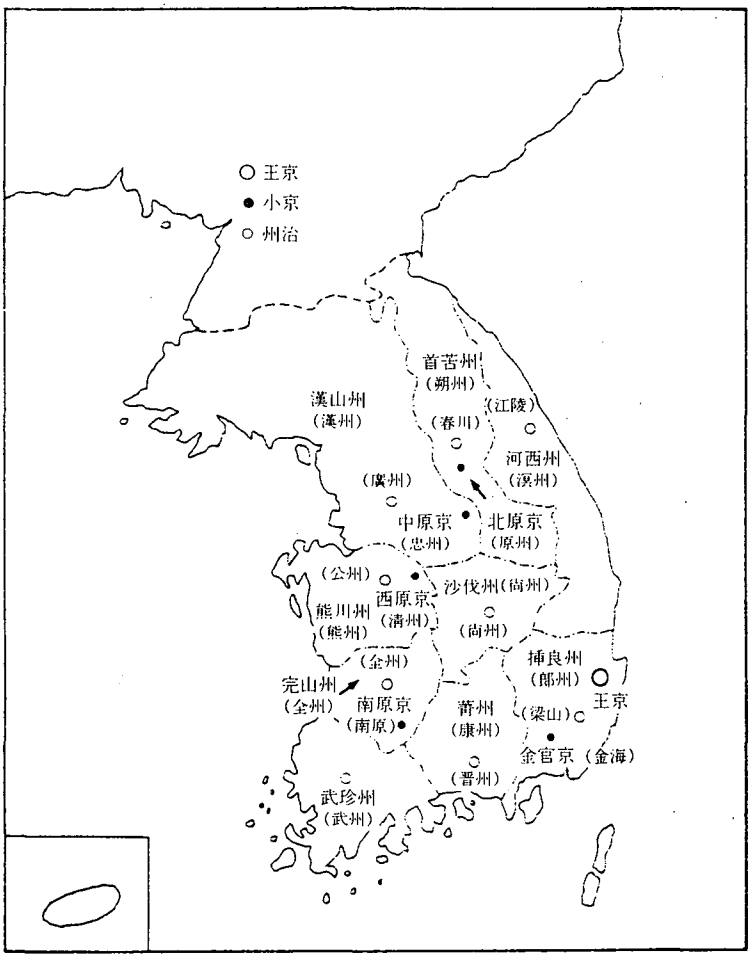

〈그림 1-116〉 통일신라의 9州 5小京圖

어 편성되었던 부대라는 점 때문에 조정에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한계성을 지니게 되었고, 또한 부대원의 자연적인 결원현상 등이 누적되어 통일이 완성되고 안정되면서 그 위세가 축소되고 결국 해체되었다.

지방군단인 '오주서(五州誓)'는 보병과 기병으로 편성된 군단이었으나, 기병군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컸다. '오주서'는 왕경에 배치된 계금당(罽衿幢) 그리고 이들 부대의 지원부대였던 착금기당(著衿騎幢)과 더불어 기병부대로서 전국에 걸쳐 치안 유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하에 편성되었던 부대였다. 이 부대는 '10정'과 더불어 전국의 치안질서를 담당한 주요 부대였다.

'10정'은 왕경(王京) 출신인으로 편성된 기병군단으로서 9주에 각각 하나씩 '정'을 둔다는 원칙 아래 골고루 배치되었다.[171] 이 '10정'은 국방상의 견지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의 치안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군사조직이었다.

'비금당(緋衿幢)'은 긴 창을 사용하는 부대였고, '만보당(萬步幢)'은 도끼를 주로 사용하는 부대였으며, '사자금당(師子衿幢)'은 통일시기에 주(州)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편성된 부대였다. '이계당(二罽幢)'과 '삼변수당(三邊守幢)'은 신라 통일기에 북방경비를 위해 설치한 부대이다.

통일 이전에는 소규모로 행해지던 대외무역은 통일기에 접어들어 문물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9세기에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해상교통이 보다 원활해지면서, 중앙의 정치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지방세력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고, 때마침 당나라의 지방통제력이 약해진 요인

〈표 1-10〉 統一新羅 군사구역 일람표

軍編成 / 地域	六停	十停		五州誓	三邊守
		停名	位置		
東都	大幢(慶州附近)				
尙州	上州停(貴幢)	音里火停	慶北尙州		
良州		參良火停	慶北達城		
康州		召參停	慶南咸安	菁州誓	
漢州	漢山停	南川停	京畿利川	漢山州誓	漢山邊
		骨乃斤停	京畿驪州		
朔州	牛首停	伐力川停	江原洪川	牛首州誓	牛首邊
熊州		古良夫里停	忠南靑陽		
溟州	河西停	伊火兮停	慶北靑松	河西州誓	河西邊
全州	完山停	居斯勿停	全北任實	完山州誓	
武州		未多夫里停	全南羅州		
計	6	10		5	3

171) 다만, 漢州만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데다가 지역 자체도 넓었기 때문에 특별히 2개의 停을 배치하였다.

도 추가되어[172] 민간의 사무역(私貿易)이 크게 발달하였다.[173]

통일신라는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였고, 또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서해(西海)를 활용하여 동아(東亞)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당의 수군(水軍)을 격파함으로써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후 항로(航路)를 확보하여 우수한 선박술·항해술에 힘입어 서해를 통해 당과 친선·공존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증유의 문화발전과 동아의 평화를 건설하였다.

서해의 항로는 6세기 초엽까지는 당은포(唐恩浦 : 黨項城)-덕물도(德物島 : 덕적도)-초도(椒島)-패강구(浿江口)-압록강구(鴨綠江口)-비사성(卑沙城)-등주(登州)로 연결되는 고려·발해항로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 항로는 한 무제의 침입 이후 수·당군의 고구려 정벌, 발해의 등주공략, 그리고 검모잠(劍牟岑)의 남하해로(南下海路)가 되어 왔으며, 백제·일본사신도 이 길을 통하여 중국을 왕래하였다. 백제가 개척한 서해 횡단항로는 당은포 초도 적산(赤山)으로 연결되는 수로였으며, 6세기 중엽까지 백제에 의하여 이용되다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가 지배하여 이른바 신라항로(新羅航路)가 됨으로써 수·당과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8세기 초엽에서 9세기 초엽에 이르는 1세기 동안 나·당 양국은 서해를 통해 정치·문화의 공존을 이룩하였으며, 문물의 교류와 국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통일신라의 서해를 통한 대당(對唐)교섭은 한국 역사상 가장 활발한 문물교류와 인적 왕래를 촉진하였으며, 진평왕 43년(621) 이후 신라 말까지 300여 년간 신라는 서해를 건너 150여 회의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로써 대당외교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신라는 견당사(遣唐使)의 선발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그 대표적 인물은 다음 〈표 1-11〉과 같다.[174]

〈표 1-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신라의 견당사는 가까운 왕족이나 급찬(級飡) 이상의 인물이 발탁되었고, 신라 말에 이르러서는 관등보다는 관직 위주의 인물이 선정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지니면서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

172) 당시 唐나라는 前後 8년간에 걸친 安祿山과 史思明의 난으로 중앙의 통치력이 무너지고, 지방의 節度使 全盛의 시대로 들어갔다.

173) 통일신라의 私貿易은 張保皐가 淸海鎭 大使가 된 흥덕왕 3년(828)부터 문성왕 8년(846)까지의 17~18년간 극성기를 이루었다.(李龍範, 1990 「海外貿易의 發展」『韓國史』3, 국사편찬위원회, pp. 526~534)

174) 이인철, 앞 책, pp. 294~295.

〈표 1-11〉 統一新羅의 遣唐使

사 신 명	관 등·관 직	入唐 년대〔귀국〕	비 고
金 欽 純	角 干	문무왕 9년(669)〔670〕	謝 罪 使
金 良 圖	波 珍 飡	문무왕 9년	謝 罪 使
祇 珍 山	級 飡	문무왕 9년	磁石 기증
金 福 漢	大 奈 麻	문무왕 9년	나무 기증
原 川	級 飡	문무왕 12년(672)	謝 罪 使
金 思 讓	阿 飡	성덕왕 3년(704)〔705〕	佛經 가져옴
金 貞 宗		성덕왕 12년(713)	詔勅 전달
金 風 厚		성덕왕 14년(715)〔716〕	
金 欽 質	王 弟	성덕왕 25년(726)	
金 榮	副 使	성덕왕 34년(735)	
金 相	大 阿 飡	성덕왕 35년(736)	
金 隱 居	伊 飡	혜공왕 3년(767)	册名 요구
金 俊 邕	大 阿 飡	원성왕 5년(789)	侍 中
金 彦 昇	大 阿 飡	원성왕 6년(790)	上 大 等
金 力 奇		애장왕 9년(808)	册名 요구
金 陸 珍	大 阿 飡	애장왕 10년(809)	謝 恩
金 昌 南	伊 飡	헌덕왕 1년(809)	告 哀
金 憲 章	王 子	헌덕왕 2년(810)	金銀佛像기증
金 張 廉	王 子	헌덕왕 9년(817)	
金 柱 弼		헌덕왕 14년(822)	
金 大 廉		흥덕왕 4년(829)	茶種子 전래
金 能 儒		흥덕왕 6년(831)〔832〕	溺 死
元 弘	阿 飡	문성왕 13년(851)	佛經·佛版전래
金 富 良	阿 飡	경문왕 2년(862)	溺 死
金 胤	王 子	경문왕 9년(869)	謝 恩
金 處 誨	兵 部 侍 郎	진성여왕 7년(893)	溺 死
金 樂	倉 部 侍 郎	경명왕 7년(923)	
金 岳	倉 部 侍 郎	경명왕 8년(924)	
張 芬	兵 部 侍 郎	경애왕 4년(927)	
金 乭	執 事 侍 郎	경순왕 6년(935)	

왕래에 따라 교역되는 물품도 삼국시대보다 훨씬 다양해졌으며, '복식금제(服飾禁制)'에서 보이는 사치품들도 자연스럽게 수입되었던 것이다.

2. 文獻·石像에 나타난 軍服飾

가. 概 要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중국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로 유추해 보아, 통일신라시대를 전후로 하여 신라로서는 외교적으로 중국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중국의 문물 수입량이 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신라는 애초 제23대 법흥왕(法興王) 7년(521)에 자(紫)·비(緋)·청(靑)·황(黃) 4가지 색에 의한 공복(公服)제도를 정착하였었다.[175] 이 제도는 『삼국사기』에서 "복색(服色)의 존비(尊卑)제도를 정하였지만, 오히려 동이(東夷)의 풍속 그대로였다"[176]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신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복색(服色)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덕왕(眞德王)대에 접어들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한 당나라의 무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었고, 진덕왕 2년(648), 삼국통일의 일등공신이자 진덕왕의 뒤를 잇게 되는 김춘추가 청병(請兵) 구실의 하나로서 '작은 중국'이 되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중국의 복식제도를 따르게 되면서 신라의 풍속은 중국의 풍속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문무왕 4년(664)에는 여인의 의복까지도 중국의 것을 그대로 따르게[177] 될 정도로 통일신라의 복식은 중국의 영향을

175) 『三國史記』 卷 4,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7年條. 계급에 따르는 色 분배 내용을 보면, 太大角干에서 5등급인 大阿까지는 紫衣, 6등급 아찬에서 9등급 級까지는 緋衣, 10등급인 大奈麻에서 11등급 나마는 靑衣, 12등급 大舍에서 17등급 先沮知까지는 黃衣를 착용케 하였다.(『三國史記』 卷 33, 雜志 2, 色服)

176) 『三國史記』卷33 雜志 第2 色服

177) 이 영향은 고려시대에까지 그대로 미치게 되어 중국으로 가는 고려사신의 복장과 중국인의 복장이 하등 다를 바 없어 중국인이 구별을 못할 정도였으며, 고려에 온 중국사신들은 使館의 倡女 복식을 보고, '이것이 (중국) 三代의 服色인데, 아직도 여기서 행하여질 줄은 몰랐다'고 감탄(?)할 정도였다.(『三國史記』 新志 2, 色服)

받았다.[178]

나. 文獻에 나타난 軍服飾

(1) 통일신라의 武官服

신라 복식에 대하여는 양산(梁山)의 부부총(夫婦塚)·금관총(金冠塚) 등 많은 고총(古塚) 유물 중 부식이 되지 않은 장신구 등을 통하여 일부분이나마 엿볼 수 있으나, 통일신라기에 접어들면 고분이나 고총 등이 불분명하고 과거와는 달리 종교적 색채로의 매장풍습상의 변화가 있었고, 석물도 희귀하여 복식에 대해 참고하거나 추정할 만한 자료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흥덕왕(興德王)이 내렸던 관료의 복식에 대한 '복식금제(服飾禁制)'의 내용[179]이 유일한 문헌자료가 되고 있을 뿐이다.



〈그림 1-117〉 山西省 太原 新董苛村 唐 趙澄의 墓 壁畵人物圖

신라 복식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복식금제'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통일되기 전에는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복제를 들여왔던 신라가 통일 후에 당군을 구축하고 당나라의 책봉을 받으면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의 복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용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중국제도를 기본[180]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

178) 김동욱은 『高麗史』 輿服志 序文을 참조하여, 服飾史의 시대구분을 7개 시기로 분류하고,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이 唐制를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그는 外來의 영향을 시기구분의 準據로 삼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① 固有복식시대 ② 唐복식 영향기(통일신라시대-신라 말기) ③ 五代·宋 복식 襲用시기(고려-송 멸망) ④ 몽골복식 영향기 ⑤ 明복식 영향기 ⑥ 조선복식 형성기 ⑦ 서양복식 영향기(金東旭, 1979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p. 190)

179) 『三國史記』卷 33, 雜志 2, 色服.

180) 김동욱, 앞의 책, p. 45.

신라의 단편적인 자료와 함께 중국 당나라의 자료를 활용하여 통일신라의 무관복을 추정해 본다.

통일신라 군복식 자료를 보충해주는 점에서 가장 돋보이는 당(唐)의 자료는 〈그림 1-77〉에서 보이는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에서 나온 벽화인물도(壁畫人物圖)이다.

이 벽화의 인물은 무관(武官)으로서, 복두(幞頭)를 쓰고, 도포인 오(襖)를 입고, 장검을 차고, 오피화(烏皮靴)를 신고 있다.

이 벽화의 그림 모습을 염두에 두고, 신라의 복두·오·화(靴) 등의 모습을 살핀 후, 전체적인 신라 군복식의 형상을 그려 보자.

남자의 대표적인 두의(頭衣)로서는 건(巾)과 복두(幞頭)를 들 수 있는데, 흥덕왕의 '복식금제'에서 보이는 관복의 복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골(眞骨)의 대등(大等)은 복두를 임의로 쓰고, …… 육두품(六頭品)은 복두에 세·라·시·견·포(緦·羅·紵·絹·布)를 사용하며, …… 오두품(五頭品)은 복두에 라·시·견·포(羅·紵·絹·布)를 사용하고, …… 사두품(四頭品)은 복두에 사·시·견·포(紗·紵·絹·布)만을 사용하며, …… 평민은 견·포(絹·布)만을 사용한다."

아쉽게도 이 내용에서는 복두를 구분하여 착용한다는 뜻만이 있고, 그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여기서 신라가 당나라의 제도를 습용(襲用)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당시 통일신라의 복두는 사(紗)와 나(羅)를 재료로 사용한 복두에 밑으로 실이 처지는 하수대(下垂帶)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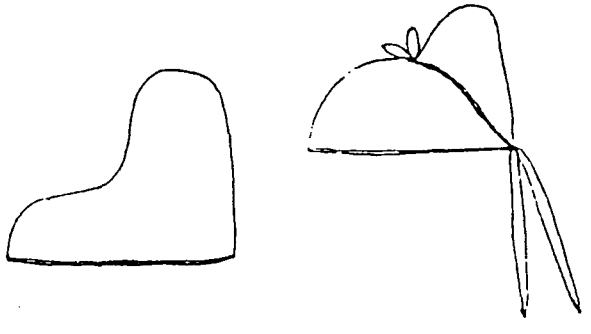

〈그림 1-118〉 통일신라 幞頭(金東旭, 『韓國服飾史硏究』 p. 34)

상의(上衣) 포(袍)는 문관의 경우는 옆이 붙어 있고, 무관의 경우는 아래가 한 자 정도 터져 있었다.[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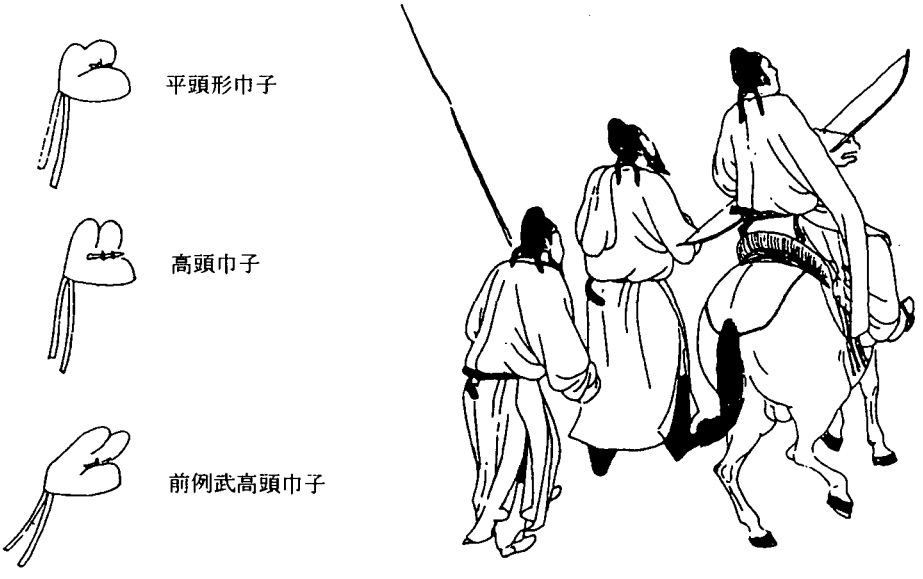

〈그림 1-119〉 唐나라의 頭의 변천과 圓領袍衫·幞頭 그림
(華梅, 1992『中國服飾史』(朴聖實·李秀雄 譯), 耕春社, p. 89)

화(靴)에 관한 '복식금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골의 대등은 자색(紫色) 가죽을 금하고, …… 육두품은 검은 고라니의 주름진 무늬의 자색 가죽을 금하고, …… 오두품은 검은 사슴의 주름진 무늬의 자색 가죽을 금하고, …… 사두품은 검은 사슴의 주름진 무늬의 자색 가죽을 금하며, …… 평민은 검은 사슴의 주름진 무늬의 자색 가죽을 금한다."

이상에서 유추하여 보면, 자피(紫皮)인 녹피(鹿皮)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오두품(五頭品) 이하는 우마피(牛馬皮)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신체착용 각 부위의 복장 모습을 종합하여 통일신라의 무관복(武官服)을 도시하면 〈그림 1-120〉과 같다.

---

181) 김동욱, 앞의 책, p. 36.

(2) 통일신라의 衿幢제도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 갑주의 양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당시 사치의 극을 달리고 있던 일반 복식문화[182]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국의 영향 또한 상당하여 실용적인 전투용 갑주양식에서 위용(偉容)과 의장적(儀仗的)인 요소를 많이 가졌던 당대(唐代)의 유상제(襦裳制)가 많이 보인다.



〈그림 1-120〉 통일신라 武官服
(金東旭, 『韓國服飾史硏究』 p. 46)

통일신라시대의 군복식상 특이한 점으로는 치열했던 삼국간의 전쟁이 끝나면서 군복식제도의 운용에서 주요 착안점이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방호막으로서 신체에 두르던 강력한 반탄력(反彈力)을 지닌 갑주의 착용이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 식별에 치중하면서 위엄을 부리는 새로운 개념의 막(膜)을 인체에 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삼국간에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였던 단계에서 벗어나 고구려·백제인 등으로 편성 조직된 부대까지 운용하고, 또 그 유민을 제압하고 통솔하는 식으로의 임무 전환은 통일신라 군대내의 부대간 식별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예전처럼 삼국간의 국가별 식별만이 필요로 했던 개념과는 달라진 것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식별방법은 옷깃의 색을 달리하여[183] 군대의 소속을 나

182) '服飾禁制'로 알려진 興德王 9년(834)의 下敎에 '奢侈'에 관한 당시의 풍조가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尊卑가 있어 명칭과 法式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르다. 그런데 풍속이 점점 각박하고 백성들이 경쟁적으로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외래품의 진기한 것만을 숭상하고 토산품을 싫어하니, 예절은 문란해지고 풍속이 파괴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옛법에 따라 엄명을 내리니, 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법을 적용할 것이다."(『三國史記』 卷33, 雜志 2, 色服)

183) 서양 군복식의 경우 외투가 부분적인 채색 역할에 사용되었다. 외투 등장 이전의 가장 주요한 치장물이었던 소매가 없는 上衣(jacket or jerkin)는 점차 중요성을 덜해 가 18세기에만 사용되었으며, 19세기 초기에 접어들면서는 하나의 조끼(waistcoat, vest)로서 구실만 하였고, 처음에는 가죽으로 나중에는 천으로 만들어졌다. 이 자리를 대신하여 보다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당시까지 덮는 구실만을 수행했던 외투였다. 이제 상의 재킷에 확실한 색깔로 부대를 구별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 되었고,

타낸 것이며, 이를 금당(衿幢)이라고 한다. 원래 군대 제복은 전장(戰場)에서의 전쟁 양상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전쟁이 확대 발전되면서 각 부대는 서로간에 구분이 필요하였고, 서양에서 보이는 '푸른 부대' 혹은 '황색 부대' 등의 명칭이나 신라의 녹금당(綠衿幢)·자금당(紫衿幢)·황금당(黃衿幢)도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등장된 것이다. 그러나 '푸른 부대' 혹은 '황금당'이라고 부를 때 이는 의복의 부분적인 색깔을 말하는 것이지 의복 전체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짧은 바지(breech)나 스타킹의 색깔 혹은 옷깃 등이 푸르거나 황색이었던 것이다.

금당이란 신라 군대조직의 일개 단위였던 '당(幢)'을 기준으로 장병들이 착용하고 있는 깃인 '금(衿)'에 착색을 하여 각 부대간의 소속 표지(標識)로 삼은 것이다.[184] 옷깃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사람들이 휘직(徽織 : 옷깃)에 청·적 등색으로써 구별한 것은 그 형상이 반월형(半月形) 모양이었으며……'[185]라 하여 옷깃이 반월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옷깃은 고구려·백제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복식 양식으로 고구려·백제의 상의(上衣)는 섶은 있었으되[186] 깃은 없었고, 오직 신라의 군복(軍服) 일부에서 발달된 것이었다.[187] 당시까지 사용하던 무금복(無衿服 : 섶이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것)의 섶 위에다가 소속 당(幢)의 표지로서 각종 색(色)의 깃을 단 것이다.

당별(幢別)로 부대의 소속과 직책에 따라 반월형(半月形)의 저고리 깃을 하고

각 부대들은 짧은 바지나 스타킹에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구분하였으며, 외투는 확연히 색이 다른 안감을 사용함으로써 소맷부리를 뒤집어 보이게 하고 다른 접은 부분도 보이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른 색깔의 가선을 지닌 외투가 구분의 도구였다. 이외에 단추구멍 주위에 색깔을 넣은 바느질 자리, 그리고 이 주위에 매다는 색깔이 있는 끈 등은 각 부대의 구별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4) 이 衿幢制度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져서 『高麗史』 卷 72 凡法駕衛仗에 보면, '靑龍幢·白虎幢·朱雀幢·玄武幢·紅纏幢·靑幢·赤幢·白幢·黃幢·黑幢' 등이 보인다.

185) 『三國史記』 卷 40 職官下 武官條 "羅人徽織 以靑赤等色 爲別資 其形狀半月"

186) 옷깃의 발생적인 원인은 옷의 가장자리가 다른 곳보다 쉬 더러워지고 마멸이 잘 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노리는데서 왔다. 아래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저고리 部分圖이다.(朴恩用, 1969 「新羅軍制가 現代服制에 미친 영향」, 『國文學硏究』2, 효성여대 국어국문학연구실, pp.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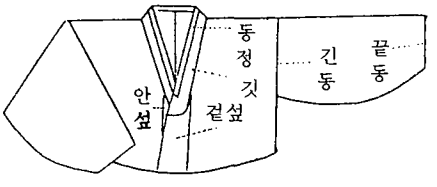

저고리의 部分圖

187) 박은용, 앞 논문, pp. 20~21.

이중 혹은 삼단(三段)으로 적·청·황·자·백·흑 등으로 착색을 하여 입었고, 색이 두가지일 경우 안쪽의 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녹금당(綠衿幢)·자금당·백금당·비(緋)금당·황금당·흑금당·벽(碧)금당·적금당·청금당으로 명명하였다.

금색(衿色)제도에 의한 각 부대별 색 사용 개수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188]

가) 單色인 것 : 10停에 속하는 것 또는 특수한 것

① 청색 : 음리화정(音里火停 : 尙州　靑里)·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 : 靑陽)·거사물정(居斯勿停 : 南原, 居寧)
② 흑색 : 삼량화정(參良火停 : 玄風)·소삼정(召參停 : 南平)
③ 황색 : 남천정(南川停 : 利川)·골내근정(骨乃斤停 : 驪州)
④ 백색 : 벌력천정(伐力川停 : 洪川)·이화금정(伊化今停 : 靑松, 安德)
⑤ 백색 : 군사당(軍師幢)·중당(仲幢)·구칠당(仇七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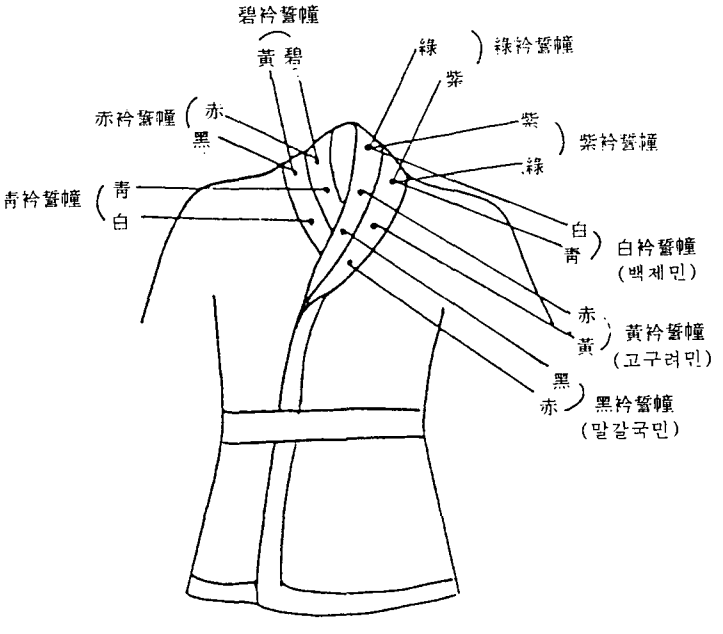

〈그림 1-121〉 통일신라 幢의 衿色(金東旭, 『韓國服飾史硏究』 p. 31)

188) 박은용, 앞 논문, pp. 18～19.

나) 兩色인 것

① 자백(紫白) : 대당(大幢)
자록(紫綠) : 자금서당(紫衿誓幢)·정주서(箐州誓)·이절말당(二節末幢)·완산주서(完山州誓)·한산주서(漢山州誓)

② 청적(靑赤) : 상주정(上州停)
청백(靑白) : 청금서당(靑衿誓幢)
청록(靑綠) : 오종당(京五種幢)

③ 황청(黃靑) : 한산정(漢山停)
황적(黃赤) : 황금서당(黃衿誓幢)
황록(黃綠) : 급당(急幢)
황흑(黃黑) : 사천당(四千幢)
황백(黃白) : 오종당(五種幢)

④ 녹백(綠白) : 우수정(牛首停)·하서정(河西停)
녹자(綠紫) : 녹금서당(綠衿誓幢)·우수주서(牛首州誓)·하서주서(河西州誓)·이절말당(二節末幢)

⑤ 백자(白紫) : 완산정(完山停)
백청(白靑) : 백금서당(白衿誓幢)
백흑(白黑) : 경오종당(京五種幢)

⑥ 흑적(黑赤) : 흑금서당(黑衿誓幢)
흑청(黑靑) : 경오종당(京五種幢)

⑦ 벽황(碧黃) : 벽금서당(碧衿誓幢)

⑧ 적흑(赤黑) : 적금서당(赤衿誓幢)
적자(赤紫) : 경오종당(京五種幢)

다) 三色인 것

흑적백(黑赤白) : 개지극당(皆知戟幢)

* 무금(無衿)부대 : 대장척당(大匠尺幢)·사설당(四設幢 : 弩幢·雲梯幢·衝幢·石投

幢)·삼십구여갑당(三十九餘甲幢 : 京餘甲·小京餘甲·外餘甲 其他)·이궁(二弓 : 漢山州弓尺·河西州弓尺)·삼변수당(三邊守幢 : 牛首邊·河西邊·漢山邊)

또한 당(幢)에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백제인·말갈인·동예(東濊)인·보덕성(報德城)인을 각각 구분하여 금색(衿色)을 달리하였다. 〈표 1-12〉는 『삼국사기』에 근거하여 '9서당'의 금색을 도표로 만든 것이다.[189]

〈표 12〉　　통일신라의 衿幢

명　칭	구　성	衿　色	창설연대	비　고
綠衿誓幢	新羅人	綠紫色	583	창설시는 誓幢, 613년 개칭
紫衿誓幢	新羅人	紫綠色	625	창설시는 郎幢, 677년 개칭
白衿誓幢	百濟人	白靑色	672	
緋衿誓幢	新羅人	緋　色	672	長槍幢에서 693년 개칭
黃衿誓幢	高句麗人	黃赤色	683	
黑衿誓幢	靺鞨·東濊人	黑　色	683	
碧衿誓幢	報德城	碧黃色	686	고구려 遺民의 報德國 해체 후, 그 주민으로 편성
赤衿誓幢	報德城人	赤黑色	686	
靑衿誓幢	百濟殘人	靑　色	687	

이상의 부대들은 옷깃이 있고 색을 이용하여 소속을 나타내었는데,[190] 윗 분류 *표에서 보듯이 옷깃이 없는 무금(無衿) 부대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주(幢主) 중에도 왕도(王都)에 있었던 군사(軍師)당주가 무금이고, 6정(停)과 구서당(九誓幢)에 있는 대장척(大匠尺)당주 15명과 왕도에 있는 보기(步騎)당주·법(法)당주 150명 그리고 만보(萬步)당주 37명도 모두 무금이었으며, 또한 군사감(軍師監) 2명·대장대감(大匠大監) 15명·법당감(法幢監) 194명도 무금이었다. 무금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189) 『三國史記』卷 40, 雜志 9, 職官 下.

190) 10停이 사용한 衿色의 색깔은 부대 주둔지의 地名에도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특이한 제도였으며 이로 보아 철저히 시행되었음도 알 수 있다.(李娟子, 1976「新羅의 一部軍制가 地名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國文學硏究』5, 효성여자대학, pp. 357~378)



① 高句麗 古墳 壁畵



② 中國 漢 司馬遷



③ 中國 元 邱處機

〈그림 1-122〉 섶으로만 이루어진 고대 복장

금색과 관련된 통일신라의 각종 부대를 시기순(時期順)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191]

554년 : 대당(大幢)·삼천당(三千幢)

552년 : 귀당(貴幢 : 上州停)

568년 : 신주정(新州停 : 漢山停)

583년 : 서당(誓幢 : 綠衿誓幢)

591년 : 사천당(四千幢)

598년 : 하서주궁척(河西州弓尺)

604년 : 군사당(軍師幢)

605년 : 급당(急幢)

625년 : 낭당(郎幢)

652년 :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

658년 : 하서정(河西停)

654년 : 계금당(罽衿幢)

671년 : 중당(仲幢)

672년 : 백금서당(白衿誓幢)·비금서당(緋衿誓幢)·오주서(五州誓)·우수주계금당(牛首州罽衿幢)·우수주삼천당(牛首州三千幢)·내토군삼천당(奈吐郡三千幢)

673년 : 우수정(牛首停)

675년 : 백금무당(白衿武幢 : 三武幢의 하나)

676년 : 구칠당(仇七幢)·내주군삼천당(奈主郡三千幢)

683년 : 황금서당(黃衿誓幢)·흑금서당(黑衿誓幢 : 모두 九誓幢의 하나)

685년 : 완산정(完山停)

686년 : 벽금서당(碧衿誓幢)·적금서당(赤衿誓幢 : 九誓幢의 하나)

687년 : 청금서당(靑衿誓幢)·적금서당(赤衿誓幢 : 三武幢의 하나)

689년 : 황금서당(黃衿誓幢 : 三武幢의 하나)

690년 : 삼변수당(三邊守幢)·개지극당(皆知戟幢)

---

191) 박은용, 앞 논문, pp. 22～23.

다. 石像을 통해 본 甲冑

통일신라시대에는 갑주를 착용한 석상(石像)과 조각품이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괘릉(掛陵)·경덕왕릉(景德王陵)·흥덕왕릉(興德王陵)·진덕왕릉(眞德王陵) 등에 세워져 있는 석상들과 불국사 석굴암 입구의 사천왕상(四天王像 ; 국보 24호)·감은사(感恩寺) 서쪽 탑 7세기 유물·운문사(雲門寺) 사천왕 돌기둥의 조각(보물 318호)·보림사(寶林寺) 보조선사(普照禪師) 창성탑(彰聖塔)의 신장상(神將像 ; 보물 157호)·화천동(化川洞) 3층 석탑의 팔부중상(八部衆像 ; 보물 609호)·녹유(綠釉) 사천왕상과 금동(金銅) 신상(神像) 등이 있다.



〈그림 1-123〉 8세기 후반기의 金庾信 十二支像

이상의 석상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금동(金銅) 신장입상(神將立像)만 전투용 갑주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의장용(儀仗用) 갑주로 판단된다.

전투용 갑주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장입상은 남부지역의 전투용 갑옷과 매우 유사하다. 투구는 복발(覆鉢)형이며, 판갑으로 추정되는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상박갑(上膊甲)은 어깨와 상박부를 감싸고 있으며, 상갑(裳甲)은 앞면 중앙에 트임을 준 작은 찰편(札片)을 여러 단 이어 붙여서 방호막으로서의 구실은 물론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의장용 갑주로 보이는 나머지 석상의 갑주 착용모습은 갑옷 속에 전포(戰袍)를 착용하고 허리나 팔에 영건(領巾)을 많이 늘어뜨려 화려함과 장식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갑옷 양식은 대개 양쪽 가슴에 광명갑(光明甲 : 明光鎧)[192]을 대고, 멜빵

192) 明光鎧는 가슴과 등에 금속으로 된 대형의 둥그런 판을 댄 갑옷이다. 얼핏보아 거울과 비슷하며 戰場에서 햇빛을 받아 반사되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였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다. 중국 남북조시대에 대단히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가, 北朝 말기 시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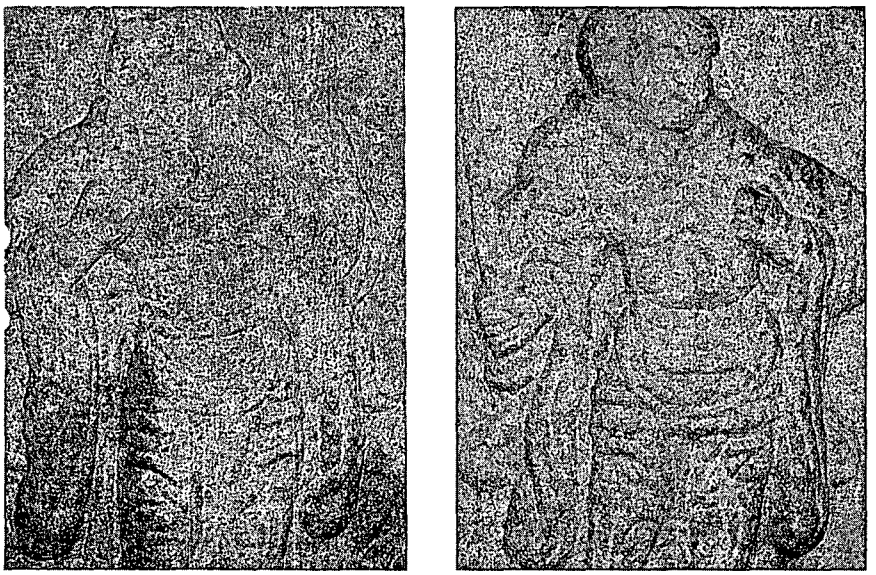

〈그림 1-124〉 8세기 掛陵의 十二支像



〈그림 1-125〉 9세기 興德王陵 十二支像

에는 보편적으로 제작 착용되었으며, 결국에는 兩當鎧의 점유율을 누르고 가장 흔히 착용하는 갑옷이 되었다.



〈그림 1-126〉 感恩寺 西塔 甲冑



〈그림 1-127〉 石堀庵 입구 四天王像



〈그림 1-128〉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의 神將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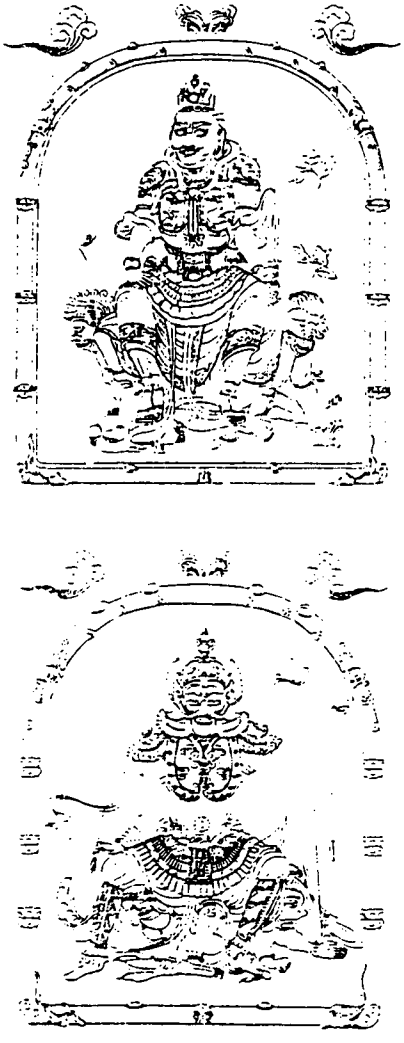

〈그림 1-129〉 綠釉 四天王像의 甲冑



〈그림 1-130〉 神將立像

식으로 어깨에서 연결한 양당개(裲襠·兩當鎧)[193]를 착용하였으며, 양당개 아래에 전포를 착용하였다. 목에는 운견(雲肩)식의 경갑(頸甲)을 착용하였고, 어깨에는 견갑(肩甲)을 착용하였다. 전포 위에 찰편으로 된 상갑을 다시 착용하였고, 팔의 하박부(下膊部)에는 굉갑(肱甲)을, 다리의 하각부(下脚部)에는 경갑(脛甲)을 착용하였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은, 중국쪽 갑옷과 통일신라 석상에서 보이는 갑옷과의 연관성 문제이다. 중국에서 출현하는 갑주의 시기적 구분은 '양당개 → 명광개'의 순서를 가지면서 전장에서의 주요 갑주로서의 위치를 인계 인수하였었다. 다시 말해 양당개는 남북조시대(4세기 초~5세기 중엽)에 유행하였던 갑옷이고, 명광개는 북조말기(5세기 말)에 등장하였던 갑옷으로서 양자는 시기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갑주형태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통일신라시기의 석상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동시 착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統一新羅 軍服飾의 特徵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과거와는 다른 전장(戰場)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격렬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환경으로부터 잔적(殘敵)을 소탕하거나 위세와 위엄으로서 치안만을 확보해도 되는 전장여건(戰場與件)으로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인체를 든든히 방호해 주는 보호막으로서의 갑주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었고, 그 대신 위세와 위엄을 표출시키는 복장만으로도 족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다가 추가된 여건이란, 급작히 불어난 수의 무장군사력 그리고 2/3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피정복민(被征服民)으로 구성된 주력부대를 유지하기 위한 갑주의 대량생산이란 국가재정면에서 보아 불필요한 행위였고, 나아가 피정복민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반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더더욱 튼튼한 갑주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없었다.

---

193) 兩當鎧는 중국의 삼국시대에 출현한 갑옷의 한 종류이다. 가슴판과 등판을 멜빵으로 연결하여 착용하는 갑옷으로서, 南北朝시대의 주요 갑옷이었다. 기병용에 비교적 적합한 갑옷으로서 호평을 받았으며, 武官 服制였다.(楊泓, 1983『中國古兵器論叢』臺北 明文書局, pp. 42~5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착안된 것이 금당(衿幢)제도를 적용한 군복의 출현이었다. 즉, 저고리 깃을 이중으로 하고 적·청·황·자·흑·백색으로 착색을 하여 부대 구분을 하는 것이다. 다만 통일신라가 채택한 이 구분은 지역별 부대구분과 인종적(人種的) 부대구분을 위주로 한 것으로, 현대식 개념의 군복이 지니는 부대의 병종 또는 병과별 구분과는 약간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현대의 개념으로서의 군복은 국가 상비군이 생기면서 시작되었고 이는 곧 직업군인계층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당시의 전투수행법은 병과별·부대별 행동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방식을 운용하였기에 각 대(隊)는 서로간의 구분이 필요하여 색을 사용한 구분법이 채택된 것이었는데 반하여, 신라의 금당제도는 이러한 전술상의 필요에 의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신라의 금당제도에 있어 또하나 특이한 점은, 당시의 시대에 위세와 위엄을 부리기 위해서는 옷깃에만 채색을 할 것이 아니라 옷 전체를 채색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보다 나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다. 옷깃 정도의 채색으로는 위세를 돋보이게 할 정도의 화려함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거리가 약간만 이격되어도 식별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전장에 화약무기가 등장한 시대[194]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다.[195]

신라의 금당제도는 계속 유지 발전되어, 원래는 각 당(幢)마다 단색(單色)이었던 것이 단색만으로는 계속 확대 편성되는 당수(幢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양색(兩色)으로 구분 사용하였고, 이것이 다시 삼색(三色)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여

194) 화약은 전장에서의 군인의 복장을 바꾸게 한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 먼저, 화약을 사용하는 화기의 등장은 군인이 착용하는 방호막으로서의 갑주를 무용지물화하여 식별의 유니폼으로 바꾸게 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이어 이후에 화기·화포가 정교해지면서 명중율이 증가하자 화려한 유니폼의 색깔은 오히려 상대의 명확한 목표물이 될 뿐이어서 결국 애초에는 위엄을 자랑하던 화려한 색깔은 지형의 색과 보조를 맞추는 隱匿型 색깔로 바뀌어 보호색으로 전환되었으며, 부분적인 채색만을 채택하였다.

195) 통일신라의 염색기술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染色 기술도 발달한 것으로 본다.(김동욱, 앞의 책, p. 57)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중국이나 신라 모두 일반인들의 화려한 색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고, 서민들은 검은 색이나 백색밖에 입지 못한다는 점에서 병사들의 의복색깔도 화려할 수 없었음을 유추할 뿐이다.

기에 무금(無衿)과 모직으로 된 계금(罽衿)[196]도 병행 사용되어 통일신라 부대 구분의 확실한 제도이자 군복식의 하나로 착용되었다.[197]

196) 罽는 대단히 귀중한 것으로 여겨져 사치품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비로드나 벨벳처럼 털이 밖으로 일어서는 모직물이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김동욱, 앞의 책, p. 28)

197) 각 幢이 사용하였던 幢旗 역시 衿色과 일치하였다. 오늘날 慶北 達城郡 玄風面 일대와 昌寧郡 일대에서는 각 부락마다 洞旗(일명 天王旗)가 있어 부락 청년들의 단체행동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이 지방은 신라 十停의 하나인 參良火停(玄風)이 있었던 곳으로 그 衿色은 黑色인데 이들 洞旗의 깃 色도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두가 黑色로 되어 있는 점 등은 신라의 幢旗가 그 의의는 상실하였지만 그대로 유지 傳承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박은용, 앞 논문, pp. 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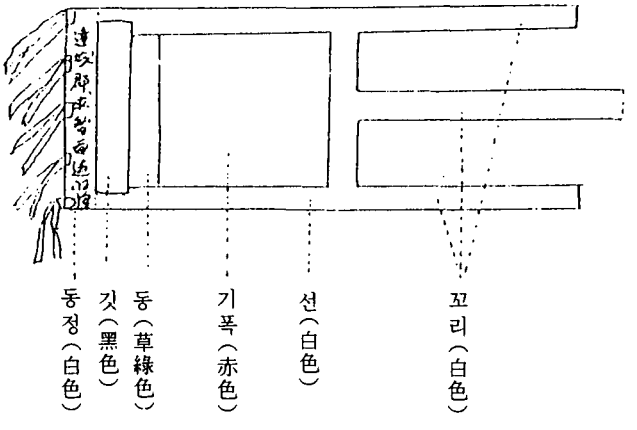

第 2 章　高麗時代의 軍服飾

時代 概觀

第 1 節　高麗時代의 政治·外交에 따른 軍服飾

第 2 節　高麗時代의 武器와 戰術 및 軍事制度에 따른 軍服飾

第 3 節　高麗時代의 各種 軍服飾의 變遷과 發達

第 2 章　高麗時代의 軍服飾

時代 概觀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구려의 부흥을 자처하면서 대외적으로 거란, 여진, 몽골, 한족, 일본 등 외침의 위협이 쉬지 않았다. 반면 국가성격은 귀족적 관료주의의 중앙집권국가였고 숭문비무(崇文卑武)의 사조가 만연하였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철저한 문관중심의 통치체계를 굳히고 가병(家兵) 조직의 강화에 주력하게 됨에 따라 국방체제가 해이해졌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고려는 끊임없는 외침에 대해 거란, 여진, 몽골, 명으로부터 무기와 갑주(甲冑) 및 군사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시켰다.

고려의 군복식의 발전과정을 보면 고려 초기는 신라적인 요소를 띠다가 제6대 성종 이후 재편기에 이르러 비로소 집권적인 고려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일반 복식 변천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고려 초기에는 우리 고유복식에 당제(唐制)와 송제(宋制)의 복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둘째, 원(元)의 복속으로 말미암아 몽골의 복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셋째, 고려말에는 명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인계급에 제한된 것이고 피지배계급인 서민층에서는 고유 복식의 바지와 저고리를 답습하였다. 거란, 여진, 몽골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이들 국가의 관료들도 중국의 관복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관복의 사여(賜與)가 있었으나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고려 복식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들 민족과의 접촉에서 온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관인계급의 복식과 의장복(儀仗服)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갑주나 무기, 전술, 군사제도 등은 거란, 여진,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시대의 무관의 복식을 보면 크게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상복(常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복식을 예복(禮服)이나 정복(正服), 근무복(勤務服)으로 구분하여 입었고 전시에는 전투복으로 갑주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이 군복식은 상황 시대에 따라 그 제도가 변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무관의 군복

식에 대해 알아보면 문헌과 유물을 통하여 다음과 같다.

종묘사직에 제례(祭禮)를 지낼 때는 예복으로 제복을 착용하였다. 이때는 면류관(冕旒冠)을 쓰고 무관이 지켜야 할 덕목(德目)이나 상징이 되는 장문(章紋 : 文樣)을 그려 넣은 검정색 단령포(團領袍)인 곤복(袞服)을 입었는데, 고려말에 와서는 양관(梁冠)을 쓰고 장문(章紋)이 없는 청라의(靑羅衣)로 바뀌었다.

대사(大祀)나 경축일, 원단(元旦), 동지(冬至) 및 조칙(詔勅)을 선포할 때에는 예복으로 조복을 착용하였는데, 자세한 기록이 없어 공복을 조복으로 착용한 것 같으며 여기서는 복식품(服飾品)만 밝혔다. 왕을 배알(拜謁)할 때나 외국 사신을 맞을 때에는 정복으로 공복을 착용하였다. 정복은 고려 초기에는 복두(幞頭)를 쓰고 단령(團領)을 입었는데 여말(麗末)에 와서는 사모(紗帽)로 바뀌었으며, 왕조에 따라 의색(衣色)이나 대(帶), 홀(笏)로써 품계(品階)를 구별하였다.

평상 집무시에는 근무복으로 상복을 착용하였다. 상복은 대체로 공복 그대로 통용하였으리라고 본다. 조선시대에는 공복으로 입었던 단령에 흉배(胸背)를 붙여 상복과 공복을 구별하였다. 무인(武人)들은 의장복(儀仗服)을 통상예복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 의장복으로는 갑주를 착용하기도 하고 직책에 따라 복두(幞頭), 방각모(方角帽), 삽각모(揷角帽), 문라두건(文羅頭巾), 금화대모(金花大帽), 평건책(平巾幘) 등을 착용하였고, 의(衣)는 구문금포(毬文錦袍), 자문라포(紫文羅袍), 착의(窄衣), 금의(錦衣) 등을 착용하였다. 의장복으로 착용한 갑주는 무인석상(武人石像)과 탁본, 벽화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전투복에 대해서는 문헌과 유물이 적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문헌에는 백갑의(白甲衣), 의백갑(衣白甲), 백철갑(白鐵甲), 피갑(皮甲), 백갑두모(白甲兜牟), 철갑(鐵甲), 장자갑(長紫甲), 주갑(朱甲), 자갑(紫甲) 등이 있다. 이들이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나, 「몽고습래도(蒙古襲來圖)」를 통하여 갑주의 편모(片貌)를 알 수 있다. 갑옷의 재료는 철, 가죽 또는 천을 사용하였고, 색은 주갑(朱甲), 자갑(紫甲), 백갑(白甲)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주색(朱色), 자색(紫色), 백색(白色) 등이 있을 것이며, 갑옷의 형태는 아래위가 붙은 봉액(逢掖)과 같은 포(袍)를 입었다. 전투복의 현전 유물로는 정지 장군(鄭地將軍)의 경번갑(鏡幡甲)과 몇 점의 투구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화약무기의 발명으로 전술에 변화를 가져왔고, 전술의 변화는 전투복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삼국시대에 착용했던 중후한 철제찰갑(鐵製札甲)이나

판갑(板甲)은 고려시대에 와서 포형(袍形)의 갑옷으로 변천되었다. 포형갑옷에는 철편이나 가죽편을 부착한 두정철갑과 두정피갑이 있고, 솜을 두어 만든 면갑(綿甲)이 있으며 쇠고리와 철편을 이어 만든 경번갑이 있다. 이와 같은 포형갑옷인 두정철갑(頭釘鐵甲), 두정피갑(頭釘皮甲), 두석린갑(豆錫鱗甲), 두정갑(頭頂甲), 면갑(綿甲) 등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한국 갑주양식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화약무기의 출현으로 고려시대에 포형갑옷이 등장했다는 것은 복식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갑주에 관한 연구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문헌이나 석상, 탁본, 벽화에서 보이는 갑주에 관련된 증거물 등이 대부분 의례시에 착용했던 의장복이기 때문에 일반 갑주와 구분하여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갑주는 전투복이고 의장복은 무사(武士)들의 의례복이므로 이들은 같은 집단의 전용(專用) 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동안 상대적으로 전투복의 유물이 적어 고려시대의 전투복이 침체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고려의 정치·외교관계를 고려해 볼 때 고려시대의 전투복은 발달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주변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무역을 통해 갑주나 무기, 군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둘째, 의종조(毅宗朝) 범법가위장(凡法駕衛仗)과 상원연등위장(上元燃燈衛仗) 등 여러 위장복식에서 하졸로 보이는 많은 수의 군사가 철갑(鐵甲), 피갑(皮甲), 백갑의(白甲衣), 장자갑(長紫甲), 갑옷 등을 입고 있다는 점, 셋째, 분업에 의해 군기감(軍器鑑)이라는 정식 갑옷 제조기구가 있었다는 점, 넷째, 고려의 포형갑주는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창조적인 갑주로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한국 갑주의 양식으로 정착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군복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정치체제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무의 관직을 구분하여 고려시대 군복식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적잖은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어떤 한정점(限定點)이 있다는 것을 자인(自認)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간 학계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고려시대의 군복식이 이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연구가 촉진되고, 나아가 한국 군복식의 종합적 고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第 1 節 高麗時代의 政治·外交에 따른 軍服飾

삼국을 통일한 뒤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체제로 등장한 고려는 잘 정비된 국가조직을 바탕으로 고도의 문화를 이룩했던 중세의 통일왕조이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은 쉽지 않아서 중원의 송(宋)과 거란, 여진, 몽골, 일본과의 교류와 전쟁이 번갈아 지속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내내 이민족과의 전쟁으로 인한 무력적 긴장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국가성격은 귀족적 관료제적 중앙집권국가였으므로 왕권도 귀족의 지지와 협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척신 혹은 무신의 발호가 심하였으며 숭문비무의 사조가 만연하였다. 또한 개인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철저한 문관중심의 통치체계를 굳히고 가병조직(家兵組織)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게 됨에 따라 국방체제가 해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는 수많은 침입에 맞서 싸우면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려와 주변국가와의 정치·외교관계를 볼 때 중국 동북에 흩어져 살던 몽골계인 거란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를 황제라 칭하고 발해를 멸하여 동단국(東丹國)을 세웠는데(926), 태종 때에는 중국의 진(晋)을 토벌하고 국호를 대요(大遼)라 고쳐 크게 발전하였으니(946) 이는 고려 제3대 정종 때의 일이었다.

당시 고려는 중국 5대와 친밀한 외교관계를 맺어 오던 때였으므로 북방에 있는 거란에 대해서는 '금수의 나라'라고 하여 멸시하고 사신의 교환을 거부하는 동시에 북진정책을 감행하여 거란과의 외교관계는 좋지 않았으며,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光軍)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은 5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송이 통일하자(광종 11년) 고려는 송과 국교를 맺고 거란을 고립화시켰다. 이와 같은 고려의 북진정책과 송과의 통교는 거란을 크게 자극시켜서 고려에 3차에 걸친 침입을 감행하게 하였다. 제8대 현종 10년 8월에는 국교가 회복되어 서로 사절을 교환하게 되어 인종대에 이르기까지 면류관(冕旒冠), 구장복(九章服), 관복(官服)을 비롯하여 전투용 병기인 토마(土馬), 철갑마(鐵甲馬), 갑무(甲鍪), 갑주(甲冑), 철갑(鐵甲), 궁시(弓矢), 궁노(弓弩), 병장

(兵仗) 등을 보내 왔으니[1] 고려의 복식과 병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약 40년간 고려는 송(宋)과의 교빙을 끊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발해의 지배하에 있던 여진은 발해가 망한 뒤 여러 부족으로 갈리어 만주 일대에서부터 평북 일대와 함경도 일대에 걸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여진은 고려 13대 선종(宣宗) 때에 영가(盈歌)가 일어나서 여러 부족을 토평(討平)하고 한반도 내의 여진족까지 경략하였는데, 예종(睿宗) 때에는 이들을 평정하고 이 지방을 확보하기 위하여 9성(九城)을 쌓았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앞선 고려를 부모의 나라 또는 상국(上國)으로 받들었고 고려는 회유책으로 그들에게 응분의 관직을 주고 식량(食糧), 초목(草木), 철제농구, 철제무기 등 생활필수품을 공급하여 침략을 방지하는 한편, 그들이 생산하는 전쟁도구인 마필(馬匹), 궁노(弓弩), 갑무(甲鍪) 등 물자와 인적자원을 거란 방어에 이용하였으니[2] 여진의 갑주양식은 고려의 갑주양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후 여진은 아구타(阿骨打)가 추장이 되면서 강성하여져서 부족 전체를 통일하자 정세가 변하여 보병부대로 편성되어 있는 고려군은 기병부대로 편성된 여진에 패배를 당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숙종 때에는 여진의 전법인 기전위주(騎戰爲主)의 신기군(神騎軍)을 중심으로 별무반(別武班)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3]

아구타는 황제(皇帝)라 칭하고 국호를 금(金)이라 하고(1115년), 예종(睿宗) 12년에는 고려에 대하여 형제의 나라, 다시 신하의 나라로 금(金)을 섬길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하여 제17대 인종 4년 금을 섬기는 조약을 맺기에 이르렀고(1126년) 이로써 양국 사이에는 약 100년간의 평화가 계속되었다.

이에 비하여 고려는 5대의 후주(後周)와 송과는 평화적이어서 양국은 사신을 교환하고 국교를 열게 되었다. 고려는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송은 거란 및 여진의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제4대 광종 13년(962)에는 송으로부터 비단, 서적, 자기, 약재, 향료, 악기 등을 수입하였고, 고려는 금, 은, 동, 인삼, 종이, 먹, 부채 등을 수출하였다.[4] 또한 유학생을 파견하고 상인들이 출입하면서 양국 관계는 매

---

1) 金庠基, 1985 『高麗時代史』 서울대출판부, pp. 806~821.
2) 李丙燾, 1961 『韓國史』(中世篇) 乙酉文化社, pp. 368~369.
3) 위의 책, p. 379.
4) 姜長熙 外, 1988 『韓國史新講』 高麗出版社, p. 170.

우 밀접하였다. 그러나 거란 및 금의 압력으로 양국의 통교(通交)가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으나 대체로 빈번하였다. 고려는 일찍이 그 성능뿐만 아니라 공예품으로 가치가 뛰어난 각종 무기와 갑주를 생산하여 중국과의 관영무역에 이용하였다. 고려 2대 혜종 2년(945) 왕(王)의 책봉을 축하하기 위해 진(晋)에 보낸 물품 중에도 갑주와 무기가 속해 있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때 금성(金星)을 수놓은 갑옷 2벌〔金星皮甲〕, 모직(毛織)에 은성(銀星)을 수놓은 갑옷 2벌〔罽錦銀星皮甲〕, 모직(毛織)을 받친 쇠투구 4개〔罽金鍊兜鍪〕, 모직(毛織) 붉은 바탕에 금은(金銀) 오색실로 꽃과 새를 수놓은 모직으로 된 경갑(脛甲) 4개, 각궁(角弓) 4개, 붉은 바탕에 금은(金銀) 오색실로 용(龍)과 물고기를 수놓은 모직 활전대〔氈袋〕 4개, 가는 대〔竹〕 화살 200개에서 100개는 금(金)을 물렸고 100개는 은(銀)을 물렸으며, 붉은 바탕에 금은(金銀) 오색실로 구름과 용을 수놓은 화살통 4개, 금은으로 칼자루와 칼집을 장식하고 구름과 하늘을 가늘게 새겨넣은 검 10자루 등을 보냈다.[5] 이 기록은 갑옷과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고려의 우수한 무기 및 갑주 제조기술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금성피갑(金星皮甲), 계금은성피갑(罽錦銀星皮甲), 계금연철두무(罽金鍊鐵兜鍪) 등이 어떤 형태의 갑주였는지 알 수 없지만 매우 화려하고 발달된 갑옷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6]

고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몽골과의 관계는 13세기 초부터였다. 유목생활을 하던 몽골족 중 흑룡강 상류인 오논(斡難) 하반(河畔)에서 테무진(鐵木眞)이 나와 부족을 통합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칭기즈칸(成吉思汗)이라 칭하고(1206년) 사방을 정복하여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때 몽골족은 금과 송을 압박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침입하여 마침내 이듬해 12월 초에는 수도 개경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고려는 마지못해 화평교섭을 청하였고 그 결과 고종(高宗) 19년 정월 몽골군은 철수하였다. 고려는 어쩔 수 없이 화평하기는 하였으나 몽골에 대한 적개심은 누그러지지 않아 강화천도를 단행하였다. 그 이유는 몽골군은 유목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전(陸戰)에서는 강했지만 해전(海戰)에서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안 몽골황제는 다시 고려를 침략하여 약 30년간 6번에 걸쳐 침략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다.[6] 결국

---

5) 鄭在煥, 1971 『高麗史』 世家, 第2, 惠宗 東亞大學校 古典硏究室.

6) 河炫綱, 1989 『韓國中世史論』 新丘文化社, p. 31.

23대 고종(高宗) 46년(1257) 그들에게 항복하여 제31대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약 80년 동안 원의 간섭 아래에서 영토가 축소되고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적지않은 변혁을 겪게 되었다.

고려와 원 양국은 왕실의 혼인관계를 비롯하여 궁인(宮人), 관리, 학자, 귀족, 상인의 왕래가 빈번하여져서 상호간에 이주를 통하여 인종(人種)의 교류를 낳게 되었다. 문물의 교류로 고려의 남자는 몽골의 복장인 질손(質孫 : 帖裏)을 입게 되었고 몽골식 변발(辨髮)이 유행하게 되었다.[7] 여자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고름을 달게 되었고, 신부(新婦)는 족두리(簇頭里)를 쓰고 도투락댕기를 들이고 뺨에 연지를 찍게 되었다.[8] 한편 몽골인은 고려의 두루마기를 입는 등 고려의 풍속이 유행하게 되었다. 의복뿐 아니라 군사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니 원(元)의 이원(李元)으로부터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을 배웠고,[9] 원의 군사제도를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숙위(宿衛)의 병(兵)도 몽골명을 사용하였으니[10] 고려의 갑주양식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던 원제국은 얼마 가지 않아 거듭된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란과 화폐 남발로 인하여 재정이 궁핍해지고 또 홍건적 등이 봉기하여 국세가 기울어지면서 명(明)에 멸망되고 말았다(1391년).

한편, 홍건적 출신인 주원장(朱元璋)은 세력을 규합하여 남경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국호를 '대명(大明)'이라 하고 새로이 대륙의 지배자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공민왕은 원의 쇠퇴에 편승하여 자주적 개혁을 단행하여 반원친명정책(反元親明政策)을 쓰고 스스로 체두변발(剃頭辮髮)을 풀고 호복(胡服)을 벗어 모범을 보이고, 원(元)의 연호를 폐지하였으며 친원파를 숙청하고 영토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관인계급은 명제(明制)에 의해 관복제도를 따르도록 하였다.

일본은 8세기 이래 500여 회에 걸쳐 한반도를 침입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는 화전양면정책(和戰兩面政策)으로 근절시키려 하였으나 막대한 재물의 피해를 받았다. 일본은 주로 궁전(弓箭), 도검(刀劍), 갑주(甲冑) 등 무기와 수은, 진주 등을 몰래 갖고 가는 해적행위를 자행하였으니,[11] 한국의 무기와 갑주양식이 일본에게 많은

---

7) 『高麗史』 世家 卷27, 元宗3.
8) 崔南善, 『故事通』
9) 李宰 外, 1988 『韓民族戰爭史總論』 教學研究社, p. 354.
10) 張志翊, 1980 『韓國의 歷史』 內外文化社, p. 214.
11) 李丙燾, 앞의 책, p. 404.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일본의 침입으로 수군이 강화되고 화약, 화통(火筒) 등 무기가 발달하였으며 최영(崔塋), 이성계(李成桂) 등 신흥 무인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양왕 4년(1392) 이성계가 선양의 형식으로 왕위에 오르니 고려왕조는 34왕 475년 만에 멸망하고 드디어 조선왕조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1392년).

고려는 폐쇄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절교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해외 여러 나라와 교통하고 외국상인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생활의 폭을 넓혀 갔다. 고려는 발해유민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후예로 여겨 10여 만의 유민을 우대하면서 귀화시켰고, 거란인, 여진인, 몽골인, 중국인, 일본인, 서역인 등 타 민족의 귀화를 받아들여 이들을 포섭하여 민족의 구성요소를 풍부하게 하였다.[12]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고려는 주변 여러 국가와의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는 왕조이므로 이들과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군사상의 원정은 모든 경우 정복자측이나 피정복자측이나 서로 영향을 주어 복식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3] 여기에 역사적 과정 속에서 꾸준히 발달하는 문화문물의 일반적 속성을 살펴볼 때 고려의 전투복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갔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고려가 주요 무역상품으로 갑주를 선호했다는 점이다. 고려는 중국으로부터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려 했기 때문에 제도복식인 제복과 조복, 공복, 의장복 및 상복은 송, 명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군사적으로 강국이었던 거란, 여진, 몽골로부터는 갑무(甲鍪), 갑주(甲冑), 철갑(鐵甲), 병장복(兵仗服), 궁시(弓矢), 궁노(弓弩) 등을 수입하였고, 그들의 전술과 군사제도를 도입하였으니 전투용 갑주는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고려는 요와 금과는 평화적인 국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문관중심의 통치체제를 굳히게 됨에 따라 명목만 남아 있던 국방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주요 문헌인 『고려사(高麗史)』와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사신을 맞거나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왕이나 백관의 제도복식을 중심으로 제복과 공복과 의장복(儀仗服)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기록이 있는 데 반해 융복(戎服)으로 입었던 갑주(甲冑)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다. 이것은 또한 고려시

12) 柳喜卿, 1977 『韓國服飾史硏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p. 133.
13) 小川安郎, 昭和56年 『服飾變遷の原則』 文化出版局, p. 21.

대에 만연했던 숭문비무의 사상과 무인정권의 통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투복보다 예복과 정복, 의례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第2節 高麗時代의 武器와 戰術 및 軍事制度에 따른 軍服飾

건국 당시 고려는 지방분권적인 군사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2군 6위의 중앙군 조직을 확립하고 서북 및 동북의 국경지대에는 주진국(州鎭軍), 기타 지역에는 주현군(州縣軍)을 두어 방어체제를 강화하였다. 중앙군은 국왕의 시위와 수도 개경의 수비는 물론 변방의 수비임무까지 맡았다. 중앙군은 일반 농민과는 다른 군반씨족(軍班氏族)이라는 군호(軍戶)에서 뽑았는데 세습되었으며 군역의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중기 이후로 국왕권이 약화되고 국방도 지방농민병에 의존하게 되자 중앙군은 그 위치를 상실하여 군인전도 지급받지 못하고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등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무신정권하에서는 용력(勇力)이 있는 군인을 모집하여 형성한 사병(私兵)이 국가의 공병을 대신하였다.

반면, 지방군인 주현군은 지방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군 내지는 노동력을 담당하는 노동부대이었고, 주진군은 고려의 실질적인 국방군으로 성을 쌓고 요새화된 국경선을 확보하여 거란, 여진, 몽골의 침략을 물리쳤다.

고려는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북방민족과의 충돌을 일으켰고 자연히 그들의 침입이 잦았다. 각 지역은 하천과 산맥을 이용하여 축성(築城) 및 거점을 중심으로 한 종심(縱深) 깊은 방어지대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청야입보(淸野入堡)의 개념 아래 거부작전을 전개하여 성을 고수하였고, 중앙에서는 별도의 출정군(出征軍)을 편성하여 방어에 임하면서 성을 고수하고 있는 지방군을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적이 주(州), 진(鎭)의 성을 우회하여 전진해 오면 주진군은 적의 후반을 위협하여 병참선(兵站線)을 차단하여, 우회했던 적이 철수해 오면 이를 공격 추격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14] 북과 남으로부터의 침입으로

14) 陸軍士官學校, 1987 『韓國戰爭史』 日新社, p. 23 ; 국방군사연구소, 1994 『韓國武器發達史』, p. 224 ; 육군본부, 1983 『高麗軍制史』, p. 170.

고려는 공격전술보다는 방어전술이 발달하게 되었다.[15]

고려말 일본과의 해상전투에서는 화약무기가 사용되면서 일방적으로 아군 함선을 적선에 접근시킨 다음 적선에 돌입하여 백병전을 전개하거나 아군 함선을 적선에 출동시켜 파괴하는 보딩(Boarding)전술과 래밍(Ramming)전술을 전개하였다.

고려초 성을 중심으로 거란과 항전할 때는 수성무기(守城武器)인 궁(弓), 노(弩), 전(箭), 창(槍), 검(劒) 등의 주무기를 사용하여 상대시대의 전투와 별차가 없었다. 또한 고려초에는 거란과의 항쟁을 계속하는 동안 북방 방어시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검차(劍車)를 개발하여 거란군에 극심한 타격을 주었고, 혁차(革車), 수질노(繡質弩), 뇌등석포(雷騰石砲), 수질구궁노(繡質九弓弩) 등 강한 쇠뇌를 개발하였다.[16]

목종대(穆宗代 : 998~1007)에 이르러 군기감(軍器監)이라는 관영무기 제조기구가 설치되면서 무기와 갑주제작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기감은 피갑장(皮甲匠), 모장(牟匠), 화장(和匠), 백갑장(白甲匠), 장도장(長刀匠), 각궁장(角弓匠), 칠장(漆匠), 연장(鍊匠), 노통장(弩筒匠), 전장(箭匠), 전두장(箭頭匠), 피장(皮匠) 등 전문기술 인력들이 나누어져 있었고 무기와 갑주를 제작하는 공정이 분업에 의해 이루어져서[17]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갑주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문종(文宗)에서 선종(宣宗) 때까지 무기의 제조는 매우 침체되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고려군은 보병위주로 편성되어 있었고 더욱이 무기는 낡고 군기도 해이하였기 때문에 기병(騎兵)으로 편성된 적을 제압할 수가 없었다.[18]

당시 여진은 진천뢰(震天雷)와 화창(火槍) 등 화약병기를 포(砲)로 사격시켜 철갑까지도 파괴하는 강력한 화약병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보전(步戰)위주의 전법에서 기전(騎戰)위주의 전법으로 바꾸었고 신기군(神騎軍)을 중심으로 별무반(別武班)을 조직하였다. 별무반에서는 각종 궁시를 비롯하여 노(弩), 검(劒), 창류(槍類) 등 수성무기(守城武器)를 다량 제조하였고, 발화부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화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말 원·명이 교체되고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화약병기의 개발에 착수

---

15) 李宰 外, 앞의 책, p. 354.
16) 위의 책, p. 34.
17) 陸軍本部, 1979 「韓國古代武器體系」「韓國軍事研究」 5, p. 32.
18) 柳洪烈, 1979 『韓國史大辭典』 韓英出版社, p. 107.

하여 우왕(禑王)에 이르러 최무선에 의해 화약의 제조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14세기 말에는 화약제조법을 알아내어 각종 화기의 제조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대량생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왕 3년(1377) 10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군포(大將軍砲), 이장군포(二將軍砲), 삼장군포(三將軍砲), 원화석포(元花石砲), 화포(火砲), 신포(信砲) 등 여러 발사기를 만들었고, 이와 함께 철령전(鐵翎箭), 피령전(皮翎箭), 질려포(蒺藜砲), 철탄자(鐵彈子), 천산오룡전(穿山五龍箭), 유화(流火), 주화(走火), 촉천화(燭天火) 등을 발명하였으니, 이들 화기는 주로 화약의 힘으로 화살을 발사하여 목표물을 태우는 화공(火攻)에 사용되었다.[19]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집단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화약무기는 현저하게 발전하였으나 대개인적(對個人的) 무기인 궁시(弓矢)·도검류(刀劍類) 등 일반 무기는 이들을 개량시키거나 발전시키지 못하고 삼국시대 이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려는 원(元)의 동정(東征)을 계기로 원의 군사제도인 만호(萬戶), 천호(千戶), 백호(百戶)를 채택하였고, 또 숙위(宿衛)의 병(兵)도 물적(勿赤), 우달적(迂達赤), 속거적(速古赤), 아가적(阿加赤) 등의 몽골명을 사용하였다.[20] 따라서 군사제도의 채택과 함께 갑주 양식도 몽골의 제도를 많이 따랐을 것이다.

갑주는 무기와 전술 및 군사제도에 따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고려초 거란과 항전할 때는 성을 중심으로 수성무기(守城武器)를 사용하여 갑옷도 상대시대와 별차가 없는 두텁고 중후한 찰갑(札甲)이나 판갑(板甲)을 입었고, 그 위에 상갑(裳甲), 경갑(頸甲), 굉갑(肱甲), 경갑(脛甲) 등 부속구로 완전무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는 여진이 기병위주로 철제 갑주를 파괴할 수 있는 화약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해 옴에 따라 고려군도 기병위주의 전술로 바뀌게 되고 기동성이 요구되면서 중후한 갑주는 좀더 가벼운 두정철갑이나 두정피갑, 경번갑(鏡幡甲)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기록으로 『고려도경』에는 가죽과 쇠철편을 사용하여 갑옷을 만들었다는 기록과 삼국시대와 다른 봉액(逢掖)과 같다는 포형(袍形) 갑옷에 대한 기사가 있다.[21]

고려말 일본과의 전투에서는 화약무기가 사용되면서 전투복은 더욱 경첩해져서

---

19) 李丙燾, 앞의 책, p. 648.

20) 韓國歷史編纂會, 1980 『韓國의 歷史』 內外文化社, p. 214.

21)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11, 仗衛11, 亞細亞文化社.

백철갑(白鐵甲)은 극히 일부에서 착용하는 반면 위용(威容)만을 주는 두정갑(頭頂甲)과 천으로 만든 포(袍), 솜을 둔 면갑(綿甲)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몽고습래도(蒙古襲來圖)」를 통해 알 수 있다.

第3節 高麗時代의 各種 軍服飾의 變遷과 發達

우리나라 복식사 중에서 특히 통일신라시대로부터 고려의 몽골 복속기까지는 복식사적 구조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군복식에 대한 자료도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문헌으로는 『고려사』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송사(宋史)』, 『원사(元史)』 및 『명사(明史)』 등에서 간혹 보이는 여복지(與服志) 혹은 사여관복(賜與冠服)을 통하여 겨우 그 윤곽을 찾아볼 수 있고 유물이 몇 점 있을 뿐이다.

『고려사』는 조선 태조가 개국후 고려시대의 근본 사료인 실록에 의거하여 저술한 매우 귀중한 자료이고, 『고려도경』은 송(宋)의 서긍(徐兢)이 인종 1년(1123)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신으로 송도(松都)에 와서 1개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주마간산격으로 기록한 견문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하고 흥미있는 것만 기록하여 소루한 것이 많으나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22]

그러나 그 기록이 송의 제도에 따라 기록될 수밖에 없어 그 관직 및 복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는 문무양반의 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관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무관의 복식을 문관과 분류하여 연구하는 데 애로가 있다.

즉, 고려 전기의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양반제도로 형성되었는데, 문반은 정치, 무반은 군사역이 직능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문관에 의한 군직겸대(軍職兼帶)라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즉 고려왕조는 문관에게 군직(軍職)을 주어 군대를 통수 감독케 하여 중앙의 병마통수권(兵馬統帥權)이 문관 재추(宰樞)에게 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국방의 일선에 나가 있는 병마사직(兵

22) 金東旭, 1979 「'高麗圖經'의 服飾史的 硏究」『韓國服飾史硏究』 亞細亞文化社, p. 131.

馬使職)도 문관이 임명되어 군대를 지휘 통솔하였다. 또한 실제 외적에 대한 출정군의 편성인 군직(軍職)은 전부 문관들이 겸대하여 지휘부를 편성하고 용병권(用兵權)을 장악하였고, 무관은 다만 전투에 참가하는 기술적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병마지휘권을 갖지 못하였다. 고려조 관리의 반별(班別)은 엄격히 말하면 동반관서(東班官署)에도 무관을 겸임하는 관직이 있고 문관이 보임(補任)되는 관직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관서별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23]

그리고 군복식에 관한 기록의 대부분이 『고려도경』과 『고려사』인데 이 때의 문무백관의 위계에 대한 기록이 없어 문종조(1046~1083)의 중앙직관명과 대조하여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정치 변동이 심했던 고려조에 있어서 50여 년 전의 문종조(1046~1083)의 직관명에 견주어 복식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군복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학문이 우선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의 군복식은 문헌으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고려사』 여복지(輿服志)와 『고려도경』에 나타난 역대 복식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몇 점 안 되는 유물로 고증하면서 무관의 복식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고려사』 여복지의 서두에 고려복식의 변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고려 태조는 개국초 일이 많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라의 옛 제도를 습용(襲用)하고 있었다. 광종(4代)에 이르러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정하니 이에 존비상하(尊卑上下)의 차등과 위엄(威嚴)이 밝혀졌으나 현종(8代)이 남쪽 방면에 몽진(蒙塵)하고 개경(開京)이 회신(灰燼)되므로 문적(文籍)이 산일(散逸)되고 제도가 시위(施爲)되어 그 상세함을 알 수 없다. 의종(18代) 때 평장사(平章事) 최윤의(崔允儀)가 조종(祖宗)의 헌장(憲章)을 모아 당제(唐制)를 잡채(雜采)하여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제정하였다. 위로는 왕의 면복(冕服)으로부터 의위로부(儀衛鹵簿)에 미치고 아래로는 백관 관복이 실리지 않음이 없어 일대(一代)의 제도가 갖추어졌다. 원(元)과 사귐이 있은 후 개체변발(開剃辮髮)하고 호복(胡服)을 입기 거의 백년이나 되었다. 명(明)이 일어서자 명태조 고황제(高皇帝)가 공민왕(31代)에게 면복을 사여(賜與)하고 왕비, 군신에게도 역시 사복(賜服)이 있어 이로부터 의관문물(衣冠文物)이 환히 빛나 다시 고제

23) 邊太燮, 1971 「高麗의 兩班制度」『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pp. 282~284.

(古制)로 돌아가서 새로 빛나기에 이르렀다."[24]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복식의 변천과정은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 신라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한 시기로 초기의 40여 년간(A.D. 918~960)이다.

제2기 : 송나라의 복식 영향기로 이때부터 백관의 공복을 정하여 등위를 갖춘 300년(A.D. 960~1278) 동안이다.

제3기 : 몽골의 영향하에서 개체변발(開剃辮髮)을 하고 몽골의 복식인 질손(質孫)을 입고 있었던 거의 1세기(A.D. 1278~1370) 동안이다.

제4기 : 1386년(우왕 12) 명제복식(明制服飾)을 도입한 이후로부터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22년(A.D. 1370~1392)간이다.

이것은 지배층인 왕을 비롯한 문무백관의 관복에 관한 것이고, 피지배층인 일반 민중의 복식은 신라의 전통을 이어 머리에는 문라건(文羅巾)을 쓰고 위는 긴저고리를 입고 아래는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으니 고대의 전통적인 양식과 변함이 없는 복식이다. 따라서 고려사회의 복식은 지배계급에서는 중국의 복식을 입었고, 피지배계급에서는 전통복식을 입어 복식의 이중구조를 이루었다. 사색공복제를 실시한 후 거란주(契丹主), 요주(遼主), 금주(金主)가 관면의대(冠冕衣帶)를 번갈아 보내와도 고려의 관복은 변함이 없었다. 이것은 거란과 요, 금에서도 고려와 같이 복식의 이중구조를 이루어 지배층에서는 중국의 관복을 입었고 피지배층에서는 그들의 민족복식을 입었기 때문이다.

처음 고려는 신라의 관복제도를 따르다가 제4대 광종 11년(960) 때에 의관(衣冠)을 정하였다. 광종은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관리 등용의 길을 열면서 공복(公服)과 장신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공복제(公服制) 시행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사색공복제도(四色公服制度)로 사회적으로는 색복계급(色服階級)이

---

24)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東國自三韓儀章服蝕循習土風 至新羅太宗王請襲唐儀 是後冠服之制稍擬中華 高麗太祖開國事多草創 因用羅舊光宗始定百官公服 於是尊卑上下等位以明 及顯宗南行 文籍散逸 制度施爲 莫知其詳 毅宗朝 平章事崔允儀褒集祖宗憲章 雜采唐制 詳定古今禮 上而王之冕服輿恪以及儀衛鹵簿 下而百官莫不具載 一代之制 備矣 事元以來開剃辮髮 襲胡服殆將百年 及大明太祖高皇帝賜恭愍王冕服 王妃群臣 亦皆有賜 自是衣冠文物換然復新杉乎古"

등장하였다. 그후 인종대에 이르러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상복(常服), 평복(平服)의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무관의 제도복식이 등장하면서 제복과 조복은 지금의 예복에 해당하는 복식에 준하여 입었고, 공복은 지금의 정복으로 입었으며, 상복은 지금의 근무복에 해당하는 의복으로 입었다.[25] 그러나 때로는 무관들은 의례복과 관복으로 제복, 조복, 공복, 상복을 분류하지 않고 착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6]

그런데 『사기(史記)』에는 공복, 제복에 관한 것은 비교적 많이 상술되어 있으나 조복, 상복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 그 자세함을 알 수 없다.

무관은 전투복〔戎服〕으로 갑주를 착용하였고, 갑주를 구비하기 어려운 하졸들은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부분갑옷을 입었을 것이다. 고려말 화약무기가 발달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무관의 복식은 다음과 같다.

1. 軍服飾의 種類

가. 武 官 服

(1) 祭 服(禮服)

제복은 문무백관이 종묘에 제례를 드릴 때 입는 의복이다.

고려의 관제는 양반제도를 형성하였는데 문무반은 직능상 명확히 구분되었으나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병부(兵部)의 관직을 모두 문관이 차지하였고 병부의 최고 감독관인 판사(判事)는 재신(宰臣)이 겸하게 되어 있었고 병부시랑(兵部侍郎), 낭중(郎中), 원외랑(員外郎) 등도 대개 문관이 보임되었다. 고려말에는 무관이 정권

---

25) 陸軍服制史編輯委員會, 1980 『陸軍服制史』 陸軍本部, pp. 48～49.
本書 著者 執筆委員會에서 결정함.

26) 『高麗史』 志, 卷第26, 輿服, 冠服通制條에는 成宗 8年 3月에 비로소 東西北面兵馬使는 玉帶에 紫襟을, 兵馬副使는 紫衣에 帶劒하도록 정하였다. 德宗 3年 正月에 詔하여 百官이 衙門에서 職務할 때 紫衣로 常服함은 事務에 無益하니 만약 扈從할 때가 아니면 皂衫을 착용토록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冠服通制條는 冠服의 일반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할 때나 왕을 호종할 때 같은 의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을 잡았던 한 가문 안에서 문반과 무반이 병존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사람이 문반과 무반 사이에 왕래가 있어 문무반 사이의 관계가 변질되었다. 또한 무직(武職)은 무반들만이 갖는 관직이 아니고 문반들에게도 개방되어 고려말에는 허직(虛職)으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이 관계체계(官階體系) 안에서 무관에 따른 제복을 정하지 못하고 문관과 같은 제복을 입고 헌(獻)하였을 것이다.

고려와 요(遼), 송(宋)은 개국후 80여 년 간 전쟁중에 예제(禮制)를 제대로 갖추어 행례(行禮)하지 않았고 세 나라 모두 송의 인조대(仁祖代 : 高麗靖宗 2年, 312년)까지 조·공복제(公服制)의 소례복(小禮服)으로 행례(行禮)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27] 아직 제복이 제정되지 못하여 조·공복으로 제례를 지냈다.

고려에서 처음 제복을 착용한 때는 문종(文宗) 9년(1055)부터 문종 18년까지 10년간으로 당·송의 2품관직 및 왕의 3공(三公)의 대례복인 경면8류(鷩冕八旒) 7장복제(七章服制)를 사여하면서부터이다. 이 때는 송과 요가 화친을 약속하였고 고려와 요도 화친을 도모하여 표면적인 평화가 국제적으로 조성되어 3국이 모두 비로소 행례시(行禮時) 법도를 따르면서 이에 준하였다.

다시 문종 19년부터 예종(睿宗) 3년까지 송의 1품 관직자복(官職者服)인 9류면(九旒冕) 9장복제(九章服制)를 고려의 왕에게 사여하였으니[28] 이 때부터 백관도 제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무백관이 착용한 제복에 대한 기록은 제17대 인종 18년(1140) 4월에 조정(詔定)한 체례복장(禘禮服章)의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종 18년 4월의 체례복장 제도는 다음과 같다.[29]

- 1품복(品服) : 7류면 오장(七旒冕五章)
  아헌(亞獻)이하 시중(侍中)이상 6원(員)이 착용한다.
- 2품복(品服) : 5류면 삼장(五旒冕三章)
  대상경(大常卿)이하 오사헌관(五祀獻官)이상 15원(員)이 착용한다.
- 3품복(品服) : 무류면(無旒冕)
  공신헌관(功臣獻官) 통사(通事) 사인(舍人) 감찰(監察) 어사(御史) 이하 41원(員)이 착용한다.

---

27) 任明美, 1993 「高麗王朝代 高麗와 교류하였던 諸國과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硏究」; 『服飾』 20, 韓國服飾學會, p. 40.
28) 任明美, 1993, 앞의 글, p. 40.
29)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條.

당시 무관은 3품이상은 받을 수 없었으므로[30] 무관은 3품복에 해당되었을 것인데, 제복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면류관의 수식(修飾)이나 복장(服章)의 장문(章文)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다음대인 의종조(毅宗朝)에 상정(詳定)된 백관제복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송제(宋制)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문무투쟁(文武鬪爭)과 내외전란이 서로 엇갈리고 엉클어져서 어지러운 시대였기 때문이다.[31] 『고려사』 여복지의 의종조에 상정된 백관제복은 다음과 같다.[32]

- 7류면 7장복(七旒冕七章服)
  아헌(亞獻)이하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중서령(中書令) 시중(侍中) 등이 입는다.
- 5류면 5장복(五旒冕五章服)
  대상경(大常卿) 광록경(光祿卿) 황문시랑(黃門侍郎) 전중감(殿中監) 유사(有司) 농경(農卿) 등이 입는다.
- 3류면 3장복(三旒冕三章服)
  태축(太祝) 태사령(太史令) 태상박사(太常博士) 집례(執禮) 봉례(奉禮) 당상협률(堂常協律) 등이 입는다.
- 3류면 1장복(三旒冕一章服)
  상의 봉어(尙衣 奉御) 찬인(贊引) 찬자(贊者) 통사사인(通事舍人) 어사(御史) 등이 입는다.
- 평면 무장복(平冕無章服)
  당하협률(堂下協律) 대악령(大樂令) 칠사공신(七祀功臣) 헌관(獻官) 알자(謁者) 대관령(大官令) 양온령(良醞令) 수궁령(守宮令) 교사령(郊社令) 장생령(掌牲令) 대관승(大官丞) 축사(祝史) 등과 태묘(太廟)에는 태묘령(太廟令) 궁위령(宮闈令) 등이 입는다.
- 흑개책(黑介幘) 비견의(緋絹衣) 비견고(緋絹袴) 적혁대(赤革帶) 비위오(緋韋烏) 제랑(薺郎) 등이 입는다.

---

30) 邊太燮, 「高麗의 兩班制度」『高麗政治制度史 硏究』, p. 281.
31)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p. 175.
32)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위의 백관의 제복인 면류관과 장복(章服)에 대하여 『고려사』 여복조와 송(宋) 여복지의 제도에 비추어 구체적인 구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33]

가) 冕旒冠

면관의 면판(冕板) 즉 평천판(平天板)의 너비는 8촌(寸), 길이는 1척 6촌이며 앞쪽은 둥글고 뒤쪽은 네모졌다. 앞 높이는 8촌 5푼, 뒤 높이는 9촌 5푼으로 앞은 낮고 뒤는 높으며, 겉은 검은색 안은 붉은색으로 쌌다. 면류(冕旒)는 앞·뒤 각 12, 9, 7, 5, 3, 1씩 수연(邃延 : 旒)을 달았는데 12개를 달면 12류면(12旒冕), 9개를 달면 9류면(九旒冕)이라 하여 황제와 왕이 착용하였고, 7개를 달면 7류면(七旒冕), 5개를 달면 5류면(五旒冕), 3개를 달면 3류면(三旒冕), 1개를 달면 1류면(一旒冕), 류(旒)를 달지 않으면 무류면(無旒冕)이라 하여 문무백관이 착용하였다. 류(旒)마다 12옥(玉)을 달았으되 옥은 적, 백, 창(赤白蒼) 3색으로 색에 따라 서로 엇바꾸어 꿰었고 조(繅 : 관에 드리우는 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관을 고정시키는 잠도(簪導)가 있는데, 7류면 7장복에는 서잠도를 사용하고 5류면 5장복 이하에는 각잠도(角簪導)를 하였다.

나) 章 服

장복은 의(衣), 상(裳), 중단(中單), 폐슬(蔽膝), 혁대(革帶), 대대(大帶), 패옥(佩玉), 수(綬), 말(襪), 석(舃), 홀(笏)로 구성되어 있다.

① 衣(玄衣, 袞服이라고 함)

겉에 입는 홑으로 된 포(袍)로 검정색이며 여기에 장문(章紋)을 그려 넣는다. 장문은 7장복(七章服)에는 소매에 화충(華蟲 : 꿩), 화(火), 종이(宗彝 : 술잔)의 장문을 그리고 5장복(五章服)에는 종이(宗彝 : 祭器), 조(繅), 분미(粉米 : 쌀)의 삼장문(三章紋)을 그리고 3장복(三章服)에는 조(繅)와 분미(粉米)를 그렸고, 1장복(一章服)에는 장문(章紋)이 없다.

---

33) 『欽定古今圖書集成』, 經濟彙編 禮儀典, 第322 冠服部 彙考6 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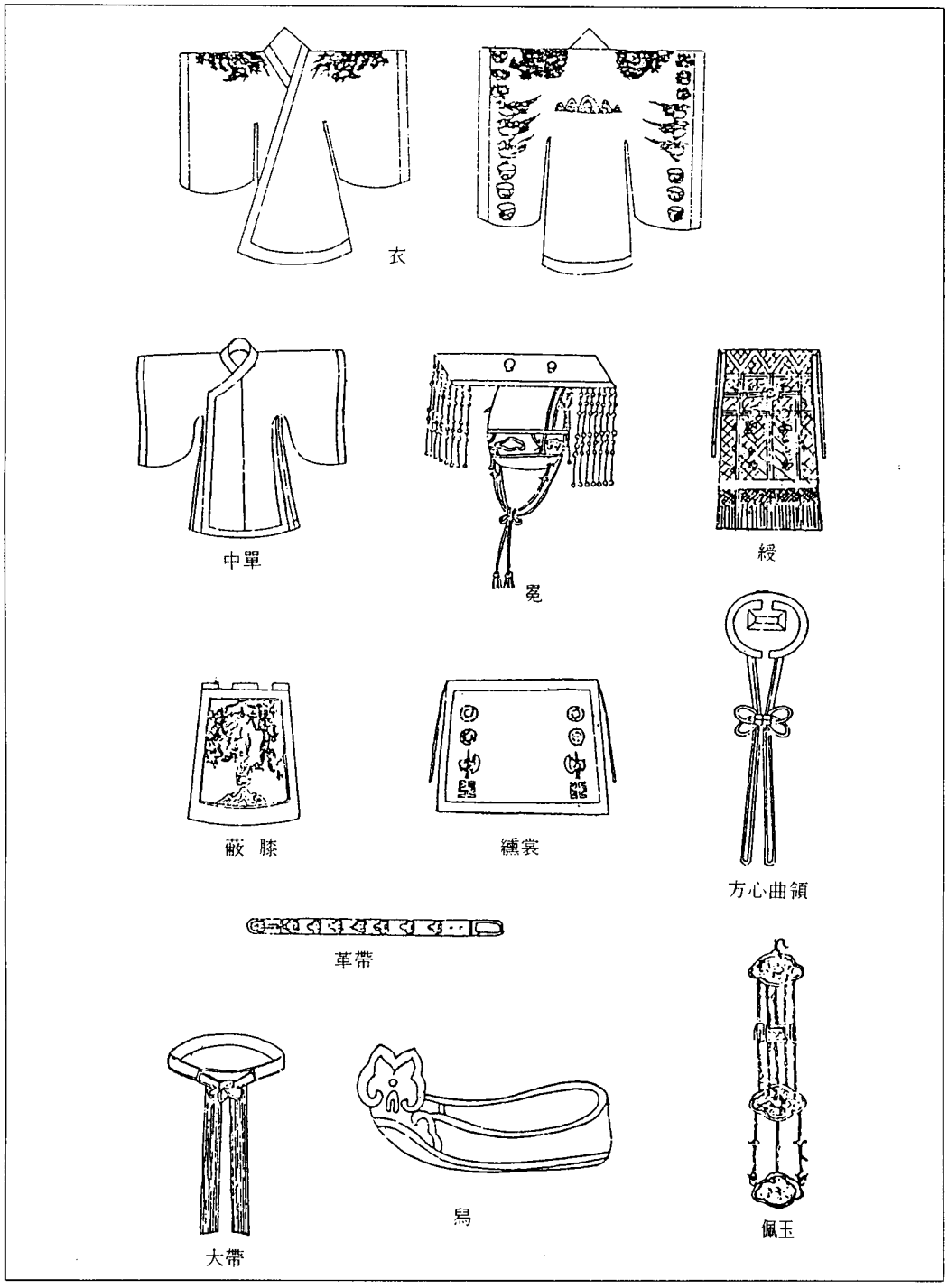

〈그림 2-1〉 구장복(『三才圖會』)

② 裳

흰색 비단으로 된 긴 허리띠에 붉은색(纁色)으로 만든 상(裳)이 달려 있고 혁대(革帶) 아래에 늘어 뜨린다. 7장복에는 조(繰), 분미(粉米), 보(黼), 불(黻)의 사문(四紋)을 수(繡)놓고 5장복에는 보(黼)와 불(黻)을 수놓고 3장복과 1장복에서는 불(黻)만 수놓는다.

③ 中 單

백색 비단으로 만든 안에 입는 포(袍)로 홑겹이고 깃에는 불(黻)을 9개 수놓는다.

④ 蔽 膝

치마 위에 네모난 붉은색 비단(纁色)을 앞치마처럼 두르는데 작(爵)색의 가죽으로 가 둘레를 하고 백선조(白線條)를 가 안에 두르고 오채(五采)로 산과 불의 2장문(二章紋)을 수(繡)놓아 혁대에 달아 늘였다.

⑤ 大 帶

허리에 두르는 넓은 비단 띠로 양 허리 앞쪽에서 두 개의 천을 늘였고 색은 겉은 소색(素表) 안은 주색(朱色)으로 하되 붉은 안감으로 갓을 둘렀고 조(組)로써 맸는데 조는 적, 백, 창(赤白蒼)의 3색 실로 짜서 만들었다.

⑥ 革 帶

옥(玉)을 달아 현의(玄衣) 위에 매었다. 7류면 7장복 띠의 주록대(朱綠帶)는 중단(中單) 위에 매고 5류면 5장복에는 현황대(玄黃帶)를 맨다.

⑦ 綬

수(綬)는 제복(祭服), 조복(朝服) 등 예복(禮服)에 부속된 의례용 장식물로서 관위(官位)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식 중의 하나이며 뒤 허리 아래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後綬)라고도 칭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조에 중국으로부터 왕의 관복이 사여(賜與)되면서부터 착용하였다. 『고려사』 의종조(毅宗朝) 체례복장(禘禮服章)에는 7류면 7장복에는 주조수(朱組綬)로 하였고, 5류면 5장복과 3류면 3장복에는 치조수(緇組綬)로 하였다.[34]

⑧ 佩 玉

좌우 두 개가 있어 혁대에 꿰어 허리 양옆에 늘어뜨리는데 백옥(白玉)으로 꿰어 만들어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하였다. 후수(後綬)와 같은 바탕으로 된 작

34)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은 패옥대(佩玉袋)로 받친다.

⑨ 말(襪 : 버선)

흰색 버선으로 버선목에 끈이 있다.

⑩ 석(舃 : 신발)

붉은 연(緣)을 두르고 코를 청색으로 장식한 붉은색 신에는 흰 끈목이 있어 발등에서 묶는다.

왕의 제복은 백관에 비하여 류(旒)를 9개 늘인 9류면(九旒冕)을 쓰고 의(衣)의 등에는 산문양과 양 어깨에는 용문양을 더 첨가한 9개의 장문이 있는 9장복(곤복 : 袞服이라고 함)을 입었고, 황제는 여기에 황제의 표식으로 우주를 상징하는 일(日), 월(月), 성진(星辰)의 문양을 더한 12장문이 있는 12장복을 입었으며, 백관은 화충(華蟲)이하의 문양만 사용하였다. 장복(章服)에 사용되는 문양의 의미(意味)는 다음과 같다.

① 일, 월, 성진(日月星辰) : 천자만 사용하는 문양으로 천체(天體)를 의미한다.

② 산(山) : 영원 불변하는 모습으로 진정(鎭定)을 표시하고 구름과 비, 이슬 등 만물에 혜택을 주는 신(神)이 거처하는 곳.

③ 용(龍) : 천자나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변혁과 혁신을 통해 구름을 토하여 비와 이슬이 되어 만물에 혜택을 준다는 뜻.

④ 화충(華蟲) : 글과 글씨가 아름답다는 뜻이다.

⑤ 종이(宗彝) :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祭器)에서 형태를 본떠 효(孝)를 표시한다. 호랑이와 원숭이를 그려서 호랑이는 무(武)와 용기를, 원숭이는 지(智)를 상징하여 악(惡)의 침입에 대한 방어신(防禦神)으로 여겼다.

⑥ 조(藻) : 물풀을 그려 청결하고 글과 글씨가 화미(華美)로운 것을 상징한다.

⑦ 화(火) : 정신과 지식의 총명함을 표시하며 덕(德)을 상징하고 양(陽)을 뜻한다.

⑧ 분미(粉米) : 쌀은 양민(養民)을 의미하며 의무(義務)를 상징한다.

⑨ 보(黼) : 도끼그림으로 결단(決斷)과 권위(權威)를 상징한다.

⑩ 불(黻) : 두 개의 기(己)자가 서로 마주 보게 되어 있는 기하문(幾何紋)인 아

자문(亞字紋)으로 시비(是非)를 분별하고 선악이 서로 배치되며 신민(臣民)의 배악향선(背惡向善)과 군(君)과 신(臣)은 이합(離合)이 무상(無常)하여 오직 덕으로 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35]

그 후 원복속기에 들어가서 백관의 제복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고려말 공민왕대에 청사관복(請賜冠服)에 의하여 명태조로부터 배신(陪臣)의 제복을 사여받았다. 그것은 명의 제도로 바뀌어 면류관은 양관(梁冠)으로 바뀌었고 장문이 그려 있는 현의(玄衣)는 청초의(靑綃衣)로 바뀌었다.

『고려사』 여복지(輿服志) 공민왕 19년(1370) 5월에 보면, 명(明)의 태조 고황제(高皇帝)가 고려의 군신(君臣)의 배제관복(陪祭冠服)을 보내왔는데 중국에 비하여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 따른 것이었다.[36] 즉 중국의 3품관이 착용하는 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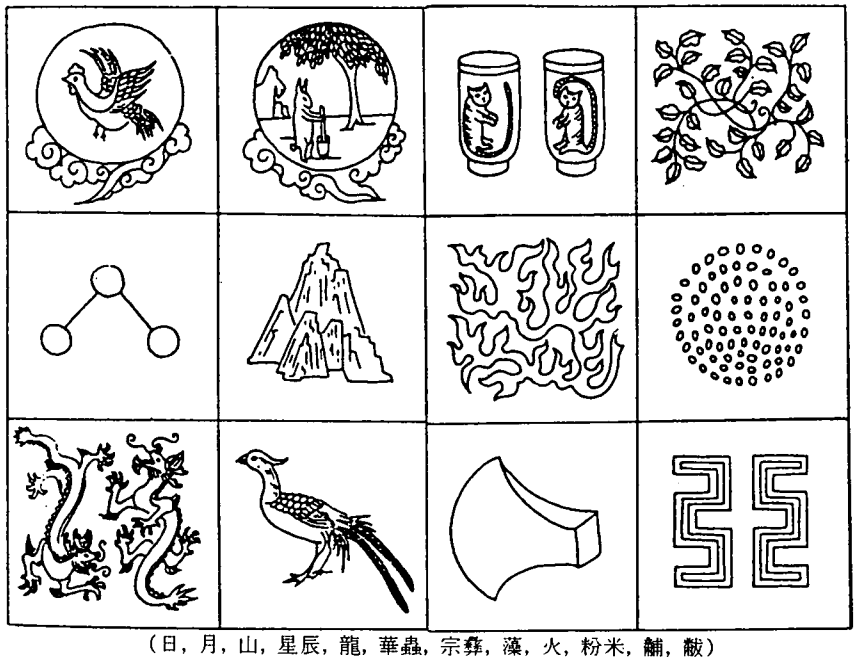

(日, 月, 山, 星辰, 龍, 華蟲, 宗彝, 藻, 火, 粉米, 黼, 黻)

〈그림 2-2〉 12장문(『三才圖會』)

35) 李善宰, 1990 『朝鮮時代 儒敎思想과 儀禮服飾硏究』 世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 63~67.

36) 『高麗史』 志 卷第26, 輿服.

은 고려의 1품관이 착용하였고, 중국의 4품관이 착용한 관복은 고려의 2품관이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지러웠던 고려의 사회정세로 보아 준용되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조에 들어와서 친명정책(親明政策)임에도 불구하고 태조가 백관의 제복을 제정할 때 명제(明制)의 양관복(梁冠服)을 채택하지 않고 송제(宋制)의 면복(冕服)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장수(偰長壽)가 우왕 13년 명 조정에서 보고할 때 국왕의 제복·조복, 배신의 제복은 이미 사여가 있었으나, 다만 편복(便服)은 구제(舊制)를 고치지 못하여 관원(官員)은 입아(笠兒)를 쓰고 있다고 하였으니 그런대로 잠정적이나마 수용이 된 것으로 보아지기도 한다.[37]

백관의 제복으로 착용한 의관(衣冠)과 복식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冠)은 양관을 착용하였는데 관의 위에 그려진 금줄이의 갯수에 따라 5줄이 있으면 5양(五梁)이라 하고 1줄이 있으면 1양(一梁)이라 한다. 양관의 뒤쪽에는 각잠도(角簪導)를 꽂았다. 의복은 청라의(青羅衣), 백초중단(白綃中單 : 皂色 緣을 두름), 홍라군(紅羅裙 : 皂色 緣을 두름), 홍라폐슬(紅羅蔽膝), 홍백대대(紅白大帶), 방심곡령(方心曲領), 혁대(革帶), 수환(綬環), 백말(白襪), 흑이(黑履)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에 따른 복식은 다음과 같다.[38]

- 제1등품질(第1等品秩) : 중국의 3등(等)에 해당하며 5양관(五梁冠)을 쓰고 은제(銀製) 띠돈이 부착된 혁대를 띠고 은제 환(環)을 단 자색비단으로 된 수(綬)를 드리운다.
- 제2등품질(第2等品秩) : 중국의 4등(等)에 해당하며 4양관(四梁冠)을 쓰고 나머지는 앞과 같다.
- 제3등품질(第3等品秩) : 중국의 5등(等)에 해당하며 3양관(三梁冠)을 쓰고 동제(銅製) 띠돈이 부착된 혁대를 띠고 동환(銅環)을 단 자색비단으로 된 수(綬)를 드리운다.
- 제4등품질과 제5등품질 : 중국의 제6등(等)과 제7등(等)에 해당하며 2양관(二梁冠)을 쓰고 동환(銅環)을 단 홍색비단으로 된 수(綬)를 드리운다.

---

37) 柳喜卿, 앞의 책, p. 178.

38) 『高麗史』 志 卷第25, 與服.

• 제6등과 제7등품질(秩品) : 중국의 제8등(等)과 제9등(等)에 해당하며 1양관(一梁冠)에 동환(銅環)을 단 녹색비단으로 된 수(綬)를 드리운다.

명의 제복 제도는 인종조나 의종조에서 보였던 송의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면류관이 양관으로 바뀌었고 장문을 그려 넣은 현의(玄衣)가 청라의(靑羅衣)로 바뀌었으며 훈상(纁裳)은 조연(皀緣)이 있는 홍상(紅裳)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대(大帶), 혁대(革帶), 수(綬)의 수식(修飾)에 약간의 변용(變容)이 있었으며 의(衣)와 상(裳), 폐슬(蔽膝)에 있었던 장문(章紋)이 없어졌다. 또한 적석(赤舃)은 흑이(黑履)로 변하였고 그밖에 장신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제목은 공민왕 19년 명태조가 즉위한 지 3년 후로 명의 제도를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 의해 따랐는데 이 제도는 조선조까지 그대로 이어 왔다.[39] 고려시대에는 무신은 3품 이상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제3등질 이하의 제복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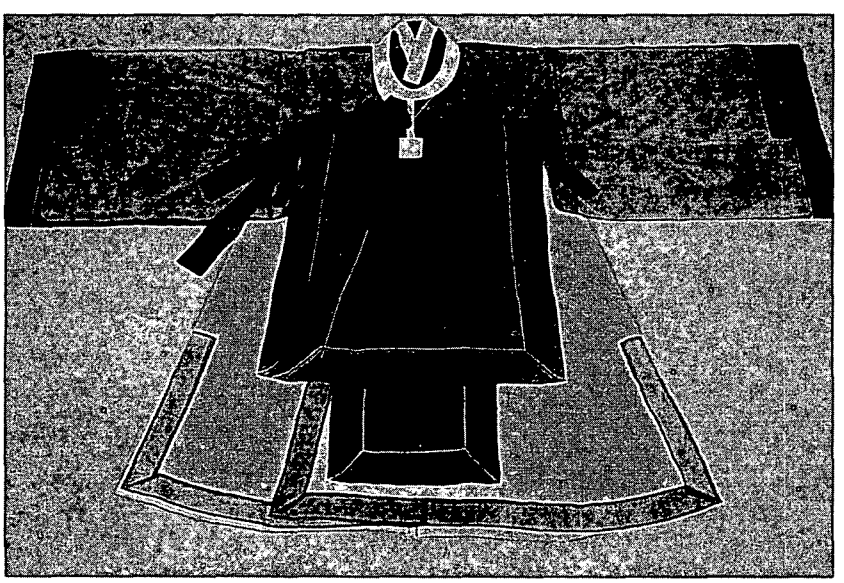

〈그림 2-3〉 祭 服

39)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고려시대의 제복을 착용한 모습을 수락동(水洛洞)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다. 이 벽화는 경기도 개풍군(開豊郡) 청교면(靑郊面) 수락암동(水洛岩洞) 제1분(第1墳) 현실동벽(玄室東壁)의 벽화인데 고려시대의 문관의 제복양식이다. 고려시대의 제복은 문무관의 구별이 없었을 것으로 보아 문관상(文官像)을 통하여 무관이 착용했던 제복의 형태를 알 수 있다. 벽화에서 보이는 제복은 5양(五梁)의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있으며 단령(團領)의 활수관포(闊袖寬袍)를 입고 군(裙)과 폐슬(蔽膝)을 입고 있다. 목에는 방심곡령(方心曲領)을 하고 있으며 가슴에는 혁대(革帶)를 띠고 있고 대(帶)의 앞 중앙에서 대대(大帶)를 늘이고 있다.

(2) 朝　服(禮服)

조복(朝服)은 조근의복(朝覲衣服)이라 하여 왕이나 신하가 천자(天子)에게 나아갈 때 입는 옷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조복은 『고려사』의 종조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는 원단(元旦)과 동지(冬至)의 조하(朝賀) 및 매 삭삼대조하(每朔三大朝賀) 등사(等事)에 착용한다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40] 그 제도는 알 수 없다.



〈그림 2-4〉 朝服 着用圖

한국에서 조복을 처음 입은 시기는 648년(신라 진덕왕 2년)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당에 청병(請兵)을 하였다 이 때 당의 관복제도(冠服制度)를 따르기를 요청하면서 당의 제도를 모방하였다고 하지만 이보다 앞서 고구려에서 한

40) 『高麗史』 志 卷第26 輿服.
"百官朝服毅宗朝祥正凡正至節日朝賀每朔三大朝賀等事服之"

(漢)나라 조복(朝服)을 입은 기록이 있다.[41]

삼국시대에는 중국과의 국교에서 조복은 수수(授受) 내지 무역에 의하여 습용(襲用)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라에서는 조복으로 백색(白色)을 입었고[42] 백제에서는 고구려와 대략 동일하나 관대(冠帶)와 수식(修飾)으로 품계(品階)를 구별하였고[43] 백관의 복색(服色)이 홍색(紅色)인 것으로 보아 조복이 홍색인 듯하다.[44]

고려시대에서 처음으로 조복을 착용한 기록은 현종 13년~문종 8년까지 35년간으로 요조(遼朝 : 景宗, 979)로부터 사여관복제(賜與冠服制)가 있었는데 2품이상의 관직자에게 조복을 사여하였다. 『요사(遼史)』를 보면 친왕(親王) 및 2품이상의 제복을 보면 원류관(遠旒冠)은 삼량관제(三梁冠制)로 금부선(金附蟬)을 가(加)하였고, 흑개책(黑介幘)은 청수도제(靑綬導制)이며 의복은 강사단의(絳紗單衣), 백사중단(白紗中單), 조령(皀領), 선(褝), 거백군유(裾白裙襦), 혁대(革帶), 구섭(鉤韘), 가대(假帶), 방심곡령(方心曲領), 강사폐슬(絳紗蔽膝), 말(襪), 석(舃), 검(劍), 패수제(佩綬制)였다. 이것은 3품(三品)이상의 관리(官吏) 복제(服制)로 한식(漢式) 조복제(朝服制)이다.[45]

그러나 현종13년 고려가 거란과 국교가 회복되고 서로 사절을 보낸 어지러웠던 시기였고 2품이상의 관직자에게만 내려졌기 때문에 무관은 착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 여복지(輿服志) 의종조에 백관의 조복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상정(祥定)된 백관의 조복에는 무릇 정월 동지절일(冬至節日)의 조하(朝賀)와 매달의 3대조하(三大朝賀) 등에 입도록 하였다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 조복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여기서 다만, 『고려사』 의종조(毅宗朝)에 상정된 제복은 송의

---

41) 『魏史』 高句麗傳
"高句麗 漢時從玄菟郡受朝服衣幘 後於東界築少城置朝服衣幘 其中來取之名此城爲溝漊耆句麗名城也"

42) 『舊唐書』, 東夷傳
"新羅國 …… 衣服 與高句麗百齊略同 而朝服尙白"

43) 『三國史記』, 卷第33, 雜志 第2 色服, 新羅條.
"此史云 百濟衣服 與高句麗略同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奈率以下 冠飾 銀花 將德紫帶 施德皀帶 固德赤帶 秀德靑帶 對德文督皆黃帶 自武督至剋虞皆白帶"

44) 『舊唐書』, 東夷傳.
"百濟國 …… 官人盡緋爲衣 銀蒨飾冠 庶人不得衣緋紫"

45) 『遼史』 卷56, 志第15, 儀衛志2.

제도를 따른 것이니만큼 고려의 조복도 송의 조복제도를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송의 조복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46]

양관류(梁冠類)는 진현관(進賢冠) 초선관(貂蟬冠) 해치관(獬豸冠)등 신분의 등차에 따라 달랐고 비라의(緋羅衣), 백라중단(白羅中單), 비라군(緋羅裙), 비라폐슬(緋羅蔽膝), 백라대대(白羅大帶), 백라(白羅) 방심곡령(方心曲領), 혁대(革帶), 수(綬), 백말(白襪), 조이(皀履)를 갖추었다. 그러나 『송사(宋史)』에는 비라의(緋羅衣)와 비라군(緋羅裙)이 주의(朱衣), 주상(朱裳)으로 기록되어 있다.[47]

고려말 공민왕 때 명에서의 청사관복(請賜冠服) 가운데 백관의 조복은 빠져 있다. 그러나 『고려사』 여복지에 보면 공민왕 21년 11월 교지(敎旨)에 상아홀(象牙笏)과 홍정(紅鞓 : 붉은색 가죽띠), 조화(皀靴 : 검정색 장화), 초라(綃羅)로 만든 조복(朝服)은 모두 본국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금후(今後)에도 시신 외(侍臣外)의 동서반 5품이하는 목홀(木笏)을 들었으며 각대(角帶)를 띠며 주저(紬紵)로 만든 조복을 입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조복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초라조복의 복제(服制)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초라조복이 과연 송제(宋制)의 비라의(緋羅衣), 백라중단(白羅中單), 비라군(緋羅裙) 등과 같은 제도인지 아니면, 공민왕 6년에 사천소감(司天少監) 간필흥(干必興)이 상서(上書)한 대로 백관의 복색(服色)을 오행(五行)에 맞도록 개혁하여 공민왕 16년에는 군신관복(君臣冠服)은 이미 풍토에 맞도록 제정하여 상하구별을 둔 국제(國制)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공민왕 21년의 교지는 국제로 구별을 둔 직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관 5품이상이 되는 서반(西班)은 초라조복(綃羅朝服)을 입고 상아홀(象牙笏)을 들었으며 홍정(紅鞓)을 띠었다. 그리고 5품이하의 무관은 주저조복(紬紵朝服)을 입었고 목홀(木笏)을 들었으며 각대(角帶)를 띠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전술한 『고려사』 공민왕 19년에 상정된 제복과 송의 조복을 비교할 때 면류관과 양관이 다르고 의(衣)가 제복에는 청라의(靑羅衣)인 데 비해 조복에는 비라의(緋羅衣)로 하였다. 그 밖의 백초중단(白綃中單), 홍라군(紅羅裙), 홍라폐슬(紅羅蔽膝), 홍백대대(紅白大帶), 혁대(革帶), 수(綬), 백말(白襪), 흑이(黑履)는 모두 같다.

---

46) 『欽定古今圖書集成』, 經濟彙編, 禮儀典, 第322, 冠服部, 考6, 宋.
47) 『宋史』 卷156, 志第106, 與服5.

이 조복의 제도는 조선시대에서 보이는 조복 일습(一襲)과 일치하고 있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조복착용을 탱화를 통하여 보면 백관은 진현관, 해치관, 농관(籠冠), 원정보주관(圓頂寶珠冠)을 쓰고 홍색 대수상의(大袖上衣)를 입고 있다. 연갈색과 황금색, 백색으로 된 하상(下裳)의 단(端)은 주름장식이 있고, 부속품으로 홍색폐슬, 대(帶), 방심곡령, 홀, 홍이(紅履)를 착용하고 있다.[48] 이는 『송사(宋史)』와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에 기록되어 있는 조이(皀履)와 다른 적이(赤履)를 신고 있고 여러 색의 상(裳)이 보이고 있어 문헌에서 보이는 그대로 착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公 服

공복은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上奏)할 일이 있어 조현(朝見)할 때, 사은(謝恩) 또는 사퇴(辭退) 관계로 배알(拜謁)할 때, 재외(在外) 문무관이 공사(公事)에 참여할 때 착용하였다.

정복(正服)의 경우, 복두(幞頭)를 쓰고 포(袍)에 대(帶)를 띠며 흑화(黑靴)를 신고 홀(笏)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공복제도를 처음 시행한 것은 백제로 고이왕 27년(260)에 관식(冠飾)과 대색(帶色)으로 품관(品官)에 따른 복색을 정하여 상하의 등위를 구별하였다.

신라는 법흥왕 7년(520) 육부(六部) 사람들의 의복제도를 정하였다고 하나 전하는 내용은 없으며, 523년에 갱정(更定)하였다는 공복제도가 『삼국사기(三國史記)』 색복조(色服條)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비, 청, 황(紫緋靑黃)의 사색(四色) 공복제도(公服制度)로[49] 중국의 사색 공복제도를 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때의 관

---

48) 任明美, 1994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하여 본 복식에 관한 연구(2)」『복식』 22, 한국복식학회, p. 211.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
* 일본 대덕사소장 수월관음도.
* 일본 일광사소장 지장보살화.
* 일본 정가당소장 지장10왕도.
* 영락궁벽화 pp. 31~33.

49) 『三國史記』 卷33, 雜志2, 色服.



〈그림 2-5〉 姜民瞻(『한국복식도감』)

모는 금관(錦冠)과 비관(緋冠)을 썼고 공복의 제식(制飾)이라 할 복두(幞頭), 포(袍), 대(帶), 홀(笏)을 갖추게 된 것은 649년(진덕여왕 3년)이었다.

고려는 초기에 관호(官號)와 복제(服制)를 신라의 구제(舊制)를 그대로 따라 자, 비, 청, 황(紫緋靑黃)의 관복색제(官服色制)를 그대로 사용하였다.[50]

고려는 자색(紫色)과 동색 계열인 단색(丹色)을 동1품계내(同一品系內)에 병렬시켜 자국(自國) 개국공신의 비색품계(緋色品系) 속에 패망한 백제와 신라의 동일품계(同一品系)의 관직자를 수용, 병존하여 고려계의 단색(丹色) 아래 두는 우대제(優待制)를 병존하면서 자(紫), 단·비(丹緋), 청(靑), 황(黃) 혹은 자(紫), 단·비(丹緋), 청(靑)의 복색제를 광종 10년까지 실시하였다.[51]

고려에서 정식으로 공복을 채용한 기록은 광종 7년(956)에 설문우(薛文遇)를 보내어 왕에게 책봉을 바치면서 비롯한다.[52] 이 공복은 당제(唐制)를 이어 받은 후주(後周)의 자, 비, 록(紫緋綠) 3색 공복제를 받아들여 자, 비, 록(紫緋綠)의 3색 공복제도를 제정하였는데[53] 이는 후주의 권유와 후주의 쌍기(雙冀)의 진언에 의한 것이다.

그 후 광종 11년 3월(960)에 왕권확립을 위하여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문신귀족을 등용하고 관료체제를 관직 관계에 따라 수립하였다고는 하나 그때는 대개 관직 관계의 전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에 해당하므로 공복제 역시 불완전함을 면

50)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太祖1年.
51) 任明美, 1993, 앞의 책, p. 34.
52) 『高麗史』 世家 卷第2, 光宗.
"周遣作監薛文遇來加冊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大師 仍令百官衣冠從華制"; 金東旭, 앞의 책, p. 134.
53) 周錫保, 中華民國 75年 『中國古代服飾研究』 北京, 丹靑圖書有限公社, p. 255.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54] 그리고 '정백관공복(定百官公服)'이라 하여 자, 단, 비, 녹(紫丹緋綠)의 4색 공복제도를 정하였는데[55] 이 사색공복제도는 성종 14년에서 목종 원년 사이까지 계속 착용되었다.[56]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포(袍)는 어떤 제도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시대적으로 보아 이 때는 중국 오대(五代) 후주(後周)에 해당되므로 당의 제도와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보아 단령포였을 것이다. 또한 이 때는 통일로부터 20여 년밖에 안 되는 창업초기로 관직(官職)과 관계(官階) 등 전체제(全體制)가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였으므로 품계의 구별이 없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문무백관 모두 같은 공복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문무양반이 구분된 것은 성종 14년이다.[57] 성종 14년부터 자, 비, 녹, 청(紫緋綠青)의 사색 공복제도를 실시하여 문종 29~31년까지 착용하였다.[58] 다시 후주(後周)와 요(遼)에서 착용하고 있는 공복과 상복의 제도에 따라 자, 비, 녹(紫緋綠)의 삼색공복제(三色公服制)를 문종 29~31년 사이에 채택되어 의종조 상정예제시(祥定禮制時)까지 일관되게 착용되었다.[59] 이 공복제도는 인조대의 『고려도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모두 복두(幞頭)를 썼으며, 포(袍)는 직품(職品)에 따라 자, 비, 녹(紫緋綠)을 입었고, 대(帶)는 직품에 따라 옥,(玉), 금(金), 각(角), 정(鞓)으로 구별을 두었고 여기에 금어대(金魚袋) 또는 은어대(銀魚袋)를 찼다. 그러나 직위로 볼 때 문관의 복식이고 무관에 대한 기록은 빠져 있다.

『고려사』 의종조에는 송(宋)의 신종(神宗) 원풍(元豊) 원년(元年)의 제도에 따라 정했으나 둥근 깃과 소맷부리에 흑색선(黑色襈)이 있는 점이 송의 공복과 달랐

54) 李丙燾, 『中世史』 震檀學會, p. 105.
55)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56) 任明美, 1993, 앞의 책.
57) 邊太燮, 앞의 책, p. 278.
58) 『高麗史』 卷78, 食邑志, 田柴科條 ; 卷3, 世家, 卷第3, 穆宗元年, 2, 3, 4, 5, 6, 7, 8, 9, 10, 11年條 ; 卷3, 世家, 卷第4, 顯宗, 元年, 5, 7, 8, 9, 11, 14, 15, 17, 19年條 ; 卷75, 選與志, 卿職條 ; 卷4, 世家, 卷第4, 德宗, 2, 3年條 ; 卷5, 世家, 卷第5, 靖宗, 4, 5, 7, 10, 12年條 ; 卷5, 世家, 卷第5, 文宗3, 5, 7, 8, 10, 13, 18, 19, 20, 22, 24, 26, 28, 32, 34, 37年條 ; 任明美, 1993, 앞의 책, p. 35.
59) 『高麗史』 卷10, 世家, 卷第10, 宣宗元年, 2, 3, 9, 11年條 ; 卷10, 世家, 卷第10, 獻宗元年條 ; 卷10, 肅宗元年條 ; 卷10, 世家, 卷第10, 睿宗, 3, 5, 7, 8, 11, 12年條 ; 任明美, 1993, 앞의 책, p. 35.

다.[60] 무관(武官)들의 복식은 사색(四色)으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복색(服色)이 자색(紫色)이며 어대(魚袋)를 차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반면 문관은 4품이상은 자색이고 6품이상은 비색이고 9품이상은 녹색인 공복을 착용하였다. 『고려사』 여복지에 나오는 의종조(毅宗朝)에 상정(祥定)된 무관의 공복제도는 다음과 같다.

- 각문(閣門) 무신(武臣)은 모두 자색(紫色衫)을 입고 어대(魚袋)는 차지 않았다.
- 대(帶)에 대하여

  무관(武官)의 상장군(上將軍)이상은 금반서대(金班犀帶)를 사용한다.

  문·무(文武) 3품은 반서금도은대(班犀金塗銀帶)를 사용하고

  무(武) 4품이하는 금도은서대(金塗銀犀帶)를 사용하고.

  저후(祗候)이상은 금도은대(金塗銀帶)를 사용한다

  삼외관(參外官)은 서대(犀帶)착용을 불허(不許)한다.

  문·무 2품이상은 조삼(皀衫)에 홍정(紅鞓)을 하며 관(官)은 이르지 못했으나 특별히 하사(下賜)받은 자는 이 예(例)에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여복지 관복통제조(冠服通制條)에는 성종 8년 3월에 비로소 동서북면(東西北面) 병마사(兵馬使)는 옥대(玉帶)에 자금(紫襟)을, 병마부사(兵馬副使)는 자의(紫衣)에 대검(帶劒)하도록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덕종(德宗) 3년 정월에 조(詔)하여 백관이 아문(衙門)에서 직무할 때 자의(紫衣)로 상복(常服)함은 사무(事務)에 무리하니 만약 호종(扈從)할 때가 아니면 조삼(皀衫)을 착용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61] 여기서 자금(紫襟)과 자의(紫衣)의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자색포로 추측되며 『고려사』 여복지 의종조(毅宗朝)에는 무관의 공복이 모두 자색포인 것으로 보아 문무관이 구별된 성종대로부터 계속해서 의종조에 이르기까지 착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사』 관복통제조(冠服通制條)에 충렬왕 원년 7월에 조관(朝官)의 복장(服章)을 정하니 재추(宰樞) 이상은 옥대(玉帶), 6품이상은 서대(犀帶), 7품이하는 흑대(黑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동왕4년 2월에 경내(境內)에 명령하여 모두 상국(上國 : 蒙古)의 의관(衣冠)을 입도록 하였다. 개체(開剃)는 몽골의 풍속으로 정수

60) 柳喜卿 外, 1986 『韓國服飾圖鑑』, 韓國放送事業團, p. 48.

61) 『高麗史』 志 卷第26, 冠服通制條.

리에서 이마까지를 깎아 그 모양은 네모꼴로 가운데에 머리카락을 남기는 것으로 이를 일컬어 개체라 하였다. 이 때에 재상(宰相)에서 하료(下僚)에 이르기까지 개체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오직 금내학관(禁內學館)만이 개체하지 않아 좌승지(左承旨) 박항(朴恒)이 집사관(執事官)을 불러 타이르니 이에 학생(學生)도 모두 개체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62] 몽골의 풍속이 깊이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잠시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원(元)과 국혼관계(國婚關係)를 유지하면서 양국간의 민족교류가 이루어져 왕, 왕비, 신하들은 원의 복식을 입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원(元)의 황제와 관원이 조복과 공복으로 입었던 질손(質孫)을 착용하였다.[63]

고려에서는 질손이 어떤 용도로 착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질손을 착용한 몇 점의 초상화가 있다. 질손(質孫)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허리에서 연결한 포(袍)인데 치마에 주름을 많이 넣어 말타기에 적당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철릭(帖裏)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오랫동안 융복(戎服)으로 입었다.

그러나 『고려사』 관복통제조(冠服通制條)에는 공민왕 6년 윤(閏)9월에 배원향명(背元向明)의 움직임 속에서 복구적(復舊的)인 중흥정치(中興政治)를 행하려는 개혁사상으로 자주성을 되찾고자 복색(服色)을 5행(五行)에 맞추어 입었다.

"즉 사천소감(司天少監) 간필흥(干必興)이 상서(上書)하기를 옥룡기(玉龍記)에 말하기를 아국(我國)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그 지세(地勢)는 수(水)를 뿌리로 하고 목(木)을 줄기로 하며 땅인 흑(黑)으로써 부모(父母)를 삼고 청(靑)으로써 몸을 삼았습니다. 만일 풍속이 토기(土氣)에 순응하면 창성(昌盛)하고 토기(土氣)에 역(逆)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풍속이란 군신(君臣)과 백성(百姓)의 의복(衣服)과 관개(冠盖)가 이것입니다. 금후(今後)로 문무백관은 흑의(黑衣)에 청립(靑笠)을 착용하도록 하소서."[64]

위의 기록으로 보아 문무백관은 국속(國俗)인 흑의(黑衣)와 청립(靑笠)을 착용

62)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冠服通制條.
63) 沈從文, 中華民國70年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商務印書館, p. 388.
64)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冠服通制.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왕(同王) 16년 7월에는 등위를 가리기 위하여 입자(笠子)에 백옥(白玉), 청옥(青玉), 수정(水晶), 잡수정(雜水晶) 등의 정자를 정수리에 장식하였다.[65·66]

또 동왕(同王) 16년 9월에는 복두(幞頭)와 공복(公服) 대신에 이러한 입자(笠子)와 흑의(黑衣)를 착용하고 조알(朝謁)한 때도 있었다.[67] 여기에서 흑의(黑衣)와 청립(青笠) 또는 흑립(黑笠)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는지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이 흑의와 청립, 흑립을 공복으로 착용하기도 하였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공민왕 대에는 원명(元明)의 교체기이고 고려는 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당시의 형편으로는 제복, 조복, 공복, 상복 등 번거롭게 구분하여 착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68]



〈그림 2-6〉 정몽주상(『한국복식도감』)

그러나 우왕(禑王) 13년 5월에 설장수(偰長壽)가 명(明) 황제가 하사(下賜)한 사모(紗帽), 단령(團領)을 입게 되므로 명제(明制)에 의한 관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이 때는 명으로서도 초창기인지라 문무관 관복에 정제(定制)가 없었고 송제(宋制)를 그대로 습용(襲用)하고 있었다.[69] 그리하여 우왕 13년 6월 '始革胡服 依大明制'라 하여 호복(胡服)을 혁파하고 대명(大明)의 제(制)에 의거하니 아직 송제(宋制)를 그대로 습용하고 있던 명제(明制)에 의하여 관복제도를 단행하였다. 『고려사』 여복지에는 당시의 제도는 매우 복잡하여 관모(冠帽)와 의대(衣帶)로 그 직위

65)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冠服通制.
66) 『高麗史』 列傳 卷第49, 辛禑4.
67)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 冠服通制.
68) 柳喜卿, 앞의 책, p. 180.
69) 柳喜卿, 앞의 책, pp. 186~187.

(職位)를 표시하였다. 우왕 13년 시혁호복시의 직위에 따른 복식은 다음과 같다.[70]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를 쓰며 단령(團領)을 착용하였는데 그 품대(品帶)로써 차등(差等)을 두었다. 우왕 13년 시혁호복시의 문무관의 공복에 착용한 관대(冠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품 중대광(重大匡)이상 : 삽화금대(鈒花金帶)를 한다.
- 2품 양부(兩府)이상 : 소금대(素金帶)를 한다.
- 개성윤(開城尹) 및 3품 대사헌(大司憲)에서 상시(常侍)까지 : 삽화은대(鈒花銀帶)
- 판사(判事)에서 4품까지 : 소은대(素銀帶)를 한다.
- 5·6품에서 7품 문하록사(門下錄事), 주서(注書), 밀직(密直), 당후삼사도사(堂後三司都司),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전교시(典校寺), 성균관(成均館)과 8·9품 외방현령(外方縣令),감무(監務) : 각대(角帶)를 한다.
- 동서반(東西班) 7품이하 : 전모(氈帽)에 사대(絲帶)를 한다.
- 제도감(諸都監) 각색(各色)에 근무하는 자는 : 사모품대(紗帽品帶)를 한다.
- 지유(持諭), 행수(行首), 내시(內侍), 다방(茶房) 및 승명출외자(承命出外者), 동서반(東西班), 시관(時官), 산관(散官)을 물론하고 참이상(參以上) : 사모품대(紗帽品帶)를 한다.
- 참외(參外) : 각대(角帶)를 한다.
- 양부대언(兩府代言), 반주(班主), 대간(臺諫), 제도안렴(諸道按廉)은 우설시(雨雪時) : 정옥(頂玉)이 있는 고정립(高頂笠)을 쓴다.
- 삼도감(三都監), 오군록사(五軍錄事), 재추소(宰樞所), 지인(知印) : 유각두건(有角頭巾)을 쓴다.
- 녹관(祿官) 출사시(出仕時) : 유각두건(有角頭巾)을 쓴다.
- 삼관(三館)의 각령위정(各領尉正) : 감두(坎頭)에 고정립(高頂笠)을 쓰고 직령(直領)을 입고 전대(纏帶)를 띠었다.
- 백갑견룡(百甲牽龍), 인가(引駕) 및 경외전함(京外前銜), 정순(正順)이하 고정립(高頂笠)에 사대(絲帶)를 띤다.
- 양부(兩府)의 전함(前銜)과 견임(見任) : 양부(兩府)의 봉군전함(封君前銜)과 봉익(奉翊), 통헌(通憲)의 본품(本品) 관복(冠服)과 같다.

---

70) 『高麗史』 志 卷第26, 與服條.

- 성균생원(成均生員), 경외학생(京外學生), 권무(權務) 및 무직사인(無職士人) 고정모(高頂帽)에 평정두건(平頂頭巾)을 쓰고 사대(絲帶)를 맨다.
- 별감(別監), 소친시(少親侍), 급사(級事) : 자라두건(紫羅頭巾)에 세조(細條) 전대(纏帶)를 띤다.
- 악관(樂官) : 녹라두건(綠羅頭巾)을 쓴다.
- 반방(飯房), 수방(水房) 등촉상소(燈燭上所) : 고정립(高頂笠)에 직령(直領)을 입고 전모(氈帽)에 전대(纏帶), 감두(坎頭)를 쓴다.
- 제사(諸司), 서리(胥吏) : 평정두건(平頂頭巾)을 쓴다.
- 상공인(商工人), 백성(百姓)은 유직자(有職者)라도 고정립(高頂笠)에 사대(絲帶) 직령을 입고 전모(氈帽)에 전대(纏帶), 감두(坎頭)를 쓴다.
- 제사(諸司), 서리(胥吏) : 평정두건(平頂頭巾)을 쓴다.
- 순군(巡軍), 나장(螺匠) : 단령조의(團領皂衣)에 전대(纏帶)를 띤다.
- 정리(丁吏)는 황의(黃衣)를 입는다.
- 초(抄)는 자의(紫衣)를 입는다. 다만 두건(頭巾)과 대(帶)는 곧 원제(元制)를 좇음이니 그 이유는 미천(微賤)함으로써 고치지 않은 것이다.

이상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복두를 써 왔는데 사모로 바뀌었고 그 외에 전모(氈帽), 고정립(高頂笠), 감두(坎頭) 등을 썼고 건양(巾樣)에 유각두건(有角頭巾), 자라두건(紫羅頭巾), 녹라두건(綠羅頭巾), 오건(烏巾) 등을 썼다. 단령(團領)에는 각대(角帶)나 사대(絲帶)를 착용하였고 직령(直領)에는 전대(纏帶)를 착용하였다. 〈표 2-1〉은 고려가 북송(北宋), 요(遼)와 교류당시 주변 제국(諸國)과 고려의 복색제(服色制) 변천상을 도표화한 것이다.[71] 이상 직품에 따른 공복제도에 대해서 복두(幞頭)·포(袍)·대(帶)를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冠 帽(幞頭)

복두는 중국에서 생겨난 관모로서 문무백관은 모두 복두(幞頭)를 썼는데 한국에서는 신라 진덕여왕(眞德女王) 때 당나라의 복식제도를 따르게 되면서 처음으로 쓰게 되었다. 복두는 각(角)이 지고 위가 평평하며 사모와 같이 두 단(段)으로 되

71) 任明美, 1993, 앞의 책, p. 45.

었으며 뒤쪽 좌우에 각(脚)이 달려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양쪽의 각이 왕의 것은 위로 굽고, 신하의 것은 밑으로 굽었다.[72] 오대(五代) 이후부터 각은 점차 평직(平直)으로 변하였고, 송대(宋代)에는 군신이 모두 전각복두(展脚幞頭)를 쓰게 되었다. 고려는 개국초에는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쓰다가 광종 때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이 때는 중국 오대의 평직으로 된 것을 받아들였으나 차츰 전각복두를 사용하였다. 전각복두는 초기에는 각의 길이가 어깨너비를 넘었는데 말기에는 길이가 짧아졌다. 조선시대에는 각이 그다지 길지 않고 폭이 좀 넓은 평직(平直)으로 되었다.

2) 服(袍)

단령은 북방민족의 의복인 호복(胡服)으로 남북조시대에 중국인이 입기 시작해서 당대(唐代)에 일반화되어 중국 옷으로 입게 되었다. 옷감은 겨울에는 주로 명주(明紬), 여름에는 마포(麻布)로 만들어 입었다. 포는 아래위가 붙은 겉옷으로 깃은 둥근 단령(團領)이고 소매가 넓으며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홑옷이다. 단령포의 색은 왕조마다 변하여 3색 혹은 4색으로 하여 관직(官職), 관계(官階), 관료제도를 나타내었다.

3) 帶

대(帶)는 원래 원시인들이 허리에 매었던 유의(紐衣 : 허리띠)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화의 발달과 함께 목적, 형태, 재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피혁대(皮革帶), 포백대(布帛帶)를 사용하던 것이 청동기, 철기문화가 발달되면서 그 위에 금속장식을 가하게 되므로 과대(銙帶)가 되었다. 부(富)를 배경으로 나타난 지배계급에서는 권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과대(鍋帶)는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실용성은 전혀 결여된 것으로 여러 개의 요패(腰佩)를 늘어뜨려 장식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와서는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그 관직(官職)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되어 현재의 각대모양이 되었고 대표적인 계급표시(階級表示)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각 계급에 따라 옥(玉), 서(犀), 금, 은, 동, 철, 각(角)으로 만든 대(帶)가 있다. 대의

72) 『三國史記』 服色 新羅條.

명칭은 띠돈의 장식으로 구별되며 계급에 따라 법으로 차등을 정하여 착용되었다. 과대는 크게 야자대(也字帶)와 각대(角帶)로 나누어진다.

・也字帶

이 대(帶)는 고려초에 사용된 것으로 포대(布帶) 위에 방형(方形) 또는 장방형의 과판(鍋板)을 붙인 대인데, 대의 한 끝에는 교구(鉸具)를 달았고 다른 한쪽 끝은 늘어뜨려 허리 속으로 끼어 착용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안동(安東) 태사묘(太師廟)의 유물(국보 제451호) 중에서 볼 수 있다. 태사묘에는 혁대(銅革帶) 4개가 있는데 착용자는 잘 알 수 없으나 고려 초기의 삼공신(三功臣)의 유물이라 한다.[73]

・角　帶

이 대(帶)는 야자대보다 좀더 발달된 형태로 조선시대의 각대형이다. 앞의 교구(鉸具 : 버클)와 뒷부분의 과판은 방형이고 주위의 과판들은 엽형(葉形) 또는 심엽형(心葉形)이다. 고려시대의 금동과대(金銅銙帶)가 있는데 방형(方形)의 과판(銙版)이 9개 붙어 있는데 하나하나에 조문(鳥紋)과 수형(獸形)이 양각(陽刻)된 두 종류가 있다. 조문에는 주로 봉황과 꿩 등이 새겨졌고, 수문에는 용이 새겨져 있다. 특히 교구(具)가 붙어 있는 과판(銙板)에는 초화문(草花紋)이 양각되어 있고 과판의 이면(裏面)은 민짜판으로 되어 있다. 각대(角帶) 착용도는 고려말기의 정몽주(鄭夢周)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

---

73) 文化財管理局, 1971『文化財大觀』寶物篇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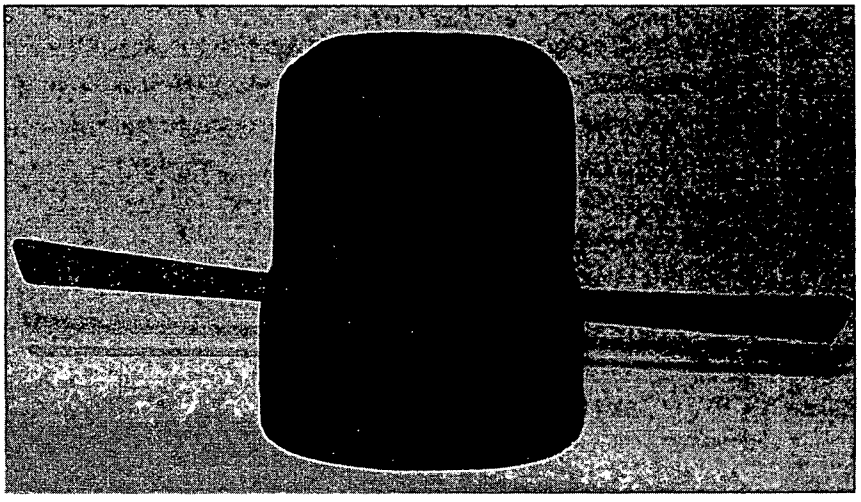

〈그림 2-7-①〉 幅 頭(『한국복식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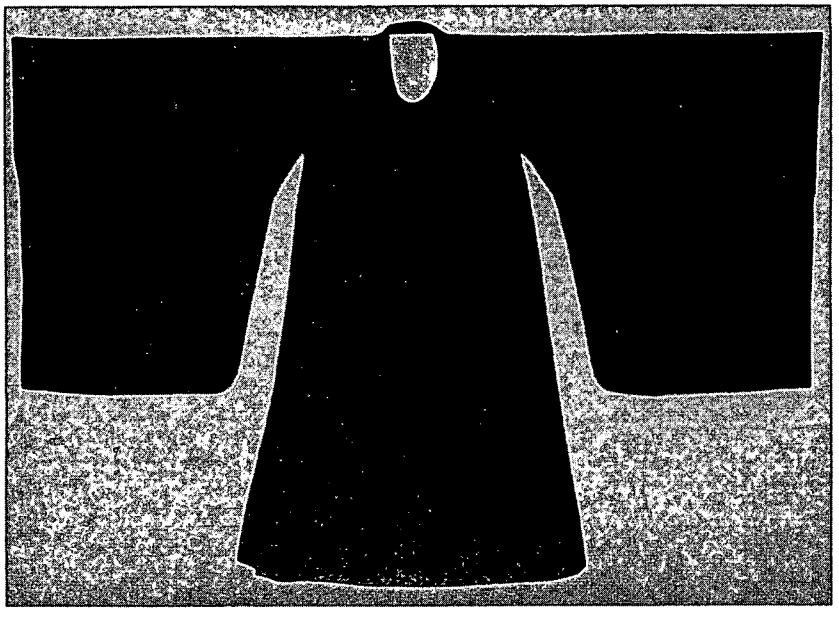

〈그림 2-7-②〉 圍 領



〈그림 2-7-③〉 也字帶의 착용도
(『중국고대복식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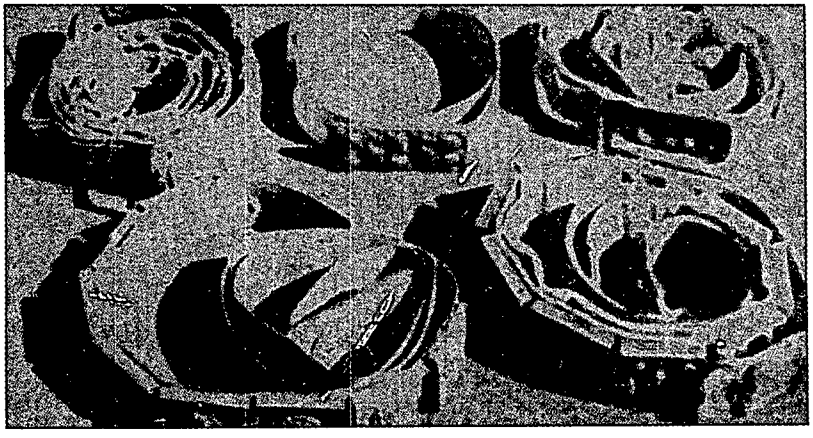

〈그림 2-7-④〉 太師廟의 也字帶 (『문화재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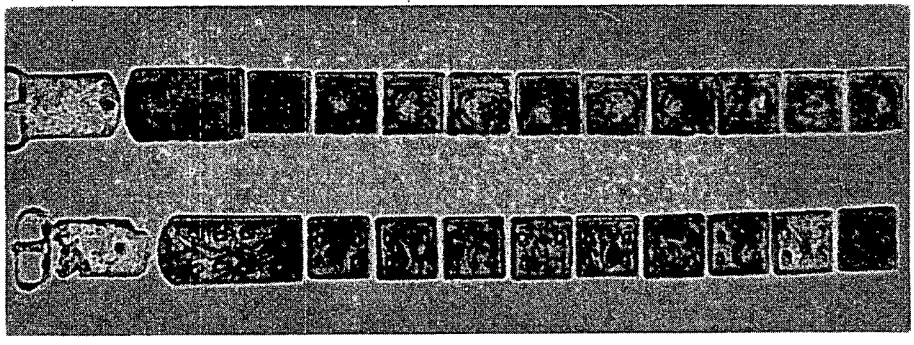

〈그림 2-7-⑤〉 金銅銙帶의 銙版(『한국장신구미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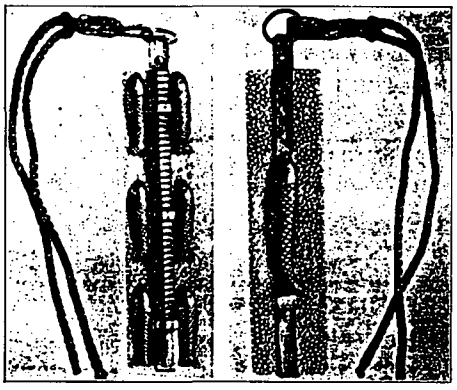

〈그림 2-7-⑥〉 어 대(『한국장신구미술연구』)



〈그림 2-7-⑦〉 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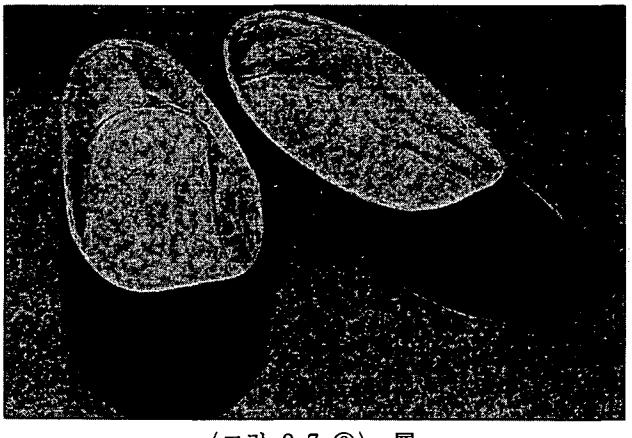

〈그림 2-7-⑧〉 履

〈그림 2-7〉 公服과 그 부속품

(4) 常 服(勤務服)

상복은 문무관 평상 집무시에 착용하였다. 상복에 대해서는 뚜렷이 문헌에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공복 그대로 통용하였으리라고 본다. 이는 송(宋)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송사(宋史) 여복지에는 '公服從省 謂之常服'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공복(公服)과 상복(常服)을 통용(通用)한 것을 알 수 있다. 명사(明史) 여복지에서도 홍무(洪武) 26년 문무백관의 관복을 정하기 전(前) 잠정적으로 '상조시사(常朝視事)에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흑단령(黑團領)을 착용하였고 여기에 속대(束帶)를 함으로써 공복을 삼으니'[74]라는 기록으로 볼 때 명(明)에서도 복제의 제정이 있기까지 통용하였으니 고려에서도 공복과 상복을 통용했던 것이다.

『고려사』 여복지 관복통제조(冠服通制條)에는 성종 8년 3월에 비로소 동서북면(東西北面) 병마사(兵馬使)는 옥대(玉帶)에 자금(紫襟)을, 병마부사(兵馬副使)는 자의(紫衣)에 대검(帶劒)하도록 정하였다라는 기록과 덕종(德宗) 3년 정월에 조(詔)하여 백관이 아문(衙門)에서 직무할 때 자의(紫衣)로 상복(常服)함은 사무(事務)에 무리하니 만약 호종(扈從)할 때가 아니면 조삼(皀衫)을 착용하도록 하였다.[75] 위의 관복통제에 있는 기록으로 보아 공복인 자색포로 상복도 겸하여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덕종대에는 조삼으로 바꾸어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조삼의 형태는 단령포가 아닌 국제(國制)인 것으로 추측된다.

『명사(明史)』 여복지에서는 홍무(洪武) 26년 문무관 관복을 정하기 전 동왕 3년에 잠정적으로 상조시사(常朝視事)에 오사모(烏紗帽), 흑단령(黑團領)을 착용하도록 하고 속대(束帶)를 함으로써 공복으로 삼았다[76]는 기록으로 보아 공복을 상복으로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왕 13년 3월에 명제(明制)의 공복으로 바꾸었을 때에도 공복으로 통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상복은 사모(紗帽), 단령(團領), 혁대(革帶) 이외에 흉배(胸背)를 더하여 공복과 구별하였다.

---

74) 『大明會典』 卷志61, 禮部19, 冠服2, 文武官 冠服, 常服條.
75) 『高麗史』 志 卷第26, 冠服通制條.
76) 『大明會典』 卷志61, 禮部19, 冠服2, 文武官服 常服條.



〈그림 2-8〉 李兆年(1269~1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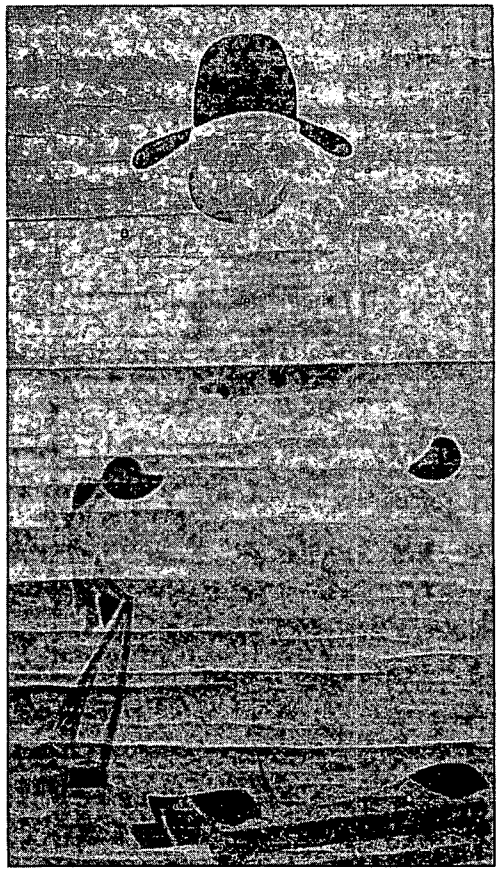

〈그림 2-9〉 李 穡(1328~1396)

나. 甲 冑

고려시대의 갑주에 대해서 문헌이나 유물이 적어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문헌의 기록으로는 『고려도경』의 장위조(仗衛條)에서는 중국 사신을 맞는 군사의 복식이 극히 일부 기록되어 있고, 『고려사』 장위조에서도 많은 수의 장교와 군사가 착용하고 있지만 종류는 극히 적은 수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복식은 의장복 차림이지만 일반 군사나 장교가 착용한 갑주는 전투복에서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고찰하였다.

그간 고려의 군복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 하면 고려 전기에는 숭문비무사상이 만연했고 고려 중기에는 사병(私兵)의 강화로 인하여 갑옷

의 제작은 침체되었다고 보아 왔기 때문이다.[77] 그러나 이 이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의장복과 전투복을 구별하지 못한 오류에서 온 결과이다. 그러나 고려는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대외관계를 볼 때 당시 전투력이 강했던 거란, 여진, 원과의 교역에서 무기와 갑주가 주요 품목이었고, 그들의 전술과 군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아 갑주도 발달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갑주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적지만 문헌의 기록과 유물을 통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文獻을 통해 본 甲冑

고려시대의 전투복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갑주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려사』 1 세가(世家) 태조(太祖) 즉위년 6월 부인(夫人) 유씨(柳氏)가 손수 갑옷을 만들어 태조에게 입혔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 성종(成宗) 세가(世家) 3년에 군인의 복색이 정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갑주의 형태와 색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복색이 부대에 따라 구별한 것을 알 수 있다.[78]

고려시대의 갑주가 발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사항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관청을 설치하여 갑주를 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가 그만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갑주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목종대(穆宗代)에 군기감(軍機監)을 설치하여 전문 기술인력들에 의해 무기와 갑주를 제작하는 공정이 분업에 의해 이루어져[79]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갑주를 제작하였다.

또한 고려는 각종 무기와 갑주를 생산하여 중국과의 관영무역(官營貿易)에 이용하였다. 고려의 2대 혜종(惠宗) 2년(945)에는 왕의 책봉을 축하하기 위해 진(晋)에 보낸 물품 중에 갑주와 무기가 속해 있음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때의 물품 중에는 금성피갑(金星皮甲), 계금은성피갑(罽錦銀星皮甲), 계금은련두무(罽金銀鍊兜鍪), 모직(毛織)으로 된 경갑(脛甲), 각궁(角弓), 모직(毛織) 활전대〔氈袋〕, 화살통,

---

77) 金東旭, 1963 「李朝前期服飾研究」 『增補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p. 215 ; 李美那, 1983 「甲冑에 대한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p. 12 ; 白英子, 『우리나라 鹵簿儀衛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 74.

78) 『高麗圖經』 11卷, 仗衛1.
"無營屯之居 唯給使於公 以衣服爲別而已"

79) 陸軍本部, 앞의 책, p. 32.

검[80] 등이다. 고려에서 위의 갑옷과 무기를 실제 사용하였는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고려의 우수한 무기 및 갑주 제조기술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려사』 의위조(儀衛條)에서 보이는 갑옷은 군사들이 제복(制服)으로 착용한 의장용 갑주였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군사가 착용했던 갑옷으로 보아 당시의 갑옷과 근사했을 것이다. 범법가위장조(凡法駕衛仗條)에서는 장교와 군사가 착용한 갑옷의 종류는 장자색갑(長紫色甲), 철갑(鐵甲), 피갑(皮甲), 백갑의(白甲衣), 자갑(紫甲), 주갑(朱甲), 자갑의(紫甲衣)가 있는데, 위의 기록과 같은 갑옷의 종류가 아닌 갑주를 착용한 군사가 많은 기록이 있어 위의 종류와 다른 갑옷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1]

상원연등조(上元燃燈條)에서도 철갑, 백갑(白甲), 주갑(朱甲), 자갑(紫甲), 피갑(皮甲)을 착용하였고 많은 군사와 반사(班士)가 상기(上記)한 갑옷이 아닌 다른 갑옷을 착용한 기록이 있어 어떤 일반화된 갑옷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서 보이는 갑주의 종류 및 착용자 인원수는 〈표 2-2〉와 같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갑주형태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있는데, 갑옷은 아래위가 붙어서 그 제도는 봉액(逢掖)과 같은데 그 형상이 괴이하다고[82] 되어 있다.

봉액에 대해서는 '포의 모양과 한 가지이다'라고 동서(同書)의 주(註)에 설명되어 있고,[83] 『금사(金史』에는 '좁은 소매에 둥근 깃인데 길이는 정강이에 이르는 포(袍)로서 여진의 상복(常服)이다'라고[84] 기록되어 있어 포형(袍形) 갑옷으로 추측된다. 이런 포형(袍形) 갑주양식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착용했던 유고제(襦袴制)나 유상제(襦裳制)의 갑주양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려도경』을 기록한 시기는 인종(仁宗) 1년(1123)으로 이때는 고려가 송과 공식적인 수교가 끝나고 거란과도 40년간의 국교도 끝난 때이며 여진의 영향을 받고 있는 100년간의 국교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이들 송, 거란, 여진 이들 3국의 갑주양식은 유상제(襦裳制)로 고려의 포형갑주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형태로

---

80) 『高麗史』 世家2, 惠宗.
81) 『高麗史』 志 卷第26, 儀衛條, 凡法駕衛仗條.
82) 徐兢, 『高麗圖經』 卷11, 仗衛1.
"鎧甲上下連續制如逢掖形狀詭異"
83) 위의 책, 卷11, 仗衛1.
84) 『金史』 卷43, 第24, 與服下, 衣服通制.

고려의 갑주가 이들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국가의 갑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대의 갑주양식은 『무경총요(武經總要)』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두무(頭鍪)와 목가리개인 두무돈항(頭鍪頓項)이 있고 갑신(甲身)에는 엄박(掩膊), 신갑(身甲), 흉갑(胸甲)이라 칭하는 몇몇 부분이 있는 유상제이다.[85]

거란(契丹)의 전투복양식은 유물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금도철갑(金鍍鐵甲)과 은도철갑(銀鍍鐵甲)을 입었고 보통 초모초구충갑(貂帽貂裘衷甲)을 착용하였다.[86] 고륜기(庫倫旗) 1호분묘 벽화 양벽 외측에 그려져 있는 문신(門神)이 착용한 갑주는 의장복 차림의 양당개(裲襠鎧)이다.[87]

여진과 몽골은 고려가 포형갑주를 착용한 이후에 이들과의 국교가 있었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이들의 갑주양식을 보면, 여진은 유상제 갑옷과 유고제 갑옷이 공존하고 있다.[88] 처음에는 병기만 있고 투구와 갑옷은 없었는데, 후에 요(遼)를 배반해 도망한 자로부터 500개의 철갑(鐵甲)을 얻으면서 점차 갑주를 구비하게 되었다. 금의 갑옷은 단지 반신(半身)이고 그 아래는 곧 호슬(護膝 : 주름장식)이 있다. 금의 전술은 기병(騎兵)과 금장중갑(金裝重甲)을 사용했고 백전립(白氈笠)을 쓴 자도 있었다. 갑옷에는 홍용갑(紅茸甲)·청용갑(靑茸甲)·자용갑(紫茸甲)·황용갑(黃茸甲)이 있는데, 상술(上述)한 색깔의 실로 철편(鐵片)이나 가죽끈을 연결하였다. 병졸의 용면갑(用綿甲)은 사(絲)로 된 전포(戰袍)이다.[89]

몽골의 갑주양식에는 유상제 갑옷과 포형 갑옷이 있다.[90] 원대의 초기 갑주는 지극히 정교하였는데 유엽갑(柳葉甲)과 철라권갑(鐵羅圈甲)이 있었다. 피득보궁(彼得堡宮) 안에 갑주가 보관되어 있는데, 속은 모두 우피(牛皮)로 제작하였고 밖은 전부 철갑(銕甲)으로 되어 있고 갑편(甲片)은 물고기 비늘처럼 서로 연결하여 화살이 관통할 수 없다. 몽골병졸은 대개 투구를 썼는데, 철회는 눈썹가리개가 없고 다만 코부분에 극히 큰 코 보조개가 달린 주(冑)가 있었으며 그 형태가 매우 기이

85) 앞의 책, p. 299.
"書中見之 有頭鍪 頭鍪頓項 甲身有披膊或掩膊 身甲 胸甲幾個部分"
86) 周錫保, 1986 『中國古代服飾史』 丹靑圖書有限公司, p. 353.
87) 任明美, 1992 『蒙古服飾』 耕春社, pp. 220~221.
88) 周錫保, 앞의 책, p. 373.
89) 위의 책, p. 363.
90) 黃互根, 『韓國裝身具美術硏究』 一志社, p. 292 ; 周錫保, 앞의 책, pp. 394~397.

하다.[91]

갑주양식은 전술과 매우 관계가 깊다. 고구려는 기마전이 주요 전술이었기 때문에 고분벽화를 통해 볼 때 유고제(襦袴制) 갑옷을 사용하였으며, 신라는 처음부터 보병전위주의 전투를 수행하여 유상제(襦裳制) 갑옷이었다. 고려도 처음에는 보병전을 하였고 신라의 갑주양식에 영향을 받아 유상제 갑주였을 것이나, 북방민족의 기마전에 대응한 기마전법으로 전환하면서 활동하기 좋고 제작하기에도 간편한 포형 갑옷을 창조했을 것이다.

즉, 고구려의 기마전에는 접근전법으로 철찰갑(鐵札甲)으로 중무장하였고 고려시대에 와서 화약무기가 발달하면서 좀더 가벼운 철찰편이나 가죽찰편을 동부(胴部)와 상박부에 부착하기에는 유고제 갑주형보다는 포형 갑옷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포형갑옷은 전술의 변천에 따라 발달된 전투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져 한국의 대표적인 갑옷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포형의 갑옷은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 때 입은 갑주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10〉 宋代의 鎧甲武士(敦煌莫高窟 55窟 : 『中華服飾圖錄』)

91) 黃互根, 위의 책, p.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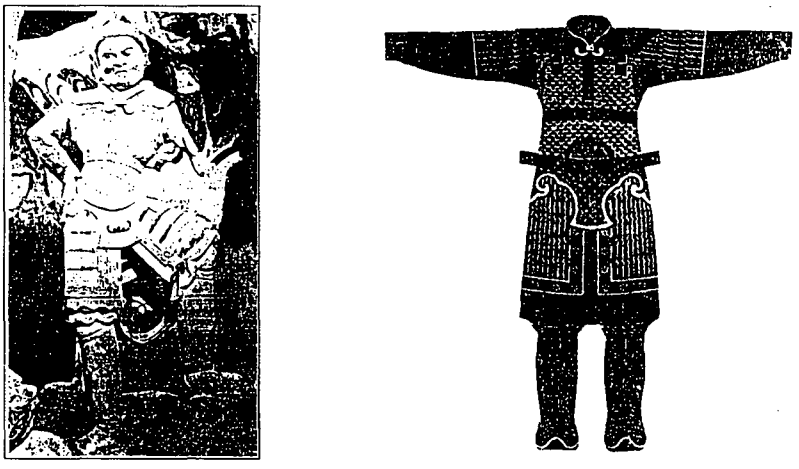

〈그림 2-11〉 宋代의 『武經總要』의 갑주(『중국고대복식연구』)



〈그림 2-12〉 요의 갑주
(庫倫旗 1호분묘 벽화북벽
門神 ; 『몽고복식』)



〈그림 2-13〉 금의 甲冑(續資治通鑑과 24孝
그림 중의 갑주 : 『중국고대복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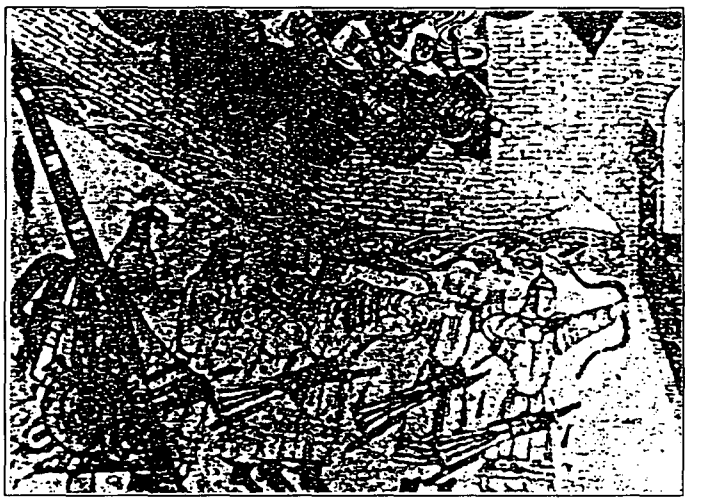

〈그림 2-14〉 蒙古의 袍形 갑옷과 투구(『한국장신구미술연구』)



〈그림 2-15〉 몽골의 札甲騎士와 板甲騎士(『중국고대복식사』)

(2) 遺物을 통해 본 甲冑



〈그림 2-16〉 몽골의 襦袴制 갑옷과 투구
(『한국장신구미술연구』)

유물로 남아 있는 갑주는 현존하는 정지(鄭地) 장군의 경번갑(鏡幡甲)과 철제투구 2점이 있고,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일본을 공략하는 전투도(戰鬪圖)인 「여몽습래도(麗蒙襲來圖)」가 고작이다. 유물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 鄭地(1347～1391) 將軍의 鏡幡甲

이 경번갑은 보물 336호로 지정되어 광주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지 장군은 우왕(禑王) 14년(1388) 양광(楊廣), 전라, 경상도 도절제체찰사(都節制體察使)가 되어 왜구를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운 무장으로, 이 갑옷은 왜구와의 전투에서 직접 착용했던 갑옷으로 후손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고복남(高福男)씨는 이 경번갑이 몽골의 갑옷이라고 단정하면서, 같은 형태의 갑옷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피트 리버 박물관에 10벌 소장되어 있다고[92] 주장했는데, 당시 정지 장군은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공략하고자 출정(出征)한 바가 있어 그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겠다.

경번갑의 구성을 보면 철편과 철제고리를 연결하여 만든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으로 앞뒤가 막히고 반소매이다. 철편 1개당 길이는 가로 5～8.5cm, 세로 7.5～8cm로서 철편 주위에는 작은 구멍을 내고 직경 1cm의 고리를 계속 연결시켰는데 안팎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앞판은 6편을 상하로 연결하여 한 줄로 만든 것이 여섯 줄로 되어 있고 두 줄은 여밀 때 속으로 들어가 겉에서 보기에는 4줄만 보이게 되어 있다. 뒤판은 상하 7편을 한 줄로 하여 다섯 줄로 되어 있다. 앞판은 좌우로 갈

92) 高福南, 1986 『韓國傳統服飾史』 一潮閣, p. 423.

수록 철편수를 줄여서 4편씩 한 줄, 3편씩 두 줄을 연결하여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어깨에는 철편을 넣지 않고 고리만 연결하여 팔꿈치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팔놀림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깃과 목가리개 부분은 손상이 심해 완전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경번갑의 전체길이는 72cm로 둔부를 가릴 정도이고 소매위의 길이는 30cm, 소매밑의 길이는 22cm, 소매폭은 35cm이다. 총 철편수는 91개로 앞면이 36개, 뒷면은 35개, 옆면이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목부분은 확실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철환(鐵環)만으로 목둘레를 보호하고 있다.

나) 鐵製冑

1) 伏鉢形 鐵製冑[93]

이 투구는 1981년 압수된 유물이기 때문에 발굴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 투구의 재료는 철제로서 그 기법이나 형태로 보아 여말(麗末) 제품으로 추산된다.

투구의 정개(頂蓋)는 철판을 둥글려 위는 평면이 되게 하고 밑은 퍼지면서 발부(鉢部) 상단과 겹쳐 네 군데에 두정(頭釘)으로 박았다. 투구 꼭대기는 1.3cm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간주를 세우고 장식했던 것 같다. 발부(鉢部)는 4개의 철판을 구부려 맞대었는데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복발형(伏鉢形)이며, 철판을 맞물린 전후좌우에는 철근을 대고 좌우에 두정으로 고정하였다. 전후좌우에 덧댄 철근의 중앙은 돌기선(突起線)이 양출(陽出)되었다. 해가리개와 목가리개는 손실되고 없으나 좌우 귀에서 수미부(首尾部)에 이르는 사이에 두정(頭頂) 10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목가리개를 첨부했다고 본다. 이마 가리개는 남아 있는데 운두가 높은 편이다.

2) 蒙古冑

이 투구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발굴되고 있다. 투구의 형태는 8개의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전후좌우의 4판은 화두형(火頭形) 철판을 덧대었고 안에 받쳐진 철판은 설형(舌形)으로 밑대어 정(釘)으로 고정

93) 李康七, 1987『韓國의 甲冑』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 93.

시켰다. 투구의 정개(頂蓋)는 4엽형(四葉形) 철판으로 덮여 있는데 간주는 없다.

투구 앞 하단에는 반달형의 해가리개가 첨부되어 있다. 목가리개는 우리나라의 것은 손상되어 없으나 일본의 몽고주(蒙古冑)를 견주어 볼 때 미각방형(未角方形)의 철소찰(鐵小札)을 상하 4단으로 연결한 목가리개가 좌우와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다) 蒙古襲來圖

충렬왕 1년(1247) 10월과 충렬왕 7년(1281) 5월 두 차례에 걸친 전투 현황을 그린 것으로, 1차는 10월이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한 갑주이며 2차는 하절에 대비한 갑주를 착용한 것을 회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왜장 죽기계장(竹岐季長)이 그의 전공상황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그리게 한 것인데, 이들은 여몽연합군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작가(作家)라고 한다.[94] 따라서 이 화사(畫詞)가 사실 그대로라고 볼 수 없지만 왜장의 권유에 의해 그렸기 때문에 그 윤곽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가 일본을 원정할 때 원은 고려에 군량미와 함선 및 군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여 1차 출정 때에는 고려군 8,000명이 동원되었고 2차 출정 때에는 정군(正軍) 10,000명과 많은 병기가 동원되었으니 고려의 군사들은 본국의 갑주를 착용하고 원정하였을 것이다.[95] 그런데 충렬왕 7년 2월에는 정동군(征東軍)의 고려주장(高麗主將) 김방경(金方慶)이 하정사(賀正使)로 연경(燕京)에 갔을 때, 원(元)의 세조(世祖)로부터 백우갑(白羽甲)을 비롯한 궁시(弓矢), 검(劒), 갑주 100령(領), 반오(絆襖) 200벌을 지급받아 정정(征正)하는 고려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96] 본 연구에서는 일단 고려의 갑주로 보고 고찰하였다. 「몽고습래도」에서 보이는 갑주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騎兵中 弓箭手

투구는 복발형(伏鉢形)이나 아래가 많이 퍼져 있다. 앞에는 해가리개를 부착하고, 투구 아래에 부착한 목가리개는 장방형의 소찰로 되어 있는데 뒤쪽은 어깨 아

94) 위의 책, p. 82.
95) 朴龍雲, 『高麗時代史』 下, 一志社, pp. 594~596.
96) 『高麗史節要』 卷第70 忠烈王 7年 辛巳 2月條.

래까지 앞은 턱과 앞목을 감싸고 있다. 동갑(胴甲)도 장방형의 소찰로 된 소찰갑(小札甲)이며 둔부선(臀部腺)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상박갑(上膊甲)과 굉갑(肱甲)은 하지 않았다. 같은 장방형 소찰로 된 상갑(裳甲)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도록 입었다. 왼손에는 활을 잡고 전통(箭筒)은 오른쪽 허리에 찼다. 『고려사』에서 보이는 철갑이나 백갑의(白甲衣) 혹은 『고려사절요』에서 보인 백우갑(白羽甲)은 이와 같은 갑옷이 아닌가 추측된다(그림 2-18).

2) 騎兵中 槍手

겨울용 갑주로 투구는 아래가 터진 복발형이고 투구의 아래로 연결된 목가리개는 수미부(首尾部)와 어깨 위를 감싸고 있으며 앞턱 아래에서 여미어 목부분을 완전히 감싸 경갑(頸甲)을 대신하고 있다. 갑옷은 솜을 넣은 것 같은 두툼한 감을 주는 포형(袍形)으로 좁은 소매이고 왼쪽으로 길게 여미고 허리에 가는 끈으로 묶었으며, 길이는 무릎 아래 정강이 정도 미친다. 말을 탔지만 포의 옆선에 트임을 주지 않았다(그림 2-18).

3) 步兵中 弓箭手

방한용 갑주를 착용하고 힘껏 활을 당기고 있는 궁전수를 고찰해 보면, 투구는 이마와 볼 부분에 털 장식을 하였는데 그림으로는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고, 다만 머리와 귀, 수미부까지 가린 초모(貂帽)를 쓰고 있다.

갑옷은 전형적인 포의 형태이다. 깃은 깃고대에서 파지 않고 그대로 젖힌 번령(翻領)이고 좁은 소매는 손목까지 오며 길이는 무릎 정도까지이나 활동성을 고려하여 치마폭을 넓혔다. 갑옷은 왼쪽으로 깊숙이 여미었으며 허리에는 가는 띠로 묶었다. 갑옷을 착장한 형태는 두툼하고 가로로 규칙적인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솜을 넣은 면갑(綿甲)이거나 두정갑(頭頂甲)으로 추측된다. 아래는 바지를 입었고 무릎을 매어 활동적으로 하였으며 경갑(脛甲) 대신 무릎 아래까지 오는 목이 긴 장화를 신었다(그림 2-17).

하절용 갑주를 착용하고 있는 궁전수는 철포(鐵砲)를 발사하고 있는데, 투구는 초모를 쓰고 있고 갑옷은 포형인데 아래는 바지를 입고 긴 장화를 신었다. 횡선이 표시되지 않고 매우 가벼운 감을 주는 것으로 보아 간단한 포제(布製)인 것으로 보인다.

4) 步兵中 槍手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보이는 반오갑(絆襖甲)은 솜을 둔 면갑의 이명(異名)으로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시대적으로 격차가 있지만 『고려도경』의 저자는 갑옷의 형태는 아래위가 붙어 있어 봉액(逢掖)과 같다 하였는데, 봉액은 포형(袍形)을 말하는 것으로 〈그림 2-18〉에서 보는 갑옷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고려시대의 갑주에 대하여 문헌과 유물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간 고려시대의 갑주는 숭문비무사상과 사병의 강화로 침체되었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문헌과 유물이 비록 적더라도 외교관계를 통해 볼 때 요(遼), 금(金), 원(元)으로부터 무기와 갑주를 수입한 기록과 군기감(軍機監)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분업에 의해 갑옷을 만든 기록과 갑옷을 중국의 관영무역(官營貿易)으로 이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발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갑옷의 종류는 철갑(鐵甲), 피갑(皮甲), 장자색갑(長紫色甲), 백갑의(白甲衣), 자갑(紫甲), 주갑(朱甲), 자갑의(紫甲衣), 백갑(白甲), 의백갑(衣白甲), 백철갑(白鐵甲)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갑옷의 구조적 특징은 알 수 없으나 갑옷의 명칭으로 보아 철, 가죽 , 천 등을 사용하였고, 색은 주색(朱色), 자색, 백색 등이 있다.

갑옷의 형태에 대해서는 인종조에 저술한 『고려도경』에 아래와 위가 붙은 봉액(逢掖)과 같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 중기에 이미 포형(袍形) 갑옷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포형갑옷은 충렬왕(1293)대의 「몽고습래도」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포형의 갑옷은 조선시대까지 계속 착용되어 한국 갑옷으로 정착되어 고려의 갑옷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려말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략할 때는 원의 세조로부터 백우갑(白羽甲)과 면오(綿襖)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중국의 제도에 따라 갑옷과 병기를 만들어 입기도 하였는데, 중국의 송조(宋朝)와 명조(明朝)에 따른 갑옷은 의장복으로 착용된 갑주로 석상이나 벽화 또는 탁본 등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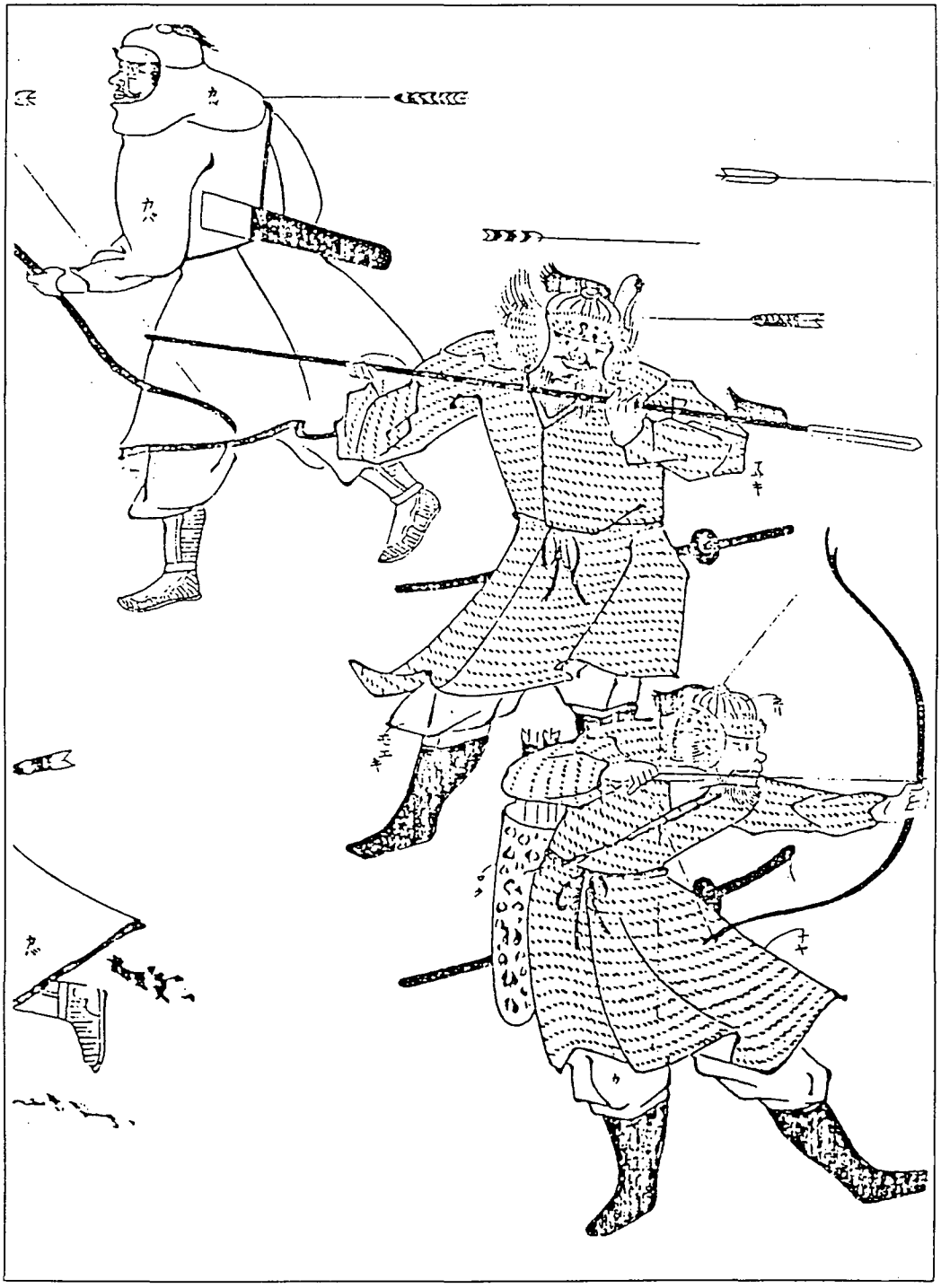

〈그림 2-17〉 蒙古襲來圖(『몽고의 갑주』)



〈그림 2-18〉 蒙古襲來圖(『몽고의 갑주』)

다. 儀 仗 服

(1) 文獻을 통해 본 儀仗服

『고려도경』 11·12권 장위조와 『고려사』 의종조의 위장복(衛仗服)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갑주는 극히 일부에서만 착용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복두를 쓰고 비단으로 만든 포(袍)를 착용하였다. 또한 갑주에 대한 기록이 극히 적고 유물도 적을 뿐 아니라 숭문비무사상이 만연했던 고려사회로 볼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고려의 갑주는 침체되었다고 보아왔다. 이것은 의장복(儀仗服)을 전투복으로 본 착오 때문이다. 상기(上記)한 저서의 장위조와 위장복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전투복이 아닌 노부의위복(鹵簿儀衛服)이거나 의장복(儀仗服)이다.

즉, 『고려사』 여복지 의장조에는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 때에 내외(內外)의 의장(儀仗)이 있는데 대관전(大觀殿)의 조회(朝會), 절목(節目), 정월(正月), 동지(冬至), 하례(賀禮)에 전정(殿庭)에 있는 사람들의 복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범법가위장(凡法駕衛仗), 상원연등(上元燃燈), 사동팔관회(使冬八關會), 간악전(看樂殿)에 거둥하는 위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97] 이것은 왕과 함께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무관의 노부복식(鹵簿服飾)으로 예복으로 보아야 한다. 노부는 국사대사전에는 임금이 거둥할 때의 의장(儀仗)이라고 하였고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의장을 갖춘 국왕 거둥 때의 행렬이라고 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의위(儀衛)나 노부에 동원된 사람은 왕을 호위하기 위한 보병, 기병의 호위 군사대열과 여러 가지 의장기(儀仗旗)와 의장물(儀仗物)을 든 의장병들, 문관들, 고취군악대(鼓吹軍樂隊)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배종인(陪從人)들 중에서 특히 군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문관은 거의 생략되어 있다.[98]

『고려사』의 의장조(儀仗條)에서 보이는 복식은 머리에는 절각복두(折脚幞頭), 전각복두(前脚幞頭), 교각복두(交脚幞頭), 피변(皮弁), 두건(頭巾)을 썼고 의(衣)는 자문라포(紫文羅袍), 구문금포(毬文錦袍), 홍문라포(紅文羅袍), 자관수삼(紫寬袖衫),

97) 『高麗史』 志 卷第26, 儀衛. 朝會儀仗條 ; 法駕儀仗條 ; 燃燈儀仗條 ; 八關儀仗條 ; 西南點巡條 ; 幸衛仗條 ; 奉迎衛仗條 ; 宣赦儀仗條.
98) 白英子, 1985, 앞의 책, p. 58.

자라전포(紫羅戰袍), 청포착의(靑布窄衣), 자착의(紫窄衣) 등을 입고 있고 의물(儀物)은 대부분 의장기(儀仗旗)를 들고 있다. 의종조에 나오는 상장군(上將軍), 천우대장군(千牛大將軍)을 비롯한 장군과 군사들의 옷차림을 간단히 도표화하면 〈표 2-2〉와 같다.

또 『고려도경』 장위조(仗衛條)에서 보이는 복장과 의물(儀物)이나 직책을 볼 때 외국의 사신인 서긍을 맞는 예복이다. 고려시대의 의장복과 직책을 『고려도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제11권 장위조(仗衛條)의 군복식은 다음과 같다.[99]

・龍虎左右親衛旗頭

구문금포(毬文錦袍 : 環狀무늬가 있는 비단 도포)를 입고 도금한 띠를 띠며 전각복두(展脚幞頭 : 후면에 좌우 양뿔이 있는 것)를 쓴다. 중앙군 2군 6위 중의 하나로 국왕 행차에 호가(扈駕), 외국사신의 송영(送迎) 등을 비롯한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군위(軍衛)의 대장으로 말을 타고 앞서서 사자(使者 : 중국 사신)를 인도한다.

・神虎左右親衛軍將

구문금포를 입고 도금한 띠를 띠며 절각복두(折脚幞頭 : 帽頭의 두 뿔을 꺾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조금 굽게 구부린 것)에 금화로 장식하였다. 중앙군으로 왕이 출입할 때 우선(羽扇)과 금월(金鉞)을 잡고 시종한다.

・神虎左右親衛軍

구문금포에 도금한 띠를 띠며 금화대모(金花大帽 : 전통관모인 弁의 遺像으로 금화로 장식한 큰 모자)를 썼는데 붉은 띠를 더하여 턱 아래 맨 것으로 갓끈 등속과 같다. 왕의 행차 호가(扈駕), 외국사신의 송영 등을 비롯한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국방상비군이다.[100]

・興衛左右親衛軍

붉은 무늬의 비단(紅文羅袍)을 입었는데, 옷깃에 점점이 오색 모양의 꽃송이로 장식하였으며 금화대모를 쓰고 흑서속대(黑犀束帶)를 띠었고, 평상시에는 보라색 모자를 썼는데 금식(金飾)이 없다. 중앙군 중 세 번째 군단으로 대선(大扇)과 곡

99) 『高麗圖經』 卷第11, 仗衛1.
100)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5卷, p. 763.

개(曲蓋 : 日傘)를 잡고 호종한다.

• 上六軍左右衛將軍

갑옷과 투구를 입었는데 검은 가죽 사이에 쇠로써 무늬를 만들고 무늬 있는 비단으로 꿰매어 붙어 있게 하였다. 허리 아래에는 10개의 띠를 드리웠는데 오색 수놓은 꽃무늬로 장식하였고 왼쪽에는 칼과 활을 찼다. 천자에게 수조(受詔 : 천자의 조서를 받는 것)를 하거나 배표(拜表)하는 날에 궁전문에 서 있는 역할을 한다.

• 上六軍衛中檢郎將

평상복은 보라색 옷〔紫衣〕과 복두를 쓰고 대례(大禮 : 국경의례)와 재제(齋祭 : 불교의식과 유교의식), 수조, 배표에는 갑주를 입고 나오는데 투구를 쓰지 않고 등에 진다. 그리고 구슬로 장식한 보라색 무늬가 있고 비단견〔紫文羅巾〕을 썼다. 왼쪽에는 활과 칼을 차고 손에는 탄궁을 들었다. 왕궁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보직을 주어 왕이 이들의 힘을 입어 내외를 보전하고 막는 역할을 한다. 대례(大禮)와 재제(齋祭), 수표에 갑옷을 입고 나와 시위를 당겨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시킨다.

• 龍虎中猛軍

푸른 베로 만든 좁은 저고리〔靑布窄衣〕와 흰 모시로 만든 좁은 바지를 입고 다시 투구와 갑옷을 덧입었는데 오직 복박(覆膊)만이 없다. 투구는 머리에 쓰지 않고 등에 지고 다닌다. 부(府)에 모일 때와 유관(遊觀)할 때에는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지 않는다. 고려 2군 6위의 하나인 경군으로 개경의 치안에 주임무를 담당하는 군단으로 수조(受詔)하고 배표(拜表)할 때 의장군 뒤에서 길을 끼고 전진한다.

• 金吾仗衛軍

자색의 넓은 소매의 적삼〔紫寬袖衫〕을 입었으며 복두를 말아 썼는데 '幞頭以彩上束'이라 함은 색동으로 위를 묶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脚)을 위에서 교차(交叉)시킨 교각복두(交脚幞頭)라고 생각한다. 색동은 각각 그 방위의 빛깔을 따라 한 방위가 한 대(隊)가 되고 한 대(隊)가 한 빛깔이 되며 간간이 둥근 수를 수놓아 장식하였다. 중국에서 교각복두는 하위층에서 착용하였다. 의장의 하나인 번개(幡蓋) 등 의물(儀物)을 들고 창합문(閶闔門) 밖에 서 있는 역할을 한다.

・控鶴軍

자문라포(紫文羅袍)를 입었는데 오색으로 간간이 크고 둥근 꽃을 수놓아 장식하였고 절각복두를 썼다. 조여(詔輿 : 조서를 실은 가마)를 받들며 왕이나 사신이 사사로이 보러 왕래할 때는 상비(箱篚 : 상자와 그릇)를 받든다.

『고려도경』 제12권의 장위조(仗衛條)의 군복식은 다음과 같다.[101]

・千牛左右仗衛軍

붉은 착의〔緋窄衣〕를 입고 피변(皮弁 : 가죽으로 만든 고깔)을 썼으며 검은 뿔로 만든 띠(黑角束帶)를 띠었다. 허리에는 두 쪽의 옷가리개〔襜 : 腰甲〕가 있는데 짐승 무늬로 장식하였고 손에는 작은 창을 들었다. 중앙군인 경군(京軍) 중 6위의 하나로 임무는 왕을 시종하는 의장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102] 화극(畫戟 : 그림을 그려 넣은 창), 등장(鐙杖), 표미(豹尾) 등 의장물(儀仗物)을 드는 역할을 한다.

・神旗軍

가죽으로 머리를 덮었는데〔皮蒙首〕, 상부에 목비(木鼻)를 만들어 짐승의 이마 모양이 되게 한 것은 용맹스러움을 표시한 것이다. 붉은 저고리는 짧고 뒤에 짐승 무늬로 장식된 두 쪽의 옷가리개〔腰甲〕를 덧붙이고 있다.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하여 편성된 기병대로 구성된 별기군 중의 하나로 가장 핵심이 되는 군단이다.[103] 조서를 받을 때나 앞에 진열하여 오방대신기(五方大神旗 : 검정실로 된 旗幟)를 펼쳐 들고 한 수레에 10인(人)씩 탄다.

・龍虎上超軍

푸른 착의〔青布窄衣〕를 입고 문라두건(文羅頭巾 :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썼다. 앞깃과 등에 모두 단호(團虎 : 둥근 표시)가 있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지 않다. 관중(館中 : 사신이 머무는 객사)의 곁에서 순라(巡邏)하며 비상사태를 살피는 일을 담당한다.

---

101) 『高麗圖經』 卷第12, 仗衛2.
102)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1卷, p. 865.
103) 위의 책, 13卷, p. 689.

・龍虎下海軍

청포착의를 입었는데 맴도는 소리개를 누렇게 수놓았으며 붉은 가죽과 구리로 만든 장식을 띠고 붉은 채찍을 들었다. 순천문(順天門)의 수위(守衛)의 일을 맡는다.

・官府門衛校尉

자문라착의(紫文羅窄衣)를 입고 전각복두를 썼다. 군사의 계급을 총괄하며 왕부(王府)에 머무르면서 여러 문들을 수위한다.

・六軍散員旗頭

전각복두를 쓰고 자문라착의(紫文羅窄衣)에 속대를 띠고 가죽신을 신었다. 군중(軍中)의 총령자(總領者)로 기패(旗旆) 등 장위의물(仗衛儀物)을 들었다.

・左右衛牽攏軍

연작문금(練鵲文錦 : 까치 무늬가 든 누인 비단)이 있는 자색 착의를 입고 검은 깁〔烏紗〕을 연결하여 만든 연모(軟帽)를 쓰며 짚신을 신었다. 사부(使副 : 정사와 부사)와 상절관(上節官)에게만 있는데 말을 어거한다.

・領軍郎將騎兵

복식에 등급이 있어 고려 사람은 자색 비단 전포(紫羅戰袍)를 입고 흰 바지에 검은 짚신과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에 구슬로 장식하였고 거란의 항졸(降卒)은 청록긴사대화전포(青綠緊絲大花戰袍 : 청록색 총총한 실로 짠 옷감에 큰 무늬가 든 전포)를 입었으며, 바지는 자색, 황색, 검은색을 입었고 머리는 깎고 두건은 길지 않게 해서 머리에 딱 붙게 썼다. 사부(使副)가 왕부(王府)에서 봉선고(奉先庫)에서 돌아올 때 호위한다.

・領兵上騎將軍

자색 비단으로 된 착의〔紫羅窄衣〕를 입고 전각복두를 썼고, 오른쪽에는 활집을 띠고 왼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었다. 순천문의 외문(外門)에서 인사(人使)가 출입할 때 호위한다.

『고려도경』 권11과 권12의 장위조에서 보이는 의장복은 〈표 2-3〉과 같다. 『고려사』 여복지는 공양왕 2년 정월에는 '위위판사(衛尉判事) 이민도(李敏道)가 중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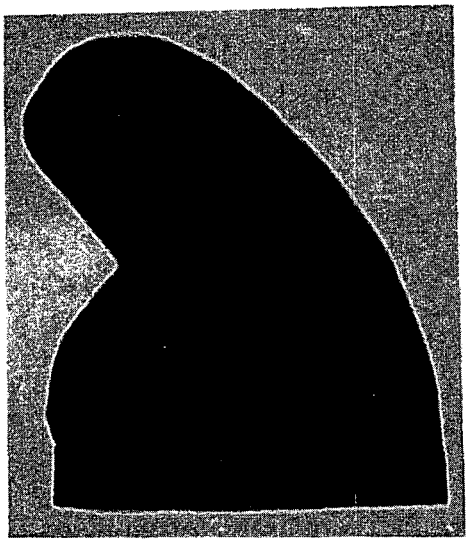

〈그림 2-19〉 文羅頭巾(『한국복식도감』)

제도를 모방하여 새 장문〔儀仗〕을 제정하였는데 특장인(特仗人)은 모두 청홍염포의(青紅染布衣)에 금문(錦紋)을 그려 입고 혹은 모자를 쓰고 입(笠)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사(宋史)』 여복지에는 청홍염포의(青紅染布衣)에 금문(錦紋)을 그려 넣은 기록이 있다. 즉 문무관이 입는 옷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금(錦 : 비단), 투(綉 : 무늬 있는 비단), 염〔印染 : 물들인 것〕, 채회(彩繪 : 그림을 그려 넣는 것) 등이 있다. 남송(南宋) 초년(初年)에 비로소 금지가 풀려서 의장대의 옷은 전부 염색한 무늬가 있는 것을 사용했는데, 무명이나 비단으로 만들어 비록 아름답고 장관이라 할지라도 실제 작전에는 쓸 수 없었다고 하였으니 의장복으로 착용된 갑옷임이 분명하다.



〈그림 2-20〉 青布窄衣(『한국복식도감』)

104) 沈從文, 中華民國 70年,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p. 336.

또 『송문(宋文)』 의위지(儀衛志)에는 갑기구장(甲騎具裝)의 갑(甲)은 무명으로 속을 삼고 황시(黃絁 : 황색의 거친 견직물)로 겉을 하며 청록(靑綠) 그림으로 갑(甲)무늬를 넣고 붉은 비단으로 단을 하고 청시(靑絁)로 아랫바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104]

고려는 중국으로부터 제복, 조복, 공복, 상복을 비롯하여 중국의 사신을 맞는 의례복이거나 국왕과 함께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노부복식(鹵簿服飾) 등 제도복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을 문헌과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록을 증명하는 유물이 있으니 공민왕(恭愍王)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정릉(正陵) 앞에 있는 무인(武人) 석상(石像)은 상갑(裳甲)에는 운문(雲紋)을 그리고 상각부(上却部)에는 구문(龜紋)을 그려 넣은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2) 遺物을 통해 본 儀仗服

가) 武人石像을 통해 본 甲冑

경기(京畿) 개성군(開城郡) 중서면(中西面)에 있는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정릉(正陵)에 있는 무인석상은 사진으로만 고찰할 수밖에 없으나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아 송의 갑주형태이다. 두 무인석상 중 왼쪽 석상을 보면 송대(宋代)의 전촉적두무(前蜀的兜鍪)와 흡사하다. 투구는 머리와 귀부분을 덮고 수미부(首尾部)는 높은 경갑(頸甲)으로 보강하였는데 투구의 정상은 간단한 장식을 하였다.

흉갑은 양당개(兩當鎧)로 하트(Hart)형이고, 앞뒤판은 어깨 양쪽에 넓은 끈으로 연결하였는데 어린갑(魚鱗甲)이 시문되어 있다. 양쪽 허리에는 요갑(腰甲)을 대었고 허리에는 넓은 허리띠를 띠었으며 허리 양옆에는 운문(雲紋)이 시문(施紋)되어 있는 상갑(裳甲)을 착장하였는데 모양은 앞은 둥글고 뒤는 모났다. 또 좌우 요갑(腰甲) 사이에는 배와 국부(局部)를 보호하는 복갑(腹甲)을 착장하였는데 어린갑이 시문되어 있다. 대퇴부에는 송대와 같은 경갑(脛甲)을 착용하였고 견갑(肩甲)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팔꿈치 아래는 굉갑(肱甲)을 하고 있다. 무인석상은 왼쪽 허리에는 패검(佩劍)을 하고 공수(拱手)를 하고 있다. 갑옷 속에는 넓은 포(袍)를 입어 상박부를 풍성하게 감싸고 그 길이는 매우 길어 발뒤꿈치에 이르고



〈그림 2-21〉 正陵 앞의 왼쪽 석상
(『조선고적도보』)

있고, 또 넓은 띠를 허리에서부터 길게 늘여 고를 매어 장식한 것은 전투복으로는 부적당하였을 것이다. 당시 고려와 중국과의 관계로 볼 때 왕릉에 세워진 무인석상의 복장은 전투복이 아닌 의장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른쪽에 세워진 무인석상을 보면 두 손에는 대도(大刀)를 잡고 서 있는데 투구는 같은 모양이고 갑옷 및 부속구도 거의 같다.

양당개(兩當鎧)인 흉갑(胸甲)과 대퇴갑(大腿甲)은 어린갑(魚鱗甲)이 아닌 방형(方形) 소찰이 시문되어 있고, 가슴에 댄 흉갑(胸甲) 위에는 가슴띠로 묶었다. 또 경갑(頸甲)으로 목과 쇄골부분을 보강했고 간단한 장식이 있는 견갑(肩甲)을 하고 있다. 좌우 대퇴갑 사이에는 따로 부속구를 차지 않았고 허리 아래에는 넓은 장식적인 띠를 길게 늘이고 있다. 중국의 당이나 송의 갑주를 보면 입어서 편리하고 외형은 아름다우나 실전에는 이용할 수 없어 의장대(儀仗隊)의 차림일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왕릉에 세워진 무인석상은 전투복이 아닌 의장대 차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仁宗謚冊 天部를 통해 본 의장복

인종시책(仁宗謚冊) 천부(天部)에서 탁본한 무장한 갑주의 양식은[105]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 정릉(正陵) 앞에 있는 무인의 갑옷 양식과 아주 유사하다. 탁본

105) 朝鮮總督府, 昭和6年 『朝鮮古蹟圖譜』 11, 景仁文化社.

이 분명치 않아 투구의 모양은 잘 알 수 없으나, 갑옷은 중국의 양식과 많이 유사하다. 가슴에는 명광갑(明光甲)을 붙인 양당개(兩當鎧)를 입고 있다.

'위진남북조시대(魏晋南北朝時代)에는 동이나 철로 거울처럼 빛나는 원호(圓護)를 흉부에 붙여 태양의 광명(光明)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명광갑은 『당서(唐書)』에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를 쳐서 명광갑 만령(萬領)을 얻었다는 기록과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27 백제본기(百濟本紀) 제5 무왕조(武王條)에 당(唐)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명광개로 만든 투구를 선사했다는 기록에서 이미 상대시대(上代時代)부터 명광갑을 착용했었다.

탁본에서 본 무인을 보면 목에는 경갑(頸甲)을 하였고 허리 양쪽에는 요갑(腰甲)을 착용하였고 요갑 아래에는 대퇴갑(大腿甲)을 착용하고 있는데 요갑과 대퇴갑은 방형문(方形紋)이 시문되어 있다. 하각부(下却部)에는 경갑(脛甲)을 하고 있으나 허리 아래 늘인 허리띠로 인하여 그 형태를 잘 알 수 없다. 갑옷 속의 포(袍)는 소매통이 매우 넓은 활수포(闊袖袍)인데 소매끝 자락을 묶어 장식하였다.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굉갑(肱甲)을 하였다. 이 차림도 갑주차림이지만 전투용 갑주가 아닌 의장복(儀仗服) 차림이다.

다) 浮石寺 祖師堂 벽화인 持國天王像을 통해 본 甲冑

부석사(浮石寺) 조사당(祖師堂)에 있는 지국천왕상(地國天王像)의 벽화를 보면 노국대공주(魯國大長公主)의 정릉(正陵) 앞에 있는 무인의 석상과 인종시책(仁宗諡冊) 천부(天部)에서 탁본한 무인의 갑주 양식과 비슷하다.

투구의 모양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발부(鉢部)는 머리를 감싸고 앞 이마에 채양이라기보다는 꽃으로 정교하게 장식하였고 투구의 수미부(首尾部)는 접어 올렸다. 목에는 경갑을 하였는데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보강하여 수미부를 보호하였다. 어깨에는 둥근 견갑(肩甲)을 하였는데 그림이 시문되어 있고 흉갑(胸甲)은 복잡하여 잘 알 수 없으나 어깨에서 띠를 묶은 양당개(兩當鎧)를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대퇴부(大腿部)까지 내려오는 상갑(裳甲)을 입었다. 상갑은 소찰로 되어 있지 않고 넓은 가죽 같고 그 위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상갑 아래는 주름을 잡은 넓은 프릴(fril) 장식을 하였고 하각부는 통가죽을 이중으로 한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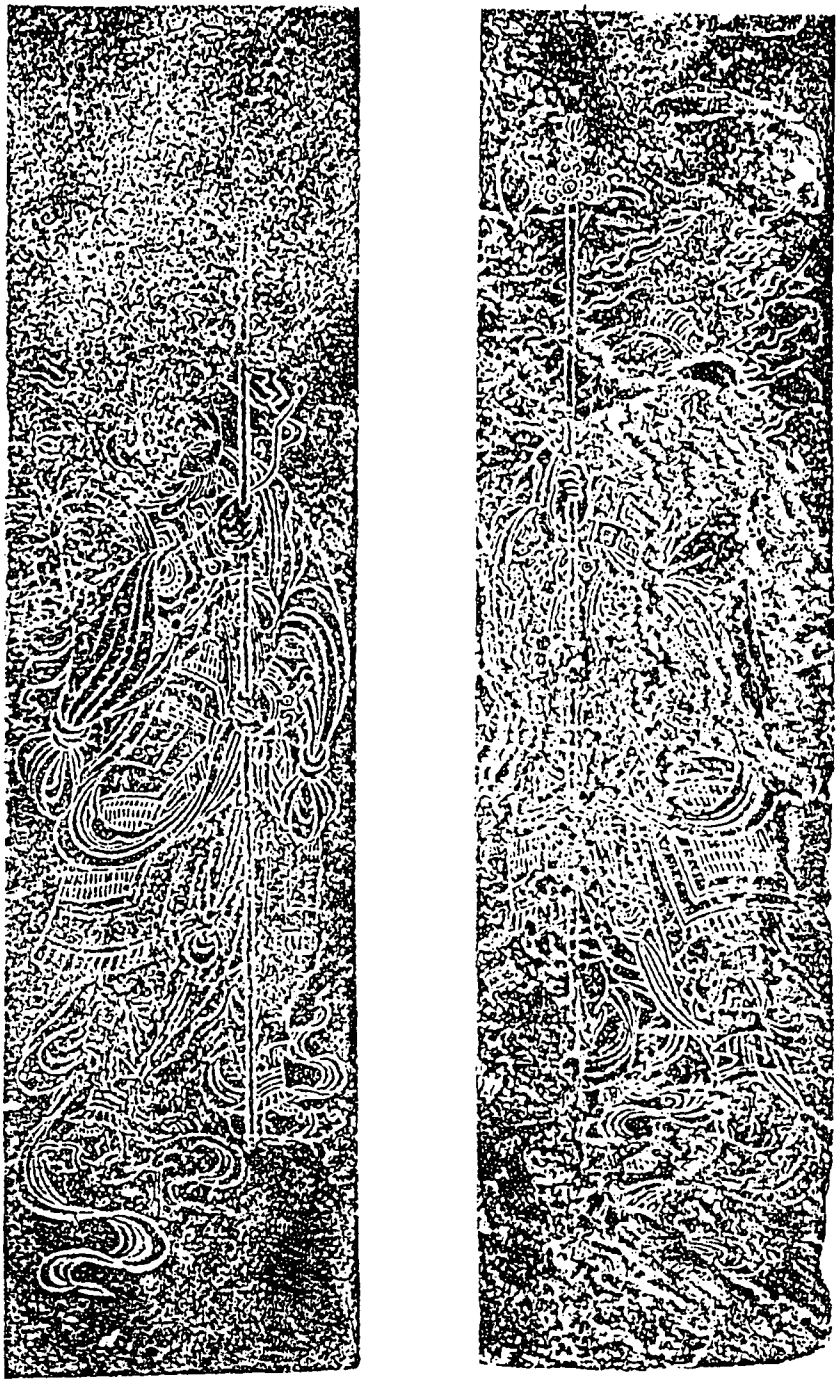

〈그림 2-22〉 仁宗謚册 天部의 甲冑(『조선고적도보』)

적인 경갑(脛甲)을 착용하고 있다. 신은 발목까지 오는 신을 신었는데 신발 밑창이 많이 올라와 있고 발의 중간과 발등과 뒤꿈치에서 이어 만든 가죽신인 것 같다. 이 벽화에서도 여러 개의 넓은 천으로 허리와 양 무릎 사이 그리고 어깨부분을 매우 화려하게 늘이고 있다. 팔의 상각부와 하각부는 부속갑(附屬甲)을 하지 않고 넓은 활수포(闊袖袍)를 늘이고 있고 포의 뒷자락은 땅에 끌려서 전투에 임하는 무사의 차림이라기보다는 실전에 이용할 수 없는 의장대(儀仗隊)의 차림으로 보인다. 오른손에는 긴 칼을 잡고 어깨에 올려 놓고 있으며, 왼손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둥글게 한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무사는 원숭이 위에 올라가 서 있는데 중국에서도 원숭이 등 짐승 위에 올라가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2-23〉 浮石寺 祖師堂 벽화의 持國天王像(『조선고적도보』)

〈표 2-1〉 高麗와 주변 諸國의 服色制 一覽表

任明美, 1993, 前揭書 p. 45.

王朝	時期	服色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9품 이하	典據
唐	武德4年 (AD 621) ①	紫			朱		黃					①舊唐書, 卷45, 志第25, 與服 ②唐會要, 卷31, 章服品 ③新唐書, 1124, 志第14, 車服 ④古今事物考, 卷6 ⑤宋史, 卷153, 志第106, 與服5 ⑥遼史, 卷56, 1125, 儀衛志2 ⑦・宋史, 卷153, 志第106, 與服5 ・高麗史 ・高麗史節要 ・黃善榮(1991), 앞의 책 p. 352. ・朴敬子(1986), 앞의 책 p. 61. ⑧高麗圖經
	貞觀4年 (AD 630) ②	〃			緋		綠		靑			
	貞觀5年 (AD 631) ③	綠							靑			
	顯慶元年 (AD 656) ②			紫	緋	淺緋	〃	深綠	深靑	淺靑		
	龍朔2年 (AD 622) ②						綠		碧			
	上元元年 (AD 674) ②	紫			深緋	〃	深綠	淺綠	深靑	淺靑		
	文明元年 (AD 684) ①	〃			〃	〃	〃	〃	碧			
	(AD 618-907) ④			紫	朱		綠		靑			
太祖初-神宗元年	AD 960-1078 ⑤	紫			朱		綠		靑			
神宗元年	AD 1078- ⑤	〃				緋		綠				
	AD 917-1125 ⑦	紫					緋		綠			
太祖20-光宗10年 光宗11年-成宗1年	AD 937-959 ⑦ AD 960-997 ⑦	〃						丹, 緋		靑	黃	
		〃						〃			靑	
		紫						〃		綠		
목종원년-문종3년 문종31년-	AD 998-1077 AD 1077- ⑧	紫			緋		綠		靑			
		綠				緋		綠(深淺別)				

〈표 2-2〉 高麗 毅宗朝 甲冑의 種類·身分·人員數와 一般 衛仗服

衛仗 / 衣服	凡法駕衛仗	上元燃燈衛仗	仲冬八關會에 看樂殿에 거등하는 衛仗	西·南京 巡行衛仗	西·南京 巡幸回駕奉迎衛仗
鐵甲	金吾果毅將校2人 軍士88人·軍士80人 ·將校2人·軍士40人 ·軍士80人	軍士150人			
皮甲	軍士100人·將校4人 ·金吾折衝都尉2人	軍士100人			軍士100人
白甲衣	戟幡4人·軍士4人	戟幡4人·軍士4人	軍士8人		戟幡4人·軍士8人
朱甲	銀斫子紅羅號4人· 軍士8人	紅羅號銀斫子4人· 軍士4人			銀斫子紅羅號4人· 軍士4人
紫甲	金吾折衝都尉將校4人·班士36人·千午備身將軍4人·備身將軍4人	行首2人·玄武隊領都將2人·將校10人	行首2人·班士20人· 千午備身將軍4人· 軍士4人·備身將軍4人·玄武隊領都將2人·將校10人·銀斫子紅羅號4人		銀斫子紅羅號4人· 軍士4人
감옷	虞候隊領將校2人· 軍士48人·防牌隊領將校2人·將校6人 ·軍士24人·軍士200人·玄武隊領都將2人·將校6人·軍士2人·軍士80人·龍虎衛身隊領都將2人· 軍士60人·軍士24人 ·將校30人·白鐵甲小旗槍隊領都將2人 ·將校12人	防牌隊領將校10人· 軍士400人·軍士20人·白甲隊領都將2人·將校10人·班士20人·衛身馬隊領都將2人	防牌隊領都將2人· 將校10人·軍士200人·白甲隊領都將2人·將校12人·軍士150人·將校20人·軍士400人		防牌隊領將校10人· 軍士200人·軍士150人·白甲隊 領都將2人·行首2人·班士20人·軍士400人
衛仗服	放角帽－紫衣 放角帽－青衣 放角帽－錦衣 揷角帽－紫衣 立角帽－寶祥花衣 皂紗帽－紫小袖衣 金畫帽－錦衣 金畫帽－紫小袖衣 金畫帽－紫色公服 立角刺繡帽－繡抹額, 幡色刺繡衣 紫羅冠－緋羅背子, 綠羅汗衫, 紫繡包肚 錦帽子－錦衣 武弁冠－緋寶祥花衣	放角帽－紫衣 放角帽－青衣 放角帽－錦衣 皂紗帽－紫色小袖衣 揷角帽－紫衣 錦帽－紫小袖衣 立角帽－寶祥花自繡 大袖衣 錦帽－錦衣 紫羅冠－紅羅背子, 綠羅汗衫, 紫繡包肚 皂紗帽－小袖衣襴衫, 紫色公服 錦帽子－錦衣	放角帽－紫衣 放角帽－紫色公服 放角帽－錦衣 立角帽－寶祥花刺繡大袖衣 皂紗帽－紫小袖衣 錦帽子－錦衣 平巾幘－扞袴	放角幘－紫衣 平巾幘－緋衣扞袴 平巾幘－青衣 皂紗帽－紫小袖衣 揷角帽－紫衣 立角帽－寶祥花刺繡大袖衣 紫羅冠－紅羅背子, 綠羅汗衫 錦母子－紫衣	放角帽－紫衣 放角帽－青衣 放角帽－錦衣 揷角帽－紫衣 立角帽－寶祥花刺繡大袖衣 錦母子－錦衣

〈표 2-3〉　**高麗 仗衛服飾表**

軍官名稱	頭飾	服	帶	기타
龍虎左右親衛旗頭	展脚幞頭	毬文金袍	鍍金束帶	宋朝의 제도와 비슷
龍虎左右親衛軍將	折脚幞頭	毬文金袍	鍍金束帶	
神虎左右親衛軍	金花大帽	毬文金袍	鍍金束帶	
興衛左右親衛軍	金花大帽	紅文羅袍	黑犀束帶	
上六軍左右衛將軍	冑	介	五采繡花帶	左佩弓劒
上六軍左右衛中檢郎將	幞頭	紫衣		左佩弓劒
龍虎中猛軍	文羅頭巾, 冑	青布窄衣(鎧甲)		
金吾仗衛軍	交脚幞頭	紫寬袖衫		
控鶴軍	折脚幞頭	紫文羅袍		
千牛左右仗衛軍	皮弁	緋窄衣	黑角束帶	
神旗軍	皮蒙首	朱衣		
龍虎上超軍	文羅頭巾	青布窄衣		
龍虎下海軍	文羅頭巾	青布窄衣	紅革銅帶	
官府門衛校尉	展脚幞頭	紫文羅窄衣		左佩長劒
六軍散員旗頭	展脚幞頭	紫文羅窄衣	束帶	革履
左右衛牽攏軍	烏紗軟帽	紫窄衣		革履
領軍郎將騎兵	文羅巾	紫羅戰袍		皂履
領兵上騎將軍	展脚幞頭	紫羅窄衣		오른손에 활집, 왼쪽에 弓矢

第 3 章　朝鮮時代의 軍服飾

時代 槪觀

第 1 節　朝鮮時代의 軍制와 冠服制度

第 2 節　朝鮮時代 各種 軍服飾의 變遷

第 3 章　朝鮮時代의 軍服飾

時代 概觀

조선은 고려말의 각종 사회적 모순 속에서 성장한 신흥사대부 세력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장세력의 연합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조선건국의 주체세력들은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를 지향한 개혁정책을 통해 지배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유교의 민본(民本)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들은 개혁을 통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일반농민의 생활을 일정하게 안정시키면서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확대 재생산해 나아갔다.

조선초에 재편된 중세체제는 지배층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면서도 지주층을 중심으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에 입각한 사회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가의 피폐는 17세기 이후 조선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변화의 모습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논농사에 있어서 이앙법(移秧法)의 보급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와 이로 인한 농민층의 분해, 그리고 상업의 발달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의 경제상의 변화는 전 시대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변동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강고한 구래(舊來)의 신분질서를 동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종래의 주자학 중심의 사유(思惟)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개혁안을 부르짖는 실학(實學)이 출현하여 사상계의 한 조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지배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폐단 내지는 혼란이었지만 이는 중세사회의 해체기이자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기로서 역동적인 사회변동의 현현(顯現) 이외에 다름이 아니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조선시대의 군복식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화약무기의 발달이 가져온 갑옷체계에 중대한 변화로 말미암아 철제(鐵製)·혁제(革製)의 전투복에서 포제(布製)의 전투복까지 다양한 군복식이 발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고려시대의 포형(袍形)이나 갑옷을 계승하면서도 조선의

상황에 맞는 특유의 갑주형태를 정착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셋째, 조선초기에 중국 명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갑주는 왕릉에 세워진 석상이나 무예도에서 상징적으로만 쓰여졌고, 유물갑주는 거의 포형으로서 전투용 갑주와 의장용 갑주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화약무기가 비약적으로 발달하자 조선전기의 갑주 중심의 군복식은 점차 실용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소화기인 조총(鳥銃) 등이 발달하면서 민첩한 행동이 요구되자 신체방호의 기능보다는 위용(威容)을 나타내는 두정(頭釘)만을 박은 두정갑(頭釘甲)이나 첩리(帖裏), 구군복(具軍服)이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첩리는 상하가 붙은 포(袍)의 일종으로 하상(下裳)이 허리에 주름을 넣어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전투복이다. 하지만 첩리는 소매통과 치마길이가 커지면서 전투복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를 개선하여 활동하기 간편한 구군복(具軍服)이 채택되었다.

구군복은 소매를 좁히고 허리에 주름을 없애고 양옆과 뒤에 트임을 넣은 동다리를 입고 그 위에 소매가 없는 전복(戰服)을 덧입으며 전립(戰笠)을 쓴 차림새를 통틀어 지칭한다. 이 구군복은 무관 최고의 복제로서 예복(禮服)이나 장교복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일반 병졸들은 창의(氅衣) 위에 괘자(褂子)나 더그레를 착용하였다. 개항 이후 서구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조선의 군복식은 모두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조선의 갑주와 구군복은 그 생명을 다하였다.

第1節 朝鮮時代의 軍制와 冠服制度

1. 軍事制度의 變遷

조선전기의 군사제도는 5위(衛)를 중심으로 한 병농일치적인 국민개병제가 골간이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훈련도감을 필두로 5군영이 속속 성립됨으로써 조선전기적인 군제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새로이 조선후기적인 군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군복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군사제도의 전반

적인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군사제도는 한 사회의 성격과 구조를 복합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또한 그 범주도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단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군사조직과 군역제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군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朝鮮前期

조선전기의 군사조직은 중앙에 5위와 금군(禁軍)이 있었고, 지방에는 진관체제(鎭管體制)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 조선정부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에 입각한 병농일치(兵農一致) 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당시 형성되고 있던 양반계층이 사실상 군역에서 제외되고 천민계층도 때로 특수병에 선용(選用)되는 경우 외에는 군역에서 제외된 까닭에 군사력의 주류는 역시 절대다수인 양인농민(良人農民)이었다. 한편, 중앙군은 병농일치 체제와 관계없이 특수병에 의하여 채워지기도 하였다.

중앙군은 건국 초엽 고려 때의 2군(軍) 6위(衛)를 바탕으로 하여 10위(衛), 10사(司), 12사(司) 제도로 변화되다가 문종 1년(1451) 5사(司)로 개편된 뒤, 세조 3년(1457) 5위제도로 정착되었다. 이는 고려 이래의 전투편성인 오군진법(五軍陣法)에 의한 편제로 강화된 체제이다. 또, 5사 25영으로 편성하여 각 영마다 여러 병종을 분속시키던 것을 오위에 병종별로 분속시킴으로써 조직의 일원화가 아닌 기능의 일원화를 도모한 것이 특색이다.[1] 오위제도는 예종 1년(1469) 각 위 소속 병종의 재조정을 거쳐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지휘 아래 오위가 연계되는 체제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의흥위(義興衛, 중위) : 갑사(甲士)·보충대(補充隊)
  중부(中部) : 경중부(京中部), 개성부(開城府), 경기도 양주·광주·수원·장단진관(長湍鎭管) 군사(軍士)

---

1) 조선전기의 중앙군제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다.
千寬宇, 1979 『近世朝鮮史硏究』 一潮閣 ;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 李泰鎭, 1985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 李成茂, 1980 「兩班과 軍役編制」 『朝鮮初期兩班硏究』 一潮閣 ; 李成茂, 1980 「兩班과 特殊軍」 『朝鮮初期兩班硏究』 一潮閣

좌부(左部) : 강원도 강릉·원주·양양진관 군사

우부(右部) : 충청도 공주·홍주진관 군사

전부(前部) : 충주·청주진관 군사

후부(後部) : 황해도 황주·해주진관 군사

• 용양위(龍驤衛, 좌위) : 별시위(別侍衛)·대졸(隊卒)

중부 : 경동부(京東部), 경상도 대구진관 군사

좌부 : 경주진관 군사

우부 : 진주진관 군사

전부 : 김해진관 군사

후부 : 상주·안동진관 군사

• 호분위(虎賁衛, 우위) : 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팽배(彭湃)

중부 : 경서부(京西部), 평안도 안주진관 군사

좌부 : 의주·구성·삭주진관 군사, 창성·창주·방산·인산진관 군사

우부 : 성천진관 군사

전부 : 영변·강계·벽동진관 군사, 벽단·고산리·위원·이산·연원진관 군사

• 충좌위(忠佐衛, 전위) :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파적위(破敵衛)

중부 : 경남부(京南部), 전라도 전주진관 군사

좌부 : 순천진관 군사

우부 : 나주진관 군사

전부 : 장흥·제주진관 군사

후부 : 남원진관 군사

• 충무위(忠武衛, 후위) : 충순위(忠順衛)·정병(正兵)·장용위(壯勇衛)

중부 : 경북부(京北部), 영안도 북청진관 군사

좌부 : 갑산진관 군사, 삼수·혜산진관 군사

우부 : 온성·경원·경흥진관 군사, 유원·미전·훈융진관 군사

전부 : 경성·부령·회령·종성진관 군사, 고령·동관진관 군사

후부 : 영흥·안변진관 군사

위와 같이 오위에 소속된 병종은 모두 13종으로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족친위·친군위·충의위·충찬위·충순위·보충대 등 왕실의 원친(遠親)이나 관계되는 자, 유음자손(有蔭子孫) 및 고급관리의 자손 등 신분상의 특전으로 편입되는 병종과, 둘째, 갑사·별시위·파적위·장용위·팽배·대졸 등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는 신분의 사람들이 특전과 관계없이 무예시험을 통하여 선발되는 군사적 기능에 치중한 병종, 셋째, 정병과 같이 양인농민의 의무 군역자로 중앙에 번상하는 병종이 있다.[2)]

이들 가운데 수적으로나 기능면으로나 근간을 이룬 병종은 갑사와 정병이었다. 오위는 각 위마다 5부로 편성되고, 부마다 서울 5부의 하나와 각도의 진관군사가 소속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군의 지휘는 각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진관의 배속은 실제 지휘체계가 아니라 바로 전국적인 대열(大閱)·강무(講武) 등의 훈련체제였다. 이들 오위군은 병종마다 그 설치연대와 목적 및 신분·군사적 기능 및 번차례가 각각 다르면서도 각각 맡은 바에 따라 입직(入直)·시위(侍衛)는 물론 수도경비와 때로는 부방까지도 해야 하는 조선전기 군제의 근간을 이루는 군대였다.

오위의 조직편제는 진법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졸(卒)－오(伍)－대(隊)－여(旅)의 조직으로, 1오는 5졸, 1대는 5오, 1여는 5대로 하는 5진법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1여는 12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편제는 지방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 이상은 반드시 5위＝25부＝100통(統)으로 편성되도록 하되, 말단 편성단위인 통의 인원규모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통의 인원수에 의하여 전체의 병력규모가 결정되었다.[3)]

오위의 군 계급은 각 병종 자체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통된 계급제도로 존재할 수 없었다. 다만, 서반 체아직(遞兒職)을 받아 근무하는 군사는 그에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오위의 체아직은 오위 병종의 일부에만 지급되었고, 실상은 군사관계 이외의 요원들에게 서반직(西班職)을 줌으로써 많은 수가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

2) 千寬宇, 1979『近世朝鮮史硏究』一潮閣 ; 李成茂, 1980「兩班과 軍役編制」『朝鮮初期兩班硏究』一潮閣 ; 李成茂, 1980「兩班과 特殊軍」『朝鮮初期兩班硏究』一潮閣

3) 許善道, 1973·1974「'制勝方略'硏究」上·下『震檀學報』36·37

중앙군의 범주에 들면서도 오위에 속해 있지 않는 군대로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등이 있었는데, 이들 군대는 국왕을 직접 호위하는 금군이었다.[4] 금군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왕권강화와 직결되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설치되고 법제화하였다. 내금위는 태종 7년(1407) 왕이 궁중에 숙위하던 내상직(內上直)을 개편한 것이며, 『경국대전』에는 정원이 19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겸사복의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세조 7년(1461)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며, 정원은 50명이었다. 우림위는 성종 23년(1492) 특수신분층인 서얼 출신을 대상으로 편성되었고, 정원은 50명이었다. 이들은 국왕 측근에서 근무하는 친병인 까닭에 엄격한 무예시험에 의하여 선발되었고 대체로 번차(番次)없이 장번(長番)으로 근무하면서 전원 체아록(遞兒祿)을 지급받았다. 이들 3개위는 각각 내금위장 3원(員), 겸사복장·우림위장 각 2원에 의하여 지휘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내장(內將)이라 하였다.

이 밖에도 성종 15년(1484) 행행(行幸) 때의 시위를 전담하도록 할 목적으로 청로대(淸路隊)를, 이와 비슷한 것으로 1489년 영별군장(領別軍將)을, 중종 7년(1512)에는 한량(閑良)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정로위(定虜衛)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군사들은 모두 금군을 강화하고 왕권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두어졌으나, 역시 금군의 주체는 내금위 등의 3개위였다.

지방군은 건국 초기에는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남방에는 대체로 육수군(陸守軍)과 기선군(騎船軍)의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육수군은 의무적으로 번상(番上) 시위하는 시위패(侍衛牌)와 지방의 여러 영이나 진에 부방(赴防)하는 영진군(營鎭軍)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5] 영진군은 각도의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와 그 밑에 두어진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에 의하여 지휘되었다. 영진군이 부방하는 영과 진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륙지방은 방어할 군대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향리·관노·무역백성(無役百姓)과 공사천(公私賤) 등을 망라하여 잡색군(雜色軍)을 편성하고 세종 24년(1442)

---

4) 閔賢九, 1983『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韓國硏究院 ; 南都泳, 1969「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閔賢九,「朝鮮初期의 私兵」『東洋學』 13 1983 ; 柳昌圭, 1985「朝鮮初 親軍衛의 甲士」『歷史學報』 106 ; 尹薰杓, 1993「朝鮮初期 別侍衛 硏究」『國史館論叢』 43.

5) 陸軍本部, 1968『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이후 재정비하게 되었다. 잡색군은 마병(馬兵)과 보병(步兵)으로 나누어 25명을 1대(隊)로 편성하여 수령이 지휘하도록 하였으나, 평상시에는 군사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아 실제 전투능력은 매우 위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국적 군사조직체계를 갖추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뿐이었다.

기선군은 뒤에 선군(船軍), 다시 수군(水軍)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 갔다. 건국초 사병이 혁파되고 특수병인 갑사 등이 강화되어 시위패의 중요성이 줄어들자 그 일부를 영진군과 기선군에 편입시켜 보강하였다. 이로써 기선군의 수는 약 5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대개 연해민(沿海民)을 중심으로 기선군이 충당되고 고된 해상근무의 대가로 어염(魚鹽)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특전이 주어져 왔으나, 점차 어염의 이익이 자염(煮鹽)의 역으로 변하여 군역에 덧붙여져서 더욱 고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선군의 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신분이 신량역천(身良役賤)으로 격하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도별로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와 그 밑에 수어처(守禦處)별로 두어진 포(浦)에 배치된 만호·천호 등이 지휘하였다. 기선군은 양번(兩番) 교대로 복무하였다.[6]

한편,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고려말 이래의 익군체제(翼軍體制)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익군은 중요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개의 군익도(軍翼道)에 분속되어 유기적 군사단위를 이룸으로써 일원화된 계통을 가지고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행정구획인 도를 단위로 역시 병마도절제사가 있었으나, 구체적 군사행동에 있어서는 군익도가 단위가 되었다. 익군(翼軍)도 양인농민으로 편성된 점에서는 남방의 영진군과 비슷하나, 거주지가 곧 복무하는 곳이어서 번차에 의한 부방과는 매우 달랐다.[7]

익군은 마병과 보병이 섞여 편성되었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 등이 상층부를 구성하고 토착 세력자가 하층부를 이루는 이중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익군은 지방통치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8] 양계의 경우, 태종 때 여진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들을 막기 위한 진이 설치되어 익군의 일부가 진에서 국방에 종

6) 方相鉉, 1991『朝鮮初期水軍制度』民族文化社

7) 閔賢九, 1983『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韓國硏究院, 李載龔, 1984『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一潮閣 ; 吳宗祿, 1992『朝鮮初期 兩界의 軍事制度와 國防體制』고려대박사학위논문

8) 閔賢九, 앞 책 ; 李載龔, 1984『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 吳宗祿, 앞 글.

사하기 시작했고, 8도체제 성립에 즈음하여 병영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생겨났다. 세종 때에는 영토 확장이 본격화함에 따라 국경지역에 진이 대거 증설되고 최전방에는 하급의 소규모 요새가 다수 설치되어 익군도 모두 국경지역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이곳 출신 시위군과 갑사 역시 국경지역의 국방에 동원되어 차츰 지방군화하였다. 이처럼 익군체제의 내용이 종전과 달라지는 한편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휘관이 크게 늘어 현지 토착 세력자가 지휘체계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크게 감소되었다.[9]

이상과 같은 군사조직이 진관체제로 정비된 것은 세조 원년(1455) 이후의 일이다.[10] 이 때에는 전국적으로 내륙지방에도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주위의 여러 읍을 좌·우·중의 3익(翼)으로 분속시켜 군익도를 편성하는 한편, 군익도 체제가 불편한 곳에는 별도로 독진(獨鎭)을 두어 이원체제로 운영하게 했다. 이로부터 다시 일원화되어 세조 4년(1458) 진관체제가 편성되었다. 진관체제는 종래 행정구역상의 도와 혼동하기 쉽던 군익도의 조직을 군사기지로서의 주진(主鎭)·거진(巨鎭)·진(鎭)으로 재편하여 각진의 독자성을 살리면서 일원적 군사체제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어서 세조 11년(1464) 모든 지방군을 정병(正兵)으로 통일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원칙하의 국방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각 고을의 정병은 평시에는 거주하는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다가 번차에 따라 상경, 숙위하거나 배정된 진에 머물러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진관체제는 이처럼 국경지역과 아울러 내륙의 방어를 강화시킨 국방체제로서, 유사시 모든 군인을 거주지 진관 단위로 징발하여 대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군의 경우는 이미 세종 때부터 진관체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조 12년(1466) 지방군의 최고지휘관인 병마도절제사를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바꾸고 그 동안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바뀌었던 수군의 최고지휘권자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바꿔 주진을 담당하게 하였다.[11] 이들은 각각 병사·수사로 통칭되었다. 각도의 육수군(陸水軍)은 병사 아래로 우후(虞侯)와 대

9) 吳宗祿, 1985「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度의 成立과 運用」上·下『震檀學報』59·60; 1989「朝鮮初期의 邊鎭防衛와 兵馬僉使·萬戶」『歷史學報』123, 1989; 1993「朝鮮初期의 營鎭軍」『宋甲鎬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10) 閔賢九, 앞 책.

11) 張炳仁, 1984「朝鮮初期의 兵馬節度使」『韓國學報』34 1984; 오종록, 1985 앞 글

개 지방수령인 첨절제사·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절제도위(節制都尉)로, 수군(水軍)은 수사 아래로 우후와 만호·천호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이 형성되었다. 병사와 수사는 도별로 지역의 국방상의 중요도에 따라 1~3원까지 두어졌다. 병·수사가 1원인 경기도와 같은 경우 관찰사가 모두 겸하였고, 2~3원인 도에서도 1원은 반드시 관찰사가 겸하여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관찰사가 군사권까지 장악했다. 거진·진의 군사지휘권자도 역시 수령이 겸하여 군사전문가가 아닌 문신 중심의 지휘체제가 되어 자칫 형식에 흐르는 폐단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관체제 아래서 정병은 각 진관에 적을 두고는 있었으나, 병농일치의 상태인 이들을 상시적으로 주둔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다. 이른바 호(戶)·보(保) 제도가 있어서 현역으로 근무하는 호, 즉 정병과 이를 돕는 보를 두어 정병이 상번일 때는 포를 내어 보조하도록 하고, 하번일 때는 정병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선정부는 도마다 전략상 중요한 지역에만 군사를 배치하여 그곳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이 군사력을 유방군(留防軍)이라 하였다. 그 규모는 충청도가 9여(旅)에 1,125명, 경상도가 24여에 3,000명, 전라도가 13여에 1,375명, 황해도가 8여에 1천명, 강원도가 2여에 250명 등이며, 4번 교대로 1개월씩 상경하여 숙위하던 정병이 8교대로 2개월씩 복무한 것과 사실상 같았다. 한편, 평안도와 함경도의 정병과 갑사는 그 거주지에서 방어에 임하도록 하여 국경지대의 군사력을 강화하였고, 경기도는 대개 중앙군이 방어에 임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에 번상하거나 지방에 유방하는 정병과 그 보 및 잡색군을 합치면 진관체제 아래의 지방군은 약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관체제는 자전자수(自戰自守)의 원칙 아래 전국을 몇 개의 방위지대로 조직, 편제한 것이었으나, 많은 적이 침략해 올 때는 오히려 군사력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욱이 정병의 군역부담이 커져 도망과 유리(流離)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 틈을 타 대립(代立)의 폐단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15세기 중엽부터 공인된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는 포를 내고 군역을 지지 않는 장정을 늘려 사실상 군사조직이 유지되지 못하는 공백기를 맞게 되었다.[12] 이렇게 허약해진 방위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적하는

12) 육군본부, 앞 책.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는 대책이 강구되었다.[13] 제승방략은 먼저 함경도에서 이일(李鎰) 등에 의하여 시도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도내의 모든 병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응전하는 방책이었다. 따라서, 유사시에는 각 읍의 수령이 소속군사를 이끌고 지정된 방어지역으로 집결하였으며, 수령은 군사지휘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솔책임만을 졌고 중앙에서 파견되는 순변사(巡邊使), 방어사(防禦使), 조방장(助防將) 등의 경장(京將)과 병·수사가 지휘권을 가졌다.

제승방략은 이와 같이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적을 막는 총력방어태세로서의 이점이 있으나, 후방지역은 군사가 없어 한번 방어선이 무너진 뒤에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진관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창궐하는 왜구를 막기 위하여 16세기 초반부터 남방에도 제승방략(制勝方略) 체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결국, 16세기 말엽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이일의 상주전투, 신립(申砬)의 충주전투에서 패전한 뒤 후방군이 없었던 까닭에 왜군이 상주에서 충주를 거쳐 서울로 쉽게 진격할 수 있었다. 북방은 그대로 무장(武將)이 파견되어 방어에 임하였으나, 남방은 군사를 모은 뒤 경장(京將)의 파견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제승방략이 실시되던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다음은 조선초기의 군사징발체제인 군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군역은 15세기 전반에는 각 자연호의 인정수와 전결수를 참작하여 여건에 따라 봉족호(奉足戶)를 1~2호씩 지급하다가, 토지소유관계가 분화함에 따라 장정수만을 고려하여 주로 3정(丁) 1호(戶)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군호(軍戶)를 단위로 부과되는 봉족제로 변화하였다.[14] 봉족제에서는 일반적 자연호의 가족 규모가 장정 3명 이상이어서 자연호가 곧 군호로 편성되고 일부만이 다른 자연호와 묶어 군호를 이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나 여러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군역을 질 장정은 호적에 의해 가려져 군적(軍籍)으로 정리 파악되었으며, 정규 군역 외의 다른 군역을 지는 사람들은 잡색군(雜色軍)으로 묶여 잡색군적에 의해 파악되었다.

15세기 중엽까지 국가가 파악하는 양인 장정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문종 즉위 무렵을 전후하여 몽고족의 침입이 우려되자 정부는 군사의 수를 크게

---

13) 許善道, 앞 글.

14) 閔賢九, 앞 책 ; 李載龔, 앞 책 ; 李載龔, 1964「奉足에 대하여」『歷史學硏究』; 尹用出, 1989「壬辰倭亂時期 軍役制의 動搖와 改編」『釜大史學』13

늘렸다.[15] 한편 토지소유관계의 분화가 더욱 진전되어 부유한 자연호가 규정 이상의 많은 장정을 보유하는 반면, 다른 호의 봉족이 된 경우 여러 가지로 침탈받는 폐해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6] 아울러 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을 거주지별로 파악하게 되어 경군역과 향군역의 구별이 약화되어 갔다.[17] 이러한 배경 아래 봉족제는 장정 2명으로 1보(保)를 편성하여 군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수의 보인을 지급하는 보법으로 개편되었다.[18]

처음 보법이 실시될 때에는 고공(雇工), 비부(婢夫) 등 경제력이 열악한 자를 제외한 양인 장정을 대거 추가 파악하여 군역을 지우는 한편 토지 5결(結)을 장정 1명으로, 소유 노(奴)의 수를 장정의 수로 환산하여 부유한 호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간행되는 과정에서 노는 그 수의 반을 장정수로 삼게 되고 토지를 장정으로 환산하는 내용은 삭제되었다.[19]

보법 실시 후 양인 상층부의 장정은 갑사 등 시험을 통해 뽑는 군인으로 진출하거나 향교 교생이 되어 군역을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였다.[20] 이 추세는 16세기에 더욱 확산되어 사회 내부에 광범하게 한량층이 형성되었고,[21] 17세기에는 양인 상층부에 대한 군역 면제가 현실화되었다. 이 동안 수가 급증한 갑사는 전투력을 상실하였고, 정병과 수군은 역졸화한 가운데 16세기 중엽에 정부가 대립을 공인하고 대립포(代立布) 액수를 규정하자 대부분 납포군(納布軍)으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양인 농민층 특히 보인(保人)의 부담이 더욱 과중해져서 피역이 확산되었다.[22]

---

15) 吳宗祿, 1992 앞 책.
16) 李載龔, 앞 책.
17) 閔賢九, 앞 책.
18) 閔賢九, 앞 책; 李載龔, 앞 책 ; 李志雨, 1989「朝鮮初期 奉足制의 推移와 實態」『慶南史學』 2 ; 北村明美, 1992「李朝初期國役制度'保法'の成立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29.
19) 종래에 保法으로의 변화는 자연호가 아닌 人丁 자체를 역부담 단위로 삼기 시작한 조치로 보았으나(민현구·이재룡·이지우), 집약종법의 실현에 따라 자연호의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맞추어 현실화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北村明美).
20) 육군본부, 앞 책.
21) 車文燮, 1973『朝鮮時代軍制研究』 檀國大出版部.
22) 육군본부, 앞 책 ; 이지우, 앞 글 ; 吳宗祿, 앞 책.

나. 朝鮮後期

조선후기의 군사제도는 중앙의 오군영(五軍營)과 금군, 지방의 속오군(束伍軍) 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16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전기의 군사제도는 거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이를 틈타 침입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사제도의 재정비·재편성이 시급하였다. 이에 16세기에 변방비어(邊方備禦)를 위하여 설치한 비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의 삼수병(三手兵)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도감을 중앙에 설치하였다.[23] 명나라의 척계광(戚繼光)이 개발한 절강병법(浙江兵法)을 바탕으로 한 훈련도감의 설치는 조선후기 중앙군사제도의 핵심이 되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당시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성룡(柳成龍)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 이름과 같이 임시군영으로서 설치되었으나, 그 뒤 필요에 따라 영설군영화(永設軍營化)하여 중앙의 핵심군영이 되었다. 유성룡은 기민구제·정병양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훈련도감군을 장번(長番)의 급료병(給料兵)으로 편성하였고, 과거의 궁시(弓矢) 중심의 편제를 포수 중심의 편제로 바꾸었다. 훈련과 조직도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법(束伍法)에 따라 개혁하여 과거의 대부대 단위 전투형태에서 초(哨) 단위의 소부대 단위 전투형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속오법은 부(部)－사(司)－초(哨)－기(旗)－대(隊)－오(伍)로 연결되는 편제로, 일정하지는 않으나 120～125명의 병력이 군사조직의 기본단위인 1초를 이루며, 초의 다소에 따라 사의 수가 결정되었다. 훈련도감의 지휘부는 의정(議政)이 겸하는 도제조(都提調) 1명과 병조판서 및 호조판서가 겸하는 제조(提調)의 자문 아래 대장(大將 : 종 2품) 1명, 중군(中軍) 1명, 별장(別將) 3명, 파총(把摠) 6명, 종사관(從事官) 4명, 초관(哨官) 34명으로 편제되었다. 이 지휘부 아래 좌·우 양부 6사 33초로 편제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마병(馬兵 : 사수) 7초에 833명, 포수 20초에 2,440명, 살수 6초에 738명 도합 33초에 4,011명이었다. 이밖에도 군관, 별군관, 지구관(地毆官), 기패관(旗牌官), 도제조군관, 감관(監官), 약방(藥房),

23) 車文燮, 앞 책 ; 金鍾洙, 1996 『조선후기 訓鍊都監의 設立과 運營』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침의(鍼醫) 등 군사훈련이나 각종 행정에 종사하는 직종이 있었다. 또, 일반군사 외에 권무군관(權武軍官), 별무사(別武士), 한려(漢旅), 국출신(局出身), 무예별감(武藝別鑑) 등 약 2백명의 특수군이 있었으나, 이들은 대개의 경우 군공(軍功)이나 무과 남발 및 대우를 위하여 분속된 병종이었으며, 각 부서에 두어진 표하군(標下軍)도 1,230명이나 되었다. 훈련도감군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몇 차례 증감이 있었으나, 대개 5천여 명의 군총(軍總)을 유지하며 수도방어의 핵심군으로 기능하였다.

훈련도감과는 달리 어영청과 금위영은 번상하는 향군(鄕軍)으로 편제되었다.[24] 어영청은 인조반정 뒤 후금(後金)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치가 논의되다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을 계기로 중앙군으로 정착되었고, 효종 3년(1652) 어영청으로 개편되었다. 그 뒤 왕권호위와 북벌의 선봉으로 존치되던 어영청은 북벌의 의미가 감소되면서 수도방어군으로 정착되었다. 어영청의 군사는 보인(保人)의 부담으로 번상하였으므로, 조선전기 오위체제의 정군번상과 같은 체제이다. 어영청은 숙종 30년(1704) 5부 25사 125초 16,300명으로 속오법체제에 따라 정비되어 법전화하였다. 초의 구성은 1초는 3기(旗), 1기는 9대, 1대는 정군 10명, 화병(火兵) 1명, 복마군(卜馬軍) 1명 등 모두 127명으로 편제되었다. 125초의 군사는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향군으로, 25번으로 나누어 5초씩 두 달간 복무하여 실제 서울에 상주하는 병력은 7백명 정도였다. 어영군에는 훈련도감군과는 달리 화포군(火砲軍)인 별파진(別破陣)이 설치되었다.

어영청에는 또한 겸파총(兼把摠) 11명을 두어 무예에 소양이 있는 수령을 임명하여 도내의 번상하지 않은 향군의 훈련을 담당시켰다. 이밖에 훈련도감과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교련관과 별무사·재경군관(在京軍官) 등 무과 남발로 인한 대우군 및 표하군·아병(牙兵) 등의 장번근무자도 있었으며, 이들은 급료병과 향군의 번상군이 섞여 있었다.

금위영은 군제변통·양역변통의 논의가 절정을 이루는 숙종 8년(1682)에 설치되었다. 궁핍한 국가재정과 양역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던 정초청군(精抄廳軍)과 훈련도감의 훈련별대(訓練別隊)를 합쳐 하나의 군영으로 개편한 것이다. 즉, 정부는 번상하는 6도 향군이 주축을 이루도록 하되 급료병인 훈련

24) 車文燮, 앞 책 ; 崔孝軾, 1983「御營廳研究」『韓國史研究』 40.

도감군을 감축하여 금위영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부담을 덜면서도 수도방위를 충실히 하게 하였다. 금위영은 정초청의 후신인 까닭에 초기에는 병조판서가 그 대장을 겸하였으나 영조 30년(1754) 단독으로 대장을 두게 되면서 수도방어의 핵심군영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그 조직편제는 어영청과 대동소이하다.

이들 3군영은 국왕의 행행수가(行幸隨駕)와 전좌(殿座)의 시립(侍立)을 담당함은 물론 비상시의 궁성호위를 위한 목적지를 정하여 분담하고 도성수비도 책임구역을 정하여 맡았다. 궁궐 내외 및 도성 내외의 행순(行巡)과 입직(入直) 등의 임무와 아울러 수도방위와 관계가 있는 준천(濬川), 금송(禁松), 적간(摘奸), 착호(捉虎) 등도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맡고 있었다.

조선후기 중앙군제를 5군영이라고 하나,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은 경기도 일대의 방위에 주안점을 두고 설치한 군영이었다.[25] 이들 양청의 장(將)은 경관(京官)으로 임명되어 때로는 수도권 방위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산성과 남한산성 중심의 수도외곽방위에 치중하였다. 또한, 양청의 군대는 경기도 내의 속오군이 중심이 되었으며, 경기도 각읍의 삼수미(三手米)를 유치하고 둔전을 널리 열어 양향(糧餉)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사들에게는 정병의 예에 따라 급보(給保)되었다.

총융청은 1624년 이괄의 난 때 왕권호위의 취약성이 드러나 그 보완을 위하여 경기도 일대의 속오군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총융군은 정군·속오군·별대마군(別隊馬軍) 등으로 조직되었고, 그 수는 약 2만여 명에 달하였다. 처음에는 수원, 광주(廣州), 양주, 장단(長湍), 남양(南陽)의 5영(營)을 두고 5영 15부 45사 135초로 편제하였다가 곧 척계광의 『연병실기(練兵實紀)』 체제에 따라 영과 부는 지역의 특성에 따르도록 하여 7영 12부 25사 123초로 편제하고 사마다 중초(中哨)만은 마군(馬軍)으로 편성하였다. 총융청은 병자호란 이후 숙위(宿衛) 보강을 위하여 겨울 3개월 동안 궁성숙위를 담당하게 되어 중앙군의 범주에 들게 되었으며, 숙종 즉위년(1674)에는 내영처(內營處)가 성립되어 2부 6사 26초의 내영이 편제되었다. 이를 계기로 외영(外營)은 수원·장단·양주의 3영제로 바뀌고, 일부는 수어청의 방어지로 되었다. 그러나 숙종 30년(1704) 군제변통 때 내영제가 폐지되고, 3

25) 車文燮, 1976·1979「守禦廳研究」上·下『東洋學』6·9 ; 崔孝軾, 1985「摠戎廳研究」『東國大慶州캠퍼스論文集』4.

영제로 개편되어 중영은 3부, 좌·우영은 각 2부로 하되 1부 2사 10초로, 1초는 125명으로 편제되었다. 내영제가 폐지된 뒤에도 총융청 본청은 형식적으로나마 2부의 편제를 유지하였고, 3영은 속영(屬營)이라 하였다. 그뒤에도 몇 차례의 변동이 있었지만 총융청은 계속 북한산성 중심의 수도외곽방위 군영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수어청의 설치는 인조 4년(1626) 남한산성의 개축으로 구체화되었다. 후금의 압력이 가중되던 당시로서는 남한산성이 수도 외곽의 방어진지 내지는 피가처(避駕處)로서 중요시되었다. 남한산성을 개축하면서 경기병사 겸 총융사가 이를 관할하다 1632년 산성을 전담하는 수어사를 두었으나 독립된 군영으로 변모하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로 생각된다. 조정에서는 이곳을 중시하여 때때로 훈척중신(勳戚重臣)을 수어사로 임명하여 서울에 경청(京廳)을 두고 산성을 관할하도록 하는 이원체제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행정적으로는 광주부윤(廣州府尹)의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서 때로는 경청을 출진(出鎭)시키고 광주부윤을 유수(留守)로 승격시켜 수어사를 겸하게 하는 일원체제로 운영하는 등 변혁이 잦았다. 특히, 당인(黨人)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변혁을 거듭하다 정조 19년(1795)에 장용영(壯勇營)의 설치와 관련되어 경청을 혁파하고 광주목사를 유수로 바꾸어 산성에 출진(出鎭)케 함으로써 경비와 인원을 대폭 줄였고, 이는 수어청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어청은 처음 경청은 아병(牙兵)을 중심으로 하여 3부로, 외영은 속오군을 중심으로 하여 4영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다가 1704년 경청은 좌·우부로 나누어 각각 아병 16초, 마병 3초 및 훈·어마보군(訓御馬步軍)과 친아병(親牙兵)으로, 외영은 광주·양주·죽산을 전·중·후영으로 하여 각각 속오군으로 5사 25초로 편성하게 되었다. 그 뒤로는 일원체제이든 이원체제이든 3영 2부체제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지휘체제나 경제기반은 총융청과 거의 다름이 없었다. 이와 같이 수어청에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좌도, 즉 광주·양주·죽산의 3영이 속하고, 총융청에는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우도, 즉 남양·파주·장단의 3영이 속하여 수도 외곽을 남북으로 수어하고 있었다.

친위군은 호위청(扈衛廳)과 용호영(龍虎營 : 禁軍廳)으로 정비되었다.[26] 호위청은

---

26) 李泰鎭, 1985『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韓國研究院 ; 崔孝軾, 1991「扈衛廳의 設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도한 훈신(勳臣)인 김류(金瑬)·이귀(李貴) 등이 반정에 사용한 사모군(私募軍)을 거의 그대로 궁궐숙위에 충당함으로써 설치되었다. 그해 9월 호위청을 설치하고 10월에는 반정주류 가운데서 대장 4명과 당상관 2명을 정하여 이들의 사모군 중에서 대장은 1백명, 당상관은 50명씩 총 5백명을 뽑아 군관으로 삼고 국왕을 호위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에서 급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호위청은 실제로는 반정공신이 자기세력기반과 정권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 뒤 호위청은 군관의 수가 점점 불어 1천명에 이르게 되어 다시 호위 3청으로 개편하고 대장은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과 국구(國舅)로 임명하여 그들의 군사적 세력기반이 되었으며, 실제 군사지휘권자인 별장(別將) 3원이 각청의 군관 350명(총 1,050명)씩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조 때에 이르러 왕권의 강화와 결부된 숙위소 체제가 갖추어지자 그 수도 4백명으로 줄이고 대장도 훈신이나 척신이 아닌 자로 임명하여 왕권강화를 위한 친위체제로 바뀌었다.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에도 내금위·겸사복·우림위가 사실상의 금군이었으나, 호위청의 설치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효종 때 북벌을 위한 군비확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군도 강화되어 금군 3위를 내삼청(內三廳)으로 묶는 동시에 기마군화(騎馬軍化)에 노력하였으나, 이후 왕권 약화로 그 수가 감소하였다. 현종 때에는 금군을 7백명으로 정하고 이름도 금군청(禁軍廳)으로 바꾸어 10번으로 교대근무하도록 하였다. 금군청이 용호영으로 개칭된 것은 영조 31년(1755)으로, 실제 책임자인 별장을 금군별장이라 하였다. 정조 15년(1791)에는 금군 1백명을 줄여 6백명으로 정하고 6번으로 나누었다가 순조 때 7백명으로 복구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금군은 대개 7백명 내외였다. 금군은 국왕이 동가(動駕), 전좌할 때의 배호와 인정전(仁政殿) 월랑(月廊)의 입직 및 도성 8문과 목멱봉수(木覓烽燧)·오간수문(五間水門) 등의 요소와 입직, 여러 곳의 적간(摘奸)을 행하는 왕권호위의 핵심군이었다. 이밖에 중앙군으로서 정조 때 장용영의 내·외영(內外營)이 설치된 바 있으나, 순조 즉위 이후 왕권이 약화되면서 혁파되었다.

지방의 군사제도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재편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조선전기의 진관체제를 복구한 위에 새로이 속오군이 등장하고, 그 훈련을 위해 영장제도(營將

置와 그 組織編制」『龍巖車文燮博士華甲紀念論叢－朝鮮時代史研究』

制度)가 실시되어 지방수령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을 행정권에서 독립시킨 것이 특징이다.[27] 그러나 수군에 있어서는 조선전기 후반에 시도된 제승방략체제가 진관체제에 가미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선조 26년(1593) 이순신(李舜臣)이 경상·전라·충청 3도수군통제사가 되어 3도의 수군을 통할함으로써 바다로 침략해 오는 왜군의 대부대에 일원적으로 대처하여 해방(海防)을 튼튼히 하였다. 수도 외곽에 해당되는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도 인조 11년(1633) 3도통어사(三道統禦使)를 두어 집중적으로 해방에 임하도록 하였고, 숙종 26년(1700)에는 강화도에 진무영(鎭撫營)을 두어 통어영을 통할하게 하였다. 이러한 수군통제의 강화는 외침에 대한 수도방위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해안과 내륙지방의 주요요지에는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하여 방어사가 집중적으로 지키도록 하였다. 방어영은 경기도 2(육·수군), 전라도 1(수군 : 제주도), 강원도 1(육군), 함경도 1(육군), 평안도 4(육군 2, 수군 2) 등 9개처에 설치되었다. 또한 산성의 중요성이 높아져 별장을 배치했으며, 해안·강안의 요해처에 도(渡)·진(津)을 설치하여 방어망을 구축하고 별장을 두어 지키게 한 것도 두드러진 변화이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속오군 조직의 등장과 영장제도의 설치였다.

속오군은 훈련도감과 같이 임진왜란의 극복을 위하여 임기응변의 비상조치로서 설치되어 역시 영－사－초－기－대로 이어지는 속오법으로 편제되었다.[28] 왜란 당시 지방의 핵심군으로 등장한 속오군은 양반으로부터 공천(公賤)·사천(私賤)에 이르는 총동원체제로 편성되어 국난을 타개하였다. 당시 속오군은 일정한 대우가 없었고, 다만 도로내왕이나 훈련에 과량부조(裹糧赴操)하는 등의 폐단제거에 중점이 두어져 전국이 군사훈련기지화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양(良)·천(賤)으로 속오군이 편제됨으로써 본역 이외에 속오역을 지는 일신양역(一身兩役)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영조 5년(1729)을 전후하여 속오군이 천례화(賤隷化)되었고, 양역변통(良役變通) 등의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속오군의 수는 전국적으로 20여만명으로 파악되나, 조선조 말엽이 되면 다만 수포(收布)·수세군(收稅軍)으로 존재하여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다.

영장제도는 인조 5년(1627) 후금에 대한 대비책으로 속오군을 강화할 목적에서

27) 車文燮, 앞 책 ; 徐台源, 1993「營將制와 土豪統制－17세기 초를 중심으로－」『慶州史學』2.
28) 車文燮, 앞 책.

설치되었다. 이는 과거 문신수령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을 전문적 무신이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군사제도상 하나의 진전을 이루고 속오군도 충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문신수령의 반발과 재정적 뒷받침의 부족, 유능한 무장의 결핍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병자호란을 계기로 다시 문신수령 중심의 훈련체제로 바뀌었다. 북벌을 의도하던 효종 때 다시 전문적 영장제도로 회복되었으나, 효종 사망 뒤 바뀌어 결국 『속대전』에서는 수령이 영장을 겸하게 되었다. 문신수령의 겸영장제도는 도마다 5~6개의 진영을 두어 군사권을 장악하는 수령영장을 둠으로써 일단 모든 수령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을 비록 문신이지만 영장에게 묶은 점에서 조선후기 지방군사체제의 진전을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군역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급료병이 주축을 이루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으나, 그 재정기반은 일부를 삼수미(三手米), 둔전 수입 등으로 충당할 뿐 대부분 군포에 의존하였다.[29] 따라서 양인 장정의 군역 부담 내용은 16세기 중엽 이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군영체제 확립과정에서 각 군영이 독자적으로 보인을 확보하고자 경쟁하였고, 지방군영 및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서도 재정기반을 갖추기 위해 보인확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보인 수가 급증했으며, 그 중에는 사모속(私募屬)이라 하여 사적으로 투속하는 군인들도 많았다.[30] 속오군에게도 처음에는 보인이 지급되었으나 차츰 속오군 자체가 납포군(納布軍)으로 바뀌어 갔다. 속오군 중 천인의 부담은 양인의 1/2이었으나, 군포 부담이 적은 곳을 찾아 투속하거나 신분상승을 통해 역을 피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과 관련하여 18세기 이후에는 그러한 기회가 적었던 천인만이 속오군에 남게 되었다.[31]

보인의 수가 급증한 결과 농민의 군역 부담이 무거워지고 군포 징수에 따른 갖가지 폐단이 나타나 17세기 후반부터 양역변통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부 군포 부

---

29) 車文燮, 1961 「壬亂以後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 上·下, 『史學硏究』 10·11 ; 車文燮, 1984, 「朝鮮後期 中央軍制의 再編」 『韓國史論』 7, 國史編纂委員會 ; 尹用出, 앞 글.

30) 鄭演植, 1985 「17·18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 『韓國史論』 13, 서울대 ; 鄭萬祚, 1990 「숙종조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 『國史館論叢』 17 ; 金甲周, 1990, 「朝鮮後期 保人연구」 『國史館論叢』 17 ; 白承哲, 1990 「17·18세기 軍役制의 變動과 運營」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 金友哲, 1992 「均役法 施行 前後 私募屬硏究」 『충북사학』 4.

31) 千寬宇, 앞 책 ; 張弼基, 1990 「17세기 전반기 束伍軍의 性格과 位相」 『史學硏究』 42.

담을 양반층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양역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매번 피역 양인들을 색출하여 양역 부담을 공정하게 하자는 쪽으로 귀결됨으로써 양역변통 논의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32] 18세기 중엽에 실시한 균역법은 왕실 재정 및 국가 재정의 일부를 군사 재정으로 돌리고 신분 상승을 통해 피역을 꾀한 사람들에게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를 물려 새 군사 재정으로 삼아 양인과 천인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한편, 모든 군역 부담을 신분별로 균일하게 한 조치였다. 그러나 군역이 일반적으로 양역으로 남고 사모속 또한 폐지되지 않아 군역의 폐단은 다시 확대되어 갔다.[33] 군역 부담이 균일화한 뒤에도 각 군영에는 다양한 이름의 군인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조선의 군역제는 19세기 초를 전후하여 군포 부담이 마을의 공동 납부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전세(田稅)의 일부로 바뀌어 가고, 중앙 군영의 군인도 대부분 납포군(納布軍)화함에 따라 19세기 중엽에는 이미 형해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군비 확충 및 내정 개혁의 차원에서 흥선대원군 정권이 신분과 관계없이 호별로 군포를 물리는 호포제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군역제는 붕괴일로에 접어들었다.[34]

2. 冠服制度의 成立

가. 冠服制度의 完成

조선은 여말에 성리학을 이념적 무기로 내세운 신흥사대부세력에 의하여 건국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가관료기구를 비롯한 제반 사회제도도 성리학적 모델에 의하

32) 車文燮, 1961 앞 글 ; 朴廣成, 1972「均役法 施行 以後 良役에 대하여」『省谷論叢』 3 ; 鄭萬祚, 1977「均役法의 選武軍官」『韓國史硏究』 13 ; 鄭演植, 1993『朝鮮後期 '役摠'의 運營과 良役變通』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33) 車文燮, 1961 앞 글 ; 金容燮, 1982「朝鮮後期 軍役制의 變動과 軍役田」『東方學志』 32 ; 金甲周, 앞 글 ; 鄭演植, 앞 책.

34) 육군본부, 앞 책 ; 金容燮, 1982「朝鮮後期 軍役制 釐整의 推移와 戶布法」『省谷論叢』 13, 1995 ; 西田信治, 1984 「李朝軍役体制の解体」『朝鮮史硏究會論文集』21, 宋亮燮, 1995「19세기 良役收取法의 變化－洞布制의 成立과 관련하여－」『韓國史硏究』 89 ; 宋亮燮,「均役法 施行 以後 軍役制 變動의 推移와 洞布制의 運營」『軍史』31.

여 편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복식제도 또한 조선건국의 이념에 걸맞는 형태로 정비되었다.[35]

조선의 관복제도는 앞 시대와 비슷하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전 시대에 비하여 더욱 관료국가의 체제에 걸맞는 형태로 세분화되고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관복은 조복(朝服), 공복(公服), 제복(祭服), 상복(常服)의 구별이 있었고 또한 품계에 따라 복색의 구별이 있었다. 조선초 복식제도의 시행의 원칙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명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되 명제(明制)보다 2급을 내리는 원칙으로서, 이는 태조 4년에 제복(祭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36] 이 원칙은 이미 고려 공민왕 19년 5월의 제복사여(祭服賜與)에서 보이고 있다.[37] 이는 결국 당시 동아시아의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주변국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제후국'으로서의 위상이 조선의 복식제도에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품계에 따라 복색을 달리하되 높은 품계는 보다 고급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높은 품계에서의 차이가 하위의 품계의 차이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었다. 예컨대, 1품과 2품의 차이는 5품과 6품의 차이보다 보다 뚜렷하게 복색상 구별된다.

셋째, 의식이나 집무 등 기능에 따라 조복(朝服), 공복(公服), 제복(祭服), 상복(常服)의 구분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각 품계마다 있는 것으로, 한 사람의 관료가 입는 옷은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착용되고 있었다.[38]

---

35) 여말선초의 明의 모델을 차용한 복식제도의 개혁을 洪姝瓊·洪茂瓊은 우리 복식사의 세 번째 큰 변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복식사의 3대변혁을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신라 진덕왕 3년(649)에 김춘추가 당의 衣帶를 얻어 가지고 와서 우선 남자의 의복이 唐制로 변하고 무열왕(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4년(664)에 여자의 衣帶마저 唐制로 고치게 한 것이 第1變革이요, 高麗 忠烈王 4年(1278)에 境內 人民에게 令을 내려 元의 衣服을 입게 한 것이 第2變革이요, 高麗 恭愍王 19年(1370)에 元의 衣制를 明의 衣制로 바꾸게 하고, 그 뒤에 禑王이 明制와 元制를 뒤죽박죽 쓰게 한 까닭으로 恭讓王 3年(1391)에 다시 明制로 服式을 일정하게 한 것이 第3變革이다."(洪姝瓊·洪茂瓊,『朝鮮衣服婚姻制度의 硏究』을유문화사, p. 20)

36) 『太祖實錄』 4年 7月 庚子

37) 金東旭, 1963『李朝前期服飾硏究』한국연구원, p. 82.

38) 문무관료들의 冠服인 조복, 제복, 공복, 상복도 중국의 선진적인 모델에 영향을 적지않게 받아『경국대전』에 이와 유사한 조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고찰을 통하여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내의 조선의 문화가 가지는 독자성과 보편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明史』輿服志에 나타난 관복관련 조항을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는 조회시의 예복인 금관조복(金冠朝服)과 평시의 예복인 시복(時服), 평시 공복(公服)인 상복(常服), 편첩(便捷)할 필요가 있을 때 착용하는 융복(戎服),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복(祭服)이 모두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17세기까지도 관복은 조(朝)·공(公)·제(祭)·상복(常服)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마도 19세기까지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관복제도가 정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그 과정을 간략히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민왕 19년 5월 : 명(明)이 제복(祭服)을 사여(賜與)·이등체강(二等遞降) 원칙이 성립
- 우 왕 12년 2월 : 명에 조복(朝服)과 편복(便服)의 사여를 주청(奏請)
- 우 왕 13년 5월 : 설장수(偰長壽)가 명의 관복(冠服)을 가지고 옴
- 우 왕 13년 6월 : 원(元)의 복제(服制)를 혁신하고 명제(明制)에 따라 관복을 착용
- 태 조 원년 12월 : 관복제도 상정(詳定)
- 태 조 4년 7월 : 명제(明制)의 2급강등례(二級降等例)에 따라 제복(祭服)제도를 제정
- 태 종 10년 8월 :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설치
- 태 종 16년 1월 : 문무관의 조복을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제정
- 태 종 16년 3월 : 제복을 2급강등례에 따라 제정
- 태 종 16년 11월 : 제복을 착용
- 태 종 18년 1월 : 백관이 사모(紗帽)를 착용
- 세 종 8년 2월 : 관료의 조복·제복·공복·상복에 대한 관복제도 완성
- 단 종 2년 12월 : 관료의 상복(常服)에 흉배(胸背)를 제정(『경국대전』에 법제화)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선 관복제도의 완성과정은 조선의 건국과 새 국가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朝服은 大祀, 慶祝日, 元旦, 冬至와 詔勅을 반포할 때, 또는 進表할 때 입는다", "祭服은 왕이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문무백관이 제사에 참석할 때 입는다", "公服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公事 또는 謝恩관계로 拜謁할 때와 지방에 근무하는 文武官이 公席에 참여할 때 입는다", "常服은 평상 집무시에 입는다"

건국세력은 지방의 중소지주출신으로서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을 이념적 무기로 척불론을 전개하여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승리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하였으며, 외교적으로는 친명배원정책을 통하여 자파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건국 이후 이들은 몽고식의 제도에서 탈피하여 한식(漢式)의 제도로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적 이념과 그 이념의 수입원으로서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인 명의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조선전기적 국가통치체제인 '경국대전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복식제도 또한 함께 정비됨으로써 새 국가의 통치구조는 일단 그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나. 官服의 種類와 特徵

(1) 祭 服

제복(祭服)은 조복(朝服)과 구별없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종 16년 1월에 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이 조회(朝會)의 복(服)이 제복(祭服)과 혼동되니 조복(朝服)을 별도로 만들 것을 건의하였고, 이어 허조(許稠)도 문무백관(文武百官)의 조복(朝服)을 '홍무예제(洪武禮制)', 즉 명이 제정한 예제(禮制)에 따라 양관(梁冠)[39]과 의상과 패수(佩綬)를 만들 것을 청하였다. 이에 왕도 예복(禮服)과 상복(喪服)은 가장 중한 일이라고 하며 이를 수락함으로써 그해 3월에는 제복(祭服)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명의 제도를 채용하면서도 명의 그것과는 2등급의 차이를 둔 것으로, 예컨대 조선의 1품은 명의 3품과 동일했던 것이다. 이때의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0]

- 관(冠) : 1품 5양(梁), 2품 4양, 3품 3양, 4·5·6품 2양, 7·8·9품 1양
- 대(帶) : 1·2품 혁대(革帶)는 금(金)을 쓰고, 3·4품 혁대는 은(銀)을 쓰고, 5~9품 혁대는 동(銅)을 쓴다.
- 옥(玉) : 1·2품은 옥(玉)을 쓰고, 3~9품은 약옥(藥玉)을 쓴다.

---

39) 앞 이마에서 뒤로 골이 지게 한 장식이 있는 冠. 중국 漢代의 경우, 公侯는 3梁, 博士는 2梁이 있는 관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漢書』)

40) 『太宗實錄』 16年 3月 30日 壬戌.

- 수(綬) : 1·2품　황록적자사색사(黃綠赤紫四色絲)와　직성운학화금(織成雲鶴花錦)을 쓰고 청사망(靑絲網)으로 맺는다.
  3품은 1·2품과 동일하나 직성반조화금(織成盤鵰花錦)이다.
  4·5·6품은 황록적삼색사(黃綠赤三色絲)에 직성연작화금(織成練鵲花錦)이다.
  7·8·9품은 황록이색사(黃綠二色絲)에 직성계칙화금(織成鷄鶒花錦)이다.
- 수환(綬環) : 1·2품은 금, 3·4품은 은, 5~9품은 동
- 홀(笏) : 1~4품은 상홀(象笏), 5~9품은 목홀(木笏)

이외에 적라(赤羅)로 된 의(衣)·상(裳)·폐슬(蔽膝)과 백초중단(白綃中單)·대대(大帶)·말리(襪履)·잠(簪) 등은 1~9品이 동일

제복제도(祭服制度)는 태조 4년에 고려말에 정해진 원칙을 재확인했던 것으로서 태종 16년에 접어들어 완성되었다. 제복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등재됨으로써 하나의 완비된 체계로서 확정되었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접어들어서도 '오금관(烏金冠)에 검정옷과 푸른 신을 신고 나머지는 조복과 동일한데 곡령(曲領), 방심(方心 : 흰 비단을 사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여[41] 제도상의 변개를 거쳤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19세기까지 기타 공복과 구별되는 형태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朝　服

조복(朝服)은 국가 의식 때 입는 예복 중의 하나로, 양(梁)이 있는 금관과 적초의(赤綃衣)를 갖추어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도 한다. 조복제도는 고려말인 우왕 13년 6월에 명의 제도를 차용하여 개정하였던 것을 조선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조복의 구성은 금관(金冠 : 금비녀에 쪽댕기[藍緌])과 홍의(紅衣)·홍상(紅裳 : 더울 때는 모시깁을 쓰고 추울 때는 비단을 착용), 옥패(玉佩 : 푸른 깁 주머니가 있음), 후수(後綬 : 비단을 쓰며 검은 비단으로 장식), 실띠(絛帶 : 채색실로 짠다), 품정(品鞓 :1품은 犀角, 正卿은 금, 亞卿은 鶴頂을 금으로 하며 3품 이하는 은, 7품 이하는 烏角으로 한다), 폐슬(蔽膝 : 붉은 비단 또는 붉은 깁으로 한다), 상아홀(象牙笏), 흑화(黑靴), 백삼(白衫 : 흰 모시로 만들며 검정 비단으로 동정을 만든다), 붉은 초피모자(紫貂帽 : 당하관은 鼠

41) 『茶山詩文集』 公服議.

皮로 한다), 해치(獬豸 : 사헌부의 신하만이 착용)로 이루어진다.[42]

조복은 각종 국가행사에서 사안별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종 12년 11월에 예조에서 망궐행례(望闕行禮)와 영명례(迎命禮) 이외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건의했으며, 세종 2년과 4년의 하정시(賀正時)에 문무백관들이 조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43]

조복제도도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조복은 제복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요 행사시에 착용하는 예복으로서 양자의 차이는 그리 분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에서 규정된 조복제도는 조선후기까지 관철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65년 중요민속문화재 2호로 지정된 철종조의 참판 심동신(沈東臣)이 입었던 금관조복(金冠朝服)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금관조복은 제복과도 유사한 형태로서 현재 성균관에서 매년 봄·가을에 지내는 문묘제향(文廟祭享)의 제관복(祭官服)과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3) 常 服

상복(常服)은 집무시에 입는 옷으로 공복(公服)과 같으며, 다만 상복에는 흉배(胸背)를 착용한 점이 다르다. 이 상복제도는 고려말 우왕 13년 6월에 차용한 명의 관복제도를 습용(襲用)한 것이다. 조선시대로 접어들어 세종 28년에 흉배(胸背)에 대하여 신하들간에 논의가 있었으나,[44] 단종 2년에 접어들어 양성지(梁誠之)의 상계(上啓)로[45] 그해 12월 의정부에서는 문무관의 상복에 흉배를 달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흉배에서 문무의 차이를 복색에 나타내어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태종 때의 백관제복(百官祭服)에 사용했던 수(綏)의 문양에서도 볼 수 있으나, 정식으로 흉배제도를 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 제도를 살펴보면 '홍무예제(洪武禮制)'에서 2등을 내리는 원칙으로 명의 3품흉배 화양(花樣)을 조선에서는 1품의 화양(花樣)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흉배제도는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 『茶山詩文集』 公服議.
43) 『世宗實錄』 卷18, 4年 10月 23日 丁未.
44) 『世宗實錄』 卷111, 28年 1月 23日 丙寅.
45) 『端宗實錄』 卷12, 2年 12月 10日 丙戌.

- 대군(大君) : 기린(麒麟)
- 도통사(都統使) : 사자(獅子)
- 제군(諸君) : 백택(白澤)
- 문관(文官) : 1품 공작(孔雀), 2품 운안(雲鴈), 3품 이하 백한(白鷴)
- 무관(武官) : 1·2품 호표(虎豹), 3품 이하 웅표(熊豹)

(4) 公 服

공복(公服)은 상복(常服)보다는 의례적(儀禮的) 성격이 짙은 복식이다. 『경국대전』에 보면 공복은 복두(幞頭)에 홀(笏)이 있고, 상복은 사모(紗帽)에 홀(笏)이 없다고 나타나 있다. 이것도 명의 제도를 따른 것이나 2등강등의 원칙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며, 대체로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복제도는 태조 원년 12월에 상정(詳定)되어 이후 공복제도의 골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조 원년 12월에 도평의사사에서 관복(冠服)착용에 대하여 건의하여 이를 수락함으로써 관복제도가 일차적으로 정비되었다.[46] 이때에는 문무관의 관복상에 구체적 특색이 발견되지 않으며, 다만 대체로 품계에 대한 원칙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官品別 公服

品階	衣服	帶	笏	靴
1品	紅袍	犀帶		皂色
2品	紅袍	荔枝金帶		皂色
3品	靑袍	黑角革帶	象笏	皂色
4品	靑袍	黑角革帶	象笏	皂色
5品	靑袍	黑角革帶	木笏	皂色
6品	靑袍	黑角革帶	木笏	皂色
7品	綠袍	革帶	木笏	皂色
8品	綠袍	革帶	木笏	皂色
9品	綠袍	革帶	木笏	皂色

46) 『太祖實錄』 卷1, 원년 12월 12일 戊午.

〈표 3-1〉에서 나타난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품계에 따라 포(袍)의 색이 달랐다. 홍·청·녹의 순으로 홍이 상위의 색, 녹이 보다 하위의 색이 되고 있다. 홍색보다 상위의 색은 황색이었다. 황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그러므로 국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시대에는 황색의 금지령을 자주 내렸던 것이다.[47] 이외에도 회색·옥색·백색 등의 금제가 있었으나 황색 금제와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帶)는 사용된 재료에 의해서 구별하였다. 서대(犀帶), 여지금대(荔枝金帶), 흑각혁대(黑角革帶), 혁대(革帶)의 순으로 상위품계와 하위를 구별하였다. 서대는 서각(犀角)을 상감(象嵌)해 넣은 요대(腰帶)를 지칭하며,[48] 여지(荔枝)는 희귀한 식물의 일종으로 고귀함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금대(金帶)에 이를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대의 소재가 높은 품계로 갈수록 고급이었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의 관료통치구조가 그만큼 계서적(系序的)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홀(笏)은 3·4품 이하만 들었음을 알 수 있고, 다시 재료에 따라 품계를 구별하였다. 즉 3·4품은 상홀(象笏)을, 5품 이하에서는 모두 목홀(木笏)을 들었다.

넷째, 화(靴)는 모두 조색(皁色 : 흑색)이며 품계에 따라 구별이 없었다.

위의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백관복의 원칙은 조선건국과 함께 조선이 새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면서 중앙관료기구의 정비와 함께 성립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5) 武官복제

조선의 건국 이후 복식상으로 문무관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단종 때부터이다. 그 이전은 단지 조복(朝服)에 문무를 구별하는 수(綏)를 달았던 것 같다. 초기의 확실하지 않았던 문무관의 구별은 흉배(胸背) 제정으로 가시적으로 구분되기 시작

47) 金東旭『李朝前期 服飾研究』한국연구원, 1963, pp. 191~196. 黃色禁令에 대한 개별사례는 다음의 실록 기사를 참조할 것.『太祖實錄』卷9, 5年 6月 9日 乙未 ;『太宗實錄』卷1, 1年 4月 10日 戊辰 ;『太宗實錄』卷12, 6年 7月 17日 甲辰 ;『太宗實錄』卷23, 17年 5月 20日 乙巳 ;『世宗實錄』卷3, 1年 1月 9日 甲寅.

48)『辭源』"犀帶 謂腰帶嵌犀也 職官所用"(「吳越志」)

하였다. 흉배제정 역시 명의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를 명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明과 朝鮮의 文武官 胸背

명의 문무관 胸背(홍무 24년 : 1391)

品 / 官	1品	2品	3品	4品	5品	6品	7品	8品	9品
文 官	仙 鶴	錦 鷄	孔 雀	雲 鴈	白 鷴	鷺 鷥	鸂 鶒	黃 鸝	鵪 鶉
武 官	獅 子	獅 子	虎 豹	虎 豹	熊 羆	彪	彪	犀 牛	海 馬

조선의 문무관 胸背(단종 2년 : 1454)

品 / 官	1 品	2 品	3 品
文 官	孔 雀	雲 鴈	白 鷴
武 官	虎 豹	虎 豹	熊 豹

문무관의 흉배는 문관에게 조류(鳥類)로, 무관에게는 맹수를 채택하였다. 새 중에서 공작의 경우 고귀함을, 기러기는 절도를, 백한은 고결함을 상징하였다. 특히 학은 고고한 학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시기가 내려오면서 문관의 관복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영조 때 문관으로서 당상관은 구름과 학을 수놓은 운학(雲鶴)을, 당하관은 백학(白鶴)을 흉배로 사용하였다. 학이 수놓인 흉배를 단 문관을 '학반(鶴班)'이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호랑이는 남성적이고 상무적인 용맹을 나타내고, 용은 국가를 지키는 호국(護國)의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관을 대표하는 동물로 호랑이와 용이 사용된 것이다.[49] 『경국대전』에 수록된 품계에 따른 무관의 복식은 〈표 3-3〉과 같다.

49) 『한국문화상징어사전』 동아출판사, 1992.

〈표 3-3〉

武官 服飾 一覽表

品	官	朝服 服	朝服 冠	朝服 帶	朝服 笏	朝服 玉佩	朝服 襪	朝服 鞋	祭服 服	祭服 冠	祭服 帶	祭服 笏	祭服 玉佩	祭服 襪	祭服 鞋	公服 服	公服 冠	公服 帶	公服 笏	公服 玉佩	公服 襪	公服 鞋	常服 服	常服 冠	常服 帶	常服 笏	常服 玉佩	常服 襪	常服 鞋
正三	折衝將軍	赤緞衣白綃褲單領銀鎧緞	梁三歲木	正三級銀	牙	靑玉	白布	黑皮鞋	靑緞衣赤綃褲心曲領銀鎧緞	梁三歲木	正三級銀	牙	靑玉	白布	黑皮鞋	正三品紅袍靑袍	幞頭	正三品荔枝黑角	牙			黑皮鞋	同上公服胸背熊羆	紗帽	正三級銀				金鞋
從三	建衝將軍	赤緞衣白綃褲單領銀鎧緞	梁三歲木	正三級銀	牙	靑玉	白布	黑皮鞋	靑緞衣赤綃褲心曲領銀鎧緞	梁三歲木	正三級銀	牙	靑玉	白布	黑皮鞋	正三品紅袍靑袍	幞頭	正三品荔枝黑角	牙			黑皮鞋	同上公服胸背熊羆	紗帽	正三級銀				挾金鞋
正四	振威將軍	練緞銀鈒他同上	梁二歲木	素銀	牙	白玉	同上	同上	練緞銀鈒他同上	梁二歲木	素銀	牙	白玉	同上	同上	靑袍	同上	黑角	牙			同上	同上	素銀				同上
從四	昭定將軍	練緞銀鈒他同上	梁二歲木	素銀	牙	白玉	同上	同上	練緞銀鈒他同上	梁二歲木	素銀	牙	白玉	同上	同上	靑袍	同上	黑角	牙			同上	同上	素銀				同上
正五	果毅校尉	綃緞銀鈒他同上	梁二歲木	黑角	木	同上	同上	同上	綃緞銀鈒他同上	梁二歲木	黑角	木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黑角	木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從五	顯彰校尉	〃	〃	〃	〃	〃	〃	〃	〃	〃	〃	〃	〃	〃	〃	〃	〃	〃	〃			〃	〃	〃	〃			〃
正六	敦進校尉	〃	〃	〃	〃	〃	〃	〃	〃	〃	〃	〃	〃	〃	〃	〃	〃	〃	〃			〃	〃	〃	〃			〃
從六	勵勇校尉	〃	〃	〃	〃	〃	〃	〃	〃	〃	〃	〃	〃	〃	〃	〃	〃	〃	〃			〃	〃	〃	〃			〃
正七	迪騰副尉	鴻綬鈒他銅環同上	梁一木歲	同上	同上	同上	同上	衣黑鞋	鴻綬鈒他銅環同上	梁一木歲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綠袍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從七	奮宣副尉	〃	〃	〃	〃	〃	〃	〃	〃	〃	〃	〃	〃	〃	〃	〃	〃	〃	〃			〃	〃	〃	〃			〃
正八	承猛副尉	〃	〃	〃	〃	〃	〃	〃	〃	〃	〃	〃	〃	〃	〃	〃	〃	〃	〃			〃	〃	〃	〃			〃
從八	修壯副尉	〃	〃	〃	〃	〃	〃	〃	〃	〃	〃	〃	〃	〃	〃	〃	〃	〃	〃			〃	〃	〃	〃			〃
正九	效勞副尉	〃	〃	〃	〃	〃	〃	〃	〃	〃	〃	〃	〃	〃	〃	〃	〃	〃	〃			〃	〃	〃	〃			〃
從九	展勤副尉	〃	〃	〃	〃	〃	〃	〃	〃	〃	〃	〃	〃	〃	〃	〃	〃	〃	〃			〃	〃	〃	〃			〃

* 陸軍本部, 1968,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p. 481에서 재인용.

第 2 節 朝鮮時代 各種 軍服飾의 變遷

1. 甲冑의 類型

가. 甲冑의 特徵과 變遷

갑주는 옛 무사들이 적의 궁시(弓矢)나 창검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호신장비의 하나이다.[50] 갑주, 즉 갑옷과 투구는 '개주(介冑)', '개주(鎧冑)' 등으로도 불려진다. 갑(甲)은 '개(介)'라고 불리며, 갑(甲)자의 본뜻은 벌레의 '인개(鱗介)'의 뜻으로 재질에 따라 가죽으로 만든 것은 갑(甲), 금속으로 만든 것은 개(鎧)라고 지칭하였다.[51] 그러나 갑(甲)은 그 재료가 가죽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가 응용되었다.[52] 이러한 갑(甲)은 방호하는 신체의 부위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53]

- 신갑(身甲) : 몸통부분을 보호
- 엄박(掩膊) : 견박(肩膊)부분을 덮어서 몸을 보호
- 흉개(胸鎧) 혹은 흉갑(胸甲) : 가슴부위를 보호
- 호액(護腋) : 양쪽 겨드랑이에 부착
- 퇴군의(腿君衣) : 양쪽 다리의 바깥쪽에 부착

또한 갑옷은 용도에 따라서도 그 제조방법이 상이했다. 보병의 갑옷은 그 길이가 길고 판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병의 것은 길이가 짧고 몸의 동작에 따라 신

---

50) 甲冑에 대한 연구는 이강칠, 1987『韓國의 甲冑』문화재관리국 ; 이미나, 1983「갑옷에 대한 연구」이화여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임영미, 1979「介冑와 軍服과 戎服에 관한 연구」『韓國衣類學會誌』3-1 ; 金正子, 1996『韓國軍服의 變遷史 硏究 — 戰鬪服을 中心으로 —』세종대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등이 대표적이다. 본절은 이들 연구에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다.

51) 王宇清(中華民國六十一年),『中國服裝史綱』(臺灣 : 中華大典編印會), p. 83.

52) 任明美,「介冑와 軍服과 戎服에 관한 연구」『한국의류학회지』7-1, 1979.

53) 王宇清(中華民國六十一年), p. 93.

축이 자유롭게 찰갑(札甲)으로 만들어졌다. 노수(拏手)의 것은 넓고 여유가 있게, 창수(槍手)의 것은 좁고 몸에 맞는 형태로 제조하였다.[54] 갑옷의 부분명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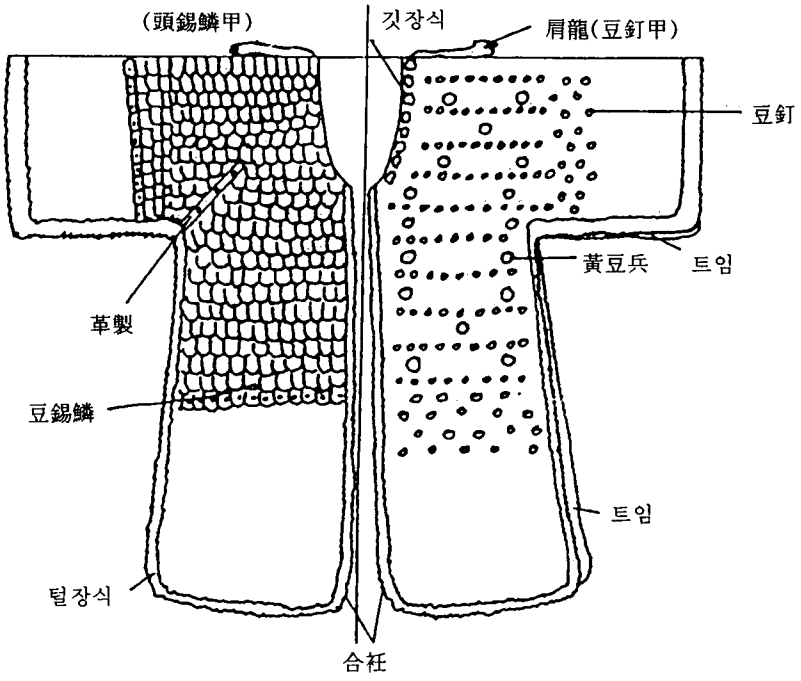

〈그림 3-1〉 갑옷의 부분명칭

주(冑)는 '무(鍪)', '수개(首鎧)', '회(盔)' '무(鍪)', '두무(兜鍪)', '두모(兜牟)'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무인의 전투용 모자의 일종이다.[55] 주(冑), 즉 투구는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의 발(鉢)과 목과 등의 윗부분을 보호하는 목가리개〔鉦〕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구의 세부명칭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갑주는 고려말에 화통도감이 설치된 이후 화약병기가 점진적으로 연구 개발됨에 따라 전술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군복제 또한 이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갑옷은 본래의 목적에서 점차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그

54) 『戎垣必備』 甲冑.
55) 『戎垣必備』 甲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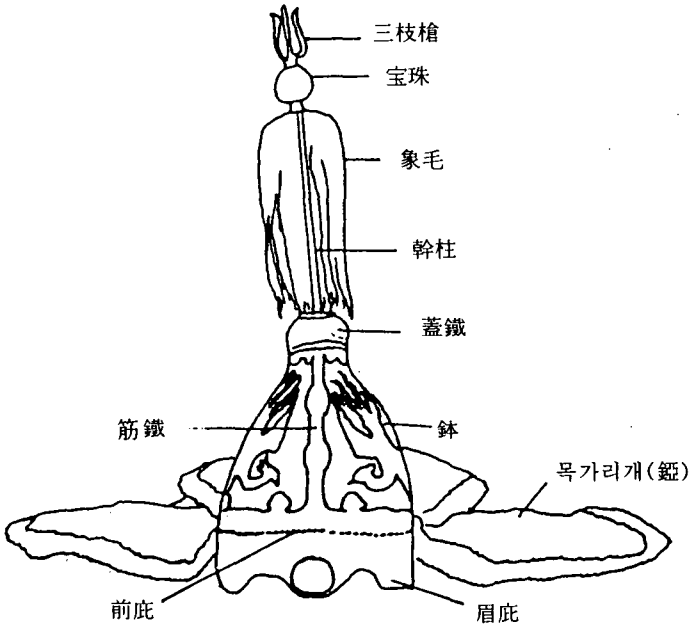

〈그림 3-2〉 투구의 부분명칭

실효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56]

조선시대 갑옷의 제작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의 갑옷제조는 역시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태종 14년(1406) 11월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군기감 부정(軍器監副正) 최해산(崔海山), 판관(判官) 양회(梁淮), 직장(直長) 손군달(孫君達), 녹사(錄事) 윤근(尹謹)을 파직하다. 처음에 최해산(崔海山)에게 명하여 중국의 경번갑(鏡幡甲)을 감독하여 만들어서 장차 각도로 나누어 보내도록 하였는데, 최해산이 스스로 감독하여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57]

이를 통해 볼 때 이 시기의 갑옷은 중국제를 모방, 제조하여 각도의 지방군비를 보강하려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조에게 '각도의 월과(月課) 갑옷은 일

56) 李康七, 1978「韓國의 甲冑」『考古美術』136·137.
57)『太宗實錄』卷28, 14年 11月.

찍이 보낸 견양(見樣)에 의하여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도록 하라. 그중에 법식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58]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나 문종대의 '갑주는 청컨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만들어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모양을 본떠서 만들게 하소서'[59]라는 요청에 대하여 국왕이 상의원(尙衣院) 제조(提調) 정분(鄭笨)과 군기감(軍器監) 제조(提調) 이사임(李思任)에게 명하여 공장(工匠)을 거느리고 정음청(正音廳)에서 중국과 동일한 형태의 갑옷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60]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갑옷의 제조과정은 병조가 각도에 견본을 보내 월과(月課)나 삼명일(三名日 : 임금의 생일, 1월 1일, 동지) 진헌의 형태로 갖추어지게 되었고, 이것의 보관·관리는 각도의 도회소(都會所)에 공장(工匠)을 모아 갑주를 비롯한 각종 무기류를 관찰사, 도절제사로 하여금 검찰(檢察)하여 수리 보완을 기하도록 하였다.[61]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조선전기의 갑옷은 중국의 그것에 적지않게 영향을 받았으며, 국가의 부역노동에 의하여 경·외아문의 소속 장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62] 감사와 병사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제조하고 있는 갑옷만으로는 당시의 군사들이 착용해야 하는 갑주를 모두 공급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군역에 징발되는 군사들로 하여금 갑주를 스스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방상의 재정난을 덜고자 하였던 것이다. 성종 22년(1491) 5월에 영안도 관찰사 허종(許琮)의 보고에 나타난 갑주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63]

"군사가 입는 의복은 통지하여 고찰하되 길이는 짧고 소매가 좁도록 할 것이며 갑

---

58) 위와 같음.
"且命兵曹曰各道月課甲 依會送見樣 堅緻造作 其中不如法者 罪之"

59) 『文宗實錄』 卷4, 卽位年 11月 12日.
"甲冑謂依中朝制度造之 分送各道 使爲摸而造"

60) 위와 같음.
"命尙衣院提調鄭笨軍器監提調李思任 領工匠監造唐體甲于正音廳"

61) 『文宗實錄』 卷2, 卽位年 11月 乙卯.

62) 하지만 임란을 거쳐 18세기로 접어들면 外工匠의 경우 工匠案이 더 이상 작성되지 않고 사역의 필요가 있을 경우 私匠을 고용하거나 필요한 재료를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었다.

63) 『成宗實錄』 卷251, 22年 5月 己卯.

적고리(甲赤古里)는 지금까지는 경차관(敬差官)의 말을 들어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소금물에 4~5번 적시어 사을갑(沙乙甲)의 목을 두르는 슬갑(膝甲)을 만들도록 하고, 말을 탈 때 앞뒤로 막는 것도 또한 종이를 사용하여 위의 것에 의거하여 만들게 할 것."

"걸어다니는 사람이 입는 월노지(月老只)는 모두 스스로 만들게 할 것이며 기병 중에 갖추어야 할 사람도 또한 스스로 만들게 할 것."

"본디 군사가 아닌 사람은 갑옷, 투구, 활 등 모든 군기(軍器)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니 여러 고을에 간직한 원수(元數) 중 1/3을 가려서 주도록 하고, 관청에서 간직한 것이 모자란다면 남아 있는 군사들의 실제 있는 갑옷 투구로써 바꾸어 주도록 할 것."

당시 군역징발의 주요 구성원은 양인 농민이었다. 이들은 군역징발시 자신이 양식을 준비하여 부방하는 한편, 갑옷과 투구를 비롯한 각종 무기류도 손수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다. 무반벼슬의 입사로(入仕路)로서 각종 직업군인들의 경우에는 정도가 덜하였겠지만 당시 국역체제(國役體制)에 편제되어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와 공부의 부담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양인 농민에게는 이와 같은 국가로부터의 의무가 매우 고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부역제가 여전히 대민지배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시책이 건국초기의 국방력 강화와 병력수급책과 함께 계속 강조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왕권과 국방력 강화가 절정에 달했던 세조대의 다음과 같은 병조의 보고를 통해 규지(窺知)할 수 있다.

"일체 대소의 장사(將師), 선전관(宣傳官), 진무(鎭撫), 겸사복(兼司僕)과 여수(旅帥) 등에 이르기까지 임오년 9월 그믐까지 기한을 정하여 기한까지 갑옷을 만들지 못하는 자는 논죄하여 파출하소서. 기한 뒤에 제색 군사(諸色軍士)들은 먼저 피갑(皮甲), 철갑(鐵甲)을 점검한 연후에야 입번(入番)하기를 허락하고 새로 취재(取才)한 사람은 아울러 갑옷을 먼저 점검한 뒤에 입속(入屬)시키며 향화(向化 : 귀화)한 사람은

기한에 두지 않게 하십시오."[64]

위의 기사를 통해 볼 때, 이 시기 정부는 각종 무관을 비롯한 군졸들에 이르기까지 갑옷을 반드시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같은 정책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국방재정의 궁핍함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지 않고 이와 같이 군역담당자에 대하여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었다. 세종 17년(1435) 9월 1일, 병조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요사이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도(道)의 백성의 생계가 염려스러우니 지금 잡색군정(雜色軍丁)의 갑주와 병장기를 조사하되 한꺼번에 다 점검한다면 소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재산을 다 팔아서 반드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니 잠정적으로 매 1호마다 투구 1개, 갑옷 한 벌, 칼 한 자루만 준비하도록 하고, 활과 화살과 창은 반드시 다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1패(牌) 내에 3/5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2/5는 창을 준비하게 하여 정수(定數)로 삼아 점차 준비하도록 하되, 매양 1년씩 걸러 한 가지 물건을 더 준비하게 하고, 준비하면 곧 점검하도록 하되, 감사·도절제사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순행 점고하지 말도록 하고, 다만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점고하도록 하며, 도순검사(道巡檢使)가 지경에 내려가기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십시오."[65]

당시 농민들의 조세나 지대부담 등을 감안할 때 갑주를 스스로 갖춘다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었으며, 정부로서도 이를 인정하고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군역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매우 고역이었고 여기에 갑주를 비롯한 무기류를 자비(自備)하는 것은 적지않은 무게로 농민의 가계를 압박하였던 것이다. 이는 중세 소농민의 비자립성·위약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무리한 것으로서 농민의 파산과 유망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농민의 안정과 농업생산력의 보존을 위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만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

64) 『世祖實錄』 卷25, 世祖 7年 9月 丙午.
65) 『世宗實錄』 卷69, 世宗 17年 9月 11日.

었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 줄 수밖에 없었다.

"가난하여 (갑주와 무기를) 스스로 갖출 수 없는 자는 공가에서 궁시와 갑주를 나누어 줄 것."[6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갑주와 무기를 스스로 갖추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세조대의 기사에서도 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후 '원접군사(遠接軍士)의 의복규정시(衣服規定時) 의갑(衣甲)이 정제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주게 하라'[67]는 기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부역동원의 고중(苦重)함을 고려할 때 갑주와 궁시류를 자비하는 국가의 원칙은 지켜지기에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광해군대에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이 제정되면서 군기의 제조 및 공급은 '수령부담', '자체생산'의 원칙으로 운용되었다. 이때 월과군기의 각읍배정원칙은 그 기준에 읍의 대소에 있지 않았고 대부·도호부·부·군·현 등 관위의 차등에 두어졌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3-4〉와 같다.[68]

〈표 3-4〉에는 갑주에 대한 배정액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다른 군기류에 비하여 갑주의 효용성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갑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표 3-4〉 각읍의 연간 銃丸藥 배정 정액표

種別 / 邑等	鳥 銃	火 藥	鉛 丸(箇)	年總價米(石)
大府·都護府	24	96	4,800	160
府	18	72	3,600	120
郡	12	48	2,400	80
縣	6	24	1,200	40

66) 『文宗實錄』 卷2, 文宗 卽位年 7月 19日.
67) 『世祖實錄』 卷45, 14年 2月 丁巳.
68) 『磻溪隨錄』21 兵制.

"활과 화살·창검·갑주·기치(旗幟)의 등속은 또한 사의(事宜)를 헤아려 규식(規式)을 정한다."[69]

위의 기사를 통해 볼 때 갑주류 또한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에 준용하여 제조와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로 접어들어 점차 본래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서 월과군기가(月課軍器價)를 전적으로 농민에게 부과하였으며, 자체생산을 기피하고 서울의 민간제조업자들로부터 구입·충당하는 실정이었다.[70] 이처럼 '각읍월과군기법'은 비록 월과군기가가 대동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들이 민결(民結)에서 염출하였고, 민간제조업자들이 월과군기가(月課軍器價)를 받고 정기적으로 군기를 제조·납품하는 등 사실상 공물의 방납(防納)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7세기 중엽에 걸쳐 실시된 대동법은 갑주의 수급방식을 변화시켰다. 대동법은 효종 3년(1622) 충청도에, 효종 8년(1657)에 전라도의 연해읍에 그리고 현종 3년(1622)에는 전라도의 산군에, 숙종 3년(1677)에는 경상도에 실시되었다.[71]

정부에서는 효종 3년(1652)에 충청도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관내 각읍의 월과군기가를 대동미에 산입하는 이른바 '각읍월과총약환법(各邑月課銃藥丸法)'을 제정·실시하였다.[72] 여기에서는 삼남의 각읍의 전결수를 기준으로 대·중·중소·소·잔읍 등으로 나누어 분등하였다. 이처럼 전결수를 기준으로 월과총약환을 배정함으로써 각읍월과군기법에서의 불합리한 배정비율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에 준하여 갑주의 제조 및 공급도 '각읍월과총약환법'에 의거, 각읍에 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명일 방물의 형태로 분정된 갑주는 대동법 이후 그에 해당하는 미포(米布)로 징수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중앙의 군문이나 병·수영이나 감영에서 제조하여 상납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길주(吉州)의 예를 들면, '탄일갑주가(誕日甲冑價) 오승포(五升布) 27필 4척·황대구어(黃大口魚) 5미(尾)·동지갑주가(冬至甲冑價) 5승포 27필 4척·황대구어 5미, 정조각종가(正朝各種價) 5승포 3필 21척·황대구어 5미'[73]의

---

69) 위와 같음.
"弓矢槍劍甲冑旗幟之屬 亦量宜定式"
70) 柳承宙, 1993『朝鮮時代鑛業史硏究』高麗大 出版部 p. 191.
71)『新補受敎輯錄』吏典 京官職 宣惠廳
72) 위와 같음.
73)『吉城志』

형태로 분정되었고, 『함산지(咸山誌)』에도 '삼명일(三名日) 방물가포(方物價布)를 분정(分定)한 바에 따라 마련한다'라고 하여 기존에 현물로 수취하던 갑주가 이 시기에 접어들어 미포(米布)로 대납(代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갑주제조의 실태는 훈련도감의 갑주제조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경종 원년 2월, 훈련도감(訓鍊都監)은 군사들의 착용 갑주 수천부가 파손되어 이를 개조하고자 재원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훈련도감에서는 그 재원으로 본래 도감군의 방료(放料)로 쓰던 영남의 7읍소재 삼수미(三手米)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군병의 방료는 호서지방의 보미(保米) 중 진휼을 목적으로 비축한 미곡과 각 읍의 월과화약가미(月課火藥價米)를 선혜청(宣惠廳)으로부터 보조받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74]

영조대의 『고사촬요(攷事撮要)』에 나타난 대전봉진방물수목록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갑주를 비롯한 군기(軍器)의 지역별 분정실태를 알 수 있다.[75]

〈표 3-5〉 『攷事撮要』에 나타난 軍器의 지역별 分定실태

開城府	阿多介1坐
京畿觀察使	鹿皮1張
同水使	結弓獐皮5張
忠淸道觀察使	鐵甲2領, 鐵坪頭具2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2張, 狄磨箭·片箭筒兒具各2部, 三枝鎗·要鉤鎗 各1柄, 長劒·鑌鈀各1柄代弓俗筒箇各1部, 獐皮·鹿皮·豹皮各1張, 畵龍眞墨40丁, 黃毛5條, 剪子3把, 六張付油席·四張付油石各1番, 弓帽6部, 箭帽6部·鳥銃1柄
同兵士	鐵甲1領, 鐵坪頭具1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2張, 狄磨箭2部, 片箭筒兒具1部, 環刀·短劒·要鉤鎗各1柄, 長劒·各1柄代弓俗筒箇各1部, 獐皮·衫兒鹿皮各1張, 剪子3把, 鳥銃1柄

74) 『版籍司謄錄』 景宗 元年 2月 4日(奎 18177)
"訓鍊都監 啓曰 軍兵等所着甲冑類千部 年久破傷 不可不及時改造 以爲陰雨之備 而許多物力 拮据無路 京外各處 從便換買 取贏用事 項已啓達之後 雖欲請換 其路未易 將未免中廢之患 其在軍政 誠甚悶慮 嶺南之嶺底等七邑所在三手米 卽都監軍兵放米斗之資也 換用於甲冑之役 似無所妨 而都監所納湖西保米留賑之代及各邑月課火藥價米 都監方有受來於惠廳者 先以比米那移放料後 嶺底七邑三手米 自都監一從民願 直捧其處 則甲冑巨役 無不萬一之補 而於此於彼 亦甚俱便 故纔已往復相議於該曹矣"

75) 田川孝三, 1964 『李朝貢納制の硏究』, pp. 126~128.

同 水 使	結弓獐皮6張, 鹿皮·獐皮各1張
慶尙道觀察使	鐵甲1領, 鐵坪頭具1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3張, 狄磨箭1部, 片箭筒兒具2部, 環刀三柄, 鎗·長劒各1柄·弓帒筒箇各1部, 要鉤 1柄代弓帒筒箇1部, 獐皮·鹿皮·虎皮各1張, 大紫石硯2面, 中小紫石硯各2面, 剪子3把, 竹梳100介, 梳省15枝, 六張付油席·四張付油石各3番, 二張付油石4番, 鳥銃1柄
同 左 兵 士	鐵甲2領, 鐵坪頭具2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3張, 狄磨箭1部, 片箭筒兒具2部, 環刀·短刀各1柄, 要鉤鎗·長劒各1柄代弓帒筒箇各1部, 獐皮·鹿皮各1張·剪子3把·引導3柄·鳥銃2柄
同 右 兵 士	鐵甲2領, 鐵坪頭具2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3張, 狄磨箭1部, 片箭筒兒具2部, 環刀·短刀·長劒各1柄弓帒筒箇各1部, 獐皮·鹿皮各1張·剪子3把·引導3柄·梳省15枝·鳥銃2柄, 要鉤鎗1柄代弓帒筒箇1部
慶尙道左水使	鹿皮·水獺皮·占察皮各1張
同 右 水 使	鹿皮1張, 弓帒筒箇2部
全羅道觀察使	鐵甲2領, 鐵坪頭具2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2張, 大箭·狄磨箭各1部, 片箭筒兒具2部, 環刀·短劒各1柄, 三枝鎗1柄, 要鉤鎗1柄代弓帒筒箇1部, 1柄代弓 筒箇1部, 獐皮·鹿皮·衫兒鹿皮各1張, 剪子4把, 竹梳60介, 虎皮1張·引導4柄·梳省10介, 冬柏油5升, 六張付油席3番, 二張付油石6番, 鳥銃1柄
同 兵 士	鐵甲2領, 鐵坪頭具2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2張, 大箭·狄磨箭·片箭筒兒具各2部, 環刀·短劒各1柄, 要鉤鎗鑽鈀各1部, 獐皮·衫兒鹿皮各1張, 剪子3把, 引導5柄, 鳥銃1柄
同 左 水 使	鐵坪頭具1頂(軍器寺打造封進), 獐皮·鹿皮各1張
同 右 水 使	鐵甲1領(軍器寺打造封進), 鹿皮1張
濟 州 牧	織毛馬裝1部·織毛馬裝2部代弓帒筒箇4部, 結弓獐皮20張
江原道觀察使	角弓2張·片箭筒兒具2部·三枝鎗·要鉤鎗·鑽鈀各1柄, 結弓獐皮2張, 衫兒鹿皮·虎皮各1張·黃毛10條, 木梳15箇
咸鏡道觀察使	鐵甲1領, 鐵坪頭具1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剪子3把(權咸各道監·兵·水營所封, 只存弓帒筒箇·濟州弓帒筒箇·織毛馬裝)

이러한 갑옷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9세기 남한산성의 군기(軍器) 중 갑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고 있다.[76]

갑주의 종류
- 각양단피갑주(各樣緞皮甲冑) 8부
  - 남대단갑(藍大緞甲) 1부
  - 초록대단갑(草綠大緞甲) 1부
  - 초록광직갑(草綠廣織甲) 1부
  - 초록운문단갑(草綠雲文緞甲) 1부
  - 소단갑(蘇緞甲) 1부
  - 청운문단갑(靑雲文緞甲) 1부
- 성성전갑주(猩猩氈甲冑) 1부
- 수은연주갑(水銀連珠甲) 51부
- 피갑주(皮甲冑) 61부(10부는 없음)
- 사슬갑(砂瑟甲) 90부(29부는 없음)
- 각양철갑(各樣鐵甲) 103부
  - 녹피갑(鹿皮甲) 1부
  - 흑삼승갑(黑三升甲) 49부
  - 피갑(皮甲) 4부
  - 청삼승갑(靑三升甲) 14부
  - 유상갑(有裳甲) 34부
- 엄심갑(掩心甲) 50령
- 각양갑(各樣甲) 249부
- 각양편갑(各樣片甲) 37부(1부는 잃어버림)
- 지갑(紙甲) 5부
- 갑의(甲衣) 41령
- 지의(紙衣) 1222령(22領은 없다)
- 각색주(各色冑) 363부(36부는 없다)
  - 피갑(皮甲) 335부
  - 철주(鐵冑) 28부
- 등두(藤兜) 865부(104部는 없다)
- 주모(冑帽) 82건(19件은 없다)
- 비수(臂袖) 54쌍
- 주상모(冑象毛) 96편(13編은 없다)

76)『南漢志』軍物

이를 통해 볼 때 갑주는 형태나 소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77]

갑옷의 소재를 살펴보면 이 중에서 갑옷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는 겉은 전(氈)이고, 심지로는 솜을 넣는 것으로, 『성호새설(星湖僿說)』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사람이 완전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혹 추운 때에 두터운 솜옷이 속까지 젖으면 얼어죽을 것이 틀림없으므로 군대에는 전(氈)으로 만든 옷이 좋다. 이는 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갑 옷과 철 투구는 탄환을 방어하는 데는 편하지만 보졸(步卒)에게는 불편하다. 그러므로 솜이 제일인 것이다. 따뜻하고 폭신하며 또 비를 막고, 탄환을 막는 데 좋으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78]

이는, 즉 전(氈)을 겉감으로 쓰면 비에 잘 젖지 않고 따뜻하며, 솜은 심지로 넣을 경우 따뜻하여 겨울에 춥지 않을뿐더러 방어용으로도 훌륭하며 다른 단(緞)이나 철, 두석(豆錫)과 같은 재료보다 비용이 덜 들어 경제적인 때문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갑옷의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종이를 들 수가 있다. 종이로 갑옷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를 『성호새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옛 당나라 서유공(徐有功)의 5대손 대중(大中)이 하중절도사(河中節度使)가 되어 정군(征軍)을 배치한 것이 1,000명이나 되었고, 종이로 개(鎧)를 만들었는데 굳센 화살도 뚫지 못하였다. 또 남당(南唐) 이방(李方)이 종이로 갑옷을 만들어 향리의 의사(義士)를 모아서 호를 백갑군(白甲軍)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양성제(楊誠齊)가 말한 '회서(淮西) 백성이 종이로 갑옷을 만들었지만 주(周)의 군사가 여러 번 패한 바 되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개(鎧)는 갑옷인데, 『주례(周禮)』 사갑(司甲)의 주에 '예전에는 가죽으로 만들어 갑(甲)이라 했고, 지금은 쇠로 만들어 개(鎧)라고 한다' 하였다. 대개 종이는 부드럽고 얇은 물건인데 화살이 금과 가죽은 뚫으면서 종이는 뚫지

77) 남한산성에 수장해 놓은 갑주는 이 시기 갑주의 효용성 저하와 경비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南漢志』 軍物)

78) 『星湖僿說』 卷13, 人事門.

못하니 무엇 때문일까? 무릇 총탄도 강한 것은 뚫을 수 있으나 부드러운 것은 뚫지 못한다. 그리하여 총탄이 장막에 둘러진 휘장에 이르면 그 비폭이 흔들리므로 총탄이 그냥 떨어져 버린다. 만약 총탄이 딱딱한 물건에 맞는다면 어찌 뚫고 나가지 못하겠는가? 그 이치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얇은 종이라도 수십 겹으로 갑옷을 만든다면 한 겹을 지나면 또 한 겹이 있으므로 이렇게 수십 겹을 지나는 동안 화살은 힘이 다하고 말 것이다. 만약 굳게 붙여 하나로 된다면 어찌 금과 가죽에 미치지 못할 뿐이겠는가?"[79]

이를 통해 볼 때 성호 이익(李瀷)은 종이로 제작한 갑옷의 견고한 방호효과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이 갑옷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재료와 제작방법을 살펴보면 한 달에 종이 갑옷 10벌씩 제조하여 1년에 1백20벌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재료로 본뜨는 체지(體紙) 1천20근, 이면(裡面)에 쓰이는 표지(表紙)가 1백20권, 엮는 데 쓰이는 면사(綿絲)가 1백20근, 잇는 데〔聯〕 쓰이는 황색 면사가 1백80근, 송지(松脂)가 36두, 전칠(全漆)이 7두 2승이 소용[80]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종이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각종 종이는 조선전기의 경우 각도에 공물로 분정(分定)되어 상납하고 있었다. 즉 별례 공물(別例貢物)로 각도에서 수량을 차등 있게 분정하여 색깔이 비록 깨끗하고 희지 않더라도 품질 좋은 것을 도련(擣鍊)하여서 상납하고, 또 문과식년(文科式年)마다 서울과 각도의 동당감시(東堂監試), 향관시(鄕館試), 회시(會試) 등에서 낙방(落榜)한 시험지는 군기감에 보내어 쓰게 하여[81] 그 방대한 수요를 대고자 하였다.[82]

제조방법은 미늘〔札〕은 종이를 접어서 만들고, 지갑(紙甲)은 사슴가죽을 엮어서 흑칠을 하여 제조하였으며,[83] 후에 길이가 짧고 소매가 좁은 형태의 갑적고리(甲赤古里)는 두터운 종이를 소금물에 너댓 번 담그는 과정을 거쳐서 제조되었던 것이

79) 『星湖僿說』 卷4, 萬物門.
80) 『世宗實錄』 卷24, 世宗 6年 6月 25日.
81) 『世宗實錄』 卷24, 世宗 6年 6月 25日.
82) 紙甲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陳寅에 의하여 그 샘플이 소개되었다. 진인은 지갑의 방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에 적셔서 이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조방법도 먼저 종이를 두텁게 깔고 三升布를 안팎에 붙이고 종이로 만든 노끈을 둥글게 맺어서 개암〔榛子〕 열매 정도의 크기나 밤 크기로 만들어 빽빽히 서로 붙도록 하여 노끈으로 이를 꿰어 옷 안에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宣祖實錄』96,31年 1月 丙午)
83) 『國朝五禮儀』 五禮, 軍禮序禮, 兵器.

다.[84]

고종 연간의 병인양요(1866) 이후에는 면제배갑(綿製背甲)이 제작되었다. 이는 면포에 풀솜〔細綿〕을 몇 겹으로 겹쳐 누빈 후 소총탄환을 방어하게 한 것으로, 일종의 방탄복을 제작한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시험해 본 결과 열두 겹의 두께를 탄환이 관통치 못하였고 결국 열세 겹의 면제배갑이 제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착용하고 훈련이나 실제전투에 임할 때 사지를 움직이기에 극히 불편하였고, 여름철의 경우에는 더위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실효는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85] 이러한 종이갑옷이나 면갑 이외에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각 종류의 갑옷의 제작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86]

- 수은갑(水銀甲) : 쇠로 미늘〔札〕을 만들고 수은(水銀)을 붓고 붉은 가죽끈을 사용하여 엮어 만듦.
- 유엽갑(柳葉甲) : 그을린 사슴가죽〔鹿皮〕을 엮어 만들고 검은 칠을 하여 만듦.
- 피 갑(皮 甲) : 생돼지가죽〔生猪皮〕으로 미늘을 만들고, 그을린 사슴가죽을 엮어 만듦.
- 쇄자갑(鎖子甲) : 철사로 만든 작은 고리〔小環〕를 서로 꿰어서 만듦.
- 경번갑(鏡幡甲) : 쇠미늘〔鐵札〕과 쇠고리〔鐵環〕를 사이사이하여 엮어서 만듦.
- 두정갑(豆釘甲) : 철편과 함께 푸른색 옷이나 붉은색 옷에 점점이 광두정(廣豆釘)을 박아서 만듦.

이들 갑옷 중에 철을 소재로 하여 만든 쇄자갑(鎖子甲)과 경번갑(鏡幡甲)을 제외하면 만드는 데 반드시 피혁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의 미늘을 엮는 데 필요한 제품으로서 갑옷을 입어 오래 되면 가장 먼저 떨어져 못쓰게 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종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죽이 갑(甲)을 꿴 것은 여러 해가 지나면 끊어져 버리니, 또 수선하도록 하면 그 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또, 사슴가죽을 재촉하여 바치게 하는데 그 수도 적지 않다.

---

84) 『成宗實錄』 成宗 22年 5月 己卯.
85)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86) 『世宗實錄』 卷 123, 五禮儀, 兵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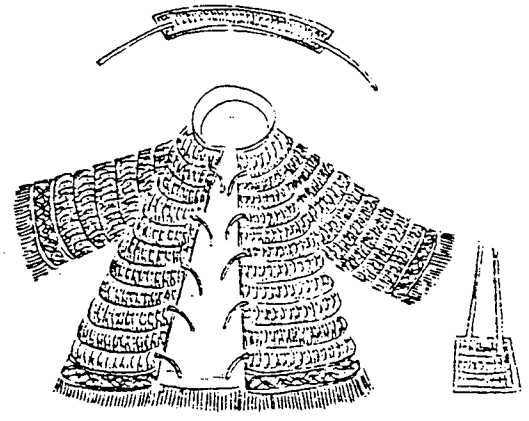

水銀甲



鎖子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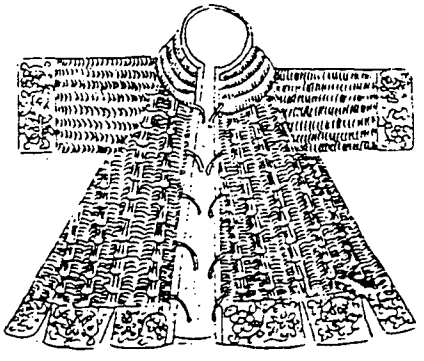

鏡幡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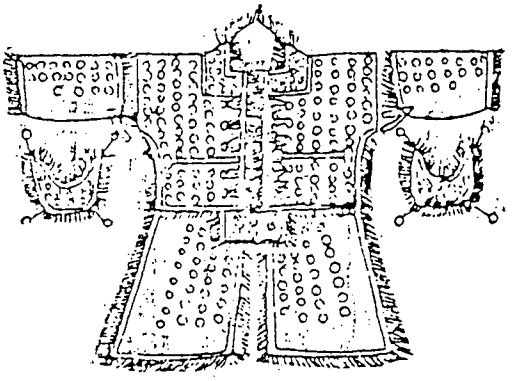

黃豆豆釘甲

〈그림 3-3〉 갑옷의 종류(『世宗實錄』123, 五禮儀兵器)

내가 생각건대 철로 이를 꿴다면 썩지 않고 단단할 것이니 폐단도 따라서 없앨 수 있다."[87]

태종은 피혁 대신에 철로 엮기를 명하는 동시에 이를 실행에 옮기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태종은 '이제 동지에 각도에 바치는 철갑(鐵甲)은 아직도 가죽을 사용하여 짜고 꿰는 것은 실로 온당치 못하다. 이후로는 방물(方物)

87) 『太宗實錄』 卷28, 太宗 14年 11月 癸卯.

도 견양(見樣)에 따라서 만들어 바치도록 하라'[88]고 가죽 대신 철의 사용을 강력히 하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24년(1442) 9월의 병조의 평안도 첩정(牒呈)에 의하면 이를 알 수 있다.

"본도의 연변(沿邊) 각 고을의 의갑(衣甲)은 찢어지고 떨어진 것이 많아서 군장(軍裝)이 허술하니 그 도의 도절제사에게 명령하여 매년 봄·가을의 방어의 일이 끝날 때에 부방군인(赴防軍人)을 알맞게 거느리고 한두 번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을 건너가 사냥을 하게 하여 포획한 짐승의 가죽을 회계에 기록하고 떨어진 갑옷을 보수하게 하였다."[89]

이를 통해 볼 때 갑옷의 보수에 여전히 짐승의 가죽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나마 갑주의 제작에 쓰이는 피혁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갑주제작에 필요한 피혁의 공급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 26년 6월 윤참관 판중추원사 이순몽(李順蒙)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군기감(軍器監)에 군기(軍器)가 해가 오래 되어 관갑(貫甲)의 가죽이 해지고 떨어져서 쓰지 못할 것이 2/3나 됩니다. 전번에 사신 오량(吳良)이 왔을 때에 군사가 갑옷을 받은 것이 부족하였고, 또한 떨어지고 해진 것이 많아서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피혁(皮革)을 반드시 많이 준비하여야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나라에서는 관갑피혁(貫甲皮革)이 희귀하온대 왜인(倭人)은 피혁을 많이 싸 가지고 왔으니 무역하여 저축하여 쓰게 하십시오."[90]

위의 기사를 통해 볼 때 정부는 갑주제작에 필요한 피혁을 일본과의 무역을 통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갑옷의 색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88) 위와 같음.
89) 『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9월 21일.
90)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1월 10일.

고려를 거쳐 조선에 접어들어 억불숭유정책이 국가의 기본통치이념이 되자 무신들에 대한 대우는 고려시대보다도 더욱 열악한 처지가 되었다. 문신은 품계에 따라 까다로운 복색이 있음에 비하여 무신의 그것은 오히려 고려 때보다도 엉성한 체제였다. 무신의 복색에 대하여서는 조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태종 6년(1406) 7월 풍해도(豊海道) 관찰사 신호(申浩)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여러 도의 군사의 예에 따라 청색방의(青色防衣)를 정하였는데, 이것은 수륙군사(水陸軍士)의 군기내 지갑(軍器內紙甲)이 본래 무색이라서 좀먹기 쉽고, 또 만들기도 쉽지 않으니 만약 청색으로 바꾸고, 그 속에 심을 넣으면 접전할 때 창이나 화살이 깊이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동방에 있으므로 청색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91]

갑주, 구체적으로는 지갑이 흰색이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보관하기가 좋지 않고 제작상의 난점도 있기 때문에 청색으로 바꿀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 13년(1431) 3월에는 보패갑사(步牌甲士)들이 착용한 갑주체제가 균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칠한 빛깔이 광채가 없어 임금의 행행 때나 또는 사신을 영접할 때 보기에 부끄러우니 앞으로 갑사가 착용할 두모(兜牟)는 들레〔簷〕가 있는 두모를 택하여 황단(黃丹)으로 칠하고 쇄아갑(鎖兒甲)의 아래 선과 소매는 홍염피(紅染皮)로 이를 장식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92] 또한 시위갑사(侍衛甲士)가 예전 풍습대로 모두 흰옷을 입으니 군사에게 위엄의 빛이 없을 뿐 아니라 흰빛이 본래 길복(吉服)이 아니므로 이후부터 갑옷을 입고 시위할 때 속옷은 아청색(鴉靑色)을 입히도록 개정하기도 하였다.[93] 그리고 철갑은 채백(彩帛)으로 장식하고 지갑(紙甲)은 홍색, 황색, 청색으로 물들이거나 혹은 초나라 사람의 충갑(衷甲 : 평복 속에 갑옷을 입는 것)의 뜻을 써서 겉에는 방위색에 무늬가 있는 옷을 입게 하여 적의 눈에 현혹되도록 하고 군대의 위용을 갖추도록 하였다.[94]

갑옷의 용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갑옷을 착용하는 군사는 대체로 양계지

91)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辛未
92) 『세종실록』 권51, 13년 3월 辛未.
93) 『세종실록』 권51, 19년 9월 甲寅.
94) 『세종실록』 권51, 32년 1월 辛卯.

역의 유방군(留防軍) 및 수성군(守城軍)으로 당번인 자[95]와 각문을 수직하는 군사[96]나 시위제장(侍衛諸將) 등을 들 수 있다. 조회시에도 관원들은 갑주를 착용하였다. 세종 23년(1441) 국왕은 '사복시(司僕寺) 관원과 마땅히 시위할 당상관은 모두 갑옷을 입게 하라'[97]고 하여 중앙관료들은 왕과의 인견석상에서 갑옷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문종 즉위년(1450)에는 운검대호군(雲劒大護軍)을 제외하고 내금위(內禁衛), 충의위(忠義衛), 별시위(別侍衛), 사금(司禁), 비신(備身), 홀배(笏陪), 부책(扶策), 사복관(司僕官) 등과 마땅히 시위할 당상관은 모두 갑옷을 입게 하라[98]고 명해 더욱 조회시의 규모와 체제를 엄중하게 하기 위하여 갑옷이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참(朝參)과 조하시(朝賀時)에는 병조에 입직한 당상과 낭청(郎廳) 각 1원과 도부낭청(都府郎廳)은 모두 갑옷과 투구를 갖추었으며,[99] 사신영접시 내금위, 충의위, 별시위가 갑옷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외에 대열(大閱) 때에 병조판서는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임금이 예를 갖추어 거둥할 때에는 보갑사(步甲士)가 갑옷을 입으며 행수(行首)는 거둥 행렬의 맨 앞에서 보행하고, 평상시에 행차할 때에는 갑사가 평상복의 차림으로 칼을 차고, 행수는 말을 타고 따랐다.[100] 국왕의 사냥시에는 당상 이상은 갑옷을 풀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갑주를 입고, 동대문 밖 안암동에서 사냥을 하였다.[101]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갑옷의 용도는 크게 구별하여 전쟁터에서 입을 때와 실전을 대비하여 훈련할 때에 그리고 의식을 행할 때 착용하였으며 갑옷의 착용대상은 변방의 유방군 및 수성군, 수문장, 내금위, 충의위, 별시위, 총통위(銃統衛), 보갑사(步甲士), 착호갑사(捉虎甲士), 사전관(司傳官), 당상관, 사금(司禁), 비신(備身), 홀배(笏陪), 부책(扶策), 도부낭청(都府郎廳), 병조판서 등이 사료상 확인이 되며, 그외에도 무위를 나타낼 필요성이 있을 때 왕과 관료들 그리고 왕의 친위군은 갑주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갑주는 조선시대의 무기체

95) 『세종실록』 권22, 5년 12월.
96) 『세종실록』 권93, 23년 7월 정유.
97) 『세종실록』 권93, 23년 7월 정유.
98) 『문종실록』 권2, 즉위년 7월 병진.
99) 『성종실록』 권34, 4년 9월 기사.
100) 『세종실록』 권5, 즉위년 8월 14일.
101) 『세조실록』 권34, 34년 10월 9일.

계 및 전술이 변화·발달함에 따라 그 현실적인 효용성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세종대 이래 일다전법(一多箭法)의 성공이나 대형화기인 천·지·현·황포(天地玄黃砲)와 그리고 문종대의 화차(火車)의 발전으로 무기체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선조대에 접어들어 임란을 거치면서 무기체계는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승자총통(勝字銃筒), 소승자총통(小勝字銃筒), 소총통(小銃筒), 조총(鳥銃) 등이 그것이다. 승자총통의 경우, 김지 장군(金墀將軍)이 만든 것으로서 선조 16년(1583) 니탕개(尼蕩介)의 난 때 위력을 떨친 바 있으며, 동왕 21년(1588), 이일(李鎰) 장군이 여진토벌을 수행하면서 화약병기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102] 또한 동왕 26년(1593) 9월 13일에는 이순신이 조총을 제조·보급하였고,[103] 특히 행주산성 싸움에서 권율은 전라소모사(全羅召募使) 변이중(邊以中)으로부터 화차(火車) 40륜(輪)을 지원받아 대승을 이끌어냈다는 사실[104]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무기제조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전술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점차 무기체계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이제까지 개인방호장비로서의 갑주는 실전장비로서의 효용성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개인장비로서 갑옷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105] 결국은 17·18세기로 접어들면서 의전용이나 지휘관의 지휘복화되어 가는 추세였다. 그리하여 점차 투구는 장식이 화려해지고 따라서 갑옷은 속미늘이 제거되며 두정(頭釘)만이 부착되고 있음은 이러한 추세를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106]

나. 甲冑의 種類와 特徵

여기에서는 조선시대의 유물 중 널리 알려진 각종 갑주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석린갑(豆錫鱗甲), 두정갑(頭釘甲), 피갑(皮甲), 쇄자갑(鎖子甲), 면갑(綿甲),

---

102) 李康七 1981「韓國의 甲冑－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中에서－」『放送月報』

103) 李康七 1982「朝鮮孝宗朝羅禪征伐과 彼我鳥銃에 대한 小考」『古文化』10 韓國大學博物館協會刊

104)『望菴先生文集』

105)『승정원일기』682책 영조 5년 4월 8일
"束伍軍裝服色 不成模樣"

106) 鄭忠信(1576~1636) 장군의 頭釘甲이나 李忠武公의 五代孫 李鳳祥(1676~1728) 장군의 갑옷은 그 속 編札이 없는 두정갑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흉갑(胸甲) 등으로 나누어 종류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문헌상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갑주의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1) 豆錫鱗 갑옷

두석(豆錫)이란 놋쇠로서 두석린 갑옷은 두석의 미늘을 연결하여 만든 갑옷으로, 현존하는 것은 원수용(元帥用)인 것 두 점뿐이다.

가) 고려대학교 소장 갑주

○ 투 구

정개부(頂蓋部)는 모두 놋쇠로 만들었는데, 꼭대기의 삼지창(三枝槍)으로 시작하여 그 밑은 당초문(唐草文)이 투조(透彫)된 보주(寶珠)가 사면을 마름모를 장식한 원구와 육각의 타원구에 맞물려 있는 형태이며, 이어서 봉황이 앞뒤로 부조된 원형의 놋쇠판 밑으로 붉은색의 상모(象毛)가 길게 드리워져 있고 동시에 20.5㎝의 간주(幹柱)가 발(鉢)의 윗부분에 당초문으로 장식된 개철(蓋鐵)에 꽂혀 있다. 이 개철의 윗부분에는 5개의 화판(花瓣)이 간주(幹柱)를 중심으로 무늬가 새겨졌는데 그 주위에는 봉황 5마리가 날고 있는 모습이다.

발부(鉢部)는 재질이 가죽제에 흑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장식은 모두 놋쇠를 사용하였다. 형태에 있어서는 전후좌우에 각각 근철(筋鐵)을 늘어뜨렸으며, 이 근철에는 당초문이 투조되고 상하로는 여의두문(如意頭文)에 둘러싸인 원형 안에 만자문(卍字文)이 있다. 그리고 전면의 좌우에는 서로 마주보고 하향하는 두 봉황이 첨부되어 있으며, 후면의 좌우에는 용문양이 구름과 파도를 곁들여 장식되어 있다. 아울러 근철의 사이마다 상단에 3개씩, 하단에 2개씩 여의두문(如意頭文)이 배치되었고, 발(鉢)의 허리 부분에는 당초문과 봉황이 4마리 투조된 띠가 둘러져 있다. 전비(前庇)와 미비(眉庇) 부분을 살펴보면, 챙은 양귀로부터 7개의 모서리를 이루며 앞쪽으로 점차 챙의 넓이를 더해 가는 형태로써 화형에 휩싸인 여의주를 중심으로 용 두 마리가 마주보게 투조하였고, 미비(眉庇)는 산모양으로 정가운데에는 둥근선 내에 '元帥'라 새겨져 있어 원수용임을 입증해 준다. 글자 위에는 여의주가 있고 양옆에는 세 개의 발톱을 가진 용 두 마리가 구름에 휩싸여 여의주를 향해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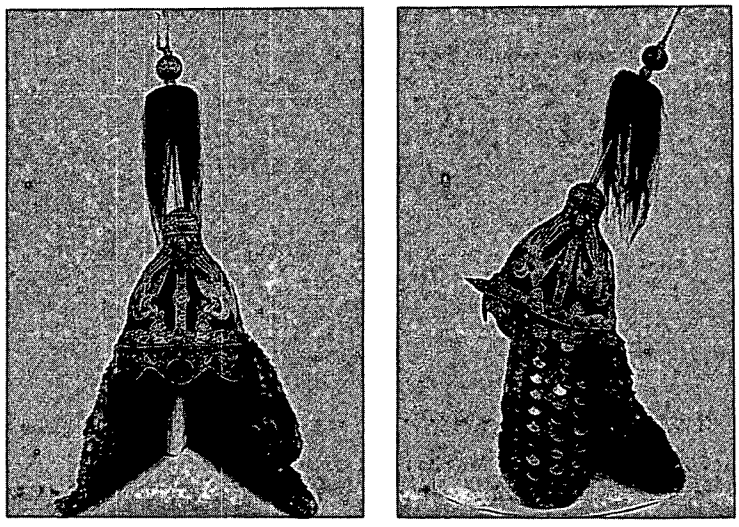

〈그림 3-4〉 고려대 소장 원수용 투구

차게 생동하는 모습이며, 용의 밑에는 물결과 파도가 매우 정교하게 투조되어 있다.

○ 갑 옷

겉감은 홍색 전(氈)에 배·등·상박(上膊)부분에 이르는 중요한 부분은 황·적·흑색으로 도금한 두석린(豆錫鱗)을 작은 못을 박아 붙였고, 나머지 부분은 황두병(黃豆鉼)을 횡으로 고정시켰으며, 그 밑으로 놋쇠장식이 있는데, 전면의 양쪽 길이 중앙부분에는 운학(雲鶴)을 비롯한 장생문(長生紋)과 신선이 고기를 타고 노는 모습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두석린의 각 계선(界線)에는 방형(方形) 두석판(豆錫板)에 꽃무늬를 박았다. 안감은 옥색 명주, 심지는 무명 두 겹을 누벼 두석린을 고정시킨 작은 못을 이 심지에서 마무리지었다.

형태는 깊게 파인 U자형의 깃에 합임(合衽)이며 배래와 양옆 그리고 뒷길 엉덩이 부분 이하가 모두 트인 포형(袍形)이다. 각 트임 계선(界線)에는 수달피를 둘렀고 깃에는 놋쇠로 만든 용을 4등분하여 좌우에 달았는데, 합임부분(合衽部分)에는 용머리를 장식하여 여밀 때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 된다. 어깨의 놋쇠로 만든 용은 머리를 소매 쪽으로 두고 있고 몸통의 중앙부분은 정철(釘鐵)로 연결시켰다. 마지막으로 합임(合衽)부분의 단추는 머리를 조각하여 첨부하였다.



〈그림 3-5〉 고려대 소장 豆錫鱗 갑옷

나) 慶州府尹 갑주[107]

○ 투 구

정개부분(頂蓋部分)은 간주(幹柱)만이 당초문(唐草文)으로 장식된 개철(蓋鐵)에 꽂혀 있을 뿐이다. 발부(鉢部)는 전후좌우에 근철(筋鐵)이 늘어져 있고, 전면의 좌우에는 용이 여의주를 향하여 꼬리를 하늘로 뻗치고 있고, 후면에는 좌우로 봉황이 여의주를 향하여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한편, 목가리개 가장자리에 있는 털장식이 하얀 토끼털로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갑 옷

고대박물관 소장의 것에 비하여 덜 파인 단령의 깃에 검정색 전(氈)을 달았던 것으로 보이며, 깃 주위의 모란장식은 거의 떨어져 나가 몇 개 보이지 않는다. 합임부분에는 위아래 모두 해태머리 장식 두 개를 달았으며, 전면의 배부분 이하 두

107) 이 갑주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깃과 장신구가 약간 파손되긴 하였으나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으로 고려대학교 소장 갑옷에 비하면 장식면이나 정교함에서는 뒤떨어지지만 그 형태와 재질면에서는 매우 흡사하므로 그 차이점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정(豆釘)을 박은 중앙에는 해태가 좌우로 부착된 듯하나 좌측 길에만 남아 있다.

(2) 豆釘甲

가) 李鳳祥(1676～1728) 장군 龍鳳元帥文頭釘甲冑[108]

1) 元帥用 甲冑

○ 투 구

정개부(頂蓋部)는 모두 탈락하였다. 발부(鉢部)의 형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차 넓어지는 모양이다. 재질은 여러 겹의 종이를 덧발라 겉과 안 모두 흑칠을 하여 매우 윤택하다. 전후좌우에는 놋쇠로 만든 근철(筋鐵)이 4개 있는데, 꼭대기의 개철(蓋鐵)이 없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근철마다 상하에 여의두문(如意頭文)에 둘러싸인 원선(圓線)이 있어 근철을 삼등분하고 있는데, 특히 전면의 것에는 나는 학과 만자문(卍字文)이 투조되어 있고 나머지 좌우후면의 근철에는 위쪽의 원선(圓線) 내에는 사엽문(四葉文)을, 아래쪽에는 만자문(卍字文)을 투조하였다. 근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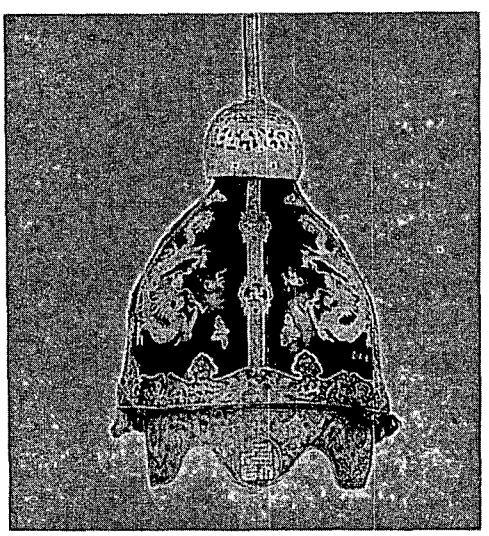

〈그림 3-6〉 원수용 투구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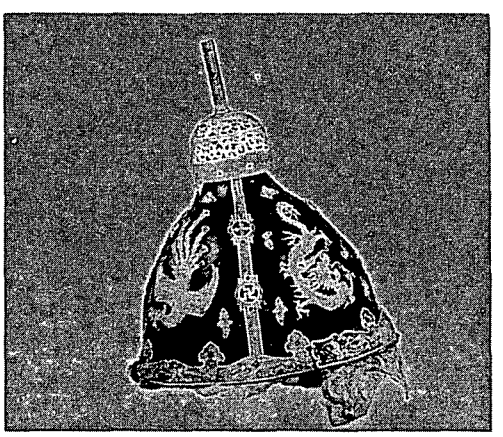

〈그림 3-7〉 원수용 투구 옆면

108) 현재는 육군사관학교내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元帥, 副元帥用의 두 종류가 있다.

그밖의 삼등분된 세로 폭에는 매화, 여보(女寶), 호로병, 구름, 꽃무늬 등이 번갈아 가면서 양각되어 있다. 이외에 하단을 둘러싼 4개의 근철을 마무리하는 대선(帶線) 역시 전면에는 봉황과 학이 두 마리씩, 후면에는 용의 모습이 있고 여의두문이 앞뒤로 4개씩 즉 근철마다 2개씩 솟아 있는데, 여의두문 안에는 매화를 한 송이씩 배치하였다.

발(鉢)에는 전후로 용과 봉황이 장식되어 있다. 그 전면의 좌우로는 꼬리를 하늘로 뻗친 발톱 세 개 달린 용이, 후면의 좌우로는 봉황이 대칭으로 나타나고, 여의주를 향하면서 주위에는 구름이 장식되어 있다.

전비(前庇)는 있던 흔적만을 보이고 있고, 미비(眉庇)는 산모양으로 정가운데에는 원선(圓線) 내에 '元帥'라 새겨져 있어 계급을 표시하고 있다. 그 주위로는 가운데의 여의주를 향해 화염에 휩싸인 용이 좌우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목가리개 역시 그 흔적만 보일 뿐 남아 있지 않다.

○ 갑 옷

형태는 깊게 파인 U자형 깃에 직배래이며 뒤가 트인 합임식(合衽式)의 포형(袍形)이다. 겉감은 홍색단이나 옷감의 털도 빠지고 군데군데 해어진 부분이 많다. 안감은 도톰한 푸른색 명주이다. 심지는 발이 굵은 흰색 무명 두 겹을 누볐고 앞·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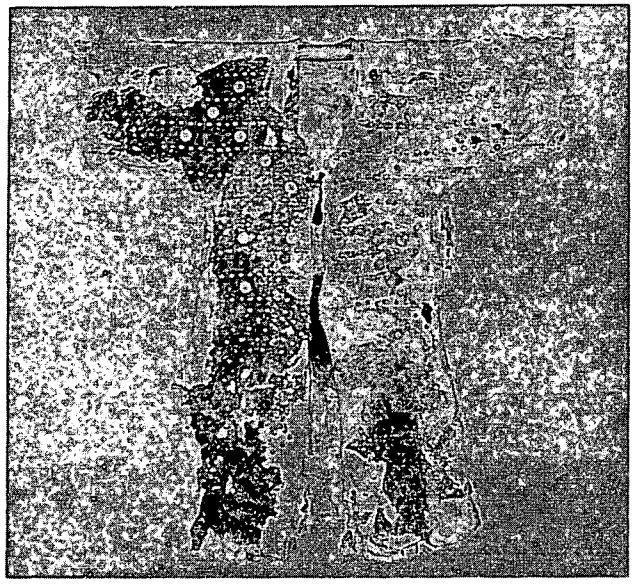

〈그림 3-8〉 이봉상 장군 원수용 갑옷

길은 거단(裾段)에서 약 67㎝ 이르는 곳까지 소매는 진동까지 4.5×6.5㎝의 무쇠 철편(鐵片)을 겉에서 횡선으로 나타나는 놋쇠로 만든 두정(頭釘)으로 이곳 심지에서 마무리해 덧대었다.

이들 겉에서 횡선으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두정(頭釘)은 작은 것은 횡선으로 하복부에 이르기까지 고루 박았으나 큰 것은 횡선 사이마다에 드문드문 박았고, 하복부 이하의 부분은 작은 두정을 이용해 장식을 목적으로 박은 듯하다.

2) 副元帥用 頭釘甲冑

○ 투　구

정개부(頂蓋部)는 개철(蓋鐵)과 간주(幹柱)꽂이만이 남아 있다. 개철은 가운데 간주꽂이를 중심으로 하여 화판이 둘려 있고 그 아래로는 당초문을 투조하여 도금하였다. 발부(鉢部)의 재질은 원수용과 같이 종이를 여러 겹 덧발라 흑칠을 하였으며 장식물은 놋쇠로 되어 있다. 형태는 위는 좁고 아래로 퍼지는 형인데, 전후좌우에는 근철을 세웠고 각각의 근철 사이마다에는 하단에 도깨비문양의 두상을 2개씩 배치하였다. 전비(前庇)는 있던 흔적만이 보일 뿐 떨어져 나갔고, 미비(眉庇)는 중앙에는 부원수용임을 상징하는 문자가 원선 내에 양각되었고 그 위로 화염에 휩싸인 여의주가 있으며 좌우에서 발톱이 네 개 달린 용 두 마리가 구름과 함께 투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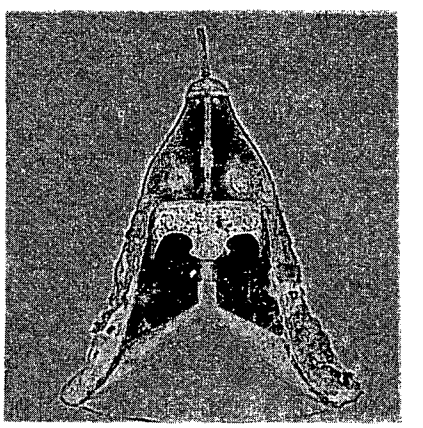

〈그림 3-9〉 이봉상 장군 부원수용 투구

목가리개는 좌우후면 세 가닥으로 재질은 갑옷과 같다.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대선(帶線)은 발부(鉢部)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운용문(雲龍文)이 양각되었고 작은 못을 사용해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 갑　옷

형태는 깊게 파인 U자형 깃에 직배래이며 합임식인 포형(袍形)으로, 깃에는 흑색명주를 4㎝ 너비로 달았는데 우측의 상단은 떨어져 나갔다. 재질로는 겉감은 붉은 색모인데 거의가 해어져 앞길은 우측길 상단과 좌측길 어깨부분만이 뒷길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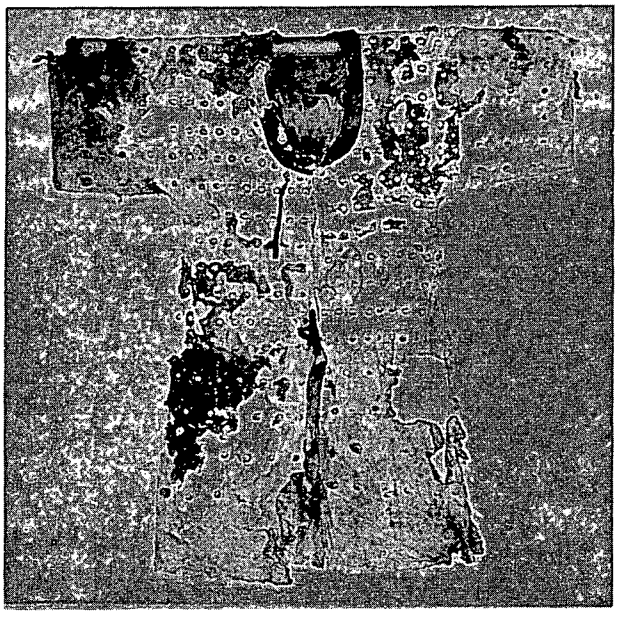

〈그림 3-10〉 이봉상 장군 부원수용 갑옷

측만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안감은 청색 무명이며 심지는 발이 굵은 백색 무명을 두 겹 누볐으며 그 위에 창호지를 덧대고, 그 위로 다시 무쇠철편을 앞·뒷길의 거단에서 50㎝ 이르는 곳까지, 소매는 진동선까지 부착시켰는데 겉에서 횡선으로 황두정(黃豆釘)을 박아 고정시켰다.

나) 鄭忠信(1576~1636) 장군 頭釘甲冑

정충신의 갑주는 인조 8년(1630) 5월 11일 당시 수군부원수로서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 : 1580~1637)와 함께 가도(椵島)의 난을 진압하러 출발할 즈음 인조가 궁시(弓矢) 및 검과 함께 하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 투 구

재질은 나무로서 형태는 위는 좁고 아래로 퍼지면서 첨(簷)이 있는 벙거지 형태의 국내 유일의 투구이다. 이와 형태가 비슷한 철제투구로서 병자호란 당시 강화 갑곶진(甲串鎭)에서 청군과 싸우다 전사한 황대곤(黃大坤)의 것이 있다.

전체적으로 목리문(木理文)이 뚜렷이 있을 뿐 아무런 장식이 보이지 않으며, 정개(頂蓋)부분에 장식이 있었던 흔적이 보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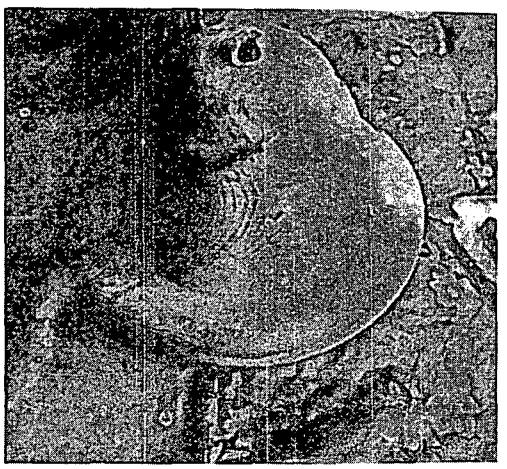

〈그림 3-11〉 鄭忠信 장군 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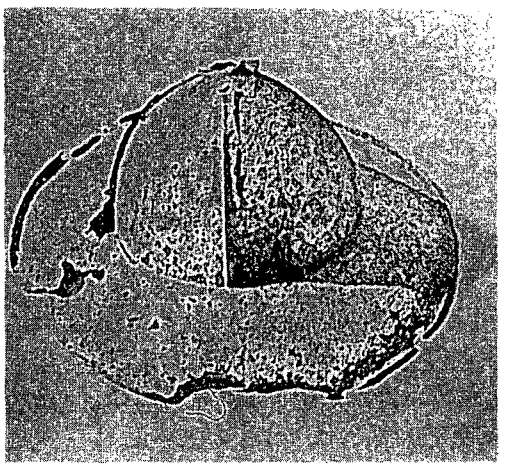

〈그림 3-12〉 黃大坤 투구

○ 갑 옷

형태는 약간 둥그스름한 방형(方形)의 목선에 섶과 무를 달아 두루마기〔周衣〕의 깃과 같은 포형(袍形)으로서, 전투목적을 고려하여 뒤에 트임을 하여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겉감은 황색 운문단(雲文緞)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자황색(赭黃色)으로 구름이 장식된 운보단(雲寶緞)이며 심지는 무명 세 겹을 누볐다.

이밖에 어깨에는 견철(肩鐵)을 뒷중심선을 기점으로 19.5cm되는 곳에 달았다. 이는 앞부분의 3.6cm 되는 곳에 경첩장치를 하여 접혔다 폈다 할 수 있도록 하며, 몸통부분은 구멍을 뚫어 끈목으로 고정시켜서 어깨의 늘어짐을 방지하는 동시에 동작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1) 忠烈祠 소장 갑주

㉠ 東萊府使 갑옷[109]

○ 투 구

정개부(頂蓋部)를 살펴보면 놋쇠로 만든 삼지창은 한쪽 창끝이 떨어져 나갔고

109) 이 갑옷은 원래 부산대박물관에 소장하였다가 충렬사 정화계획에 의하여, 충렬사기념관으로 관리, 전환된 것으로 임란 당시 동래부사로서 성과 운명을 같이한 忠烈公 宋象賢의 제사 때 후대의 東萊府使가 착용했던 것이다.



〈그림 3-13〉 정충신 장군 갑옷

그 밑으로 4면이 마름모꼴로 장식된 구형의 보주(寶珠)와 육각형의 원형장식에 이어서 동그란 놋쇠판에 붉은 상모(象毛)가 드리워졌고 동시에 간주(幹柱)가 당초문(唐草文)으로 장식된 개철(蓋鐵)에 꽂혀 있다. 발부(鉢部)는 종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흑칠을 한 것인데 장식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졌다. 전후좌우에 근철(筋鐵)을 늘어뜨려 네 부분으로 나누었고, 근철의 중앙부에는 각각 만자문(卍字文)이 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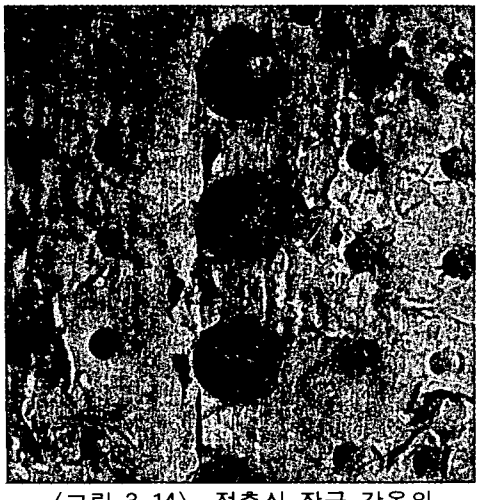

〈그림 3-14〉 정충신 장군 갑옷의 뒷중심선 頭釘



〈그림 3-15〉 정충신 장군 갑옷의 肩鐵

되었다. 앞면은 근철을 중심으로 좌우에 용이 꼬리를 하늘로 뻗치고 머리는 근철을 향한 채로 대칭하고 있으며, 뒷면은 봉황이 대칭하고 있다.

발(鉢)의 밑부분을 둘러싼 근철은 당초문이 새겨졌는데 크고 작은 여의두문을 장식하였다. 전비(前庇)와 미비(眉庇)는 놋쇠로 만들어졌고, 전비는 일곱 개의 각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당초문을 투조하였다. 미비는 산모양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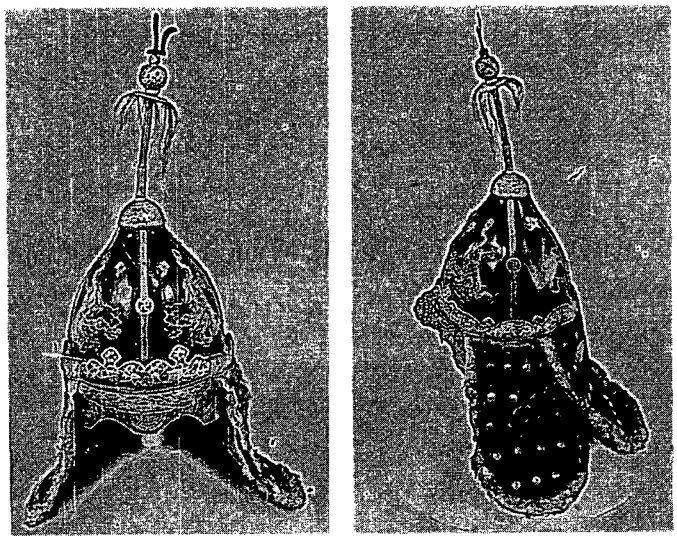

〈그림 3-16〉 동래부사 투구

○ 갑 옷

겉감은 홍전(紅氈)이며 안감은 옥색 명주이고 심지는 무명을 누볐으며, 깃과 소맷부리, 앞선과 밑단, 양옆, 뒷트임의 테두리에는 털을 장식하였다.

두정은 앞뒤에 각각 횡선으로 박았는데, 앞길의 중간에 각각 1개씩의 황두병(黃豆兵)을 장식하였고 앞길의 좌우에 각각 탄선(綻線)을 두 줄씩 박고 맨 밑부분엔 십자형으로 마무리지었는데 뒷길도 동일하다. 견룡(肩龍)은 우측어깨에만 남아 있다.

㉡ 多大鎭 僉使 갑주[110]

○ 투 구

재질과 형태 모두 동래부사의 것과 동일하며 정개부분(頂蓋部分)이 떨어져 나간

110) 다대진 첨사 갑옷은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임란 당시 다대진 첨사로 공을 세운 尹興信(?~1592)의 제사 때 後代의 多大鎭 使들이 착용했으며 원래는 부산시에서 소장했던 갑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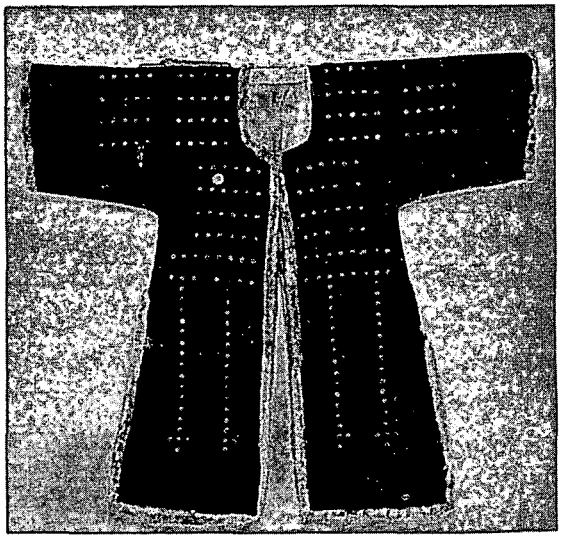

〈그림 3-17〉 동래부사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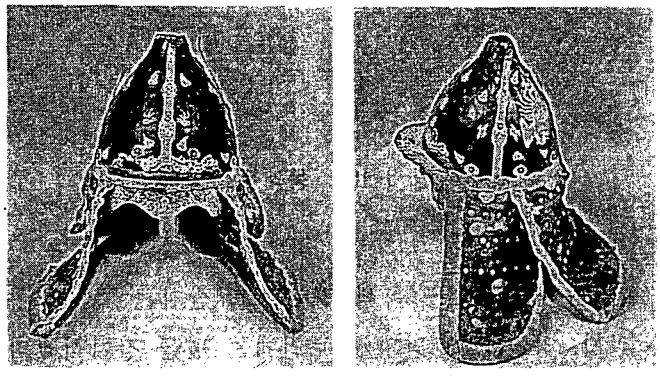

〈그림 3-18〉 다대진 첨사 투구

상태이다.

○ 갑 옷

겉감은 홍전(紅氈)이고 안감은 옥색 명주이며 심지는 무명을 누볐는데 그 위에 다시 철편(鐵片)을 달았다. 그리고 앞길의 여밈부분과 아랫단 양옆과 배래 소맷부리 등 트임의 테두리에는 모두 털을 달았다. 형태는 동그랗게 파인 깃에 합임식(合衽式)이며 양옆과 배래도 겨드랑이만 2㎝ 남기고 모두 트인 포형(袍形)이다.

두정(豆釘)은 위에서부터 횡으로 6㎝ 간격을 두고 10줄을 박았으며, 줄 사이마

디에는 황두병(黃豆兵)을 두 개 혹은 한 개씩을 장식하였는데 엉덩이 이하는 드문드문 문양을 넣었고 우측 길 아래의 중간부분에 윤보(輪寶)를 장식한 듯하고, 깃 주위에는 꽃무늬 장식의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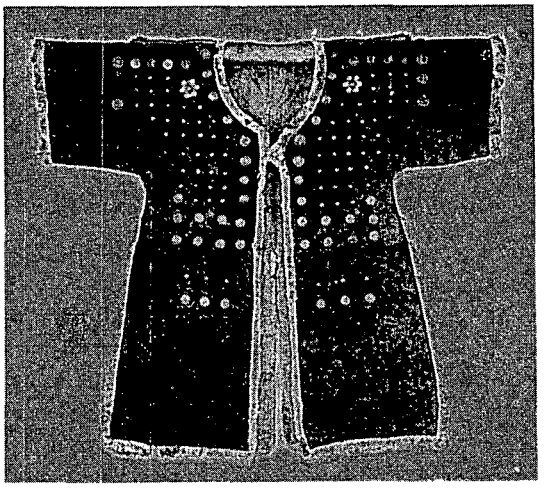

〈그림 3-19〉 다대진 첨사 갑옷

㉣ 釜山鎭 僉使 갑주[111]

○ 투 구

충렬사 소장의 다른 투구들과 동일한 재질, 형태인데 다만 장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개부(頂蓋部)와 발부(鉢部) 상단의 개철(蓋鐵)은 탈락되어 없어진 상태이며, 근철의 장식이 다른 투구들은 만자문만 투조된 데 비하여 상하로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발(鉢) 하단의 근철도 당초문(唐草文)이 투조되었는데 역시 군데군데 탈락되었다. 전비(前庇)도 탈락되었고 산모양의 미비(眉庇)만 있을 뿐이다. 목가리개는 다른 투구의 경우, 거의가 갑옷의 겉감과 색깔이 동일한 데 비하여 이 투구는 홍색전(紅色氈)으로 갑옷(청색)과 다른 점이 특이하다.

111)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임란 때 釜山鎭 僉使로 功을 세우고 전사한 鄭撥 將軍의 祭祀 때 후대의 釜山鎭 僉使들이 착용했던 갑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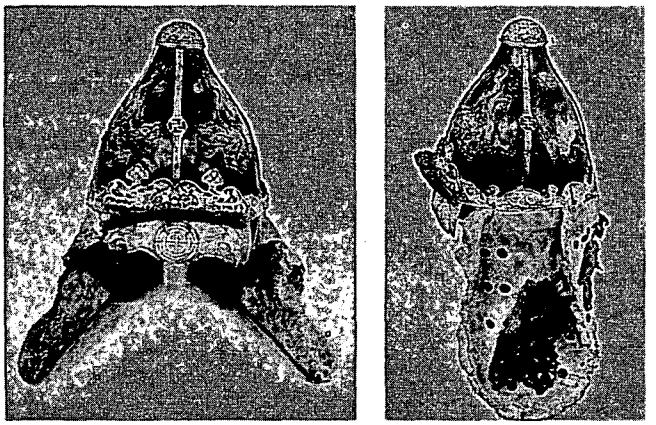

〈그림 3-20〉 부산진 첨사 투구

○ 갑 옷

겉감이 청전(靑氈)이고 안감은 옥색 명주이며 심지는 무명을 누볐는데 깃과 앞여밈선 아랫단과 옆트임, 소맷부리 등엔 털을 둘렀다. 형태는 동래부사와 같은 포형인데 색과 두정(豆釘)의 못을 박는 방법이 다르다.

두정(豆釘)은 매우 단정한 느낌이 들도록 박았는데 횡선으로 위에서부터 4.5cm 간격으로 11줄을 박은 후에 10cm 아래로 다시 4줄을 박았는데 위에서 6째, 7째 횡선 사이에는 황두병(黃豆兵)을 1개씩 박았다. 견룡(肩龍)은 좌측에만 부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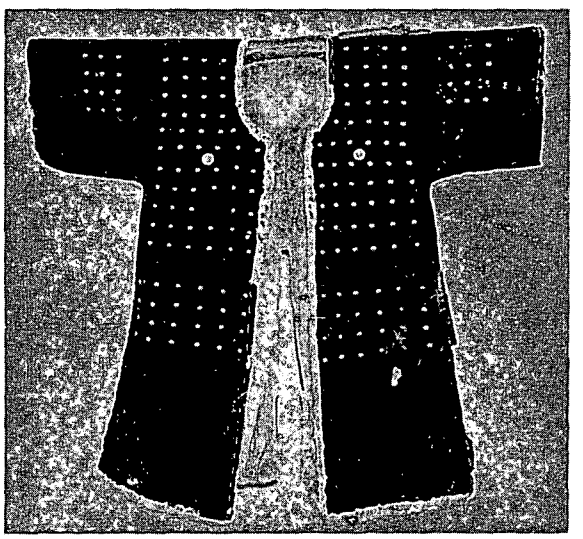

〈그림 3-21〉 부산진 첨사 갑옷

2) 국립민속박물관 갑옷[112]

겉감은 선명한 홍전(紅氈)이며 안감은 북청색 운보단(北靑色雲寶段)을 댔고 심지로는 백색 무명 한 겹으로 속을 받치고 그 아랫단에 45×5.5㎝의 동편(銅片)을 박았는데 동편의 정가운데에는 복주머니, 윤보(輪寶), 선보문(扇寶紋)을 양각한 후 옻칠을 하여 미늘식으로 연철(連綴)하였는데 한줄은 두 개의 못으로 좌우에, 또 한줄은 중앙에만 고정시켰고, 한편 어깨에는 편찰(片札)이 팔 쪽으로 쏠려 겹치게 함으로써 상하로 두 개의 못을 고정시켰는데, 겉의 두정(豆釘)과 모두 연결되어 마무리져진 상태이다. 또한 깃에 연이은 여밈의 가장자리와 아랫단, 옆트임, 소맷부리는 모피로 처리하였다.

형태는 단령의 깃에 합임식(合衽式)이며 양옆과 뒤가 트인 포형(袍形)이다. 깃의 모피 주위에는 택사엽(澤瀉葉) 장식이 둘러져 있으며 앞길에 두정이 횡으로 8줄, 3줄씩 번갈아 가면서 21줄이 앞길에 박혀 있고, 소매에는 역시 횡으로 4개씩 9줄을 박았다. 엉덩이 이하의 앞길에는 십자형으로 좌우 2줄씩 박았으며 그 사이에는 꼬리를 하늘로 뻗친 오조룡(五爪龍)이 화형문과 구름모양에 휩싸인 여의주를 바라보고 좌우로 대칭하고 있다. 한편 뒷길에는 엉덩이 부분 중앙에 좌우로 놋쇠로 호랑이를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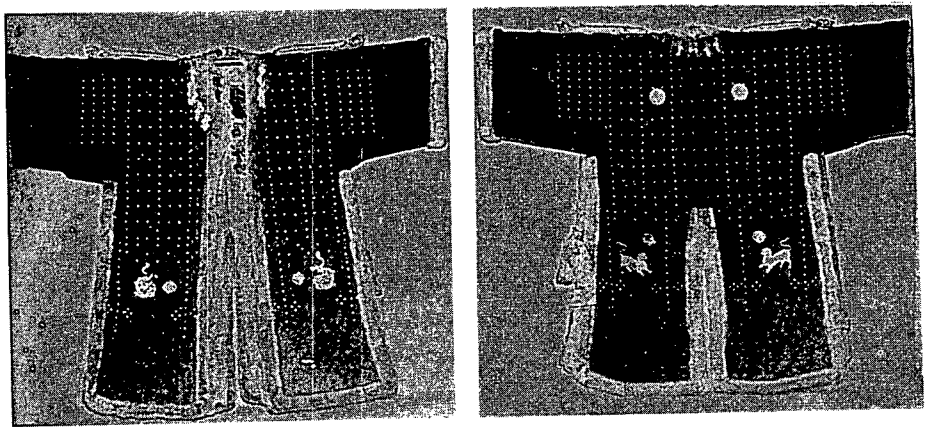

〈그림 3-22〉 국립민속박물관 갑옷

112) 이 갑옷은 1968년 8월 9일 서울에서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 갑옷이 누구의 것이었으며 또한 어느 계층이 착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투구는 없이 갑옷만이 남아 있는데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태도 현존하는 우리나라 갑옷 중 가장 좋은 편이다.

3) 昌德宮 소장 갑옷

투구는 없고 갑옷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겉감은 홍색 전(氈)이고 안감은 청색 명주이며 심지는 흰색 무명을 받쳐 겉에서 박은 두정을 처리하였고 의령(衣領)에 연이어 합임(合衽)부분과 단, 옆트임, 소맷부리에는 청색 전(氈)으로 안까지 곱게 바이어스로 둘렀다. 형태는 단령깃에 합임이며 양옆과 뒤가 트인 포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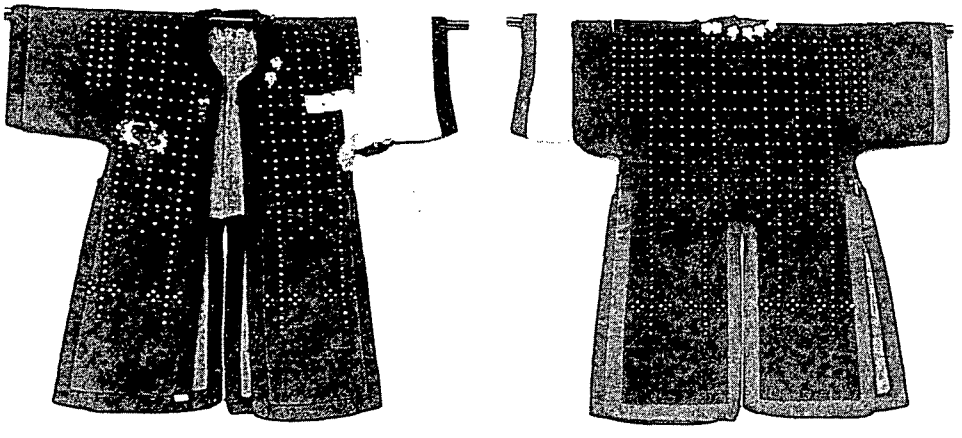

〈그림 3-23〉 창덕궁 소장 갑옷

(3) 皮 甲

피갑에는 주로 소가죽 또는 돼지가죽이 주원료로 사용되었다. 세조 때 저피갑(猪皮甲)을 삼명일(三名日 : 왕의 생일, 1월 1일, 동지의 세 명절)의 방물(方物)로 거두고자 하였으나 돼지의 생산이 제한된 까닭으로 저피값이 상승되어 저피갑을 혁파하여 달라는 지방관의 요청을 받은 것[113]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전기에는 공물의 형태로 지방관이 책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皮甲冑

○ 투 구

정개부(頂蓋部)는 놋쇠로 만든 반타원형의 개철(蓋鐵) 위에 철제의 간주(幹柱) 꽂이만이 남아 있고 다른 장식은 남아 있지 않다. 발부(鉢部)의 소재는 이중으로

113) 『世祖實錄』 卷17, 4年 8月 28日 丁卯.

된 가죽에 흑칠을 하였으며 그밖의 장식물은 모두 놋쇠이다. 형태는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형으로 전후좌우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근철이 늘어뜨려져 있고 하단에 둘러진 대선(帶線)에는 근철 사이마다 여의두문을 2개씩 배치해 놓았다.



〈그림 3-24〉 皮甲冑 중 투구
(육군박물관 소장)

전비(前庇)는 놋쇠로서 5각으로 되어 있는데, 발(鉢) 하단의 근철에 대고 고정시킨 곳은 삼등분을 하여 여의두문을 그리고 그 사이마다에는 두 개의 능선(稜線)을 표시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목가리개는 좌·우·후면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의 끝부분은 둥글게 하여 앞에서 매거나 뒤로 젖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鉢) 하단에 고정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처럼 대철(帶鐵)을 덧댄 것이 아니라 편찰(片札)을 고정시키는 두정(頭釘)을 이용하여 그대로 천 위에 대고 박았다. 재질은 자황색면(赭黃色綿)으로 겉감을 썼고 안감은 담청색면(淡靑色綿), 심지로는 백색 무명을 대서 그 위에 소가죽의 편찰(片札)을 덧대었다. 그리고 매가닥의 가장자리는 겉감으로 바이어스 처리해 둘렀다.

○ 갑 옷

이 갑옷은 면제품으로서 형태는 백피(白皮)를 곱게 두른 둥근 목선에 합임(合衽)이면서 배래를 비롯한 양옆과 뒤가 모두 트인 포자형(袍子形)이다.

재질은 겉감으로 자황색 면직(赭黃色綿織)인데 도장으로 찍은 듯한 검은색 원형의 커다란 무늬가 군데군데 찍혔으며, 안감은 담청색 면직이고 심지로는 백색 무명을 넣었다. 안감 위에 3겹의 소가죽으로 된 10×7.2cm 정도의 장방형 편찰(片札)을 연철하여 표면에 나타난 두정(頭釘)으로 고정시켰는데, 소매의 상박부(上膊部)에 미치는 편찰은 폭을 좁게 하여 연철시킴으로써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정가운데의 합임처(合衽處)에는 편찰 4개를 종으로 부착시켜서 좌우 길의 여밈부분에서 생기는 공간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 한편 어깨에는 견철(肩鐵)이 붙어 있는데 장식이 없다. 그리고 배래와 양옆의 트임에는 구형의 놋쇠단추를 배래기에 2개, 양옆에 2개씩 달았으며 가운데의 합임처(合衽處) 역시 같은 단추로 하여 목선에 이어 2개를 달았다.



〈그림 3-25〉 皮甲 片札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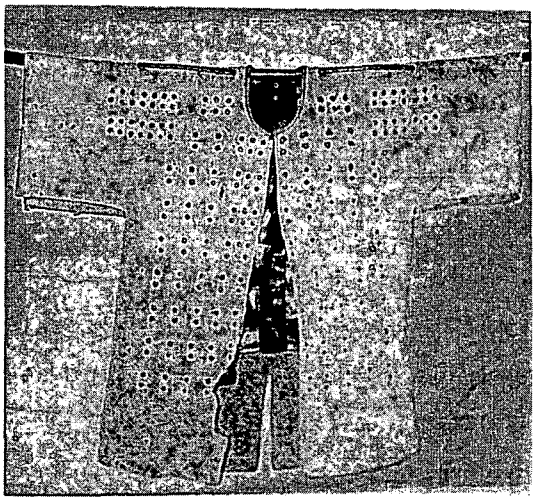

〈그림 3-26〉 皮甲 앞면

나) 皮 甲

형태는 U자형으로 둥글린 목선에 소매의 길이가 다른 갑옷보다 약간은 짧으면서 직배래이며, 배래기는 모두 텄는데 이어서 양옆 또한 터서 앞길과 뒷길의 연결은 배래에 단추 2개, 겨드랑이에서 약간 내려온 곳에 1개를 매듭고리와 함께 달아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트여 있다. 여밈은 합임인 포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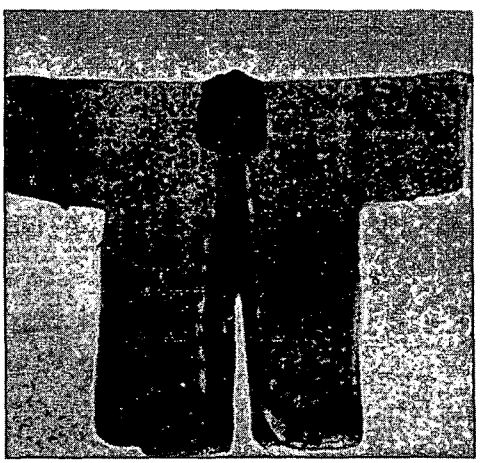

〈그림 3-27〉 皮甲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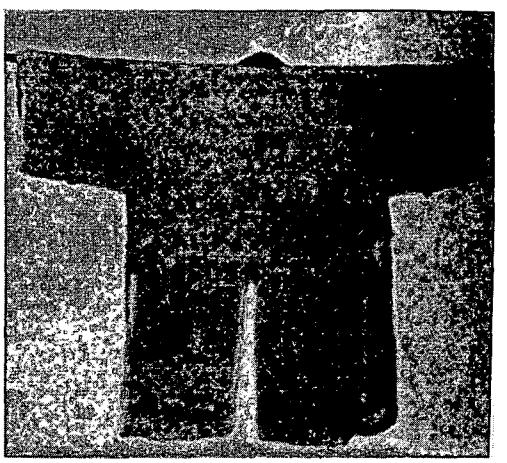

〈그림 3-28〉 皮甲 뒷면

재질은 겉감으로 황색유문견(黃色有文絹)이고 안감은 청색 무명, 심지로는 백색 무명을 썼는데, 가죽 편찰을 안감 위에 대고 중요부분, 즉 배와 가슴부분 그리고 상박부(上膊部)에 연결시켰는데, 이는 표면에 나타난 두정(頭釘)을 이용해 고정시켰으며, 두정의 아랫단에 시정(施釘)된 것은 오직 장식용일 뿐이다. 목선 및 수구, 합임(合衽) 등 트임부분의 외곽에 두른 바이어스 천은 안감인 청색 무명이다.

(4) 鎖子甲

쇠고리를 원형으로 하여 정밀하게 연환(聯鐶)시킨 것으로 반령의 깃에 가슴 정가운데에서 합임(合衽)하며 소매는 상박부분까지 길이는 엉덩이 부분에 미치고 양옆은 20cm 정도 트인 반비의(半臂衣)이다. 이 갑옷도 역시 개인방어장비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표면에 착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갑옷 속에 입었던 내갑의(內甲衣)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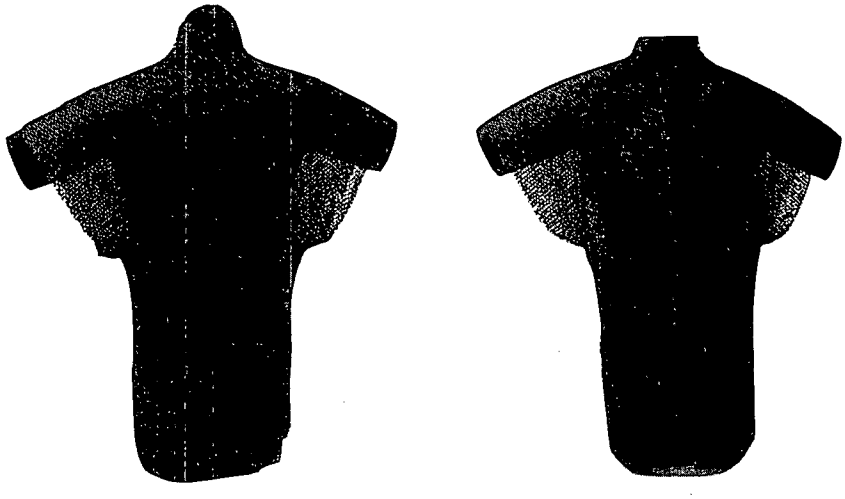

〈그림 3-29〉 **鎖子甲**(창덕궁 소장)

114) 문화재관리국, 1981『朝鮮時代 宮中服飾』, p. 114.

(5) 綿 甲

면갑은 고종초 병인양요(1886) 이후 대원군은 김기두(金箕斗)와 안윤(安潤)으로 하여금 면제배갑(綿製背甲)을 만들게 한 바 있다. 즉 세면(細綿)을 몇 겹 누벼 소총탄을 발사 실험한 결과 열두 겹이면 총탄이 관통하지 못하므로 드디어 열세 겹으로 제작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 갑옷은 무명을 30장 겹쳐서 만든 것으로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실전(實戰)에 있어서 과연 착용이 가능하였는지 의문이다.

이 갑옷은 양겨드랑이 부분은 깊이 파서 활동하기 편하게 했으며 또한 어깨의 좌측이 터져 있어 매듭단추가 달림으로써 입고 벗게 되어 있고, 양쪽 옆의 트임에는 좌우에 2개씩 각각 앞뒤판으로 끈이 부착되어 매게 되어 있다. 또한 깃과 모든 테두리에는 같은 천으로 바이어스 처리를 곱게 하였으며 앞판의 좌우로 2개, 뒤판에 상하, 좌우로 2개씩 문양을 넣었는데 검은색으로써 도장을 찍거나 그려 넣은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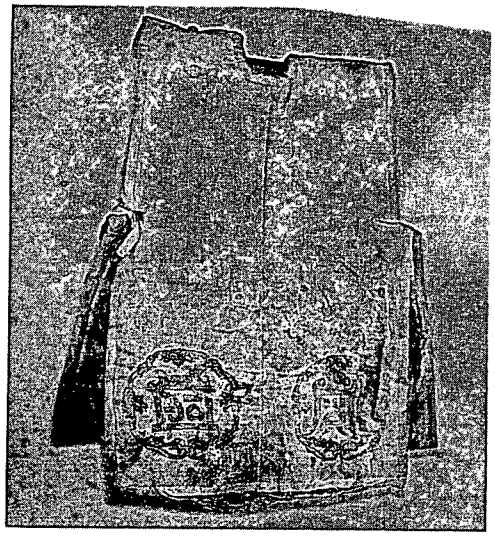

〈그림 3-30〉 綿甲 앞
(육군박물관 소장)



〈그림 3-31〉 綿甲 뒤
(육군박물관 소장)

(6) 胸　甲[115]

앞면의 겉감과 안감은 흑색 목면을 댔고 심지로서 두꺼운 무쇠를 통판으로 좌우 길에 달았으며, 두정(豆釘)으로 앞선과 밑단을 마무리지었고 뒷면과 양옆부분의 겉감과 안감은 흑색 면(綿)을 사용하였고 심지는 흰색무명을 여러 겹 누볐다.

형태는 목은 둥그렇게 파고, 합임(合衽)이며 앞길에는 배부분에 이르고 뒷길이는 엉덩이에 찰 정도로 지금의 조끼와 같은 형태이다. 여밈장식은 장식고리와 같이 했으나 부속품이 떨어져 나가 어떠한 방식으로 열고 닫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림 3-32〉 **胸甲**(육군박물관 소장)

(7) 內　甲[116]

재질은 겉감으로 청색 명주이며 안감 역시 청색 명주인데, 심지는 무명 1겹으로

115) 흉갑은 현재 육군박물관과 고대박물관 두 곳에 각각 1점씩 보관되어 있는데 서로 그 형태나 재질이 동일하다.

116) 이 갑옷은 현재 우리나라에 1점뿐으로 昌德宮 西行閣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재질이나 상태상 겉에 着裝했다기보다는 속에 입었던 內甲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4.5×5cm의 동판(銅版)을 멈치봇 두 개로 상단에 고정시키고 있다.

형태는 배자형(褙子形)으로 V넥라인에 소매는 진동선에서 약간 소매 쪽으로 나온 상태이며, 양옆과 뒤가 트였는데 앞길보다 뒷길이 16cm 정도 더 길다. 여밈은 역시 합임으로 목선이 맞닿은 지점과 10cm 밑으로 고리를 만들어 매듭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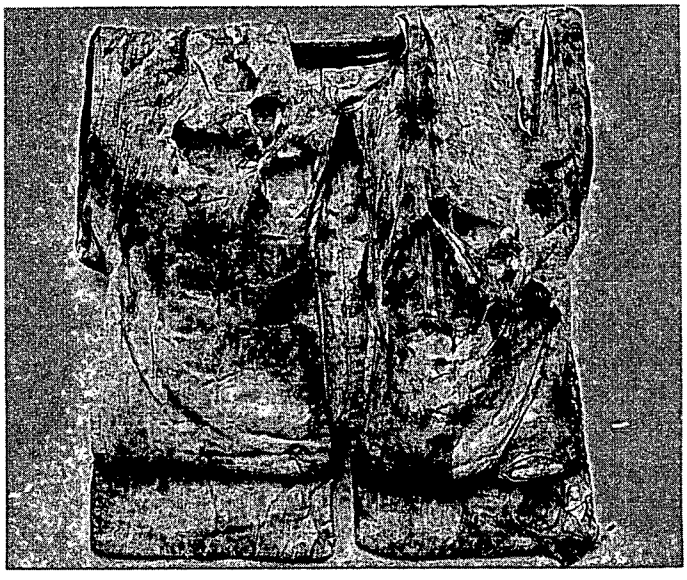

〈그림 3-33〉 內甲 앞면

2. 具軍服의 類型

구군복(具軍服)은 조선시대 무관들이 갖추어 입던 군복의 일종이다. 조선시대에 무관이 착용한 옷에는 융복(戎服)과 군복(軍服)이 있다. 군복과 융복의 구별은 '대개 군복은 개주(介冑)의 속옷이니 융복(戎服)이 모포(帽袍)의 속옷이 되는 것과 같다'[117]라고 하는 바와 같이 겉옷〔表衣〕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군복은 투구와 갑옷 속에 입었고, 융복은 모포(帽袍) 속에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구군복이란 동다리(同多里)를 입은 위에 전복(戰服)을 입고, 전대(戰帶)를 매며

117) 『純祖實錄』 卷34,34年 4月 甲子

전립(戰笠)·이엄(耳掩)을 차고 목화(木靴)·동개(筒箇)·환도(環刀)·등편(藤鞭)을 갖춘 차림을 말한다.[118] 융복(戎服)은 조선조 중엽 이후 대체로 첩리(帖裏)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양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상의의 옷깃은 직령(直領)이고 하상에는 주름이 잡혀 있으며 소매는 착수(窄袖)이다. 여기에 부속물로서 흑립(黑笠)이나 주립(朱笠)을 쓰고 대(帶)를 매며 목화(木靴)를 신었다.

옷의 형태 면에서 융복과 군복은 그 모양은 구별이 되지만, 조선왕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군복과 융복은 거의 함께 착용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용도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렵다.

개주의 속옷〔裏衣〕으로서 군복은 임진왜란 이후 오랫동안 전쟁을 겪지 않은 사회상황으로 말미암아 융복과 혼용되었고 그 용도에 있어서도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지는 못하였다. 자료상으로 볼 때, 조선초기에는 '융복'으로 주로 나타났으며 선조대 이후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군복'이라는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애초에는 몸을 가볍고 민첩하게 할 때의 의복인 융복이 광의의 군복으로 착용되다가, 19세기 이후 이들을 구별하여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군복의 구성은 의복과 부속물로 나누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　복 : 동다리(同多里), 전복(戰服), 대(帶 : 戰帶·廣帶), 전립(氈笠), 목화(木靴) 등
- 부속물 : 등편(藤鞭), 동개(筒箇), 병부(兵符), 호패(戶牌) 등

여기에서는 융복과 군복을 광의의 군복으로서 구군복에 포함시켜 고찰하고, 구군복의 구성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헌, 회화,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구군복과 관련된 회화·유물은 18세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전시기와의 비교고찰을 통한 명징(明澄)한 변화의 양상을 추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단 문헌·유물을 통한 군복의 전반적 구성을 주로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119]

---

118) 具軍服이란 명칭은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전되어 오는 용어이다. 本節의 具軍服에 대한 서술은 金賢舞, 1980「軍服에 對한 硏究－具軍服을 中心으로－」이화여대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에 크게 의존하였다.

119) 현존하는 회화는 대부분이 정조 이후의 것으로서, 『崇政殿進宴圖』, 『仁政殿進饌圖』,

우선 구군복의 선행적 형태로 17세기 이후 구군복과 사실상 동일한 용도로 착용되었던 융복(戎服)을 중심으로 군복과의 관계를 감안하면서 구군복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34〉 戎服의 구성요소

『華城陵幸圖』, 『大韓帝國動駕圖』, 『釜山鎭殉節圖』, 『東萊府殉節圖』 등이 있으며 유물은 각 대학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이 주류를 이룬다.

가. 戎服과 軍服

융복은 문무관(文武官)이 함께 착용한 옷으로 군복과 동일한 구실을 하였고, 그후에는 군복과 혼용되었다. 융복은 왕의 행차시 수행할 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 국란을 당했을 때 등 문관과 무관이 몸을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착용하였다.[120]

융복은 청첩리(靑帖裏)에 홍색대(紅色帶)를 매고, 호수(虎鬚)를 꽂은 주립(朱笠)을 쓰고 있으며 목화(木靴)를 신었으며 등에는 동개(筒箇)를 메고 손에는 등편(籐鞭)를 쥐고 있으며 대(帶)에는 병부(兵符)주머니를 매달은 형태로 구성되었다.[121]

우선, 융복과 군복의 착용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무관(武官)의 군복으로는 병사의 복장으로 첩리를 착용하던 것이 선조대에 비로소 군복으로 바뀌었음을[122] 알 수 있다. 조선초기에는 융복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후의 사료에는 융복과 구별되는 군복도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즉, 융복의 '융(戎)'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조선초기에는 군복과 같은 의미와 용도로 착용되던 것인데, 조선중기 이후 융복과 형태상 구분되는 군복이 나타나게 되었다. 융복은 문무관이 몸을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경우에 착용하였다.

성종 2년 2월, 왕은 예조(禮曹)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크고 작은 행행(行幸)에 시위인(侍衛人)은 융복(戎服)을 함께 입을 것"[12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의 크고 작은 행차 때마다 경호원들에게 융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세조 2년 3월에는 병조가 올린 계사(啓辭)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

120) 유희경, 1975『한국복식사연구』이대출판부, p. 336.

121) 李勳鍾, 1979『국학도감』민중서관.

122)『增補文獻備考』卷80, 禮考27, 章服2
"宣祖朝 …… 且以兵丁之服言之 彼銳我鈍 因時適宜始也 帖裏轉爲軍服 本無一定 膠守之規也"

123)『成宗實錄』3, 2年 2月 辛酉.

"이전의 행행시(行幸時)에는 근장(近仗)은 청의(靑衣)나 자의(紫衣)를 착용하되 복색(服色)이 무장(無章)하였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예(禮)를 행할 경우에는 자의단자학창(紫衣段子鶴氅氅)을 쓰고 나머지는 청의피학창(靑衣皮鶴氅)을 쓰도록 하십시오. 왕이 따랐다."[124]

위의 기사를 통해 보면 종래에는 근장에 대하여 청의나 자의복색에 아무런 무늬가 없던 것을 착용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접어들어 자의단자학창이나 청의피학창을 입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장이나 시위가 왕의 시위군으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청의, 자의 그리고 자의단자학창이나 청의피학창은 융복의 일종이거나 이후의 세조나 성종초에 융복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또한, 중종 23년의 '지금은 융복(戎服)의 류(類)는 다투어 짙은 홍색(紅色)을 숭상하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125]라는 기사나 동왕(同王) 31년의 '대소행행시(大小行幸時) 호가장졸(扈駕將卒)은 모두 천홍융복(淺紅戎服)을 입어서 상하가 서로 구별이 없다'[126]라는 기사를 통해 볼 때, 당시 융복은 색상의 구별이나 제한이 없었으며 홍색 융복이 많이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시기에 백관에게 융복을 입도록 명했는데, 복색은 정하지 않고 흑립(黑笠)에 첩리의(帖裏衣) 광사대(廣絲帶)를 사용하고 검(劍)을 차도록 하였다.[127] 이를 통해 볼 때 융복은 첩리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 34년 4월 29일 좌의정 심상규(沈象圭)는 첩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124) 『世祖實錄』3, 2年 3月 乙亥.
"兵曹啓前此行幸時 近仗或着靑衣或紫衣 服色無章 請自今禮行 則用紫衣段子鶴氅 自餘用靑衣皮鶴 從之"

125) 『中宗實錄』 17, 23년 8월 丁巳
"上曰 古者 近紅色禁之矣 今則不禁 此雖細瑣之事 亦可禁止 今有服飾之言端故言之 光弼服飾近紅 臣亦爲驚愕 古者 或木綿團領 其便易而服之 近者六七年來 侍臣等 爭着近紅之衣 臣嘗以爲何心着此衣 近侍上前而猶未能改之也 上曰今則戎服之類 爭尙深紅 甚爲不可"

126) 『中宗實錄』86, 31年 11月 壬戌

127) 『宣祖修正實錄』26, 25年 1月 14日
"不定服色 黑笠帖裏 衣廣絲帶 帶劒"

"우리나라의 의장(衣章) 중 그 제도가 가장 오래 된 것은 첩리(帖裏)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첩리)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연이어 꿰매어 만든 것으로 소매가 팔꿈치를 돌릴 수 있는데 대개 심의(深衣)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뜻이 있기 때문에 융복이라고 이릅니다. 옛날에는 모포(帽袍) 속에 입었기 때문에 또 첩리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다 도포(道袍)를 입으면 조회에 나갈 수 있고 도포를 벗으면 군대에 나갈 수 있으니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간소하고도 편리한 것은 고제(古制)가 그러합니다."[128]

융복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상의하상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전투복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조선후기로 접어들어 점차 일상복이나 예복으로서 다른 용도의 옷과 함께 착용되었으며 이는 그 편리함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투복으로서의 융복은 과연 효용성이 있었는가? 임진왜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병사의 융복의 소매가 너무 넓어서 명군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실제로도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사례가 알려지자 예조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다.

"대소인원(大小人員)은 융복과 속옷에 대하여 소매를 모두 좁게 하고 금군(禁軍) 이하 공·사천(公私賤)은 입자(笠子)를 벗고 소모(小帽)를 쓰며 소매가 작은 옷을 입도록 하고 금군에 한해서만은 전립(氈笠)을 쓰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을 지금 중외(中外)에 알렸으나 기한이 너무 촉박하여 하등배(下等輩)들은 준비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9월 1일부터 착용하라는 뜻으로 8도에 행회(行會)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129]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조선의 군복은 군복 자체뿐 아니라 모자 등 제반사항이 모두 전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정부의 융복에 대한 개혁도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

128) 『純祖實錄』34, 34年 4月 甲子
"左議政沈象奎啓言 …… 我東衣章 其制之最古者 帖裏是已 上衣下裳 連綴成之 袂可回肘 盖有深衣卽戎之義焉 故謂之戎服而古則服之於帽袍之裏 故又謂之帖裏 加袍而趨朝 去袍而卽戎 安不忘危 簡而且便 古制爲然"

129) 『宣祖實錄』40, 26年 7月 2日 甲寅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임란 이후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융복의 개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인조 26년 10월의 전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옷소매를 좁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사[130]나 북벌론을 표방하며 군비확충을 꾀하고자 하였던 효종대에도 여전히 '군복(軍服)의 소매가 넓어서 달리고 돌진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고쳐서 협수(狹袖)의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기사가[131] 보이므로, 이에 의하면 선조~효종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도 융복은 여전히 소매가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융복의 일종으로서 괘자(掛子)가 있었다. 선조 30년 9월에 예조는 우리나라의 우립(羽笠)과 융복에 일정한 규식이 없음을 비판하면서[132] 괘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그외에 비록 융복이라도 의수(衣袖)가 정해진 제도가 있어서 너무 좁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상(上)께서 입으신 융복(戎服)은 중국에서는 이른바 괘자(掛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잡역배들이 입는 것인데 상께서 입으시니 매우 미안(未安)한 일입니다."[133]

이것으로 보아 임란 중에 임금이 착용한 융복 중 괘자(掛子)라는 것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괘자는 전복(戰服)의 이명(異名)으로 소매가 없는 옷이며 전술한 첩리와는 다르다. 여기에서 융복이라 한 괘자는 그 형태상 단독 착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괘자는 그 안에 첩리 혹은 다른 포(袍)를 착용하고, 그 위에 입은 것으

---

130) 『仁祖實錄』35, 26年 10月 甲辰
"上謂兵曹判書李時白曰我國人衣袖甚闊最妨於用兵 可令軍人窄其衣袖 …… 上曰 卿大將可先窄袖 以爲軍效則之地"

131) 『燃黎室記述』 권12 政教典故 戎裝軍器
"以軍服寬袖 不合奔突 改爲狹袖之制"

132) 『宣祖實錄』 30年 5月 癸巳
"禮曹啓 我國羽笠之制 中國之人 甚笑之 盖揷羽 出於胡俗 中原之人則但皂隷賤役於氈笠上 注一枚羽而已 此中朝之人 只赴戰時 着窄衣"

133) 『宣祖實錄』 30年 5月 癸巳
"其外雖戎服 衣袖有定制 不至甚窄 況自上所御戎服 卽中朝所謂掛子 此服惟雜役着之 自上服御 極爲未安"

로 생각된다.

선조대에 군복(軍服)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정조초까지는 군복과 융복의 용도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사료상으로는 대체적으로 군복보다는 융복을 많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대소조관(大小朝官)이 융복을 계속해서 착용했고,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백관은 종전대로 관복(冠服)으로 돌아갔으나 시위제장선전관(侍衛諸將宣傳官)과 군직(軍職)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융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보게 하였으며,[134] 정조대에도 '임금이 첩리를 입으면 조신(朝臣)은 융복을 입고 전좌동가시(殿座動駕時) 시위제신(侍衛諸臣)은 융복을 입는다'라 하여[135] 융복 착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에 융복폐지론이 대두되었다. 정조 17년 병조판서 임제원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우리나라는 복장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군대 복장에 있어서도 융복과 군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戎)은 군(軍)과 그 의미가 동일한데도 굳이 구별을 두어 그 제도를 다르게 하고 이름을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옷을 입고는 말 타고 달리기에 불편하여 실제 사용하는 데는 온갖 방해만 있고 조금도 편리한 점은 없습니다."[136]

융복과 군복의 용도가 동일한데도 양자를 굳이 구분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비변사가 '순전히 군복만 착용하는 것으로 그 제도를 통일하는 것이 아마도 번잡함을 줄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법이 될 것'[137]이라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인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융복폐지론은 당시 광범위한 조야의 지지를 얻기도 하였으나 중세사회의 신분관념에 의한 복식의 차별성이 희석된다는 반론과[138] 정조

134) 『宣祖實錄』 31年 12月 甲戌.
135) 『大典通編』 禮典 儀章.
136) 『正祖實錄』 17年 10月 戊辰.
137) 『正祖實錄』 38,11年 10月 辛未.
138) 위와 같음.

가 '융복은 오래 된 제도이고 함흥(咸興) 본궁(本宮)에 간직한 근본이 있다'고 반대하여 백지화되었다.[139]

19세기 순조 연간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원근 행행시(遠近行幸時)의 융복과 군복 착용을 구별하기 시작했으며[140] 이후부터 군복과 융복의 착용에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헌종 13년 2월에 수가(隨駕)의 복색을 군복으로 정제(定制)를 삼았고,[141] 철종 2년 8월에는 원행(遠幸) 외에는 융복을 착용하도록 했으며,[142] 다시 동왕 11년 2월에 원근행행시(遠近行幸時) 복색을 군복으로 정하는 것[143] 등이 그것이다. 조선후기에 혼용되던 군복과 융복은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어 조치가 취해졌다.

> "전국의 융복(戎服)을 이후부터 군복(軍服)으로 대용(代用)하며 군무(軍務) 외에는 흑단령(黑團領)으로 하게 하고 또, 융복에서 이미 제외된 각사조예천익(各司皂隷天翼)도 또한 전복(戰服)으로 삼는다."[144]

고종 20년 1월 27일의 위의 기사를 볼 때 융복과 군복이 군복 하나로 통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전시기(全時期)에 걸쳐 융복과 군복은 계속 착용되었는데, 고종 20년에 전국의 융복을 군복으로 대용하도록 함으로써 융복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고종 32년 칙령 78호의 반포로 군복이 근대식 복장으로 개혁되면서 군복은 그 모습을 감추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융복으로서의 첩리의 색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융복(戎服)으로서의 첩리(帖裏)는 색이 일정하지 않고, 그 시대의 유행을 따랐던 것 같다. 즉 중종 23년 8월 융복에 다투어 심홍(深紅)을 숭상한다고 했고,[145] 중종 31년 11월 대

---

139) 위와 같음.
140) 『純祖實錄』48, 34年 4月 甲子.
141) 『憲宗實錄』48, 13年 2月 癸丑.
"此後則凡隨駕服色 竝用軍服實爲簡便 此係儀節 令政院收議於時原任大臣及禮堂以來尋因詢同以軍服定制"
142) 『增補文獻備考』 卷79 禮考 26 章服 1.
143) 위와 같음.
144) 『高宗實錄』 20年 1月 28日 ; 『政治日記』 癸未年 1月 27日.
145) 『中宗實錄』17, 23年 8月 丁巳.

소행행시(大小行幸時) 호가(扈駕)하는 장졸(將卒)들도 홍색(紅色)의 첩리를 입었고,[146] 영조 2년 10월에 무관이 흑색의 첩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규식이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47] 18세기에 접어들면 『속대전(續大典)』에 융복에 대한 규식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상관으로서 3품 이상은 융복을 남색의 첩리〔藍色帖裏〕를 입고 당하관으로서 3품 이하는 융복을 청현색의 첩리〔靑玄色帖裏〕를 입는다. 교외동가시(郊外動駕時)에는 곧 홍색의 첩리〔紅色帖裏〕를 입는다."[148]

"당상관으로서 3품 이상은 융복에 자립패영(紫笠貝纓)을 하고 당하관으로서 3품 이하는 융복에 흑립정영(黑笠晶纓)을 한다."[149]

위의 규정은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누어 복색의 기준선으로 삼고 당시 첩리와 입자(笠子)의 색상에 통일성이 없고 혼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정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보면 첩리의 색상에는 변함이 없으나 '자립(紫笠)은 칠사립(漆紗笠)으로 개정한다. 패영(貝纓)은 지금 폐한다. 흑립정영(黑笠晶纓)의 정영(晶纓)은 지금은 폐한다'라고 하여 19세기에 접어들어 입자(笠子)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입영(笠纓)을 폐한 것은 입영의 사치가 심했기 때문인 것 같다.

---

146) 『中宗實錄』17, 31年 11月 壬戌.

147) 『英祖實錄』10, 2年 10月 丙寅.
"都承旨鄭亨益曰 武臣之服黑天翼 着水達子 爲其便放射利行步也 孝廟曾以申飭 今皆厭着 殊可駭矣"

148) 『續大典』 禮典 儀章
"堂上三品以上 戎服藍色帖裏 堂下三品以下 戎服靑玄色帖裏 郊外動駕時 卽紅色帖裏"

149) 위와 같음.
"堂上三品以上 戎服紫笠貝纓 堂下三品以下 戎服黑笠晶纓"

나. 具軍服의 構成要素

구군복(具軍服)은 의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부속물까지 모두 구비한 상태를 뜻한다.[150] 즉 동다리(同多里)를 입은 후 그 위에 전복(戰服)을 입고, 전대(戰帶)를 매고, 전립(戰笠)을 쓰고, 목화(木靴)를 신었다. 허리에는 동개(筒箇)와 환도(環刀)를 차고, 등편(籐鞭)은 말안장에 꽂았다.

여기에서는 동다리, 전복, 대(戰帶와 廣帶), 부속물인 전립, 목화 동개, 등편, 병부, 호패 등을 문헌, 유물 등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무반의 경우에는 품계의



〈그림 3-35〉 구군복 차림

150) 具軍服은 武官服의 일종으로 大禮服이라는 說이 있는데, 『殉節圖』에 보면 전투시에 착용하였고, 『陵幸圖』·『動駕圖』 등 임금의 幸行時에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仁政殿進饌圖』·『崇政殿進宴圖』에서도 구군복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구군복은 무관의 대례복이라기보다는 常服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구군복을 입었으며, 문관의 경우에도 무직(武職)을 띠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구군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었다.[151]

(1) 衣 服

가) 同多里

동다리는 구군복(具軍服)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옷으로 겹과 홑의 두 종류가 있다. 겹으로 된 동다리는 두루마기와 비슷한 모양의 포(袍)로, 뒷길의 중심선과 무의 양옆에 트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소매 부분이 몸판의 색과 다른 것이 특징이다.

동다리의 모양이 두루마기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다리는 첩리가 간소화되었다기보다는 두루마기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152] 또 답호에 착수(窄袖)를 붙인 것을 동다리로 파악하는 연구자가 있으나[153] 이것은 홑동다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화기 이후 의복 간소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동다리가 언제부터 착용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임란 이후 17세기 이래 융복·군복의 불편한 점에 대한 지적이 연대기 자료에 산견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활동하기에 편리한 신제(新制)가 요구되었고, 17세기 이후 조선후기에는 이에 대한 개량이 서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대가 뒷시기이기는 하지만 『철종어진(哲宗御眞)』을 보면 왕이 동다리를 착용하

---

151) 『一哂錄』16 軍制考
"武職 無論官之尊卑 皆服軍服 而凡於赴公 雖文官 若帶武職 則必以軍服"

152) 최남선은 동다리는 첩리를 간소화한 것으로서 袖를 좁혀 까치동으로 하고, 허리의 주름을 없애고 兩脇 및 脊縫의 하봉을 터서 동작에 편하고 민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최남선, 1948 『조선상식』 풍속편 p. 125) 그러나 『萬機要覽』 (순조 9년 : 1809)의 劊子手木紅單狹袖, 吹鼓手黑三升甲狹袖는 순조의 동가를 그린 『動駕圖』를 볼 때, 길과 소매의 색이 다른 동다리가 아니라 소매가 좁은 袍이므로, 순조 이전의 狹袖는 소매통이 좁았던 군복의 포에 대한 총칭으로서 오히려 동다리는 협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협수를 동다리와 기계적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곤란한 시각이다.

153) 유희경, 앞 책, p.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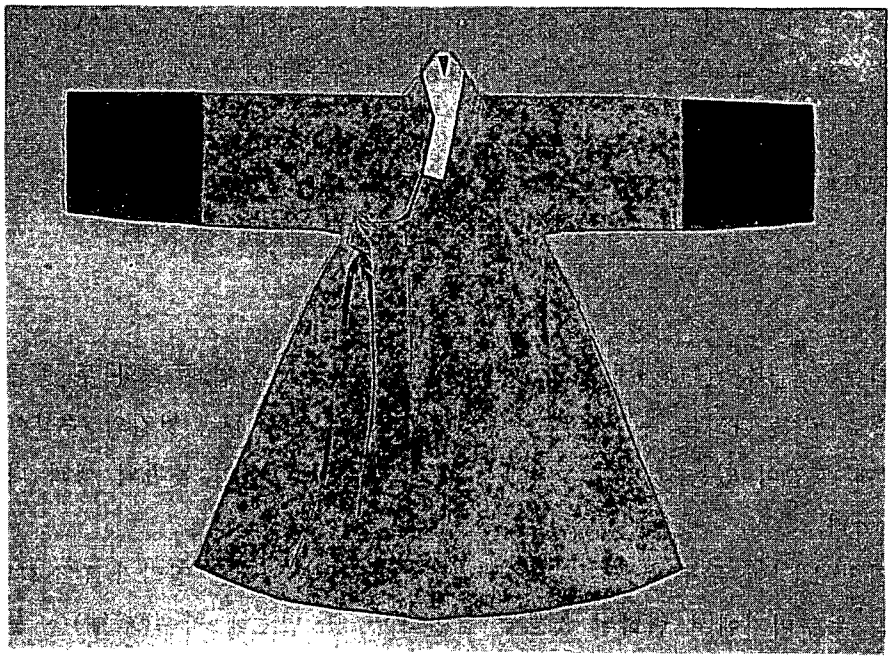

〈그림 3-36〉 동다리 앞(고려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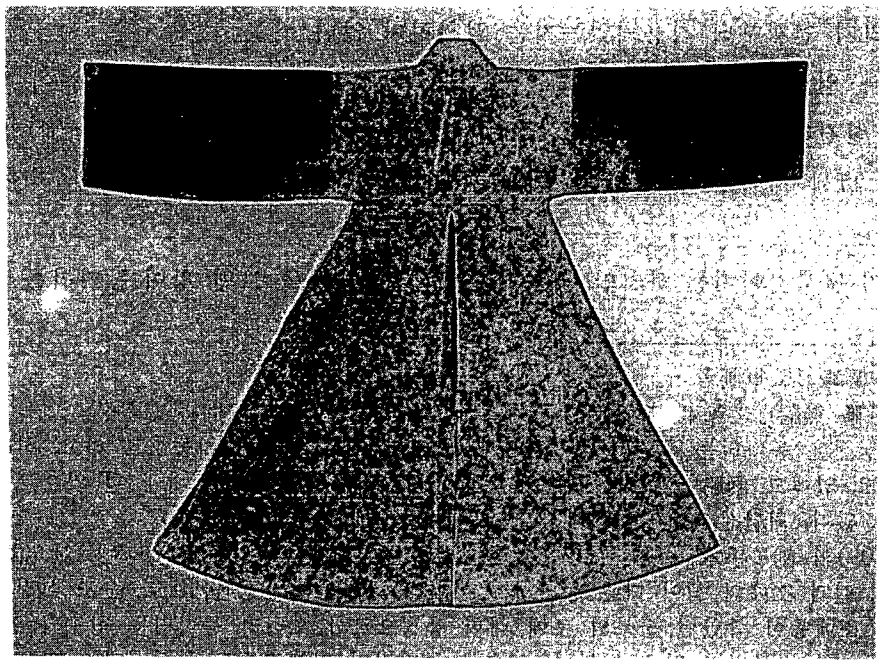

〈그림 3-37〉 동다리 뒤(고려대박물관 소장)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숙종대의 『숭정전진연도(崇政殿進宴圖)』에도 동다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동다리는 조선후기에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다리'의 명칭은 길에 소매를 달은 형태에서 연유되어 '동달이'라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다리를 '협수(狹袖)'라고도 하는데, 협수란 동다리의 소매가 좁은 데서 비롯되어진 명칭으로 보인다. 효종대에서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문헌에 보이는 협수의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효종조(孝宗朝)에 군복의 넓은 소매가 달리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서 협수의 제도〔狹袖之制〕를 만들었다."[154]

"효종이 무비(武備)에 마음을 두어 소매를 줄이고 의복을 짧게 하자〔狹袖短衣〕 이에 대하여 간신(諫臣)의 장(章)이 이르렀다."[155]



〈그림 3-38〉 哲宗御眞(복원도)

"전립(戰笠)과 협수(狹袖)를 배반(陪班)에게 시용(試用)하는 것은 이미 고례(古例)가 있다."[156]

"어전전배(御前前排)가 착용하는 흑목갑협수(黑木甲狹袖) …… 도제조배기수(都提調陪旗手) 18명·호조배기수(戶曹陪旗手) 5명·병조배기수(兵曹陪旗手) 5명·전배(前排)

154) 『燃黎室記述』 卷12, 政敎典故 戎裝軍器
"孝宗朝以軍服寬袖不合弈 改爲狹袖之制"
155) 『正祖實錄』46, 17年 10月 己巳
"孝廟 留心武備 狹袖短衣 至有諫臣之章"
156) 『正祖實錄』46, 17年 10月 甲子
"戰笠狹袖之試用於陪班 旣有古例"

12명이 착용하는 목갑협수(木甲狹袖) …… 대장소전전배대갑협수(大將所前排大甲狹手) …… 회자수목홍단협수(劊子手木紅單狹袖) …… 취고수혹삼승갑협수(吹鼓手黑三升甲狹手)"[157]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기존의 군복이 소매가 넓어서 전투상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로 넘어오면서 협수는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군복(具軍服)은 단독으로는 표의(表衣)로 착용되었고, 또한 갑옷과 함께 그 속의 이의(裏衣)로도 착용되었다. 순조 34년의 다음과 같은 기사는 이를 반증한다.

"군복(軍服)은 곧 개주(介冑)의 이의(裏衣)이다 …… 각영군졸(各營軍卒)이 모두 군복(軍服)을 착용한다 …… 장신(將臣)과 유직무변(有職武弁)은 공복(公服) 밑에 지금은 또한 모두 군복을 착용한다."[158]

위의 기사로 보아 군복은 개주(介冑)의 이의(裏衣)임을 알 수 있다. 각 영문(營門)의 군졸(軍卒)이 다 군복을 입고 장신(將臣)과 유직무변(有職武弁)의 공복(公服) 밑에 통상적으로 군복을 많이 착용하였음을 볼 때 군복은 개주(介冑)의 이의로서 뿐 아니라 공복의 이의로써도 널리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예전(禮典) 의장(儀章)에도 '무릇 첩리 안에 군복을 착용한다'[159]고 하여 첩리(帖裏) 안에 군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구군복은 표의(表衣)로 입고 개주(介冑), 공복(公服), 첩리(帖裏)의 밑에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다리의 옷감 및 문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8세기에 접어들면 대청무역의 성행으로[160]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옷감들이 수입

---

157) 『萬機要覽』 軍政篇 訓鍊都監軍器
"御前前排所着黑木甲狹袖 …… 都提調陪旗手十八名戶曹陪旗手五名兵曹陪旗手五名前排十二名所着木甲狹袖 …… 大將所前排大甲狹手 …… 劊子手木紅單狹袖 …… 吹鼓手黑三升甲狹手"

158) 『純祖實錄』 48, 34年 4月 甲子
"軍服卽介冑之裏 …… 各營軍卒皆着軍服 …… 將臣與有職武弁公服之下 今亦皆着軍服"

159) "凡帖裏內着軍服"

160) 柳承宙, 1970 「朝鮮後期 對淸貿易의 展開過程－17·18세기 赴燕譯官의 貿易活動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8.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복에 대한 사치가 점차 사회문제화되었다.[161]

군복에는 금단(錦緞), 단사유문(緞紗有紋), 문단사라(紋緞紗羅), 대단갑사(大緞甲紗) 등을 금했고 저주삼승(苧紬三升), 저포삼승(苧布三升) 등을 쓰도록 했는데, 당상관과 근시(近侍)에게는 문단사라(紋緞紗羅)의 사용이 허락되었다. 근시의 경우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기 때문에 거친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유물로 살펴본 옷감은 양태문 갑사, 순인, 갑사, 사 등이며 많이 사용된 옷감은 양태문 갑사로 이것은 용(龍) 무늬가 있는 순인을 말한다.[162] 그 주변에는 당초(唐草)가 어우러져 있다.

정조 17년 10월에는 당상 이상에게 문단사라 등을 허락하고 당하에 대해서는 근시 외에 모두 저주삼승을 입도록 하여 이것으로 구별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163] 구군복의 착용에는 계급의 제한이 없었으나 하졸배(下卒輩)는 착용하지 않았고 옷감으로써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戰 服

전복(戰服)은 소매가 없는 옷으로 표의(表衣)와 이의(裏衣)로 입었는데, 표의인 경우 구군복에서는 동다리 위에 입고 전대(戰帶)를 매며 주의(周衣) 위에 입을 때는 사대(絲帶)를 했다.

전복은 반비의(半臂衣)이며 '답호', '작자(綽子)',[164] '더그레'라고도 불리었고,[165]

---

161) 정조 10년 6월 軍校라도 錦緞을 금하는 기사(『正祖實錄』45 10年 6月 乙巳), 正祖 10年 이전부터 緞紗有紋을 금지해 왔는데 同王 17年 10月에는 堂上官 이상은 紋緞紗羅 등을 허락하고, 堂下는 近侍 외에는 모두 苧紬 3升을 입어서 그것으로 구별을 하고 비용도 절약한다라는 기사(『正祖實錄』 46 17年 10月 甲子), 同王 20年 3月에는 軍門將校 軍服에 大緞甲紗를 禁하고 대신 苧布 3升 등속으로 군복을 만들도록 한 기사(『增補文獻備考』 禮考27 章服2) 등은 당시 의복의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162) 龍은 상징적인 동물로 각종 동물의 부분을 합성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 것이며 무궁무진한 조화를 부릴 수 있어서 신비적인 동물로 숭상되었다. 용은 물을 얻음으로써 무궁한 조화의 위세를 떨칠 수 있다고 하여 水와 雲과 함께 구성되며 도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용이 물을 얻음으로 조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군왕은 용의 보살핌이 있어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군주의 복식에는 용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동다리에 용문양이 많이 사용된 것은 이러한 의미 때문이다.

163) 『正祖實錄』 17年 10月 乙丑

164) 『增補文獻備考』

165) 『譯語類解』

'더그레'는 호의(號衣)의 속칭이다.[166] 반비와 괘자(掛子)의 모양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167] 괘자도 전복과 비슷한 형태의 옷으로 생각된다.

호의(號衣)는 군인(軍人), 관예(官隷) 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상의(上衣)이다.[168] 『만기요람(萬機要覽)』에 호의는 모두 방위의 빛깔이 다른데, 전초(前哨)는 적색 바탕, 중초(中哨)는 황색 바탕, 우초(右哨)는 백색 바탕, 후초(後哨)는 흑색 바탕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169] 색으로써 소속을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전복의 유래에 대하여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전복의 제도는 옛날의 반비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반비(半臂)에 대한 기록은 『지봉유설(芝峰類說)』, 『삼재도회(三才圖會)』,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 『사물기원(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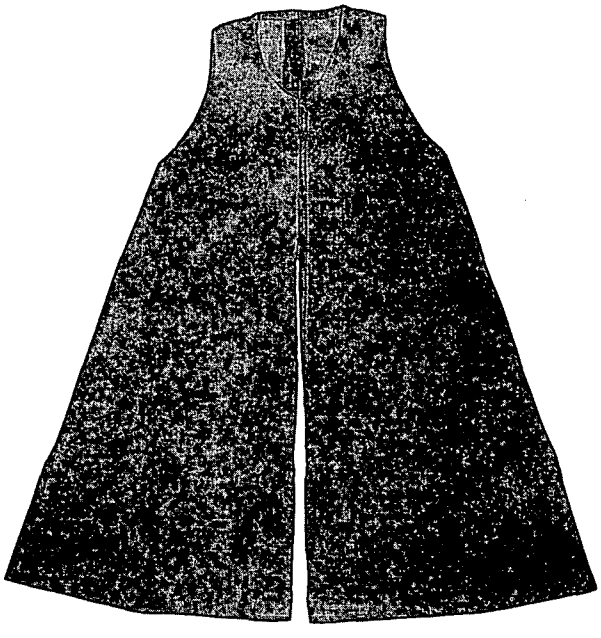

〈그림 3-39〉 戰服(고려대박물관 소장)

166) 최남선, 1948『조선상식』풍속편 동명사, p. 127 : 『朝鮮語辭典』
167) 宋文欽『閑靜堂集』
"其半臂者與今之掛子略同 但掛子兩裾 裾直垂爲異"
168) 최남선, 앞 글, p. 127.
169) 『萬機要覽』軍政篇 訓鍊都監服着

物紀原)』, 『중국복장사강(中國服裝史綱)』 등에 나타난다.[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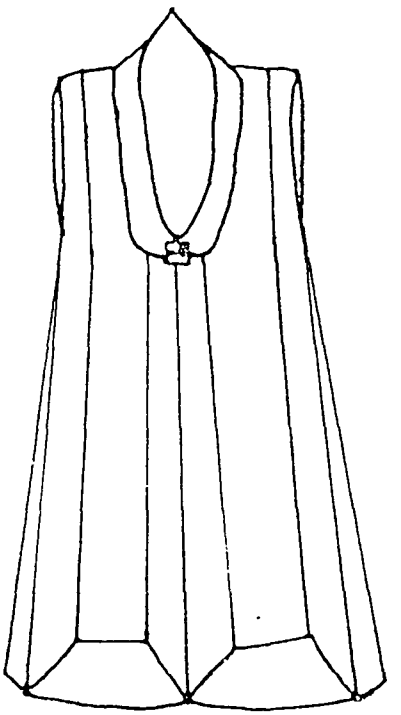

〈그림 3-40〉 半 臂

『삼재도회(三才圖會)』에 의하면 반비(半臂)는 수(隋)나라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장수의(長袖衣)였는데, 당고조(唐高祖)가 소매를 감하고 반비(半臂)라 칭했고, 사인(士人)이 다투어 입었다. 또한 당(唐)에는 반비 이외에 양당(裲襠)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관(武官)의 복(服)으로 '裲襠之制 一當胸 一當背 短袖覆膊'이라 하여[171] 한인(漢人)이 만든 석명(釋名)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한(漢)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모양은 가슴과 등에 닿는 옷으로 소매가 없고 길이는 허리까지 오는 것, 무릎까지 오는 것, 무릎 아래까지 오는 것, 삼(衫)과 포(袍)와 동일한 길이로 대금(對襟)인지 교금(交襟)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앞뒤 몸판이 만나는 점은 어깨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72] 여기에서 보면 반비(半臂)는 사인(士人)의 복(服)이고 양당(裲襠)은 무관(武官)의 복(服)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봉유설』에 세종조 허조(許稠)가 항상 회색(灰色) 답호를 입었다는 기사가 나오고,[173] 세조 2년 7월 좌의정 한확(韓確)의 가동(家童)을 불러 회색 면포겹답호

---

170) 구체적으로는 '半除 卽今長袖也'(『지봉유설』), '半臂擘除卽長袖也'(『삼재도회』), '半塗卽長袖也'(『흠정고금도서집성』), '半臂除卽長袖也'(『사물기원』), '半除卽半袖也'(『중국복장사강』)으로 나타난다. 문헌에 따라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중국복장사강』의 기록은 『흠정고금도서집성』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세 기록 중에서 『삼재도회』의 기록을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삼재도회』와 『사물기원』은 명칭이 같고 『지봉유설』은 명칭이 다른데, 『삼재도회』보다 간행연도가 늦고, 半臂가 중국의 복제이므로 여기서는 『삼재도회』의 기록을 따랐다.

171) 김동욱, 1979,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p. 110.

172)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民國 61年, pp. 88~89.

173) 『芝峰類說』 服用部 衣服

(綿布鉄搭護)를 주었다는 기사를[174] 통해 볼 때, 조선초에는 답호(답호)가 조신(朝臣)들 사이에서 많이 착용되었던 듯하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예고(禮考) 복장조(服裝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생원·진사·유학은 당시(唐時)의 사인례(士人例)에 따라 또한 답호를 착용토록 명하였다…… 우리나라 조관(朝官)들도 장복(章服) 안에 (답호를) 입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선조대까지 선비와 조신들이 계속해서 답호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지금 전복(戰服)의 제도(制度)는 곧 옛날의 반비의(半臂衣)이며 혹 작자(綽子)라고도 하고 또 답호라고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복(戰服)은 답호의 변형임을 알 수 있으며 답호와 구별없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종대에 의제간편령(衣製簡便令)에서도 사복(私



〈그림 3-41〉 답호(고려대박물관 소장)

174) 『世祖實錄』 2年 7月 丙寅

服)에 전복(戰服)이 포함되고 있는데,[175] 이는 답호와 전복이 현실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고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종 21년 6월 예조(禮曹)의 「사복변제절목별단(私服變制節目別單)」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자(官者)는 전복(戰服)을 입고, 서역재관자(胥役在官者)도 동일하며, 복인(服人)은 상복(常服)과 조복(弔服)에 착수백의(窄袖白衣)를 사용하고, 백색을 대용(帶用)하여 유관자(有官者)는 담색전복(淡色戰服)을 착용할 것."[176]

이에 대하여 김영선(金榮善)은 상소를 통하여 전복을 입으라 하고, 답호령을 내림은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177] 보아 답호와 전복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전복이라는 명칭보다는 답호라는 명칭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8]

다음으로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전복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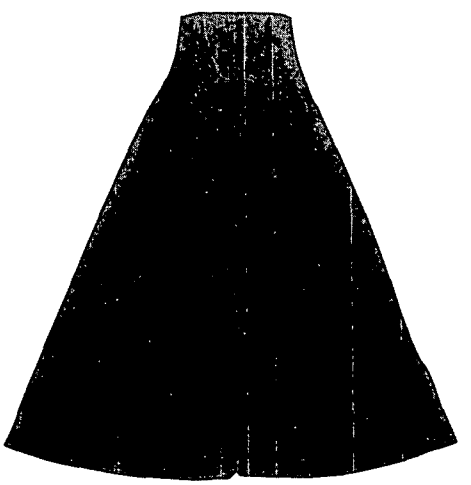

〈그림 3-42〉 戰服 앞(고려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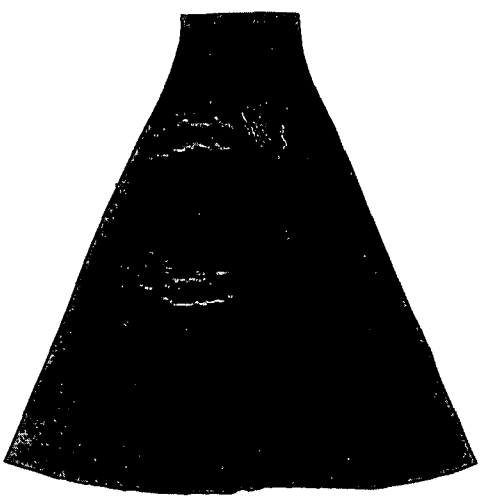

〈그림 3-43〉 戰服 뒤(고려대박물관 소장)

175) 『增補文獻備考』 禮考 章服

176)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6月 3日 ; 『龍湖閑錄』 23 衣服新製定式

177) 위와 같음.

178) 고종 31년 12월의 '朝臣大禮服用黑團領 進宮通常禮服用周衣袴襪', 고종 32년 3월의 '命公私禮服中袴襪除之', 고종 32년 8월의 '通常服色卽以周衣袴襪絲帶從便'(『증보문헌비고』)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답호'로 호칭되어 착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모양은 소매와 섶이 없고 무가 있으며 합임(合衽)이다. 유물은 깃과 뒷길 중심선에 트임이 있는 것, 깃과 무 양옆에 트임이 있는 것, 깃이 없고 뒷길 중심선과 무 양옆에 트임이 있는 것 등으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로 깃과 뒷길 중심선에 트임이 있는 형태이다. 겉은 자색, 안은 홍색으로 명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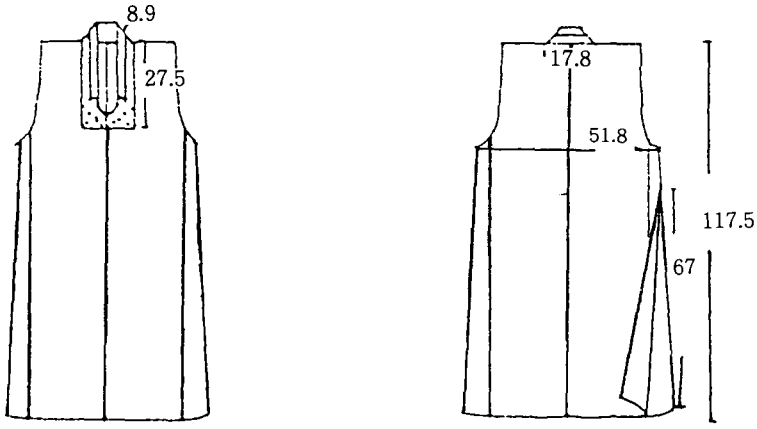

〈그림 3-44〉 金德遠 戰服 측도

두 번째로 깃이 있고 무 양옆에 트임이 있는 형태로서 김덕원(1634~1740)의 전복이다. 소색(素色) 겹누비로 깃과 동정이 있으며, 깃은 쌍깃이고 옆 트임이 67cm로 많이 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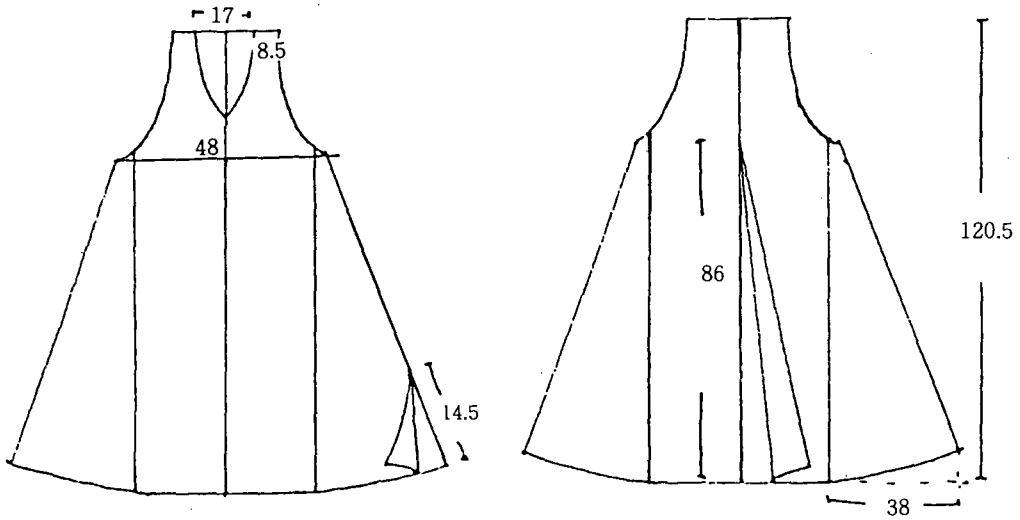

〈그림 3-45〉 戰服 측도(이화여대박물관 소장)

세 번째로 깃이 없고 뒷길 중심선과 무 양옆에 트임이 있는 형태이다. 이 모양의 전복은 겹과 홑이 있는데, 무가 달린 위치에 따라 2가지로 나눈다.

다) 帶

대(帶)는 동다리와 전복을 입고 그 위로 가슴에 착용하는 것으로 광대(廣帶)와 전대(戰帶)가 있다. 광대(廣帶)는 고려대박물관 소장 유물과 허동화씨 소장 유물을 보면 넓이가 14~15cm이며 길이는 가슴둘레 정도이다. 양쪽 끝에 끈을 달아 매거나 한쪽 끝에는 끈을 달고, 다른 쪽에는 끈을 고정시키는 장식이 달려 있다. 겉은 검정색으로 여의두(如意頭), 용(龍), 칠보문(七寶紋) 등의 문양이 있고 남색 무명으로 안을 했으며 속에는 심을 넣어 빳빳하다.

전대(戰帶)는 전복 위에 매기도 하고, 광대 위에 매기도 한다. 유물에 의하면 넓이는 광대보다 좁거나 거의 광대 넓이 정도이며 길이는 3.5~4.0m 정도로 상당히 길다. 이것을 가슴에 한번 둘러서 매고 앞으로 길게 늘어뜨렸다. 전대는 길게 잘라서 바느질을 할 때 나선식으로 돌아가면서 박기 때문에 통 모양이 된다. 비상시에는 전대에 식량을 넣어서 메었다 한다. 회화에는 남색, 홍색, 녹색의 전대가 나타나지만 유물에는 남색 전대로 동다리 안감과 같은 감으로 하거나 사(紗)종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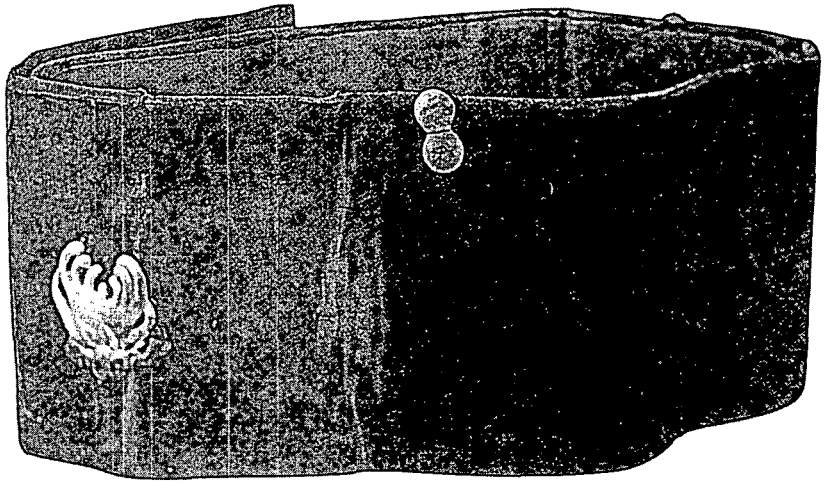

〈그림 3-46〉 廣帶(고려대박물관 소장)

만든 것이 다수이다.

라) 戰笠(氈笠)

전립(氈笠)은 모(帽)와 첨(簷)의 구별이 있으며 모정(帽頂)이 둥글어 일반적으로 복발형 모옥(覆鉢形帽屋)에 양태(涼太)를 단 형태로서 여기에는 상모(象毛), 공작우(孔雀羽), 쟁자(鎗子), 매미가 달려 있다. 이것은 전립(戰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로 무관(武官) 융복의 부속물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인 듯하다.[179]

전립(戰笠)은 상고시대부터 이어 내려온 국속(國俗)의 입자(笠子)와는 근원을 달리하는 호족(胡族) 계통의 것으로서 조선왕조 중기 이후에 무관의 융복에 많이 쓰였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의 사용 연대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 지권(志卷) 26 여복조(輿服條)에 보이는 고려말 우왕 13년 시혁호복시(始革胡服時)의 전모(氈帽)에서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을 듯하나, 전립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 예는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5년 7월에 경변사(警邊使) 이극균(李克均)에게 내린 단자(單子)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전립의 수용시기는 적어도 연산군대 이전으로 소급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재(李縡)의 『삼궁기(三宮記)』나 이긍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별집』 권13 관복조(官服條)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무오년(광해군 10년 : 1618)에 요동으로 들어가 전쟁할 때에 국내에서 혹 전립(戰笠)을 쓰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본받아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고, 정묘년(인조 5년 : 1627) 호란 때에는 사대부도 혹 썼으며 무인들은 대관(大官)이라도 모두 전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에 수용되어 착용되던 전립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광해군 10년경으로 추측된다.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전립(氈笠)은 옛날에는 다만 군한(軍漢)이 이를 썼기 때문에 또한 전립(戰笠)이라 하였다. 제민(齊民)은 다만 평량자(平涼子)를 썼다. 병자·정묘호란 후

79) 姜淳弟, 1974「韓國笠制의 變遷에 관한 硏究」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p. 59.

부터 군민통용(軍民通用)의 입모(笠帽)가 되었다."[180]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립(氈笠)은 전립(戰笠)이라 하며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후기에는 군인과 민간에서 함께 착용하는 입모(笠帽)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전립은 연산군대 이전부터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무관용으로 광해군 10년부터 고종 32년 칙령 78호가 반포되어 군복이 근대 복장으로 개혁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립은 '털을 다져서 담을 만들고 그것을 골에 넣어서 만들어 낸 쓰개'[181]의 일종이었으며, 모(毛)로 만든 모전립(毛戰笠)과 발(髮)과 대나무로 만든 죽전립(竹戰笠)이 있었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영조 26년 군병 전립(戰笠)에는 발미(髮尾)로써 대신 하는 것이 있다. 그 경치(輕侈)를 취해서 그러하다. 그러나 모발(毛髮)은 취후(毳厚)하기 때문에 환촉(丸鏃)이 뚫지 못한다. 발립(髮笠)은 견박(堅薄)하여 뚫기 쉽다'[182]라고 한 것이나 『대전회통(大典會通)』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의 '원근행행시에 군복을 병행하여 착용한다. 근례에 승사·각신·별운검·문장신·문총은 죽전립을 착용하고 고종 갑자년에 모전립은 복구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183]라는 규정과 고종 원년 4월에 '문신(文臣)의 죽전립(竹戰笠)을 모전립(毛戰笠)으로 대용케 했다'라고 한 것에 의하면 전립(戰笠)은 주로 모(毛)로 만들었으나 발(髮)이나 대나무로 만든 전립도 널리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모(毛)로 만든 전립이 실용적인 군모(軍帽)로서 구실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모(毛)로 만든 무거운 전립보다는 발(髮)이나 대나무로 만든 전립이 가볍고 맵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호에 맞게 되고 그 결과, 발이나 죽으로 만든 전립이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모전립(毛戰笠)은 안올림 벙거지와 벙거지 또는 벙테기로 나눌 수 있는데, 안올

---

180) 『靑莊館全書』 卷61 盎葉記

181) 최남선, 1948 『조선상식』 p. 126.

182) 『林下筆記』 禮典 儀章

183) "遠近行幸時竝着軍服　近例承史閣臣別雲劍文將臣文摠　管着竹戰笠　當苧甲子毛戰笠復舊定式"

림 벙거지는 품질이 좋은 모제품(毛製品)으로 공작우(孔雀羽), 상모(象毛), 쟁자(鎗子)를 모정(帽頂)에 달고, 양태(涼太)의 안쪽은 남색 운문단(雲紋緞)을 사용했으며, 하졸배들의 입자(笠子)에 전립(戰笠) 모양의 입자(笠子)가 있는데 이것은 벙거지, 또는 벙테기라고도 하며 이 명칭은 북방 호족(胡族)의 말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184]

또 전립에는 그 몸체를 흰색으로 한 백전립(白戰笠)이 있는데 이것은 국상중(國喪中)에 사용했으며, 모전립(毛戰笠)이라 하여 전립(戰笠)의 상면에 저모(猪毛)를 깔아서 광택을 더한 고급품도 있다.

재료가 발(髮)이나 대나무로 되어 있는 전립은 모체(帽體)가 둥근 것을 제외하고는 흑립(黑笠)과 아주 유사하다. 흑립의 형태나 상협하관(上狹下寬)의 원통형 모옥(帽屋)과 약간 곡선을 이루는 양태(涼太)로 되어 있으며, 대나무를 아주 가늘게 오려서 만들고 싸기를 마발(馬髮), 우미(牛尾), 저모(猪毛) 등으로 덮어서 흑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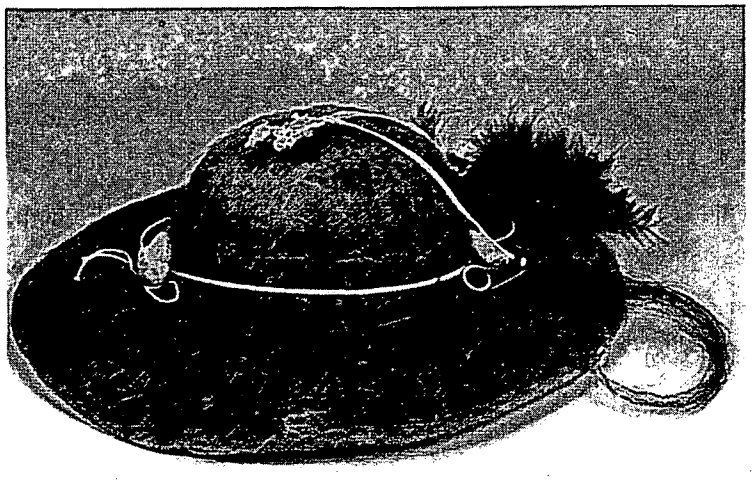

〈그림 3-47〉 戰笠(고려대박물관 소장)

184) 최남선, 앞 책, p.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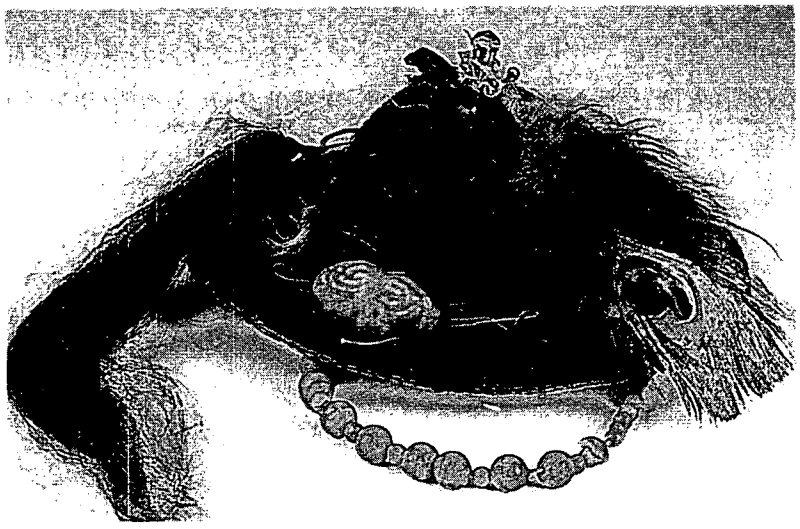

〈그림 3-48〉 戰笠(고려대박물관 소장)

싸기의 재료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 발(髮)이나 대나무로 만든 전립도 흑립처럼 발(髮)과 대나무를 함께 써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며, 발(髮)과 대나무로 만든 전립(戰笠)을 죽전립(竹戰笠)이라 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영조 26년 전립에 발(髮)을 쓰는 것을 금지했고, 고종대에 죽전립(竹戰笠)을 모전립(毛戰笠)으로 대용하게 한 것에서 미루어 추측해 볼 때, 발(髮)로 만든 전립은 영조 26년 이전에 이미 널리 착용하였으며 발의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그 경치(輕侈)함 때문에 선호되어 고종대까지도 계속 착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85]

고려대박물관 소장 전립(그림 3-47)은 모전립(毛戰笠)이며 모자와 양태(涼太) 부분은 겹으로 짜여졌고, 모정(帽頂)에는 금색의 쟁자(鎗子)가 있고, 은각 밑부분에 자주색 실로 매듭을 했다. 땀테에는 흑립에서처럼 무늬가 있다. 공작우, 상모, 매미, 입영(笠纓)은 없었으나 전립의 상태는 아주 좋다.

〈그림 3-48〉은 고려대박물관 소장품으로 착용자 미상이다. 모자는 흩이고, 양태(涼太)는 겹으로 짜여졌다. 쟁자(鎗子), 밀화(密花), 공작우(孔雀羽), 우모(牛毛), 돈모(豚毛), 입영(笠纓) 등이 있으며, 공작우(孔雀羽)는 공작털을 여러 개 묶고 그 위를 남색의 짧은 털로 감싸고 있다.

---

185) 강순제, 앞 글. p. 55.

고려대박물관 소장품은 착용자가 문신이고, 전술한 바 문신의 죽전립을 모전립으로 대용하게 한다는 기사와 왕의 원근행행시(遠近行幸時) 백관(百官)은 군복을 착용하되 근례(近例)로는 죽전립(竹戰笠)을 착용했으나 모전립(毛戰笠) 착용이 정식이라고 한 죽전립 착용에 관한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선왕조 말에는 문신이 죽전립을 주로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전립에는 쟁자, 입영, 상모, 공작우, 매미 등을 달았다. 다음에는 이러한 전립의 부속물을 종류별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쟁 자(錚子)

쟁자(錚子)는 모정(帽頂)에 부착하는 장식물로 정자(頂子)라고도 한다. 쟁자의 제도는 고려 공민왕 16년 7월에 이르러 공민왕 6년에 우필흥(于必興)의 진언(進言)에 따라 이룩된 제도에 등위(等位)를 가리기 위해 백옥(白玉), 청옥(青玉), 수정(水精), 잡수정(雜水精) 등의 쟁자를 한 데서 비롯된다.[186]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대군(大君)은 금(金)으로 하고, 정3품 이상은 은(銀)으로 하고, 사헌부, 사간원, 관찰사, 절도사는 입식(笠飾)에 옥정자(玉頂子)를 사용하고, 감찰은 수정정자(水精頂子)를 사용한다."

위의 규정을 통해 볼 때, 조선왕조의 쟁자는 품계와 직분에 따라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왕조 초기에 관직체계의 완성과 쟁자의 착용기준이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정조 17년 10월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전립(戰笠) 위의 정자(頂子)로 직품(職品)을 대략적으로 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도금(鍍金), 조금(雕金), 순은(純銀), 누은(鏤銀), 종결(髮結), 목각(木刻)과 같은 것으로 구별한 것이다."[187]

---

186) 『高麗史』志 卷26 輿服

187) 『正祖實錄』46, 17年 10月 甲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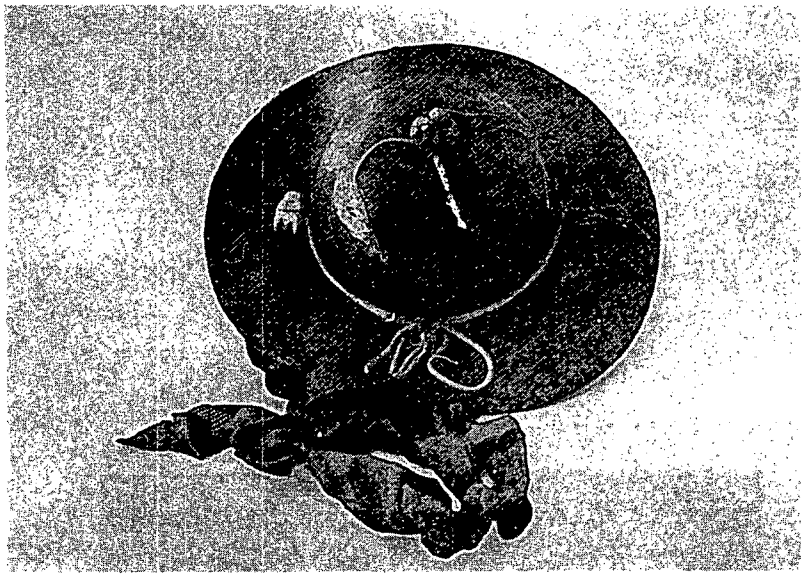

〈그림 3-49〉 鐺子(육군박물관 소장)

위의 기사로 보아 고려시대의 관직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쟁자제도가 조선초기를 거쳐 후기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8] 이는 신분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상위신분은 정자(頂子)를, 하위신분은 이전(耳錢)을 착용하여 신분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189]

유물 중에 쟁자(鐺子)는 금색의 금속인데 도금을 하거나 칠보를 입힌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정자는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준형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무관으로서의 기개나 용맹성을 상징하는 형태로 만들었으리라 생각된다.

188)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는 頂子制度는 정조대의 『大典通編』, 고종대의 『大典會通』 禮典 儀章條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 전기간 동안 커다란 변화없이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자는 관직과 품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지의 하나였다. 품계에 따라 착용 頂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옆의 표를 참조할 것.

189) 『一哂錄』16 軍制考
"頂子耳錢以表貴賤"

1　品	純玉(王鷺)
2　品	鍍　金
3　品	雕　玉
從3品 이하	雕　金
5·6 品	純　銀
7品 以下	靑 銀 絲
營門將校	縷　銀
馬　軍	木　刻
步兵~皂隷	착용불허

(자료 : 『一哂錄』16 軍制考)

하예(下隷)나 여정(輿丁)의 벙거지에는 나무를 둥근 모양으로 깎은 목각(木刻)을 모정(帽頂)에 달았다. 또 입식(笠飾)에 옥로(玉鷺)가 있는데, 옥로는 쟁자(錚子)의 일종으로서 해오라기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옥로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옥로를 흑립(黑笠)의 모정에 장식한 것을 옥로립(玉鷺笠)이라 하며, 국가의 재상이 외국에 사신으로 나갈 때나 의식 때에 썼다.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이나 장신(將臣)은 융복(戎服)과 군복(軍服)을 착용하였을 때 입식(笠飾)에 옥로를 하였고,[190] 현충사박물관에 이순신 장군의 옥로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옥로를 어떤 입자(笠子)에 달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를 통해 볼 때 문관뿐 아니라 무관도 함께 옥로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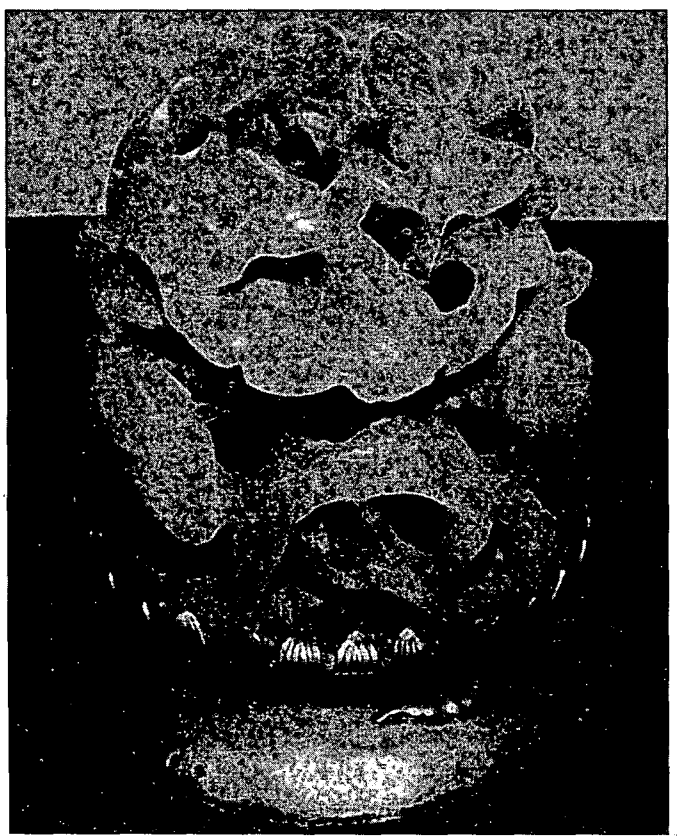

〈그림 3-50〉 玉 鷺

190) 유희경, 앞 책, p. 359.

○ 笠纓·虎鬚

입영(笠纓)은 입자(笠子)를 쓰고 매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실상 장식적인 요소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전립(戰笠)에는 주로 밀화영(密花纓)을 썼는데 하예(下隷), 여정(輿丁) 등의 벙거지에는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밀화의 기분을 낸 입영을 사용한 것을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입영에 대한 기록은 조선초부터 보인다. 세종대에는 옥(玉), 번옥(燔玉), 마노(瑪瑙) 등으로 입영을 했는데, 상하 구별없이 입영에 사치를 해서 금령을 내린 기록이 있다.[191]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당상관은 입영에 금옥을 사용한다'[192]고 한 것으로 조선초의 입영도 관직과 일정하게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연산군 10년 10월에 왕이 입영에 포백(布帛)을 쓰자고 하여 입영을 폐한 적도 있으나,[193]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예전(禮典) 금제조(禁制條)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마노(瑪瑙)·호박(琥珀)·명박(明珀)·산호(珊瑚)·청금석(靑金石) 입영(笠纓)은 당상관(堂上官) 외에는 일절 금한다."[194]

또한 『대전회통(大典會通)』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도 다음의 조항이 보인다.

"자립(紫笠)을 칠사립(漆絲笠)으로 개정(改正)하며 패영(貝纓)은 지금은 폐지하고 흑립정영(黑笠晶纓)의 정영(晶纓)도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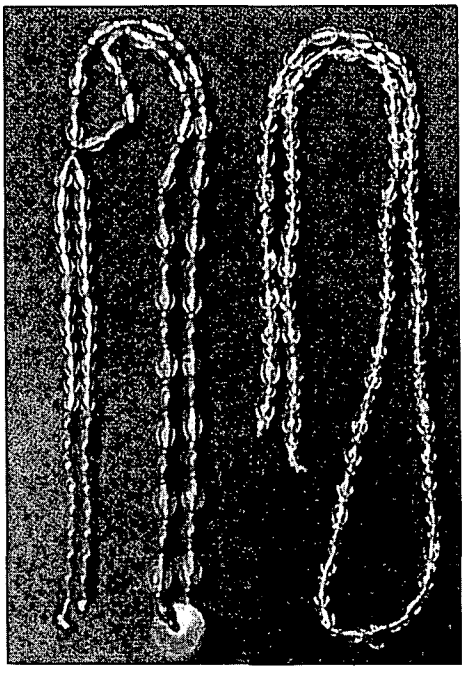

〈그림 3-51〉 笠 纓

191) 『世宗實錄』99, 25年 2月 13日
192) "堂上官 笠纓 用金玉"
193) 『燕山君日記』 10年 10月 戊辰
194) "瑪瑙·琥珀·明珀·珊瑚·靑金石笠纓 堂上官外 一禁"

정부는 이러한 조항을 통하여 입영, 패영, 정영 등이 사치풍조를 지나치게 조장하는 데 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입영에 죽영(竹纓)을 사용하도록 하여 한때는 대 갓끈이 유행한 일도 있었다.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입영의 사용은 개항 이후 의관(衣冠)과 문물(文物)이 서구화되면서 입(笠)과 함께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전립 이외에 융복을 착용하였을 때 주립에 착용하는 호수(虎鬚)가 있다. 본래 호랑이 수염으로 만든다 하여 호수(虎鬚)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싸릿대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호수는 현종이 온행(溫行)했을 때 보리가 잘 익은 것을 기뻐하여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수행한 신하들에게 각기 보리이삭을 꽂도록 한데서 연유하였다.[195]

○ 象 毛

'삭모(槊毛)'라고도 하며 전립(戰笠)뿐만 아니라 기(旗)나 창(槍) 등의 머리에 달기도 하는데, 이삭모양의 홍색 가는 털이다. 유물 중에는 길이가 50㎝ 정도 되고 숱이 많은 상모가 있는가 하면 이보다 길이도 짧고 숱도 적은 상모도 있어, 상모의 길이나 숱이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으며, 작우(雀羽)와 상모(象毛)로써 문무를 구별했다.[196] 전립에 달려 있는 상모는 끝에 금속의 고리 장식이 있는데, 이 고리가 정자(頂子)의 고리에 연결된다. 벙거지는 상모 끝의 끈으로 모정(帽頂)에 달려 있는 목각(木刻)에 연결되어 있다.

○ 孔雀羽

공작의 깃털은 각종 장식용 재료로 쓰인다. 전립(戰笠)도 공작의 깃털로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공작털 하나만을 달기도 하고, 공작털을 여러 개 묶고 그 둘레를 다른 털로 감싸서 다발로 만들어 달기도 했다. 이는 주로 문관이 착용하였으며, 무관은 갈모(鶡毛)로 장식하였다.[197]

---

195) 『一哂錄』16 軍制考
"虎鬚 …… 顯廟朝 溫行時 因麥事登場以志喜之意 命侍臣搜一穗者 後變爲虎鬚"

196) 『正祖實錄』46,17年 10月 甲子

197) 『一哂錄』16 軍制考
"宜其文以雀羽 武以鶡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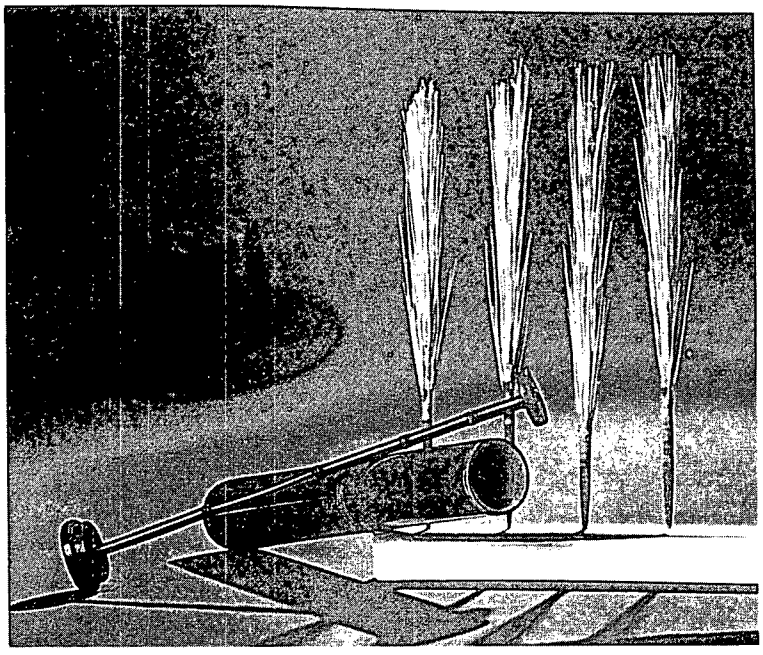

〈그림 3-51〉 虎　　鬚

○ 매　미

전립(戰笠)의 양쪽에 매미 형태의 밀화(密花)를 한 마리씩 달았다. 매미를 단 것은 매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인 듯하다. 매미는 햇볕을 피하여 허물을 벗음으로써 외각(外殼)을 벗고 새로운 삶을 누리기 때문에 재생과 부활과 탈속(脫俗)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매미의 변태과정은 불사(不死)와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육운(陸雲)의 「한선부(寒蟬賦)」에서도 매미의 다섯 가지 덕(德)으로 문(文)·청(淸)·염(廉)·검(儉)·신(信)을 들고 있다.

매미의 이러한 상징성이 군대나 사회조직에서의 미덕과 일맥 상통하는 점 때문에 매미가 전립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임금이 정무를 볼 때에 쓰던 익선관에 매미의 날개〔蟬翼〕모양의 뿔이 있다. 이는 매미의 다섯 가지 덕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며, 전립의 양쪽에 매미모양의 장식을 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인 것으로 생각된다.[198]

198) 『한국문화상징사전』 1992 동아출판사, p. 264.

마) 木 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복(朝服)에는 흑피혜(黑皮鞋), 공복(公服)에는 흑피화(黑皮靴)를 1품에서 9품까지 신고, 일상복에는 당상관 이상이 협금화(狹金靴)를 신었는데, 이 제도가 조선말기에 조복(朝服)의 흑피혜, 공복(公服)의 흑피화, 상복(常服)의 협금화가 목화(木靴) 하나로 통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춘명일사(春明逸事)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화자(靴子)를 순전히 가죽으로 만들던 것이 뒤에 전(氈)으로 내장(內粧)하고, 외부는 청금선(靑錦緣)으로 둘러서 화자(靴子)의 밖에 보이게 하고, 고급품은 금단(錦緞)으로 꾸미었는바, 이것은 근래의 신제(新制)로서 태조(太祖)가 어제(御製)한 수화자(水靴子)의 모양과 같다."

여기서 화자(靴子)를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은 흑피화를 뜻하는 것 같으며, 전(氈)으로 하게 된 것은 목화라 불리게 된 듯하다. 또 새로 만든 화자가 태조(太祖)가 만든 수화자의 모양과 같다고 한 것으로 봐서 흑피화, 수화자, 목화의 모양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53〉 木靴(고려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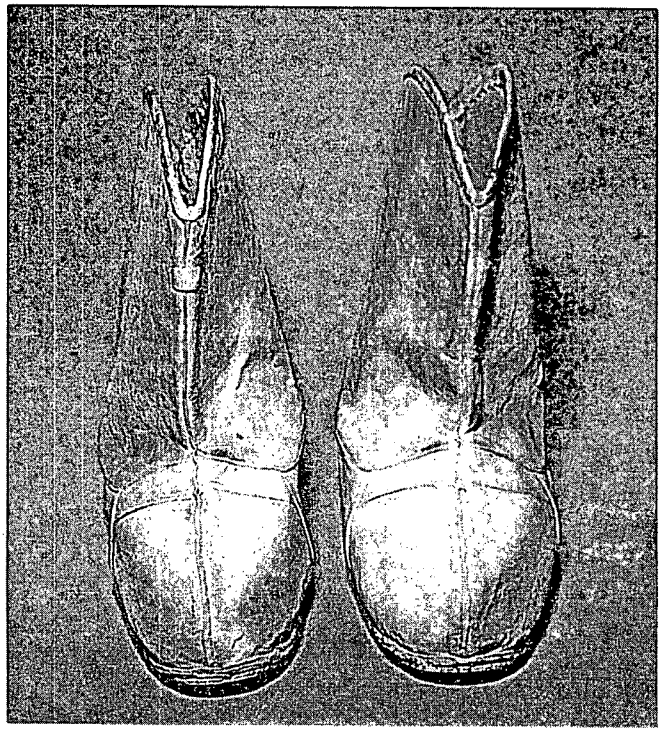

〈그림 3-54〉 **木靴**(육군박물관 소장)

태조가 만든 수화자는 주로 무신(武臣)들이 신었는데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에 수화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세기까지 계속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목화와 모양이 비슷하여 같이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화의 모양은 요즈음의 반장화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목이 길고, 코끝이 둥글며 넓적하다. 신바닥은 나무나 가죽으로 되었고, 신목은 검정색 융이나 우단(羽緞) 같은 것으로 겉을 하고, 흰색 무명이나 융으로 안을 했다. 목화의 겉은 솔기마다 흰색이나 홍색, 녹색 등으로 선을 두르고 발목 부분에도 선을 넣어서 장식했으며, 신목 윗부분은 홍색이나 보라색 천으로 넓게 선을 댔다.

(2) 附屬物

가) 등 채〔藤鞭〕

등채〔藤鞭〕는 대체로 채찍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형태로 보아 채찍이라기보다는 지휘봉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등편에 대해서는 문헌상의 기록을 거의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유물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등편(藤鞭)의 모양은 70cm 정도의 막대에 여러 가지 장식이 달려 있다. 막대의 양끝은 금속으로 싸고, 한쪽 끝의 손잡이 부분에는 헝겊으로 감쌌다. 그 밑에는 기다란 헝겊을 길이로 반을 접어서 매달았고, 다른 한쪽 끝에는 몇 가지 색의 작은 헝겊을 포개어 놓고 그 위를 끈으로 묶었다. 이 끝에는 딸기술을 달았다.

여러 유물을 보면 막대는 누런색에 밤색으로 무늬가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칠을 했다. 손잡이 아래 부분의 긴 헝겊은 홍색, 녹색, 미색, 흰색, 곤색, 남색 등으로 색이 동일하지 않으며 겹으로 되어 있는데 안팎의 색이 다르거나 동일하다. 딸기술 윗부분은 2~3종류 색의 작은 천을 포개어 놓고, 그 위를 끈으로 묶었는데 묶은 끈의 수가 3줄씩 5번, 4줄씩 4번, 4줄씩 5번 등으로 다르다. 딸기술은 단색이나 색동으로 했다. 국상 때에는 흰색으로만 된 등편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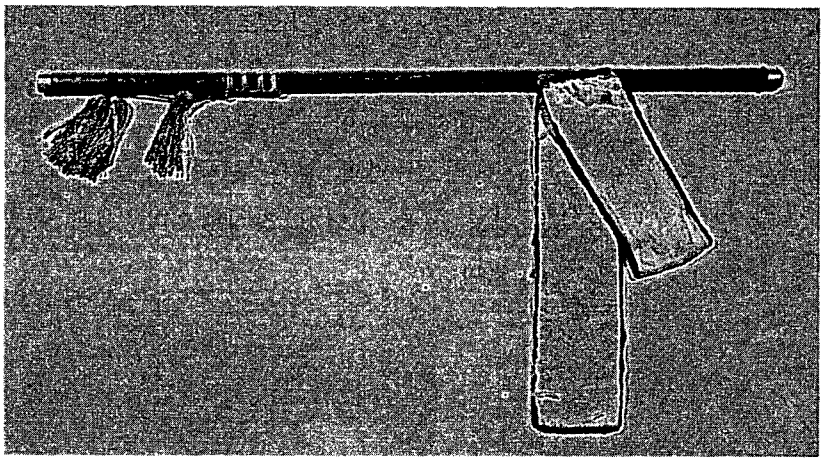

〈그림 3-55〉 **藤鞭**(육군박물관 소장)

나) 筒 箇

동개(筒箇)는 버선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활을 넣는 활집으로, 활의 절반 정도만 들어가며 가죽으로 만들며 헝겊으로 만든 것도 있다. 동개는 동개를 찼다고 해서 '패동개(佩筒箇)'[199]라고도 하며 통아(筒兒), 탁달(橐韃)이라고도 한다. 또한 동개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보(鞴)', '차(鞢)', '호(箶)', '록(簏)' 등이 있다.

유물에 의하면 동개는 가장자리에 선을 둘렀고, 화살을 넣는 집이 동개에 부착된 것과 따로 떨어진 것이 있는데 화살집이 따로 떨어진 것은 동개에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또한 색은 검정색, 밤색, 녹색이 있으며, 회화에는 금색, 홍색의 동개도 있다. 고려대박물관 소장 동개는 녹색의 헝겊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25~30cm 정도다. 연세대박물관 소장 동개는 모두 가죽으로 만들었으나 그 중 2개는 검정색과 녹색으로 장식이 많으며 크기는 고려대박물관 소장 동개 크기와 비슷하다.

다) 兵 符

병부(兵符)는 발병부(發兵符)라 하며 군대동원의 표지이다. 모양은 동그랗고 납작한 나무쪽이며, 한쪽에 '발병(發兵)'이라 쓰고 다른 한쪽에는 모도관찰사(某道觀察使), 절도사(節度使)라 쓰고 제진(諸鎭)을 명시할 때는 그 진호(鎭號)까지 써서 중간을 두 쪽으로 나눈다. 우반부(右半符)는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및 제진에 주고 좌반부(左半符)는 왕궁(王宮)에 보관하되 군을 징발할 경우에는 왕이 좌반부와 교서를 하사하는데 책임자는 부합 여부를 조사한 후 군대를 동원한다. 일명 왕부(王符), 동부(銅符), 동수(銅獸), 금부(金符), 왕린(王獜), 부엄(符嚴), 부신(符信)[200]이라고도 한다.

병부는 병부 주머니에 넣어서 허리에 찼으며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은 염낭같으며 같은 가죽으로 끈을 한다. 끈은 넓고 길며 한쪽 끝의 일부를 두 갈래로 나누어 주머니에 끼워서 묶었다.

병부는 무관이 모두 차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파견되는 무관이 패용했다.

---

199) 석주선, 앞 책, p. 429.

200) 석주선, 앞 책, p.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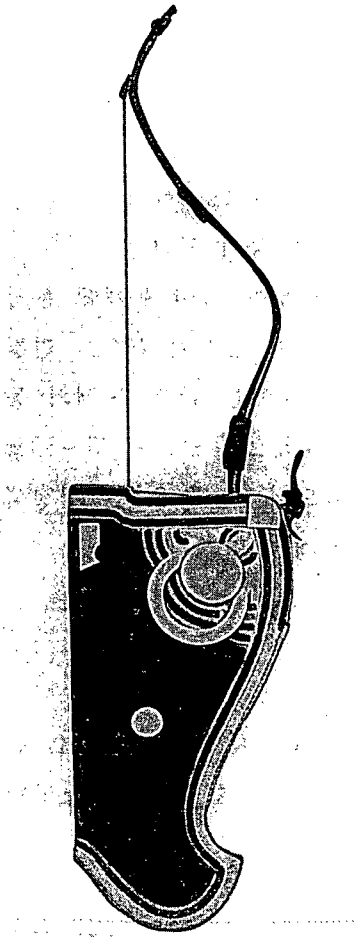

〈그림 3-56〉 筒 箇
(고려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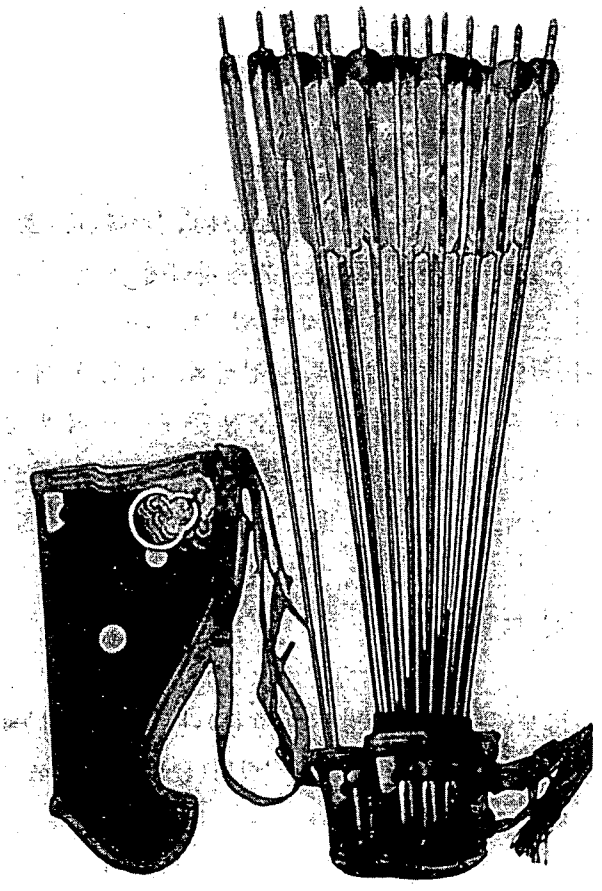

〈그림 3-57〉 筒 箇
(육군박물관 소장)

라) 號 牌

조선시대 왕실(王室), 조관(朝官)에서 서민(庶民), 공·사천(公私賤)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牌)로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호패법은 원(元)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354년 고려 공민왕 3년에 이 제도를 모방하여 수·륙군정(水陸軍丁)에 한해서 실시했으나 그다지 효과는 없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태종 13년 9월에 처음 실시했으나 조선말까지 계속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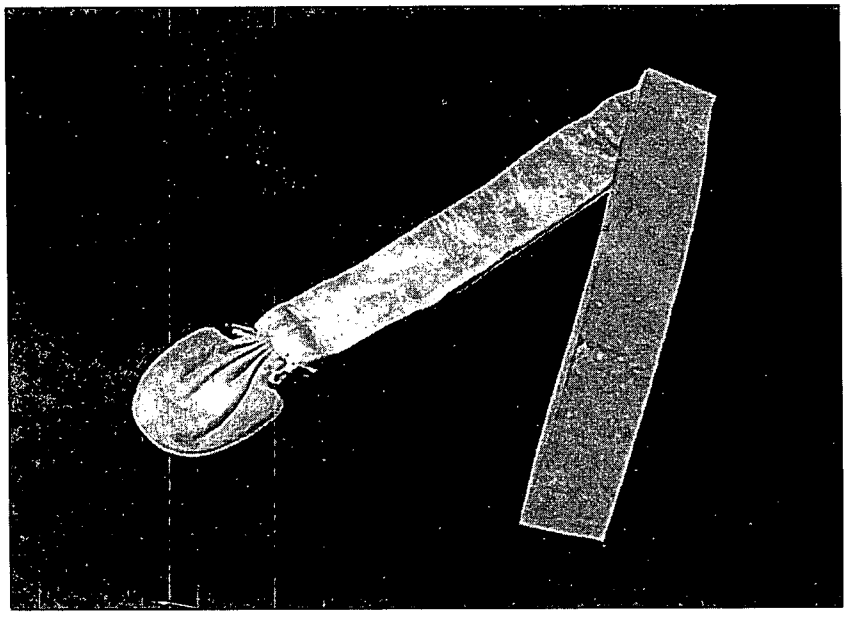

〈그림 3-58〉 兵符 주머니(육군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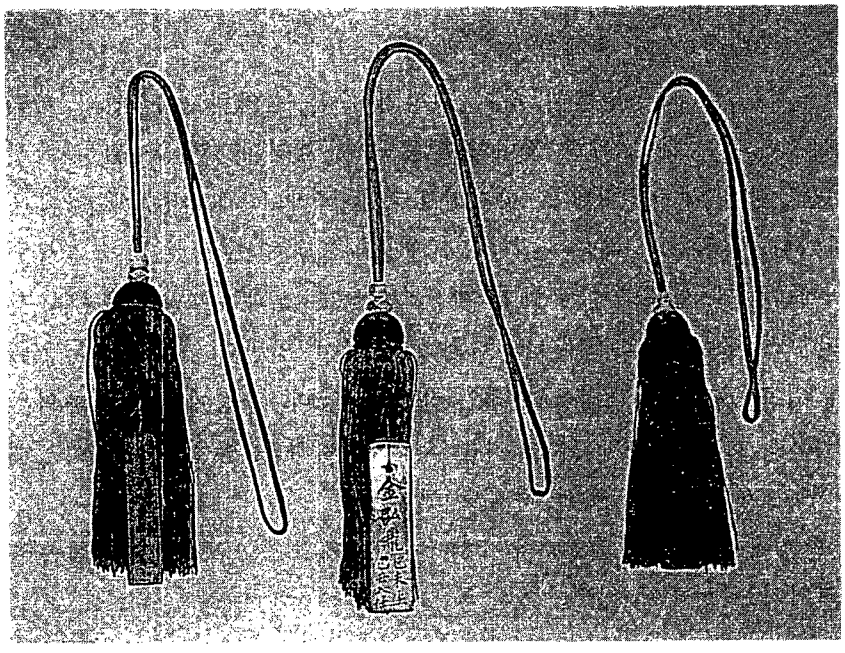

〈그림 3-59〉 號牌(고려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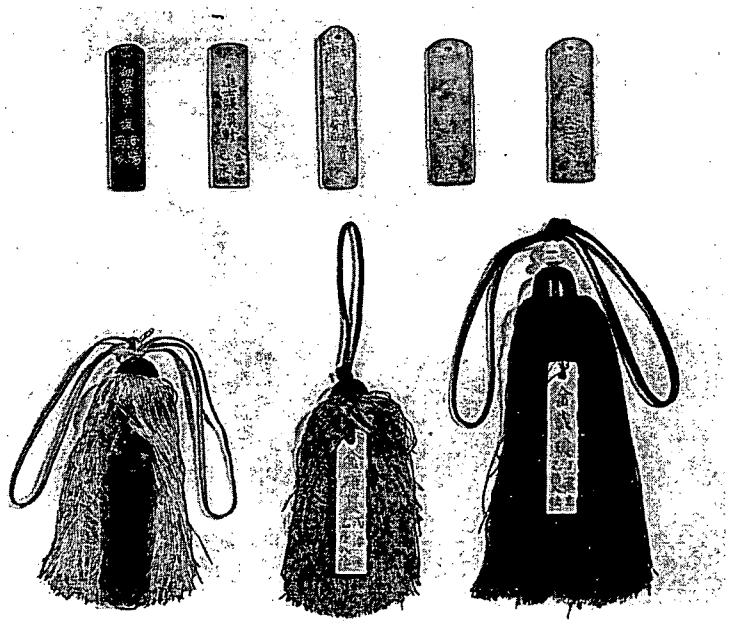

〈그림 3-60〉 號牌 (육군박물관 소장)

사용되지 못하고 여러 번 존폐를 거듭했다.[201]

호패의 목적은 호구를 명백히 하여 민정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과 계급을 분명히 하여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군역, 요역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 허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호패는 계속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그리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일반 백성들은 국역(國役)을 피하기 위해서 양반의 노비로 투탁(投托)하였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잦았다. 조정에서는 호패의 위조자를 극형에 처하고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엄벌에 처하는 법을 마련했고, 세조 때는 호패청을 두어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도 했다.[202]

호패의 모양은 길이 3치 7푼, 폭 1치 3푼, 두께 2푼이라 했으나 현존하는 유물을 보면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

201) 호패에 관해서는 이광린, 1959「호패고」『백낙준박사화갑기념논총』; 권내현, 1997「숙종대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운영」『역사와 현실』 25를 참고할 것.

202) 이광린, 앞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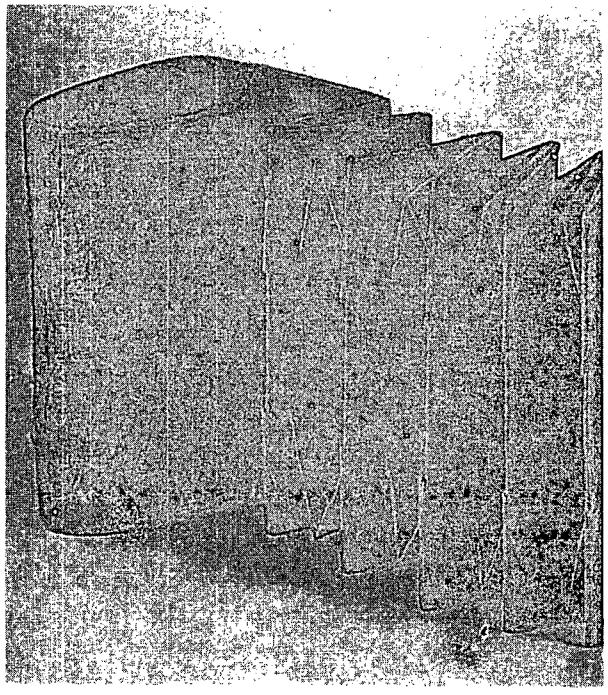

〈그림 3-61〉 호패주머니

숙종 1년에 지패법(紙牌法)을 반포하여 시행했다. 통내(統內)에 남정(男丁) 16세 이상은 모두 지패(紙牌)를 차게 하였는데, 패면(牌面)에는 모현(某縣), 모읍(某邑), 모리(某里), 모역(某役), 성명(姓名), 나이를 적었고 공·사천인은 각각 관(官), 주(主), 이정(里正), 이유사(里有司)의 이름과 직함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조선전기 이래 당시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양정수괄(良丁搜括)에 주력할 목적으로 강조된 호패제는 오히려 농민들의 유리유망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03]

호패(號牌)에는 2품 이상은 관직·성명·3품 이하의 조관·성중관(成衆官)·유음자제(有蔭子弟)는 관직·성명·거주지, 5품 이하의 군관(軍官)은 소속부대·신장, 잡색인(雜色人)은 직역(職役)·소속, 서민은 얼굴빛·수염의 유무를 기재하고 노비는 주인·연령·거주지·얼굴빛·신장·수염의 유무를 기재했다. 종실(宗室) 및 문관(文官)은 홍색으로 새겨 글자를 메우고 무관은 청색, 음관(蔭官)은 황색으로 하였으며

203) 吳永敎, 1992『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의 轉換－17세기 國家再造와 관련하여－』연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그 나머지는 흰색으로 하였다.

호패는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 및 수령이 관할하고 이정(里正), 통수(統首), 관령(管領), 감고(監考) 등이 실제 사무를 담당했다. 호패의 지급방법은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단자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원에 한하여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며 기타는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單子)와 대조한 후에 낙인(烙印)하여 지급했으며 승도(僧徒)들은 3개월 동안 남한산성에서 부역을 마친 후에 호패를 지급했다.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호패를 차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위조(僞造)하거나 훔친 자는 사형, 빌려 차는 자는 누적률(漏籍律)을 적용하며 호패를 빌려 준 자는 매 100에 3년간 도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죽었을 때는 관가에 호패를 반납했다.

호패의 재료는 조선전기에 2품 이상은 상아(象牙) 또는 녹각(鹿角), 4품 이상은 녹각 황양목(黃楊木) 또는 자작목(資作木) 7품 이상은 자작목, 서인(庶人) 이하는 자작목, 잡목(雜木)을 썼던 것이,[204] 조선후기에 접어들면 2품 이상은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雜科) 합격자는 각패(角牌),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잡직(雜職), 서인(庶人), 서리(書吏)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사천(公私賤)은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했다.[205]

204) 『太宗實錄』 1, 13年 9月 丁卯.
205) 『續大典』 戶典 戶籍.

第 4 章　近代의 軍服飾

時代 槪觀

第 1 節　舊韓末(大韓帝國)의 軍服飾

第 2 節　獨立運動期의 軍服飾

第 4 章 近代의 軍服飾

時代 槪觀

근대 군복식에 관하여 기술함에 있어 구한말기(1894~1910)를 따로 구분한 것은 비록 그 기간은 짧다고 하더라도 복식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적 군복인 벙거지에 동다리를 입던 구군복(具軍服)으로부터 양복형식의 서구식 군복으로 바뀐 전환기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세기말 개항과 더불어 구미제국의 근대문물과 접촉하게 되면서 개화(開化)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의해 개국한 일본은 명치유신(1867)으로 근대화를 이루게 되자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번번이 거절당하게 되자 무력으로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하였고(1876), 이로 인하여 조선조의 오랜 쇄국의 장벽은 무너지고 일본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미국과도 수교통상조약을 맺고 타 서구열강에게도 차례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반목이 생기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투로 반일(反日)·반청(反淸)감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세의 침략도 날로 더해만 갔다. 이것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드디어는 임오군란(壬午軍亂 ; 1882)과 갑신정변(甲申政變 ; 1884)으로 이어졌다.

즉, 1880년(고종 17년) 별기군(別技軍)의 편성과 군제개혁(軍制改革)으로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된 구식군대의 불평불만은 임오군란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별기군은 폐(廢)하게 되고 청군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청군에 의한 친군영(親軍營)이란 신식군대가 다시 편성되었다. 일본이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한국에 나오자 개화파 요인들은 개화독립과 나라의 부강을 이루어 보겠다는 신념으로 정변(갑오)을 일으켰으나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실패하자 사대당 정권이 재건되고 청의 세력이 한층 더 강대해졌다.

문호개방 이후 외래상품의 활발한 국내유입은 국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양반관료들의 수탈에도 견디어 온 농민들에게는 외세에 대한 반감과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조시키게 하였다. 이것이 동학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마침내는 동학란(東學亂)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1894~1895). 이 동학란은 비록 타의(他意)이기는 하나 대내적으로는 봉건체제를 붕괴시키는 단서가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淸日戰爭)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1894~1895).

국내정세가 친러 방향으로 기울어지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친러적인 민비(明成皇后)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키고(1895), 이어서 단발령(斷髮令)까지 반포하니 마침내는 의병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친러파에 의한 국왕의 아관파천(俄館播遷) 사건이 일어나고(1896), 다음해 파천 1년만에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여 대한제국을 반포하여 제국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후 러·일의 각축이 더욱 심화되어 드디어는 러·일전쟁으로 번졌고(1904),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1905), 1907년에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강행하더니 1910년에는 드디어 한일합방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한편, 군인의 복식도 무기체계의 발달과 이에 상응하는 전투형태의 변화에 의해 변천해 왔다. 원래 군인의 복식은 전장(戰場)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 주안을 두고 발달해 왔으며, 예로부터 칼과 활을 가지고 싸웠던 때에는 철제갑주를 착용하였고, 화약무기가 발달되면서 보다 기민성이 요구되자 경쾌한 갑의(甲衣)를 착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갑의마저도 점차 방어기능이 쇠퇴됨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가벼운 포제철릭(布製帖裏)과 구군복(具軍服)으로 변천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고유군복인 군복(벙거지에 동다리)도 갑오개혁의 영향으로 군제마저 서구식 일본군제를 본받아 편성됨에 따라 복식도 새로운 형태의 신식군복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양복제식(洋服製式)의 복식은 계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군인의 제복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의 군복식을 소개함에 있어 이를 2개 절로 나누고, 제1절에서는 구한말기(1894~1910)의 육군복장규칙과 복장제식(服裝製式)을 당시의 관보(官報)를 위주로 하여 논하고, 제2절에서는 독립운동기(1910~1945)의 의병과 광복군 복식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광복 이후의 군복식은 차후 현대복식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第 1 節 舊韓末(大韓帝國)의 軍服飾

1. 政治·外交·社會 및 軍事制度의 變化와 軍服飾

군복의 변천이 비록 무기체계와 전술형태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간접적이긴 하나 군제(軍制)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군사적 배경과도 밀접한 연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오개혁(1894) 이후 한일합방(1910)이 될 때까지의 우리나라 군제는 일정한 근대화 목표에 의하여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외국 열강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도 우리나라 정계(政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군제를 받아들여야 하였던 것이다.

즉,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난 1896년까지는 일본군 군제, 1896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주적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한 1899년까지는 러시아 군제를, 1899년부터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1904년까지는 일본과 러시아 군제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요소를 가미한 군제를, 그리고 1904년 이후에는 모두 일본군 군제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군사제도상의 변화로는 군의 편성과 병종(兵種)·군령(軍令) 및 군정기관·군사법(軍事法) 그리고 군인의 계급과 복식 등이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근대적인 것으로 혁신되었던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대편성이 오(伍)·대(隊)·여(旅)·통(統)·부(部)·위(衛)에서 구대·소대·중대·대대·연대·여단체제로 편성되고, 병종도 보병·기병·포병·공병·치중병·의무·헌병·군악 등이 보이고, 군령과 군정기관(軍政機關)으로는 군부와 원수부 체제(元帥府體制), 군사법으로는 장교분한령(將校分限令)·군징계령·위수령 등이 나타나고, 군대의 계급으로는 장교와 하사관의 관등과 계층이 정하여졌으며, 복식으로는 육군복장규칙이 정하여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 甲午更張과 日本의 影響期(1894~1896)

1894년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해로서 동학란이 일어났고(1894~

1895), 또 청·일전쟁이 벌어졌으며(1894~1895),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개혁인 갑오경장(甲午更張)이 단행된 해였다(1894).

동학란은 농민을 주체로 한 혁명세력이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고 정부의 그릇된 정치에 개혁을 요구하였던 반식민·반봉건적 투쟁이었다. 비록 동학란은 외세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말았으나 대내적으로는 갑오경장이라는 정치적 혁신을 가져왔고, 봉건체제를 붕괴시키는 단서를 열어 놓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동학란을 계기로 한국에 진출해 온 일본은 한국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경복궁에 무장군을 투입(6. 21. 새벽)하여 궁궐을 장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앙군을 무장해제시키고,[1] 민씨 일파를 축출한 다음 중립적 친일내각으로 개편하고 개혁을 단행하여 정치·사회·재정·사법·교육제도 등 제반분야에 걸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청·일전쟁과 병행하여 단행된 개혁은 우선 중앙관제(中央官制)를 개편하여 궁내부(宮內部)와 의정부(議政府)로 분리하고, 의정부 밑에는 8아문〔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工務)·군무(軍務)·농상무(農商務)〕을 두어 국무를 분담하게 하였는데, 군무아문(軍務衙門)은 전국의 육·해군의 군정을 통할하고 군인·군속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의정부는 곧 궁내로 옮겨 내각으로 고치고 8아문(衙門)을 7부(部)로 바꾸면서 군무아문도 군부(軍部)로 개편하였다. 한편, 지방관제도 8도(道)를 23부(府)로 바꾸고 지방장관이 갖고 있던 사법권과 군사권도 박탈하여 행정관화(行政官化)하였으며, 관리의 품급도 바꾸고 과거제도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청의 종주권도 부인하고 종래에 사용하던 중국연호(中國年號)를 폐하고, 개국기원(開國紀元)을 사용하였다. 사회제도의 개혁으로는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계급을 타파하여 인재를 등용한다든가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법전(法典)을 혁파하였다.

또한 군사면에서는 7월 하순 친군영(親軍營)의 장위영(壯衛營)에서 1개 중대 규모의 병졸을 선발하여 일본군 장교에 의해 훈련시킨 교도중대(敎導中隊)를 편성하였다. 이 교도중대는 후일 청·일전쟁의 평양 공격전(9. 26)과 동학군 토벌(10월)에 출정하였다가 임무종료 후 해산되어 원대 복귀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본의 특별한

1) 陸士 韓國軍事硏究室, 1977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pp. 343~344.

야심에서 편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2]

그리고 동년 12월 4일에는 새로운 군제에 대비하여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를 제정 반포(頒布)하였는데, 군인의 신분을 장교와 하사관으로 구분하고, 장교는 장관(將官)·영관(領官)·위관(尉官)으로 분류하면서, 계층을 장관은 참장(參將)·부장(副將)·대장(大將), 영관(領官)은 참령·부령·정령(正領), 위관은 참위·부위·정위로, 하사관의 계급은 참교(參校)·부교(副校)·정교(正校)로 각각 확정하고 각 계급에 해당하는 품계(品階)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3]

- 대　장 : 정·종 일품계(一品階)
- 부　장 : 정 이품계(二品階)
- 참　장 : 종 이품계
- 정령·부령·참령·정위 : 삼품계(三品階) 이상
- 부위·참위 : 육품계(六品階) 이상
- 정교·부교·참교 : 계외(階外) 이상

그런데 이 같은 계급호칭은 동학란 기록의 토벌군 지휘관 계급에도 붙여져 있는[4] 것을 보면, 이보다 앞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95년 일본은 우리나라 군대를 근대적인 신식편제에 의해 편성해 준다는 구실 아래 '지금의 친군 구체제에는 노약한 병정이 혼합되어 있고, 군복도 각자가 집에서 조제(調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정들 중에는 전국 8도의 지방군에 속해 있는 병졸이 있으니 이를 우선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새로이 훈련대(양 : 2. 12)·신설대(5. 11)·시위대(5. 25) 등을 편성하고, 구영체제(舊營體制)는 해체하였다. 그리고 훈련대에 필요한 사관양성을 위한 훈련대 사관양성소(5. 16)도 편성하였다.[5] 이 같은 신식편제에 의해 조직된 군대는 우리나라 군제상 처음으로 조직된 군제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같이 새로운 근대식 군대로 개편하면서 복식도 새로운 형식의 서구식 신식군

---

2) 위와 같음.
3) 官報(開國 503年 12月 4日)「陸軍將官職制」勅令 第10號(開國 503年 12月 4日)
4) 李瑄根, 1973『大韓國史』7 新太陽社, p. 431.
5) 陸士 韓國軍事研究室, 1977『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pp. 350~358.

복제식인 육군복장규칙을 제정(4. 9) 반포하였는데,[6] 이때의 군복제식은 당시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군복을 본뜬 일본군의 복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일본은 당시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 거의 현대식 복식을 마련한 시기였다.[7] 그때부터 보완되어 내려온 1912년(명치 45년)의 일본군 복장규칙을 보면 복식의 부분 명칭과 한자어 표기까지도 같은 것을 볼 수 있다.[8]

이 시기에 군복을 제작하기 위한 융직(絨織)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직조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1890년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품목의 대부분이 영국산 직물류를 비롯하여 피복과 염료가 85%를 차지하였고,[9] 당시 군무대신이었던 신기선(申箕善 : 5. 10~7. 4)이 군부의 장·영·위관의 복장 중 평상복은 자금(自今)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구라(古舊羅)라는 천으로 만들어 국재(國財)를 넉넉하게 하고 민업(民業)을 일으킬 것을 건의하여 허락을 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육군 장·영·위관 복장 품질 중 흑융(黑絨)을 외국으로부터 무용(貿用 :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만 일시의 방편을 취한 것일 뿐 장구한 방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우리나라 토산으로 제용(製用)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필 바다를 건너 멀리서 구입해야 하겠는가.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고구라를 외국으로부터 무입(貿入 : 수입)한 흑융에 비교하면서 혁염(革艷)함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하니 질인(質靭)함에 있어서는 나으므로 사치보다는 검약(儉約)하다는 뜻으로 헤아리건대 시의(時宜)에 합고(合考)한 바가 있으며 또한 가치의 현절(縣絶)함에 몇 배나 더할 뿐 아니라 공고(工雇)의 자활(資活)에도 효과가 큰 것인즉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공상(工商)을 흥왕(興旺)케 하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10]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식군대가 조직되고 신식군복을 착용하였던 것은 이보다 훨씬 앞선 일로 1880년 4월부터 일본군 교관에 의하여 훈련되고, 조직된(1881) 별기군(100명)이 초록색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사실과 다음 해(1882) 임오군란으로 별기군이 해산되고 군란수습을 위해 들어온 청군이 청제

---

6) 官報 第10號(開國 504年 4月 11日)「陸軍服裝規則」勅令 第78號(開國 504年 4月 9日)
7) 齊藤忠植·穗積和夫, 1971 『世界の軍服』, 東京, 婦人畫報社, p. 159.
8) 日本官報(明治 45年 2月)「陸軍服制」勅令 第10號 ; 軍令 第1號「陸軍服裝規則」
9) 李瑄根, 1973 『大韓國史』 7 新太陽社, pp. 129~133.
10) 官報(光武 7年 1月 8日)「陸軍將領尉官 平服으로 古舊羅地로 製用하는 件」

(淸制)에 따라 친군영(1,000명)을 신설하여 청군복을 착용하게 하였다가 청병의 철수(1884)에 따라 다시 고유의 복장으로 환원되었던 사실도 있었다.[11]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서의 우월권을 획득하고, 요동반도와 대만까지도 할애받음으로써 대륙으로의 진출기회를 얻게 되자, 때마침 남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요동반도의 점유가 자국의 극동정책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당시 동부아시아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던 프랑스·독일과 함께 일본에 요동반도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요동반도는 다시 청에 반환되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의 위신은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배일친로(排日親露) 정책을 쓰게 됨으로써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정부에 친러세력을 부식시킴으로써 친러내각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세력이 커지자 일본은 대원군을 앞세우고 일본의 양인(浪人)과 훈련대 병력 60여 명으로 궁궐에 침입하게 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친러내각을 축출하고, 다시 친일내각을 수립하니 이것이 을미사변(乙未事變)이다. 을미사변 후 친일정부는 왕궁시위(王宮侍衛)의 책임을 물어 시위대를 폐지하여 훈련대에 편입(8. 22)시켰다.[11] 한편 그 동안 중단되었던 개혁은 급진적으로 강행하면서 태양력(太陽曆)의 채용, 1896년을 건양원년(建陽元年)이라 하여 일세일원(1世1元)의 연호(年號) 사용을 규정하고 우편제도의 개시와 단발령을 공포하였다.

또한 훈련연대와 지방의 훈련대대를 모두 폐지(9. 13)하고,[13] 동일부로 육군편제강령(陸軍編制綱領)을 반포하여 훈련대 병력과 종래의 시위대 병력을 망라하여 육군을 친위(親衛)와 진위(鎭衛)의 2종으로 양분하고, 친위군은 경성(京城)에 주둔하여 왕성(王城)수위를, 진위군은 지방에 주둔하게 하여 지방 진무(鎭撫)와 변경수비(邊境守備)를 전임하게 하였다.[14] 그리고 훈련대의 폐지로 훈련대 사관양성소도 폐지하고 무관학교를 설치(1896. 1. 11)하였다.[15]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반포는 민심을 자극하더니 드디어 전국에 의병운동으로 확

---

11) 李京子, 1988『韓國服飾史論』一志社, p. 227.

12) 官報 第145號(開國 504年 8月 23日)「侍衛隊를 訓練隊에 移屬編入하는 件」勅令 第157號(開國 504年 8月 22日)

13) 官報 第161號(開國 504年 9月 14日)「訓練隊廢止에 關한 件」勅令 第169號(開國 504年 8月 25日)

14) 위와 같음.「陸軍編制 綱領」勅令 第170號(開國 504年 9月 13日)

15) 官報 第222號(建陽 元年 1月 15日)「武官學校官制」勅令 第2號(建陽 元年 1月 11日)

산되어 관군의 주력이 의병진압에 파견되자 이 틈을 이용하여 친러파가 극비리에 책동하여 국왕을 궁궐로부터 러시아공관으로 이어(移御)케 하는 아관파천(我館播遷)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같이 갑오개혁과 더불어 진행되었던 청·일전쟁에서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던 1894년부터 아관파천이 일어난 1896년까지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여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였다.

나. 俄館播遷과 러시아의 影響期(1896~1899)

국왕이 아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친러내각이 들어서고 정치는 친러파와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어 일본인 무관은 모두 파면시킨 동시에, 러시아인 고문사관이 초빙되었고 러시아학교도 설립되었다. 국왕이 아관으로 옮긴 지 1년 만인 1897년에 열강과 독립협회의 반대여론으로 경운궁(慶運宮 : 지금의 德壽宮)으로 환궁한 국왕은 그해 8월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고, 황제즉위식을 거행(10. 12)하니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군사면에 있어서는 러시아 교관이 초빙됨으로써 편성도 러시아 군제로 개편하였는가 하면 군비도 러시아제로 무장되고, 모든 제도와 규정도 러시아식으로 시행되었으며 구령조차도 러시아 말을 썼다. 그러나 군의 복식만은 러시아 제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종전의 복식을 보완 착용하였다.

즉, 10월 중순 흑룡 군관구에 속해 있던 2명의 장교와 1명의 군의관, 10명의 하사관을 대동하고 서울에 도착한 푸챠타(Putiata) 대령은 1896년 초부터 군제의 개편에 착수하여 이미 편성되었던 친위 제1·2·3대대로 친위 제1연대를 편성(4. 22)하고, 제4·5대대는 독립대대로 운영하였다.[16] 1898년에는 일본군사관 지도하에 조직되었던 무관학교가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세력의 영향으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정계의 변동으로 재개교(5. 14)되었고,[17] 뒤이어 2개 대대로 구성된 시위 제1연대가 편성(5. 27)되었다.[18] 그리고 1899년에는 전국의 16개 중요지방에 2개 진위대대와 14개 지방대대를 설치(1. 15)하여 그 지방의 진무(鎭撫)와 변경수비(邊境守備)를

16) 官報 第308號(建陽 元年 4月 24日)「親衛隊第1聯隊編成」勅令 第21號(建陽 元年 4月 22日)
17) 官報 第952號(光武 2年 5月 18日)「武官學校官制改定件」勅令 第11號(光武 2年 5月 14日)
18) 官報 第962號(光武 2年 5月 30日)「侍衛隊第1聯隊編制」勅令 第13號(光武 2年 5月 27日)

전임하게 하였다.[19]

복식은 1895년 시제(始制) 이후 1897년 5월 15일에 육군복장규칙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는데,[20] 이때 개정된 제복의 차이점은 종전의 단일 제복을 예의와 상의의 2종류로 구분하고, 모자는 투구형에서 타원형(Kepi 모형)으로 바꾸고, 제복의 상의는 길이가 짧고 매듭단추를 부착한 저고리(Jacket) 제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때 개정된 복식은 당시 일본군의 근골식(筋骨式) 정복을 따른 것이었다.[21]

다. 大韓帝國의 頒布와 自主的 發展期(1899~1904)

대한제국은 1899년(고종 36년) 대한국제를 제정 반포(8. 17)하고, 관제·사회·경제 등에 걸친 위로부터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여 입법·사법·행정의 대권을 장악하게 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관제를 개혁하여 23부를 13개 도(道)로 고쳤다. 이 시기의 개혁은 일체의 외국간섭 없이 주체성을 갖고 자주적으로 개혁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복고적인 성격이었다고 하여도 그 가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899년부터는 외국세력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틈을 타서 자주개화의 물결을 타고 군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바로 원수부(元帥府)의 설치(6. 22)였다.[22]

이 원수부의 설치는 군권을 황제에게 직속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대황제는 대원수이시니 군기(軍機)를 총람(摠覽)하며 육·해군을 통령(統領)하시고, 황태자 전하께옵서는 원수이시니 육·해군을 일례(一例)로 통솔하고자 원수부를 설치하심이라'라 함은 원수부는 황제가 군부위에서 직속 군령권(軍令權)을 장악함을 밝히고 국방과 용병 그리고 군사에 대한 명령권을 장악하여 군부와 경외(京外)의 각부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

1900년에는 군을 확장하면서 육군 헌병조례가 반포되어(6. 30) 우리나라 최초의

---

19) 官報 第1160號(光武 3年 1月 17日)「鎭衛隊·地方隊編制改定」勅令 第2號(光武 3年 1月 15日)

20) 官報 第639號(建陽 2年 5月 18日)「陸軍服裝規則」(建陽 2年 5月 15日)

21) 國書刊行會, 昭和 59年『世界の軍服』國書刊行會, 東京, p. 12.

22) 官報 第1306號(光武 3年 7月 6日)「元帥府官制」(光武 3年 6月 22日)

헌병 2개 중대가 원수부 예속으로 편성 운영되었으며,[23] 1903년에는 5개 중대로 증편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순수한 보병부대가 전투지원부대까지 배속된 전투부대로 강화됨으로써 개화기 국력에 있어 가장 증강된 상태에 있었던 시기였다. 군을 확장함에 있어 중앙군은 기병대대가 독립대대로 창설(12. 9)되고, 기 편성되었던 포병중대를 2개 포병대대로 증편(12. 19)하였으며, 시위연대도 보병 2개 대대와 포병 1개 대대 외에 군악 1개 소대를 갖춘 전투부대로 편성하고 친위연대에도 공병 1개 중대와 치중병 1개 중대씩을 증설 배속시켜 전투능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방의 진위군도 동년 7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7개 지방에 6개 연대와 1개 대대를 편성(12. 19)하였다.[24]

그리고 1902년에는 3개 대대로 편성된 시위연대와 친위연대에 1개 대대씩을 증설하여 2개 대대 편성의 시위 제1·2연대와 친위 제1·2연대를 각각 편성(10. 30)하였다.[25]

복식은 1900년에 원수부가 설치되면서 원수부에 속한 무관의 복장이 규제되고,[26] 이때까지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시녀의 부축으로 거둥하던 황제의 복장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육군복장규칙에 준한 양복제식의 군복을 착용하기도 하였다.[27] 그리고 일반장병의 복식도 육·해군의 구분없이 단일제식의 것이었으며 예의(禮衣)의 형태를 세운 깃의 2줄, 7개 단추의 긴 저고리(Frock Coat)형으로 개정(7. 2)하고 1901년에는 하사관 이상의 예의도 제정(9. 2)하였다.

라. 韓日協約과 日本의 影響期(1904~1910)

삼국간섭 이후 대한제국과 만주를 가운데 놓고 가장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던 러시아와 일본은 몇 차례의 외교적 협상을 벌여 대한제국의 내정간섭을 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이권쟁탈을 위한 협상(38도선 혹은 39도선으로 분할하여 각기의

23) 官報 第1616號(光武 4年 7月 30日)「陸軍憲兵條例」勅令 第23號(光武 4年 6月 30日)
24) 官報 第1637號(光武 4年 7月 27日)「鎭衛聯隊編制件」勅令 第26號(光武 4年 7月 25日)
25) 官報 第2346號(光武 6年 11月 1日)「侍衛聯隊·親衛聯隊編制」勅令 第16號(光武 6年 10月 30日)
26) 官報 第1306號(光武 3年 7月 6日)「元帥府官制」第3款 第4條(光武 3年 6月 22日)
27) 李康七, 1972「文化財中의 文化財」『月刊 文化財』, p. 7.

세력범위로 하자는 논의)에서 결렬되자 무력으로 해결할 것을 결심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단교를 선언(1904. 2. 6)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여순(旅順)에 대한 기습과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키자 양국간의 러일전쟁(1904~1905)은 시작되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은 양국의 전쟁 속에서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전쟁발발과 동시 우리나라에 병력을 투입하고, 전세가 유리해지자 강제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조인(1904. 2)함에 대한제국의 국외중립은 무너지고 그 동안 러시아와 맺은 조약들은 폐기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에서의 내정간섭과 외교권의 침해는 물론 군사요지의 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일본예속화의 제 1보가 된 것이다. 또한 군제도 완전히 일본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써 이때부터 한국군의 수를 감축하는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1907년에는 남아 있는 군대마저 해산시켰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909년 7월에는 군사부마저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군의 명맥은 끊어지게 되었다.

1904년 4월 러일전쟁에서 승리가 확실해지자 원수부를 폐지(9. 24)하고,[28] 원수부가 장악하던 군령과 군정권은 군부로 이관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 육군유년학교(陸軍幼年學校)와 육군연성학교(陸軍研成學校)를 새로 설치(9. 24)하고,[29] 유년학교는 각 병과에 필요한 무관학도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고, 연성학교는 현역장교와 하사관의 보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였다. 한편 유년학교의 창설로 무관학교의 입학자격을 천거제도로부터 유년학교 졸업자로 바꾸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한국에 있어서 내정간섭권을 얻게 되고, 군대의 진주를 계기로 정부를 위협하여 고문이라는 허울 아래 재정·외교·군사·학무 면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게 되자 1905년 4월부터 군대를 반감(半減)시키고, 그 뒤 해마다 감소시켰던 것이다. 이는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04년 6월 일본의 '한국에 있어서의 군사적 경영요령(軍事的經營要領)'이라는 안(案)에 따라 단행된 것이었으며, 이 안에 따라 한국군은 병제개혁(兵制改革)이라는 미명 아래 궁중호위를 위한 근소한 병력만을 남기고 대폭 감축하였다. 1단계 조치(4. 14)로 친위 2개 연대와 군악 2개 소대를 해체하고, 시위 2개 연대는 1개 연대로 감축하는

28) 官報 第2942號(光武 8年 9月 27日)「元帥府官制」(光武 8年 9月 24日)
29) 위와 같음.「陸軍幼年學校·陸軍研成學校 官制」(光武 8年 9月 24日)

동시 이들 부대에 배속되었던 공병중대는 독립중대로 개편하였고, 헌병도 6개 구대로 감축하였다. 또한 기병대대는 기병중대로, 포병 2개 대대는 1개 독립중대로 각각 감축하고 지방의 6개 진위연대(18개 대대)도 8개 대대로 감축하였다.[30]

1905년 11월에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자 2차 협약인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압적으로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에 의한 통감정치(統監政治)가 실시되고 외교권마저 박탈당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실상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는 말살되고 말았다.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퇴위시킨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미 7조약인 한일신조약(韓日新條約)을 체결하고, 통감이 한국의 내정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은 사법·행정권 및 관리의 임명권까지 탈취하고, 외국인 고문을 폐지하는 동시에 각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하는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 조약의 비밀각서에 의해 한국의 군대마저 해산(8. 1)되었던 것이다.

군대가 해산되기에 앞서 또 한 번의 군제개혁을 단행하여 군의 통제권마저 장악하였는데, 이때의 개혁으로는 시위혼성여단(侍衛渾成旅團)을 설치(4. 22)하고, 예하에 보병 2개 연대와 1개 기병대, 1개 포병대, 1개 공병대를 두고 여단장(군부대신)으로 하여금 통할하게 하였다.[31]

일본은 한국군을 해산하기 위한 초석으로 현재의 군대는 모두 직업군인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의무감마저 부족하다는 구실을 들어 모집령(募集令)을 발표(6. 27)하고,[32] 이를 배경으로 하여 동년 8월 1일 군대 해산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무관학교만을 군부 예속하에 남겨 두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던 시위혼성여단사령부와 예속부대 그리고 지방의 진위부대는 모두 해체하였다. 이와 동시에 황실의 의장과 수위를 담당할 부대로 근위보병대대를 창설(8. 26)하고,[33] 뒤이어 황실근위임무를 수행할 근위기병대(近衛騎兵隊)도 추가로 편성(12. 20)하였던 것이다.[34]

---

30) 官報 第3078號(光武 9年 4月 22日) 勅令 第27~32號(光武 9年 4月 14日)
31) 官報 第3749號(光武 11年 4月 25日)「侍衛渾成旅團司令部官制」勅令 第22號(光武 11年 4月 22日)
32) 官報 第3807號(光武 11年 7月 2日)「募兵令」法律 第3號(光武 11年 6月 27日)
33) 官報 第3856號(隆熙 元年 8月 28日)「近衛步兵隊編制件」勅令 第16號(隆熙 元年 8月 26日)
34) 위와 같음.「近衛騎兵隊編制」勅令 第28號(隆熙 元年 12月 20日)

1908년 일본은 폭도(의병)의 진압과 안녕질서를 유지한다는 구실하에 헌병보조원 제도를 신설(6. 11)하였고,[35] 1909년에는 궁중에 친위부(親衛府)를 설치하고 군부마저 폐지(7. 30)하면서 무관학교도 해체(9. 15)하였다. 무관학교 해체후 무관의 양성은 일본국에 위탁하고, 현재의 장교와 장차 일본정부에 의해 (위탁)양성된 장교는 일본군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하였다.[36]

1910년에는 일본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와 매국내각의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의 비밀합방조약이 작성되고 황제의 조서(詔書)가 발표(8. 29)되니 대한제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정책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복식면에 있어서는 1906년 5월 1일에 타원형의 상모제식(Kepi 모형)이 다갈색의 평원형(平圓型) 모자로 개정되고, 동년 5월 22일에는 육군복장규칙이 반포되었으며,[37] 1907년 10월 1일에는 육군복장제식이 반포되어[38] 당시까지 착용하여 오던 흑색 상의(常衣)와 외투의 색상이 다갈색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08년에는 군대 해산후 창설된 근위 기병대의 하사(下士) 이하가 착용할 예복제식이 별도로 제정(2. 14)되고, 다음해에는 헌병보조원의 복제도 제정(2. 20)되어 1908년 8월 20일부터 소급 시행되었는데, 이 헌병보조원 복제는 당시 일본군 하사 병졸의 복제와 같았으며, 다만 표장(모표)과 단추모양이 이화(李花)형이고 우측 어깨에 붉은색 이화휘장을 부착한 것이 다를 뿐이었다.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1911년 이후)의 한국군인은 일본군의 제복을 그대로 착용하되, 다만 상의의 깃 좌·우측에 일본군인과 식별하는 3성형의 휘장을 부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 군장에 필요한 피복류와 혁구류(革具類)는 모두 군의 통제하에 제작되고 공급되었음을 당시의 군기창(軍器廠) 관제에서 볼 수 있는데, 총포·탄약·화약 외의 군용에 수요한 융속(絨屬)의 직조와 피복의 제조는 군기창의 직조소(織造所)에서, 혁구류는 제혁소(製革所)에서 각각 제작되었던 것이다.[39]

따라서 한국군의 군제와 복제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1945년 광복될 때까지 사

35) 官報 第4099號(隆熙 2年 6月 13日)「憲兵補助員募集」勅令 第31號(隆熙 2年 6月 11日)
36) 官報 第4443號(隆熙 3年 7月 31日)「親衛府新設及此에 附帶 件」勅令 第68號(隆熙 3年 7月 30日)
37) 官報 第3462號(光武 10年 5月 25日)「陸軍服裝規則」勅令 第24號(光武 10年 5月 22日)
38) 官報 第3889號(隆熙 元年 10月 5日)「陸軍服裝制式」勅令 第26號(隆熙 元年 10月 1日)
39) 官報 第2942號 (光武 8年 9月 27日)「宮廷錄事」(光武 8年 9月 24日)

실상 공백기를 맞았으나 일제시대에도 비록 정규군은 아닐지라도 광복군의 조직을 통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겠다.

2. 軍服飾의 變遷과 發達

가. 頒布年代로 본 服裝規則과 軍服飾의 種類

1895년(고종 32년) 새로운 군제에 의한 신식군대의 편성과 함께 동년 4월 8일 제정된 육군복장규칙은 복장의 차림을 단일 군복인 예의(禮衣)로 하고, 그 꾸밈에 따라 정장(正裝)·군장(軍裝)·예장(禮裝)·상장(常裝)의 4종류로 분류하여 각 복장에 따라 착용대상·착용시기·착용요령 등을 규제하였다. 시제 당시에는 훈련대 보병과(步兵科) 장교에게만 적용하고 그외의 장교는 추후에 정하도록 하였고,[40] 동년 8월 6일에는 군부내의 무관 및 상당관(相當官)에게도 적용하면서 9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정위와 정위 상당관 이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평복(平服)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41] 또한 동년 8월 16일부터는 외국유학 군인에게도 적용시켰고,[42] 동월 22일에는 시위대에게도 적용하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43] 동년 9월 6일에는 일반 군인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다.[44]

그후 1897년 5월 15일에는 시제 당시의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복장규칙을 반포하면서 당시까지의 단일제복을 예의(禮衣)와 상의(常衣)로 구분 제정하고, 이를 꾸밈에 따라 예의로 정장(正裝)과 예장(禮裝)차림을, 상의로 군장(軍裝)과 상장(常裝)차림으로 착용하게 하였다.[45]

---

40) 官報 第10號(開國 504年 4月 11日)「陸軍服裝規則」勅令 第78號(開國 504年 4月 9日)
41) 官報 第132號(開國 504年 8月 8日)「陸軍服裝規則을 通用하는 件」勅令 第152號(開國 504年 8月 6日)
42) 官報 第141號(開國 504年 8月 19日)「陸軍服裝規則을 通用하는 件」勅令 第156號(開國 504年 8月 16日)
43) 官報 第145號(開國 504年 8月 23日)「陸軍服裝規則을 通用하는 件」勅令 第123號(開國 504年 8月 22日)
44) 官報 第156號(開國 504年 9月 8日)「陸軍服裝規則을 通用하는 件」勅令 第165號(開國 504年 9月 6日)
45) 官報 第639號(建陽 2年 5月 18日)「陸軍服裝規則」(建陽 2年 5月 15日)

또한 1906년 5월 22일에는 복장규칙을 다시 한 번 보완 개정하면서, 장교의 복장(제2장)과 하사졸(下士卒)의 복장(제3장)을 따로 구분 규제하고 복장차림을 대예장(大禮裝)·예장(禮裝)·반예장(半禮裝)·군장(軍裝)·상장(常裝) 등 5종류로 분류하고, 이를 꾸밈에 따라 예의(禮衣)로 대예장과 예장차림을, 상의(常衣)로 군장·상장·반예장차림으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동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46]

그리고 1899년에는 원수부의 설치로 원수부에 소속된 무관의 복장을 규제하고, 한일합방 이후인 1911년 이후에는 일본군에 파견 근무하는 조선군인에 대한 복장착용규칙이 반포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반포된 제반 복장규칙들을 착용대상별로 구분하여, 다음 (1)항에서는 일반장병이 착용하는 육군복장규칙을 1895년을 기준하여 1897년과 1906년에 보완된 규칙을 복장별, 연도별로 견주어 보고, (2)항에서는 원수부에 속한 무관의 복장규칙, (3)항에서는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군에 파견 근무하는 조선군인의 복장규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1895年부터 1906年까지의 陸軍服裝規則

1) 服裝의 區分

- 1895년에는 정장(正裝)·군장(軍裝)·예장(禮裝)·상장(常裝) 등 4종으로 구분하고(제1조),
- 1897년에도 위와 같이 4종으로 구분하였으며(제1조),
- 1906년에는 대예장(大禮裝)·군장·예장·상장·반예장(半禮裝) 등 5종으로 구분하였다(제1조).

2) 服裝別 着用對象

- 1895년에는 정장·군장·상장은 장교와 하사졸(사병)이 착용하고, 예장은 장교만이 착용하였으며(제2조),

---

46) 官報 第3462號(光武 10年 5月 25日)「陸軍服裝規則」勅令 第10號(光武 10年 5月 22日)

- 1897년에는 군장·상장은 장교와 하사졸이 착용하고, 정장·예장은 장교만이 착용하였고(제2조),
- 1906년에는 대예장·군장·상장은 장교(동 상당관과 준사관 포함)와 하사졸이 착용하고, 예장·반예장은 장교만이 착용하였다(제2조).

3) 服裝別 着用時期

① 正 裝 : 예식·의식·제전(祭典) 등 대례시(大禮時)에 주로 착용하였다.

- 1895년에는 성절(聖節)·각전탄일(各殿誕日)과 원조동지문안여진하(元朝冬至問安與陳賀)·태묘행행(太廟幸行)·태사행행(太社幸行)·산능행행시(山陵幸行時)에 착용하고(제3조),
- 1897년에는 성절진하(聖節陳賀)와 문안시(問安時)·각전궁탄신진하(各殿宮誕辰陳賀)와 문안시(問安時)·절일진하(節日陳賀)와 문안시(問安時)·환구묘사전궁동가시(圜丘廟社殿宮動駕時)·능원행행시(陵園幸行時)·일응대전례(一應大典禮)와 친임행례후문안시(親臨行禮後問安時)에 착용하였으며(제3조),
- 1906년에는 대예복으로 성절 경절(聖節慶節)에 진하문안(陳賀問安)과 폐견시(陛見時)·환구묘사전궁동가시(圜丘廟社殿宮動駕時)·능원행행시(陵園幸行時)·장충단치뢰시(奬忠壇致酹時)·관병식과 의장(觀兵式及儀仗)을 위하여 출장(出場)할 시·관고와 훈장지수시(官誥及勳章祗受時)·일반예복(一般禮服)을 착용할 시·자가(自家)의 하의장제시(賀儀葬祭時) 착용하였으며 하사 이하(下士 以下)는 친족의 하의장제(賀儀葬祭)에도 착용이 가함(제3조).

② 軍裝은

- 1895년에는 전시출정·비상출병·군대의 제근무·위수근무·주번근무·중대 이상의 연습시에 착용하였고(제4조),
- 1897년에는 출전(出戰) 및 출주(出駐)시·군대 입영시·위수 및 주번 등 영군(領軍)시·중대 이상의 연습시에 착용하였고(제4조),
- 1906년에는 출전 및 출주시·비상시의 출병시·군대의 제근무시·위수근무 및 주번근무시·대연습 및 기동연습시·별도 필요한 야외 연습시에 착용하였다(제4조).

③ 禮裝은

- 1895년에는 궁내(宮內)에서 배식(陪食)할 때·예절로 상관을 대견(對見)할

때·야회(夜會)와 그외의 공식연회에 임할 때·친척의 하의제사(賀儀祭事)·장사(葬事)에 임할 때에 착용하고(제5조),

- 1897년에는 궁내에 인공진견(因公進見)할 때·예절로 상관을 대할 때·각종 공식연회 및 일응하의(一應賀儀)에 임할 때에 착용하였으며(제5조),
- 1906년에는 궁내의 어연(御宴) 및 인공진견시·예절로 상관을 대할 때·각종 공식연회 및 일응하의에 임할 때·친족의 하의장발(賀儀葬發)시에 착용하였다(제5조).

④ 常裝은

- 1895년에는 공사를 막론하고 항상 착용한다(제6조).
- 1897년 위와 같음(제6조).
- 1906년 위와 같음(제7조).

⑤ 半禮裝은

- 1906년에 설정된 복장으로 보직 및 명과(命課)의 사령서(辭令書)를 배수(拜受)할 때·천람(天覽)하시는 장소에 임하여 시배(時倍)할 때·통상연회에 임할 때·일반하의(一般賀儀)에 참가할 때 착용하였다(제6조).

4) 服裝의 차림새

① 正裝은

- 1895년에는 모(帽)·입전모(立前毛)·의(衣)·고(袴)·견장(肩章)·식대(飾帶)·도(刀)·정서(正緖)·백혁수투(白革手套 : 백색 가죽장갑)·백포하금(白布下襟 : 깃 안쪽에 붙이는 흰색 포)·화(靴) 등으로 구성하였고(제22조),
- 1897년에는 정모·입전모·대예의(大禮衣)·고·대견장(大肩章)·식대·도구서(刀具緖)·도대(刀帶)·백혁수투·백포하금·화 등으로 구성하였으며(제17조),
- 1906년에는 대예장으로 예모(禮帽)·입전모·대예의·고·예견장(禮肩章)·식대·도(검)·정서·수투(手套)·백포하금·화 등으로 구성되었다(제26조). 또한 차복장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기병장교는 장화를 신고, 기타 장교는 모두 단화를 신는다. 단, 야전포병과 치중병대의 장교가 대오(隊伍)에 열(列)한 때에는 단화와 장화를 신는다(제27조). 한편 염서시(炎暑時 : 6월 1일~9월말)에는 하고(夏袴)로서 고를 대용할 수 있으나 의식에 참가할 때에는 고를 착용한다(제28조).

• 1895년에서 1906년까지의 정장·대예장차림(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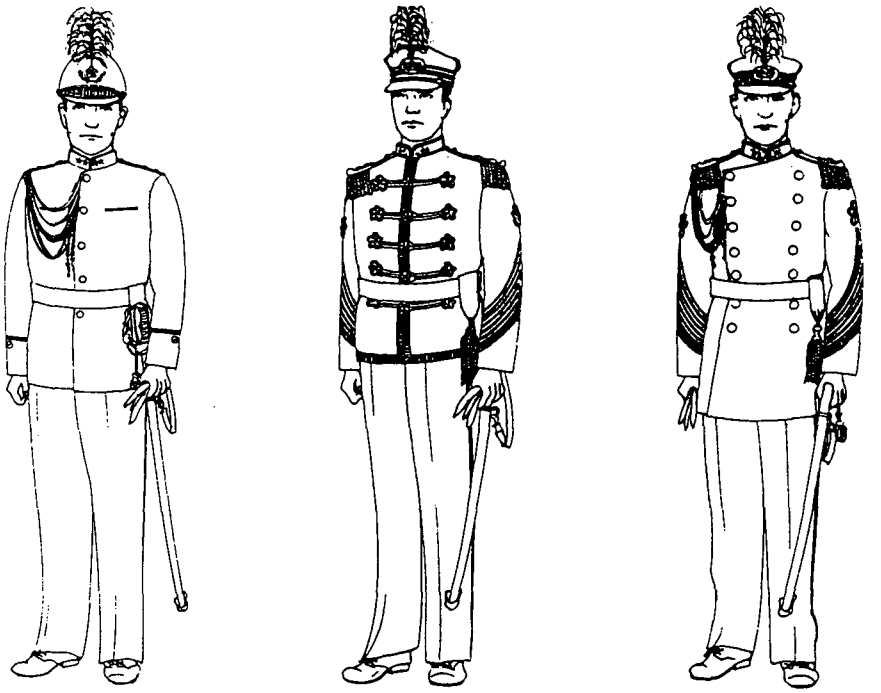

1895년 이후　　1897년 이후　　1900년 이후
(1906년 이후 대예의)

〈그림 4-1〉 正裝·大禮裝

② 軍裝은

• 1895년에는 모·의·고·도(검)·도서·수투·하금(下襟)·오련단총(五連短銃) 및 흑혁대 입혁대(黑革袋 入革帶)·화·안경은 포병장교 외에는 임의로 착용할 수 있다. 군장으로 승마가 본분이 아닌 위관은 필히 배낭을 착용하여야 하며, 주번이나 위수 순찰시에는 그때의 사정에 의하여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배낭에는 우부(雨覆 : 외투모자)나 외투를 말아서 부착하고, 배낭을 매지 않는 자는 우부나 외투를 말아서 좌측 어깨에서 우측 겨드랑이 밑으로 비스듬히 두른다(제23조).

• 1897년에는 모·의·고·도구서·소견장·도대·수투·하금·화·오련단총(흑혁대 입혁대)을 착용하였으며(제18조), 배낭은 하사 이하 병졸까지 착용하나 주번,

위수 순찰시에는 사정에 의하여 매지 않을 수 있다. 배낭에는 우부(雨覆)나 외투는 말아서 부착하며 배낭을 매지 않는 자는 우부나 외투를 좌측 어깨에서 우측 겨드랑이 아래로 비스듬히 매어 착용한다(제19조).

- 1906년에는 모·군의(軍衣)·고·도(검)·도서(검서)·수투·백포하금·화를 착용하였고(제29조), 모는 예모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서는 상모를 착용한다(제30조). 그리고 승마를 본분으로 하는 장교는 반드시 단고와 장화를 착용하고, 기타는 단고에 각반을 착용하며, 승마가 본분이 아닌 소속 위관은 배낭을 매어야 하나 주번이나 위수 순찰시에는 때에 따라 배낭을 매지 않아도 무방하다(제31조). 또한 배낭을 매는 자는 배낭에 우부 또는 외투를 착용하고, 배낭을 매지 않는 자는 우부와 외투를 말아서 좌측 어깨에서 우측 겨드랑이 밑으로 비스듬히 맨다(제32조).
- 1895년에서 1906년까지의 군장차림(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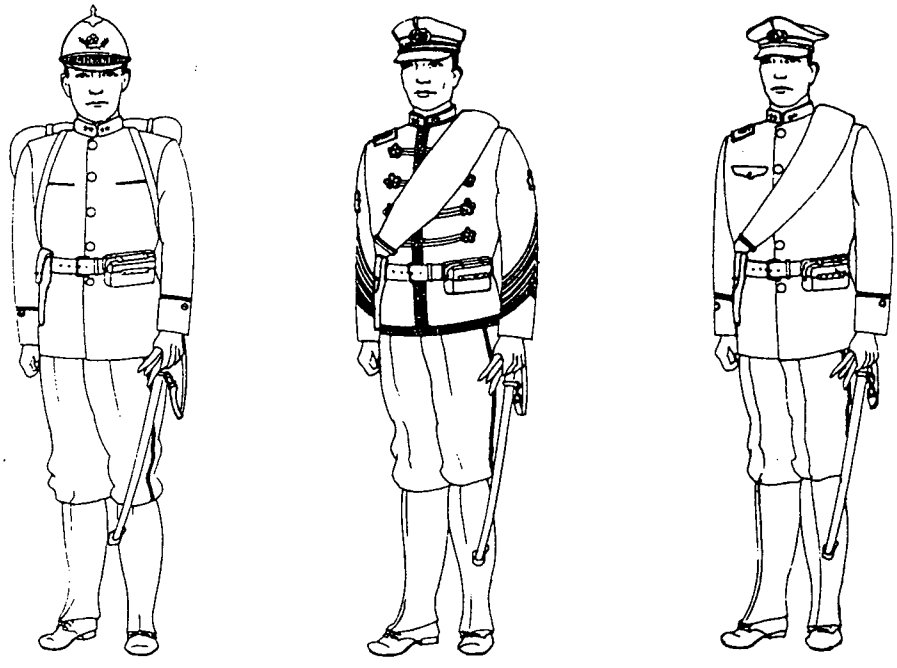

1895년 이후　　1897년 이후　　1906년 이후

〈그림 4-2〉 軍 裝

③ 禮裝은

- 1895년에는 모·의·고·도(검)·정서·백혁수투·하금·화를 착용하였고(제24조),
- 1897년에는 정모·의·소견장·고·도구서·도대·백혁수투·하금·화를 착용하였으며(제20조),
- 1906년에는 예모·대예의·고·예견장·도(검)·정서·수투·백포하금·화를 착용하였는데(제33조), 화는 기병과 장교는 장화 그외는 모두 단화를 착용한다(제34조).
- 1895년에서 1906년까지의 예장차림(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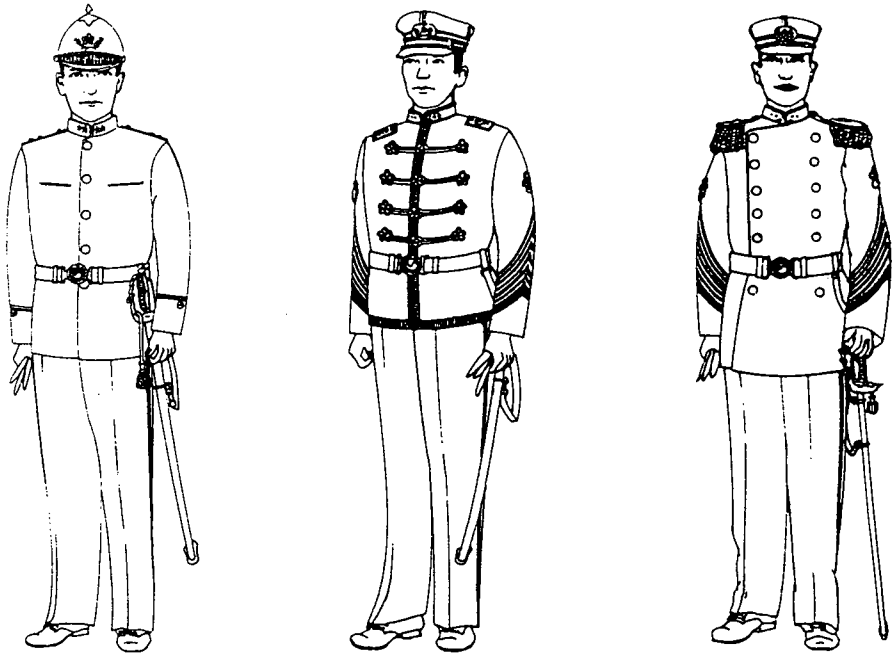

1895년 이후 1897년 이후 1906년 이후

〈그림 4-3〉 禮 裝

④ 半禮裝은

- 1906년에만 규제된 차림으로 모·군의·소견장(隆熙 元年 10月 1日 삭제)·고·도(검)·정서·수투·백포하금·화를 착용하였으며(제35조), 모는 예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상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36조), 기병과 장교는 장화를 신고 그외는 단화를 착용함이 통례이나 기병과 장교가 아

닌 자 중에서 승마를 본분으로 하는 장교는 각자의 편의에 따라 단고와 장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7조).

⑤ 常裝은

- 1895년에는 규제가 없고,
- 1897년에는 모·의·고·도구서대(刀具緖帶)·수투·하금·화 등으로 구성하였으며(제21조),
- 1906년에는 반예장과 대동하였으나 예모와 상모를 겸용할 수 있게 하였고, 도(검)에 정서를 착장하지 않고 도(검)서를 착용하는 것만이 상이하였으며(제38조), 화는 단화 또는 장화를 착용하는 것과 각반을 착용하는 것은 각자의 편의에 따라 착용하게 하였다(제39조). 또한 도대는 기병과 장교와 승마를 본분으로 하는 장교는 도대의 조혁(釣革)을 조쇄(釣鎖)로 바꾸어 착용할 수 있게 하였다(제40조).
- 1897년에서 1907년까지의 상장차림(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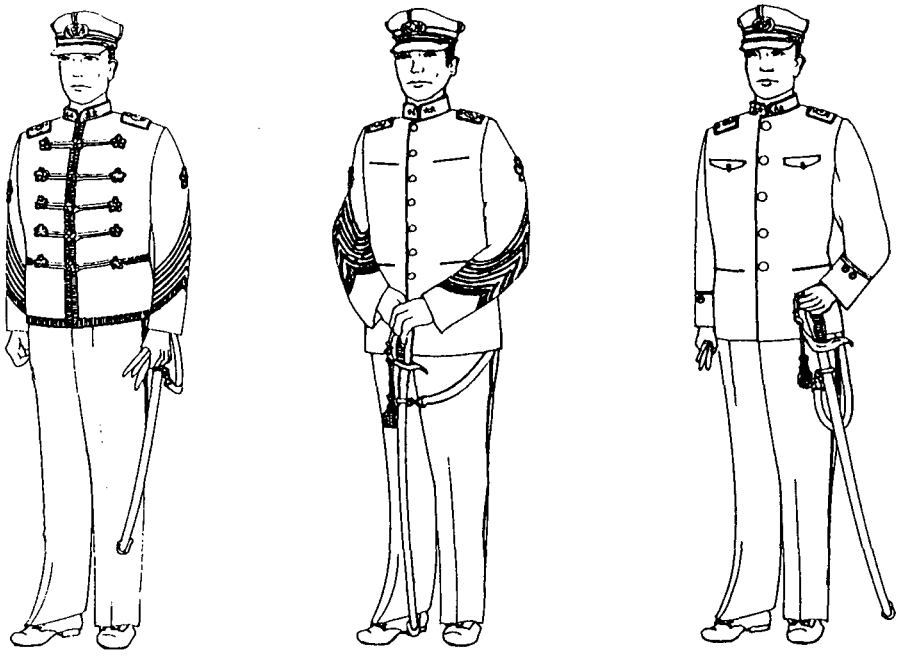

1897년 이후　　1900년 이후 (1906년 이후 반예장)　　1907년 이후 (1907년 이후 반예장)

〈그림 4-4〉 常裝 및 半禮裝

5) 季節服의 着用

① 夏衣의 着用

- 1895년에는 하의는 염서제(炎暑際 : 5월 1일~8월말)에 상장 및 군장차림에 착용하였으며(제7조), 하고(夏袴)는 어떠한 복장에도 이를 대용할 수 있다(제8조).
- 1897년에는 하의는 염서제(5월 1일~8월말)에 상장 및 군장차림에 착용한다. 단, 상의만은 백색을 착용하고 하의는 흑색을 그대로 착용하되 궐내에 들어갈 때에는 백색을 착용하지 아니한다(제7조).
- 1906년에는 하의는 염서시(6월 1일~9월말)에 상장과 군장차림에 착용하고 하의에는 하고(夏袴)를 착용하며 하의와 하고는 흰색·다갈색(茶褐色)·토색(土色)을 병용한다(제8조). 또한 하고는 염서시에 착용하며 반예장시에도 착용할 수 있으며, 장관용(將官用) 백고(白袴)는 반예장·군장·상장차림에 장화를 착용할 때에만 착용한다(제9조).

② 日覆의 着用

- 1895년에는 염서제에 착용한다. 단, 의식시에는 착용하지 않았으며(제10조),
- 1897년에는 규제가 없고,
- 1906년에는 염서제에 군장과 상장차림 때에 상모(常帽)에 부착하여 착용하였다(제13조).

③ 外套의 着用

- 1895년에는 외투는 비와 추위를 막기 위해 착용하며 근무중에 실외에서만 착용하되 군장과 상장차림시에는 관병식(觀兵式)과 그외 의식 또는 상관의 방(房)안을 제외하고는 실외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제9조).
- 1897년에는 모든 복장을 실외에서 착용한다. 단, 관병식과 그외 의식의 경우와 상관의 방(房)안을 제외하고는 아무 방안에서라도 착용할 수 있다(제8조).
- 1906년에는 어떠한 복장을 막론하고 우설시(雨雪時)와 방한(防寒)하기 위해 실외에서 착용한다. 연(然)이나 군장·상장을 하였을 때에는 방한하기 위하여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관병식과 그외 의식의 경우와 상관의 거실내에 있을 때에는 이를 착용할 수 없다(제10조). 또한 우부(雨覆)는 외투와 함께 착용함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서는 우부만을 착용하여도 무방하다(제11조).

6) 短袴의 着用

- 1895년에는 어떤 복장에든지 장화를 착용하였을 때에 착용하며 염서제(炎暑際)에는 하고(夏袴)를 단고(短袴)로 개조 착용하여야 한다. 단, 의식시(儀式時)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제18조).
- 1897년에는 규제가 없고,
- 1906년에는 어떠한 복장에도 장화를 신었을 때에만 착용하나, 염서시에는 하고를 단고로 조제(調製)하여 착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사관의 고구라의고(古舊羅衣袴)는 병졸이 평상 주둔지내에 있을 때와 체조·교련 등을 행할 때에 착용한다. 단, 대장의 인허(認許)를 얻어 융의고(絨衣袴)를 착용할 수 있다(제44조).

7) 短靴의 着用

- 1895년에는 어떠한 복장을 막론하고 단화는 고하(袴下)에 신되, 유혁(留革 : 화와 고를 서로 연결하는 끈)을 부착하고 승마하는 자는 단화나 장화에 박차(拍車 : 승마용 구두의 뒤축에 부착하는 쇠로 만든 톱니모양의 물건)를 부착한다(제21조).
- 1897년에는 반드시 고하에 착용하되 유혁을 부착하며 승마하는 자는 단화나 장화에 박차를 부착한다(제16조).
- 1906년에는 여하한 복장을 막론하고 단화는 고하에 착용하며 유혁을 부착한다(제25조).

8) 小肩章의 附着

- 1906년에 대예장을 제외한 모든 복장에 착용한다. 단, 복무중에 있는 자는 편의에 따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제15조).

  ※ 1907년(隆熙 元年) 10월 1일 삭제됨.

9) 頤紐의 使用

- 1906년에는 어떠한 복장에든지 대오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각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한다(제12조).

10) 刀의 携帶

- 1895년에는 도는 전열장교(戰列將校 : 전투에 참가하는 장교)가 휴대하고, 검은 비전열장교가 휴대한다(제11조). 도는 실내외에서 휴대하나 환(環)은 도대구철(刀帶釦鐵)에 걸되 승마할 때에는 걸지 아니한다(제12조). 그리고 정서(正緖)는 정장과 예장차림에 도나 검에 장착하고(제13조), 도서(刀緖)는 군장과 상장시에 도나 검에 장착한다(제14조).
- 1897년에는 도는 승마시가 아니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환(環)은 도대구철에 걸어 휴대하며(제9조), 도서를 영관 이상은 금선제(金線製), 위관 이하는 흑사제(黑絲製)를 장착하나 영관 이상도 군장과 상장차림을 하였을 때에는 흑사제를 통용한다(제10조).
- 1906년에는 도는 장관 및 각 병과의 영·위관 준사관과 군악장이 휴대하고, 검은 장관과 상당관·사계(司計)·군사(軍司)·군의(軍醫)·수의부(獸醫部)의 영·위관과 상당관이 휴대한다(제15조). 도와 검은 대예의(大禮衣)와 군의(軍衣)를 착용할 때에는 겉에 차고, 하의(夏衣)를 착용할 때에는 의(衣)의 밑속〔裏衣〕에 도(劍)대를 결합하여 휴대하나 도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부의 환을 도대의 구금(釦金)에 걸어 휴대하며, 승마시에는 걸지 않고 휴대한다(제16조). 또한 대예장과 예장·반예장시에는 도와 검에 정서를 장착하고(제17조), 군장과 상장차림에는 도서와 검서를 장착한다(제18조). 그리고 하사관은 도와 검은 여하한 복장을 막론하고 군의표상(軍衣表上)에 혁대를 매고 휴대하나, 기병은 반드시 군의의 속밑〔裏下〕에 휴대하며, 외투를 착용할 때에는 검과 포병도와 도보도는 그 위에 휴대 하고, 기타 도는 혁대를 외투 속에 결하여 병(柄 : 칼자루)을 좌측 칼구멍으로 나오게 하고 대오(隊伍)에 열할 때에는 그 조혁을 좌측 칼구멍에 내어 도를 외면으로 낸다(제41조).

11) 飾緖의 佩用

- 1895년에는 참모관과 장관이 패용하며(제15조), 금선제(金線製)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상장과 군장차림에는 백다색 견사제(白茶色絹絲製)를 패용한다(제16조).
- 1897년에는 정식서(正飾緖)는 금선제로서 장관이 패용하며(제11조), 약식서

(略飾緖)는 담황색 견사제(淡黃色絹絲製)로서 상장과 군장에 착용한다(제12조). 참모식서는 참모부관원이라도 현재 참모관 외에는 식서를 패용(縣)하지 못한다(官報 第2958號 : 1904. 10. 13).

- 1906년에는 장관과 참모관이 패용하되 장관은 대예장과 예장차림시에 패용하고, 찬모관(贊謀官)과 참모관(參謀官)은 모든 예장에 패용하며(제19조), 모두 금선제(金線製)를 패용하나 상장차림에는 황색 견선제(黃色絹線製)를 패용할 수 있다(제20조).

12) 懸章의 着用

- 1895년에는 고등관과 부관(고등관아와 장관 이상이 근무하는 처소)과 주번·위수 순찰하는 모든 장교가 모든 복장에 착용하며, 우측 어깨에서 좌측 겨드랑이 밑으로 사선으로 맨다. 단, 고등관아 부관은 특별히 장관을 수행할 때와 주번과 위수순찰은 현직에 있지 않았을 때 외에는 매지 않는다(제17조).
- 1897년에는 위와 같으며 주번위관은 현장 외에도 육혈포와 검은 휴대하되 비록 깊은 밤이라도 부득이할 때에는 해착(解着)한다(제13조).
- 1904년 10월 13일에는 여단급 이상 고등부관은 부관장(副官章)을 착용하되 황색현장을 착용하고, 주번현장은 홍색현장을 착용한다(官報 第2958號).
- 1906년에는 고등관·아부관(衙副官)과 전령사(傳令使)와 주번·위수순찰의 제장교는 모든 복장에 휴대하며, 휴대요령은 우측 어깨에서 좌측 겨드랑이 밑으로 비스듬히 맨다. 단, 고등관·아부관과 전령사는 특히 장관을 수행할 때와 주번과 위수순찰은 현방근무(現方勤務)에 임할 때 외에는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제21조).

13) 手套의 着用

- 1895년에는 백혁제(白革製)를 원칙으로 하되 상장(常裝)과 군장(軍裝)으로 평시 근무연습 중일 때에는 다색혁제(茶色革製)나 무대소제(無大小製)를 착용한다(제19조).
- 1897년에도 백혁제가 정식(定式)이나 상장과 군장으로 평시사무연습 중일 때에는 다색혁제나 무대소제를 착용한다(제14조).
- 1906년에는 백색혁제를 착용하여야 하나 상장과 군장차림으로 평시의 근무

연습시에는 염색한 혁제나 무대소제를 착용할 수 있다(제23조). 하사관도 지급받은 자는 모든 복장에 착용하나, 개인이 마련한 자는 대오에 열하지 아니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42조).

14) 下襟의 着用

- 1895년에는 어떠한 복장이든지 백포제(白布製)를 사용(착용)한다(제20조).
- 1897년도 위와 같고(제15조),
- 1906년에는 금포(襟布)는 어떠한 복장을 착용하든지 백포제를 사용한다(제24조). 하사관도 어떠한 복장을 착용하든지 백금포를 의금포(옷깃천)보다 좁게 포개어 접어서 이를 목에 감아 착용한다(제44조).

15) 勳·記章의 佩用

1906년에 규제되었는바, 모든 복장에 패용하며 대훈위일등(大勳位一等)과 공일등장(功一等章)은 대예장(大禮裝)과 예장(禮裝)에만 패용하고, 군장(軍裝)과 반예장(半禮裝)에는 그의 부장(副章)만을 패용하며 상장 또는 군장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패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제14조).

16) 喪章의 表示

1897년에 처음 규제하였는바, 정장·예장·군장·상장을 착용할 때에 표장(表章)하며, 모(帽)의 금·은사 수식은 흑견(黑絹)으로 검게 가리고, 의(衣)에는 좌측 팔에 2촌(寸) 넓이의 흑색포완장을 두르고 금사수식은 흑견으로 가린다. 또한 견장도 흑견으로 가리고 도병(칼자루)의 양측장에는 2촌(寸) 넓이의 흑색포로 가리며, 수투는 회색을 착용한다. 이 의식은 국휼성복일(國恤成服日 : 국상시 상복을 처음 입는 날)부터 제복일(除服日 : 탈복일)까지 착용하며, 궁내에서 사복을 착용하고 상장을 표한 경우에는 공제전(公除前) 폐견시(陛見時)에만 착용한다(제23조).

17) 下士官의 服裝(1906년 규제된 육군복장규칙)

1906년 이전에는 복장규칙을 장·병의 구분없이 규제하였으나, 1906년에 복장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교(제2장)와 하사관(제3장)을 구분하고 이를 복장별(大

禮裝·軍裝·常裝)로 대별하여 병과별 직책별로 세분하여 규제하였다.

① 大禮裝의 着用(제47조)

- 병과에 따라 구별하나 일반적으로 모·입전모·군의·고·하금·화를 착용하며(제45조), 각 병과별로 다음과 같이 착용하였다.
- 정교는 병과를 막론하고 모두 도를 휴대하며, 보병과 공병은 단화에 각반을 착용하고, 기병은 장화를 신고, 야전포병과 치중병은 반장화가 지급되지 않으면 단화를 신어도 무방하다.
- 헌병의 부·참교와 상등병은 도를 휴대하며 반장화를 바지 위〔袴上〕에 신고 경찰근무에 임할 때에는 권총을 휴대한다.
- 보병·요새포병·공병의 부·참교와 병졸은 혁대를 매고, 총검을 휴대(당분간은 총검을 휴대하지 않아도 됨)하며 단화를 신고 각반을 바지 속〔袴裏下〕에 착용하는바, 대오(隊伍)에 열하는 자는 배낭을 매고 탄약합(彈藥盒 : 탄창)을 부착하고 총을 휴대한다. 단, 배낭에는 외투를 말굽형으로 말아서 매어 달고 공병과 보병중에 휴대기구를 휴대하는 자는 이를 갖추어 차린다.
- 기병의 부·참교와 병졸은 도를 차고 장화를 신고, 대오에 열하는 자는 총이나 쟁(鎗 : 화총)을 휴대(총을 휴대하는 자는 탄입대를 부착)한다.
- 야전포병의 부·참교와 병졸은 포병도를 휴대하고 장화를 바지 위〔袴上〕에 신고(반장화를 지급받지 못할 때는 단화를 착용) 대오에 열할 때 도보하는 자는 배낭을 매며 외투는 배낭에 말굽형으로 말아 묶는다.
- 치중병의 부·참교와 병졸은 도를 휴대하고 반장화를 신으며 병졸이 대오에 열하는 자는 탄약합을 부착하고 총을 휴대한다. 단, 당분간은 야전포병에 준한다.
- 회계관·군의와 군악대의 하사졸(下士卒 : 하사관과 병)은 모두 도보도를 차고 단화를 신고 각반을 착용한다.
- 포병·공병의 제공장(諸工長)은 전항과 같으나 야전포병대에 속한 제공장은 포병도를 휴대한다.
- 기병·포병·치중병의 제철공장(蹄鐵工長)은 모두 당해 병과의 하사와 같다.
- 부대에 소속된 포병의 단공장(鍛工長)은 해당부대의 하사와 같다.
- 봉화공장(縫靴工長)과 동 직공은 각기 소속대 하사·병졸과 같다. 단, 총인(銃刃)을 휴대하는 부대에 소속된 자는 도보도를 휴대한다.

• 부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부·참교도 군도(軍刀)를 휴대할 수 있다.

② 軍裝의 着用(제48조)

제45조와 제46조에 규제된 정장의 착장과 같으나 다음 사항이 다르다.

• 입전모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 수호(水壺 : 수통)를 휴대한다.

• 보병·공병·요새포병은 잡낭을 휴대한다.

• 도보부대에 소속된 자는 모두 배낭을 휴대한다(縫工長·靴工長과 포병대 소속 監護 및 기병·포병대 諸工長·同下長은 제외). 단, 제4조 1항(출전 및 출주시) 제2항(비상시의 출병시)의 경우에는 대외(隊外)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 배낭을 휴대한 자는 여기에 반합과 예비화를 부착하며 계절에 따라 모포를 부착할 수도 있다.

• 각반을 착용하는 자는 이를 바지 위〔袴上〕에 착용한다.

③ 常裝의 着用

• 약장(略裝)의 착용은 대개 군장과 같다(제49조).

• 차 복장에는 제47조 제2항에서 제5장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각반은 이를 알맞게 가려서 바지 속〔袴裏下〕에 착용하며, 대외에 소속된 자는 각자의 편의에 따라 각반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50조).

18) 附 則

• 1895년에는 훈련대 회계관과 의관(醫官)의 복장은 차규칙에 의한다. 단, 군의(軍衣)의 금선은 은선으로 하고, 고(袴)의 측면 띠〔縫章〕를 회계관은 청색, 의관은 녹색으로 한다(제26조).

• 1897년에도 위와 같음(제22조).

• 1906년에는 개국 506년(1897) 5월 15일의 특하육군복장규칙(特下陸軍服裝規則)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폐지하고(제51조), 본령은 광무 10년(1906)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52조).

(2) 元帥府에 속한 武官의 服裝規則

1) 모 자 : 어용모자(御用帽子)와 동일 양식이며, 품표(品表)만 계급에 따르게

한다.

2) 견 장 : 어용견장과 동일 양식으로 하되 위관은 수(垂 : 수술)가 없이 한다.

3) 식 대 : 장관은 황색에 은사로 이화(李花)를 가식(加飾)하고 영·위관은 황색만 사용한다.

4) 식 서 : 장·영·위관이 모두 패용한다.

5) 본조에 규정한 자 이외에는 육군복장규칙에 의한다.

(3) 日本軍內의 朝鮮軍人에 대한 服裝着用規則

• 제 1 조 : 조선군인은 제1표(표 4-1)에 의하여 하란(우측란)에 게재한 자는 상란(좌측란)의 육군 군인에 상당하는 것으로 함.

• 제 2 조 : 조선군인은 상당한 육군 군인의 차석(次席)으로 함.

• 제 3 조 : 조선군인에게는 상당한 육군 군인의 제복을 착용하게 함. 단, 각 병과 장교·준사관·하사관·병졸에 상당하는 자는 금색으로, 기타는 은색의 금속제 휘장을 깃의 좌우에 부착한다. 그 제식과 현상은 다음과 같다(그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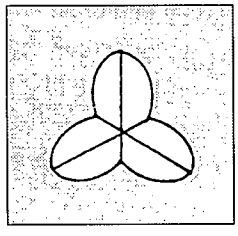

〈그림 4-5〉 徽 章

• 부 칙 : 본령은 명치(明治) 44년(1911) 4월 1일부터 시행함.

〈표 4-1〉 일본군인과 조선군인 간의 상관관계(例)

日本軍人	朝鮮軍人
陸軍中將	陸軍副將
〃 少將	〃 參將
陸軍步兵 大佐	陸軍步兵 正領
〃 中佐	〃 副領
〃 少佐	〃 參領
〃 大尉	〃 正尉
〃 中尉	〃 副尉
〃 少尉	〃 參尉

日本軍人	朝鮮軍人
陸軍步兵 特務曹長	陸軍步兵 特務正校
〃 曹長	〃 正校
〃 軍曹	〃 副校
〃 伍長	〃 參校
〃 上等兵	〃 上等兵
〃 一等兵	〃 一等兵
〃 二等兵	〃 二等兵

이상과 같이 3회에 걸친 육군복장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시제 당시의 근대 군복제식은 갑오개혁 이후 현대식 군제로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1897년의 개정은 군의 확장에 따라 착용대상자의 증가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의 보완이 요구되었던 것이고, 1906년의 2차 개정은 그동안 군의 병종(兵種)이 다양화되면서 각 병종의 특성도 살릴 수 있는 복장의 형식이 필요한 데에 기인되어 점차 세분화하여 규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906년 반예장의 추가는 군의식 절차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복장별 착용대상(제2조), 착용시기(제3조), 복장별 차림새(제26·29·33·38조)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장교의 가벼운 예식용차림이 필요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훈장과 기장의 패용요령이 추가된 것은 1900년(고종 37) 4월에 훈장조례가 새로이 제정된 데에[47] 따른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들 복장을 요약해 보면, 차림새를 예식·의식·제전 등의 대예식에 착용하는 정장차림과 유사시에 착용하는 군장차림, 일반의식에 착용하는 예장차림, 평상시에 착용하는 상장차림, 사령서의 배수나 일반 하의(賀儀)에 착용하는 반예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장·군장·상장은 장병이 공히 착용하였고, 예장과 반예장은 장교만이 착용하였다.

나. 軍服飾의 種類別 制式

복장제식은 1895년 4월 9일의 시제 당시와 1897년 5월 15일의 1차 보완개정시에는 복장규칙과 함께 통합 개정되었으나, 1907년 10월 1일에는 육군복장제식만을 따로 개정 반포하였다.[48] 그러나 그 동안 필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복식별로 개정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07년 군대해산 이후에도 특정인원의 복장제식으로 1908년 2월 14일에 황실 근위임무를 수행하는 근위기병대 하사급 이하의 예복제식이 제정되고,[49] 1909년 2월 20일에는 헌병 보조원의 제복이 규제되기도 하였다.[50]

---

47) 官報 第1552號(光武 4年 4月 19日)『勳章條例」勅令 第13號(光武 4年 4月 17日)
48) 官報 第3889號(隆熙 元年 10月 5日)「陸軍服裝製式」勅令 第26號(隆熙 元年 10月 1日)
49) 官報 第3999號(隆熙 2年 2月 17日)「近衛騎兵隊下士以下禮服製式」勅令 第9號(隆熙 2年 2月 14日)
50) 官報 第4315號(隆熙 3年 3月 3日)「憲兵補助員服飾」軍令 第2號(隆熙 3年 2月 20日)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복장에 기본이 되는 예복과 상복을 비롯하여 복식품과 휴대품들이 제정되고 개정된 내용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하였다.

(1) 陸軍將卒服裝

가) 禮 服

예복은 주로 예식시를 대비한 복장(정장·예장·대예장)으로 의복이 지니는 특성에 걸맞게 깃에는 관등을 표시하는 의령장(衣領章), 어깨와 팔에는 계급을 표시하는 견장(肩章)과 수장(袖章)을 그리고 의령의 바탕과 수구(袖口 : 소맷부리)에는 병과(兵科)를 나타내는 색채를 붙이고, 지휘관과 참모들은 직책을 표현하는 식서(견식줄)를 좌측 어깨에 둘렀으며 가슴에는 공훈을 나타내는 훈장을 패용하는 등 품위를 가장 잘 표현하였던 제복이다.

1) 禮 帽

최초 시제 당시에는 장교와 병사의 구분없이 단일제식으로 품질과 형태는 흑색 융질(黑色絨質)의 투구 모양이었다. 제식은 정상(頂上 : 꼭대기)에 화살촉과 같은 금색쇄(鎖 : 꼭대기장식)가 부착되고 앞과 뒷면 하단에는 전비(前庇 : 차양), 앞면 전비 위에는 이뉴(頤紐 : 턱끈)가 부착되었다. 그리고 모자의 앞면 중앙에는 흰색의 이화(李花 : 자두꽃)문양 표장(表章 : 모표)을 부착하였다(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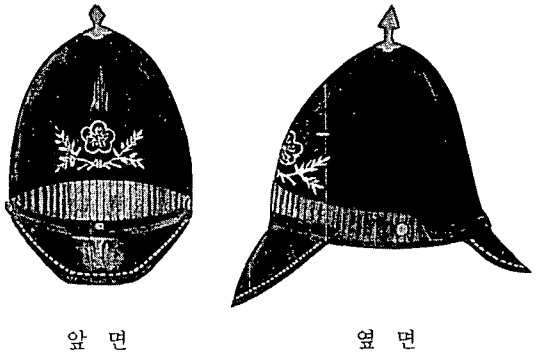

앞 면 옆 면

〈그림 4-6〉 1895년 禮帽(『민속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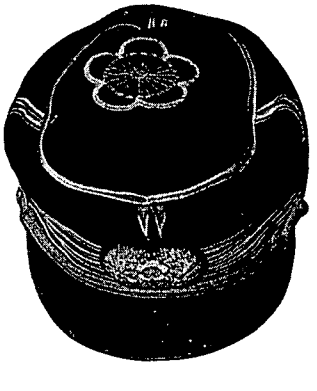

〈그림 4-7〉 1897년 이후 禮帽(『육군박물관』)

1897년 5월 15일에는 육군복장제식이 개정되면서 예모의 형식이 바꾸어졌는데 형태는 타원형(楕圓型)으로서 당시 프랑스군의 장교모인 케피(Kepi)모 형태였다(그림 4-7). 모자의 구성(그림 4-8)은 정개(頂蓋 : 상부)와 상반부(上半部), 하반부(下半部)로 구성되고, 부수물로는 상부 정개의 이화장, 차양인 전비, 모표인 표장(表章) 등이 부착되었으며, 상반부에는 관등을 표시하는 종선, 하반부에는 계급을 표시하는 횡선을 금사양고직(金絲兩股織)으로 부착하였다.

그리고 1907년 10월 1일에는 준사관의 예모제식도 규제하였는데 품질과 제식은 참위(參尉)의 예모제식과 같되 관등과 계급선(종선·횡선)이 없는 모양이었다.[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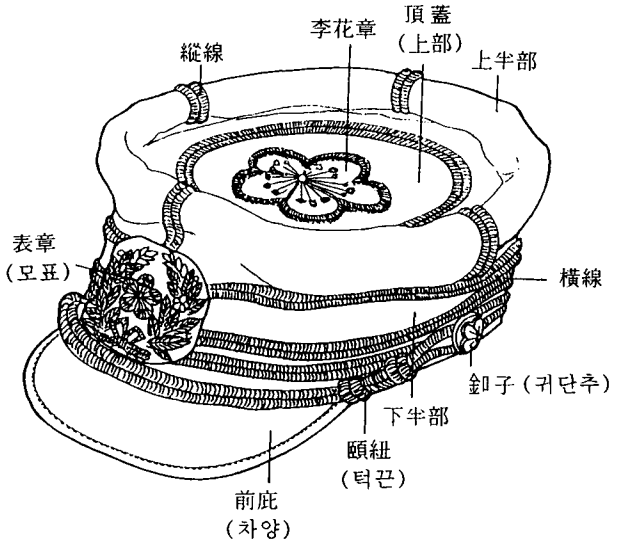

〈그림 4-8〉 禮帽의 部分 名稱

① 頂 蓋(상부)

1897년 개정된 예모의 정개는 품질이 흑색융질이고, 형태는 정개와 상반부의 일부가 함께 안으로 들어간 모양으로서, 중앙부에는 이화형(李花型 : 자두꽃 모양)의 붉은색 융질(紅色絨質) 위에 금사(金絲)로 이화문양을 수놓아 봉착(縫着 : 꿰매어 붙임)하고, 그 외변(상반부와 연결되는 부위)에는 주위를 연하여 금선양고직(金線兩股織)으로 부착하였다(그림 4-9).

51) 官報 第3889號(隆熙 元年 10月 5日)「陸軍服裝製式」勅令 第26號(隆熙 元年 10月 1日)

② 上半部(정개와 하반부 사이)

1897년에 개정된 예모의 상반부는 품질이 정개와 같은 흑색융질이고, 타원처(楕圓處)의 전·후·좌·우측 4개 처에는 관등(官等)을 표시하는 수금선양고직(竪金線兩股織 : 종선)을 관등에 따라 장관은 3줄, 영관은 2줄, 위관은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

그후 1903년 12월 22일에는 공병의 예모 상반부 색상을 황색융질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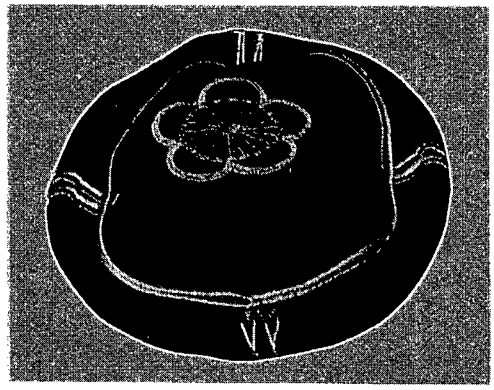

〈그림 4-9〉 禮帽 頂蓋

③ 下半部(상반부와 연결되어 머리가 들어가는 몸통부위)

1897년에 개정된 예모의 하반부는 품질이 홍색융질이고, 하반부의 상단부위(상반부와 하반부가 연결되는 곳)의 수선이 연접되는 곳〔竪線連接處〕에는 횡금선양고직(橫金線兩股織)을 봉착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계급을 표시하는 횡금선양고직을 계급에 따라 대장은 9줄, 부장은 8줄, 참장 7줄, 정령 6줄, 부령 5줄, 참령 4줄, 정위 3줄, 부위 2줄, 참위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 그런데 당시 군부에 속해 있던 회계관과 군의관은 하반부 바탕의 융질을 바지〔袴 : 하의〕의 측면 봉장색(縫章色 : 측면 띠)에 맞추어 회계관은 청색, 군의관은 옥색(玉色 : 약간 파르스름한 빛깔)으로 하였다.[52]

그후 1905년 9월 5일부터는 군의관의 하반부 옥색을 유록색(柳綠色 : 푸른빛과 누른빛의 중간색) 융질로 개정하였다.[53] 그리고 1907년 10월 1일부터는 각 병과의 정색(定色)이 제정됨에 따라 하반부의 색상도 각 병과의 정색에 따르게 하였다.

- 장관 및 보병 : 홍 색
- 기 병 : 녹 색
- 포 병 : 황 색
- 공 병 : 자주색(紫色)
- 군 의 : 유록색
- 군 사 : 청 색

52) 官報 第1624號(光武 4年 7月 12日)「陸軍將卒服裝製式」第3大禮衣條(光武 4年 7月 2日)
53) 官報 第3242號(光武 9年 9月 12日) 正·誤

④ 表 章(모표)

최초 시제 당시의 투구형 예모에 부착하였던 표장은 흑색 바탕 위에 근화지(槿花枝 : 무궁화 나뭇가지)를 교차동결(交叉同結)한 위에 이화장을 놓은 현상이었는데, 장관과 영관은 각별히 은색별 1개를 추가한 모양이었다[54](그림 4-10).

그후 1897년 5월 15일 새로 제정된 예모에 부착하는 표장은 타원형의 흑색융질 바탕을 횡으로 하여 정중앙에는 은선금예이화(銀線金蕊李花 : 은색 선과 금색 꽃술을 수식한 자두꽃)를 수식하고, 그 좌·우에 금엽은파상생(金葉銀葩像生 : 금색 잎과 은색 꽃송이를 수놓은), 근화양지수장(槿花兩枝繡章 : 무궁화가지를 교차시킨 수장)을 교차동결하였으며, 여기에 부분적으로 근엽(槿葉 : 무궁화나뭇잎)을 중심하여 소형 근화를 수식한 형태였다. 이 표장은 육군복장규칙이 실효될 때까지 그 원형이 개정없이 유지되었다(그림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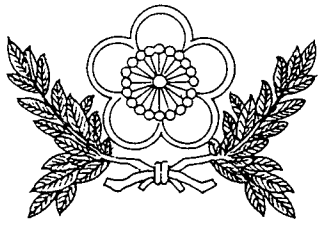

〈그림 4-10〉 1895년 이후 禮帽 表章



〈그림 4-11〉 1897년 이후 禮帽 表章
(『민속도록』)

⑤ 頤 紐(턱끈)

최초 시제 당시의 투구형 예모의 턱끈은 흑혁제(黑革製 : 검정 가죽제)였으며, 1897년 5월 15일부터는 예모가 타원형으로 바뀌면서, 턱끈도 그 품질이 금사로 둥글게 직조〔圓織〕한 것을 두 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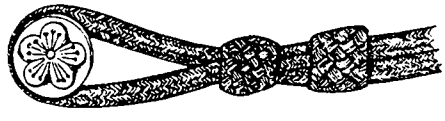

〈그림 4-12〉 1897년 이후 禮帽 턱끈

54) 官報 第10號(開國 504年 4月 11日)「陸軍服裝規則」第1帽, 勅令 第78號(開國 504年 4月 9日)

나란히 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하고, 양쪽 끝은 모자의 양측면 하단(차양의 양쪽 끝 부위)에서 주물로 만들어 도금〔鍍金鑄製〕한 무궁화문양단추〔槿花釦子〕로 고정시켰다(그림 4-12).

그후 1907년 10월 1일부터는 턱끈의 고정단추문양을 도금주제 이화문양으로 바꾸었다.

⑥ 前　庇(차양)

최초 시제 당시의 투구형 예모에는 흑색 가죽으로 제작된 차양을 전·후에 부착하였는데, 뒷면의 것은 앞면과 같은 모양이었으나 크기가 앞면 것보다 작은 것이었다(그림 4-12).

그후 1897년 5월 15일부터는 모자의 형태가 타원형으로 바뀌면서 모양은 반달형〔半月形〕이었고, 품질은 흑색 가죽〔革製〕제였다. 이 차양은 정중앙을 정면표장(모표)의 중앙부위와 연하는 선상으로 하여 예모의 하단부 하단을 따라 봉착하였다.

⑦ 立前毛(깃털)

최초 시제 당시에는 다만 정장조(正裝條)에서 '앞에 꽂는 상모'라고만 규제하고 있을 뿐 형태와 재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다.

그후 1897년 5월 15일에 제정된 육군복장규칙에도 규제가 없다가, 190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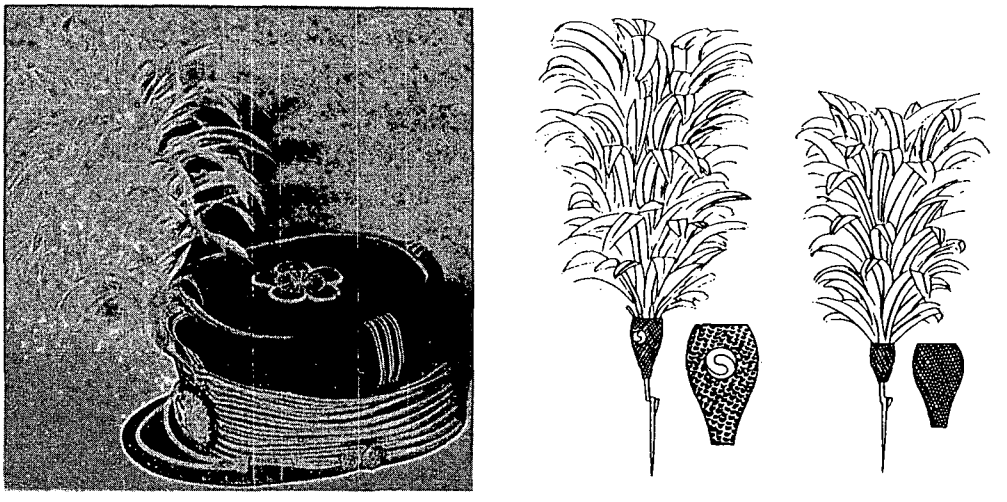

〈그림 4-13〉 立前毛(『고대박물관』·『민속도록』)

23일 새로이 규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식은 금속철선에 백색 깃털〔白色鳥羽〕을 중복 연결한 형태로서,[55] 주로 의식시에 모자의 모표 위 부위에 삽입 착용하였다(그림 4-13).

1901년 9월 2일에는 하사관의 예복이 제정되면서, 하사 이하도 예모의 차양 위에 입전모를 꽂도록 하였다.[56]

2) 禮 衣(上衣)

시제 당시 예의의 색상과 품질은 흑색 나사(黑色羅紗)이고, 형식은 세운 깃에 한줄 5개 단추를 부착한 합임식(合衽式) 저고리로서 흉부 중앙에는 무늬가 없는 은제단추〔無地銀製釦子〕를 의령에서 밑으로 연하여 5개를 달았다. 또한 주머니는 아래·위의 좌우측에 뚜껑이 없는 속붙임주머니〔無蓋隱囊〕를 달고 좌측 아래쪽에는 도(刀)·검(劍)을 휴대하는 데 편리하도록 곧게 텄다(그림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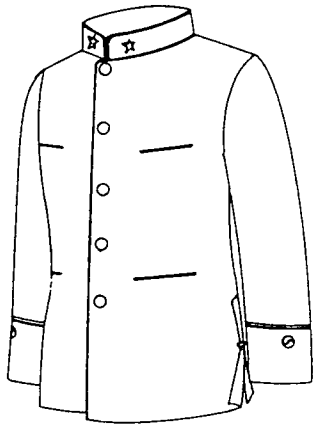

〈그림 4-14〉 1895년 禮衣
(『민속도록』)

1897년 5월 15일에는 예복제식이 변경되었는데 색상과 품질은 검정색 융질〔黑色絨質〕로 하고, 제식의 기본형태는 종전과 같이 앞면 중앙에서 합임(合衽)하게 하였으나, 길이가 짧고(허리부위까지 닿음) 합임부의 좌·우측 솔기와 아랫단에는 검정색 넓은 띠〔黑色廣絨緣〕를 붙인 모양이었다. 단추는 검정실로 꼬은 노끈〔黑絲圓織〕으로 무궁화 모양의 매듭을 만들어 달았으며, 단추 위치에서 양쪽〔左·右〕 흉부 쪽으로는 같은 품질의 무궁화(槿花)형 장식매듭을 봉착(縫着)하였다(그림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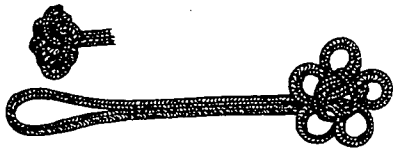

〈그림 4-15〉 근화형 단추 및 매듭장식(『민속도록』)

55) 官報 第1529號(光武 4年 3月 23日) 立前毛 添入改付票
56) 官報 第1981號(光武 5年 9月 2日) 正·誤

한편, 상단의 흉부주머니는 의령에서 밑으로 세 번째 단추와 흉부 쪽 무궁화장식을 연하여 좌·우측 선상에서 길이 9cm 크기 정도의 뚜껑이 없는 속붙임주머니를 달았다.

또한 아랫주머니는 맨 아래 좌·우측 무궁화장식으로부터 뒤쪽으로 16.5cm의 간격으로 주위를 검정색 띠〔黑絲廣織〕를 부착한 뚜껑이 없는 속붙임주머니〔無蓋囊〕를 달았다. 한편 주머니의 양쪽 마구리는 제비부리 모양이었다(그림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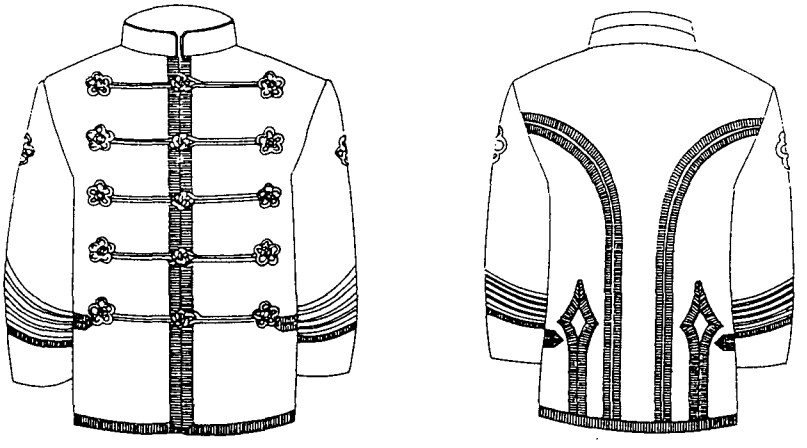

앞 면 뒷 면

〈그림 4-16〉 1897년 이후 禮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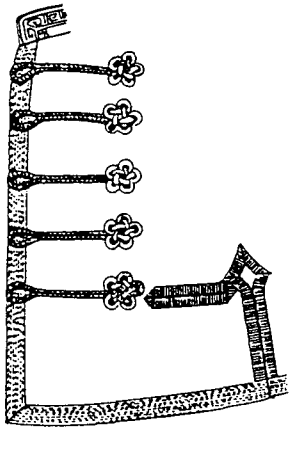

〈그림 4-17〉 禮衣 흉부 및 측면

그리고 좌측 아래쪽에는 도·검을 휴대할 수 있도록 화살촉 모양으로 하여 중앙을 곧게 트고〔直割〕, 바깥쪽〔表面〕은 정도기자형(正倒己字型) 문양이 새겨진 검정색 편직띠〔黑色編織 : 길이 22.5 cm, 넓이 7cm〕를 부착하고, 안쪽〔裏面〕은 검정색 가죽(黑色皮革)을 붙였다(그림 4-17).

1900년 7월 2일에는 품질은 종전과 같은 흑색 융직이되 제식은 길이가 긴 세운 깃의 2줄 14개 단추를 부착한 교임식(交衽式) 저고리(Frock Coat)로 개정되었다. 예의의 길이는 위〔頂部〕에서 다리



실 물(궁중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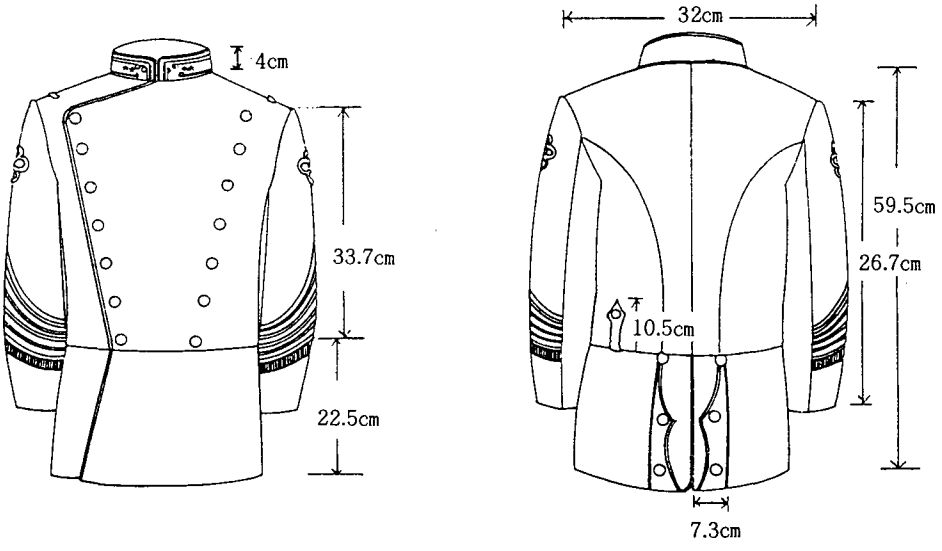

실 측 도

〈그림 4-18〉 1900년 이후 禮衣·실측도

부위〔腿部〕에 이르고, 의령을 연하는 좌·우측 깃부위〔左右襟部〕에는 붉은색 띠〔紅色絨緣〕를 직선으로 봉합(縫合)하였다. 또한 홍부 좌·우측에는 도금된 무궁화문양〔鑲金製槿花型〕 단추 7개씩을 위에서 아래로 잇달아 부착하고, 등솔기를 연한 하단부〔後裾〕에는 5촌(寸) 길이로 곧게 트고, 분할된 양쪽 가까운 곳〔兩傍〕에는 길이 5촌, 넓이 1촌의 붉은색 융띠〔紅色絨緣〕를 부착하되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쪽은 넓게 하여 여기에 종으로 상·중·하에 도금된 무궁화문양이 양각된 단추 3개씩을 달았다[57](그림 4-18). 또한 1901년 9월 2일부터 헌병의 예의는 제식은 본 규칙에 준하게 하고 품질만을 다색융(茶色絨)으로 하였다.



〈그림 4-19〉 기병 禮衣(『육군박물관』)

1902년 9월 20일에는 기병의 예의 품질도 홍색융〔紅絨〕으로 바꾸었으며[58](그림 4-19), 1907년 10월 1일부터는 품질과 제식은 종전과 같게 하되, 다만 무궁화문양 단추를 이화형 문양이 양각된 도금단추〔鑲金鑄製李花型〕로 개정하고, 후거분할처의 색융은 병과 정색(兵科定色)으로 하였다(그림 4-20).

한편, 하사관 이하의 예의도 1901년 9월 2일 처음 규제하였는데, 품질과 제식은 장교와 동일하되 의령장은 없게 하였으며, 군악대는 금사직(金絲織)의 악기형(樂器型) 표지를 깃의 좌·우측에 각각 부착하였다.[59] 또한 수장은 상의(常衣)와 같이 하였다.

① 衣領章

시제 당시 규제된 의령장은 바탕이 흑색나사(黑色羅紗)이고, 표지(標識)는 은(銀)으로 제작된 별〔銀星〕로 깃의 앞면 좌·우측에 달아 표시하면서 장관급은 3개,

57) 官報 第1624號(光武 4年 7月 12日)「陸軍將卒服裝製式」第3大禮衣(光武 4年 7月 2日)
58) 官報 第2310號(光武 6年 9月 20日) 正·誤
59) 官報 第1981號(光武 5年 9月 2日) 正·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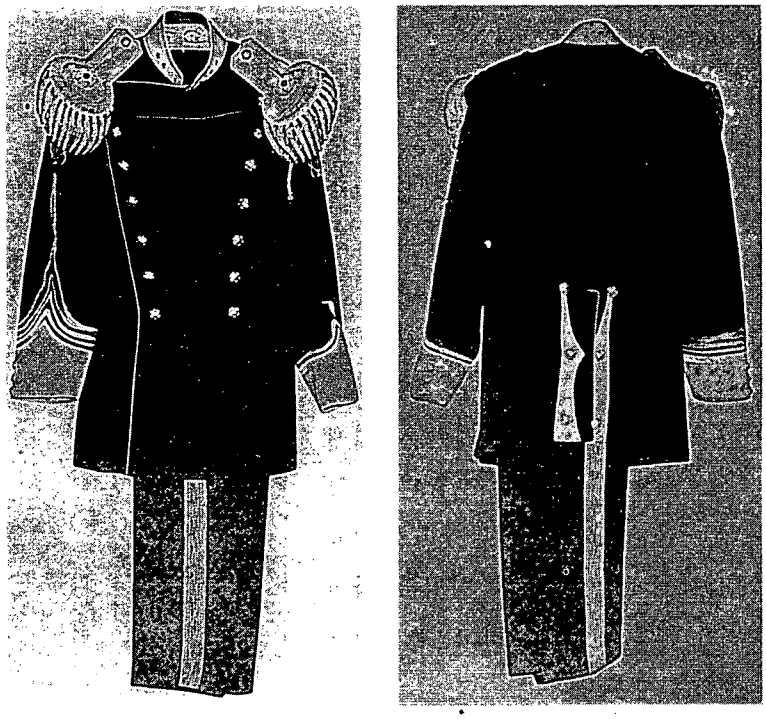

전 면 후 면

〈그림 4-20〉 포병 참령 禮衣(『고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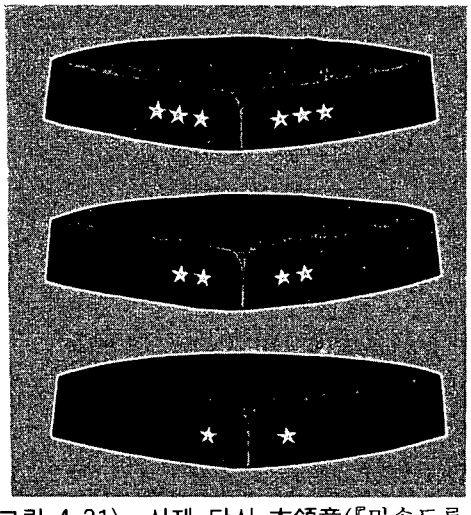

〈그림 4-21〉 시제 당시 衣領章(『민속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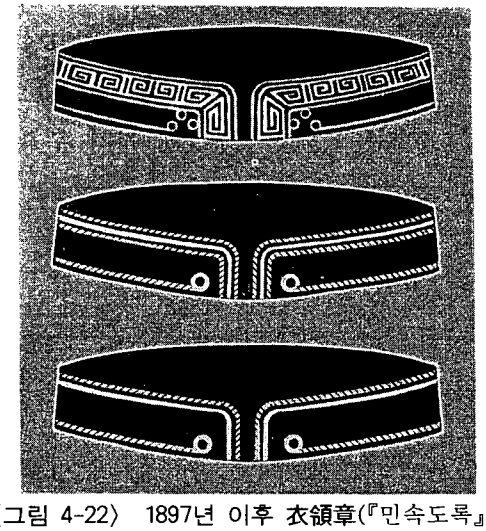

〈그림 4-22〉 1897년 이후 衣領章(『민속도록』)

영관급은 2개, 위관급은 1개씩을 각각 부착하였다[60](그림 4-21).

그리고 1897년 5월 15일부터는 예의(禮衣)제식이 변경됨에 따라 의령장의 제식도 변경되었는데, 바탕의 품질을 홍색융질(紅色絨質)로 하고, 상단의 연변처(沿邊處)를 따라 장관급은 정도기자형(正倒己字型)의 금사로 수식된 띠〔金絲繡緣〕를 붙이고, 그 하단에 일자형의 금사수선(金絲繡線)을 2줄〔雙條〕로 하여 나란히 부착하였으며, 의령의 하단을 따라 다시 1줄을 부착하였다. 영관은 상단에 1줄, 하단에 2줄을 부착하고, 위관은 상단과 하단에 각 1줄씩을 수식하여 관등을 표시하였다[61](그림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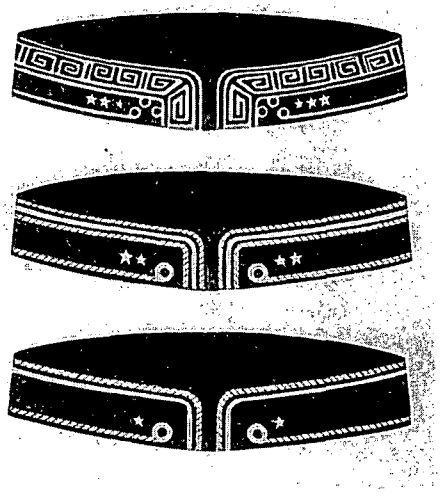

〈그림 4-23〉 1900년 이후 衣領章

그후 1900년 7월 2일부터는 제식은 종전과 같이 하되, 다만 금사수성(金絲繡星 : 금색실로 수놓은 별)을 중앙부위 공간에 부착하였는데, 장관은 3개, 영관은 2개, 위관은 1개씩을 깃의 좌·우측에 각각 부착하였다[62](그림 4-23).

또한 1907년 10월 1일부터는 병과 정색이 규제됨에 따라 의령의 바탕색을 병과의 정색으로 바꾸었다.

② 袖 章

최초 시제 당시에는 소매 하단부의 바깥쪽〔表面〕에 금색선〔金線〕으로 장관급은 3줄, 영관급은 2줄, 위관급은 1줄씩을 부착하고, 금색선 아래쪽〔袖端下部〕에는 은색의 태극문양 단추(太極釦)를 대장과 정령·정위는 3개, 부장과 부령·부위는 2개, 참장과 참령·참위는 1개씩을 각각 부착하였다(그림 4-24).

1897년 5월 15일부터는 소맷부리(袖口)에 홍색융연(紅色絨緣)을 수장을 붙이는 곳〔袖章處〕까지 붙이고 홍색융연 상단에 금색실로 수놓은 'ㅅ'자 줄띠〔ㅅ字型 金絲繡線〕로 대장은 9줄〔條〕, 부장은 8줄, 참장은 7줄, 정령은 6줄, 부령은 5줄, 참령은

60) 官報 第10號(開國 504年 4月 11日)「陸軍服裝規則」服裝圖解 第2圖 勅令 第78號(開國 504年 4月 9日)
61) 官報 第639號(建陽 2年 5月 18日)「陸軍服裝規則」第3大禮衣衣領章(建陽 2年 5月 15日)
62) 官報 第1624號(光武 4年 7月 12日)「陸軍服裝規則 中 大禮衣 改定」(光武 4年 7月 2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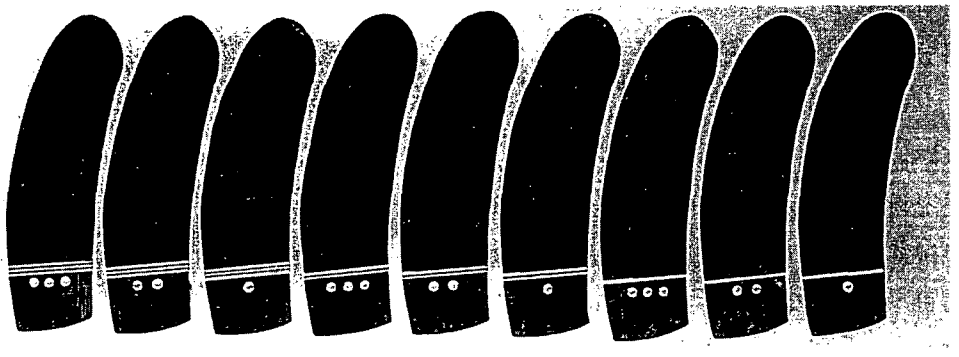

〈그림 4-24〉 시제 당시 禮衣 袖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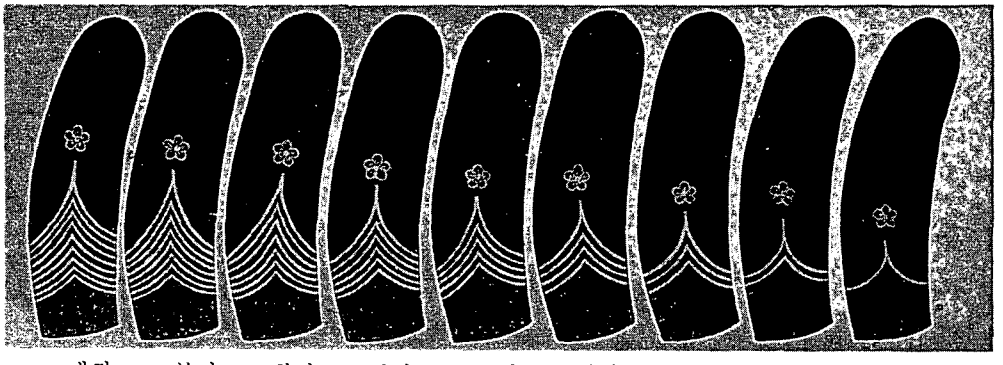

〈그림 4-25〉 1897년 이후의 袖章(『민속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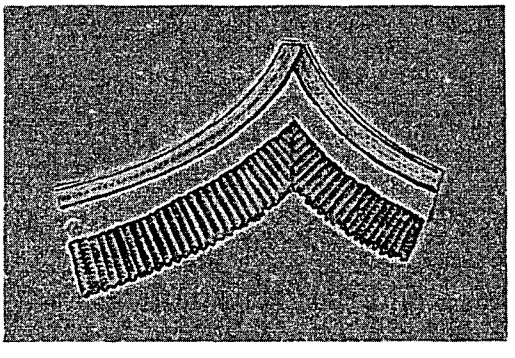

〈그림 4-26〉 正倒己字型 金絲繡緣

은 4줄, 정위는 3줄, 부위는 2줄, 참위는 1줄로 하고 'ㅅ'자형의 머리(上頭) 부위에는 금사로 수놓은 무궁화장〔槿花章〕을 꿰매어 붙였다(그림 4-25).

또한 1900년 7월 2일부터는 소맷부리의 홍색융연 위쪽에 금선양고직(金線兩股織 : 금선으로 양쪽이 불룩하게 직조한 띠)의 정도기자형(正倒己字型)의 금사연(金絲緣)을 붙이고(그림 4-26), 그 위쪽에 금사선으로 정도기자형을 수놓은 'ㅅ'자형의 계급표지를 종전과 같이 표시하고, 소맷부리의 홍색융연 뒤쪽 부위에는 도금된 무궁화문양이 양각된 단추 3개를 계급의 구분없이 소맷부리 쪽으로 1줄로 나란히 부착하였다(그림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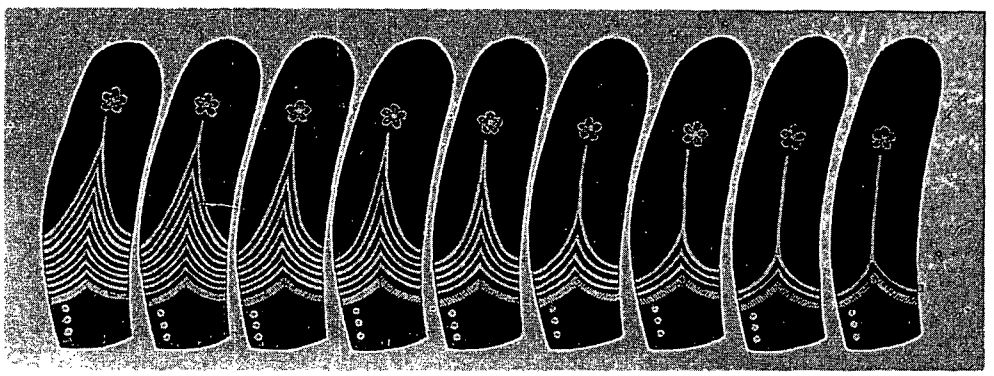

〈그림 4-27〉 1900년 이후의 袖章(『민속도록』)

그후 1907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제식이 종전과 같았으나, 소맷부리의 홍색융질을 각 병과의 정색으로 바꾸고, 계급을 표시하는 'ㅅ'자형 표지선 위의 금사수제근화장(金絲繡製槿花章)과 단추의 무궁화문양을 이화(李花)문양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준사관은 품질과 제식이 참위와 같았으나, 다만 수장의 계급선이 없는 것이 달랐으며,[63] 하사관의 수장은 상의(常衣)와 같았다.

3) 禮　袴(下衣)

이 예고는 착용목적에 따라 일반장병이 착용하는 장고(長袴)와 기마병이 착용하

63) 官報 第3889號(隆熙 元年 10月 5日)「陸軍服裝製式」第16條 勅令 第26號(隆熙 元年 10月 1日)

는 단고(短袴)의 두 종류가 있으며, 장고(긴 바지)는 보통의 일반적인 바지형태로 써 길이는 체형에 맞추어 복부에서 발꿈치(踵下)까지 닿는 것이었고, 단고(짧은 바지)는 승마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예고는 예의와 더불어 장교는 시제 당시부터 착용하였고, 하사졸은 1901년 9월 2일부터 예복제식이 규제되면서 착용하였으며, 이들 바지에도 관등이나 병과(색상)를 표시하는 봉장(측면 띠)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상고의 제식은 1907년 10월 1일의 육군복장제식에 처음 규제되었는데, 이 당시까지 상의에도 예고를 함께 공용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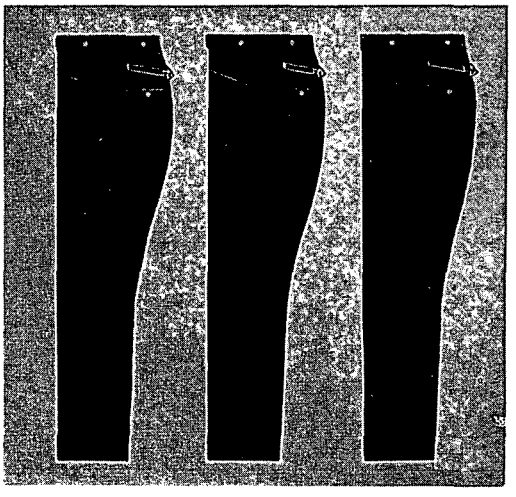

〈그림 4-28〉 1895년 이후 禮袴 縫章(『민속도록』)

최초 시제 당시의 예고는 품질이 흑색융질이었으며, 양측면에는 붉은색 융질〔赤絨〕로 측면 띠〔縫章〕를 부착하여 관등(官等)을 표시하였으며 장관급은 3줄, 영관급은 2줄, 위관급은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는데 그 폭의 차를 두었다(그림 4-28).

189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 예고(禮袴)는 종전과 같은 흑색융질이되 봉장제식만을 바꾸었는데, 규격을 장관급은 3줄(중앙에 3분 넓이 1줄, 좌우측에 7분 넓이 각 1줄), 영관급은 2줄(각 7분 넓이), 위관급은 1줄(1촌 넓이)이고, 하사관은 6분 넓이 1줄, 병졸은 3분 넓이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으며, 색상도 장관 및 보병은 홍색, 기병은 녹색, 포병은 황색, 공병은 자색, 군사(軍司)는 청색, 군의는 옥색(玉色 : 약간 푸른빛을 띤 파르스름한 색깔)으로 표시하였다(그림 4-29).

그후 1900년 7월 2일에는 헌병의 봉장색상을 백색으로 바꾸고, 1901년 9월 2일에는 군악대의 예고 품질을 홍색융질〔紅絨〕로 바꾸면서 봉장의 색상도 검정색으로 바꾸었다.[64] 그리고 1905년 9월 12일에는 군의의 봉장색상 옥색을 유록색(柳綠色 : 푸른색과 누른빛의 중간색)으로 바꾸었다.[65]

---

64) 官報 第1981號(光武 5年 9月 2日) 正·誤
65) 官報 第3242號(光武 9年 9月 12日) 正·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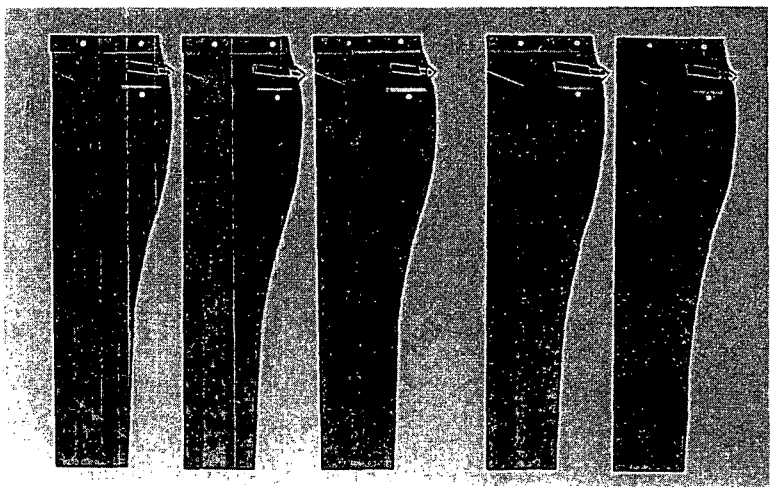

〈그림 4-29〉 1897년 이후의 禮袴 縫章(『민속도록』)

또한 1907년 10월 1일부터는 품질과 제식은 흑색융질의 장고(長袴)였는데, 기병장교만은 승마바지인 단고(短袴)를 착용하였다. 봉장의 규격은 장관급이 3줄(중앙에 1분 넓이 1줄, 좌·우에 6분 넓이 각 1줄), 영관급은 2줄(각 6분 넓이), 위관급은 1줄(1촌 넓이)로 하여 장관급과 영관급은 넓이를 줄였다. 그리고 색상은 장관 및 보병은 홍색, 기병은 녹색, 포병은 황색, 공병은 자색, 회계관은 청색, 군의는 심록색(深綠色 : 짙은 초록색)으로 하였다.

4) 軍 靴

군화의 종류에는 단화·반장화·장화의 3종류가 있으며, 제식은 규제된 것이 없고 다만 착용규칙만 1895년과 1906년에 규제되었을 뿐이다. 제식은 민속도록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참고로 보면, 단화는 앞면 상단에 5쌍의 구멍을 뚫어 끈으로 조정하도록 고안된 목이 없는 신발이고, 반장화는 발목까지 가리워질 정도로 높은 구두로서 발목부위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무줄로 편직한 넓은 띠를 붙여 착·탈시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장화의 길이가 무릎까지 닿는 목이 긴 구두로서 맨 위의 무릎부위에서 관절을 따라 곡선으로 고안되었으며, 승마시에는 복사뼈 부위에서 뒤쪽으로 박차(拍車 : 승마용 구두의 뒤축에 댄 쇠로 만든 톱니모양의 물건)를

부착하여 착용하였다.

단화는 모든 복장차림에서 일반장교와 하사졸이 착용하고, 반장화는 야전포병과 치중병 그리고 헌병의 부교(副校) 이하 사병이 대예장(大禮裝)차림에 착용하였으며, 장화는 기병과(騎兵科) 장병과 승마를 본분으로 하는 장교가 착용하였다(그림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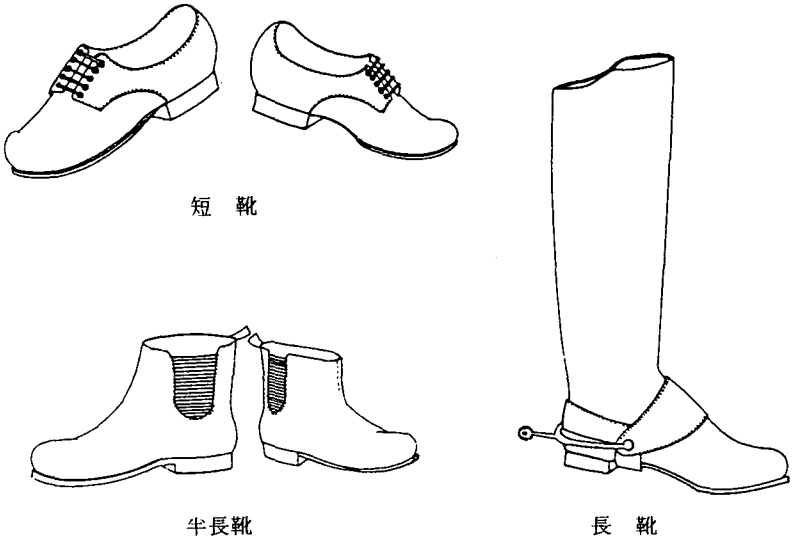

〈그림 4-30〉 軍 靴(『민속도록』)

나) 常 服

상복은 최초 시제 당시에는 없었으나, 1897년 5월 15일 육군복장규칙이 개정될 때 새로이 제정된 제복으로 장교와 하사졸이 상장(常裝)·군장(軍裝)·반예장(半禮裝)차림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는 제복이다.

1) 常 帽

최초 시제 당시에는 상모는 제정되지 않고, 1897년 5월 15일 상복과 함께 제정되었다. 품질과 제식은 예모와 같은 타원형의 모자였는데, 상부 주변선과 상반부 수선(竪線 : 縱線) 및 하반부 횡선은 모두 검정실로 짠 납작한 편직〔黑線匾織〕으로 하고, 정면의 표장(모표)도 예모의 표장과 같은 형태이나 도금주제(鍍金鑄製)였다

(그림 4-33). 또한 턱끈은 흑색실로 둥글게 꼬은 노끈〔黑絲圓織〕으로 하고, 좌·우측 고정용 귀단추〔裝飾具〕는 무궁화 모양이 양각된 단추였으며, 차양은 흑색 가죽제품이었다(그림 4-31). 그리고 하사졸의 상모는 장교와 같은 모양이었으나, 상반부의 종선과 하반부의 횡선은 없고 하반부의 융질을 홍색으로 하면서 하사관은 아래·위로 나누어 위쪽은 2분(分) 넓이, 아래쪽은 8분 넓이로 하여 둘렀고, 병졸은 8분 넓이의 한 줄〔單條〕로 하였다. 턱끈과 차양은 흑색 가죽제품이고(그림 4-32), 정면의 표장은 이화형(李花型)의 도금주제였다(그림 4-33).

그후 1900년 7월 2일에는 헌병의 상모 하반부 융질을 백색으로 하였고,[66] 19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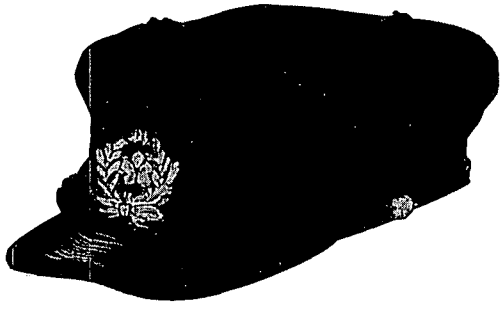

〈그림 4-31〉 1897년 이후 장교 常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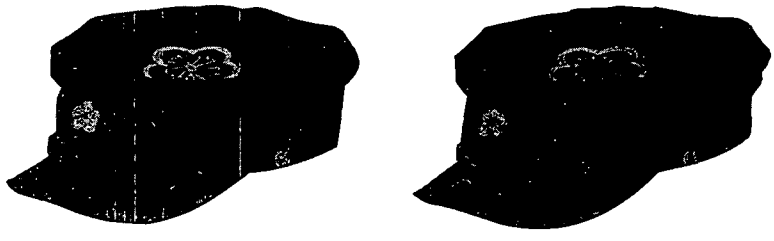

하사관　　병 졸

〈그림 4-32〉 1897년 이후 사병 常帽(『민속도록』)

66) 官報 第1624號(光武 4年 7月 12日)「陸軍將卒服裝製式 改定」(光武 4年 7月 2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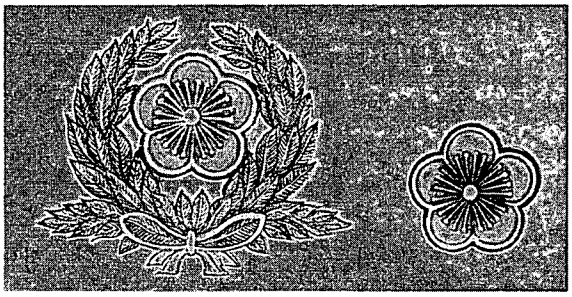

〈그림 4-33〉 상모용 표장
(『민속도록』)

9월 2일에는 군악대의 상부〔頂蓋〕와 상반부를 홍색융질(紅色絨質)로 바꾸고 입전모(立前毛 : 깃털)를 꽂았다.[67] 또한 1902년 9월 20일부터는 기병의 상부와 상반부를 홍색융질로 개정하였고,[68] 1903년 1월 21일에는 헌병의 상부와 상반부 모두를 다색융질(茶色絨質)로 바꿨다[69](그림 4-34).

1906년 5월 1일에는 상모의 형태를 평원형(平圓型)으로 개정하였는데, 품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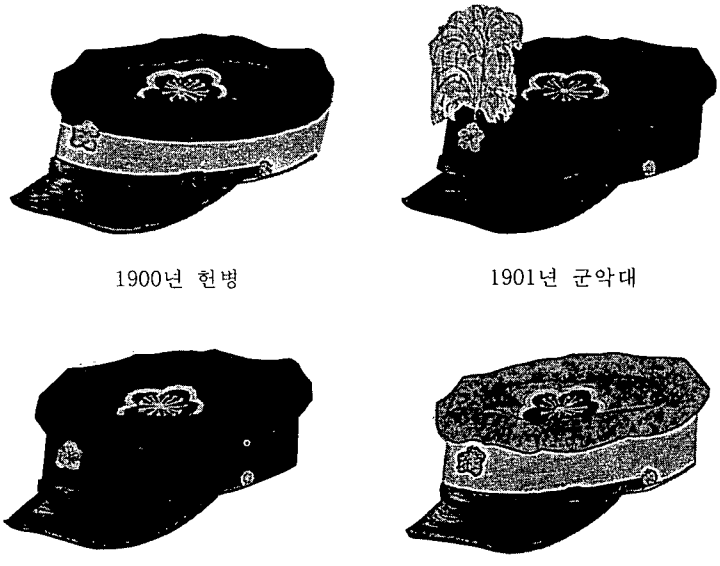

1900년 헌병 1901년 군악대

1902년 기병 1903년 헌병

〈그림 4-34〉 1900년 이후 하사졸의 常帽(『민속도록』)

67) 官報 第1981號(光武 5年 9月 2日) 正·誤
68) 官報 第2310號(光武 6年 9月 20日) 正·誤
69) 官報 第2415號(光武 7年 1月 21日) 正·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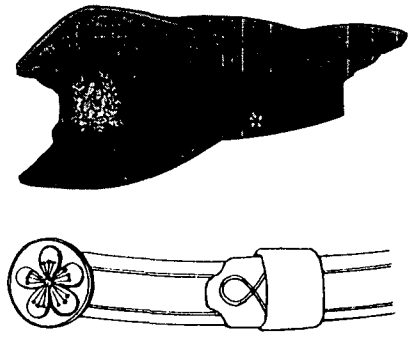

〈그림 4-35〉 1906년 이후의 常帽 및 턱끈(『민속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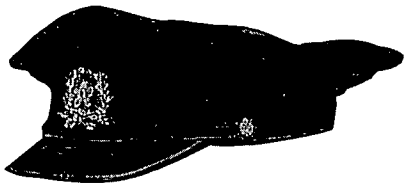

〈그림 4-36〉 1907년 이후 常帽 (『민속도록』)

상부와 상반부는 흑색융질이고, 하반부는 홍색융질이었으며, 상부와 상반부의 연결부위에는 홍색융질의 가느다란 줄띠〔紅絨細線〕를 봉착하였다(그림 4-35). 턱끈은 흑색 가죽제품으로 하여 늘이고 줄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양은 흑색 가죽이고 정면의 모표는 종전과 동일(장교 : 중앙에 이화, 좌·우측에는 무궁화 나뭇가지를 교차시킨 것. 사병 : 이화문양)하였다.[70]

1907년 10월부터는 상부와 상반부의 품질을 다갈색 융질로 개정하고, 상부와 상반부 상단의 합쳐지는 곳〔交縫處〕에는 홍색의 가느다란 줄로 돌리고 턱끈을 교정하는 단추는 이화문양의 도금제로 바꾸었으며, 기타는 종전과 같았다. 이 상모는 장·령·위관과 동 상당관 및 준사관은 동일 제식이었으며, 하사졸과 무관생도의 제식도 장교의 상모제식과 동일하되 모표의 규격을 가로·세로 4분 크기의 도금된 이화모양〔鍍金鑄製李花型〕으로 개정하였다(그림 4-36).

2) 常 衣

1897년 5월 15일 상복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예의와 상의를 구분 착용하게 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상의의 품질과 제식은 예의와 같았으나, 색상이 순흑색이었다. 의령장(衣領章)은 없고, 수장(袖章)은 검정실로 짠 것이되 형태는 예의 수장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그림 4-37).

한편 하사졸(下士卒)의 상의는 품질과 제식이 장교의 상의와 같았으나, 단추를 보이지 않게 처리한〔隱釦〕 것이 다를 뿐이고, 수장은 홍색띠를 '一'자형으로 하면

70) 官報 第3377號(光武 10年 2月 15日) 正·誤

서, 하사관은 5분 넓이의 표지 1줄씩을 붙이고 그 위쪽(上端)으로 2분 넓이의 표지를 정교는 3줄, 부교는 2줄, 참교는 1줄씩을 각각 붙였으며, 병졸(兵卒)은 2분 넓이의 표지만을 상등병은 3줄, 일등병은 2줄, 이등병은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그림 4-38).

1900년 7월 2일에는 품질은 예의와 같은 흑색융질이되 제식은 세운 깃의 7개 단추가 달린 긴 저고리(밑단이



〈그림 4-37〉 1897년 이후의 常衣(『육군박물관』)



〈그림 4-38〉 1897년 이후 하사졸 袖章(『민속도록』)

궁둥이까지 닿음)로 바뀌었다. 7개의 단추는 무궁화 무늬가 새겨진 도금제로서 깃의 하단에서 합임부(合衽部)를 연하여 밑으로 부착하였으며, 의령의 상·하단에는 붉은색 띠〔紅絲線〕를 붙이고 깃의 앞섶부위〔襟部〕에는 붉은색 융띠〔紅色絨緣〕로 둘렀다. 의령장은 깃의 앞면 좌·우측에 은색실로 수놓은 별〔銀絲繡星〕을 장관급은 각 3개, 영관급은 각 2개, 위관급은 각 1개씩을 부착하였다. 수장은 흑사직(黑絲織)으로 하고, 의령과 수구의 홍색융연과 단추는 없앴다. 그리고 뒷면 하단의 후거

(後裾)에는 분할처 양방에 부착하였던 홍색융직(1897년부터 사용)은 흑색융으로 바꾸고, 기타는 종전과 같이 하였는데, 예의의 예에 따라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쪽은 넓게 한 다음, 양편에는 길이로 상·중·하에 도금된 단추를 부착하였다(그림 4-39). 또한 헌병은 품질만을 다색융(茶色絨)으로 바꾸었다.[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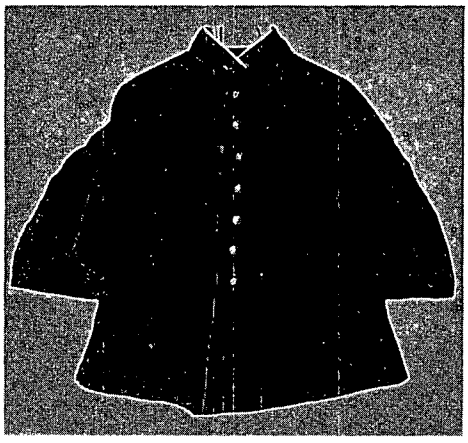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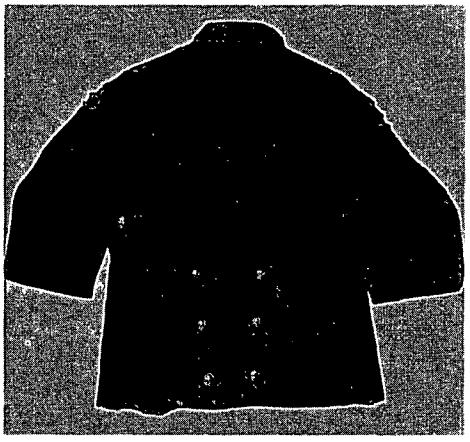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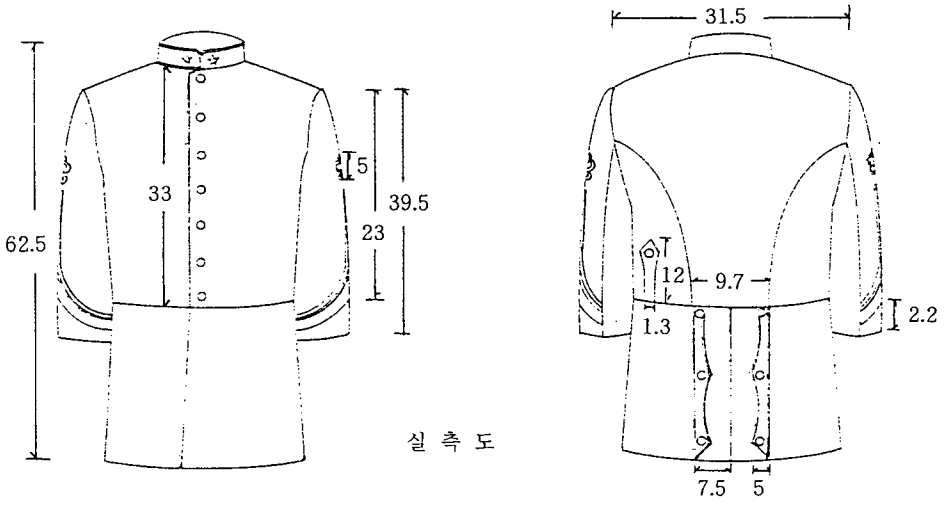

〈그림 4-39〉 1900년 이후 常衣(궁중복식)

71) 官報 第1624號(光武 4年 7月 12日)「陸軍將卒服裝製式」第3大禮衣條(光武 4年 7月 2日)

1901년 9월 2일부터는 헌병의 상의 품질도 다갈색 융질로 바꾸었고,[72] 1902년 9월 20일에는 기병의 품질도 붉은색(紅色)으로 바꾸었다.[73]

그후 1907년 10월 1일부터는 품질을 다갈색(茶褐色)으로 개정하였다. 앞면에는 의령에서 밑으로 합치는 부위〔合衽處〕를 따라 문양이 없는 5개의 도금제 원형단추〔鍍金製圓形釦子〕를 달고, 흉부와 복부의 좌·우측에는 속붙임주머니(隱囊)를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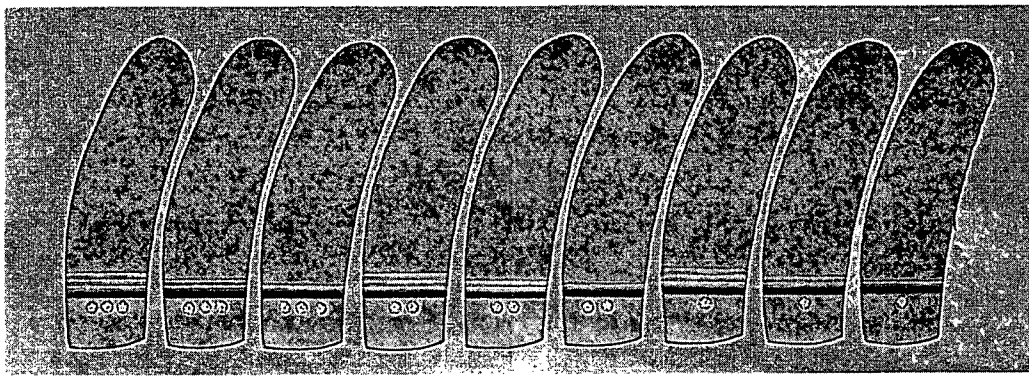

대장 부장 참장 정령 부령 참령 정위 부위 참위

장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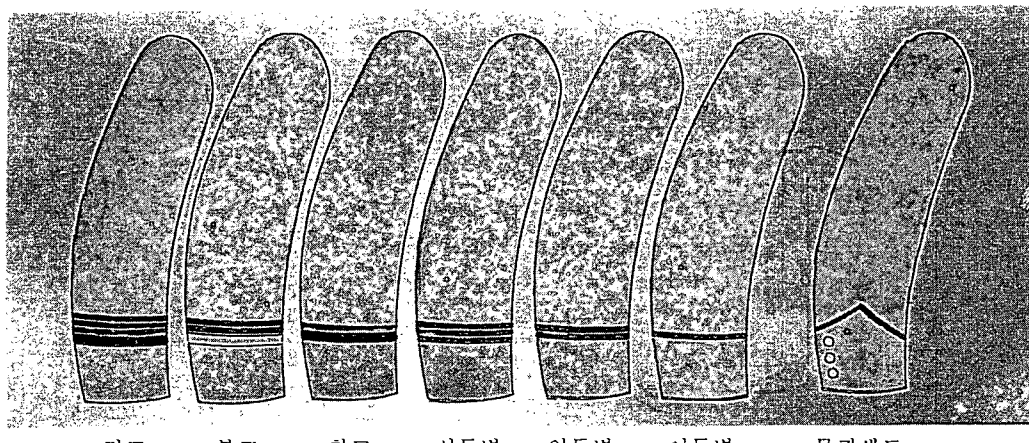

정교 부교 참교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무관생도

하 사 졸

〈그림 4-40〉 1907년 이후 장교 및 하사졸·무관생도 袖章(『민속도록』)

72) 官報 第1981號(光武 5年 9月 2日) 正·誤
73) 官報 第2310號(光武 6年 9月 20日) 正·誤

하였는데 흉부 좌·우측 주머니 뚜껑에는 도금된 원형 소형단추〔鍍金製圓形小釦〕 1개씩을 부착하였다. 수장은 소맷부리 바깥쪽 약 2촌(寸) 상단에 도금된 이화무늬 단추〔鍍金製李花釦〕를 횡으로 장관급과 상당관은 3개, 영관급과 상당관은 2개, 위관급과 상당관은 각 1개씩을 부착하고, 그 위에 장관, 영·위관 및 상당관은 각 병과 정색의 융세선(絨細線) 1줄씩을 붙이고, 다시 그 상단에 다갈색 실로 짠 띠〔茶褐色絲織線〕로 대장·정령·정위는 3줄, 부장·부령·부위는 2줄, 참장·참령·참위는 1줄씩을 '一'자형〔横〕으로 부착하였다(그림 4-40).

또한 하사졸의 수장은 소맷부리 표면〔袖端前面〕 2촌 상단에 병과를 상징하는 각 병과의 정색융세선을 가로로 부착하고, 그 위에 하사관을 표시하는 3분 넓이의 가느다란 띠를 정교는 3줄, 부교는 2줄, 참교는 1줄씩을 부착하였으며, 병졸은 계급을 표시하는 1분 넓이의 가느다란 띠만을 상등병은 3줄, 일등병은 2줄, 이등병은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그림 4-40).

한편 무관생도의 상복도 1907년 10월 1일 처음으로 규제되었는데, 품질과 제식 모두가 장교와 동일하였으나, 중앙 합임처의 단추는 문양이 없는 붉은 구리제품이었고, 수장은 소맷부리 바깥부위 약 2촌 상단에 'ㅅ'자형의 붉은색의 가느다란 융직선〔紅色絨細線〕을 붙였다(그림 4-40).

그리고 하의(夏衣)는 품질이 다갈색세루(茶褐色細縷) 혹은 목사직(木絲織)이며, 제식은 동복과 같았으나 영·위관 및 동 상당관과 하사졸의 수장은 수단(袖端)에 병과 정색의 융선으로 'ㅅ'자형을 부착하였고, 무관생도는 수단에서 약 2촌 상단에



〈그림 4-41〉 夏常衣(『자수박물관』)

다갈색의 가느다란 띠의 'ㅅ'자형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1906년 5월 22일의 복장규칙 제8조에서 '하의(夏衣)와 하고(夏袴)는 백색 혹은 다갈색·토색(土色)을 병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토색(카키색) 하의(夏衣)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4-41).

3) 常 袴

1907년 10월 1일 이전까지는 상고(常袴)에 관한 규제가 없어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1907년 10월 1일 최초로 규제된 상고는 품질이 다갈색 융질이고, 길이는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복부에서 종하(踵下 : 발뒤꿈치)에 이르고, 바지의 좌·우측에 부착된 봉장은 장교와 동 상당관은 붉은색 융직의 세선〔紅色絨細線〕 1줄을 붙였다(그림 4-42). 그러나 승마를 본분으로 하는 자는 편의에 따라 단고(품질과 봉장은 장고와 같게 함)를 제조 착용하였으며, 하사관과 병졸 및 무관생도의 상고 제식과 봉장도 장교와 같았다.

또한 하고(夏袴)의 품질은 상의(上衣)와 같은 다갈색 세루(細縷) 또는 목사직(木絲織)으로 하고, 제식은 동고(冬袴)와 같게 하였으며, 사병은 봉장을 부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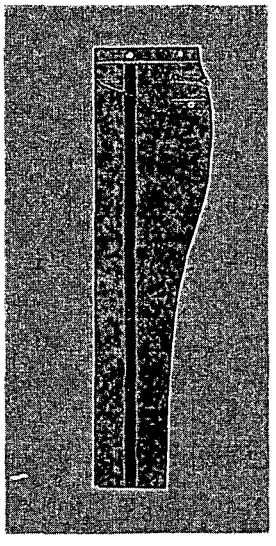

〈그림 4-42〉 1907년 常袴
(『민속도록』)

4) 軍 靴

상복(常服)에는 단화와 장화를 착용하였으며, 그 제식은 예복에 착용하는 군화의 제식과 같았다. 단화는 군장(軍裝)차림에 있어서는 모든 장교와 하사관 및 병졸이 착용하나, 승마를 본분으로 하는 장교는 반드시 단고(短袴)에 장화를 착용하였고, 상장차림에는 단화를 신거나 장화를 신거나 모두 각자의 편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 外 套

외투는 비나 눈이 올 때〔雨雪時〕에 비를 가리고 추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착용하였는데, 최초에는 일반 외투만을 착용하다가 1907년 10월 1일부터 견폐(肩蔽 : 망토 혹은 케이프)가 제정되면서 두 종류를 공용하였다. 이들 외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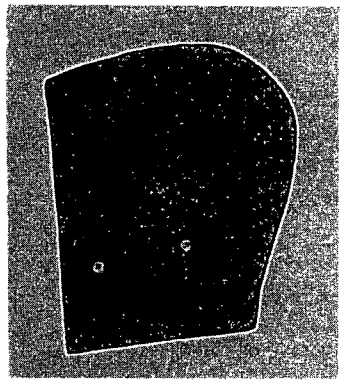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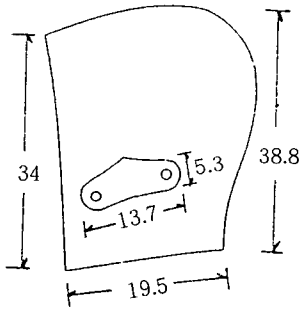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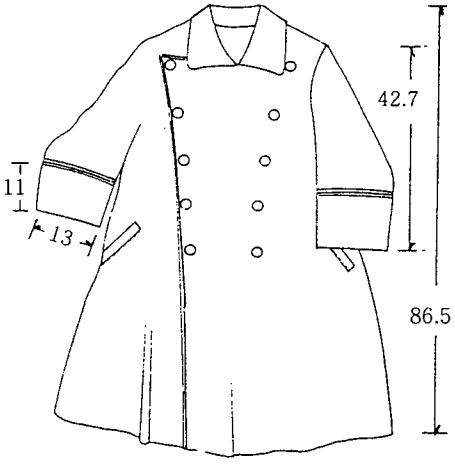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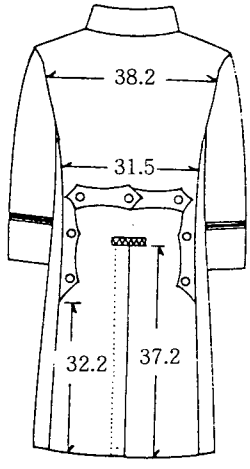

〈그림 4-43〉 外套 및 雨履(『궁중복식』)

어떠한 복장차림에도 착용할 수 있되 실외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1) 一般外套

시제 당시에는 품질이 흑색융질이고, 제식은 접는 형의 깃(Soutien Collar)에 2줄 12개 단추를 부착한 외투로써 단추는 표지가 없는 은색 단추를 달았다(그림 4-43).

수장은 소맷부리〔袖口〕에 관등을 표시하는 은색별을 장관급은 3개, 영관급은 2개, 위관급은 1개씩을 각각 부착하고, 그 위쪽에 붉은색 띠〔赤聳出線〕를 부착하였으며, 장관급에 한해서는 금색선 1줄을 더하였다(그림 4-44).

1897년 5월 15일부터는 품질과 제식은 종전과 같았으나, 수장의 제식만을 개정하였는데 관등을 표시하는 은색별과 그 위쪽에 부착한 붉은색 띠는 그대로 두고 장관급만이 부착하던 금색 편직 띠〔金線兩股織〕를 장관급은 3줄, 영관급은 2줄, 위관급은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그림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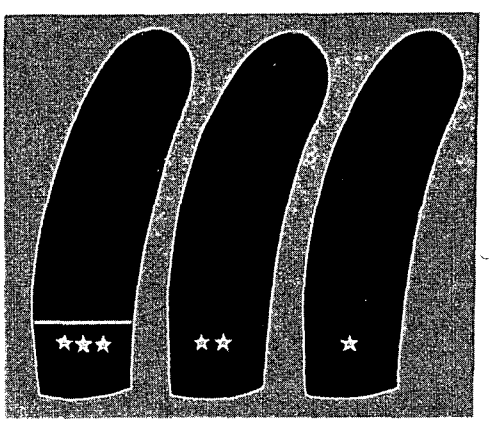

〈그림 4-44〉 시제 당시의 袖章(『민속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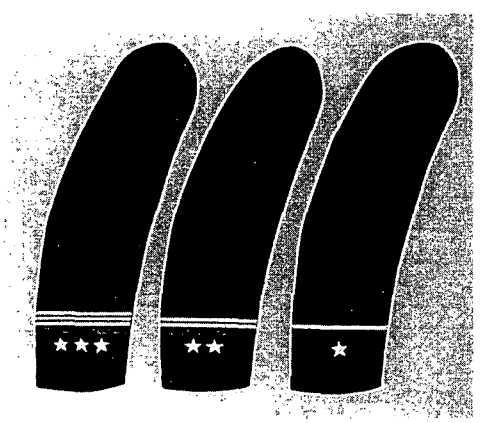

〈그림 4-45〉 1897년의 袖章(『민속도록』)

그후 1907년 10월 1일부터는 품질을 다갈색 융질(茶褐色絨質)로 개정하였다. 길이는 윗부분〔頂部〕에서 무릎밑〔膝下〕에 이르고, 앞면〔胸部〕은 교임(交衽)식으로 하고, 좌·우측에는 도금된 원형단추 5개씩을 부착하였다. 뒷면은 볼기 밑으로 곧게 가르고〔直割〕, 뿔단추 3개를 보이지 않게 달고〔隱附〕 곧게 가름한 위쪽 허리부위에는 같은 색깔의 융질로 허리품을 조정할 수 있는 '一'자형 허리띠를 가로로 부착〔橫附〕하였는데, 양쪽 끝은 좌·우측 솔기에 넣어 봉착하고, 여기에 도금된 원형단

추 4개를 가로로 나란히 부착하였다(그림 4-46). 또한 수장은 상의(常衣)의 수장 형식과 같았으나 계급을 표시하는 융선(絨線)만이 없는 것이었다(그림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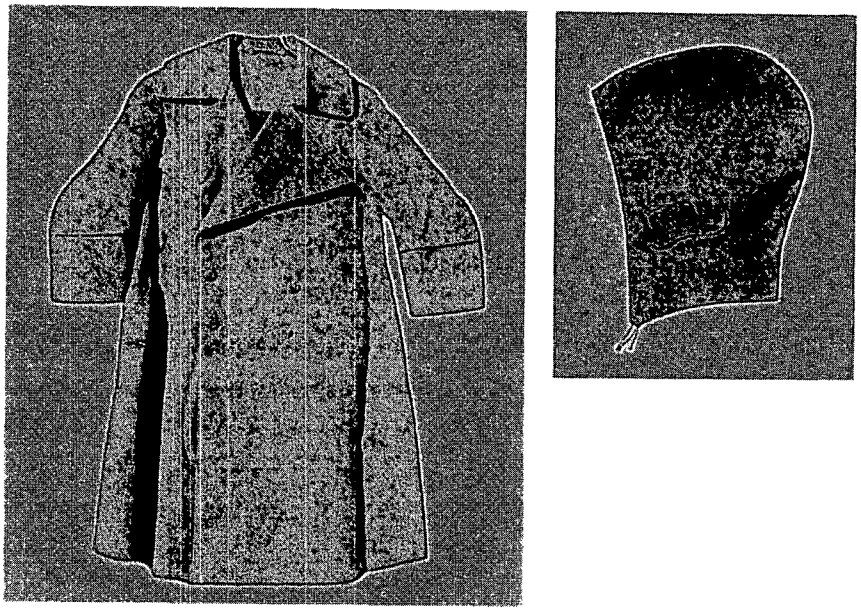

〈그림 4-46〉 1907년 이후의 外套 및 雨履(『궁중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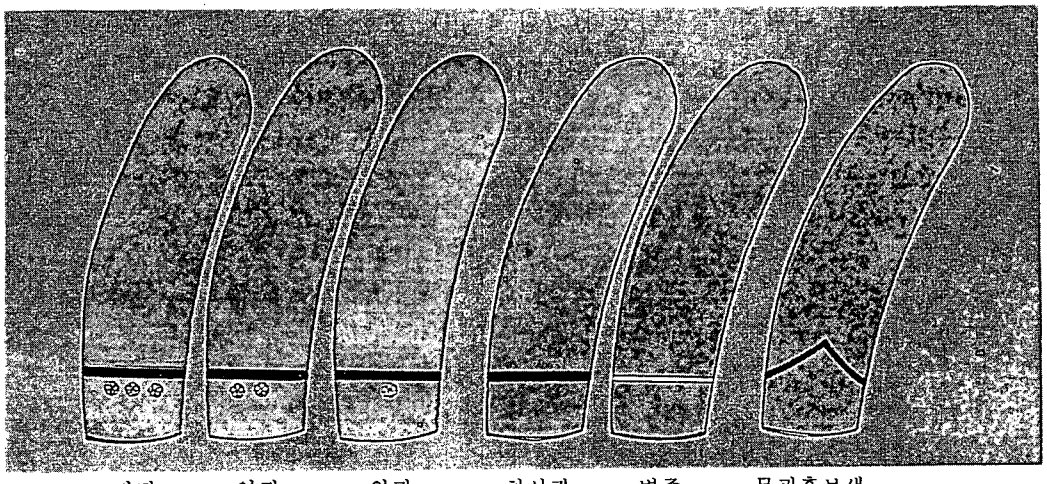

〈그림 4-47〉 1907년 장병 외투 袖章(『민속도록』)

준사관의 외투는 1907년 10월 1일 처음으로 규제되었는데, 품질과 제식은 장교와 동일하였으나, 수장을 병과의 정색융세선(定色絨細線)만으로 표시한 것이 달랐다[74](그림 4-47).

한편, 하사졸의 외투제식은 1907년 10월 1일 처음 규제되었는데, 그 이전의 제식은 규제가 없어 상세히 알 수 없다. 새로 규제된 외투의 품질과 제식은 장교와 동일하였으나 수장만 달리하였다. 앞면에는 적동제(赤銅製) 원형단추를 좌·우측에 각 5개씩을 부착하였고, 수장은 소맷부리에서 약 2촌 상단에 병과 정색의 융직세선을 하사관은 3분 넓이 1줄, 병졸은 2분 넓이 1줄씩을 '一'자형으로 붙였다(그림 4-47).

또한 무관생도의 외투도 품질과 제식은 같이 하되, 수장만을 상의(常衣)의 수장과 같은 병과 정색의 'ㅅ'자형 띠를 부착하였다[75](그림 4-47).

2) 肩 蔽(케이프)

견폐는 1907년 10월 1일 처음 규제되었는데, 품질과 색상은 다갈색 융질이고 제

74) 官報 第3889號(隆熙 元年 10月 5日)「陸軍服裝製式」第16條 勅令 第26號(隆熙 元年 10月 1日)

75) 李康七, 1972「舊韓末陸軍服裝製式에 對하여」『월간문화재』2.

식은 접는 형의 깃에 소매가 없고, 길이는 어깨에서 슬하(膝下 : 무릎밑)에 이르는 형태로써, 앞면은 중앙에서 할개(割開)하여 뿔단추를 보이지 않게 안쪽에 부착하였다(그림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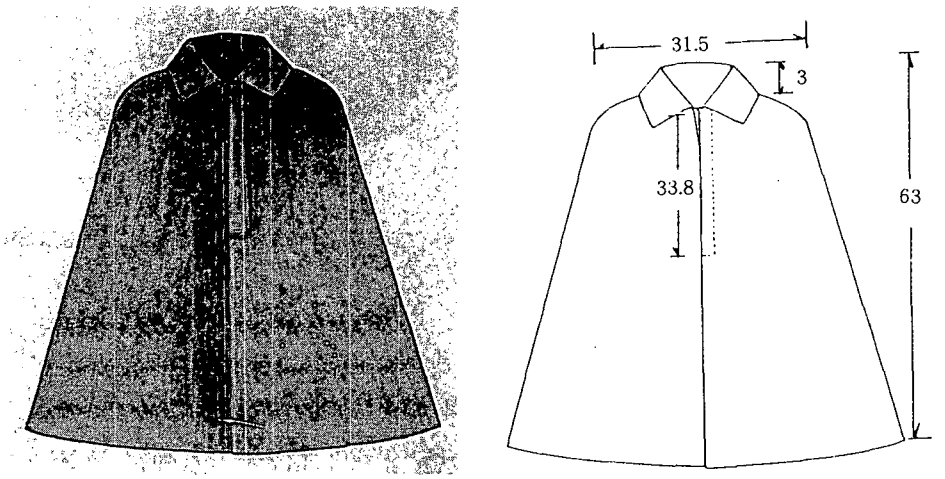

〈그림 4-48〉 1907년 이후 肩蔽(궁중복식)

라) 肩　章(계급장)

견장이란 제복의 어깨 위에 부착하여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標章)으로서 대례견장(大禮肩章)과 소례견장(小禮肩章)의 2종이 있었다. 최초 시제 당시에는 대·소례견장의 구분이 없었으나, 1897년에 예의(禮衣)와 상의(常衣)가 따로 제정됨에 따라 예의에 부착하는 대례견장과 상의에 부착하는 소례견장으로 구분하였다.

1) 大禮肩章

최초 시제 당시에 제정된 견장은 바탕을 장관급은 탄금연은(組金緣銀 : 금실로 직조된 판 위의 가장자리에 은사모루로 두른 판)이고, 영관과 위관은 탄금(組金 : 금실로 직조된 넓은 판)으로 하였으며, 그 위에 계급을 표시하는 은제성장(銀製星章 : 은으로 제작된 별 표장)을 대장·정령·정위는 3개, 부장·부령·부위는 2개, 참장·참령·참위는 1개씩을 각각 부착하였다(그림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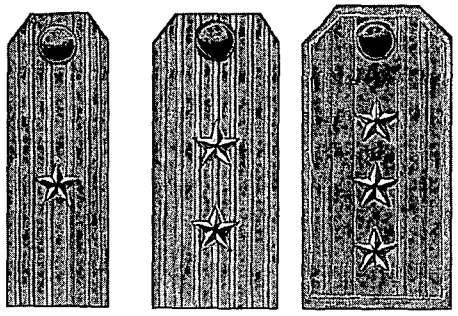

〈그림 4-49〉 1895년 大禮肩章(『민속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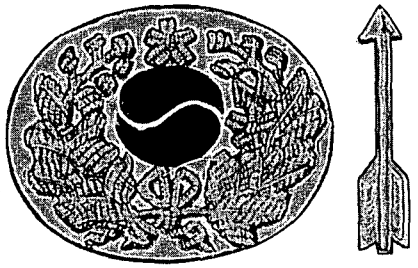

〈그림 4-50〉 像生槿花葉兩技·銀絲繡箭

그후 1897년 5월 15일 이후에는 바탕의 품질을 금사광직(金絲廣織 : 금실로 직조된 넓은 판)으로 하고, 형태는 상두(上頭 : 윗머리)는 장방형(長方形 : 직사각형), 하두(下頭 : 아래쪽 머리)는 타원형인 것을 합성한 삽자형(鍤字形 : 가래삽 모양)으로 하여 윗머리 부위에는 도금주제(鍍金鑄製 : 주물에 도금한) 이화문양 단추 1개를 부착한 모양이었으며, 여기에 장관급은 하두에 금사망직하수(金絲網織下垂 : 금사로 망사식으로 둥글게 짠 술장식)를 부착하였으나, 영관급 이하에는 부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등과 계급의 표시로 장관급은 아래쪽의 타원형 중앙부에 금사로 수놓은 상생근화엽양지(像生槿花葉兩枝 : 마치 살아 있는 것과 같은 무궁화잎과 2개의 가지)를 교차 결합하고, 그 중앙에 홍·흑색 태극을 수식한 표장(그림 4-50)을 부착한 다음, 그 좌·우측에 은사수성(銀絲繡星 : 은색실로 수놓은 별)을 대장은 각 3개, 부장은 각 2개, 참장은 각 1개씩을 부착하였으며, 영관은 근화지엽(槿花枝葉 : 무궁화 나뭇가지와 잎)과 태극은 장관급과 같게 하고, 그 좌·우에 은사수전을 정령은 각 3개, 부령은 각 2개, 참령은 각 1개씩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위관은 근화지엽 대신 태극으로 하고, 그 좌·우측에 은사수전(銀絲繡箭 : 은실로 수놓은 화살)(그림 4-50)을 정위는 각 3개, 부위는 각 2개, 참위는 각 1개씩을 부착하였다(그림 4-51).

1898년 12월 30일부터는 영관급도 장관급과 같이 아래쪽 타원형 부위〔下頭〕에 금선망직하수(금사 술장식)를 부착하였고, 관등을 표시하는 하두 타원형에 부착한 상생근화엽양지 표장 좌·우측에 은사수전을 정령은 각 3개, 부령은 각 2개, 참령은 각 1개씩을 부착하고, 위관은 기엽표장 대신 홍색과 흑색 태극표장을 붙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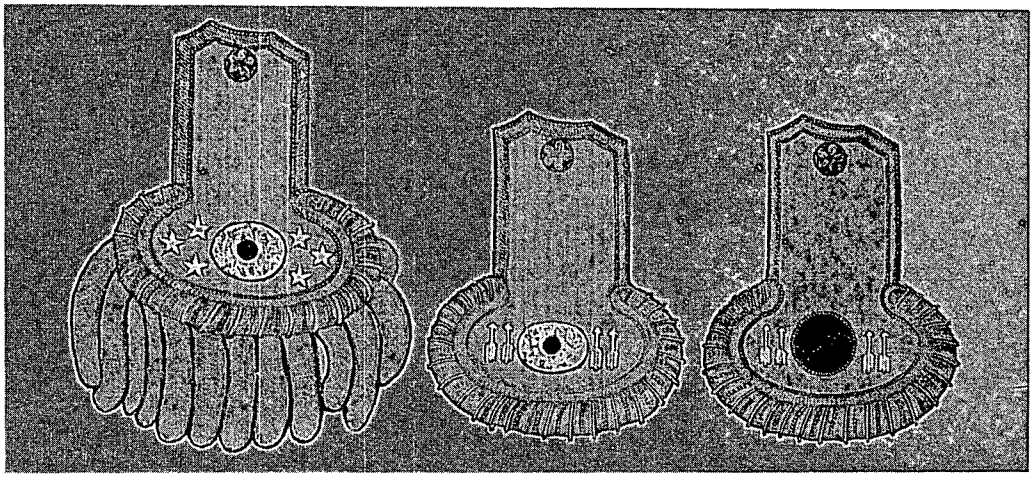

장관(대장)　　영관(부령)　　위관(부위)

〈그림 4-51〉 1897년 이후 大禮肩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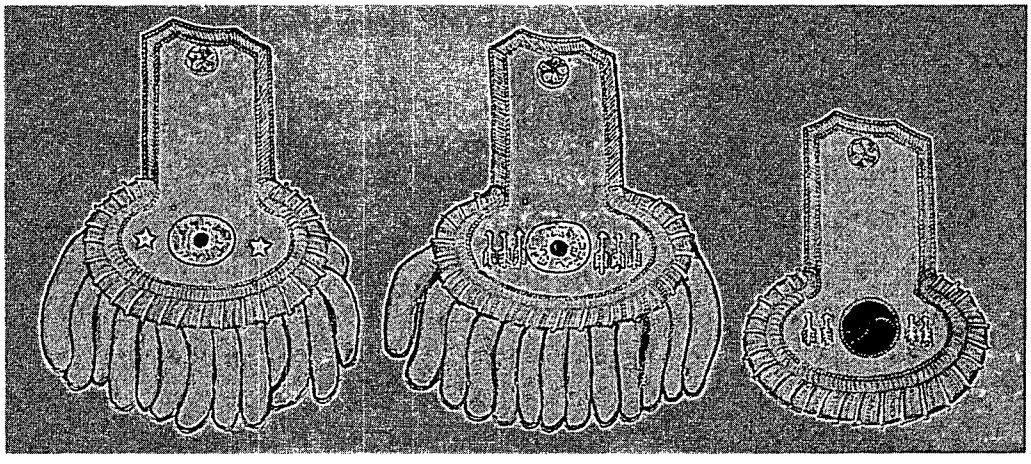

장관(참장)　　영관(정령)　　위관(부위)

〈그림 4-52〉 1898년 이후 大禮肩章

그 좌·우측에 계급을 표시하는 은사수전(銀絲繡箭)을 정위는 3개씩을, 부위는 2개씩을, 참위는 1개씩을 각각 부착하였다[76](그림 4-52).

76) 官報 第1147號(光武 3年 1月 2日)「陸軍將卒服裝製式」第6大禮肩章條(光武 2年 12月 30日)

1900년 7월 2일부터는 장관급의 계급표지인 은사수성을 금사수성으로 바꾸고, 영관급의 은사수전(은색 화살표장)을 은사수성(은색별)으로, 또한 위관급의 은사수전(은색 화살표장)도 적사수성(赤絲繡星 : 붉은색으로 수식된 별)으로 각각 개정하였다[77](그림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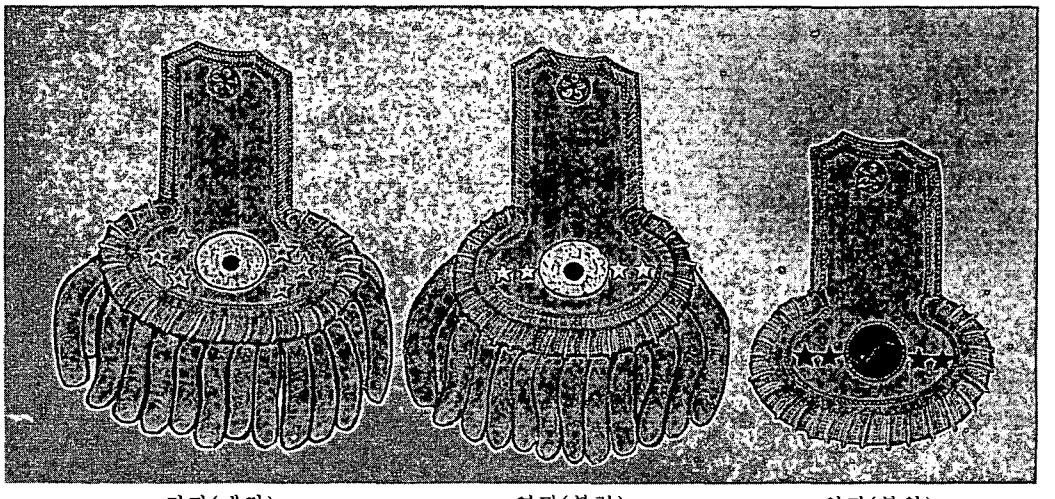

장관(대장) 영관(부령) 위관(부위)

〈그림 4-53〉 1900년 이후 大禮肩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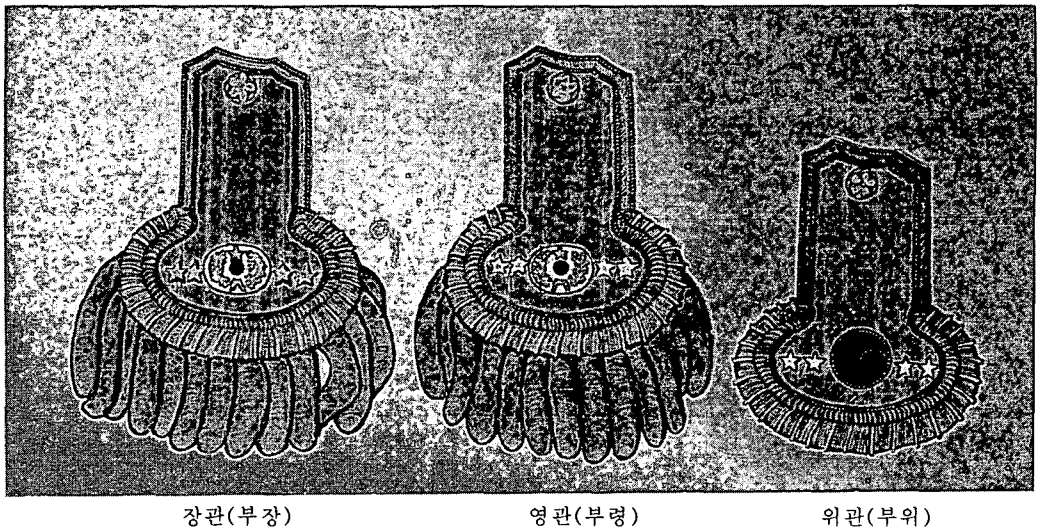

장관(부장) 영관(부령) 위관(부위)

〈그림 4-54〉 1901년 이후 大禮肩章

77) 官報 第1624號(光武 4年 7月 12日)「陸軍將卒服裝製式」第6大禮肩章條(光武 4年 7月 2日)

1901년 2월 19일에는 다시 위관급의 적사수성(붉은색 별 표장)을 은사수성(銀絲繡星 : 은색실로 수놓은 별)으로 개정하였다[78](그림 4-54).

2) 小禮肩章

소례견장은 1897년 5월 15일 새로이 제정되었으나 하사졸은 종전과 같은 단일 제식을 계속 부착하였다.

장교의 소례견장은 장방형(長方形 : 직사각형) 바탕 위에 붉은색 융질을 붙이고, 그 주위인 가장자리에는 금사승선(金絲繩線 : 금사몰선)을 사선으로 수식하고, 그 표면 위에 관등(상생근화엽양지 및 태극표지)과 계급(별 및 화살표지)을 표시하는 표장을 대례견장의 표지 형식으로 부착하였다(그림 4-55). 이 소례견장은 최초 제정된 이후 외형의 변경 없이 관등과 계급표지만이 대례견장과 함께 변경되었다.

한편, 하사관 견장은 바탕의 품질이 붉은색 융질〔紅色絨質〕이고, 형태는 상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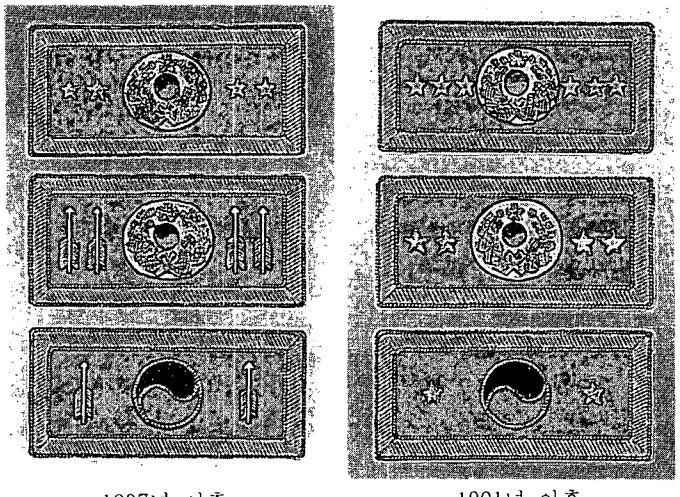

1897년 이후　　1901년 이후

〈그림 4-55〉 장교 小禮肩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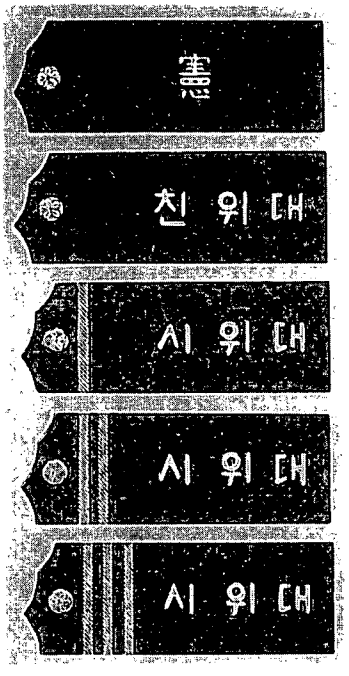

〈그림 4-56〉 하사졸 肩章

78) 官報 第1814號(光武 5年 2月 19日) 正·誤

각(반6각형)인 장방형(직사각형)이다. 바탕의 상단에는 무궁화문양이 양각되고 도금된 단추를 부착하고, 그 밑으로 계급을 표시하는 황색융선을 정교는 3줄, 부교는 2줄, 참교는 1줄씩을 부착하였고, 황색융선 밑으로는 부대의 성격을 나타내는 대호(隊號)를 국문(國文 : 한글)으로 표시하되 황색융질로 하였다(그림 4-56).

또한 병졸의 견장도 하사관과 동일한 형식이었으나, 계급을 표시하는 황색융선은 부착하지 않았다(그림 4-56). 그리고 1903년 7월 19일부터는 헌병의 견장 바탕에는 '憲'자를 한자(漢字)로 표시하였다[79](그림 4-56).

마) 裝飾品 및 携帶品

1) 飾 緖(견식줄)

식서는 장관급 장교와 참모장교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패용하였다. 시제 당시부터 품질은 금사선제(金絲線製)와 백다색(白茶色)의 견사선제(絹絲線製 : 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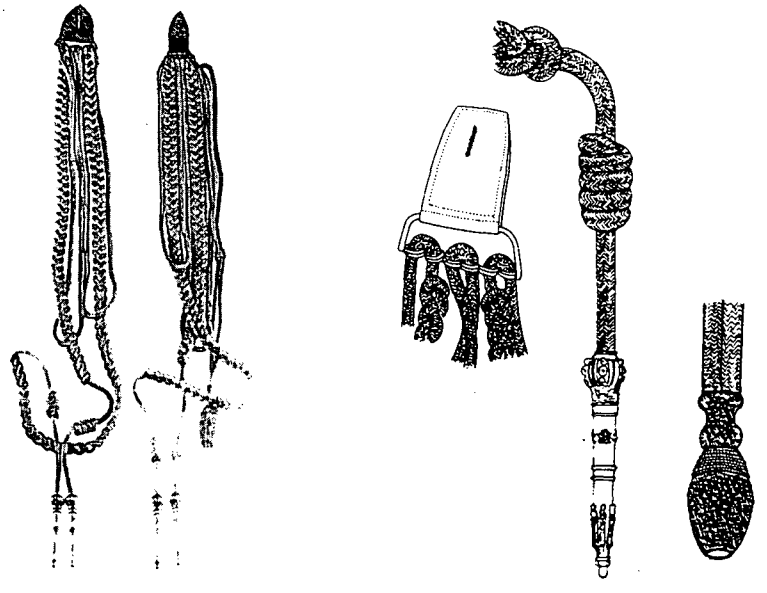

〈그림 4-57〉 飾 緖(『육군박물관』)

79) 官報 第2674號(光武 7年 11月 19日) 正·誤

실로 짠 줄)의 2종류를 패용하였으며, 식서의 매듭줄 끝 2곳에는 무궁화〔槿花〕와 무궁화나뭇잎(槿葉)이 양각된 금구(金具 : 장식용 물미)를 부착하였는데 여기에 연필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57).

금사선제는 모든 복장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백다색 견사제는 상장(常裝)과 군장(軍裝)에 패용하였다.

그런데 복장규칙에는 상장과 군장에 패용하는 백다색 견사제를 1897년 5월 15일에는 담황색(淡黃色 : 엷은 황색) 견사제, 1906년 5월 22일에는 황색 견사제로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황색계통의 견사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2) 飾　帶(예식띠)

식대는 의식(儀式)이나 예식(禮式) 때에 예복의 허리부위에 착용하는 띠〔腰帶〕의 일종으로, 시제 당시에는 식대의 품질이 붉은색 견제〔赤色絹製〕이고, 하수(下垂 : 아래로 드리우는 수 장식)는 장관(將官)용이 은색, 영관용은 자주색, 위관용은 붉은색이었다.

1897년 5월 15일부터는 품질을 종전과 같은 적사광직(赤絲廣織 : 붉은색 실로 직조된 넓은 띠)으로 하되 하수를 장관급은 은사수직(銀絲繡織), 영관급은 청사인(靑絲紉 : 청실로 꼬은 줄), 위관은 황사인(黃絲紉)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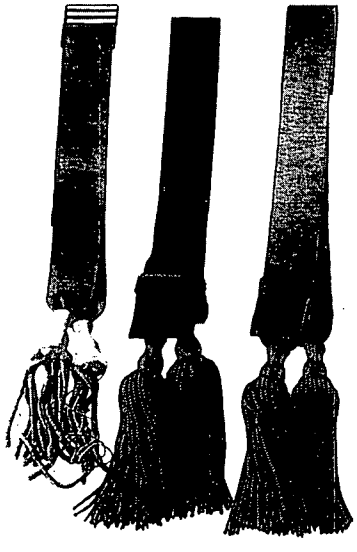

〈그림 4-58〉 飾　帶(『육군박물관』)

그후 1907년 10월 1일부터는 띠〔帶〕의 품질을 1촌 넓이의 적사광직(赤絲廣織)으로 하고, 하수는 장관급이 금사닌, 영관급이 자청사닌〔紫靑絲〕, 위관급은 종전과 같은 황사닌으로 하였으며, 양단결합처(兩端結合處)에는 도금된 합해추(合解樞 : 혁대 장식)를 부착하였다(그림 4-58).

3) 懸　章

현장은 고등관아(高等官衙)의 부관과 전령사(傳令使), 그리고 주번근무자와 위수근무자 등이 임무 수행중임을 나타내는 어깨띠로서 시제 당시부터 패용규칙만이 규제되었다가, 실제

제식은 1907년 10월 1일에 처음 규제되었다.

품질은 1촌 넓이의 견사광직(絹絲廣織)이고, 끝단에는 같은 색의 꼬임줄〔紐〕을 하수하였는데 고등관아 부관과 전령사는 황색이고, 주번과 위수근무자는 붉은색이었다.

패용요령은 우측 어깨에서 좌측 겨드랑이로 비스듬히 패용하였다(그림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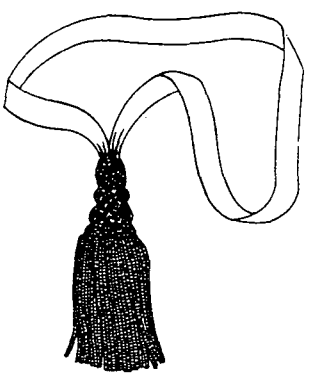

〈그림 4-59〉 懸 章(『민속도록』)

4) 刀 및 刀帶

시제 이후 도는 전투에 참가하는 장교가 휴대하고, 검은 비전열장교(非戰列將校)가 휴대하여 오다가, 1906년 5월 22일부터 도는 장관과 각 병과의 장교 및 군악장이 휴대하고, 검은 장관과 사계(司計)·군사(軍司)·군의·수의부의 영·위관과 그의 상당관이 휴대하였다.

시제 당시 도의 제식은 도병(刀柄 : 칼자루)의 금속부위에 장식문양으로 이엽(李葉 : 자두나뭇잎)을 장관급은 전 부위에 양각하고, 영관급은 자두의 머리부위에만 같은 모양의 조물을 새겨 넣었다.

그후 1897년 5월 15일에는 칼자루의 자두나뭇잎 문양을 도금한 근화엽(槿花葉 : 무궁화나뭇잎)으로 바꾸고, 앞·뒷면의 정중앙 부위에는 태극문양을 장관급은 전체, 영관급은 반분, 위관급은 1/3 부위에만 조각하여 넣었다(그림 4-60).

그리고 도대(刀帶 : 칼을 휴대하는 띠)는 1897년 5월 15일부터 제식이 규제되었는데 장관급은 금사광직(金絲廣織)이고, 영관과 위관급은 흑혁제(黑革製 : 검정색 가죽제품)였다.

그후 1907년 10월 1일부터는 관등의 구별 없이 모든 장교용을 검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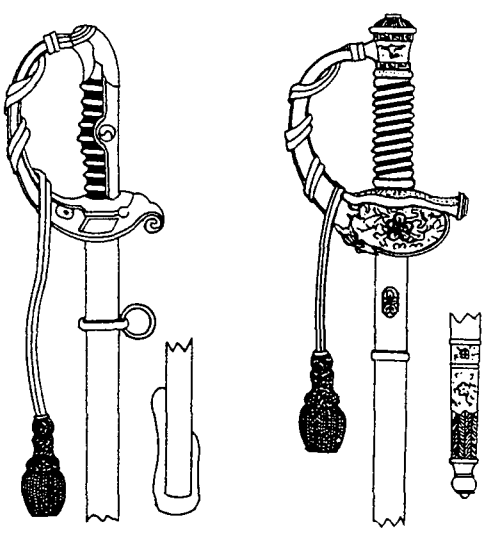

도 검

〈그림 4-60〉 刀·劍

가죽제품으로 통일하면서 뒷면〔裏面〕을 장관급과 영관급은 붉은색, 위관용은 청색으로 하였다(그림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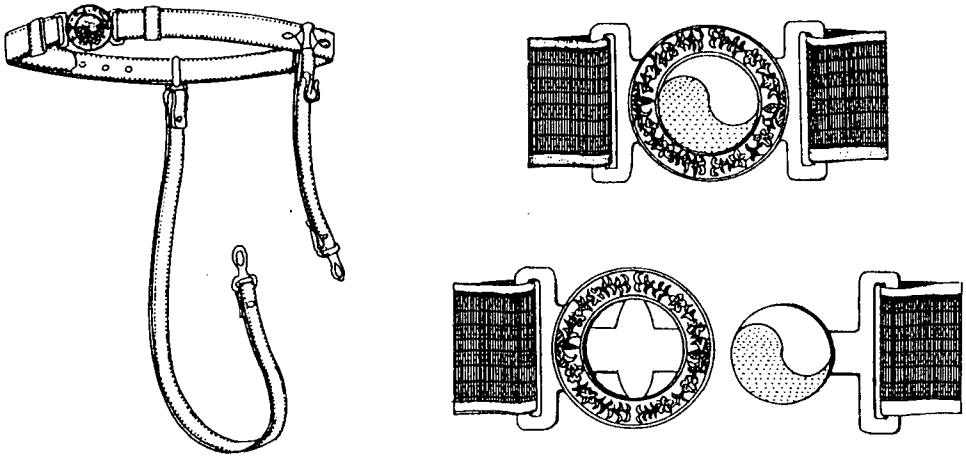

도 대 잠금장치

〈그림 4-61〉 刀帶 및 잠금장치

5) 正緖 및 刀緖

정서와 도서는 도(刀)와 검(劍)을 휴대할 때 칼에 장착(裝着)하는 장식물을 말하며, 정서는 정장(正裝)과 예장(禮裝)·대예장(大禮裝)·반예장(半禮裝)차림을 할 때에 장착하고, 도서는 상장(常裝)과 군장(軍裝)차림을 할 때에 장착하였다.

시제 당시에는 정서와 도서를 같은 형태의 흑견제(黑絹製 : 흑색 명주실로 제작)로 하였으나, 도서는 흑혁제(黑革製 : 흑색 가죽제품)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97년 5월 15일부터는 도서의 품질을 장관과 영관용을 금사원직(金絲圓織 : 금색실로 제작된 둥근 끈)으로 하고, 위관급 이하용은 흑색원직(黑色圓織)으로 하였다.

그후 1907년 10월 1일부터는 도서를 장관과 영관용은 금사직선(金絲織線 : 금색실로 제작된 끈)으로 하고, 그 끝머리에 금색실로 제작된 계란모양의 장식을 부착하였으며, 위관급 이하는 흑사직선으로 하되 끝단 장식 등 다른 모든 것은 장관과 영관용과 같았다(그림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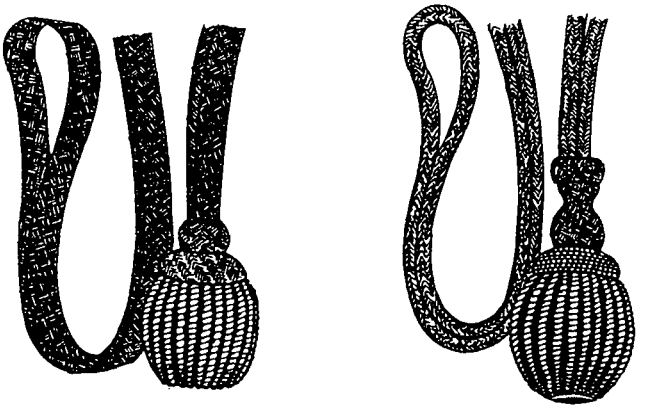

도 서 정 서

〈그림 4-62〉 1907년 이후 刀緖·正緖

(2) 特定要員服裝

가) 近衛騎兵隊 下士 이하 禮服[80]

1) 禮 帽

품질은 흑색융질〔黑絨質〕이고, 형태는 상첨중원(上尖中圓 : 위는 뾰족하고 중간은 둥근 모양)으로 계란반절형(鷄卵半折型)과 같게 하고, 상첨의 접힌 밑부위〔下端部〕 앞·뒤·좌·우측에는 황사직세선(黃絲織細線 : 황색실로 직조한 가느다란 끈) 1줄씩을 직접 부착하고, 위쪽 뾰족한 곳〔上尖處〕에는 같은 종류의 가느다란 줄〔細線〕로 이화(李花)를 새겨 차례로 돌려 붙였다.

그리고 그 하단부 밑단에는 같은 색의 횡선(橫線) 1줄을 두루 붙이고, 약 7촌 길이의 백준모(白駿毛 : 백색말초)를 위쪽 뾰족한 곳에서 아래로 덮어 드리우고, 그 위에 붉은색 나무로 만든 새알형〔紅木鳥卵型〕 1개를 화예〔花蕊 : 꽃수술〕 모양으로 세우고, 백금사편직(白金絲片織) 2줄을 앞면 중간부위에서 가로로 교차되게 붙이고〔交叉橫附〕 좌·우측 부착위치에는 가로 세로 1.5분 크기의 도금된 이화무늬단추〔鍍金鑄製李花釦子〕 1개씩을 정착(釘着 : 박아 붙임)하였다.

또한 앞과 뒷면에는 흑색가죽으로 제작된 반달형의 차양〔黑革製半月型前庇〕 1개

80) 官報 第3999號(隆熙 2年 2月 17日) ; 勅令 第9號(隆熙 2年 2月 14日)

씩을 부착하였고, 턱끈은 가느다란 흑색가죽으로 제작된 것이었고, 모표〔表章〕로는 가로 세로 3분 크기의 도금된 이화형 표지를 부착하였다.

2) 禮 衣

예의의 품질은 붉은색 융질이고, 길이는 체형의 대·소에 따라 위는 정부(頂部)에서 퇴골(腿骨 : 다리)까지 닿았다. 제식은 세운 깃의 2줄 14개 단추를 부착한 교임식(交衽式) 저고리로서 후거(後裾 : 옷 뒷자락)는 약 5촌을 곧게 트고 분할된 양쪽에는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쪽은 넓은 녹색융질(길이 5촌, 넓이 1촌)을 붙였고, 녹색융질 바탕 위에는 이화문양이 새겨진 도금주제 단추 3개씩을 부착하였다.

한편 의령은 녹색융질이고, 수장은 소맷부리 바깥쪽 밑단에서 위쪽으로 2촌 되는 곳에 하사관은 3분 넓이의 녹색융선 1줄씩을 부착하고, 그 상단에 계급에 따라 1분 넓이의 융세선을, 정교(正校)는 3줄, 부교(副校)는 2줄, 참교(參校)는 1줄씩을 부착하였으며, 병졸은 1분 넓이의 세융선만을 상등병은 3줄, 일등병은 2줄, 이등병은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

3) 禮 袴

품질은 흑색융질의 단고(短袴)이고, 길이는 체형에 따라 복부에서 아래로 발뒤꿈치에 이르고 단고의 좌·우측 바깥쪽에는 봉장(縫章 : 측면 띠)으로 녹색융띠를 하사관은 4분 넓이로 1줄, 병졸은 3분 넓이로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

4) 肩 章

품질은 직경이 1분 5리 굵기의 황사원직(黃絲圓織) 4줄로 사슬모양으로 엮되, 길이는 2촌 4분으로 하고, 그 위에 이화문양이 새겨진 도금된 작은 단추 1개를 부착하였다.

나) 憲兵補助員服制[81]

1) 帽

품질은 다갈색융질(茶褐色絨質)이고, 제식은 현재의 군 정모 또는 학생모와 유

81) 官報 第4315號(隆熙 3年 3月 3日) ; 軍部令 第2號(隆熙 3年 2月 20日)
이는 隆熙 2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한 형태로서 무심연제(無心軟製 : 골격이 없이 유연하게 제작)이고, 발권(鉢券 : 모자의 하반부인 몸통부분)과 상부식출(上部喰出 : 상부와 상반부의 접합부위) 부위에는 2분 넓이의 비융질(緋絨質 : 짙은 붉은색의 융질) 띠를 부착하였으며, 차양〔前庇〕과 턱끈〔頤紐〕은 흑색가죽〔黑革製〕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턱끈의 고정단추(귀단추)는 표지가 없는 금색금속제이고, 정면의 표장(表章 : 모표)은 금색의 금속으로 제작된 이화장(李花章)을 부착하였다(그림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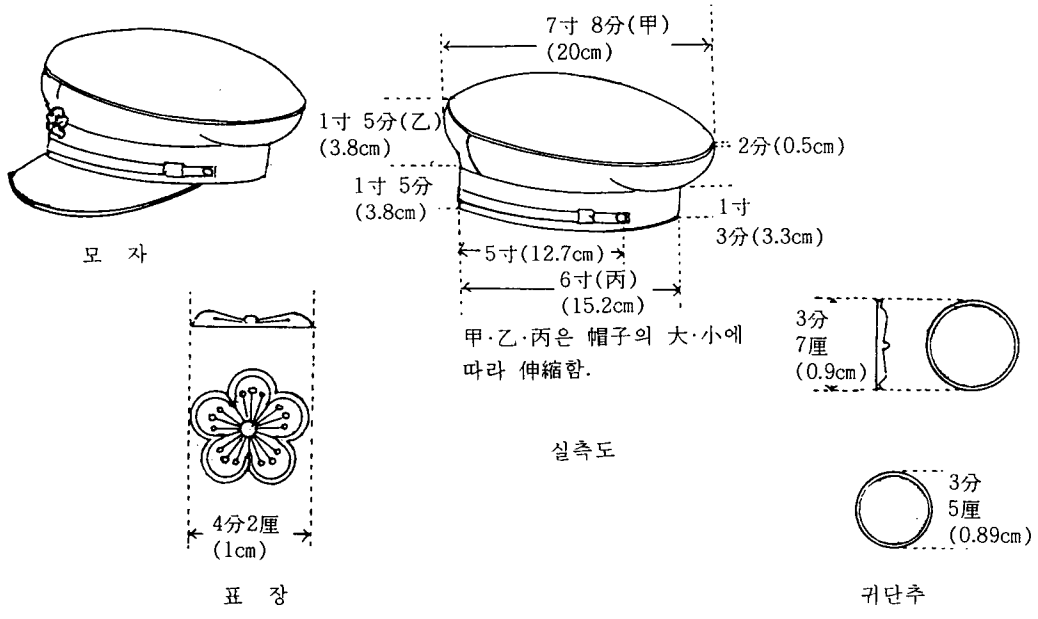

〈그림 4-63〉 모자·표장·귀단추

2) 衣

품질은 다갈색이고, 제식은 세운 깃의 1줄 5개 단추의 저고리로서, 길이는 윗부위(頂部)에서 곤골(髖骨 : 볼기)로부터 5촌 아래까지 이르고, 흉부의 좌·우측에는 속붙임뚜껑주머니 1개씩을 부착하였고, 좌협하(左脇下 : 좌측 갈비 밑)에는 검지(劍止 : 칼고리) 1개를 부착하였으며, 모든 단추는 적동제(赤銅製 : 붉은색 구리제품)를 부착하였다.

또한 수장(袖章)은 소맷부리에서 4촌 위쪽인 완관절(腕關節 : 팔관절)에 1분 넓이의 짙은 붉은색 모사로 뱀의 배비늘과 같이 편직된 띠〔蛇腹組緋毛絲〕로 두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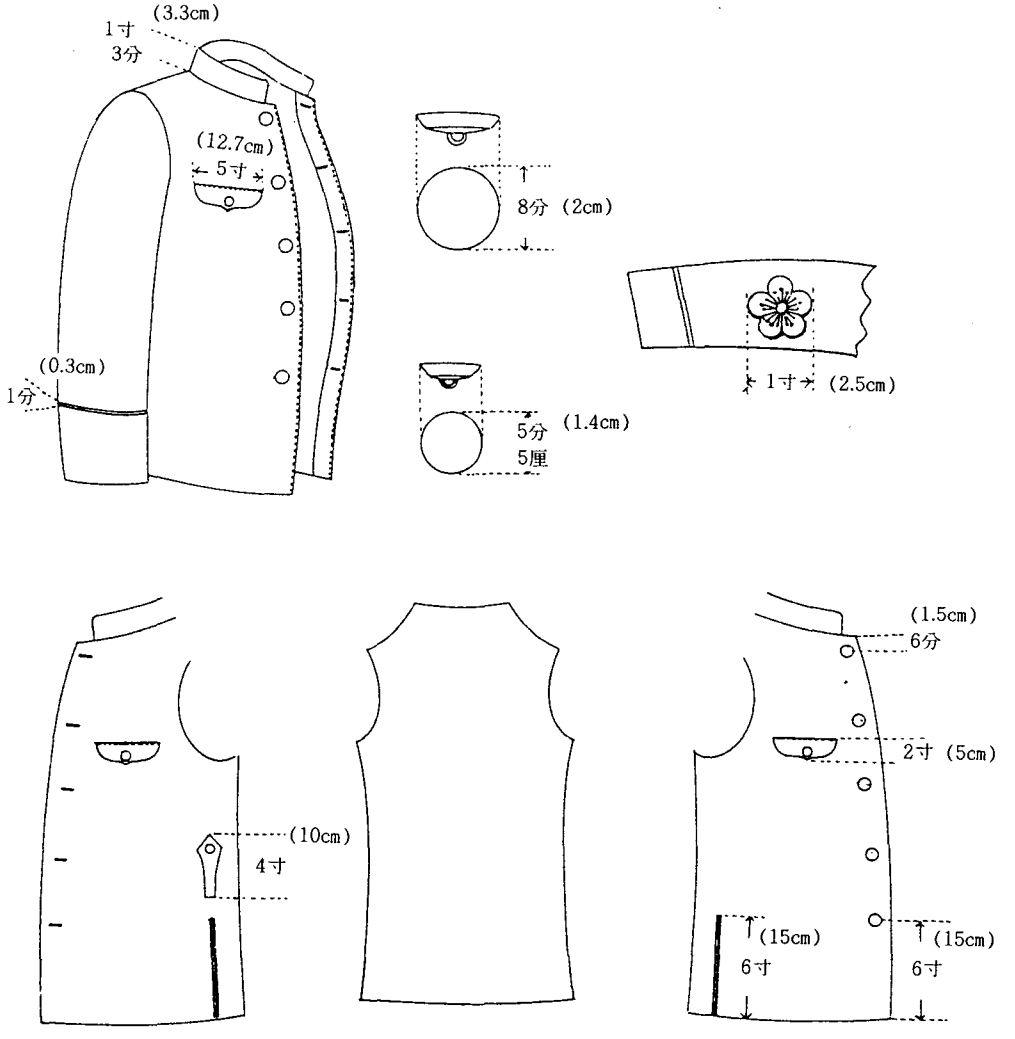

〈그림 4-64〉 上衣 形態 및 規格

좌측 어깨에는 짙은 붉은색 융〔緋絨質〕으로 제작된 이화휘장(李花徽章)을 타발(打拔 : 박아)하여 부착하였다(그림 4-64).

3) 袴

품질은 다갈색 융질이고, 제식은 일반형 바지로서, 길이는 화종상제(靴踵上際 : 구두의 뒤꿈치 상단)에 이르고, 다리(股)의 양측에는 속붙임주머니 각 1개씩을 붙이고, 바지의 양측면에는 봉장(縫章)으로 1분 넓이의 짙은 붉은색 모사로 사복조

(蛇腹組) 편직띠를 봉착하였다(그림 4-65).

4) 夏衣·袴

품질은 다갈색포직(茶褐色布織)이고, 제식은 융질의 상의 및 하의와 같았으며, 상의(저고리)의 수장과 하의(바지)의 측면 봉장(縫章)은 부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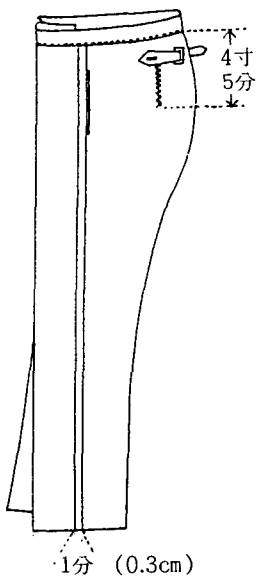

〈그림 4-65〉 袴(下衣)

5) 外 套

품질은 다갈색융질이고, 제식은 접는 깃 2줄 10개 단추의 교임식(交衽式) 외투로서, 길이는 위의 정부(頂部)에서 구두의 뒤꿈치에서 약 8촌 위까지 닿았고, 팔의 길이는 완관절(腕關節 : 팔관절)에서 약 1촌 5분 더 길었다.

앞면(흉부)의 좌·우측 단추는 붉은색 구리제품이고,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뚜껑주머니를 달았다. 또한 우측 어깨부위〔右膊部〕에는 이화장(李花章)을 짙은 붉은색 융으로 박아〔打拔〕 붙였다.

그리고 우부(雨覆 : 두건)는 외투에 고착시켰다(그림 4-66).

이상과 같이 1895년부터 1911년 사이에 제정 시행한 이른바 서구식 근대군복에 대하여 시제(始制)된 시점으로부터 변천된 과정들을 복장제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군사적으로 크게 시야를 넓힌 시기는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의 두 양요를 치른 때부터로 여겨지며, 실제로 모든 체제가 서구식으로 개혁되기에는 이어서 단행된 갑오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복식면에서는 군복이 가장 먼저 개화의 영향을 받아 개혁되고, 수차례에 걸친 보완과 개정으로 뚜렷한 하나의 제복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군제의 개혁과 더불어 최초에 등장한 예복은 2년 후인 1897년에 군제의 정돈과 함께 예복과 상복으로 구분하고, 옷의 수식도 매듭단추와 장식으로 바꾸고, 견장도 제복에 따라 달리하면서 대례견장과 소례견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1900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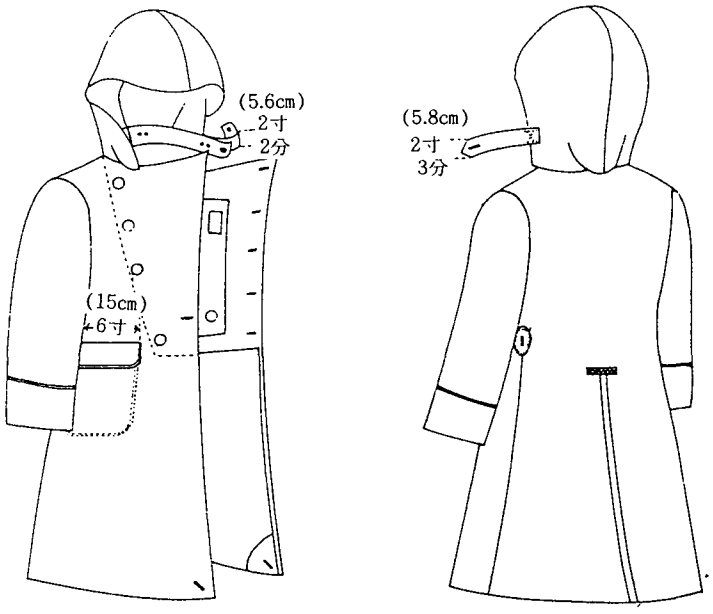

앞 면 뒷 면

〈그림 4-66〉 外 套

예복의 제식을 합임식(合衽式) 짧은 저고리에서 교임식(交衽式) 긴 저고리로 개정하였는가 하면, 1906년에는 타원형 상모를 평원형으로 바꾸었다. 한편 1907년에는 군제의 개혁과 세계 추세에 맞추어 흑색제복인 상복(常服)과 외투를 다갈색으로 개정하였다.

이 같은 제복들의 기본형태는 비록 서구식을 모방하였다고는 하나 제복의 상징적 요소에는 근화(槿花)와 이화(李花)를 비롯하여 태극과 화살〔箭〕과 같은 표상(表象)을 넣어 주체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3. 外國의 軍服飾

일찍이 유럽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생산력 면에서 비약적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양산된 상품의 새로운 시장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미개

발지역으로의 진출이 시작됨으로써 안전한 시장확보의 수단으로 열강은 다투어 식민지 경영에 편승해 나갔다. 이리하여 광대한 식민지를 획득하여 유력한 시장으로의 육성을 위한 막강한 군대와 그 지휘하에 있는 식민지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경쟁상대국을 배제할 필요에서 각 열강은 군비확충에 힘을 다하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아시아의 일각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일본이었다. 명치유신 이래 나라를 일으켜 부국강병을 이룩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고 북청사변(北靑事變)에도 놀랄 만한 활약을 하였다.

그후 세계정세도 크게 바꾸어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군사사상의 큰 전환은 비정한 근대전쟁의 논리로 등장하게 하였고,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기관총, 비행기, 전차와 전함 등의 신병기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식민지를 탈취하려는 열강들의 충돌을 외교와 무력이 복잡하게 얽혀 세계적인 군사전략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신무기의 등장과 전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열강은 각기 군제의 개편과 더불어 군복도 산뜻한 신식군복으로 바뀌면서 흑색군복의 보병이 카키색〔黃褐色〕을 갖춘 보병부대로, 또한 화려한 모자를 쓴 기병, 아무런 장식도 없는 헬멧을 쓴 포병 등 기능적인 군복으로 바뀌었다.

카키색(Khaki)이 넓게 군복에 받아들여진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원래 카키는 인도의 펀잡(Punjab)주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1846년 처음으로 위장의 필요에 의해 흙의 색을 착안하여, 당시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인 더운 기후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무명으로 제작하였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 카키색은 원래 인도의 '울래도우'어로서 모래, 먼지의 색이라는 뜻이었으며, 땅의 성질과 같은 색조인 베이지색(연한 밝은 갈색·낙타색)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염색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초기에는 카레(Curry)가루·진흙·담배 혹은 그 지방의 특산나무인 산벗나무(Mazard) 열매 등을 염료로 사용하였다.[82]

1876년부터 1880년 사이의 아프간 전쟁에서는 전 영국군 보병이 흰 능직면을 염색하여 작업복으로 착용한 이래 1884년 카키가 맨체스터(Manchester)에서 다시 개발되어 영국군에 의해 처음 공인됨으로써 대량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82) 金華善, 1985 「우리나라 軍服史의 考察」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석사학위논문, p. 78.

중국의 북청사변(北靑事變 : 1900) 동안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큰 효과를 보게 되었으며, 영국군의 정규제복에 공인 적용되었던 것은 1902년부터이다.[83]

이 같은 카키나 빛이 바랜 갈색이 전장에서 눈에 띄게 훌륭하다는 것이 곧 입증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될 때에는 많은 나라가 이 같은 색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시[舊韓末]에 우리나라 군복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일본군의 복식과 일본군 복식에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복식 그리고 우리나라 군제에 영향을 주었던(1896~1899) 러시아군의 복식에 대하여 참고로 소개하겠다.

가. 日本 陸軍

일본 육군은 명치건국(明治建國)에 즈음하여 국내방위(북방 수호)를 목적으로 육진대(六鎭臺)에서 설치되었다. 1870년(明治 3年) 프랑스식으로 발족되었다가 1888년 보병·기병·치중병을 기간으로 한 사단급 부대를 편성하였다.

청·일전쟁(1894) 때에는 7개 사단 약 10만명의 병력이 동원되었고, 1896년에는 제7사단, 1898년에는 제8~제12사단이 신설되었다.

그후 러·일전쟁(1904) 때에는 육군대국(陸軍大國)인 러시아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하여 후비사단(後備師團)을 편성하여 정규 15개 사단, 후비 10개 사단을 주력으로 한 약 100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싸웠다. 전후(戰後)에도 제13~제16사단을 신설하고, 1907년에는 제17~제18사단을 신설하였다.

군복식도 최초에는 프랑스식으로 받아들였으나 보불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자 외국인 교관도 독일군인으로 바꾸었고, 제복도 1873년(明治 6年)에 프러시아식으로 받아들였으나,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두 가지 모두를 부분적으로 착용하면서 확실한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그후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친 후 1896년(明治 29年)에야 거의 현대에 가까운 제복이 마련되었고, 1900년(勅令 第364號)에 근골소창복(筋骨小倉服 : 길이가 짧고, 몸에 꽉 끼는 옷)이 제정되면서, 통상 예장(禮裝)과 군장(軍裝) 및 약장제식이 규제되었다[84](그림 4-67).

---

83) Androw Mollo, 「Army Uniforms of World War II」, p. 30.

84) 佐藤今朝夫, 昭和 59年 『20世紀 初頭 世界の軍服』 東京, 婦人畫報社, p.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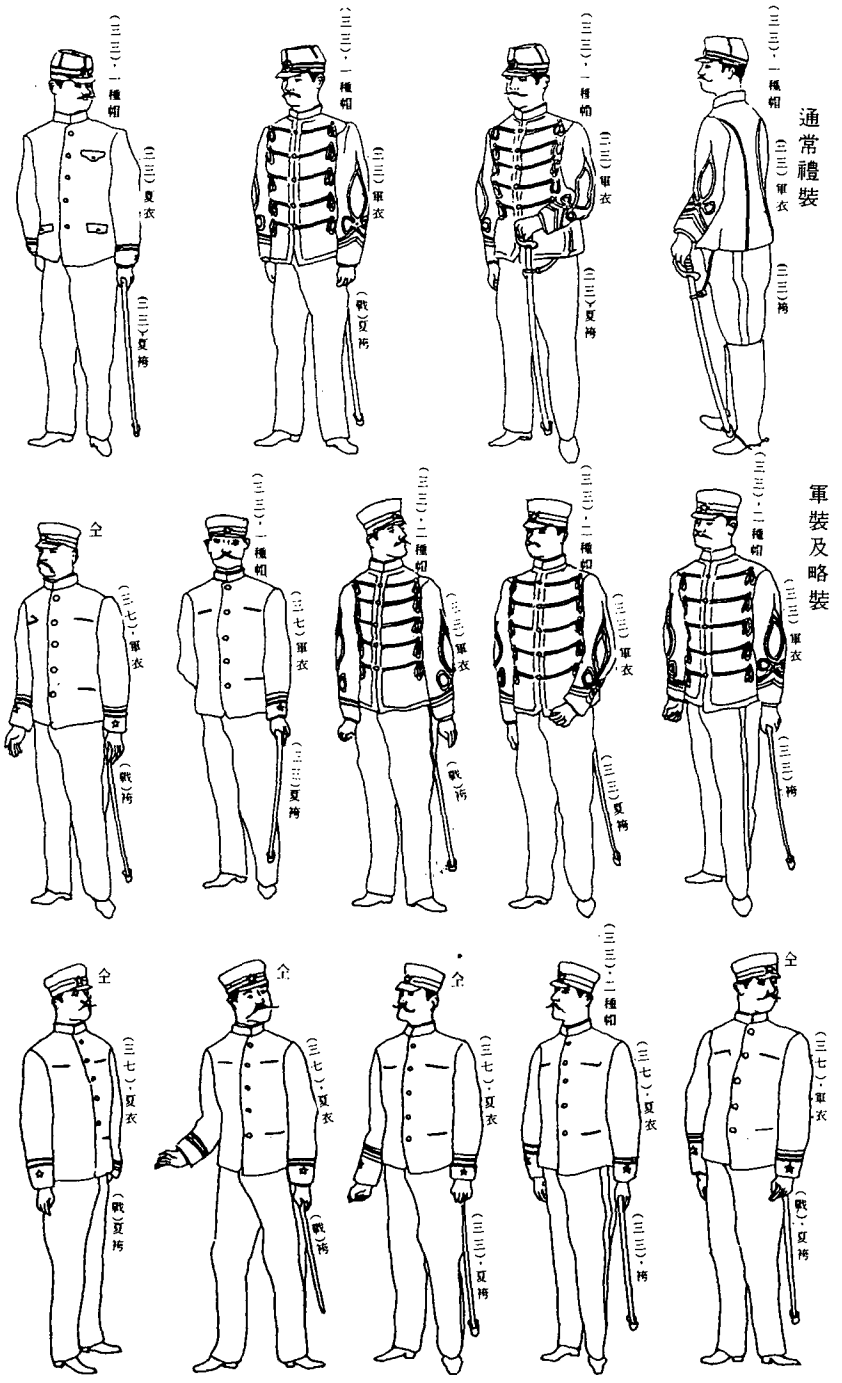

〈그림 4-67〉 1900년의 복장 제식

또한 북청사변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인도(印度) 식민지 부대가 카키색 군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1904년 러·일전쟁에서 시험적으로 착용하였다.[85] 한편 러·일전쟁 결과 더욱더 간편하고 경쾌한 복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그해 2월(勅令 第29號) 전투복이 제정되고, 다음해(1905) 7월(勅令 第196號)에는 사병의 제복이 카키색으로 바뀌면서 제식을 한줄 5개 단추의 저고리로 정식 개정하였다.

한편 장교들도 1906년 4월(勅令 第72號)부터는 지금까지 착용하여 오던 감청색(紺靑色) 근골형(筋骨形) 제복을 폐지하고, 사병과 같은 제식으로 개정함으로써 프랑스식이나 독일식을 모방하였던 종전의 모든 제복이 일본 독자제식으로 개정되었다. 그후 1912년 2월(勅令 第10號)에는 병과 정색을 바꾸고, 제복도 정의〔正服〕는 길이가 긴 세운 깃의 2줄 14개 단추 저고리(Jacket)형으로 하고, 군의〔常服〕는 세운 깃의 1줄 5개 단추의 저고리로 바꾸었으며, 기병과(騎兵科) 장교의 정복은 종전의 근골복(筋骨服)으로 하였다.[86] 이 같은 제복은 소화시대(昭和時代)까지 유지되었다.

(1) 초창기의 正服

장교 정복은 프랑스식의 제1종모인 케피(Kepi)모에 흑색의 세운 깃 2줄 14개 단추의 저고리(Frock-Coat)형에 홀태바지를 착용하였다. 수장과 모자의 금색선은 관등을 표시하고, 감청색의 깃과 수구(袖口)의 융직(Facing) 그리고 하의의 측장(Stripe)은 병과 정색(兵科定色)으로 하면서 병과를 표시하였다(그림 4-68). 이 제복은 우리나라의 1900년 7월 이후에 예의(禮衣)와 같은 제식이었다. 근위장교는 짙은 붉은색의 군모를 착용하였다.

이 제복은 1912년의 육군복제에도 육군의 정모(正帽)와 정의(正衣)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전통적으로 착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기병하사관의 정복은 당시 유럽 각국의 군복을 참고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하사관과 병졸의 제1종모는 위가 좁은 가죽제품으로서 진대병(鎭臺兵)은 검정색이었다. 기병의 상의는 타 병과와 달리 감청색(紺靑色) 근골복(筋骨服)에 짙은

85) 齊藤忠植·穗積和夫, 1971 『世界の軍服』, 東京 : 圖書刊行會, p. 30.
86) 日本官報(明治 45年 2月 24日)「陸軍服制」勅令 第10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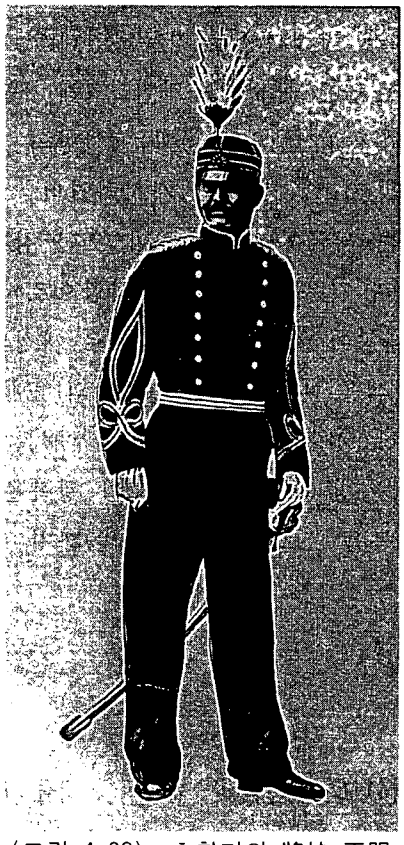

〈그림 4-68〉 초창기의 將校 正服



〈그림 4-69〉 초창기의 騎兵 正服

붉은색〔緋色〕 하의와 검정색 가죽장화를 착용하였으며, 상의의 근골·견장의 꼬임줄, 수장의 가로줄 그리고 깃과 옷의 앞면과 밑단의 가선은 짙은 붉은색으로 장식하고, 깃의 의령장과 하의의 봉장(측장)은 병과 정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외투색상은 근위는 짙은 붉은색이고, 진대(鎭臺)는 황색이었다(그림 4-69).

(2) 淸日戰爭時(1894)의 軍服

청·일전쟁 때의 근위보병 사병복은 1886년에 개정된 흑색제복을 착용하였는데, 모자는 제2종모(타원형 모)이고, 상의는 세운 깃의 1줄 5개 단추의 저고리에 홀태바지를 입고, 다리에는 백색각반을 착용하였다. 이때의 상의(上衣) 제식은 우리나라 군복의 시제 당시(1894) 예의(禮衣)의 상의(上衣)와 같은 제식이었다.



〈그림 4-70〉 1894년의 근위사병복



〈그림 4-71〉 1894년의 將校 常服

모자의 하반부와 견장의 바탕색은 짙은 붉은색으로 하였고, 상의의 깃·앞면 합임부위·밑단의 가선(Piping)에는 짙은 붉은색 융띠를 부착하고, 수장과 하의의 봉장띠 색상을 근위대는 짙은 붉은색, 사단(1889년에 진대를 사단으로 개칭함)은 황색으로 하였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백색제복을 착용하고 전시에는 등에 배낭을 착용하였다(그림 4-70).

그리고 사단장교의 상복(常服)은 1886년에 개정된 제복(상의는 흑색, 하의는 백색)으로서 모자는 타원형 모자이고, 상의는 세운 깃의 근골형이고, 하의는 홀태바지에 검정색 각반 또는 흑색 가죽장화를 착용하였다. 이때의 근골형 상의(上衣)는 우리나라의 1897년에 새로이 제정된 상의(常衣)와 같은 제식이었다.

전지(戰地)에서는 근골복 대신 단순한 단추가 부착된 제2종 군의(軍衣)를 착용하였으며, 모자의 하반부와 상단의 가선에는 병과 정색의 띠(황색 : 포병)를 부착

하였다.

그리고 기병장교는 근골복의 앞면 중앙과 흉부 양측에는 원형 단추를 부착한 상의와 녹색봉장이 부착된 짙은 붉은색의 승마형 하의에 흑색장화를 착용하였다(그림 4-71).

(3) 러日戰爭時(1904)의 戰地服

사병의 황갈색(Khaki) 군복은 북청사변(北靑事變 : 1900) 이후에 도입되면서 러·일전쟁 당시에는 종래의 흑감청색(黑紺靑色) 제복과 혼합 착용하였다.

모자는 색상만 바뀌었을 뿐 모양은 종전과 같았으나, 청·일전쟁 당시에 착용하였던 것보다 높이가 조금 낮은 것이었다. 또한 상의는 흉부주머니가 없고, 앞면은 원형(圓形)단추 대신 갈고리 단추(Hook)를 달았다(그림 4-72).



〈그림 4-72〉 1904년의 士兵 戰鬪服



〈그림 4-73〉 1912년의 正服

(4) 1912년의 正服

일반장교의 정복은 1875년과 1886년에 제정된 모양을 거의 답습하고 있었으며, 제식은 세운 깃에 길이가 약간 긴 듯한 2줄 14개 단추의 교임식 근골형 저고리(Frock Coat)였고, 하의는 홀태바지, 모자는 케피모형에 깃털을 부착한 형식이었다. 정모의 상반부 금색종선은 관등(官等), 하반부의 금색횡선은 계급을 표시하였다. 또한 상의의 황금색 수장은 관등을 표시하고, 의령의 가선과 수장띠는 장관급은 황금색으로 용갑문양(龍甲紋樣)의 자수를 놓고, 영관급 이하는 병과 정색(兵科定色)의 융직을 부착하였다(그림 4-73).

그리고 근위기병장교의 정복은 모자는 깃털을 꽂은 프랑스식의 케피모형이었고, 상의는 검정색 융직의 세운 깃 3줄 15개 단추를 부착한 근골형(Dolman Jacket) 저고리, 하의는 홀태바지를 입고 검정색 장화를 착용한 형식이었는데, 상의의 근골과 중앙 및 하단의 가선 그리고 하의의 봉장은 모두 흑색이었다. 또한 모자의 황금색 선과 소매의 수장, 어깨의 견장 등으로 관등과 계급을 표시하였다. 한편 근위기병장교는 종래와 같은 흑감청색의 근골복 상의에 붉은색 승마형 바지를 착용하고 검정색 장화를 착용하였는데, 상의의 중앙과 근골 좌·우측에는 원형단추(Medal Botton)를 달고 깃과 소맷부리 및 하의의 봉장은 병과 정색의 융직띠(기병은 녹색)를 부착하고, 상의의 근골과 중앙부위와 밑단의 가선에는 짙은 붉은색 띠(Piping)를 부착하였다(그림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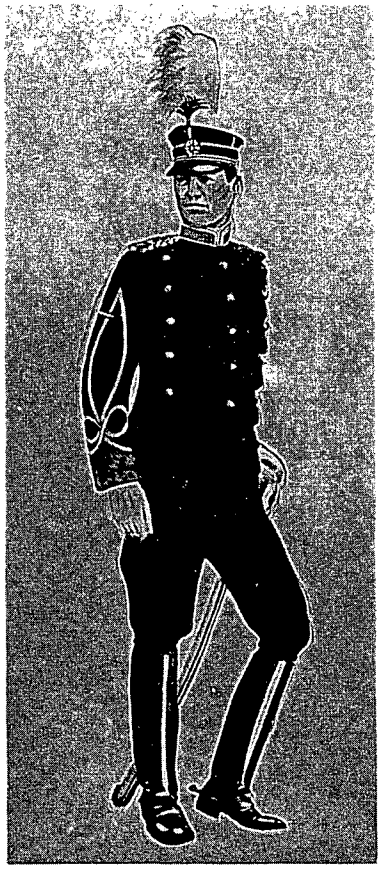

〈그림 7-74〉 1912년의 騎兵 正服

나. 프랑스 陸軍

프랑스 육군은 나폴레옹 1세에 의한 전유럽에 대한 정복(征服)과 패권을 잡는 데 실패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대육군을 건설하였으나 나폴레옹

이후 프러시아의 융성으로 보·불(프러시아·프랑스)전쟁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육군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그후 경이적인 부흥을 이룬 프랑스는 독일을 본받아 육군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면서 참모본부도 설치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는 고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에 국방력을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인구의 열세를 감안하여 동원병력의 증원을 위해 현역과 예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이즈음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군제를 표준화하여 보병은 4개 중대 편성(450명)의 대대를 기본단위로 하여 중대는 3~4개 소대로 편성하였고, 기병은 150기(騎)로 3~6개 대대(500~1,000명)로 편성하였다.

또한 포병은 기본단위를 4~8문의 중대를 3개 중대로 1개 포병군을 구성하여 2~3개 군으로 연대를 편성하는 방식이 정형화(定形化)되었다.



〈그림 4-75〉 1900년대의 기본 戰鬪服

복식은 1890년대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화려한 것이었으나, 1900년대에 들면서 전투위주의 복장으로 바뀌었다.

(1) 1900년대의 軍服

나폴레옹시대 이후 전통적으로 착용하여 오던 제복은 실전에서 저격 목표로 노출되어 1890년대부터 전투병과 장병의 제복을 감청색(Dark-Blue)으로 바꾸었다.

기본제복은 세운 깃의 1줄 또는 2줄 단추의 저고리에 홀태바지를 입고 발목구두를 착용하였다(그림 4-75).

모자는 케피모를 착용하였으나, 하사 이하는 베레모 형태의 약모를 착용하기도 하였고(그림 4-76), 하절기에는 둥근 모양에 차양이 넓은 헬멧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각반을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 4-77).



〈그림 4-76〉 1900년대의 戰鬪服



〈그림 7-77〉 1900년대의 戰鬪服

(2) 1914년 이전의 騎兵服

나폴레옹시대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기병은 야전에서 전통적으로 위 부위는 좁고, 밑면이 넓은 반계란모양(앞면 상단에는 깃털 부착)의 모자를 쓰고, 장교는 감청색의 세운 깃 2줄, 12개 단추를 부착한 약간 긴 듯한 저고리(Frock Coat)에 붉은색 바지를 착용하였고, 검정색 장화를 신었다. 사병은 하늘색의 약간 긴 듯한 세운 깃의 근골복에 붉은색 승마복 하의를 착용하고, 검정색 가죽장화를 신었다(그림 4-78).



〈그림 4-78〉 1914년 이전의 騎兵服

다. 獨逸 陸軍

독일 육군은 1870년 보·불(프러시아·프랑스)전쟁에서 승리하자, 독일제국을 성립(1871)하고 육군군제를 확립하였다.

이때의 군제는 유럽제국을 시작으로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독일의 제도는 황제의 신임은 물론 의회의 승인 없이도 군령대권(軍令大權)을 행사하는 특권이 참모본부에 부여된 제도로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독일 육군은 이 같은 참모본부에 의하여 강력한 군비확충이 이루어졌다.

군의 복식은 1840년대에 제정된 후록코트(Frock Coat)제식을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착용하였다.

(1) 1914년 이전의 軍服

프러시아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착용하여 오던 군복을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까지 유지하였는데, 정장차림으로 장교는 녹회색, 사병은 감청색의 세운 깃 1줄 단추의 합임식 상의에 홀태바지를 착용하고 흑색 장화를 신었다.



〈그림 4-79〉 1914년 이전의 장교 및 사병정장



〈그림 4-80〉 1914년 이전의 공병 사병정장

모자는 가죽으로 제작된 헬멧으로 정상 중앙부에 뾰족한 꼭지장식(Crest Knob)이 부착된 것이 특색이었다(그림 4-79). 이 헬멧은 우리나라의 시제 당시(1894) 예복의 예모(禮帽)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병 병과의 사병은 여기에 야전용 삽을 추가로 휴대하였다(그림 4-80).

(2) 1900년 당시의 軍服

1900년 북청사변(北靑事變) 당시 파견군이 착용하였던 제복으로 야전복은 접는 깃 1줄 단추의 합임식 상의에 헐렁바지를 입고, 발목군화를 신었으며, 허리에는 검정색 가죽요대를 착용하였다. 또한 모자는 평원형의 군모를 착용하였다(그림 4-81).



〈그림 4-81〉 1900년 북청사변 당시 야전복



〈그림 4-82〉 1900년 북청사변 당시 정장

한편 정장차림은 세운 깃 1줄 6개 단추의 저고리에 홀태바지를 입고 장화를 착용하였다. 모자는 평원형 군모를 착용하였는데, 보병의 하사관 이하는 차양이 없는 것이었고, 기타 모든 병과의 사병과 장교는 차양이 달린 것이었으며, 모자의 표장(모표)으로 소속군을 표시하였다.

또한 동절기에는 외투를 착용하고, 장화를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 4-82).

라. 러시아 陸軍

러시아 사회는 19세기 후반까지도 농노제도가 실재하고 있었기에 군의 징병도 강제 징용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사병은 징발된 농민들을 가혹하게 훈련시켜 편성한 원시형 그대로의 군대였다. 한편 장교는 유럽제국과는 달리 유년학교를 설립하여 9~10세가량 되는 유년기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정예간부로 양성하였는데, 이들의 교육기관인 유년학교는 30개교에 생도수는 6,000여 명에 달하였다. 제정러시아 군대



〈그림 4-83〉 1882년 이후의 軍服



〈그림 4-84〉 1882년 이후의 冬服

는 이렇게 발전해 갔고, 이 같은 현상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비록 러·일전쟁에서는 패배하였으나, 본국에서는 아직도 여력이 남아 있어 육군의 재건에 있어서도 독일의 육군제도를 도입하여 근대화를 꾀하였으나, 그 결과를 보지도 못한 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됨에 따라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후 러시아 혁명으로 제정러시아 군대는 붕괴되고, 공산당 기관의 통제를 받는 당군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복식에 있어서는 1882년에 근대복식으로 바뀌고, 러일전쟁(1904) 이후부터는 황갈색(Khaki)제복으로 바뀌었다.

(1) 1882년 이후의 軍服

1882년에 고식적인 러시아식 군복을 새로운 제식의 신식군복으로 바꾸었는데, 상의는 세운 깃 2줄 12개 단추의 교임식(交衽式) 저고리였고, 하의는 승마형 바지를 입고 검정색 가죽장화를 착용하였다. 모자는 평원형(平圓形)이었으나 차양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사열(査閱)이나 열병식(閱兵式) 때에는 모피모(毛皮帽)를 착용하였다(그림 4-83).

그리고 동절기에는 원통형의 모피 방한모(毛皮防寒帽)를 쓰고, 방한외투를 착용하였으며, 야전에서는 모포(毛布)를 어깨에 둘렀다(그림 4-84). 또한 하절기에는 백색모자를 쓰고, 백색의 세운 깃 1줄 단추의 러시아 특유의 민속복 형식인 루바시카(Rubashca)형의 블라우스제복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요대를 착용하였다.

(2) 1904년 이후의 軍服



1882년 개정된 2줄 단추의 교임식 제복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 황갈색(Khaki)의 근대적인 군복으로 바뀌었는데, 하절기의 백색 제복을 카키색의 러시아 전통 의상인 루바시카 형식의 제복으로 바꾸었으며, 하의는 감청색의 승마형 바지를 입고 검정색 가죽장화를 착용하였다.

모자는 차양이 붙은 형식으로 바뀌었고, 대전중에는 프랑스형의 헬멧을 착용하였으나 전원에게는 착용시키지 못하였다(그림 4-85).

이 같은 제복은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4-85〉 1904년 이후의 제복

第 2 節　獨立運動期의 軍服飾

1. 獨立軍의 組織과 活動

한말(韓末), 일제(日帝)의 침략은 가중되는데 국가가 무기력하여 그들을 막을 능력이 없자 위정척사(衛正斥邪)를 부르짖으며 일제에 의한 개국(開國)을 반대해 온 유림(儒林) 선비들은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사건〔乙未事變〕을 기화로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이러한 한말 의병은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첫째, 1895년 을미사변 직후에 일어난 을미의병, 둘째, 1905년 러·일전쟁의 여세로 강요된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항전한 병오의병, 셋째, 1907년 고종의 강제 양위와 한말의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정미의병이다. 이 3차례의 의병은 일제의 침략에서 강제합방까지 가장 어려웠던 20년간을 구국의 일념으로 민족혼을 불태웠던 의거였다.

대체로 우리 민족의 의병운동사는 한말 이전 시기와 한말 이후 시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한말 이전 시기의 의병은 비록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없이 일어났으나 국가의 지원과 관군과 보조를 같이하여 침략군과 싸워 나갔기에 민족의 위기를 구할 수 있었으나, 한말 이후 시기에는 이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제의 사주를 받은 관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외국군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는 양면 공격하에 고군분투하면서 뜻을 이루지도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피나는 투쟁은 일제의 합방마저도 늦추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활약은 그후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독립운동의 선구가 되었다.

그후 나라를 잃은 후에도 의병운동이 수년간 계속되었으나 가중되는 일제의 무력탄압하에서 지속적인 운동이 어렵게 되어 의병활동은 그 근거지를 국외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의병의 정신을 계승하여 무력으로써 독립전쟁을 전개하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길임을 통감하고 국외에 새로운 독립운동기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바탕으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민족운동가들은 강 하나만 건너면 국내로의 진입이 가능한 서북 간도(間島)와 시베리아지방에 민족정신이 투철한 한

민족의 집단적 거주지역을 여러 곳에 만들어 항일운동의 세력근거지로 삼고 그곳을 중심으로 항일세력을 조직화하고 무장시켜 민족의 군대인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임시정부가 성립되자 자생적 분산조직은 광복군으로 통합되어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시도하였으며, 국내진공전(國內進攻戰)으로 국권 회복을 획책하였다.

이상과 같은 독립운동에서 독립군들이 착용했던 군복식은 지역과 시기를 고려하여 두 방면으로 구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기적으로 앞섰던 만주지역에서의 독립군의 군복식과 상해·중경을 중심으로 하는 광복군의 군복식이 그것이다.[87]

만주에서는 경학사(耕學社)와 북간도의 중광단(重光團)이 조직된 후 수많은 무장 독립단체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3·1운동 이후 평화적인 만세시위운동은 희생만 가져올 뿐 효과가 없음을 체험하고 조직적이고 무력적인 운동만이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 민족의 군대인 독립군을 편성하기에 힘을 기울였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독립군 복식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먼저 이들 중 중요한 독립군 단체를 간략히 알아본 후 그들이 착용하였던 군복식을 살펴본다.

가. 初期의 獨立軍

(1) 大韓國民會軍

국민회는 북간도지방의 모든 독립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간도 각 지방에 본부·지방회(地方會)·지회(支會)를 두고 자치(自治)와 군사, 그리고 재정적으로 모든 독립운동을 일원화하였다. 국민회 회원은 대부분 기독교도였으며, 독립군의 양성과 군자금 모금 및 무기 구입에 힘쓰면서 강력한 독립군 부대를 편성하여 일본 군경에 항거하였다.

---

87) 美洲에서의 독립운동은 무력에 의존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교육·언론을 통한 民族運動이 主를 이룬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1, 1990, pp. 139~148) 1903년부터 시작된 美洲에서의 민족운동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군인양성운동'으로 번져 '國民軍團' 결성까지 보았으나, 1916년에 해체되었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는 독립군 복식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北路軍政署

1912년, 중광단은 정의단(正義團)으로 확장되고, 이후 임시정부 산하에서 군단화(軍團化)하여 군정서로 개칭되었다. 본영(本營)을 왕청현(汪淸縣) 춘명향(春明鄕)에 두었고, 그 밑에 5분단(分團) 70여 지단(支團)을 설치하였다. 약 5백명의 병력이 있었으며 사관(士官)양성소를 두어 정예군을 양성하였다.

(3) 大韓獨立軍

대한독립군은 한말 의병장이었던 홍범도(洪範圖)가 거느렸던 부대로서 3·1운동 직후부터 크게 활약하였다. 본영은 연길현(延吉縣) 명월구(明月溝)에 있었으며, 400명 규모의 병력이 군자금 조달·독립정신 선양(宣揚)·밀정 살해·일본군 암살 등 많은 활약을 하였다.

(4) 軍務都督府

군무도독부는 본영을 왕청현 춘화향(春華鄕)에 두었고, 병력은 약 600명으로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였다.

(5) 西路軍政署

1910년 편성된 경학사에서 유래한 부민단(扶民團)은 조직과 사업을 확장하여 한족회(韓族會)를 발족하였다. 중앙정부를 설치하여 모든 독립활동을 통할하고 그 예하에 독립전쟁을 치를 군정부(軍政府)를 설치하였으나,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군정부대의 명칭을 서로군정서로 개칭하고, 임시정부의 산하로 통합되었다. 군정서는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독립군 양성과 편성에 주력하였다.

(6) 大韓獨立團

대한독립단은 1919년, 한말 의병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유하현(柳河縣) 삼원포

(三源浦)에서 결성되었다. 서간도(西間島)에서는 1910년 전후의 의병장들이 보약사(保約社)·향약계(鄕約契)·농무계(農務契)·포수단(捕手團) 등을 조직하여 자치적으로 상부상조를 하고 있었는데, 3·1운동이 발생하자 이들은 국내진입을 위한 독립전쟁의 수행을 주목표로 정하고 하나의 군사단체(軍事團體)로 편성하였다. 독립단은 중앙본부와 통화(通化)·흥경(興京)·집안(輯安)·환인(桓仁) 등지에 지방조직을 결성하고 독립군 편성과 훈련에 주력하였다. '남만주 제1사단'이라는 별호를 지니게 된 독립단은 국내에 진입하여 활발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단본부 내부 조직내에서 연로한 유생들과 신진청년들 간의 갈등으로 기원(紀元)독립단과 민국(民國)독립단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양파는 국내진입 항일투쟁에서는 서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후 양파가 함께 한족회(韓族會)·청년단 연합회와 더불어 광복군사령부로 통합하고, 상해 임시정부 산하단체로 활동하였다.

(7) 大韓民國靑年團聯合會

3·1운동이 일어나자 국내외의 우국(憂國) 청년들은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방마다 전위대(前衛隊)로서 청년단(靑年團)을 조직하였는데, 임시정부에서는 이 산재(散在)한 청년단을 하나의 단일기구로 통합시켜 보다 강력한 운동단체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19년, 청년단 연합회를 결성하고 안동현(安東縣)에 본부를 두었다. 연합회 회원수는 2~3만명이었고 전투원은 의용대원(義勇隊員)이라고 불렀다. 의용대원들은 국내 특히 벽동(碧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 등지에서 적지 않은 희생을 내면서 일제 군경과 항쟁하였다.

(8) 大韓獨立軍備團

1919년, 장백현(長白縣) 17도구(道溝)에서 결성한 조직으로서 약 300명의 인원이 국내진입전을 주로 수행하였다.

(9) 光復軍 總營

광복군 총영은 관전현(寬甸縣) 안자구(安子溝)에서 1920년 7월에 조직되었다.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투군단을 만들 목적으로 대한청년당·대한독립군비단·대한독립단·서로군정서 등을 통합하여 이 조직을 결성하였다. 병력은 6개 군영(軍營) 최대규모시 3,780명에 달하였다.

나. 獨立軍의 再整備와 長期 抗戰

일본군의 만주출병(滿洲出兵)과 중국의 강압에 의하여 만주 각지의 독립군은 새로운 근거지 확보를 위해 1920년, 밀산(密山)에 집결한 후 자유활동이 보장되는 자유시(自由市 : 알렉스브스크)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소련과 협정을 맺어 자치를 보장받고 무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았으며, 10여 개의 독립군을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고, 장차 있을 조국 광복전에서 소련군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대한의용군(大韓義勇軍)을 편성하여 러시아의 적군(赤軍)을 도와 백계(白系) 러시아군 토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립군을 러시아 영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의하여 러시아의 대(對)독립군 정책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로써 많은 수의 독립군부대가 무장해제를 당하거나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결국 1921년 6월 28일, 독립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해산당하여 당초 독립군이 러시아 영토로 이동한 목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러시아 영토로 이동하지 않은 독립군들은 일본의 만주출병을 계기로 만주의 각지에서 부대를 재편하여 항전하였다.

(1) 參議府

1922년 1월, 상당수의 독립군 대표들이 모여 남만통일회(南滿統一會)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환인현(桓仁縣) 대우구(大牛溝)에 본부를 두는 대한통군부(大韓統軍府)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년 8월, 회의에 미참가했던 여타 단체까지 포함하여 대한통의부(大韓統議府)로 발전하게 되었다. 통의부에 소속된 독립군을 의용군(義勇軍)으로 호칭하였고, 부대 편성은 의용군 제1대대와 유격대·헌병대 등 7개 중대로 구성되어 구역을 관할하고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계급제도는 장사(將士)·정사(正士)·부사(副士)·참사(參士)의 등급을 두었다. 그러나 통합 초기부터 간부간에 이념과 인선(人選)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하여, 일부가 의군부(義軍府)를

별도로 조직하였고, 그후 통의부와 의군부 사이에 반목이 심하자 통의부 소속 의용군 500명이 집단으로 이탈하여 새로운 부대 조직에 착수하였다. 1923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陸軍駐滿) 참의부(參議府)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집안현을 중심으로 무송(撫松)·장백(長白)·안도(安圖)·통화(通化)·유화(柳河) 등 압록강 연안지역을 관할하였다. 이들은 병역의무제도를 채택하여 모든 한인 장정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만주와 국내에서 항전을 벌였다. 1928년에 참의·정의·신민 3부(府)의 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1929년, 국민부(國民府)가 성립되자 해체되었다.

(2) 正義府

민족주의자들은 참의부가 결성되었지만 통일된 행동이 어렵게 되자, 1924년 10월, 잔존한 통의부를 비롯한 수개의 단체를 중심으로 정의부를 신설하였다. 통치구역은 하얼빈(哈爾濱)·액목(額穆)·북간도(北間島) 이남지역으로서, 1926년 당시, 1만5천여 호의 한민족을 통치하면서 조국 광복운동의 중추적인 지도기관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정의부의 군사제도는 의무복무제로서 1개 중대 70여 명의 규모로 8개 중대와 헌병대·민경대(民警隊)를 두고 훈련과 군비 확보에 주력하였다.

(3) 新民府

남만주에서 참의부·정의부가 조직되자, 북만주에서는 1925년 3월, 대한독립군단을 중심으로 신민부가 창설되었다. 의무복무제를 채택하였고, 사관학교를 창설하여 간부를 양성하였다. 관할지역은 영안(寧安)·목릉(穆稜)·밀산(密山)·요하(遼河) 일대였고, 1929년 3월 3일부로 통합이 될 때까지 많은 업적을 쌓았다.

(4) 朝鮮革命軍

1929년 4월, 3개 부가 통합되어 국민부(國民府)가 조직되고, 12월, 유일당(唯一黨)이었던 조선혁명당과 그 소속 군으로서 7개 대대의 조선혁명군이 편성되었다.

(5) 韓國獨立軍

1929년, 신민부를 기반으로 한족(韓族) 총연합회를 조직하고 김좌진(金佐鎭)을 주석으로 한족의 자치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김좌진의 피살로 중단되었다가, 그후 이를 모체로 1930년 7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여 북만주 일대에 26개의 군구(軍區)를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다. 光復軍의 活動

독립군부대들의 필사적인 항쟁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열세와 중국군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 내외 여건이 불리하게 됨에 따라 만주지역에서는 항일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결국 활동무대는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되었다. 임시정부 통솔하에 결성된 광복군은 독립운동전선에서 일관되게 유지·전개되어 온 항일무장투쟁의 전통과 그 노선을 배경으로 하여 임시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군대로서, 법제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정규군은 되지 못했으나, 사실적(史實的)인 의미에서 민족의 군대로서 만주독립군의 기백과 전통을 계승하여 항일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1920년 2월, 임시정부 군무부 포고 제1호에 의하여 대한민국 임시군제(臨時軍制)·육군 임시군구제(臨時軍區制) 등이 반포되어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정책이 수립되었고, 이 군사정책이 비록 임시정부의 활동침체와 피난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정책 자체는 변함이 없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을 서간도(西間島) 군구(軍區)·북간도 군구·강동(江東) 군구로 나누어 각 군구에 지방사령관을 두었으며, 서간도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와 북간도의 북로군정서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만주출병으로 독립군이 노령(露領)방면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당초 임시정부에서 만주방면을 중심으로 하였던 양병(養兵) 및 작전계획은 중지되었다.

(1) 光復軍 總司令部 設置

중·일전쟁 발발 등 국내외 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1939년에 들어 중국 관

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기강(綦江)에 집결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임시정부는 독자적으로 1940년 9월 17일, 광복군 총사령부를 중경(重慶)에서 성립시켰다.[88] 당시 총사령부의 조직은 중국군제도를 많이 참조하였으며, 군대의 편성은 3·3제를 채용하였고, 분대·소대·중대·연대·사단·총사령부의 6단계로 구분 편성하였다.

당시 총사령부는 당면문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보았다.

첫째, 우리 민족의 해방을 지상과제로 삼고 국가독립 지상의 원칙하에 전 민족의 인력·물력을 총집결하여 왜적을 향해 총공격을 개시한다.

둘째, 광복군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산만한 무장대오에서 집중 조직화하여 통일되고 조직적인 행동을 전개한다.

셋째, 선전훈련공작에 전력한다. 독립운동을 국제적으로 알려 많은 전적(戰績)과 활동을 선전하여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는다.

넷째, 광복군의 전략전술을 유격전으로부터 대규모의 정규전으로, 그리고 전민중 대폭동전으로 전환한다.

총사령부는 이러한 당면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령부를 중경(重慶)에서 서안(西安)으로 이동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대 편성과 공작활동지구를 정하였다.

제1지대 : 근거지는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이며, 산서성 및 하남성(河南省)을 활동지구로 한다.

제2지대 : 근거지는 수원성(綏遠省) 포두(包頭)이며, 찰합아성(察哈兒省) 및 하북성(河北省)을 활동지구로 한다.

제3지대 : 근거지는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이며, 안휘 및 강소성(江蘇省)과 산동성(山東省) 일부를 활동지구로 한다.

제5지대 : 총사령부 호위

그러나 광복군은 창설 이후 예속문제로 중국군사위원회와 대립과 마찰을 겪었고, 중국의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는 1941년 11월 15일의 '한국광복군 행

88) 한국광복군은 부대편제를 갖추어 창설된 것이 아니었다. 우선 총사령부부터 성립되고, 이후 단위부대를 편성해 가는 이른바 下向式 編制방법에 의해 부대 편제를 갖추어 나갔다(韓詩俊, 1993『韓國光復軍研究』일조각, p. 306).

동 9개 준승(準繩)'으로 나타나,[89] 광복군의 창설은 인준되었으나 그 행동은 중국 군사위원회가 통할지휘하게 되어, 1945년 4월까지 통제와 간섭을 받았다.[90]

광복군이 중국군의 '지원군(支援軍)' 내지는 '고용군(雇傭軍)'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고, 꾸준한 협상 결과 '9개 준승'을 대체하는 '원조광복군판법(援助光復軍辦法)'이란 새로운 군사협정이 3년 6개월 만에 체결되어, 비로소 임시정부가 광복군의 통수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중국의 원조도 차관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91]

(2) 光復軍의 戰列整備와 그 活動

1942년, 광복군의 초기편제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92] 조선의용대가 제1지대로 개편되었으며, 예전의 제1·2·5지대를 통합하여 제2지대로, 1945년 6월 안휘성 부양(阜陽)에서 활동하던 제6분처가 발전하여 제3지대가 되었다. 이로써 총사령부 예하에는 3개 지대가 있게 되었고, 각 지대는 3개 구대, 각 구대는 3개 분대로 구성되었다.

그후, '9개 준승' 취소통보[93]가 있은 직후부터 총사령부의 조직체제를 개편하고 중국군의 계급구조가 아닌 광복군 본연의 계급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자주적인 체제를 확립하려는 작업이 진행되어, 1944년 12월 9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잠행(暫行)조직조례〉 및 편제표와 지대(支隊)편제표를 공포함으로써 한국인만의 독립무장세력이 될 수 있었다.

---

89) '9個 準繩'은 중국군사위원회가 광복군을 통할지휘하고 중국 참모총장이 이를 장악 운용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통수권이 박탈되고, 활동구역·작전·조직·훈련·편성 등에 관한 속박, 그리고 광복군이 한국 영토 안에 진입한 경우에도 중국의 軍令을 접수해야 한다는 등의 매우 굴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국회도서관, 1974 『大韓民國 臨時政府 議政院文書』, pp. 761~764)

90) 광복군 총사령부 간부 중 80%와 광복군 전체장교 중 55% 정도를 중국군이 차지하고 있었다.(한시준, 앞의 책, pp. 115~120)

91) 이는 臨政이 제출한 '商定辦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광복군은 비로소 臨政의 國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獨立運動史』 6, pp. 305~306)

92) 개편의 계기는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과 제5지대에서 발생한 支隊長 암살사건이었다.(한시준, 앞의 책, p. 306)

93) '9個 準繩' 취소통보는 1944년 8월 23일, 중국군사위원회 참모총장 何應欽으로부터 있었다.

광복군은 초무(招撫)·선전·첩보공작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9명의 공작대를 파견시켜 인도·버마작전에 협조하였고, 미국군과는 OSS훈련을 통해 국내로 잠입하여 여러 가지 군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94]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국내진입전에 대비하여, 광복군 내에 국내정진군(國內征進軍) 총지휘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장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일본이 항복하였고, 이로써 광복군이 전쟁에 직접 기여한 일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었으며, 결국은 국가간의 교전당사국(交戰當事國)으로서의 발언권은 없어지고 말아,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2. 獨立軍의 軍服飾

가. 光復軍 탄생 이전의 각지의 獨立軍 服裝

구한말기는 청·러·일 등의 외세에 의한 신식 군제가 도입되어 우리 고유의 군복제(軍服制)는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고, 보다 현대적인 신식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 절에서 언급되었지만 그것도 겨우 십 수년에 불과하였고, 러·일의 세력 변동에 따라 몇 차례 탈바꿈을 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군복은 사실상 그 명맥이 끊기고 말았다. 그러나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1910년이라는 시점은 국가의 자주권이 상실된 시기이고, 국가의 군대가 해산당한 시기는 그보다 조금 빨랐기 때문에, 군복의 역사상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군복의 명맥이 단절되는 시기는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던 1907년 8월 1일부터이다.

그후, 우리 독립투사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비록 정상적인 군제(軍制)를 갖춘 군대는 아니었지만 해외에서 군사단체를 조직하여 일제에 항전하였고, 이때 각종의 군복을, 비록 품질 면에서 조잡하였으나 자체 생산하여 착용하였다. 다만, 망국

94) OSS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테스트까지 거쳤으며, 국내에 투입될 모든 준비를 끝마쳤으나, 이들이 투입되기 전에 일본의 항복이 더 빨랐다.(한시준, 앞의 책, pp. 272~298)

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라인 혹은 지원체제 및 지휘체제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으므로 그 군복은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지하여야 할 점은 나라를 잃은 뒤의 애국지사들은 복장이라는 형식에 얽매일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으면서도 애국지사들은 비록 여유가 없는 환경이었지만 의복이 갖는 위엄이나 소속감 나아가 충정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도구로써 군복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당시의 각지 독립군들의 복장에 관한 기록이나 또는 완제품은 현재까지의 조사된 바로는 완벽히 보존된 것이 없다. 현재 독립기념관에 전시 중인 독립군들이 착용했던 군복양식도 자료와 증언을 통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정도이다. 독립군의 복장에 관한 문헌 일부로서 가치성이 높은 것으로는 일제의 고등경찰 문서와 보고서 형식으로 남아 있는 기록이다. 이를 통해 비록 일부분이나마 군복 양식을 추측할 수 있다. 아래에 김정명(金正明)의 편찬서[95]를 통해 독립군의 복장에 관한 기록을 살펴본다.〔필요시 필자 요약 서술〕

- 【조특보(朝特報) 제45호, 1919년 9월 16일, 압록강 대안(對岸)방면 이주(移住) 선인(鮮人) 생활상태】 의복은 전부 조선복을 착용하나, 중국인에 고용된 자나 중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중국옷을 착용한다. 3·1운동 후, 여행시에는 중국옷을 입는다. 옷감은 모두 면제(綿製)를 주로 하고, 관이나 삿갓을 썼다. ……이역(異域)에서 고국의 풍습을 중히 여겼다.

- 【1919년 9월 29일, 고경(高警) 제27645호, 조선독립 단지(斷指)결사대의 행동】 무송현(撫松縣) 차도선(車道善)을 수령으로 하는 500명의 인원은 복장과 모자 등을 준비 중에 있었다.

- 【1919년 10월 7일, 고경 제28506호, 안도현(安圖縣)의 한족(韓族)독립운동 동향보고】 결사대의 복장은 모두 양복을 착용한다.

- 【1919년 10월 16일, 고경 제29411호, 하얼빈 대한인(大韓人)군대에서 대한독립단 등으로 보내는 통신문 차압】 군인의 왼쪽 소매에 부착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

95) 金正明 編, 1967『朝鮮獨立運動』東京, 原書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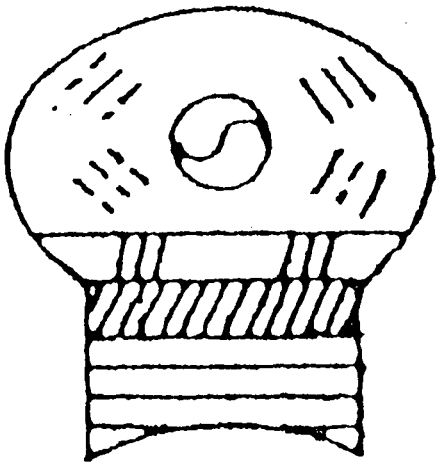

〈그림 4-86〉 소매 부착 표지

• 【1920년 1월 28일, 고경 제2310호, 압록강 대안의 무장 항일단 침입】 22일 오후 11시, 함경북도 온성경찰서 영충동(永忠洞)에 중국군복을 착용하고 총기를 휴대한 조선인 4명이 침입하였다.

• 【1920년 2월 2일, 고경 제2538호, 압록강 대안의 무장 항일단 동향 보고】 장백현(長白縣) 십육도구(十六道溝) 임수동(任水洞)의 김중건(金中建)은 원종학교(元倧學校)를 세워, 성적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무송현에 보냈는데, 인원은 약 50명이 되었고, 생도들은 모장(帽章) 및 국기의 중심에 만(卍)형의 휘장을 부착하였다.

• 【1921년 1월 25일, 고경 제1166호, 관전현(寬甸縣)의 항일운동원의 체포에 관한 건】 1월 4일 오전 10시경, 중국복장을 한 이들의 집결지에 접근하여……

• 【1921년 8월 28일, 조특보 제17호, 압록강 대안의 항일무장단체 침입과 출병에 관한 건】 독립단장 조맹선(趙孟善)은 7월 상순,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서 군복 및 경찰복 60벌을 구입하여 대안(對岸)의 중국땅에 수송하였다. ……십이도구(十二道溝)의 계곡 안에 있는 군비단(軍備團) 지부(支部)에서는 미싱 2대로 군복을 조제 중이었다.

• 【1924년 8월 4일, 조특보 제82호, (附)만주의 민족주의단체의 항일무장투쟁】 조선혁명군 제1사단 사령관 한검추(韓劍秋) 이하 100명은 그 복장이 만군(滿軍)과 유사하여 얼핏보면 만군과 같다. ……제2사단은 사령관 최창강(崔昌崗) 이하 약 80명이고, 제3사단은 조화선(趙化善) 이하 약 70명으로 역시 만군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였다. ……혁명군의 군복은 흥경현(興京縣) 왕성문(旺盛門) 부근에 미싱 3대를 가지고 만인(滿人) 직공을 시켜 조제케 하여 제1방면군 사령부 및 총사령부에 분배하였다.

• 【1919년 10월 13일, 고경 제29021호, 간도(間島)지방의 한족(韓族) 독립시위운동】

성명 미상의 주동자가 황색의 군복을 착용하고……

- 【1919년 11월 5일, 조특보 제71호, 간도방면의 항일독립운동 상황에 관한 건】 장백현에 집결하는 사람들은 9월 하순에 이르면 약 300명이 되었고, 이들은 그후 기아(飢餓)와 혹한(酷寒)으로 도망하는 자가 다수 발생하여 현재 100명 내외에 불과하나, 삼림지대에 동굴을 파서 생활하면서……, 이들의 동굴을 습격한 결과 무기와 피복이 숨겨진 곳이 많았고,……

- 【1919년 11월 15일, 고경 제32500호, 간도지방의 무장항일단원(團員) 등에 관한 동향 보고】 홍범도(洪範圖)의 부하 한상열(韓相烈)은 결사대 120~170명을 이끌고 국자가(局子街)에서 7리 정도 떨어진 연길현 일양구(一兩溝)에 도착하여 국자가에서 포목 18필을 구입하여 동복(冬服)을 새로이 만들었다. 이 복장은 조선식 옷으로 짧으며 끈을 뒤로 돌려 우측 가슴부위에서 묶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단(正義團)의 명칭을 군정부(軍政府)로 고치고, 모연(募捐)대원 60명을 조직하였다. 대원들은 중국옷을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한 뒤, 4~5명이 1개 조가 되어 현재 각 방면으로 출동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중이다.

- 【1919년 12월 2일, 고경 제34101호, 간도의 맹호(猛虎)단원의 행동에 관한 정보】 11월 26일, 중국군대 53명이 연길현 일양구 부근에 잠복하여, 노령(露領) 방면으로 들어가는 결사대를 토벌하여, 군복 20벌, 배낭 18개, 나팔 2개, 모자 26개를 압수하였다.

- 【1920년 1월 9일, 조특보 제1호, 간도에서 통구(通溝) 방면의 항일운동 상황보고】 이들은 민가에 숙영하며 무기와 피복을 은닉시켰다. ……11월 하순, 중국군경 약 50명은 일본경관과 함께 이곳에서 수명(數名)을 체포하였는데, 군복 20벌, 군모(軍帽) 26개, 배낭 18개를 압수하였다.

- 【1920년 1월 27일, 조특보 제4호, 혼춘(琿春)의 항일독립운동 상황보고】 12월 초순에서 중순, 각자 총과 탄약을 휴대하고 조선복을 착용한 후, 수개의 대열로 나뉘어 왕청현(汪淸縣)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 【1920년 3월 17일, 조특보 제16호, 혼춘(琿春)의 항일독립운동 상황보고】 현재 이 현(縣)에서 비교적 결속력이 강한 단체는 황병길(黃丙吉) 휘하의 30여 명과 초모정자(草帽頂子)도독부 소속의 백여 명인 2개의 단체이다. 전자는 군복을 착용한 후…….

- 【1920년 3월 25일, 고경 제8546호, 간도 국민회(國民會)의 총기 구입에 관한 정보】 홍범도의 수하 약 200명은 4월 초순 조선내지(朝鮮內地)로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피복과 식량을 준비 중이다.

- 【1920년 4월 13일, 고경 제10569호, 간도의 무장항일단(武裝抗日團) 행동에 관한 보고】 4월 2일 오전 1시경, 중국 육군병사의 복장을 하고 총기를 휴대한 조선인 약 60명이 팔도구(八道溝)를 습격하여, ……이보다 앞선 1일 오후 6시경, 같은 복장을 한 조선인 약 300명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 남하하였었다.

- 【1920년 4월 15일, 고경 제10658호, 군무서(軍務署)의 자금모집에 관한 정보】 홍범도는 현재 합모당(蛤蝐塘)에 있으면서 총기 구입을 위해 노령(露領)에 파견된 부하의 귀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무기가 도착되면 무송현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다. 그의 부하들은 중국옷을 착용하기 위하여 국자가에서 옷감을 구입하여, 현재 합모당에서 군복을 조제 중이다.

- 【1920년 4월 23일, 조특보 제24호, 혼춘(琿春)의 항일독립운동 상황보고】 이들 단체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일부는 조선옷을 입고 대부분은 중국식 복장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하였다.

- 【1920년 5월 13일, 고경 제14188호, 간도 상부(商埠) 부근의 총영사관 경찰관 파견에 대한 보고】 군복 위에 조선옷을 입고 총기를 휴대한 국민회 대원 약 70명은 4월 28일경, 연길현 합모당지역에서 동불사(銅佛寺) 북쪽에 도착하였다.

- 【1920년 5월 29일, 고경 제15246호, 간도의 대한국민회 장정들의 훈련에 관한 건】 군복은 중국군대용과 대략 비슷하며, 쥐색 목면(木棉)으로 만들었고, 역시 목면으로 만든 각반을 착용하였다.

- 【1920년 11월 16일, 조특보 제48호, 장암동(獐巖洞) 부근의 토벌(討伐)상황 보고】 이번 토벌작전에서 얻은 노획물은 다음과 같다 : ① 폭탄 1개 ② 미국제 권총 1자루 ③ 대형 태극기 1 ④ 독립군 병사용 동의고(冬衣袴) 1벌

- 【1921년 1월 11일, 고경 제40109호, 간도의 항일독립단체 조직계통 보고】 군정서(軍政署)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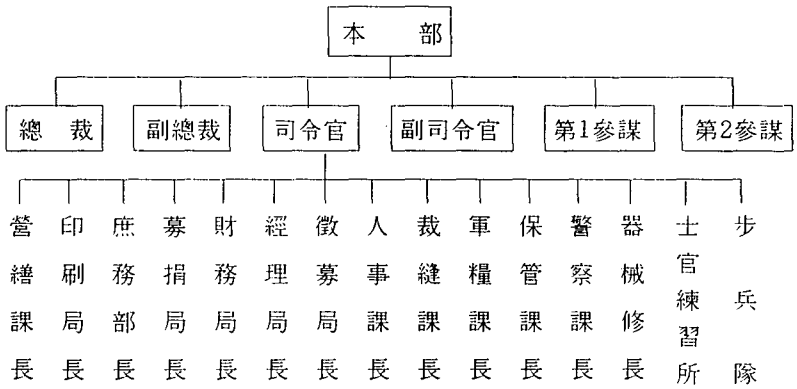

*재봉과장 : 과원을 감독하여 군복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을 담당한다.

- 【1921년 2월 17일, 고경 제1682호, 대한군정서(軍政署)와 중국관헌 관계 보고】 (김좌진 사령관에게 보내는 서신 중 일부) 국민회 소유의 포목 50필과 재봉용 미싱기 13대, 도끼 18자루, 군용신발 50여 족, 소총 2정을 어제 국자가(局子街)에 운반하였습니다.

- 【1921년 5월 11일, 고경 제14270호, 간도지역의 치안상황 보고】 4월 13일, 장총을 휴대한 자 3명과 칼을 소지한 자 1명이 모두 다갈색 군복을 착용하고……, 그보다 앞선 4월 11일, 대한독립군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다갈색 군복을 착용하고……, 4월 10일 오후 8시경, 군정서계열에 속하는 4명이 중국옷과 흑색의 조선옷을 입고 각자 권총을 휴대하여…….

- 【1921년 6월 25일, 고경 제19918호, 간도의 노령(露領) 방면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보고】 용정촌(龍井村)과 기타 지역에 있는 재봉집에 중국군경제복(中國軍警制服)과 비슷하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 【1921년 11월 5일, 고경 제28721호, 서간도(西間島)의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 (太極團·軍備團·興業團) 이상 각 단원은 태극 휘장을 하고, 검은 모자에 황색군복을 착용하였다.

- 【1919년 12월 15일, 고경 제35383호, 항일결사대의 복장 등에 관한 건】 11월 26일, 국자가의 중국군대 53명은 연길현 일양구 부근에 잠복하여 노령(露領) 방면에서 들어오는 결사대를 토벌하였고, 이때 압수한 군복 및 그 소지품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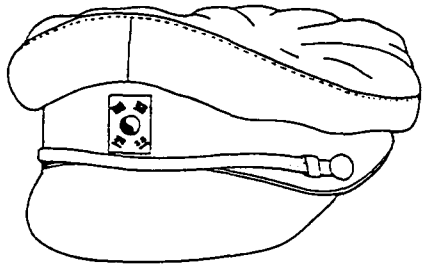

모 자(草色木棉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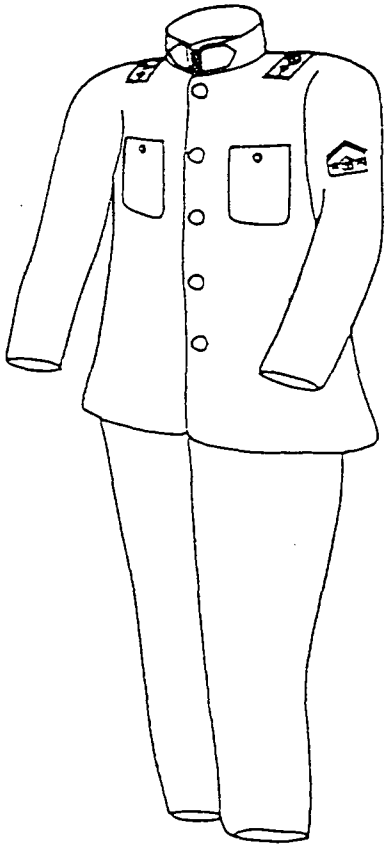

양복(草色單衣, 木棉製)

〈그림 4-87〉 決死隊의 모자와 양복

① 군복은 아래와 같이 1겹으로 된 목면(木棉)으로 만든 것이며, 모자 역시 목면으로 만든 여름옷이다. 견장 및 완장은 탈락된 것이 많으나 그림과 같이 부착하였다. 제작이 아주 조잡하였으며, 똑같이 만들었다. 배낭은 거치른 마대를 둥그렇게 묶는 형식이고 어깨끈을 매달았다.

② 탄약대는 중국군대가 사용하는 것과 대충 비슷하며, 탄약대 안에 일본 30년식 총탄이 남아 있어, 이로 보아 결사대원 중에는 30년식 총을 소지한 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나팔 2개는 일본군대와 제작방법이 같았다.

④ 압수품 중 권총띠 1개는 그 생김새로 보아 러시아군대가 사용하는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 【1920년 5월 13일, 고경 제14326호, 항일독립운동자의 이동에 관한 건】 조선인 127명이 4월 28일 미명, 초모정자(草帽頂子)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6명은 카키색 복장에 검을 차고 단총(短銃)을 휴대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각종의 여러 가지 색깔의 복장을 하였으며, 3분의 1은 짚신을 신고 있었다.

이외의 군복식에 관련된 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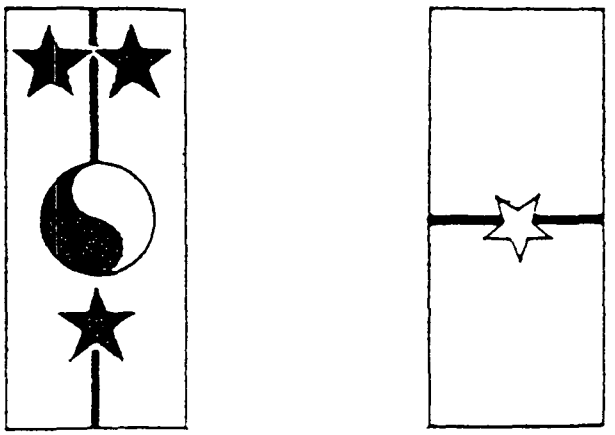

견장(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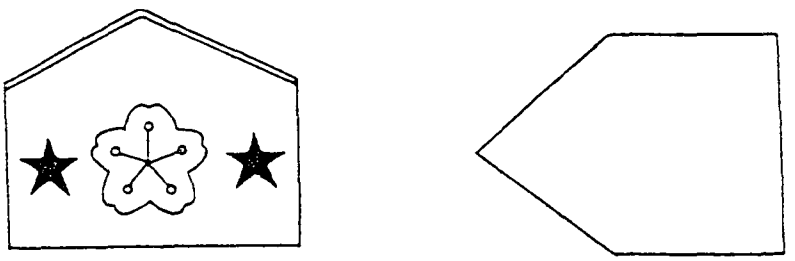

완장　　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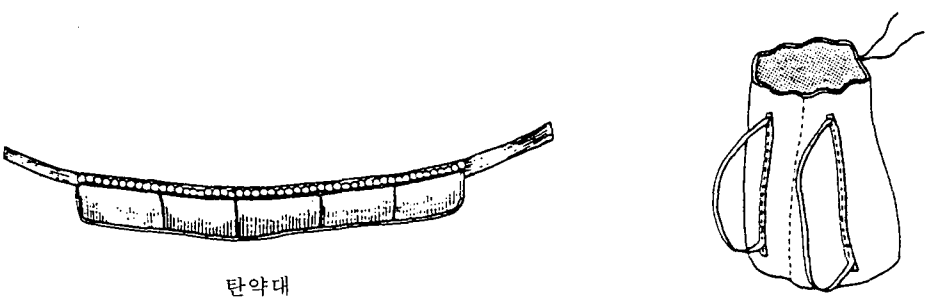

탄약대　　배낭

〈그림 4-88〉 肩章·腕章·彈藥袋·背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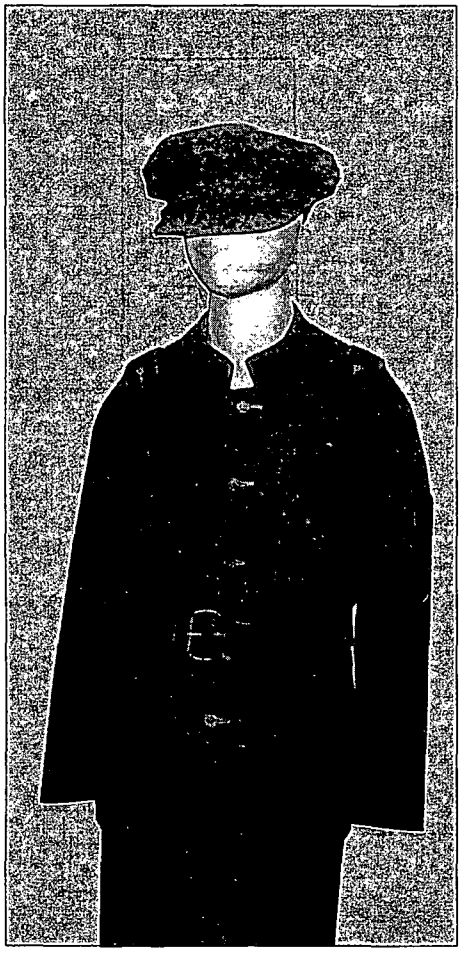

〈그림 4-89〉 독립기념관에 제작 전시된 軍服

- 【동북청년의용대 조직대강】 본군의 기치는 백자대홍기(白字大紅旗)로 하고 그 위에 '동북청년의용군'이라 쓰고, 또 대원은 일률로 백자홍수장(白字紅袖章)을 착용하여 부호로 하고 그 위에 불파사(不怕死)·불투항(不投降)이라고 쓴다.[96]

- 【혁명군의 행동과 복장】 주간에는 양민을 가장하고, 부대의 행동은 모두 야간에 행한다. ……무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중국식 군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는 중국옷 또는 조선옷을 착용할 것.[97]

이상의 자료를 표로 요약 작성해 보면 〈표 4-2〉와 같다.

당시 독립군들은 활동목표를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으로 삼았던 관계로 이역에서의 활동이었지만 고국의 풍습을 중히 여겼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 자체가 정규군대에 의해 수행되는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전쟁상황에서의 환경적인 조건과 그 필요성에 의해 중국옷 또는 중국군복, 혹은 소련군 복장을 자주 착용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을 앞장세워 일본옷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독립군들이 수행하는 전쟁양식은 유격전 양식이었고 또한 풍부한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군복의 유지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착용하는 신발류도 군용신발·짚신 두 가지의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

96) 李康勳 編, 1990, 『獨立運動大事典』 권2, 대한독립유공자 유족중앙회, p. 328

9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獨立運動史資料集』 제10, pp. 653~654.

〈표 4-2〉 滿洲지역 독립군 군복에 관한 종합 표

	기록에 보이는 내용	요 약
군복양식	• 조선식 옷을 개조 • 중국 군경 제복을 모방 • 결사대(決死隊)의 경우, 양복을 착용	조선옷을 개조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중국식 등의 외국군 복장을 모방함
군복색깔	• 황 색 • 다갈색 • 쥐 색 • 카키색 • 황색군복에 검은 모자 • 기 타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으나, 주로 황색 등의 은닉형 색깔을 많이 사용함
군복제작	• 미싱 2대로 제작 • 미싱 3대로 중국인 織工활용 • 포목 50필과 미싱 13대로 제작 • 포목 18필로 직접 제작 • 옷감을 구해 제작 • 裁縫課長 직책을 두어 군복의 수선과 제작임무를 부여	직접 제작의 경우가 많으나, 중국 군경의 제복과 같은 경우 중국인을 활용하였고, 담당직책을 둘 정도로 군복 제작의 중요성이나 애로를 엿볼 수 있음
군복수효	• 500명 인원의 복장과 모자 준비 • 150명 • 70명 : 군복 위에 조선옷 착용 • 20벌의 옷과 모자 26개 • 30여명의 군복 • 200명분 준비 • 360여 명의 중국군 병사 복장	군복의 수효는 20명에서 많을 경우 500명에 이르는 수효임
군복보관	• 동 굴 • 민 가	유격성의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조건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옷감을 사거나 혹은 국내에서 옷감을 반입하여 스스로 또는 중국인들의 재봉집에서 복장을 만들었으며, 옷감 자체도 일괄 지급되는 식이 아니었기에 각 독립군들의 성격에 따라 그 색깔이 다르게 제작되었다. 군복의 착용단위는 20~3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도 이르렀다. 군복의 모양은 당시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식 또는 소련식을 모방 제조하였으며, 단지 그 표지만을 바꾸는 식으로 운용하였고, 조선식 옷을 개조하기도 하였다.

나. 光復軍의 服裝

중국측에서 광복군의 행동을 규제하는 '9개 준승'을 취소하고, '원조판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광복군은 독립성과 자주권을 지닌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에서는 '군인의 각종 표지(標識)제정안'(1945년 1월 9일)과 '군인제복 양식(樣式)제정안'(1945년 2월 19일)을 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 것이다.[100] 광복군은 1945년 2월에 복식제식(服飾制式)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일정한 제복이 없이 중국식의 군복과 그 표지를 사용했으나, 복식제식이 정해진 후 독자적으로 광복군의 표지와 군복을 사용 착용하게 되었다. 다만, 재정문제 등의 압박에 의해 복식제정 이후에도 일부 사령부 요원만이 의식(儀式)이나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업무수행시에만 착용하였을 뿐이었다. 임시정부의 재정적 압박 실정을 1941년 10월에 있었던 정부의 정무보고(政務報告)에서 살펴본다.[101]

> 재 정(財政) : 재정으로 말하면, 작년 10월에 중국부녀위로전방장사총회(中國婦女慰勞前方將士總會)로부터 ○○만원의 위로금 수입이 있은 이외에는 오로지 미국동포들이 거두어 보내는 금전 수입이 있을 뿐인데 그것도 미국 각 단체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여 독립금 명목의 일종으로 매월 1,050달러로 고정되어 그 이상의 희망을 바랄 수 없는데다가 환율은 법정가격을 초월할 수 없게 되어 이때까지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에 비하여 떨어졌고, 그 반면에 각종 물가는 날마다 올라 실로 현상유지에도 급급한데, 가속도로 발전되는 광복군 경비를 조달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존하는 광복군 인원에 당장 소용되는 양식·피복 및 집합훈련 등에 요구되는 비용만도 약 십여 만원을 필요로 하게 된 상황임.

결국 이상과 같은 재정적 압력은 임시정부 경위대(警衛隊)의 복장 제작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을 정도였다. 1943년 제26차 의정원(議政院)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102]

---

100) 두 案은 1945년 4월 14일, 임시정부 議政院 第一科 심사위원회에서 총 12건의 追認案이 심사되면서 追認되었다. 아쉽게도 그 내용은 현재까지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01) 국회도서관, 앞의 책, p. 265.
102) 국회도서관, 위의 책, p. 358.

- 질 문 : 경위대에 특별비(特別費)는 기밀비(機密費)인가요?
- 답 변 : 그것은 제복(制服) 해준 것이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녔던 여러 가지의 취약점[103] 중에서 재정적 압박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김구(金九)를 중심한 몇몇 각료만 남아 있는 형편에 임시정부의 가옥세(家屋貰)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104] 아래에 의정원 회의록에 실린 1945년도 예산안 관계의 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보았다.[105]



〈그림 4-90〉 독립기념관 소장 중국정부 지원 군복

손두환(孫斗煥) : 앞으로 돈을 많이 얻어 온다면 모르거니와 곤궁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활도 어려운데……

조완구(趙琬九) : 생활곤란 다 일반입니다. 나 영양부족에 죽을 지경이나……

임시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측과의 협조·공채(公債) 발행·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등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모두 계획했던 바와 같이 순조롭지 못했고,[106] 이러한 재정적 궁핍은 광복군의 군복 관련사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 결과, 실제 전투에 종사하는 인원은 주로 중국군 전투복을 착용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재정적 요인 외에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었던 시기와 나라를 잃은 가운데 이국(異國) 땅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해야 하는 애국단

102) 국회도서관, 위의 책, p. 358.
10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210~212.
10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Ⅲ 資料篇, p. 438.
105) 국회도서관, 앞의 책, pp. 485~506.
106) 국편, 『한국사』 21, p. 239.

체의 한계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1945년 2월에 공포된 광복군의 복식은 다음과 같다.

(1) 正 裝

정장차림은 정모에 정복을 착용하고 단화를 신었으며, 상의 위에 갈색 가죽으로 된 Y형 어깨띠와 허리띠를 매었다. 정복 상의 소매에는 장관급과 영관급에 한하여 장관급은 황색, 영관급은 은색의 수장(袖章)을, 정장·영(正將·領)은 3줄, 부장·영(副將·領)은 2줄, 참장·영(參將·領)은 1줄씩 각각 부착하였다.

일상근무시는 정모 대신 주로 약모(略帽 : 일명 게리슨 모자)를 썼다.

(2) 戰鬪裝

전투모에 면직(綿織)으로 된 전투복〔상의는 광복군 정복 제식과 동일〕을 착용하였으며, 상의 위에 정복차림시와 같이 Y형 어깨띠와 허리띠를 매고, 신은 목이 긴 편상화(編上靴)에 각반을 착용하였다.

(3) 階級章

장교 견장(肩章)은 가장자리 수식(繡飾)과 바탕 위에 무궁화 표지의 색깔로 관등(官等)을 구분하였는데, 수식의 색깔은 장관급은 적색이고 영관급은 황색이며 위관급은 청색이었고, 무궁화 표지의 색깔은 장관급은 금색이고 영관급은 은색이고 위관급은 동(銅)색으로 하였다. 하사관급은 계급 표지 밑에 별을 첨가하였다.

(4) 徽 章

가) 帽 標

모표의 무궁화와 태극은 우리나라를 상징하였고, 별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였다.



〈그림 4-91〉 正　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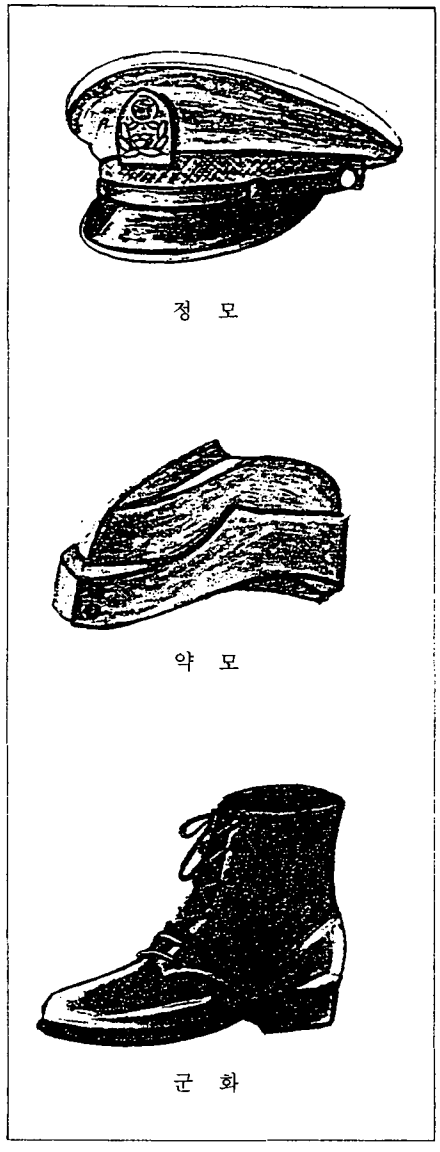

〈그림 4-92〉 正帽·略帽·軍靴



〈그림 4-93〉 戰鬪裝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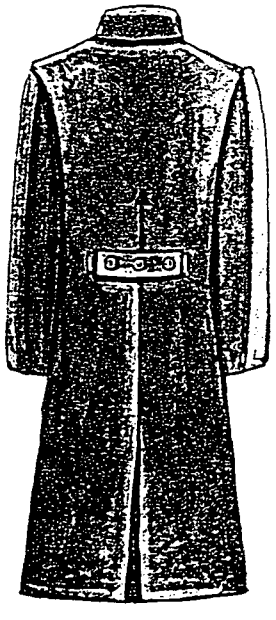

후 면

〈그림 4-94〉 外 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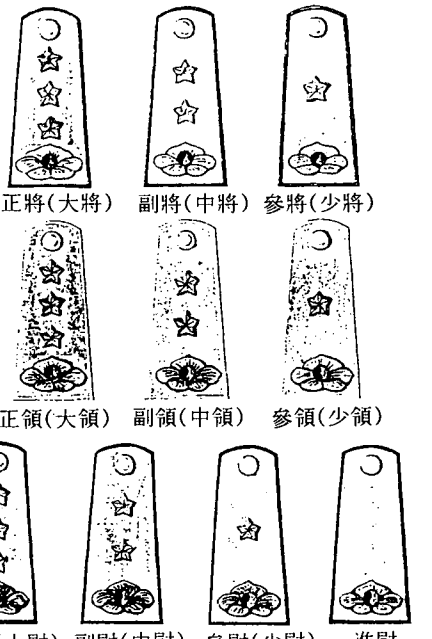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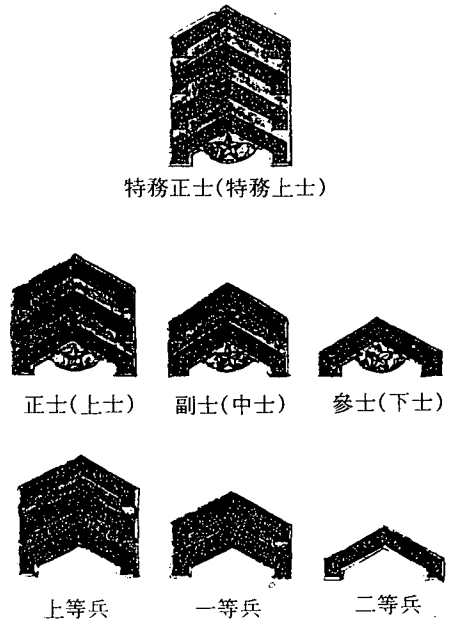

〈그림 4-95〉 階級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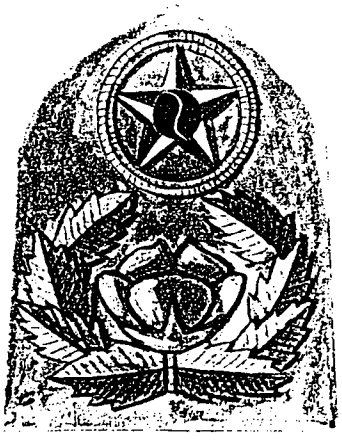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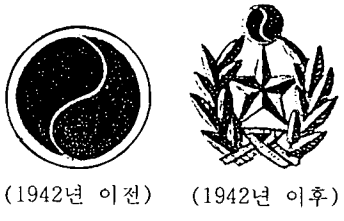

〈그림 4-96〉 帽 標

나) 部隊 標識

상의 호주머니 상단에 부착하였으며, 각 부대에서 제정하되 광복군 총사령부 군무부(軍務部)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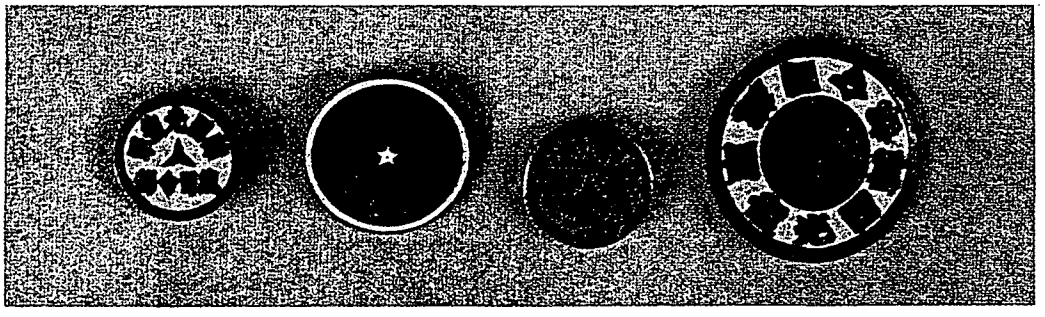

〈그림 4-97〉 所屬(部隊) 標識

다) 兵科 徽章

상의의 좌우측 깃에 달았다. 단, 시종무관(侍從武官) 휘장 속의 백색별은 피(被)수행자의 계급에 따라 별의 수를 달리하였다.



〈그림 4-98〉 將校 兵科 徽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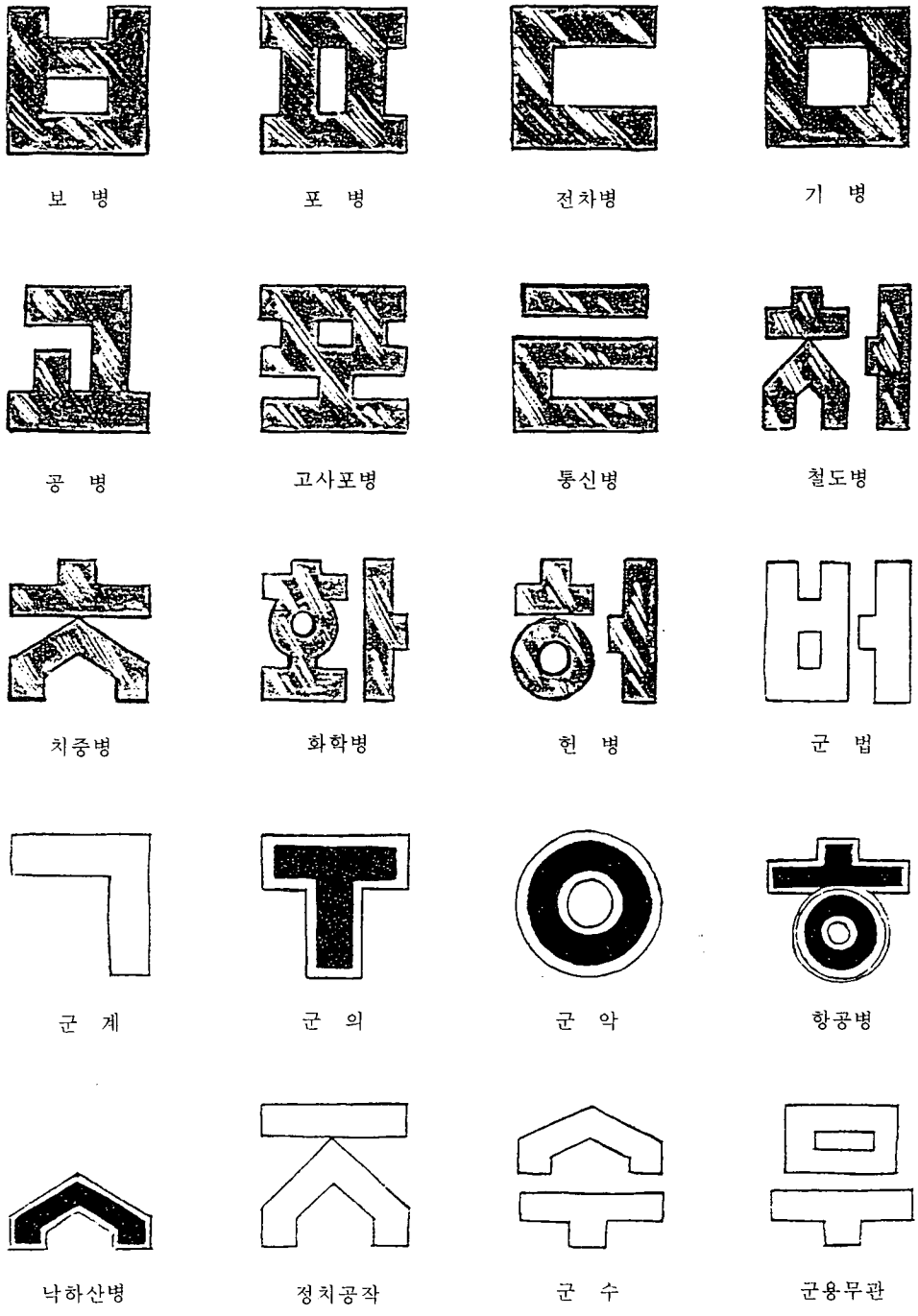

〈그림 4-99〉 士兵 兵科 徽章

3. 獨立運動期 軍服飾의 特徵

나라를 상실한 애국의용군대(愛國義勇軍隊)로서 이국 땅에서 활약하는 민간 군사단체가 독립을 위해 수행하는 전투란 어떻게 보면 유격전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며, 중국 영토를 근거지 및 활동무대로 삼는 독립군의 유격대는 복장상의 한계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현지 주민과의 동화(同化)를 위해서 중국옷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유 중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재정상의 애로로 말미암아 정규적이고 통일된 독자적인 복장을 착용할 수도 없었고 또한 그 필요성도 절박하지 않았던 점도 들 수 있다. 각 독립군 단체들은 장검을 휴대한 지휘관의 인솔하에 나팔을 불면서 외형상으로 크게 위세를 떨쳤으나, 행군간에 급식문제나 관헌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107] 이 때문에 필요시에는 일본어를 잘 하는 사람에게 일본옷을 입혀 일본인이라고 칭하면서 러시아 민경(民警)의 눈을 속이고 총기를 운반하였다.[108]

한편, 1940년 9월, 임정(臨政)의 국군으로 창설되어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는 최후 순간까지 활동하였던 광복군은 일제의 패망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다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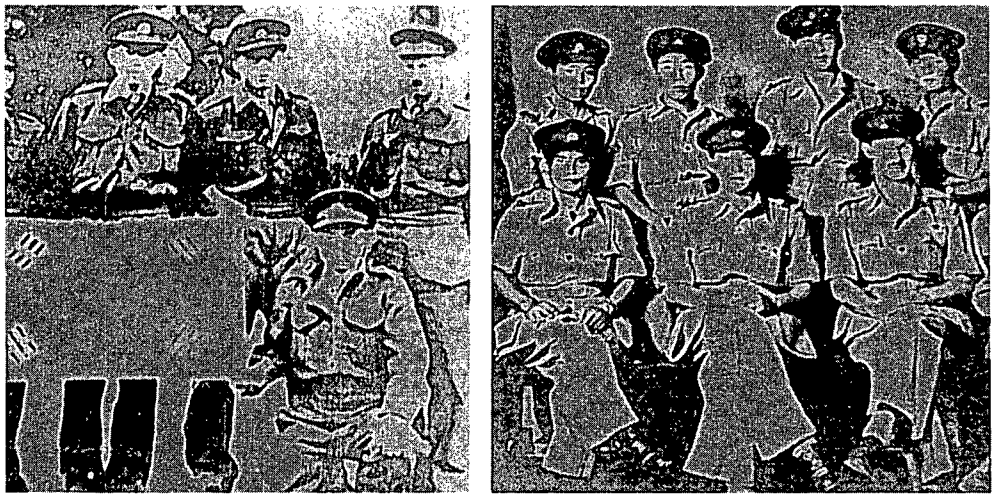

〈그림 4-100〉 인도·버마 전선에 파견된 광복군

107) 김정명, 앞의 책, 제3권, p. 150.
108) 김정명, 위의 책, p. 510.

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한 다른 나라와의 연합작전을 준비하면서 군복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군복에 대한 조치가 소요(所要)를 따르지 못하여 다른 나라에 협동하는 대원의 경우 그 나라 군대의 복장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즉, 버마·인도전선에서 싸웠던 일부 광복군 요원들은 영국군 복장을 그대로 착용한 것이다.

광복군 군복식의 최대 난관은 무엇보다도 재정문제였다. 임시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수입과 지출을 도저히 예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둘째로는 물가관계[109]로 매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110]라는 현상을 항상 겪어 왔다. 이러한 예산의 압박은 사고력의 마비까지도 초래하여, 심지어는 반드시 해야 할 일까지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장 좋은 예로는 '9개 준승'의 취소 통보가 있은 후 임시정부로 귀속되는 광복군에 대한 복장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 내용을 1945년 4월에 있은 제38차 의정원 의회 발언기록으로 살펴본다.[111]

【4월 15일 회의】

조소앙(趙素昻) : 그 동안 한인소속부대(韓人所屬部隊)를 정부로 가져오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의복 및 기타를 공응(供應)하느냐, 어떻게 맹국(盟國)에 참가시킬 것을 통수부(統帥部)에 지휘로 하겠느냐는 문제도 많이 토론하였습니다. 각 부대의 피복 등을 국고(國庫)로 하여야 할 것을 국고가 텅 비었으니…….

손두환(孫斗煥) : 하총장(何總長)의 편지[112]가 언제 왔어요? 8월 23일에 왔다면 총사령부에 한국기가 그때부터 띄워졌어요? 또 복장은 아직 못 하였다 하더라도 휘장은 우리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은 경비가 없지 않을 터인데 어찌 아니하였습니까?

조성환(曺成煥) : 그때 물가로 보면 7만5천원은 가져야 하겠는데, 정부나 총사령부에 경비가 그리 못되어 못하여 온 것입니다.

---

109) 부유한 양쯔강 하류지역으로부터 奧地인 重慶으로 들어간 중국의 당시 경제상황은 稅收에 필요한 자금을 오로지 지폐발행으로 충당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John K. Fairbank, 『東洋文化史』 下(全海宗 譯), 1969, pp. 824~825)

110) 국회도서관, 앞의 책, p. 374.

111) 국회도서관, 위의 책, pp. 416~427.

112) 중국군사위원회 참모총장 何應欽이 '9개 준승' 취소를 통보한 편지를 지칭한다.

손두환 : 75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만5천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라 봅니다. 오늘로 당장 그 돈 내놓아 만들게 하기로 하기 바랍니다. 돈 7만5천원이 없어서 그것 못하겠습니까?

【4월 17일 회의】

손두환 : ……그리고 선전부(宣傳部)에 하나 물을 것은 중국영화사에서 이번에 부양(阜陽)서 온 이들에 관하여 활동사진을 찍겠다는데 어째 자기가 몰라서 못하고 또 자기로서는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엄항섭(嚴恒燮) : ……그리고 영화사에서 찍겠다는 사진은 중국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 붙인 모표(帽標)가 아직 우리 태극으로 되지 않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으면서도 애국지사들은 비록 여유가 없는 환경이었지만 의복이 갖는 위엄이나 소속감 나아가 충정(忠情)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군복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광복군은 창설 당시 대한제국 군대에서 사용하던 계급을 사용하였으며, '9개 준승'의 취소 이후 곧 이어 광복군 본래의 계급을 사용하면서 군인에 관련된 각종 복식과 표지에 관련된 규정(안)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충정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표현도 의복 위에 종종 사용되었다. 앞에서 열거된 〈1920년 2월 2일자 고경 제2538호〉에 나오는 김중건(金中建)의 원종학교(元倧學校) 생도들은 모장(帽章) 및 국기의 중심에 부처의 가슴에 있는 길상(吉祥)의 표시인 만(卍)자를 새긴 휘장을 부착하였고, 동북청년의용대(東北靑年義勇隊)의 경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의미의 '불파사(不怕死)'나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는 '불투항(不投降)' 등의 글씨를 새긴 일, 그리고 가장 과격하고 노골적인 항일단체로 알려진 결사대(決死隊)[113]의 경우에는 정복 양복을 착용시킨 예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113) 1918년 6월에 柳河縣 三源浦에서 조직되었으며, 三源浦 大成中學을 중심으로 기타 학생들이 결성한 가장 격렬하고 노골적인 항일단체이다(김정명, 앞의 책, 제3권, pp. 877~878).

結　論

의복은 인간의 본능과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 발전하여 왔다. 인류가 지닌 천생적인 취약성, 즉 생존경쟁에서 다른 짐승류에 비하여 약한 피부와 신체에 부수되어 있지 못한 공격 및 방호수단의 결여를 극복해 보려는 의도에서 착안된 의복은 필연적으로 식(食)·주(住)와 동등하게 중요시되었으며, 이미 야만시대부터 기후·풍토·인간의 보호본능에 활용되어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달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옷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 의복은 신체보호와 장식개념이란 두 가지 큰 관념 아래 제작되었으며, 오늘날의 일반복식 양상으로 발달된 것은 후자가 크게 작용된 것이고, 군인들이 착용하는 특수복식은 전자가 더 많이 작용된 것이다.

씨족 또는 혈연사회에서 발전된 부족국가 시대에 부족간에 분쟁이 발생되면 평상복에 모피 등의 사나운 짐승의 두터운 껍질이나 목재 보호막을 걸치고 무기를 휴대함으로써 전투복장이란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후 시대가 흘러 국가가 형성되고 사회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부족간의 분쟁은 국가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인이 사용하는 무기는 훨씬 예리해져 예전에 착용하여 왔던 직물류나 피혁으로 제작된 전투복장으로는 공격무기의 예리함을 막을 수가 없어, 결국 방호용 의복은 갑주로 대체되게 되었다.

갑주는 전사들의 몸을 둔중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위엄을 덧붙이기 위한 장식이 가해져 육중함과 호화로움이 함께 표출되었다. 당시의 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사들이 착용한 군복은 통일된 색상이나 제작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갑주의 제작 모양과 색상 심지어는 신체에 두르는 갑주의 점유율이 결정되곤 하여 부유층은 전신 방호용 갑주를 제작 착용하였고, 빈곤층은 고작 투구 정도를 썼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갑주를 중심으로 하는 군복식이란 각양각색의 모양을 보이는 통일되지 못한 제식(制式)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의 군복식이 그런 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은 전장(戰場)에서의 전술의 발전이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후, 군사사상의 발전으로 인한 전술의 발달이 이루어지자, 전장은 전사들에게

는 빠른 기동력을 요구하였고, 지휘자들에게는 전략적 우회기동이나 포위 등의 한 차원 높은 군사전략 수행을 요망함으로써, 군복식은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었던 주안점에서 식별과 전투수행에 편리한 것으로 그 착안점이 서서히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때맞추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화기(火器)의 등장이었다. '원거리 무기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화약무기를 휴대한 사수(射手)는 호화로운 색상의 군복 착용자를 가장 좋은 목표물로 삼았고, 반면 상대방은 화기의 직사(直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폐·엄폐와 약진·돌진 등의 전투동작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편리한 군복을 착용해야만 했다. 이제 갑주 중심의 군복식이 오늘날의 군복식 양상으로 변모되어 나가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군복식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 복제라고 할 수 있는 저고리 바지와 포(袍)의 착용을 고수한 민족이다. 이런 현상은 전투복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대의 우리 민족은 북방계(北方系) 복식인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였고, 여기에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무판자나 가죽·동물의 뼈 등을 몸의 중심부위인 가슴과 등에 갖다 대기 시작하면서 원시갑주가 출현했다. 당시의 유기질제로 된 유물로는 삼국시대 이전의 것은 남아 있지 않고, 삼국시대의 것으로 동물의 뼈를 갈아서 엮어 만든 찰갑편(札甲片)이 몽촌토성(蒙村土城)에서 출토되었고, 백화피(白樺皮)를 종횡(縱橫)으로 붙여서 제작한 투구가 신라의 금관총(金冠塚)이나 식이총(飾履塚)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후, 금속문화가 발달하면서 청동제와 철제로 만든 갑주를 착용하게 되었다. 금속기시대에 만든 가장 오래 된 유물로는 7~8세기의 것으로 추정하는 고조선(古朝鮮)시대의 청동제 복발형(伏鉢形) 투구와 철제 갑옷의 소찰(小札)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갑옷의 형태는 잔존(殘存) 찰편(札片)이 적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삼국시대의 갑주는 북부의 고구려와 남부의 신라·가야의 갑주양식이 달랐다. 고구려는 북방 기마민족의 영향을 받아 몸의 굴신(屈身)과 유연성이 좋은 찰갑(札甲)을 착용하였고, 한편 신라는 가슴과 등을 보호하고 옆에 개폐(開閉)장치가 달린 판갑(板甲)을 착용하였다. 고구려의 갑주는 대퇴갑(大腿甲)과 경갑(脛甲)이 긴 바지형이거나 승마용 바지형으로 고유의 유고제(襦袴制)였음을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고, 신라와 가야에서는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유물의 소찰을 통해 볼 때 유상제(襦裳制)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遺民)을 통솔하면서 부대 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의 소속이나 직책을 이중으로 된 저고리 깃을 착색(着色)하여 구분하는 금당제(衿幢制)라는 독특한 방식을 시행하였고, 이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중후한 철제갑주는 보다 가벼운 갑주로 대체되었으며 이제 판갑이나 찰갑과 그에 부속하는 부속갑(附屬甲 : 頸甲·肩甲·肱甲·大腿甲·裳甲·脛甲 등)은 없어지고, 약 4~10㎝의 네모난 철편이나 갑편을 겹쳐 옷에 꿰매 붙인 두정철갑(頭釘鐵甲)과 두정피(頭釘皮)·경번갑(鏡幡甲)·면갑(綿甲) 등을 착용하였다. 이때의 갑주양식은 일반적으로 캐프탄(caftan)형에 속하는 포형(袍形)으로, 앞중심이 트이고 양쪽에 직선소매를 붙였으며, 길이는 엉덩이선 정도까지 내려오고 포(袍)의 양옆과 뒤 중심에는 트임을 주는 활동에 편리한 형태이다. 즉, 고려시대에 와서 갑주양식은 삼국시대의 유고제나 유상제에서 포형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포형갑주(袍形甲冑)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한국의 갑주양식으로 정착된다. 이는 아마도 포가 우리 고유의 기본 복제였기 때문에 용이하게 채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갑주양식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수세기 동안 착용되었고, 단지 재료와 장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총포의 발달로 갑주는 두정철갑(頭釘鐵甲)·두정피갑(頭釘皮甲)·두석린갑(頭錫鱗甲)·면갑·쇄자갑(鎖子甲)·지갑(紙甲) 등이 있었으며(말기에 이르면 두정을 박아 위용만 보여주는 두정갑(頭釘甲)을 착용하였다), 군복으로는 첩리(帖裏)를 전투복장으로 삼게 되었다. 첩리는 소매통이 좁은 상의와 주름을 잡은 치마를 허리에서 연결시킨 포(袍)로서, 마상의(馬上衣)로 적합하고 활동하기 편리하여 처음에는 갑옷의 속옷으로 입었으나, 후에는 융복(戎服)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첩리는 후에 소매통이 점차 넓어져 두리소매가 되고 치마길이도 매우 길고 넓어져서 전투복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구군복(具軍服)이 등장하였다. 구군복은 동다리(同多里) 위에 전복(戰服)을 겹쳐 입는데, 동다리는 고유의 포의 소매를 다홍색으로 하고 몸판은 주홍이나 녹색이며, 양옆과 뒤 중심 솔기에는 트임을 주어 활동에 편리하도록 했다. 전복의 색깔은 전통성을 나타내는 청색으로 하였고 역시 트임을 주었다. 동다리와 전복은 앞이 트이고 품이 여유가 있어 입고 벗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흉갑(胸甲)과 면갑 등을 속에 입기에 편리하였다.

군복식의 역사에 있어 구한말 시기는 비록 그 기간이 짧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군복인 벙거지에 동다리를 입던 구군복으로부터 서양식 군복으로 바뀌는 전환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 기간이다. 19세기말,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휩싸이게 되어, 군제(軍制)개혁과 무기의 개발을 위해 개항을 통해 일본·러시아의 군사제도를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추진하였으나, 당시의 환경에서는 일정한 근대화 목표를 세우고 일관성 있게 새로운 군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우리의 정계(政界)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군제가 바뀌는 상황이어서 근대화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변화만 심하여 수차례의 군제개혁에 따라 그때그때 군복식도 변화되는 상황이었다.

1881년, 일본의 군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별기군(別技軍)이 창설되어 별기군복을 처음 입게 되었는데, 이 군복은 한국의 바지 저고리를 변형한 것으로 고름을 없애고 단추를 달고 띠로 여미었으며 깃은 서로 마주보는 맞깃으로 하였고 바지의 대님은 없애고 바지통을 좁혔다.

이어 1882년, 임오군란으로 청(淸)의 무력간섭에 의해 청의 군제에 따른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다시 종래의 구군복을 착용하였다.

그후 1894년에 발생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제(陸軍服裝規制)'가 선포되면서 일본군제를 받아들이고 서양식 전투복을 처음으로 착용하였다. 전투복은 스탠드 칼라에 앞 중심에 단추 5개를 단 합임식(合衽式) 저고리였고, 군모(軍帽)는 투구형으로 꼭대기에 황금색 쇄(鎖)가 부착되어 있고, 수장(袖章)·모표·단추에는 태극무늬와 이화(梨花)·무궁화잎·화살무늬〔箭紋〕 등 문양을 사용하여 한국의 자주성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군제가 채택되면서, 1897년 5월 15일, 새로운 '육군복장규칙'이 제정되어 프랑스식 군복인 원통형 모자에 돌먼(dolman)형을 착용하였다. 앞가슴에는 검정색 실로 무궁화모양의 매듭을 부착하여 양쪽 가슴에 5개씩 부착하였고, 수장에도 무궁화모양의 매듭이 사용되었다. 군모 위 덮개에는 이화(梨花)표지를 수놓아 붙이고, 모자 양옆에는 무궁화를 새긴 금속제 단추를 달았고, 군모의 턱끈에는 무궁화를 새긴 금속단추를 부착하였다.

1899년부터 1904년까지의 시기는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균형을 유지한 상태였고, 이와 동시에 민족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나, 이 시기를 이용하여 자주독립의 기치 아래 새로운 군제개혁을 일으키면서 군권(軍權)을 황제에게 직속시키는 원수부(元帥府)가 설치되었고, 군제개혁에 따르는 군복식제가 제정되었다. 이때의 전투복은

원통형의 군모에 흰색 깃털을 장식하였고, 군복은 무궁화무늬를 새긴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형이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하고, 뒤이어 승리한 일본에 의해 한·일합방과 1907년의 군대해산으로 우리의 군복은 사실상 그 명맥이 끊기고 말았다.

구한말 시기의 군복식은 군제의 개편에 따라 동요가 심했으나, 열강(列強)의 군복을 착용할 때에도 형태를 약간 달리하거나 태극·무궁화·배꽃·화살 무늬 등을 넣어 주체의식을 강조하였던 우리 민족은, 불행히 나라를 잃은 후에도 독립군과 광복군 복장에서 전통적인 태극무늬나 무궁화무늬를 계속 사용하여 우리 식의 군복식의 맥락을 이어갔다.

參 考 文 獻

第 1 章 古代의 軍服飾

■ 1차 자료

『史書』, 『舊唐書』, 『北堂書鈔』, 『北史』, 『魏略』, 『魏史』, 『周書』, 『增補文獻備考』, 『太平御覽』, 『海東繹史』, 『後漢書』, 『三國史記』, 『武經總要』, 『三國志』

■ 연구논저

高福南, 1984,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에 대한 分析」 世宗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8, 「안악2호분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4
_____, 1958, 「안악3호분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3
_____, 1959, 「평안남도용강군대안리제1호묘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2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月城路古墳群』
國立中央博物館, 1990, 『神秘의 古代王國 加耶』
_____, 國立光州博物館, 1992, 『特別展 韓國의 靑銅器文化』
國立晋州博物館, 1987, 『陜川磻溪堤古墳群』
金東旭, 1979, 「韓國服飾史」『韓國服飾史硏究』 亞細亞文化社
_____, 1982, 「韓國服飾의 基本構造」『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金文子, 1984,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硏究』 梨花女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 槪說』 一志社
_____, 1974, 「壁畫」『韓國美術全集』 4
_____, 1976, 『韓國文化의 起源』 探究堂
金正子, 1978, 『우리나라 帶에 대한 硏究』 世宗大碩士學位論文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博物館

리순진, 1964,「'부조예군'무덤에 대하여」『고고민속』1964년 4호

_____, 1974,「'부조예군'무덤 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4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4,『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무함마드 깐수, 1993,「韓國服飾과 西域服飾 間의 共通要素」『韓國의 服飾』檀國大石宙善記念民俗博物館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慶州皇南洞第98號墳(南墳)發掘略報告』

_____, 1974,『天馬塚發掘調査報告書』

朴春順, 1991,「바지考」中央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釜山大學校博物館, 1982·1983,「東萊福泉洞古墳群」Ⅰ『釜山大博物館遺蹟調査報告』5

釜山大學校博物館, 1988,「釜山老圃洞遺蹟」『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12

宋桂鉉, 1988,「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硏究」-嶺南地域 出土品을 中心으로-, 慶北大碩士學位論文

아더훼일(이춘근 옮김), 1990,『전쟁의 기원』인간사랑

柳喜卿, 1975,『韓國服飾史硏究』梨花女大出版部

_____, 1981,「先史時代에 있었을 우리 民族服飾을 생각하며」『服飾』5

李健茂, 1985,「慶州月城路古墳發掘調査」『嶺南地域考古學硏究의 現況과 課題』(第9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李如星, 1981,『朝鮮服飾考』민속원

李殷昌, 1977,「慶州仁旺洞古墳發掘調査」『韓國考古學年報』5

_____, 1978,『韓國服飾의 歷史』世宗大王記念事業會

李震卿, 1988,「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에 관한 硏究」誠信女大大學院碩士學位論文

이혜영·金文子, 1990,「우리나라 袍의 類型 및 源流에 관한 硏究」『服飾』15

任明美, 1987,「바지考」『大韓家政學會』25-2

전주농, 1963,「대동군 팔청리 벽화무덤」『고고학자료집』3(각지유적정리보고)

정찬영, 1974,「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4

朝鮮日報社, 1993,『輯安高句麗壁畫』

주영헌, 1963,「약수리벽화무덤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3(각지유적정리보고)

최무장·임연철, 1990,『高句麗壁畫古墳』

崔茂藏 譯, 1982,『高句麗·渤海文化－中國考古學者의 發掘報告書－』

崔鍾圭, 1983,「慶州九政洞一帶 發掘調査」『博物館新聞』139 國立中央博物館

崔鍾圭, 1983,「瓦質土器の檢討と意義」『古代伽倻の檢討』古代を考える 34

_____, 1983,「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釜大史學』第7輯

최한우, 1992,「튀르크어와 한국어의 비교연구」『韓國中東學會論叢』13

忠北大博物館·國立淸州博物館, 1990,『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1990年度 調査－』, 淸州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3,『北韓文化財圖錄』

황기덕, 1975,「무산범의구석유적발굴보고」『고고민속논문집』6

黃互根, 1978,『韓國裝身具 美術硏究』一志社

東京國立博物館, 1982,『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錄』, 東京

末永雅雄, 1934,『日本上代の甲冑』

_____, 1980,『增補日本上代の甲冑』

福尾正彦, 1987,「眉庇付冑の系譜－その出現期を中心に－」『東アジアの考古と歷史』上,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樋本杜人·中村春壽, 1975,「樂浪漢墓」2『石巖里第219號墓發掘調査報告』奈良

浜田耕作·梅原末治, 1924,「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朝鮮總督府古蹟調査特別報告』4, 1924

小泉顯夫, 1931,「第34號墳發掘調査報告」『慶尙北道 達城郡 達西面 古蹟調査報告』大正12年度 古蹟調査報告, 1931

野上丈助, 1970,「横矧板形式の短甲と附屬小札について」『考古學雜誌』56-2

齊藤忠, 1934,「慶州皇南里 第109號墳」『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1

社會科學院 朝鮮畫報社, 1986,『德興里壁畫古墳』講談社

朝鮮總督府, 1915,『朝鮮古蹟圖譜』2

_____, 1929,「高句麗時代之遺蹟」『古蹟調査特別報告』5

朝鮮畫報社出版部, 1985,『高句麗古墳壁畫』

池內宏, 1938,『通溝』滿洲國通化省輯安縣高句麗遺蹟

穴澤咊光·馬目順一, 1975,「南部朝鮮出土鐵製鋲留甲冑」『朝鮮學報』76

古谷毅, 1988,「京都府久津川車塚古墳出土の甲冑－いわゆる'一枚'の提起する問題－」『MUSEUM』No. 445(東京國立博物館美術誌 4月號)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吉林輯安的兩座高句麗墓」『考古』1977年 2號
南京博物館, 1981,「江蘇邳縣大墩自遺址第二次發掘」『考古學集刊』1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成東·鐘少异, 1990,『中國古代兵器圖集』解放軍出版社
楊泓, 1980,『中國古兵器論叢』文物出版社
王承禮·韓淑華「吉林輯安通溝第十二號高句麗壁畫墓」『考古』1964年 2期
雲南省博物館, 1977,「元謀大墩子新石器時代遺址」『考古學報』1977年 1期

第 2 章 高麗時代의 軍服飾

■ 1차 자료

『經國大典』, 『故事通』, 『高麗圖經』,『高麗史』,『高麗史節要』,『三國史記』,『大明會典』,『宋史』,『魏史』,『金史』, 『舊唐書』,『欽定古今圖書集成』

■ 연구논저

姜長熙 외, 1988,「韓國史 新講」高麗出版社.
高麗大學校博物館, 1990,『服飾類名品圖錄』三星文化印刷社.
高福男, 1986,『韓國傳統服飾史』一潮閣.
金東旭, 1979,『增補韓國服飾史研究』亞細亞文化史.
金庠基, 1985,『高麗時代史』서울大學校出版部.
金元龍, 1973,『韓國美術全集』同和出版社.
金渭顯, 1985,『遼金史研究』 裕豊出版社.
육군본부, 1983,『高麗軍制史』
文化財管理局, 1971,『文化財大觀』
朴龍雲, 1985,『高麗時代史』(상·하) 一志社.
邊太燮, 1971,「高麗政治制度史 研究」一潮閣.
孫敬子·金英淑, 1984,『朝鮮王朝 韓國服飾圖鑑』藝耕產業社.
_____, 1982,『韓國服飾資料選集』敎文社.
柳洪烈, 1979,『韓國史大辭典』韓英出版社.

柳喜卿, 1977,『韓國服飾史硏究』梨花女大出版部.

陸軍本部, 1980,『陸軍服制史』

_____, 1979,『韓國古代 武器體系』

李康七, 1987,『韓國의 甲冑』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李丙燾, 1961,『韓國史中世論』乙酉文化史.

李宰 外, 1988,『韓民族戰爭史總論』敎學硏究社.

任明美, 1992,『蒙古服飾』耕春社.

趙善美, 1983,『韓國肖像畫硏究』悅話堂.

河炫綱, 1989,『韓國中世史論』新丘文化社.

韓國歷史編纂會, 1980,『韓國의 歷史』內外文化社.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1,『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黃互根, 1976,『韓國裝身具美術硏究』一志社.

李善宰, 1990,『朝鮮時代 儒敎思想과 儀禮服飾硏究』世宗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任明美, 1993,「高麗王朝代 高麗와 交流하였던 諸國과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硏究」『服飾』20.

任明美 , 1994,「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 본 복식에 관한 연구」『服飾』23

白英子, 1985,『우리나라 鹵簿儀衛에 관한 硏究』梨花女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李美娜, 1983,「갑옷에 대한 硏究」梨花女大大學院碩士學位論文.

沈從文, 中華民國 70年,「中國古代服飾硏究」南天書局有限公司.

周錫保, 中華民國 75年,「中國古代服飾史」丹靑圖書有限公司.

王宇淸, 中華民國 76年,「中華服飾圖錄」世界地理出版社.

朝鮮總督府, 昭和6年,『朝鮮古蹟圖譜』11 景仁文化社.

杉本正年, 1984,『東洋服裝史論攷』(中世篇) 文化出版局.

第 3 章 朝鮮時代의 軍服飾

■ 1차 자료

『經國大典』,『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典錄通考』,『萬機要覽』,『國朝五禮儀』,『大典通編』,『大典會通』,『大典後續錄』,『續大典』,『南漢誌』,『版籍司

謄錄』,『林下筆記』,『星湖僿說』,『一哂錄』,『增補文獻備考』

■ 연구논저

최남선, 1948,『조선상식』동명사
차문섭, 1972,『朝鮮時代軍事制度硏究』단국대출판부
김동욱, 1973,『韓國服飾史硏究』아세아문화사
유희경, 1975,『韓國服飾史硏究』이화여대 출판부
육군본부, 1977,『韓國軍制史』
석주선, 1978,『韓國服飾史』보진재
이경자, 1978,『朝鮮朝 中後期 宮中服飾』이화여대출판부
_____, 1978,『韓國服飾史論』일지사
황호근, 1978,『韓國裝身具美術硏究』일지사
김동욱, 1979,『增補韓國服飾史硏究』아세아문화사
한국방송공사, 1980,『韓國服飾圖鑑』
육군복제사편찬위, 1980,『陸軍服制史』육군본부
이여성, 1981,『朝鮮服飾考』민속원
이경자, 1983,『韓國服飾史論』일지사
고복남, 1984,『韓國의 服飾類型과 樣式에 대한 分析』세종대박사학위논문
손경자·김영숙, 1984,『朝鮮王朝服飾圖鑑』예경산업사
_____, 1984,『韓國服飾資料選集』교문사
고복남, 1986,『韓國傳統服飾史』일조각
문화재관리국, 1986,『文化財大觀』삼성문화인쇄사
이강칠, 1987,『韓國의 甲冑』문화재관리국
임명미, 1988,『中國의 古代服飾硏究』경춘사
이선재, 1990,『朝鮮時代 儒敎思想과 禮儀服飾硏究』세종대박사학위논문
고대박물관, 1990,『服飾類名品圖錄』
김정자, 1996,『韓國軍服의 變遷史硏究』세종대학원박사학위논문
박춘순, 1991,『바지考』중앙대박사학위논문
박성실, 1992,『조선전기출토복식에 대한 연구』세종대박사학위논문
조효순, 1992,『服飾』대원사

박수자, 1966,「우리나라 옷의 變遷」『文化財』2 文化財管理局
박수자, 1968,「우리나라 신의 變遷에 관한 硏究」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이정옥, 1971,「韓國袍의 형태」『논문집』영남대
강순제, 1974,「韓國笠制의 變遷에 관한 硏究」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김미자, 1974,「開化期 文官服에 관한 硏究」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손경자, 1974,「韓國近代 軍服裝 硏究」『論文集』6 수도여사대
김용숙, 1977,「조선조 후기 지방관아의 복식」『論文集』17 淑明女大
임영미, 1978,「褙子考」『大韓家政學會誌』16-1
문화재관리국, 1979,「竹山朴新龍將軍衣帶」『重要民俗資料調査報告書』
_____, 1979,「慶山 鄭元容대감의 衣服」『重要民俗資料調査報告書』
임영미, 1979,「介冑와 軍服과 戎服에 관한 硏究」『韓國衣類學會誌』3-1
임재영, 1979,「조선시대의 백관복－상복을 중심으로」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김현순, 1980,「軍服에 대한 연구」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문명희, 1980,「帖裏에 대한 연구」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강순제, 1981,「帖裏小考」『誠信女大論文集』12
이강칠, 1981,「韓國의 甲冑(4)－出土遺物 鐵製甲冑를 중심으로」『考古美術』146, 147
유송옥, 1982,「출토복식」『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협회
이미나, 1983,「갑옷에 대한 연구」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이봉숙, 1983,「답호에 관한 연구」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김정자, 1984,「帖裏考」『韓國服飾學會誌』8
김정자, 1986,「韓國軍服의 變遷 硏究」『大韓家政學會誌』24-4
김지희, 1987,「우리나라 신에 대한 연구」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임명미, 1987,「바지考」『대한가정학회지』25-2
최영숙, 1988,「군복식에 대한 고찰」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은주, 1988,「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한국의류학회지』12
이진경, 1988,「東北아시아 袴의 유형 및 원류에 관한 연구」『복식』15

第 4 章 近代의 軍服飾

■ 1차 자료

亞細亞文化社, 1973~1974『舊韓國官報』1-16 二友印刷社
宋炳基 外 3人, 1970~1972『韓末近代法令資料集』1-9 大韓民國 國會圖書館
金萬熙, 1978,『民俗圖錄』12, 尙美社
陸軍士官學校 博物館, 1992,『육군박물관도록』陸軍士官學校
朴熙寬, 明治44年,『朝鮮法規大全』日韓印刷株式會社
국회도서관,『大韓民國 臨時政府 議政院文書』(1974)
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Ⅲ(資料篇)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獨立運動史 資料集』10(1984)

■ 연구논저

柳善卿 外 3人, 1991,『大韓帝國時代文武服飾制度』韓國刺繡博物館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朝鮮時代宮中服飾』高麗書籍株式會社
李京子, 1988,『韓國服飾史論』一志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韓國의 服飾』三和印刷株式會社
陸軍本部, 1980,『陸軍服制史』
陸軍本部, 1977,『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李瑄根, 1973,『大韓國史』新太陽社
鄭昨漉, 1982,『新稿韓國史』一志社
東國大敎養敎材編纂委員會, 1993,『韓國史』東國大學校
李康七, 1972,「舊韓末 陸軍服飾制度에 對하여」『月刊文化財』2
金正子, 1986,「韓國軍服의 變遷硏究」『大韓家庭學會』24-4
李順子, 1981,「高宗時代의 武官服制에 關한 小論」『大韓家庭學會』19
金華善, 1986,「우리나라 軍服史의 考察」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석사학위논문
日本帝國官報, 明治45年,「陸軍服制」『勅令』10, 日本帝國官報
齊藤忠植·穗積和夫, 1971,『世界の軍服』婦人畫報社

圖書刊行會, 昭和59年,『20世紀初頭 世界の軍服』(株)圖書刊行會
DK&同朋舍出版編輯部, 1994,『軍服 : Military Uniforms』(株)同朋舍出版
Andrew Mollo, 1973『Army Uniforms of World War II』London, Bland Ford
국사편찬위원회, 1990,『한국사』
韓詩俊, 1993,『韓國光復軍研究』, 일조각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990,『獨立運動史』6.
金正明 編, 1967,『朝鮮獨立運動』原書房, 1967
李康勳 編, 1990,『獨立運動大事典』권2, 페어뱅크(전해종 역), 1969『東洋文化史』

執 筆 分 擔

總 論 …… 金舜圭

第 1 章 古代의 軍服飾
  제 1 절 및 제 2 절의 1~4 …… 宋桂鉉
  제 2 절의 5~6 및 제 3 절 …… 金舜圭

第 2 章 高麗時代의 軍服飾 …… 金正子

第 3 章 朝鮮時代의 軍服飾 …… 宋亮燮

第 4 章 近代의 軍服飾
  제 1 절 …… 韓長煥
  제 2 절 …… 金舜圭

結 論 …… 金舜圭

執筆者 紹介(執筆順)

▲ 金舜圭 국방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宋桂鉉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관

▲ 金正子 대전실업전문대 의상학과 교수

▲ 宋亮燮 국방군사연구소 연구원

▲ 韓長煥 전 육군군사연구위원회 군사연구관

韓國의 軍服飾 發達史 I

1997年 12月 26日 印刷

1997年 12月 29日 發行

發行人 嚴 燮 駉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1街 8番地
國 防 軍 史 硏 究 所

印刷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2街洞 2-12
軍 人 共 濟 會 第1文 化 事 業 所

<정간위 심의필 97-11-6-71> 〈非賣品〉